

발 간 등 록 번 호

11-1075000-000044-01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 Ⅱ

##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  
부위원장 안종철  
상임위원 이종협  
위원 김희송  
(가나다순) 민병로  
서애련  
오승용  
이동욱  
차기환

## ■ 편찬실무

최용주(조사과 과장)  
임남수(조사과 조사관)  
양재은(조사과 조사관)  
황윤경(조사과 조사관)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Ⅲ

초판 1쇄 발행 2024년 6월 24일

발행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주 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7층, 8층

전 화 02)724-9141

제 작 선인

등 록 제5-77호(1998.11.4)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48길 1, 1층

전 화 02)718-6252/6257

팩 스 02)718-6253

E-mail sunin72@chol.com

비매품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이 종합보고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근거하여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발간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27일에 설립되어 2023년 12월 26일에 모든 조사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 종합보고서는 5·18진상규명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조사 활동 내용 전체를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국민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5·18진상규명법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따라 17건의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안)을 의결했으며, 직권조사 사건 중 13건의 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4건의 보고서는 원안과 다르게 “진상규명불능”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신청사건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214건의 조사 신청서를 접수해서 조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종합보고서는 전원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17개 직권조사를 중심으로 위원회 조사 활동의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된 13개의 개별 보고서는 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했으며, 전원위원회에서 원안이 부결된 4건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조사 활동 내용과 부결 사유를 함께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보고서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국가가 이행해야 할 11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통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5월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5·18민주화운동은 불법적 내란집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맞선 “시민의 자연법적 저항이자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둘째, 당시 신군부 세력은 반란과 내란을 실행한 국가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군대와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고한 시민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천부적인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인간에 대한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셋째, 당시 국가폭력의 만행이 피해자에게 남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처는 지금까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은폐되고 왜곡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며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4년의 조사 활동과 그 결과를 돌아보면 위원회가 그 설립목적에 과연 얼마나 부합했는가에 대한 뼈아픈 자성이 앞섭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가 5·18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정신을 기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국가적 각성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중단될 수 없는 5월의 진실규명의 도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보고서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된 민주 영령 앞에 헌정합니다.

2024. 6. 2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 **송 선 태**

## 약어표

- 5·18민주화운동 → 5·18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5·18진상규명법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5·18조사위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 5·18보상심의위원회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5·18보상법
- 5·18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심의 관련 자료 → 보상자료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강제실종 방지협약
-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 국회광주특위 또는 광주특위
-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 공동조사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5·18관련자
-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 → 5·18행불자 또는 행불자
- 행불자인정자가족회 → 행불자가족회
- 수배자 명단, 전단, 지시, 하달 공문 등 → 수배자 명단
- 특수학적변동자 → 특변자
- 5·18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 → 5·18위령탑 건립위원회
- 광주전남지역개발협의회 → 전개협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 국방부 5·18특조위 또는 국방부 특조위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투입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 군·경 피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전남대학교 부속병원 → 전남대병원 또는 전대병원
- 광주재진입작전 → 상무총정작전 또는 광주재진입
- 보안사령부 → 보안사
- 수도경비사령부 → 수경사
- 육군본부 → 육본
- 육군특수전사령부 → 특전사
- 제○공수특전여단 → 제○공수여단 또는 제○공수
- 제○보병사단 → 제○사단
- 전투교육사령부 → 전교사
- 광주비행장, 송정리 비행장, K57 → 제1전투비행단 또는 광주비행장
- 육군범죄수사단 → 육군범수단
- 합동수사본부 수사5국 → 합수5국
- 국가안전기획부 → 안기부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내란음모사건
- 전두환 회고록 1: 혼돈의 시대 → 전두환 회고록



## 목 차

발간사	5
약어표	7

# I

## 제1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배경·25

제1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 배경과 연혁	27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	27
가. 피해자 단체 결성	27
나. 5월운동의 확산	28
다. 국회 청문회	30
라. 광주문제 해결 5원칙 채택	31
마. 사법 정의 실현 운동과 책임자 처벌	32
2. 5·18진상규명법 제정	37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 사격 흔적 확인	37
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조사	38
다. 5·18진상규명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39
3. 위원회의 출범	41
가. 국방부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	41
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공동조사단	41
다. 위원회 위원 추천	42
라. 위원회 출범	44

4. 5·18진상규명법 개정	45
가. 1차 개정	45
나. 2차 개정	47
<b>제2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업무와 권한</b>	<b>49</b>
1. 진상규명의 범위	49
가. 5·18진상규명법 제3조 규정	49
나. 시간적·공간적 범위	50
다. 진상규명 사건 유형	51
2. 조사의 기본원칙	52
가. 피해자 중심 접근	53
나. 국제 기준에 부합한 접근	53
다. 증거 기반 접근	53
3. 조사 활동 절차	54
가. 직권사건	54
나. 신청사건	56
4. 위원회의 조사 권한	57
가. 진술조서	58
나. 출석요구서와 동행명령	58
다. 자료 제출 요구	59
라. 압수 및 수색영장 청구 의뢰	59
마. 청문회	60
바. 유해발굴 조사	60
사. 특별검사 임명 요청	61

5.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	61
가. 고발 및 수사 요청	62
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62
다.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	62
라. 가해자를 위한 사면 조치 등	63
6. 기록조사와 진술조사 현황	63
가. 기록조사	63
나. 사건별 주요 수집 자료	66
다. 진술조사	73
7. 사건 처리 현황	80
가. 신청사건	80
나. 직권사건	82
<b>제3절 5·18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b>	<b>87</b>
1. 12·12군사반란에서 5·17내란까지	87
가. 유신의 종말과 민주화의 열기	87
나. 12·12군사반란	89
다. 민주화의 봄	94
라. 신군부의 집권 음모	98
마. 서울역 회군	103
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104
사. 5·18민주화운동 직전 광주 상황	107
2.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	109
가. 5월 18일(일요일)	109
나. 5월 19일(월요일)	111
다. 5월 20일(화요일)	113

라. 5월 21일(수요일)	116
마. 5월 22일(목요일)	119
바. 5월 23일(금요일)	122
사. 5월 24일(토요일)	124
아. 5월 25일(일요일)	126
자. 5월 26일(월요일)	127
차. 5월 27일(화요일)	129

## 제2장 계엄군의 진압 작전과 발포 · 133

<b>제1절 계엄군의 발포와 책임</b>	135
1. 조사 배경	135
2. 계엄군의 발포 경위	136
가. 발포 배경	136
1) 소요 진압 작전과 대침투작전	139
2) 강경 진압 지시	147
나. 진압작전 중 발포	150
1)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근처의 최초 발포	150
2) 5월 20일 광주역 일원 발포	163
3)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	189
4)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247
3. 발포 책임	258
가. 신군부세력 등 수뇌부	258
1) 전두환의 역할	258
2)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의 작전 개입·관여	266
나. 현장지휘관 및 발포 실행 장병	271

4. 소결	272
<b>제2절 군인과 경찰의 피해</b>	276
1. 조사 배경	276
2. 일자별, 상황별 피해 실태	282
1) 5월 20일 차량 시위대에 의한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의 사망 사건	282
2) 5월 20일 광주역 일원 진압 작전 계엄군 피해와 정관철 중사의 사망	284
3)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권용운 일병의 사망 사건	285
4) 5월 21일 주남마을 철수작전의 계엄군 피해와 이관형 상병의 사망 사건	289
5) 5월 21일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 이동 과정의 계엄군 피해	291
6) 5월 22일 국군광주통합병원 확보 작전의 계엄군 피해와 방위병 손광식의 사망 사건	292
7) 5월 24일 광주톨게이트 계엄군 간 오인교전 피해	293
8) 5월 24일 광주비행장 이동 과정의 계엄군 간 오인교전 피해	294
9)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전남도청)	297
10) 5월 29일 무등산 수색작전 간 계엄군 피해	299
3. 소결	300
<b>제3절 계엄군의 헬기 사격</b>	302
1. 조사 배경	302
가. 헬기사격 사건의 배경과 문제제기	302
나. 헬기사격 사건의 사회적 논란과 쟁점	306
1) 육군항공 지휘관 및 조종사들의 주장	306
2) 육군항공 관계자의 헬기사격 사건의 왜곡에 관한 쟁점	308
3) 『전두환 회고록』에서의 왜곡과 사회적 논란	315
2. 조사 결과	317
가. 5·18민주화운동 기간 항공작전 운용과 무장 출동	317
1) 소요진압작전 당시 육군항공 부대 편성 및 지휘체계	317



2) 육군항공대 출동 현황 및 무장 출동 여부	319
3) 단계별 항공작전 임무	322
나. 헬기 무장 상태와 사격 가능성	324
1) 일자별 육군 헬기 임무 현황과 비행시간기록 누락	324
2) 비행 임무 중 무장 상태와 사격 가능성	328
다. 헬기 사격 지시 및 명령	339
1) 문서에서 나타난 헬기사격 지시	339
2) 헬기사격에 관한 구두 지시 및 명령	341
라. 헬기 사격 입증 증거 및 혐의점	345
1) 헬기사격 입증 증거	345
2) 헬기사격 관련 혐의점	362
3. 소결	369

#### 제4절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373

1. 조사 배경	373
2. 조사 결과	374
가. 8가지 조사 쟁점	374
1) 광주폭격설	374
2) 진압작전 계획 수립과 전투기 출격 대기	378
3) 제10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 출격대기	382
4) 충청작전과 전투기 출격대기	390
5)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 항공기 출격 대기	395
6) 공군참모총장의 비상대기 지시	401
7) 에어 스트라이크	404
8) 대공포탄 보급 의혹	405
나. 공군의 군사적 지원	407
1) 공수 지원	407

2) 항공사진 지원	409
3) 위력시위 비행 지원	410
4) 군수지원	411
3. 소결	411

### 제3장 민간인 희생과 피해 · 415

<b>제1절 민간인 사망</b>	417
1. 조사 배경	417
2. 조사 결과	418
가. 민간인 사망 규모와 사망 경위	418
1) 사망자 규모	418
2) 사망자별 사망 경위	419
나. 민간인 사망 실태	434
1) 개요	434
2) 사망 사건의 전개과정	443
3) 민간인 살해의 반인도성	473
다. 사인 오류 정정 및 사망장소 추가 확인	477
1) 사인 오류 정정	477
2) 사망 장소 추가 확인	483
3. 소결	485
<b>제2절 민간인 상해</b>	488
1. 조사 배경	488
2. 조사 결과	489

가. 상해 일반 현황	489
1) 기초자료	489
2) 연령대별 분포	492
3) 성별 장애 정도	494
4) 직업별 분포	495
5) 장소별 발생 분포	496
6) 날짜별 발생 현황	501
나. 주요 쟁점별 민간인 상해	504
1) 여성 및 노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폭행	504
2) 시위와 무관한 민간인 상해	505
3) 안면부와 머리 등 치명적 부위 피해와 복합상해자	506
4) 총상자 피해 사례	510
5) 도검류에 의한 상해	525
3. 소결	532
<b>제3절 행방불명</b>	<b>536</b>
1. 조사 배경	536
2. 조사 결과	537
가. 선행조사의 결과	537
나. 국립5·18민주묘지의 신원미상 희생자 3위 확인	539
다. 5·18행불자 '신동남'의 소재와 사망 확인	542
라. 5·18행불자 '김광복'의 소재 및 신원 확인	547
마. 5·18행불자 '김재영'의 소재 및 신원 확인	548
바. 5·18사망자 '양창근'의 오인 매장 경위 확인	549
사. 5·18행불자 242명의 전수조사	558
아. 5·18행불자 중 10세 이하의 어린이 조사	565
자. 5·18행불자 행방불명 현장지도 구축	569

차. 행방불명자 가족 채혈 및 유전자 검사 . . . . .	580
3. 소결 . . . . .	583
<b>제4절 암매장 . . . . .</b>	<b>586</b>
1. 조사 배경 . . . . .	586
2. 조사 결과 . . . . .	587
가. 선행조사의 결과 . . . . .	587
나. 계엄군 면담조사에 의한 암매장 지역 특징 . . . . .	599
다. 광주교도소 일원의 가(암)매장 제보현장 지표조사 . . . . .	607
라. 제31사단 해남대대 인근 유해발굴 . . . . .	616
마. 영암군 학산면 공설묘지 유해발굴 . . . . .	618
바. 화순 너릿재 터널 인근 지표조사 . . . . .	619
사. 제31사단 영내 및 유격장 지표조사 . . . . .	619
아. 민간인 시체 소각설 조사 . . . . .	623
자. 암매장 제보 현장 유해의 유전자 검사 . . . . .	628
3. 소결 . . . . .	636
가. 암매장 제보 현장의 유해발굴 및 수습 조사 결과 . . . . .	636
나. 유전자 검사 결과 . . . . .	638

## II

### 제4장 외곽 봉쇄지역 집단학살·665

제1절 조사 배경	667
제2절 조사 결과	669
1. 광주-화순(주남마을)	669
가. 외곽 봉쇄 작전과 제7, 제11공수여단의 이동 준비	669
나. 5월 21일 계엄군 이동 간 피해	673
다. 5월 22일 외곽 봉쇄 작전의 시작과 시민군 및 민간인 피해	680
라. 5월 23일 마이크로버스 피격 등 민간인 피해	685
마. 5월 24일 주남마을을 떠나는 공수여단과 검시	713
2. 광주-나주(송암동)	717
가.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의 외곽 봉쇄 작전 시작과 민간인 피해	717
나.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의 외곽 봉쇄 작전 중 민간인 피해	727
다. 제20사단과 보병학교 교체 전후 민간인 피해	733
라. 계엄군 간 교전과 제11공수여단에 의한 민간인 피해	736
마. 해남 등 전남지역 피해	767
3. 광주-송정(국군광주통합병원)	776
가. 외곽 봉쇄 작전을 위한 부대 배치	776
나. 5월 22일 국군광주통합병원 사건	778
다. 송정리 비행장 등	790
4. 광주-장성(광주변전소)	793
가. 제20사단 61연대 3대대의 톨게이트 봉쇄	793
나. 제31사단 광주변전소 사건	793
다. 광주톨게이트 사건	795



5. 광주-담양(광주교도소) . . . . .	797
가. 제31사단 사건 . . . . .	797
나. 제3공수여단 사건 . . . . .	798
다. 제20사단 62연대 사건 . . . . .	812
라. 담양 제31사단 사건 . . . . .	813
<b>제3절 소결</b> . . . . .	<b>815</b>

**제5장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 819**

<b>제1절 연행·구금·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b> . . . . .	<b>821</b>
1. 조사 배경 . . . . .	821
가. 조사 배경 . . . . .	821
나. 조사 범위 . . . . .	822
2. 조사 결과 . . . . .	823
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 . . .	823
나. 광주·전남 지역 인권침해 사건 . . . . .	841
다. 전북 지역 인권침해 사건 . . . . .	861
라. 서울·경인 지역 인권침해 사건 . . . . .	879
마. 대전·충청 지역 인권침해 사건 . . . . .	893
바. 강원 지역 인권침해 사건 . . . . .	901
사. 대구·경북 지역 인권침해 사건 . . . . .	910
아. 부산·경남 지역 인권침해 사건 . . . . .	926
3. 소결 . . . . .	939

<b>제2절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탄압</b>	947
1. 조사 배경	947
2. 조사 결과	949
가. 5·18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단체 탄압사건	949
나. 5·18피해자 수배·학사징계·해직 사건	975
다. 5·18피해자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사건	1021
3. 소결	1037
<b>제3절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b>	1039
1. 조사 배경	1039
2. 조사 결과	1041
가. 조사대상 사건별 피해 실상	1041
나. 5·18 성폭력 사건의 종합적인 피해 실상	1096
3. 소결	1103
가.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피해의 특수성	1103
나.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치유·회복의 책임 주체	1104

## 제6장 북한군 개입 주장과 5·18민주화운동 왜곡·1107

<b>제1절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b>	1109
1. 조사 배경	1109
가. 개요	1109
나. 조사 범위	1113

2. 조사 결과	1116
가. 장비 및 전술 관련 주장 검증	1117
나. 5·18 당시 북한군의 남한 내 활동 관련 주장 검증	1138
다. 북한과 5·18 관련 주장 검증	1200
라. 간첩 이창용·손성모 사건	1212
마. 기타 주장 검증	1215
바. 5·18 북한군 침투 주장 관련 조사 TF 조사 결과	1225
3. 소결	1239

## 제2절 무기 탈취와 시민의 무장

1. 조사 배경	1245
2. 무기고 위치 사전 파악 및 동시 습격 여부	1247
가. 무기고 습격자 62명의 형사기록	1247
나. 시위대 참여 계기	1253
다. 기록으로 확인한 시위대의 차량 시위와 무기고 습격	1258
라. 아세아자동차공장 피탈 차량	1260
마. 무기고 습격 직후 광주공원으로 출발 여부	1263
바. 재판기록에서 확인한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 과정	1265
3. 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과 피탈 시간	1267
가. 경찰의 무기 소개 및 경찰서 경비 상태	1267
나.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 시간	1276
다. 기타 지역 무기고 습격	1293
4. 시위대의 무기 탈취 방식	1300
가. 기록으로 확인한 시위대의 무기 탈취 방식	1300
나. 전남도청 지하 8톤 분량 군용 TNT 설치 여부	1302
5. 소결	1306

제3절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1313
1. 조사 배경	1313
2. 선행조사 검토	1314
가.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1988-1989)	1314
나. 검찰수사(1995-97)와 대법원 판결(1997.4.17.)	1314
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5-2007)	1315
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7.9-2018.2)	1315
3. 규명과제	1316
4. 조사 활동	1316
가. 기록 조사	1316
나. 대인조사	1318
5. 소결	1321
6. 진상규명 불능 사유	1323

## 제7장 결론과 종합권고 · 1327

1. 새롭게 규명한 사실	1329
2. 과제	1332
가.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1332
나.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1333
다. 희생자 암매장 의혹	1334
라. 군인과 경찰의 사망·상해	1335
3. 국가에 대한 권고	1335

별첨 직권사건 조사결과보고서 현황

순번	조사과제명	주문요청	위원회결정	의결
1	(직나-1)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발포경위 및 책임 소재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표결 2 대 7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2	(직가-2)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3	(직가의4-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4	(직마-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의 확인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5	(직가의2-5)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직가의2-5(1) 등 9건 :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6 대 3
		직가의2-5(2) :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5 대 4
		직가의2-5(3) : 진상규명불능	진상규명불능	전원일치
6	(직바-6) 5·18민주화운동 당시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7	(직바-7)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표결 2 대 7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8	(직가-8)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9	(직라-9)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및 그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진상규명불능	진상규명불능	전원일치
10	(직나-10)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6 대 3



순번	조 사 과 제 명	주문요청	위원회결정	의 결
11	(직나-1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사건	진상규명불능	진상규명불능	합의
12	(직사-1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일부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표결 4 대 4 (일부진상규명 →진상규명불 능, 가부동수 부결)
13	(직바-14) 검거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손성모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14	(직바-15)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일원 침투주장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전원일치
15	(직가의3-17)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7 대 2
16	(직가의5-20)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	표결 6 대 3
17	(직다-21)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표결 2 대 7 (진상규명→ 진상규명불능)



## 제4장

# 외곽 봉쇄지역 집단학살





## 제1절 조사 배경

1980년 5월 14일 계엄군의 전면 투입 준비 지시에 이어 5월 17일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국보위) 설치 등을 결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한 신군부 세력의 12·12 군사 반란에 이어 기획된 내란 행위의 연속이었다. 광주에는 5월 18일 제7공수여단, 5월 19일 제11공수여단, 5월 20일 제3공수여단, 5월 21일 제20사단이 차례로 투입되었다. 이들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앞으로 전교사로 약함) 제31사단 96연대와 합류하여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반란에 항거하던 시민들을 강압적으로 진압했다. 시위 진압 초기에는 곤봉에 의한 구타·살해로 시작되었으나, 시민의 저항이 격화되면서 5월 19일 광주교 발포를 거쳐 5월 20일 광주역, 5월 21일 전남대와 도청 앞 집단 발포로 확산되었다.

이후 항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광주 외곽 봉쇄 작전이 시작되었다. 5월 21일 ①광주-장성 간 도로 봉쇄, ②광주-담양 간 도로 봉쇄, ③광주-화순 간 15번 국도 봉쇄, ④광주-나주 간 1번 국도 봉쇄, ⑤광주-송정 간 22번 국도 봉쇄, ⑥담양, 함평, 무안, 해남의 주요 도로 봉쇄가 시작되었다. 이때 시위 확산 또는 무기 획득을 위해 계엄군의 차단 지점을 지나던 차량과 탑승자, 혼란 상황을 피해 고향으로 떠나는 피란민, 군 주둔지 거주민 등 민간인이 집단학살<sup>1</sup>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신군부 정권은 이 사건을 “폭도와 교전”으로 주장하면서 민간인들의 죽음을 정당

1 본 보고서의 “민간인 집단학살”은 1980년 5월 21일~26일 외곽 봉쇄 작전 중 작전 지역에서 “2명 이상의 비무장 민간인”이 계엄군에 의해 고의로 살해된 경우라고 정의한다. 이때 비무장은 비록 무장을 했더라도 저항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를 포함한다.



한 방어의 결과 또는 폭도 진압 과정에 따르는 부수적 피해로 취급했다. 더욱이 수습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진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이후 1988년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이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조사했으나 피해 사실 일부 확인에 그쳤고, 그나마 확인된 직접 가해자와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5·18조사위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 계엄군의 외곽 봉쇄 작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부터 5월 27일 도청재진입 작전 직전까지 광주시 외곽에서 이루어진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규명하고자 『5·18진상규명법』 제3조 5호에 따라 2020년 5월 11일 제10차 전원위원회에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직가의4-3)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그 뒤 2023년 12월 24일 제115차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을 전제로 ‘진상규명’ 의결하였다.<sup>2</sup>

2 위원 3인(이종협, 이동욱, 차기환)의 추가의견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직가의 4-3) 직권조사보고서 63-67쪽 참조.

## 제2절 조사 결과

### 1. 광주-화순(주남마을)

#### 가. 외곽 봉쇄 작전과 제7, 제11공수여단의 이동 준비

##### 1) 주남마을로 이동

외곽 봉쇄 작전을 위해 주남마을로 이동하던 이들은 차량 제대와 도보 제대로 나뉘었다. 차량 제대를 엄호하는 임무를 맡았던 제7공수여단 33대대 7지역대를 제외한 나머지 제7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 전원은 도보로 이동했다.

제11공수여단은 16시경 철수 명령을 받고 17시경 조선대에 도착하여 식사 후 1인당 대개 실탄 60발을 지급했고, 19시30분 도보 제대는 제7공수여단 35대대, 33대대, 제11공수여단 63대대, 직할대, 62대대, 61대대의 순으로 출발하여 조선대 뒷산 또는 학동, 지원동을 거쳐 06시경 주남마을에 도착했다.<sup>3</sup>

제7공수여단 33대대 7지역대가 엄호하는 차량 제대는 19시30분에 1대의 APC(529호)가 선두에 서고, 이어 2.5톤 트럭 5대(7지역대), 지프차(1/4톤) 8대, 2.5톤 트럭 17대, 후미의 APC(515호) 1대의 순으로 이동했다. 이들이 이동한 경로는 조선대 정문을 나와 좌회전하여 전남대병원과 남광주시장 사거리에서 다시 좌회전한 뒤, 15번 국도를 따라 송의실고 앞을 지나 무등산 제2수원지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차량 제대의 목적지 도착시간은 출발 뒤 1시간 지난 20시30분이었다.<sup>4</sup>

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안부웅 진술조서」(1995. 2. 13.), 55~56쪽.(102-23, 110~111쪽); 「정태덕 진술조서」(1994. 12. 20.), 25~26쪽.(102-24, 176~177쪽); 「최영준 진술조서」(1994. 12. 16.), 21쪽.(102-24, 97쪽)

4 제7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39쪽.(104-186) 장갑차 운전병 김○○ 상병은 522호 장갑차가



제7공수여단 33대대 7지역대 1중대 2지대 김○○ 일병은 차량을 이용하여 철수하던 중 무장한 시민들로부터 사격을 받고 총격전을 벌이면서 제2수원지 입구에 도착했다.<sup>5</sup> 전교사 885수자중대 운전병 김○○ 병장은 조선대에서 나온 뒤 시내를 벗어났을 때 도로 양쪽 2, 3층 건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했다.<sup>6</sup> 당시 계엄군 차량 피해는 지프차 1대, 방송 차량 1대, 2.5톤 보급 차량 1대 등 모두 3대였으며, 인명 피해는 방송 차량에 탔던 제11공수여단 정훈장교 변상진 대위, 2.5톤 보급 차량 122호 운전병 제7공수여단 이관형 일병, 여단장 지프차 운전병 제11공수여단 이상수 상병이었다.

## 2) 외곽 봉쇄 작전 준비

### 수색

주남마을에 주둔을 시작한 계엄군은 먼저 주둔지 일대에 대한 수색 작전을 벌였다. 22일 새벽 마을 곳곳을 수색하던 계엄군이 주민들에게 목격되었다. 주남마을 주민 임○○는 제11공수여단이 주남마을에 주둔하면서 수색 작전이 먼저 벌어졌던 사실을 증언했다. 계엄군 두 명이 집에 들어와 수색했는데 당시 잡아간 사람들은 없었다고 했다. 같은 마을 주민 이○○ 역시 계엄군에게 수색을 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셋째 아들이 끌려갈 뻔했다고 한다.<sup>7</sup> 계엄군이 주둔한 마을을 수색한 사실은 관련 군 기록에서도 확인된다.<sup>8</sup>

.....  
 훈련 중 침수로 고장 난 뒤 정비창에서 수리했는데, 이후부터 529호로 차 번호가 변경되었으며, 소대장의 장갑차 521호는 교육용으로 분해되어 있었으므로 대신 515호가 투입되었다고 했다.[출처,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 10. 19.), 4쪽; 5·18조사위, 「최택현 진술조서」(2022. 9. 6.), 7쪽] 제11공수여단 참모장 양대인 중령에 따르면, 제11공수여단에 2대의 장갑차가 배속된 때는 5. 19. 10:00였다.[출처,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양대인 진술조서」(1995. 4. 28.), 7쪽.]

5 5·18조사위, 「김○○ 면담보고」(2022. 6. 20.), 2쪽.

6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12. 20.), 11쪽.

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임○○ 진술조서」(1996. 1. 13.), 2쪽(102-111, 82쪽); 임○○ 증언, 「국회 청문회 속기록」(1989. 1. 27.), 73쪽, 75쪽(104-273); 이○○ 증언, 「국회 청문회 속기록」(1989. 1. 27.), 81~82쪽, 83~84쪽(104-273)

8 육군본부, 「전교사 전투상보」, 27쪽(104-184)

## 실탄 분배

주남마을에서 외곽 봉쇄 작전의 임무를 받고 주둔을 시작하던 계엄군은 5월 22일 헬기를 통해 실탄을 보급받았다. 계엄군 대부분은 봉쇄 작전 시에 이미 실탄이 지급된 상태로서 검문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나 차량에 대하여는 무조건 총을 쏘아서라도 저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 대해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sup>9</sup> 62대대장 이제원 중령은 “전시나 마찬가지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문에 불응하면 사격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했다.<sup>10</sup> 발포의 근거에 대해 61대대 2지역대 4중대장 최영준 대위는 자위권 행사 명령이었으며, 발포할 경우 신체의 하체를 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sup>11</sup>

## 관측소 및 매복 진지 구축

광주-화순 간 도로 봉쇄를 위해 61대대 관측소가 소태동 뒷산에 만들어졌고, 매복 진지와 함께 산 앞인 소태동 삼거리에는 1지역대에 의해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다고 한다.<sup>12</sup> 하지만 매복 군인과 초병을 볼 수 없었던 시민들로서는 엄격한 도로 통제와 총격당할 위험성을 심각하게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외곽 봉쇄 작전으로서 광주-화순 간 도로를 차단하는 바리케이드 설치와 함께 제7, 제11공수여단은 대대별로 매복 진지를 운영하면서 무장 시위대 및 도로의 차량과 산길의 행인을 통제하였다. 주남마을로 이동한 2개의 여단은 광주 방향의 주남마을에 제11공수여

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양대인 진술조서」(1995. 4. 28.), 20쪽.(102-20, 661쪽); 「조민선 진술조서」(1995. 4. 19.), 14쪽.(102-20, 479쪽); 「유재영 진술조서」(1995. 4. 21.), 17쪽.(102-20, 542쪽); 「곽만수 진술조서」(1995. 6. 2.), 7쪽.(102-22, 96쪽); 「이제원 진술조서」(1994. 12. 22.), 26쪽.(102-15, 262쪽); 「박동주 진술조서」(1995. 5. 29.), 14쪽.(102-21, 735쪽); 「최규진 진술조서」(1995. 5. 31.), 14쪽.(102-21, 882쪽)

1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제원 진술조서」(1994. 12. 22.), 26쪽.(102-15, 262쪽)

1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영준 진술조서」(1994. 12. 16.), 21~22쪽.(102-24, 97~98쪽)

1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정태덕 진술조서」(1994. 12. 20.), 26~27쪽.(102-24, 177~178쪽)

단, 너릿재 화순 방면에 제7공수여단을 배치했다.

제11공수여단의 3개 대대는 광주에서 화순 방향으로 61대대, 62대대, 63대대의 순서로 배치되었다. 61대대가 담당했던 소태마을 입구 바리케이드(민간인 관리)를 제외하면 61대대와 63대대에 주로 야산 능선 봉쇄 임무가 주어졌으며, 62대대에는 15번 국도의 봉쇄 임무가 주어졌다.<sup>13</sup> 제11공수여단 61대대의 봉쇄 담당 지역은 소태동에서 부영산까지였다. 61대대장 안부웅 중령은 소태동 뒷산(당시 현대교통 뒷산)에 관측소(OP)와 함께 3지역대, 1지역대를 배치했으며, 2지역대의 절반을 대대본부와 함께 소태동 뒷산 밑에 배치했다. 3지역대가 광주 쪽으로 제일 앞에 배치되었다.<sup>14</sup> 62대대의 담당구역은 부영산에서 월남정미소까지였으며, 본부는 월남정미소에 있었다.<sup>15</sup> 63대대본부는 수박등(집계봉) 능선에 있었다. 산골짜기로 마을이나 도로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sup>16</sup>

제7공수여단은 임시숙영지였던 마집봉(CP139869)을 거쳐 고실골 안쪽에 주둔했다. 33대대본부는 안쪽 계곡 능선(CP134854)에, 35대대본부는 도로 쪽 저수지 방면 능선(CP132852)에 주둔했다.

### 주민 상황

계엄군 주둔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시위대와 경계에 있던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 계엄군 제11공수여단과 제7공수여단의 차량 및 도보 제대의 이동로와 주둔지에 있던 소태마을과 주남마을, 녹동 등 주민들이 전장을 방불케 하는 총격에 놀라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으며 심한 경우 총탄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던 시민군들

1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웅 진술조서」(1994. 12. 27.), 8쪽.(102-15, 401쪽)

14 5·18조사위, 「최이조 진술조서」(2023. 7. 13.), 28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안부웅 진술조서」(1995. 2. 13.), 56쪽.(102-13, 787쪽),

1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제원 진술조서」(1995. 12. 31.), 18쪽.(102-100, 253쪽)

16 5·18조사위, 「임OO 진술조서」(2022. 11. 16.), 35쪽; 「김OO 진술녹취」(2022. 2. 9.), 50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신동춘 진술조서」(1995. 5. 8.), 8쪽.(102-24, 710쪽).

이 계엄군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소태동 배고픈다리와 원지교 부근에서 경계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 나. 5월 21일 계엄군 이동 간 피해

### 1) 차량 제대에 의한 피해

#### ○ 차량 탑승자 피해

##### 2.5톤 트럭

1990년 및 1993년 광주시의 보상심의자료에서 5월 21일 19시경 화순 너릿재를 지나 광주로 진행하던 2.5톤 트럭이 충격을 받아 전복되면서 트럭 적재함에 타고 있던 최성일 등이 부상 후 화순 사람들에 의해 최의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은 사건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너릿재 부근에 있던 박○○(남, 66년생, 화순중 2년), 임○○(남, 68년생, 화순중 1년)가 목격한 여러 사건 중 하나와 정황이 일치된다.

##### 헌혈버스

광주기독병원으로 헌혈할 시민들을 나르던 25인승 마이크로버스가 헌혈을 마친 시민들을 각각 집으로 돌려보내던 중, 지원동 현대교통 1번 버스 종점에서 장갑차를 선두로 이동하던 계엄군으로부터 충격받아 차에 타고 있던 박금희(63년생), 박○○(61년생), 나○○(61년생) 등이 사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5월 20일 언니 박○○의 집에서 잔 박금희는 아침에 농성동에 있는 집에 들렀다가 점심 무렵 나와<sup>17</sup> 친구 문○○의 집으로 갔다. 이후 16시경 방에서 나와 버스를 기다렸으나 노선버스는 다니지 않았고, “피가 모자라니 헌혈합시다”라고 외치는 25인승 마이크로버스

<sup>17</sup> 박○○, 문○○ 구술(1985), 1쪽.

가 다가오자 헌혈하고 싶다는 문○○와 함께 박금희가 버스에 타게 되었다.<sup>18</sup>

17시경 기독교병원에 도착한 마이크로버스 탑승자들은 결국 헌혈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야 했다. 병원에서 확보해두었던 용기가 모두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금희와 문○○는 어쩔 수 없이 타고 왔던 버스에 다시 탔는데, 이 버스에는 15~16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다. 박금희는 운전석 뒤로 3~4번째 줄에 앉았고 문○○는 출입문 쪽으로 같은 줄에 앉았다. 나○○은 박금희 옆에 앉았는데 자신이 창가 쪽에 앉아있었고 친구 박○○은 버스 뒷줄 가운데에 앉아있었다고 했다.

참고인 나○○은 이때 ‘의사 가운’을 입은 광주기독교병원 의사 1명이 버스를 인솔했으며 무장 시민군은 탑승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초 탑승자의 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격 당시 탑승자 수는 16명으로 기억했다. 이 버스는 양동시장, 전남대병원 로터리를 지나 화순을 향했다.<sup>19</sup>

박금희와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문○○는 지원동 1번 버스 종점에 도착한 헌혈버스가 더 이상 화순 방면으로 가지 못하고 차를 돌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콩 볶는 듯한 엄청난 총소리와 함께 돌진하는 군 트럭들을 보았고, 거의 같은 순간 누군가가 “엎드려”하고 소리쳤다고 했다. 이 소리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의자 밑으로 엎드렸고, 사방이 조용해진 뒤에야 일어났을 때 등허리 부분에 총을 맞은 박금희가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앞으로 숙인 모습을 보았다.<sup>20</sup>

총을 쏘던 군 차량 제대가 지나가고 조용해지자 문○○ 등 버스 탑승자들은 군인들이 다시 올 것이 두려워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총상을 당한 박금희도 버스에서 내려졌는데 문○○는 이때 총상당한 등 부위에서 골수로 보이는 물체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5~10분이 지나자 다시 버스를 타고 기독교병원을 향해

18 5·18조사위, 「나○○ 진술녹취」(2022. 11. 15.), 8~9쪽.

19 5·18조사위, 「나○○ 진술녹취」(2022. 11. 15.), 8~9쪽.

20 5·18조사위, 「문○○ 진술조서」(2023. 1. 5.), 7쪽.

출발했다. 이때 문OO가 기억하는 총상자들은 박금희 외에 머리를 다친 사람과 어깨를 다친 사람 등 모두 3인이었다.<sup>21</sup>

기독병원에 도착한 박금희 등 총상 사상자들이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의무기록실장 고OO는 헌혈버스에서 바닥에 누운 채로 병원에 도착한 박금희를 기억했다. 광주기독병원 응급실장 김OO도 헌혈하고 돌아가다가 충격당해 병원으로 되돌아온 한 여고생의 시신을 목격했다. 그는 이 여학생을 태우고 소태동을 지나던 헌혈버스가 계엄군의 캘리버50에 희생된 것이라고 했다. 상무관 검시 의사였던 참고인 문OO는 M16보다 관통 총상이 큰 여고생 시신을 기억했다. 상처 부위가 커서 기관총에 죽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sup>22</sup>

#### ○ 행인 피해

이동 중인 차량의 사격에 의한 피해는 보행자와 도로변 주택가와 상가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도 발견된다.

조선대 인근 학동 734-10(현 학동·증심사입구역 부근)에 살면서 함께 식료품점을 경영하던 임수춘(남, 42년생)<sup>23</sup>이 5월 21일 17시경 집 앞을 과속으로 지나던 계엄군 지프차에 치여 같은 날 20시30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5월 22일 16시30분 사망했다. 희생자가 사고를 당한 곳은 조선대 체육관 뒷산 방면에서 나오는 작은 도로와 주남마을로 향하는 15번 국도에서 증심사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였다. 이곳은 조선대에서 출발하여 주남마을로 이동하려던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도보 제대가 이용

21 5·18조사위, 「문OO 진술조서」(2023. 1. 5.), 8쪽.

22 5·18조사위, 「고OO 진술녹취」(2021. 8. 6.), 8쪽; 김OO 구술, 「5·18민중항쟁 의료활동에 대한 재조명사업 연구용역 보고서」(2008. 6. 30.),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62쪽; 5·18조사위, 「문OO 진술녹취」(2021. 5. 25.), 83쪽.

23 5·18조사위, 「임OO 통화보고」(2022. 11. 2.);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12쪽(102-215); 「5·18 관련 사망자 검시내용」 135번; 보상심의자료 1851번 417~434쪽; 전남대병원 「입퇴원기록지」(자료총서 23권, 680쪽)

한 사실이 진술<sup>24</sup>과 문헌 자료로 확인된다.<sup>25</sup>

광주 동구 학 2동에 거주하던 정보전기 공장장 김호중(남, 55년생)<sup>26</sup>은 5월 21일 19시 30분 남광주 버스정류장 부근(회사 정문 앞)에서 이동하는 계엄군 차량 제대 선두 장갑차에서 가하는 충격에 부상당했다가 5월 22일 07시15분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광주역 부근에 있던 중앙고속택시 회사의 직원이었던 전정호(남, 25년생)는 5월 21일 19시30분경 소태동 702-3 자택으로 퇴근 중 승의중학교 근처에서 조선대에서 주남마을로 이동하던 계엄군 차량 제대에서 발사한 충격에 맞아 사망하여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었다.<sup>27</sup>

송○○(남, 56년생)은 5월 21일 19시30분경 학동삼거리(현 광주지하철 학동·증심사입구역)를 지나면서 엄청난 총소리와 함께 남광주역에서 화순 방향으로 이동하는 군 차량 대열을 만나 인근 주택으로 피신하던 중 왼쪽 대퇴부에 2회의 맹관총상을 입었다. 응급조치를 한 뒤 다음 날 오전 전남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했다. 피격 당시 자신 외에 50~60대 남성 1명이 복부에 총격당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함께 총격당한 사람은 학동 주민으로 나중에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한다.<sup>28</sup> 송○○은 피격 당시 전정호의 죽음을 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여, 59년생)는 5월 21일 19시30분경 무등중학교 인근인 용산동 집(280-1) 앞에서 총격당해 좌대퇴골 분쇄골절 총상을 입었다.<sup>29</sup>

24 5·18조사위, 「임○○ 진술조서」(2022. 11. 16.), 35쪽; 「김일옥 진술조서」(1995. 1. 18.), 23쪽.(102-15, 500쪽)

25 특전사령부, 「광주사태 진압작전(총괄)」, 101쪽.(104-541)

26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3쪽.(102-219); 「5·18 관련 사망자 검시내용」 34번; 광주지방검찰청 공안과, 「김호중」, 726~732쪽(102-84); 보상심의자료 1847번 406~425쪽; 윤삼례 증언, 「광주5월 민중항쟁사 사료전집」, 1312~1313쪽.

27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1쪽.(102-216); 「5·18 관련 사망자 검시내용」 150번; 보상심의자료 1851번 219~245쪽; 「광주사태변사검시보고서 요지」, 22쪽.(104-12)

28 5·18조사위, 「송○○ 면담보고」(2022. 10. 15.), 1~4쪽

29 보상심의자료 1926번 64쪽, 77쪽.



화순 동면 북암리 화순광업소 인근에 살던 문미숙(여, 70년생)과 모친은 5월 21일 한약을 사기 위해 광주로 가던 중 옆집 주형운의 차를 타고 화순읍에 도착했으나 더 이상 차가 갈 수 없게 되자 걸어서 갔다. 너릿재를 넘어 학동삼거리 부근을 지나면서 총소리와 함께 문미숙이 쓰러졌고 모친은 졸도했다고 한다. 모친이 의식을 찾았을 때 문미숙을 찾을 수 없었다.<sup>30</sup>

조선대 부근 학 2동 23번지에 살던 이○○(27년생)<sup>31</sup>은 5월 21일 20시경 집 밖이 소란스럽다며 나갔다. 21시경 가족들은 학동우체국 앞에 이○○이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 찾으러 가려 했으나 춘태여자상업고등학교 앞에 있던 계엄군이 막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던 중 22시경 이웃에 사는 신형수가 의식을 잃은 이○○을 업고 집으로 들어왔다.

## 2) 계엄군 도보 제대에 의한 보행자 피해

박○○(남, 61년생)<sup>32</sup>은 카빈총을 들고 트럭에 타 시위를 벌이다가 5월 22일 01시경 학동 승의실업고 앞에 있던 중 오른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뒤 10여 명의 공수부대원에게 잡혀 구타를 당했다. 피해 시간으로 보아 제11공수여단 후발 도보 제대에 의한 피해로 판단된다.

## 임옥환

당시 조선대부고 2년생 임옥환(63년생)은 5월 22일 05시 집에서 출발하여 조선대 뒷

30 김윤곤·신기철(2020), 『화순과 5·18』, 화순군청, 73쪽.

31 보상심의자료 1943번 23~111쪽. 이 자료에는 이○○의 부상일을 5월 22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때는 계엄군이 주남마을 등으로 빠져나가 학동에는 없었음이 확인된다. 이 사건은 당시 발생 시간이나 지역으로 보아 5월 21일 조선대 주둔 여단이 주남마을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피해로 판단된다.

32 박○○ 보상심의자료 1905번 145~205쪽.

산을 넘어 고향인 고흥으로 가던 중 계엄군에게 사살당했다고 했다. 당시 동행인은 문○○이었다.<sup>33</sup> 임옥환과 함께 조선대학교 부근 절 불광사에서 함께 하숙하던 문○○이 임옥환의 행방불명 사실에 대해 증언했다. 이에 따르면, 문○○, 임옥환 등 하숙생 4명이 광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사찰 뒤 야산을 가던 중 검문을 받았는데, 정지명령에 놀라 모두 흩어져 도망을 가자 계엄군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문○○은 붙잡혀 상무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이때 문○○은 시민 수십 명이 잡혀 와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얼마 뒤 자취생 2명은 무사히 귀가했으나 임옥환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sup>34</sup>

그런데 조선대에서 주남마을로 걸어서 이동하던 도보 제대 부대는 도중 산속에서 보초를 세우고 짧은 시간이나마 숙면했는데, 이때 보초가 두세 사람을 붙잡았다는 진술이 있다.<sup>35</sup> 사로잡은 두 사람은 무사히 돌려보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제11공수여단 62대대 5지역대 5중대 15지대 최○○ 일병은 계엄군을 뒤따라오던 학생 두 명을 보고 총을 쏘아 한 명을 사살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sup>36</sup>

1989년 1월 12일 소태동 바랑산 능선에서 청색 바지와 곤색 상의를 입고 농구화를 신은 한 구의 유골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실종자 중 이곳을 통과하려 했던 사람은 5월 22일 05시경 조선대 뒷산을 넘어 화순을 지나려 했던 고등학생 임옥환이 유일하다. 이 유골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 김부열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3년생 김부열(63년생)의 시신이 1980년 6월 7일 수습되어 조선

33 「5·18관련 추가신고자 조사대상자 현황」(고흥경찰서), 74쪽.(104-702)

34 5·18조사위, 「문○○ 면담보고」(2021. 6. 9.), 2~3쪽; 「문○○ 진술서(1988. 5. 29.)」, 보상심의자료 2123번 346쪽.

35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10. 27.), 21쪽.

36 5·18조사위, 「최○○ 진술녹취5차」(2021. 4. 30.), 16, 27쪽.

대병원에서 검시되었다. 「사체검안서」에는 사망 시간에 대해 “검시일(1980년 6월 7일)로부터 약 15일 전”으로 추정되었다. 사인에 대해 「광주사태 변사검시보고서 요지」는 지원동 뒷산 상봉(부영산을 말함)에서 다발성 총상(흉부상부 심한 부패로 추정 곤란) 사망한 것으로 적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경위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노중령이 찾아오라고 ○○ 찾아냄.”이라고 적고 있다. 발견 당시 검정색 운동화,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sup>37</sup> 시신은 6월 14일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유족 구술 자료에 따르면, 김부열은 시민군과 함께 외곽 경비 활동을 하던 중 계엄군을 피해 화순 방면으로 도망가다가 총격당했으며 함께 있던 친구는 연행되었다고 한다. 유족에게는 6월 12일경 광주시청 사회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한다.<sup>38</sup> 이로 보아 김부열의 신원은 검시 후 확인되어 광주시청에서 모친에게 연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부열의 시신은 5월 22일 09시 제11공수여단 61대대 2지역대 6중대 16지대장 오○○ 중위가 목격했다. 오○○ 중위는 조선대에서 주남마을로 철수하면서 길을 잃었고 5월 22일 아침 산 정상으로 이동하여 지역대 본부와 연락하였으며 연막탄으로 위치를 확인하여 주남마을에 있는 지역대 본부로 합류하기 위해 이동 중 아침 09시경 산길 위에 학생 1명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앞에 간 부대원으로부터 전해 듣기로 학생은 모두 3명이었는데 그중 2명은 도망가고 1명만 죽게 된 것이었다. 당시 중대장 임무를 대리하던 오○○ 중위는 시신을 낙엽과 나뭇가지로 덮고 목적지로 이동했다고 한다. 발견 당시 시신은 보통 상태로 누워있었다. 머리 등, 상반신이 분리될 정도로 훼손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시신 발견 전 총격을 가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후 광주에서 철수했다가 1주일 정도 뒤인 6월 7일 2지역대장 이종호 소령과 함께 다시 광주로 내려와 광주시청 공무원들과

37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77쪽(102-219); 「5·18 관련 사망자 검시내용」 92번;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사태 사망자 검시 결과」(1980),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핵심자료』 제18권, 288쪽; 「광주사태 변사검시보고서 요지」 195쪽(104-140) 제20사단 장교 명단에서 노씨 성을 가진 중령 계급은 없었다.

38 김○○ 구술 자료 1회(1988. 8), 2회(1999. 5. 2.)

함께 학생의 시신이 있는 곳을 찾아 확인하고 그 위치를 알려줬다.<sup>39</sup>

한편, 진술인 오○○ 중위가 시신을 발견한 시간은 09시경이었고 발견 당시 총소리를 듣지 못했으므로 김부열의 사망 시간은 시신 발견 이전인 08시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진술과 자료를 종합하면, 희생자 김부열은 5월 22일 08시경 사망하여 09시경 오○○ 중위에 의해 낙엽으로 가렸을 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6월 7일 수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신 수습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 중 머리 부분에서 백골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근육 조직이 부패해 뼈가 분리될 정도였다는 진술로 보아 총격으로 약해진 신체 조직들이 부패로 인해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다. 5월 22일 외곽 봉쇄 작전의 시작과 시민군 및 민간인 피해

### 1) 시민군과의 교전 또는 계엄군 간 오인 교전

주남마을로 이동하던 5월 22일 02시경 계엄군 도보 제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병사 1명이 총상을 입었다. 62대대 4지역대 1중대장 정수남 대위는 조선대를 나와 부영산 9부 능선에 주둔하면서 5월 22일 새벽에 아래쪽에서 총을 쏘므로 이에 대응 사격을 했는데 날이 밝고 보니 6지역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했다. 오인 교전이었으니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sup>40</sup> 62대대 6지역대 9중대 25지대 김○○ 일병 역시 밤새 오인 사격이 있었다고 했으며,<sup>41</sup> 62대대 대대본부 통신과 박○○ 일병과 최○○ 일병도 22일 오인 사격이 있었다고 했다.<sup>42</sup> 제11공수여단 62대대 6지역대 본부 최○○ 중사는 조○○ 하사와 함

39 5·18조사위, 「오○○ 진술조서」(2023. 8. 4.), 4~6쪽; 「오○○ 진술조서」(2023. 2. 3.), 14쪽.

40 5·18조사위, 「정수남 진술조서」(2023. 3. 23.), 2~3쪽.

41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10. 26.), 72~73쪽.

42 5·18조사위, 「최○○, 박○○, 김○○ 진술녹취」(2021. 4. 30.), 25~27쪽. 진술인들은 밤에 총을 쏘는 불이 반짝반짝 오갔는데 한○○ 일병이 총을 맞았다고도 했다. 그런데 한○○ 일병이 총을 맞은 때와 장소는 5월 24일 송암 동이었다.(104-684, 351쪽) 부상자 신원에 대한 기억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 이 전투를 직접 겪었다고 진술했다.<sup>43</sup> 이에 따르면, 이날 오인 교전의 부상자는 조수인 62대대 정보하사관 조○○ 하사였다.

## 2) 매복 작전에 의한 민간인 피해

5월 22일 발생한 차량 피해는 너릿재 터널 봉쇄를 담당한 제7공수여단에 의해 발생했다. 08시50분부터 제7공수여단 35대대 11지역대의 너릿재 터널 봉쇄 임무가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경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sup>44</sup>로 보아 5월 22일 13시 이후 차단되기 시작하여 완전히 차단되는 18시30분까지 일부나마 통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 차량 피해

#### 광주고속버스

조선대에서 행군하여 5월 22일 아침 07시30분경 주남마을에 도착한 제7공수여단 35대대장 김일옥 중령은 10시경 광주에서 화순 방향으로 이동하던 버스가 군인을 발견하자 당황하여 도로변 가로수를 받고 전복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제11공수여단 보안반 63대대 담당 활동관이었던 김○○ 중사는 5월 21일 저녁 조선대를 출발한 뒤 주남마을 부근 도로에서 광주고속버스 1대가 도로 가운데에 정차해 있는 모습을 보았고, 곧 공수부대원들과 함께 직접 수색하여 카빈소총 1자루를 발견했다고 한다. 소태동에 살던 유○○은 5월 23일 아침 07시경 현대교통 앞 길가 화순 방면으로 45인승 광주고속버스가 피격당한 채 방치된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버스 안에는 혈흔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08시30분

43 5·18조사위, 『최○○ 진술녹취7』(2021. 10. 19.), 8쪽, 한편, 계엄군 특전사령부는 제11공수여단 62대대 조○○ 하사가 부상당했다는 기록을 다음과 같이 남겼다. "5월 23일 16:30 소태동 버스 종점에 폭도가 집결, 계엄군을 향해 사격하면서 도청으로 모이라는 선무 방송(62대대 하사 조○○, 둔부 관통상)" [출처, 특전사령부, 『광주사태 진압 작전(총괄)』, 59쪽.(104-52)]

44 5·18조사위, 『신청인 박○○ 진술녹취』(2022. 6. 2.), 3쪽; 조○○ 구술, 『화순과 5·18』, 화순군, 198쪽.

경 버스 회사 직원들이 버스를 조사하고 돌아갔다고 했다.<sup>45</sup>

#### 지프차

기존 문헌 자료에 따르면, 5월 22일 용연마을 제2수원지 인근에 주둔했던 제7공수여단 33대대 매복 부대에 의한 1/4톤 지프 공격이 13시16분경 있었다. 이에 따르면, 1명이 사살되고 1명이 생포되었다. 그런데 위 기록에 대해 제7공수여단 33대대장 권승만 중령은 35대대에서 벌어진 사건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권승만 중령의 진술처럼 위 지프차가 33대대가 아니라 35대대에 의한 피해였다면 이 사건은 너릿재 부근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월 22일 파괴된 지프차를 목격한 민간인들이 있었다. 한 대는 신청인 박○○, 참고인 임○○가 목격한 것이다. 이들은 시위대가 아시아자동차에서 꺼내 온 것이거나 계엄군이 타고 왔던 것으로 보았는데, 화순 방향의 너릿재 터널 출구를 지나 이십곡리 입구에서 파괴되었다고 했다. 이곳은 제7공수여단 35대대의 담당구역으로 위 자료에서 말하는 지프차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 대는 신○○가 목격한 것으로 총격받고 전복되어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가 원지교 부근이었다. 사고 위치로 보아 전날 밤 조선대를 출발한 뒤 운전자가 사망했던 제11공수여단장 지프차로 추정된다.

#### 2.5톤 트럭과 오토바이

5월 22일 제7공수여단 35대대에 의한 2.5톤 트럭(전남3 2869)<sup>46</sup> 공격이 18시30분경

4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일욱 소감문(1988)』, 8쪽.(104-443, 11쪽);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 7. 20.), 5쪽; 『유○○ 진술조서』(2022. 12. 14.), 4~6쪽.

46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168쪽. 사진 속 트럭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제7공수여단 35대대 11지역대 5중대 2지대와 3지대가 너릿재 터널을 봉쇄 중이었다.<sup>47</sup>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제7공수여단 35대대장 김일옥 중령과 11지역대장 정영선 소령을 조사하여 트럭이 총격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두 사람의 목격에 따르면, 1980년 5월 22일 너릿재를 넘어 계엄군 제7공수여단에게 모래주머니를 넘기고 화순 방면으로 돌아가던 트럭이 너릿재를 봉쇄하려던 제7공수여단 계엄군의 M60기관총에 피격되어 운전자가 실종되었다.

이에 대해 제7공수여단 35대대장 김일옥 중령은 5월 22일 18시30분 11지역대가 트럭을 탈취, 터널 안으로 밀어 넣어 소각하여 터널을 봉쇄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트럭에는 “무장 폭도들”이 타고 있었다.<sup>48</sup> 하지만 트럭의 피격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제7공수여단 35대대 11지역대장 정영선 소령의 진술에 따르면, 이 트럭은 시위대가 이용하던 차량이 아니라 공수여단에게 진지구축용 모래주머니를 공급하기 위해 동원된 민간 차량이었다.

11지역대 5중대 3지대 통신하사관 오○○ 하사에 따르면, 어두워질 무렵 화순 방면에서 2대의 오토바이와 2.5톤 민간 트럭이 너릿재로 오고 있었다.<sup>49</sup> 오○○ 하사는 3지대장 노○○ 중위를 통해 정영선 11지역대장에게 무전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처음에는 총을 쏘더라도 트럭을 세워 차단선에 이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지만, 민간인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총을 쏘지 말자고 건의하자 일단 트럭은 제지를 받지 않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고 2대의 오토바이에 탄 민간인들도 걸어서 트럭을 따라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트럭에 실린 모래주머니를 전달한 민간 트럭이 전조등을 켜 채 화순 방면으로 나오려

.....  
은 적재함이 세워지는 청색의 소형 덤프트럭으로 적재함 측면에 “도로정비”라고 적혀 있었다.

47 제7공수여단, 『부대역사일지』, 1981; 육군본부, 『특전사 전투상보』, 46쪽.(104-53)

4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일옥 진술조서』(1995. 1. 18.), 24쪽.(102-15, 501쪽)

49 5·18조사위, 『오○○ 진술조서』(2023. 4. 26.), 3~7쪽.



하자 3지대 매복지의 M60기관총 사격이 시작되어 먼저 2대의 오토바이 연료통이 폭발했고 이어 트럭에도 총격이 가해졌다. 이에 놀란 민간인 5~6명이 트럭에서 내려 광주 방면으로 피신했고, 얼마 뒤 매복지에서 나온 3지대원들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 반대쪽에서 2지대원들에 의해 차단된 것을 안 민간인들을 화순 방면으로 이끌고 나왔다. 이들 중 총상을 입은 부상자는 없었다. 민간인들은 모두 화순 방면으로 무사히 돌아갔고 트럭은 소각되었다.

피격 후 소각된 위 트럭이 화순군 소유의 트럭이었고 사실당한 피해자가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 화순군청에는 80년 당시 관용 트럭 등 차량 관리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당시 인적, 물적 피해 상황을 조사했는데 관련된 피해는 없었다고 답변했다.<sup>50</sup> 한편 화순 읍내 너릿재 방면에 살던 임○○와 박○○은 터널에서 트럭이 불에 타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특히 임○○는 화순읍장 조기현이 너릿재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갔다가 걸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으며, 너릿재 쪽에서 트럭과 오토바이가 타면서 시커먼 연기가 났다고 진술했다.<sup>51</sup>

1995년 서울지검은 너릿재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 불능’으로 종결한 바 있으나,<sup>52</sup> 위 문헌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5월 22일 18시30분 너릿재 터널 화순 방면 입구에서 2.5톤 트럭 1대와 오토바이 2대가 소각되었으며, 이때 트럭과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화순읍장 등 5~6명의 민간인들은 터널에서 나와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50 5·18조사위, 「출장 조사 보고」(2022. 1. 25.)

51 5·18조사위, 「임○○ 진술녹취」(2022. 6. 8.), 7쪽. 당시 화순읍장이었던 조기현은 사망하여 면담하지 못했다.

52 「양민살해 등 사건조사결과보고」, 26쪽.(102-111)

### ○ 보행자 피해

5월 22일 15시경 광주에 살던 서○○(58년생)<sup>53</sup>은 5·18 당시 단기사병으로 화순읍 중대본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5월 22일 화순군청 인근에 있는 중대본부로 출근했다가 무기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후 동기인 이○○의 집 자전거 뒤에 타고 광주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자전거가 너릿재 터널을 지나면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계엄군 행렬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마을 안쪽 산으로 끌려가 밭에서 3시간가량 원산폭격 기합 자세에서 폭행까지 당했다. 당시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고 했다.<sup>54</sup> 한편 16시경 신○○(60년생, 성균관대 3년), 신○○(63년생, 광주인성고 2년) 형제와 양○○(전남대 4년), 신○○(52년생) 등 4명이 이 일대를 지나다가 양○○, 신○○은 무사히 통과했으나 신씨 형제가 계엄군에게 잡혀 와 이미 구타를 당하고 있던 서○○ 일행과 함께 구타를 당했다. 당시 신○○가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등산용 칼을 버리는 모습이 계엄군에게 들켜 먼저 끌려갔던 것이라고 한다.

## 라. 5월 23일 마이크로버스 피격 등 민간인 피해

### 1) 새벽의 주민 피해

자위권 발동으로 전시와 다름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 계엄군은 1인당 560발의 실탄을 지급받고 외곽 봉쇄 작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계엄군 주둔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녹동마을 월남동 1번지<sup>55</sup>에 살던 손○○(남, 43년생)이 5월 23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 02시경 처마 슬레이트와 방문을 뚫은 총탄에 피격되어 좌우상 흉부에 부상을 입

53 5·18조사위, 「서○○ 면담보고」(2021. 7. 21.)

54 5·18조사위, 「서○○ 진술녹취」(2021. 8. 2.), 10쪽.

55 제11공수여단 63대대본부에 있었던 집계봉(수박등) 인근으로 판단된다.

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아침 06시경 손수레에 실려 1km 떨어진 주남마을까지 간 뒤 군 헬기로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80년 6월 3일까지 치료받았다.<sup>56</sup>

월남동 332번지 녹동마을에 살던 김○○(남, 28년생)이 5월 23일 06시 마을 앞에서 흉부 관통상을 입어 좌상박 신경을 다치자 마을 이장이 방송으로 구조를 요청했다. 이 방송을 들은 계엄군이 집으로 왔고 손수레에 실려 여단 본부로 이동하여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하얀 천에 빨간 페인트로 적십자 깃발을 만들어 손수레에 꽂은 뒤 이동했다.<sup>57</sup>

월남동 주남마을 월남정미소(임○○ 운영)에 살던 임○○(남, 63년생, 금호고 1년)이 5월 23일 07시 자택 대문 앞에서 왼쪽 어깨 관통상을 당한 뒤 계엄군이 주둔하던 산으로 옮겨져 이송되었다. 이후 월남정미소는 62대대의 본부로 쓰였다.

5월 22일 저녁 소태동 바리케이드에서 공수부대의 검문을 받고 인근 인가로 몰려 들어간 김○○은 밤을 새운 뒤 다음 날 새벽 목욕탕에 불을 때기 위해 온 노인이 귀에 총을 맞는 모습을 목격했다.<sup>58</sup> 광주시 동구청 지원동 「인명피해부」에는 “무등목욕탕 보일러공, 남, 40세, 목찰상, 5월 24일 09시 동네 앞”이라고 기재되어 있다.<sup>59</sup> 이 자료의 5월 24일은 5월 23일의 오기로 판단되며, 피격 시간은 07시경으로 추정된다.

## 2) 마이크로버스 피격 직전 현장 상황

### 수색

5월 23일 아침 62대대 5지역대장 박동주 소령은 아침 식사를 마친 5지역대 6중대 18

56 「5·18 부상자 추가신고서」, 보상심의자료 1923번 433쪽.

5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6.), 2~3쪽.(102~111, 335~336쪽); 「강○○ 진술조서」(1995. 12. 31.), 6쪽.(102~111, 324쪽)

58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8. 11.), 7쪽.

59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1권, 183쪽.

지대(도〇〇 중위가 지휘) 대원들에게 보리밭 지역을 수색하게 했다고 한다. 도〇〇 중위는 수색의 원인이 TNT 때문이었다고 했다.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장 도〇〇 중위의 진술에 따르면, 수색조는 5월 23일 아침 도로 건너편 보리밭이 아니라 TNT가 보관되어 있던 채석장 부근을 정찰했고 이곳에서 경계 활동을 하면서 민가에서 식사를 마쳤다. 같은 18지대원 김〇〇 하사도 채석장 집에서 아침을 먹었다고 기억했다. 같은 18지대원 문〇〇 중사 역시 공사장 다이너마이트에 대해 집 할머니한테 정확히 들었다고 했다.<sup>60</sup>

### 매복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와 5중대원(13지대) 일부가 참여해 TNT 수색 작전을 벌였던 채석장은 4지역대의 작전 지역이므로 4지역대원들도 인근에 매복하고 있었다. 62대대 4지역대 2중대 4지대 통신사수 진〇〇 중사는 지대별로 매복하였는데 자신의 지대는 도로 옆에서 매복하였다고 하며, 같은 지역대 3중대 9지대 김〇〇 일병은 채석장 건너편 보리밭과 논두렁 사이에서 매복하고 있었다고 했다. 1중대장 정수남 대위는 자신들의 주둔지가 부영산 정상 부근이었는데 광주천에 얼굴이라도 씻으려고 내려왔다가 버스에 충격을 가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1중대장과 함께 예하 2지대원들이 버스 피격 현장 부근에 있었다. 3중대장 최상필 대위는 자신들의 매복 지점이 마이크로버스 피격 지점과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했다. 한편 62대대 6지역대 9중대 25지대 김〇〇 일병은 도로 옆 딸기밭에서 매복을 썼다.<sup>61</sup>

60 5·18조사위, 「김〇〇 진술녹취」(2021. 10. 27.), 24~25쪽; 「문〇〇 진술녹취」(2021. 2. 3.), 31~32쪽; 「나〇〇 진술녹취」(2022. 7. 12.), 3쪽;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도〇〇 면담보고」(2006. 10. 9.), 4쪽.(104-209, 236쪽); 「김〇〇 면담보고」(2007. 5. 30.), 2쪽.(104-211, 513쪽); 「박〇〇 면담보고」(2006. 12. 12.), 4쪽.(104-210, 132쪽)

61 5·18조사위, 「김〇〇 진술녹취」(2021. 10. 26.), 28쪽; 「정수남 진술조서」(2023. 3. 23.), 5쪽; 「최〇〇 김〇〇 진술녹취」(2021. 4. 30.), 44~45쪽.; 「정수남 진술녹취」(2021. 4. 15.), 45쪽;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진〇〇 면담보고」(2006. 9. 14.), 2쪽.(104-110, 183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상필 진술조서」(1995. 3. 28.), 20쪽.(102-24, 449쪽); 「김〇〇 진술조서」(1995. 12. 30.), 4쪽.(102-111, 90쪽)

### 마이크로버스

베이지색 바탕에 빨간 페인트로 “전두환 처단하라”는 글씨가 쓰인 마이크로버스 1대가 도청을 출발했다. 운전자는 벽돌공장(세기벽돌) 운전원이었던 김윤수(53년생)였다. 그는 희생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같은 화순 출신으로 일신방직 노동자였던 고영자와 김춘례는 5월 18일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김춘례 집에서 함께 지냈는데, 5월 23일 김춘례의 할아버지 제사를 계기로 함께 화순으로 가기 위해 도청에서 화순으로 가는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다. 춘태여자상업고 1년에 재학 중이었던 마이크로버스 생존자 홍○○은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으로 박현숙(신의여자실업고 3년)을 기억했다.<sup>62</sup>

09시30분경 마이크로버스가 계엄군의 바리케이드가 길을 막고 있던 소태마을 앞 3거리에서 멈췄다.<sup>63</sup> 김○○은 이발관 앞에 정차한 마이크로버스에서 남성만 9명을 보았는데 탑승자들은 창밖에서 총이 보이게 두었다고 한다. 그는 삼거리 뒷산 관측소(OP)에 군인들이 보고 있으니 더 이상 가지 말라고 했지만 버스는 이를 무시하고 출발했다. 기○○는 번호판이 없는 소형 버스가 지원상회 앞에 있는 바리케이드에 와서 이를 치워달라고 했다고 한다.

### 3) 발포와 민간인 피해

마이크로버스 소태동 도착과 무전 연락, 바리케이드 통과

마이크로버스가 소태마을 앞 바리케이드에 도착한 시간은 09시30분경이었다. 버스가 바리케이드에 도착한 모습은 당시 현대교통 뒷산 정상에 있던 61대대 관측 초소의 군인들이 목격했다. 61대대 작전장교 최이조 대위는 이날 오전 광주 쪽에 가장 가깝게 배치되

62 『중앙일보』(1988. 5. 17.); 5·18조사위, 「송○○ 면담보고」(2021. 2. 16.); 「곽○○ 면담보고」(2021. 3. 10.); 보상심의 자료; 『광주민중항쟁 비망록』(1989), 232쪽, 274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홍○○ 진술조서」(1995. 12. 27.), 4~5쪽.(102-97, 476~477쪽)

63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 4. 19.), 2쪽; 「기○○ 진술조서」(2023. 1. 16.), 6쪽.

었던 3지역대로부터 “버스가 지나려 하는데 통과시킬까요?”라는 내용의 무전을 받은 뒤 대대장에게 이를 보고하자 대대장은 이에 “그냥 보내”라고 명령했고 이에 따라 버스를 통과시키라는 무전을 보내 버스가 바리케이드를 통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실제 피격 사건 현장을 목격한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 박○○ 중사는 버스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다고 했다.<sup>64</sup> 62대대 4지역대 3중대 9지대 김○○ 일병은 매복을 서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마이크로버스를 목격했다. 마이크로버스 생존자 홍○○은 바리케이드를 지나자 계엄군인 한 명이 차를 세우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었다고 했다. 당시 채석장 집 도로 앞에서 매복하고 있던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원 문○○ 중사는 같은 부대원 한 명이 옷통을 벗고 흰 속옷을 흔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했다고 진술했다.<sup>65</sup>

### 정차

매복한 계엄군의 수신호를 목격한 버스 안의 무장 시위대 운전자와 무전 담당자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62대대 5지역대 5중대 13지대 김○○ 하사가 자신들이 매복한 곳으로 서서히 올라오던 버스를 목격했다. 총소리 직후 차가 멈췄는데 자신이 보기에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멈춰서야 할 것인지 갈등상태인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마이크로버스 생존자 홍○○은 차가 멈추자 산 쪽에서 핸드미크로 “무기를 갖고 있으면 머리위로 손을 올려라”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64 「박○○ 면담보고」(2006. 12. 12.), 4~5쪽.(104~210, 132~133쪽)

65 보안사, 「광주사태 관련자 신원사항(주요 인물 57명)」, 112쪽.(201~66); 5·18조사위, 「최이조 진술조서」(2023. 7. 13.), 28쪽;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5. 27.), 25쪽; 5·18조사위, 「문○○ 진술녹취」(2021. 2. 3.), 33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홍○○ 진술조서」(1995. 12. 27.), 6쪽.(102~97, 478쪽).

### 계엄군의 첫 발포와 무장 시위대의 대응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총을 가진 무장 시위대는 총을 머리 위로 올렸고 여성들은 손과 손수건을 흔들었다.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산 쪽에서 총알이 날아와 운전하던 시위 대원이 가장 먼저 쓰러졌다. 이를 본 다른 시위 대원이 총을 쏘았지만 더 많은 총격만 당할 뿐이었다.<sup>66</sup>

### 양쪽 매복 계엄군의 대량 사격

마이크로버스는 M16소총으로 무장하고 매복한 제11공수여단 62대대 4, 5지역대 계엄군들에게 15번 국도 위에서 노출된 상태였다. 소태마을 입구의 바리케이드를 지나 화순을 향하는 마이크로버스를 본 채석장 매복 수색부대가 집중 사격을 먼저 가했다.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장 도○○ 중위는 마이크로버스에서 먼저 사격을 가했으므로 집중 사격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sup>67</sup> 당시 주민 김○○의 비닐하우스에 있던 5지역대장(박동주 소령)의 무전 발포 명령에 이은 사격이었다.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 나○○ 하사는 다이너마이트 수색 후 쉬던 중 총소리를 들은 뒤 버스가 다가와 사격이 시작되었다고 했다.<sup>68</sup>

당시 총격에는 62대대 매복지역이었던 4지역대, 수색하던 5지역대 외에 바리케이드 담당이었던 61대대 2지역대도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진술이 있다. 61대대 1지역대장 정태덕 소령은 61대대장 안부웅 중령이 2지역대장을 질책했다고 한다.<sup>69</sup>

계엄군이 버스를 향해 총을 쏘는 모습은 어머니와 함께 화순에서 광주를 향하던 방위병 나○○도 목격했다. 도로에 서 있던 버스는 양쪽 산에 매복한 계엄군으로부터 날아오

6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홍○○ 진술조서」(1995. 12. 27.), 6~7쪽.(102-97, 478~479쪽)

67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도○○ 면담보고」(2006. 10. 9.), 4쪽.(104-209, 236쪽)

68 5·18조사위, 「나○○ 진술녹취」(2022. 7. 12.), 3~4쪽.

6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정태덕 진술조서」(1994. 12. 20.), 27쪽.(102-24, 178쪽)



는 총을 맞고 있었다.<sup>70</sup>

### 마이크로버스 탑승자 피격 상황

마이크로버스 생존자 홍○○은 당시 버스 내 상황을 지옥에 비유했다,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있던 남자는 배에 총을 맞고 내장이 터진 채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총을 맞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저도 온몸에 피가 흥건히 흘렀지만 아무런 감각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총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끝에 한참 만에 총격은 멈추었습니다.<sup>71</sup>

제일 뒤에 있던 생존자 홍○○은 운전자가 가장 먼저 총격당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다. 이어 버스의 지휘자는 모두 차 바닥에 엎드리라고 했지만, 총알과 파편이 바닥을 맞고 튀어 엎드린 탑승자들의 몸을 파고들었다고 했다.

가만히 보니까 총알이 우리는 제일 뒤에 있으니까 높은 거야. 높으니까 총알이 내가 보니까. 기사가 총 맞아 갖고 쓰러지니까 가만히 보니까 총알이 제일 앞으로는 많이 날라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무전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차 바닥으로 다 숨으라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숨으라고 하더라고. 계속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숙아 뒤에 총알이 앞뒤로 많이 온 것 같으니까 우리 가운데로 가자” 그러니까 얘가 또 안 간대 자기는. 안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는 나 혼자 갔지. 안 간다고 한 거야. 그래갖고 나는 그냥 나 혼자 갔어. 그래갖고 밀로 의자 밀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탄 쪽은 두 사람이 앉는 긴 의자야. 이쪽은 다 혼자 앉은 것이고. 지금도 기억해. 그래 가지고 이제 의자가 조금 흔들흔들했어. 앉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흔들니까 의자가 얼마나. 그러니까 했잖어. 그러니까 그 의자가 툭 빠져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의자를 이렇게 앉으면 폭신하잖아 그것을 내 등에다 얹고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그래갖고 나는 발가락에도 발등에도 파편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저기 하면서. 총소리는 그 바닥을 튀면서 또 한 번 총이 날아서 총 바닥을 맞고 그 파편이 터지면서 튀면서 콩 튀는 것 저리 말도 못 해. 튀발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sup>72</sup>

생존자 홍○○은 엉덩이가 없어졌다고 우는 박현숙과 배가 아프다며 울던 사람을 잇을

<sup>70</sup> 5·18조사위, 「나○○ 진술녹취」(2021. 5. 13), 92쪽.

<sup>71</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홍○○ 진술조서」(1995. 12. 27.), 6~7쪽.(102~97, 478~479쪽)

<sup>72</sup> 5·18조사위, 「홍○○ 진술녹취」(2021. 4. 30.), 3쪽.

수가 없다고 했다.<sup>73</sup>

#### 목격자

23일 오전 마이크로버스가 총격당하는 모습은 광주천 등을 통해 화순과 광주를 오가던 김○○, 나○○(58년생)와 유○○, 김○○, 김○○, 곽○○, 박○○, 김○○ 등 지원동 주민들에게도 목격되었다.

지원동 녹동마을에서 화원을 운영하던 김○○는 문을 연 뒤 무전병과 함께 온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이크로버스의 피격 장면을 목격하였다. 계엄군 8~9명이 채석장 옆 해태상 부근에서 엎드려 쏘 자세로 발포했다. 피격 시간에 대해 그는 1995년 조사 당시 아침 8시30분이라고 진술했다.<sup>74</sup> 피격 현장을 직접 목격한 김○○는 무전으로 이루어진 사격 개시 명령에 따라 2~3분간 사격이 집중되었다고 했다.<sup>75</sup>

마이크로버스 피격 당시 지원동 광주천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려던 유○○도 이 모습을 모두 목격했으며, 자신도 계엄군의 총격에 어깨 관통상을 당했다. 그는 총격당한 마이크로버스에서 두 사람이 도망치는 모습도 목격했다.<sup>76</sup> 직후 자신도 피격을 당해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10시15분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위 유○○ 외에도 동구 학동에 살던 강○○(35년생)이 마이크로버스 피격 현장 부근에 있다가 총격당했다. 09시경 가정주부 강○○(35년생)은 제31사단 소속 단기 사병인 아들과 적십자병원에서 헌혈 활동을 하는 아들 등 두 아들과 딸을 화순에 있는 외가집으로 피란시키기로 결정하고 집을 나섰다. 딸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당시 화순 방면으로 피란

73 5·18조사위, 「홍○○ 진술녹취」(2021. 4. 30.), 3~4쪽.

74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김○○ 조사보고」(2006. 11. 30.), 2~3쪽.(104-210, 200~201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 12. 30.), 2쪽.(102-111, 88쪽)

7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 12. 30.), 4~5쪽.(102-111, 90~91쪽)

76 「유○○ 면담보고」(2007. 4. 11.), 1쪽.(104-211, 389쪽)

을 가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09시30분경 화순을 향하던 강○○ 일가족이 소태동을 지나다가 마이크로버스 피격 현장을 목격했다. 두 아들은 광주천 부근으로 피신하고 강○○은 보리밭으로 뛰어내려 피했으나 딸 서○○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 자전거의 모습은 61대대 1지역대 3중대 7지대 우○○ 일병과 62대대 5지역대 5중대 15지대 최○○ 일병이 목격했다. 우○○ 일병은 마이크로버스 피격 중에 멀리 자전거를 탄 사람을 목격했는데, 그가 충을 맞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당시 현장 부근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은 강○○의 딸 서○○이 유일했다. 이때 딸 걱정에 고개를 들던 강○○이 총격당했다.<sup>77</sup>

5월 22일 너릿재 트럭 소각 장면을 목격한 신○○, 신○○ 형제의 어머니 김○○도 5월 23일 화순으로 가면서 버스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나○○(58년생)는 당시 단기 사병으로 근무 중 화순 집에서 광주로 출근했는데, 5월 23일 어머니와 함께 화순에서 광주 방면으로 녹동교를 지나면서 버스가 피격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광주천변을 따라 녹동교를 넘어 도로와 하천이 맞붙은 지점(소태동 190번지 부근) 논두렁 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sup>78</sup>

#### 4) 버스 안 수색

버스에 집중 사격을 가하던 계엄군은 얼마 후 공격을 중단하고 버스를 수색하여 3명의 생존자를 발견했다. 당시 마이크로버스를 공격한 계엄군은 주로 제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와 5지역대 6중대 18지대였고 이들은 총격 직후 버스를 수색했다. 이어 5지역대 5중대 15지대가 2차 수색을 진행했다.

<sup>77</sup> 5·18조사위, 「우○○ 진술녹취」(2021. 12. 15.), 18쪽; 강○○ 증언, 「5·18피해자 구술 자료 조사」, 채록번호 1-251, 5·18기념재단;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강○○ 진술조서」(1995. 12. 31.), 4~5쪽, (102~111, 322~323쪽)

<sup>78</sup> 5·18조사위, 「김○○ 면담보고」(2021. 7. 22.), 7쪽; 「나○○ 진술녹취」(2021. 5. 13.), 63쪽.

용산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현장을 목격한 내지마을 주민 김○○는 멈춘 버스를 향해 포복으로 접근한 10여 명의 군인들이 엎드리거나 쪼그린 상태로 다시 버스를 향해 10여 발의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버스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2명이 버스에 올라갔다고 했다.<sup>79</sup>

### 1차 수색

마이크로버스에 사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현장 지휘관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장 도○○ 중위는 대원들에게 사상자와 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 안을 수색하도록 했다. 부대원들은 먼저 3~4명의 부상자를 실어냈으며 버스 안에 있던 사람 수에 대해 16~18명 정도로 파악했다고 한다. 생존자 홍○○은 마이크로버스 피격 직후 군인 4~5명이 버스에 올라타 먼저 피해자의 수를 18명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사건 당시 5지역대장 박동규 소령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62대대 4지역대장 최규진 소령은 총격당한 버스 현장을 조사했다고 한다.<sup>80</sup>

마이크로버스가 계엄군에게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마을 주민 박○○, 유○○, 김○○ 등도 총격을 가한 군인들이 버스를 수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용산마을 찬물통골 마을에 살던 박○○는 5월 23일 집 밖에서 나는 엄청난 총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버스 피격 장면을 목격했다. 피격 현장은 자택에서 300미터 떨어져 있었고 사이에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버스가 총격받고 멈추자 3~4명의 군인들이 버스로 올라가 총을 쏘았다. 이 피격 버스에 군인들이 올라가 수색한 뒤 깨진 차창 밖으로 시신들이 던져졌다. 주민 김○○는 마이크로버스에 포복으로 다가간 2명의 군

79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 3. 17.), 4쪽.

8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홍○○ 진술조서」(1995. 12. 27.), 7쪽.(102-97, 479쪽); 「최규진 진술조서」(1995. 5. 31.), 15쪽.(102-21, 883쪽)

인들이 탑승자들의 시신을 버스에서 끌어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총격 후 버스에 올라간 2명의 군인이 시신의 다리를 붙잡고 버스에서 끌어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면 머리 부분을 들고 내렸을 것인데, 다리를 잡고 끌었던 것으로 보아 죽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62대대 5지역대 5중대 13지대 김○○ 하사에 따르면, 당시 버스에 올라가 시신을 끌어 내렸던 군인은 같은 지대 한○○ 하사 외 1명이었다.<sup>81</sup>

## 2차 수색

1차 수색을 통해 부상 생존자 1명을 끌어 내린 뒤 다시 군인들이 올라와 생존자들을 버스에서 끌어 내렸다고 한다. 버스 생존 여학생은 위 최○○ 일병 등 두 번째 올라온 군인들에 의해 내려졌다.

잠시 후 군인들이 또 올라타더니 대장인 듯한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해봐, 산 사람은 꼬집어내'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랫군인이 산 사람을 하나 하나 확인을 하는데, 저는 땅바닥만 보고 가만히 있었는데, 무엇인가 차 밖으로 끌려 나가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 후 군인이 저의 다리를 걷어차는 바람에 너무 아파 비명을 지르자 군인들이 저를 차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sup>82</sup>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 나○○ 하사는 채석장 부근에서 사격을 가한 18지대원들이 집중 사격을 가한 뒤 보리밭을 포복으로 지나 버스에 다가갔고, 고참 병사들의 지시를 받아 열려 있는 버스 문으로 올라간 직후 “살려주세요”하는 여고생을 목격하고 기겁하여 뛰어내려왔다고 했다. 그는 다시 버스에 올라가 생존자를 내리게 한 뒤 압박붕대를 감고 진통제를 먹였고, 얼마 뒤 총격 상황을 상부에 보고한 뒤 18지대는 명령에 따라 새로운 지대(15지대)에게 현장을 인계하고 앞마을을 수색했다고 했다.

81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3. 4. 20.), 2, 4쪽; 「김○○ 진술조서」(2023. 3. 17.), 2, 4, 7쪽; 「김○○ 진술녹취」(2021. 10. 27.), 27, 58~59쪽.

8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홍○○ 진술조서」(1995. 12. 27.), 7쪽.(102-97, 479쪽)

도○○ 중위는 부상자 후송을 위해 헬기를 요청하려던 중 버스 안에서 “아저씨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 진술대로라면 부상자 채수길과 양민석은 생존 여고생보다 먼저 버스에서 내려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총격을 가했던 수색부대는 이후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홍○○은 먼저 버스에서 끌려 나온 두 명의 남성을 버스 밖에서 보았다. 아프다고 소리치며 군인들에게 살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다른 진술에서 생존자 홍○○은 1차로 올라온 군인 4~5명이 생존자를 데리고 내려간 뒤 다시 올라와 다른 생존자들을 찾아 끌고 내려갔고, 이때 자신도 살아있는 것이 발각되었다고 했다.

김○○ 소위의 명령으로 수색을 위해 버스로 다가가던 62대대 5지역대 5중대 15지대 최○○ 일병은 도로변에 나와 있는 2구의 시신을 목격했는데, 자세히 보니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참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했다.<sup>83</sup>

### 확인 사살

지원동 유○○은 계엄군의 버스 공격 모습 목격 후 버스에 올라간 군인이 확인 사살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이어 자신도 총격당했다고 했다. 피격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화원을 하던 김○○도 버스에 올라간 군인 몇 명이 총을 쏘는 소리를 들었다. 확인 사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찬물통골 박○○ 역시 총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버스가 멈춘 뒤 버스로 올라간 군인들이 총을 쏘았고 5분 뒤 버스 희생자들의 시신들이 창문을 통해 버스 밖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다.<sup>84</sup>

83 5·18조사위, 「나○○ 진술녹취」(2022. 7. 12.), 4~7쪽; 「정수남 진술조서」(2023. 3. 23.), 4~5쪽; 「최○○ 진술녹취5」(2021. 6. 24.), 33쪽;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도○○ 면담보고」(2006. 10. 9.), 4~5쪽,(104-209, 236~237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홍○○ 진술조서」(1995. 12. 27.), 7~8쪽,(102-97, 479~480쪽); 홍○○, 「국회 청문회 속기록」(1989. 1. 27.), 69쪽,(104-273)

84 5·18조사위, 「유○○ 진술조서」(2022. 12. 14.), 7~8쪽; 「김○○ 진술조서」(2023. 4. 5.), 3쪽; 「박○○ 진술조서」(2023. 4. 20.), 4쪽.

수색대를 보냈으며 버스에 사격 명령을 내렸던 62대대 5지역대장 박동주 소령이 가장 먼저 도○○ 중위로부터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6중대 도○○ 중위는 대원들이 차에 올라 총을 쏘았으며, 버스에 있던 16명 정도 중 3명이 살아있다고 보고했다. 제11공수여단 63대대 7지역대 3중대 7지대 나○○는 마이크로버스에 총격을 가한 뒤 부상자들을 싣고 여단본부로 가는 정○○ 중사로부터 확인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여고생이 확인 사실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조그마한 체구가 의자 밑에 들어가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제11공수여단 61대대 2지역대 6중대 16지대장 오○○ 중위는 마이크로버스 희생자들에 대해 확인 사실이 자행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62대대 6지역대 9중대 25지대 김○○ 일병도 계엄군 측의 확인 사실 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소속 부대로 보아 그가 직접 목격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5월 24일 제11공수여단과 교체되어 주남마을에 주둔을 시작했던 제20사단 61연대 1대대 3중대 화기 소대 이○○ 일병은 버스 안에 많은 탄피가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탄피들은 버스 안에서 탄피의 수만큼 총격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sup>85</sup>

#### 교대 매복조와 사건 후 시신 목격

61대대 1지역대 1중대 박○○ 일병은 1지역대장 정태덕 소령이 지휘봉을 휘두르며 “아래에서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너희는 이렇게 한가하냐”면서 매복조를 교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교대할 부대는 같은 지역대원들이 아니었다고 했다. 10여 명이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5명씩 왼쪽과 오른쪽을 경계했는데 자신은 오른쪽을 경계하고 가던 중 여성 2명의 시신을 목격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상이 없었고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 누군가 덮은 들풀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매복지로 이동하면서 양쪽의 유리창이 없는 마이크

85 5·18조사위, 「나○○ 진술녹취」(2021. 10. 14.), 68~70쪽, 73쪽; 「오○○ 진술조서」(2023. 2. 3.), 16쪽; 「김○○ 진술 녹취」(2021. 10. 26.), 27쪽;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 면담보고」(2007. 5. 25.), 3쪽.(104-211, 455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박동주 진술조서」(1995. 5. 29.), 15쪽.(102-21, 736쪽)



로버스 안에서 6~7구의 시신을 볼 수 있었다. 버스는 화순을 향해 왼쪽으로 비스듬히 놓여있었고, 오른쪽 앞 타이어가 터져 오른쪽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차 바닥은 희생자들의 피로 흥건했고 이 피가 오른쪽 승강 계단으로 흘러내려 아스팔트 도로 위로 흐르고 있었다. 버스 근처로 시신 2구가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길 건너편으로 2개의 옷 실루엣이 떨어져 보였다. 당시 매복을 교대한 시간은 아침 10시경이었다. 매복을 시작하자 곧 10여 명의 다른 부대원들이 와서 버스 안의 시신을 꺼내는 작업을 했다. 다음 날(5월 24일) 송정리 비행장으로 철수하기 전까지 매복을 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매복하고 있는 사이에 매복지역에 또 다른 버스가 온다거나 총격이 벌어진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sup>86</sup>

버스 밖으로 3~4구의 시신을 목격한 계엄군이 더 있었다. 위 박○○ 일병과 같은 61대대의 2지역대 5중대 15지대 손○○ 일병은 5월 23일 오후 61대대 매복지 중 화순 방향으로 끝 부근에 있다가 지역대장의 명령을 받고 버스 근처로 가다가 버스 밖에 내려져 있던 3~4구의 시신을 목격했다. 손○○은 버스 안에 시신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했지만 끄적해서 더 살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sup>87</sup>

##### 5) 생존 부상자 3인 여단 본부 후송

###### 피격 현장에 온 민간 의료 봉사원

시위대 측 의료 봉사원들이 마이크로버스 생존 여학생을 치료하기 위해 왔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발관 김○○과 아내 최○○은 5월 23일 오전 마이크로버스 총상자 치료나 시신 수습을 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4명의 의료 봉사원을 목격했다. 하얀 바탕에 파란 글

<sup>86</sup> 5·18조사위, 「박○○ 면담보고」(2021. 12. 21.), 2~3쪽.

<sup>87</sup> 5·18조사위, 「손○○ 진술녹취」(2022. 7. 21.), 58~59쪽, 62~63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제원 진술조사서」(1994. 12. 22.), 26~29쪽.(102-15, 262~265쪽); 「곽만수 진술조사서」(1995. 6. 2.), 8쪽.(102-22, 97쪽)

씨로 동구보건소라고 쓰인 승용차에서 내린 이들은 간이식당을 하던 최○○이 끓인 라면을 먹고 여성 2인은 피격 현장 방면으로 갔으며, 남성 2인은 소태동3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5월 23일 이외에 다른 의료 봉사원은 더 이상 없었다. 한편 의료 봉사원 김○○는 계엄군의 부탁을 받은 마을 통장과 함께 가서 등 뒤에 총을 겨눈 계엄군과 함께 홍○○ 등 부상 생존자들에게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목격했다고 한다.<sup>88</sup>

#### 경운기와 손수레로 여단 본부 이송

계엄군의 경우 3인의 생존 사실을 가장 먼저 보고를 받은 사람은 수색부대 지휘관이었던 5지역대장 박동주 소령이었다. 그는 먼저 62대대장 이제원 중령에게 보고를 했다. 대대장은 생존자들을 주남마을 안쪽 깊숙이 주둔하고 있던 여단 본부로 후송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박동주 소령은 마이크로버스의 시신들을 차에서 내려놓고 생존자를 즉시 여단 본부로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마이크로버스 피격 사건의 후속 조치를 지휘한 장교였던 4지역대장 최규진 소령은 수색 과정에서 3인의 생존자들을 직접 목격했다. 최 소령은 자신이 대대장으로부터 생존자의 후송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62대대장 이제원 중령은 최규진 4지역대장으로부터 “11명이 죽고 남자 1명 중상, 여자 1명 손에 총상” 보고를 받고 생존자 후송을 위해 헬기를 요청했고 생존자들은 62대대 군수장교 박형락 대위에 의해 여단 본부로 이송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62대대 군수장교 박형락 대위는 자신이 근무하던 곳인 헬기장 부근에서 생존자들이 경운기에 실려 오는 모습을 보았을 뿐, 자신이 신고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 헬기장에 있다가 62대대장의 연락을 받고 주남마을 입구 월남정미소에 있는 대대본부로 내려가던 군수장교 박형락 대위는 부상생

88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 4. 19.), 2~3쪽; 「김○○ 진술녹취」(2021. 10. 27.), 33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 12. 29.), 8~9쪽.(102-111, 70~71쪽); 「홍○○ 진술조서」(1995. 12. 27.), 8쪽.(102-97, 480쪽); 「피해자 홍○○에 대한 전화 문답내용 보고」(1995. 12. 31.), 2쪽.(102-100, 327~329쪽).

존자를 태운 경운기를 목격하고 일행을 인솔하여 여단 본부로 향했다. 목장까지 갔으나 길이 좁아져 경운기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자 부상자들을 손수레로 옮겼다. 걸을 수 있었던 여학생은 손수레 옆에서 따라 올라갔다고 한다. 부상 생존자들이 경운기에서 손수레로 옮겨 탄 사실을 홍○○도 진술했다. 07시경 충격당한 아들 임○○을 후송하기 위해 여단 본부 부근에 있었던 월남정미소 사장 임○○가 아들이 헬기로 후송된 직후 계엄군이 끌고 오는 손수레와 그 옆에 따라오는 여학생을 보았다. 손수레에는 총상을 입은 남성 2명이 엇갈려 누워있었다고 했다.<sup>89</sup>

#### 여단 본부에 도착한 부상자들

오른손을 다친 여학생은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뒤 손수레에 있던 2명과 분리되어 1명의 계엄군 감시 아래 또 다른 부상자인 한 중년 여성과 함께 있었다. 감시자는 백운동에 살았던 62대대 4지역대 2중대 5지대 김○○ 하사였고, 그는 여학생이 주월동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 하사와 생존자가 함께 있던 곳은 헬기장 바로 아래에 있는 논둑이었다고 했다. 얼마 뒤 여단 본부에서 장교 2명이 와서 여학생만 데리고 갔다. 제11공수여단 여단 본부 위생병이었던 김○○ 일병은 자신이 여고생의 손에 압박붕대를 해줬다고 기억했다. 62대대 6지역대 9중대 26지대 통신병 경○○ 일병도 생존자들이 여단 본부로 손수레에 실려 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점심 식사 전이었다고 했다. 손수레의 부상자들과 여학생, 중년 여성이 함께 있다가 잠시 뒤 두 사람은 손수레 부상자와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다.<sup>90</sup>

8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박동주 진술조서」(1995. 5. 29.), 15쪽.(102-21, 736쪽); 「최규진 진술조서」(1995. 5. 31.), 15쪽.(102-21, 883쪽); 「이제원 진술조서」(1994. 12. 22.), 29쪽.(102-15, 265쪽); 「이제원 진술조서」(1995. 6. 26.), 17쪽.(102-17, 698쪽); 「박형락 진술조서」(1995. 3. 21.), 15쪽.(102-24, 387쪽); 「박형락 진술조서」(1996. 1. 9.), 3쪽.(102-105, 228쪽); 「홍○○ 진술조서」(1995. 12. 27.), 9쪽.(102-97, 481쪽); 「임○○ 진술조서」(1996. 1. 8.), 4쪽.(102-111, 109쪽)

90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7. 21.), 15쪽; 「김○○ 진술녹취」(2021. 4. 21.), 6쪽; 「김○○ 진술조서」(2023.

## 6) 홍○○ 후송, 채수길, 양민석 사살

생존 여학생을 면담 조사했던 보안반장의 보고 자료는 마이크로버스 탑승자 18명 중 생존자 3명 중 남자 2명을 국군광주통합병원에 후송하고 여성 1명을 보안반에 인계했다고 했다.

상기 버스에는 남자 15명, 여자 3명 중 3명 생포(남2, 여) 외 전원 사살되었으며, 남자 2명은 중상으로 통합병원에 후송되었으며, 홍○○은 11공수 정보참모 객만수로부터 보안반에 인계<sup>91</sup>

위 문서는 홍○○을 면담한 뒤 작성된 것인데, 중상의 남성 2명이 국군광주통합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실제 위 보고와 달리 2명의 남자는 주남 마을에 있던 여단 본부로 이송되었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사살당했으므로, 이는 조사 당시 홍○○이나 보안반장이 당시 남성 부상자 2명이 생존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송정리 이동을 준비하던 제11공수여단 작전보좌관 김옥겸 소령은 상무대에 생존자 홍○○을 후송할 헬기를 요청했다고 했다.<sup>92</sup>

제11공수여단 본부로 이송된 채수길, 양민석 두 생존자는 또 다른 생존자 홍○○과 달리 응급조치를 받지도 못했고 치료를 위해 후송되지도 않았다. 제11공수여단 위생병 김○○은 의무대에서 강○○, 홍○○ 두 사람만 치료했다고 기억했다. 결국 위 진술에 따르면, 홍○○은 먼저 헬기로 후송된 반면 남은 두 명은 총살당했던 것이다.

생존 여학생이 헬기로 상무대에 이송되다

작전보좌관 김옥겸 소령은 12시경 생존자 홍○○을 헬기로 후송했으며, 생존 부상자 2

3. 16), 5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경○○ 진술조서』(1995. 4. 17.), 10~13쪽.(102~20, 375쪽)

91 보안사, 『광주사태 관련자 신원사항(주요 인물 57명)』, 112~113쪽.(201~66)

92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김옥겸 면담보고』(2006. 11. 29.), 5쪽.(104~210, 180쪽)

명은 여고생이 헬기로 후송된 뒤 자신에게 데리고 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 헬기에는 정보참모 곽만수 소령, 참모장 양대인 중령이 함께 타고 있었다.<sup>93</sup> 곽만수 소령은 홍○○을 헬기편으로 전교사로 데리고 간 뒤 바로 복귀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 생존 여학생과 함께 오전 11시경 헬기로 후송되었다는 계엄군이 더 있었다. 제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1중대 2지대 김○○ 하사는 부상당한 채 주남마을로 도보 이동한 뒤 총상을 입은 민간인 2명이 손수레에 실려 오고 그 옆에 여고생 1명이 걸어오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자신은 이 여고생과 함께 헬기를 타고 국군광주통합병원에 후송되었다고 진술했다.<sup>94</sup> 이로 보아 김○○ 하사가 헬기로 후송된 때는 5월 23일 11시였고, 이 헬기에는 생존 여고생 홍○○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국군광주통합병원은 김○○ 하사의 입원 시간을 11시로 기록했다. 한편, 생존 여학생 홍○○은 채수길과 양민석을 총살하는 소리를 듣고 저녁 무렵에 헬기를 탔다고 진술한 바 있다.<sup>95</sup>

#### 생존 부상자 2명 사살

생존 부상자 3명이 여단 본부에 도착한 뒤 62대대 4지역대 1중대 1지대 정○○ 중사, 한○○ 일병, 같은 지역대 2중대 5지대 김○○ 하사 등이 손수레에 실려 있던 부상자들의 소지품을 뒤져봤다고 한다. 한 사람에게서 실탄과 신분증이 나왔는데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김○○ 하사의 사촌 채수길이었다.<sup>96</sup>

9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옥겸 진술조서」(1995. 6. 16.), 8~10쪽.(102-22, 521쪽); 「곽만수 진술조서」(1995. 6. 2.), 10쪽.(102-22, 99쪽); 5·18조사위, 「양대인 진술조서」(2022. 12. 21.), 28쪽. 그런데 참모장 양대인 중령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마이크로버스 피격 당시 상무대에 있었던 것으로 진술했다.[출처,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양대인 진술조서」(1995. 12. 31.), 7~8쪽.(102-100, 231~232쪽)]

94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2. 9. 13.), 35쪽. 참고인은 이날을 5월 22일 11:00로 기억했으나 목격한 정황으로 보아 5월 23일을 착오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인의 병상일지에는 “응급처치 후 계속 대기 근무하다 23일 오전 11시경 당 병원에 후송”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9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박형락, 김옥겸, 홍○○ 진술조서」(1996. 1. 9.), 17쪽.(102-105, 242쪽)

96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7. 21.), 6, 15쪽.

부상자 3인의 후송을 요청했다는 62대대 군수장교 박형락 대위의 진술은 여단 본부가 부상자들에 대해 치료하더라도 살아남기 힘든 상태로 인식했다는 취지였다.<sup>97</sup> 심지어 작전보좌관 김옥겸 소령은 매장까지 명령한 사실은 없지만, 실탄이 나오는 “적”이므로 살려 둘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저가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데리고 온 장교에게 “야 이 새끼야 지금 데리고 오면 어떡하느냐, 알아서 하라”고 하였으며, 그들이 곧바로 다시 데리고 내려갔기 때문에……저가 데리고 온 장교에게 “야 이 새끼야, 호주머니에서 실탄도 나오는 놈들을 지금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처치하고 물어주라”고 명령한 사실은 없습니다<sup>98</sup>

여단 본부에서 손수레에 실려 온 부상자들을 본 작전보좌관 김옥겸 소령은 알아서 처리하라며 총살하고 매장할 것을 지시했지만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sup>99</sup> 김옥겸 소령이 핀잔을 주자 병사들이 사살했다는 증언은 제11공수여단 정보참모 곽만수 소령의 진술, 4지역대장 최규진 소령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sup>100</sup>

4지역대장 최규진 소령은 생존 부상자 3명을 여단 본부로 이송하면서 1중대 1지대 소속 정○○ 중사가 따라가는 모습을 기억했으며, 이후 6월 초 가매장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광주로 다녀온 정○○ 중사로부터 사살할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sup>101</sup> 62대대 4지역대 2중대 5지대 김○○ 하사에 따르면, 당시 손수레는 정○○ 중사가 끌었고 그 뒤를 한○○ 일병이 따라갔다고 한다.<sup>102</sup> 부상 생존자들을 헬기장까지 후송했던 4지역대 1중대 1지대 소속 한○○ 일병이 두 사람을 사살한 사실과 매장한 동료들을 알고 있었다.

9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박형락 진술조서」(1996. 1. 9.), 5~6쪽.(102-105, 230~231쪽)

9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옥겸 진술조서」(1995. 6. 16.), 9~11쪽.(102-22, 522~524쪽)

9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옥겸 진술조서」(1995. 6. 16.), 14쪽.(102-22, 527쪽)

10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곽만수 진술조서」(1995. 6. 2.), 9쪽.(102-22, 98쪽); 「최규진 진술조서」(1995. 5. 31.), 18쪽.(102-21, 886쪽).

10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규진 진술조서」(1995. 5. 31.), 18쪽.(102-21, 886쪽)

102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4. 21.), 11쪽.

5월 23일 오후 홍○○과 부상자를 후송한 기억이 있다. 정○○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김○○의 사촌임을 확인하였다. 정○○이 후송을 맡았으며 부상자의 상태는 거의 사망 상태였다. 김○○이 나서서 안락사시키겠다고 했으며, 그날 저녁 술을 먹으러 나갔다.……부상자들을 처리한 시각은 석양이 떨어질 무렵이었다.……헬기장 부근에 매장하였다. 정○○과 김○○이 물어주었다.<sup>103</sup>

사살당한 채수길, 양민석의 시신을 매장할 때 다른 부대원들이 동원되었다는 진술이 있다. 제11공수여단 62대대 6지역대 9중대 26지대 박○○ 병장은 사살당한 2명의 시신 매장에 차출되었는데, 당시 구덩이를 판 대원들은 5~6명이었고, 26지대에서는 혼자 차출된 것으로 기억했다. 그는 시체의 주머니를 뒤져 신분증을 보고 영암 사람임을 알았다고 했는데, 희생자 중 채수길의 본적지가 영암군 덕진면이었다. 63대대 7지역대 3중대 7지대원 나○○ 역시 차출당한 사역병들이 매장했다고 진술했다.<sup>104</sup>

5·18 후 62대대장 등이 남자 부상자 2명을 사살한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직후 공식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신에 대한 발굴은 5월 말에 마을 주민의 신고로 1980년 6월 2일 이루어졌다. 6월 3일 검시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위 박○○ 병장 등이 희생자 채수길의 주머니에서 확인한 신분증은 함께 매장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7) 희생자 시신 처리

### 5월 23일 가매장

5월 23일 가매장 작업은 참모장의 지시에 따라 61대대 정보장교 장두혁 대위 주도로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여기에 62대대 일부가 지원했다고 한다.<sup>105</sup> 위 장두혁 대위는 버

<sup>103</sup>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한○○ 면담보고」(2006. 10. 24.), 5~7쪽.(104-209, 350~352쪽)

<sup>104</sup> 5·18조사위, 「박○○ 진술조사카드」(2022. 4. 15.); 「나○○ 진술녹취」(2021. 10. 14.), 65쪽.

<sup>105</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안부웅 진술조서」(1995. 2. 13.), 57쪽.(102-13, 788쪽); 「안부웅 진술조서」(1995. 7. 4.), 13쪽.(102-17, 854쪽)



스 안에 있던 시신 중 일부를 끌어 내렸다.<sup>106</sup>

여단 정보참모 곽만수 소령도 11시경 마이크로버스 희생자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사망한 사람들이 길옆에 내려진 상태였다고 했다. 61대대 정보장교 장두혁 대위는 버스에서 끌어 내린 시신들을 살피던 중 62대대 군수장교 박형락 대위가 도착했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디선가 총격이 날아와 그 자리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총격받은 장교는 제11공수여단 61대대 군수장교 이형재 대위였다고 하지만, 그는 총격으로 부상당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sup>107</sup>

#### 5월 24일 가매장

전날 중단되었던 가매장 작업이 계속되었다. 61대대 정보장교 장두혁 대위는 61대대 1지역대 3중대(중대장 김영익 대위)와 2지역대 4중대(중대장 최영준 대위)와 함께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5월 24일은 제11공수여단 전체가 송정리 비행장으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61대대 정보장교 장두혁 대위는 당시 버스 안에 7구가 있었다고 했다. 61대대 1지역대 3중대장 김영익 대위도 가매장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 그 역시 당시까지도 버스 안에 7명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62대대장 이제원 중령은 4지역대장 최규진 소령으로부터 희생자를 가매장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가매장한 시신은 모두 11구였다고 했다. 제11공수여단 정보참모 곽만수 소령은 사건 직후 총격 현장을 조사했는데, 희생된 민간인들의 시신이 길옆에 있었으며, 확실하지는 않으나 모두 11구로 기억한다고 했다.<sup>108</sup>

10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장두혁 진술조서」(1995. 4. 26.), 11~12쪽.(102-24, 625~626쪽)

10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곽만수 진술조서」(1995. 6. 2.), 8쪽.(102-22, 97쪽) 이 진술은 생존 부상자 3명 외에 버스에서 먼저 내려진 탑승자 4명은 사망한 상태였고, 버스 안의 7명은 아직 사망하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 4. 20.), 7쪽; 「박○○ 진술조서」(2023. 4. 20.), 5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장두혁 진술조서」(1995. 4. 26.), 11쪽.(102-24, 625쪽)

10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장두혁 진술조서」(1995. 4. 26.), 11쪽.(102-24, 625쪽); 「김영익 진술조서」(1995.

## 탑승자 수

이상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마이크로버스에 탑승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존 여학생 1명, 제11공수여단 본부 근처에서 사살당해 암매장당한 부상 생존자 2명, 5월 24일 가매장된 7명, 여기에 5월 23일 매복을 교대하던 61대대원이 목격한 버스 밖의 4명 등 버스 전체 탑승자 수는 14명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거나 직접 목격한 참고인들의 증언이 있다. 버스 생존자 홍○○은 1차 버스 수색에 올라온 군인들이 18명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기억했다.<sup>109</sup> 버스를 직접 공격했던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장 도○○ 중위는 “버스 안에 있던 사람 수가 16~18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했다. 피격 버스가 있던 곳 담당이었던 4지역대 3중대장 최상필 대위는 사건 후 목격한 버스 안에서 10명이 넘는 시신이 있었는데 15명 정도가 맞을 것이라고 했다. 시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피격 버스로 왔던 61대대 1지역대 3중대 7지대 우○○ 일병은 10~11명의 시신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sup>110</sup> 3명의 생존자들이 여단 본부를 향해 떠난 뒤에 도착했을 것이다.

## 8) 마이크로버스 피격 후 계속된 민간인 피해

마이크로버스가 피격을 당한 뒤에도 민간인들이 공격을 당하는 피해가 계속되었다. 광주시 보상심의자료만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김○○, 문○○, 강○○, 지○○, 심○○, 오○○, 김○○, 손○○, 최○○ 등 9명, 1995년 서울지검 조사 자료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김○○, 전○○, 선종철 등 3명,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인한 피해자는 박병

5. 4), 16~17쪽.(102-24, 695~696쪽); 「이제원 진술조서」(1994. 12. 22.), 27쪽.(102-15, 263쪽); 「곽만수 진술조서」(1995. 6. 2.), 8쪽.(102-22, 97쪽)

10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홍○○ 진술조서」(1995. 12. 27.), 7쪽.(102-97, 479쪽)

110 5·18조사위, 「우○○ 진술녹취」(2021. 12. 15.), 12쪽;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도○○ 면담보고」(2006. 10. 9.), 4쪽.(104-209, 236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상필 진술조서」(1995. 3. 28.), 18쪽.(102-24, 448쪽)

현, 2022년 진술조사로 확인된 피해자는 오○○, 이○○, 김○○ 등 3명이다.

5월 23일 10시50분에 월남동에 사는 농민 김○○이 논에서 일하던 중 부상당했다. 「광주시-5·18사태 상황 및 조치사항」에는 10시50분 지원동 농민 김인성(김○○의 오기)이 논에서 일하다 총상으로 부상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광주사태관련기초자료」에는 “11시50분 지원동 농민 김인성이 논에서 일하다 총탄으로 부상(시청상황일지)”<sup>111</sup>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화순 도곡면 원화리에 거주하던 문○○(남, 28년생)이 5월 23일 12시경 소태동 1번 버스 종점 부근을 걸어가던 중 대퇴부에 총격당했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응급 지혈 조치를 받고 광주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했다.<sup>112</sup>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2구에 살던 도로포장 노동자 김○○(남, 54년생)은 지원동 무등중학교 근처 도로에서 왼쪽 아래 배에 총상을 입었다. 그는 자신의 축사가 있던 용산동을 향하여 걷다가 무등중학교 앞 주유소 도로(지원교회 앞)에서 총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sup>113</sup> 총상을 입은 김○○은 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까지 기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 집에서 자취하던 학생들이 나와 부축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는 도중에도 총알이 날아와 대문에 꽂히고 있었다.

오○○은 총격당한 김○○을 구조한 뒤 뒤따라 들어오는 10여 명의 공수부대원에게 가택 수색을 당했다. 학생들의 자취방에 들어온 계엄군은 총상에 대한 확인이나 조치 없이 부상자와 학생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신분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김○○은 18시경이 되어서야 학생들에 의해 지프차를 타고 적십자병원을 거쳐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다.<sup>114</sup>

111 육군본부 계엄과, 「광주사태관련기초자료」, 64쪽.(104-294)

112 문○○ 보상심의자료 1903번 41쪽.

11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4.), 7쪽.(102-111, 444쪽)

114 5·18조사위, 「오○○ 진술녹취」(2022. 2. 22.), 1~2쪽, 5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4.), 2~3쪽.(102-111, 439~440쪽)

그런데 충격당한 김○○을 돕던 한 남학생과 여성도 총을 맞았다고 했다. 남학생은 오○○이었고 여성은 이○○을 말한다.

송한무역상사 직원 심○○(남, 40년생)는 국군광주통합병원 기록에 5월 23일 14시10분 마을 앞에서 경상의 총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전남대병원 기록에는 학동에 거주하는 심○○가 지원동에서 총격을 입어 혈흉이 있는데, 등에 사입구가 있고 목에 사출구가 있는 관통상을 입었다고 했다.<sup>115</sup>

소태마을과 마주하고 있던 용산마을 주민 전○○(남, 41년생)이 5월 23일 14시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을 입구인 용강연쇄점 옆 골목길에서 무심코 뒤를 돌아서 있던 중 300미터 정도 거리에 있던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았다.<sup>116</sup>

용산마을 반장 선종철(남, 36년생)이 5월 23일 14시 용산교 부근인 용산이발관(현 용산청과) 앞에서 화순 방향으로 가려는 강○○ 등 피란민들에게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다가 현대교통 차고지 뒷산 61대대 고지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sup>117</sup>

강○○(남, 34년생)은 산에서 난사된 총을 맞았다. 함께 있던 주민 한 명이 사망했다는 기록 내용으로 보아, 사망자는 5월 23일 14시 행인들에게 피란길을 안내하다가 충격당해 사망한 선종철로 판단된다. 전○○, 선종철과 강○○이 충격받은 시간, 장소가 같다.

소태동 671에 살던 지○○(남, 66년생)이 5월 23일 14시 충격으로 머리 관통상을 당했다. 같은 주소지(소태동 671)에 살던 오○○은 이름은 모르지만 연탄 가게 아들이 머리에 총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sup>118</sup> 그는 지○○을 말한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살면서 흥신산업에 다니던 회사원 박병현(남, 56년생)은 5월 23

115 보상심의자료 1928번, 317쪽.

11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현장확인조사」(1996. 1. 6.), 372쪽.(102-103)

117 5·18조사위, 「송○○ 진술조사」(2023. 4. 12.), 2쪽, 6쪽;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2쪽.(102-215);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145번; 「광주사태 변사검시보고서 요지」, 34쪽.(104-12)

118 5·18조사위, 「오○○ 진술녹취」(2022. 2. 22.), 5쪽.

일 14시 본격적인 보성군 노동면 거석리에 살던 김○○과 함께 고향을 향하다 효덕동 노대마을 뒷산 노대남제저수지 부근에서 사망했다. 당시 산속에는 주남마을에 주둔하던 제7공수여단 33대대 8지역대 3중대 3지대를 포함한 3개 지대가 정찰 임무를 받아 노대마을을 향해 이동 중이었다. 이때 김○○ 중사가 민간인 2명을 발견하고 정지하라고 했으나 달아나자 총을 쏘았다. 김○○은 달아났지만 총에 맞은 박병현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5월 23일 14시 광주 시위 진압에 동원되었던 화순경찰서 도암지서 경찰 김○○이 귀소하기 위해 너릿재를 넘어 이십곡리 산길(또는 광주 동구 선교동)을 걸어가는 중, 매복 중인 공수부대원 3명(중사 2명, 무전병 1명)에게 붙잡혀 함께 있던 화순군 주민 김○○ 등 민간인들과 함께 M16소총 개머리판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sup>119</sup>

#### 9) 구급차 피격, 그리고 같은 시간에 벌어진 또 다른 총격 피해

5월 23일 마이크로버스의 피격 소식을 들은 의료 봉사원들은 10시경 부상자들 구호와 희생자들 시신 수습을 위해 피격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계엄군의 공격에 이들이 다시 총격당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시위대 측에서는 적십자병원 등 병원이나 보건소에 소속되어 임시 구급차에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으로 한 조를 만들어 무전 연락 등을 받고 피격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사망한 사람들을 시내 각 병원에 후송시켜 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sup>120</sup>

마이크로버스의 피격 소식을 들은 동구보건소 소속의 구급차가 오전 10시경 소태마을 입구 바리케이드 설치 지점에 도착했다고 한다. 당시 구급차에는 흰 가운을 입은 4명이 타고 있었다. 소태마을 입구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던 김○○ 역시 구급차 도착 시간을 오

119 5·18조사위, 『김○○ 진술요지』(2023. 1. 6.), 3~4쪽. 같은 화순경찰서 경찰 조○○은 김○○이 잡힌 곳이 너릿재 광주 방면 선교(선교동)였다고 진술했다.[5·18조사위, 『조○○ 진술녹취』(2022. 3. 25.), 17~18쪽.]

12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 12. 29.), 2~3쪽.(102~111, 64~65쪽)

전이라고 했다. 구급차는 진술인이 운영하던 이발관 앞에 주차했으므로 진술인이 직접 구급차를 목격했다. 구급차에는 동구청 소속이라는 표기가 있었고 남자 2명과 여자 2명이 타고 있었다.<sup>121</sup>

의료 봉사원 김○○는 자신이 지원동 입구에서 화순으로 향하는 버스를 제지하는 활동을 하다가 마이크로버스의 피격 장면을 목격했으며, 계엄군의 사격이 두려워 광주 쪽으로 빠져나와 있었고, 이때 통장을 맡고 있다는 주민의 부탁으로 피격 버스의 희생자들을 치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sup>122</sup>

여성 의료 봉사원 한 명 또는 두 명이 마이크로버스 피격 현장에서 총상자들을 치료하는 동안 이를 기다리던 남성 의료 봉사원 장재철이 15시경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제11공수여단 61대대 관측 초소가 있던 바랑산 앞 길가 벽돌공장 사장이었던 김○○는 총을 맞은 구급차 운전원이 공장 집으로 들어오려다 다시 한번 총을 맞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같은 벽돌공장 직원이었던 정○○ 역시 이 모습을 목격했다. 구급차는 광주 시내로 향하던 중 10미터를 미처 못 가고 총격을 받았다. 이발사 김○○의 아내로 당시 간 이식당을 하던 최○○도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 이발사 김○○은 당시 앰블런스가 동구보건소에서 나온 작은 승용차로 하얀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동구보건소라고 적혀있었다고 했다. 남자들은 장발이었고 흰옷을 입고 여자들을 기다리면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운전자가 탄 차가 이발소 앞 통신용 전봇대에 들이박고 멈추었으며,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 이발소 안으로 들어왔다가 길 건너편 블록공장으로 가자 지금의 아이조음 아파트 현대교통 위쪽 산의 군인들이 총을 쏘았다. 저녁에도 총소리가 계속 나서 숨이불을 둘러쓰고 떨며 밤을 지냈다고 했다.<sup>123</sup>

121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 4. 19.), 2~3쪽; 최○○ 전화통화(2020. 12. 7.)

12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 12. 29.), 7쪽, (102-111, 69쪽); 홍○○, 「국회 청문회 속기록」(1989. 1. 27.), 67쪽, 69쪽, (104-273)

123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 4. 19.), 2~3쪽, 8쪽; 김○○ 기타지음금 신청서(1993. 7. 26.); 「정○○ 진술

운전원을 쏜 소태동 뒷산 관측 초소의 계엄군은 운전원이 들어간 벽돌공장으로 내려와 수색했다. 당시 집에는 사장 김○○와 직원 정○○이 있었다. 이때 김○○는 계엄군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당시 김○○의 아이들과 같은 방에 있다가 집을 수색하던 계엄군을 목격한 정○○은 한 대위가 총을 쏜 군인에게 “통신병, 너는 명사수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sup>124</sup>

벽돌공장에서 운전원이 사망하자 사장 김○○는 도청으로 연락을 취했다. 두 명의 청년이 손수레를 끌고 와 시신을 인도해 갔다고 한다. 김○○의 벽돌공장 직원 정○○은 5월 24일 시신이 손수레로 이송되어 수습되었다고 했다. 이발사 김○○과 기○○의 진술 역시 운전원의 시신이 도청으로 이송된 날은 5월 24일이었다. 두 사람이 시신 수습을 위해 도청에서 나온 청년들을 도왔다고 한다.<sup>125</sup>

#### ○ 민간인 피해

적십자병원 구급차량 운전원 장재철이 총격당할 때, 인근 지역에서도 총격과 폭행을 당하는 피해가 함께 있었다.

오○○(남, 62년생)과 이○○(여, 59년생)은 5월 23일 13시경 총격당한 김○○을 구조한 뒤 총격이 멈추길 기다렸다가 15시경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다 총에 맞았다. 이날 13시 총격당한 김○○은 자신을 구조한 여성이 이후 총격당한 뒤 병원에 함께 입원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다. 총격당한 오○○은 이미 총상을 입었던 김○○과 함께 연탄가게에 있던 손수레에 실려 전남대병원으로 이동했다.<sup>126</sup>

조서(1993. 8. 31.), 2쪽.(보상심의자료 1530번 330쪽); 「최○○ 진술조서」(1993. 10. 22.), 2쪽, 보상심의자료;  
<sup>124</sup> 김○○ 기타지원금 신청서(1993. 7. 26.); 5·18조사위, 「정○○ 면담보고」(2020. 9. 16.);  
<sup>125</sup> 김○○ 기타지원금 신청서(1993. 7. 26.); 5·18조사위, 「정○○ 면담보고」(2020. 9. 16.); 「김○○ 통화보고」(2020. 12. 7.); 「기○○ 면담보고」(2002. 2. 22.).  
<sup>126</sup> 5·18조사위, 「오○○ 진술녹취」(2022. 2. 22.), 2~3, 5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4.), 5~6쪽.(102-111, 442~443쪽)



용산동 243-20(현재 광주소망병원 인근)에 살던 김○○(남, 48년생)은 5월 23일 일가족과 2백여 미터 떨어져 뒤따라가며 고향인 보성군 복내면으로 가던 중, 15시경 용산동 69-2(현재 녹동 지하철기지, 용산체육공원) 부근에서 보리밭에 매복하던 10여 명의 계엄군으로부터 대퇴부 등에 총격당했다.<sup>127</sup>

오○○(남, 23년생)는 5월 23일 15시 소태동 584번지 삼호공업사에서 총격을 받아 왼쪽 허벅지에 관통 총상을 입었다.<sup>128</sup>

현대교통 정문에 있던 시멘트벽돌 제조업체 동양산업(소태동 688) 사장 김○○(남, 44년생)는 15시경 하얀 가운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 총을 맞은 뒤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사망했고, 얼마 뒤 수색을 한다며 공장으로 들어온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다.<sup>129</sup>

#### 10) 구급차 피해 후 계속된 민간인 피해

5월 23일 구급차와 행인 등 민간인에 대한 총격 이후에도 피해는 계속되었다. 주로 폭행에 의한 부상이었다. 제2수원지 부근에 주둔했던 제11공수여단 운영장교 강남기 대위 진술에 따르면, 5월 23일 오후 2명의 젊은이가 여단 본부대 경비소대에 의해 잡혀 오자 경비소대 선임하사관 시○○ 상사가 총살하려 했으나 자신이 말려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돌아가는 청년들 뒤로 시○○ 상사가 M16소총 사격을 가했다. 정조준한 것은 아니어서 사람이 총을 맞지는 않았다고 한다.<sup>130</sup>

능주초등학교 교사 손○○(남, 38년생)가 5월 23일 16시 지원동 무등중학교 부근에서

127 5·18조사위, 「김○○ 통화녹취」(2022. 2. 23.), 2~3쪽; 보상심의자료 1873번, 92쪽.

128 전남대병원 5. 23. 치료 기록,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5권, 162쪽; 5·18부상자 추가신고서(1988. 6. 17.)

129 「김○○ 진술조서」(1993. 8. 26.), 2쪽, 보상심의자료 1530번 319쪽; 5·18조사위, 「정○○ 면담보고」(2020. 9. 16.), 3쪽; 김○○ 기타지원금 신청서(1993. 7. 26.)

130 5·18조사위, 「강남기 진술조서」(2023. 2. 16.), 4쪽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해 각막이 파열되고 치아가 골절당했다.<sup>131</sup>

5월 23일 나주 다시면 동당리에 살던 최○○(남, 22년생)가 광주 소태동에 사는<sup>132</sup> 자식들이 걱정되어 오토바이를 타고 효천역에서 화순 방향으로 가는 샛길로 가다가 17시경 지원동 쪽 배고픈다리 부근에서 계엄군에게 잡혀 전신을 구타당해 척추 등에 부상을 입었다. 전남대병원에서 입원 치료했다. 윤○○의 진술에 따르면, 남초등학교 앞쪽에는 계엄군의 바리케이드가 없었지만 배고픈다리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sup>133</sup>

## 마. 5월 24일 주남마을을 떠나는 공수여단과 검시

### 1) 제20사단 61연대, 피격 마이크로버스와 희생자 시신 목격

제11공수여단에 의해 5월 21일부터 시작되었던 광주-화순 간 도로망 봉쇄 작전의 주력은 5월 24일 10시부터 제20사단 61연대로 교체되었다.<sup>134</sup> 61연대 1대대는 광주 방면, 2대대는 화순 방면, 3대대는 그 사이에 배치되었다.<sup>135</sup> 공수여단이 떠난 자리는 제20사단 61연대가 이어받았다.<sup>136</sup>

교체된 제20사단 61연대 병사들이 피격된 마이크로버스를 목격했다. 제20사단 61연대 1대대 3중대 1소대장 임○○ 소위는 도랑에 빠진 버스를 끌어내 옮겼다.<sup>137</sup> 버스는 채석장 화약고 앞 사건 현장에서 소태마을 입구에 있던 현대교통 차고지 앞으로 옮겨졌다.

마이크로버스뿐 아니라 가매장되었다는 희생자들 시신도 목격되었다. 효천역 부근에

131 「손○○ 진술조서」(2차)(1998. 3. 26.), 3쪽, 보상심의자료 1080번 73쪽, 124쪽.

132 딸집은 소태동 701이었다고 한다.(출처, 보상심의자료 1976번 13쪽)

133 윤○○ 보상심의자료 1976번 1쪽; 5·18조사위, 「윤○○ 진술녹취」(2021. 3. 7.), 56쪽.

134 교대한 위치 CP125855는 62대대본부가 있었던 월남정미소 터였다. 국회 광주민주화운동 조사특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 소개」, 96쪽.(102-113); 보병제20사단, 「충정작전상보」, 113쪽.(104-413)

135 5·18조사위, 「김형곤 진술조서」(2022. 12. 16.), 8쪽.

13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동진 피의자신문조서(1995. 3. 22.)」, 22쪽.(102-23, 373쪽)

137 5·18조사위, 「임○○ 면담보고」(2021. 4. 7.)

주둔하던 제20사단 61연대장 김동진 대령은 5월 24일 아침 주남마을로 이동하면서 시신을 목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제20사단 61연대 1대대 1중대 3소대 김○○ 하사는 헬기를 타고 15번 도로 주남마을 앞길에 착륙하였고, 녹동마을 앞에서 도보로 바랑산 매복지점으로 이동 중 화약고 앞에서 피격된 버스를 목격했다. 버스는 바닥이 찢물로 흥건했었다고 했다. 그는 버스 색깔은 기억나지 않고 차 가운데 문이 있는 25인승으로 기억했다.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차 안에 아무도 없어 보였고, 도로 발쪽에는 다리가 흩 밖으로 나와 있는 시신들을 보았다. 61연대 1대대 3중대 화기소대원 이○○ 일병 역시 5월 24일 제 11공수여단과 교대하면서 모두 11구의 시신이 도로 옆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버스 안에는 수많은 탄피가 있어 확인 사살을 의심했다고 한다.<sup>138</sup>

## 2) 검시 및 시신 수습

5월 27일(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올린 「검시상황보고」에 따르면, 5월 27일 오후 2시부터 4명의 검사가 89구의 시체를 검시했으며, 5월 28일 “지원동 교전 중 사망자 가매장 11구” 등 30구를 검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sup>139</sup>

광주지방검찰청은 5월 28일(수) 10시40분부터 14시30분까지 도청 상무관에서 검시한 시체가 76구인데, 이중 4구가 “지원동 가매장분” 11구의 일부라고 하면서 나머지 7구는 5월 29일 검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sup>140</sup> 시신 4구가 먼저 검시되었던 것인데, 지원동사무소 직원 박○은 5월 28일 단기사병 2명과 함께 시신을 수습했다고 주장했다.<sup>141</sup> 이날 상무관에서 검시된 시신은 마이크로버스 희생자 김재형, 김정, 김현규, 손옥례 등 4명이었다.

138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4. 14.), 26~28쪽; 「이○○ 면담보고」(2007. 5. 25.), 3~4쪽.(104-211, 455~456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동진 진술조사」(1995. 3. 22.), 22쪽.(102-23, 373쪽)

139 「검시상황보고」, 1980. 5. 27. 138쪽.(104-432)

140 「시체검시상황보고」, 1980. 5. 28. 143쪽.(104-432)

141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박○ 면담보고」(2006. 12. 1.), 5쪽.(104-210, 206쪽)

5월 27일부터 복귀하여 근무를 다시 시작한 지원동사무소 직원 정○○, 장○○ 외 인부 2인은 5월 29일(목) 아침 8시30분부터 14시까지 고영자, 김남석, 김윤수, 김춘례, 박현숙, 백대환, 황호걸 등 7구의 시신을 수습하여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sup>142</sup>

5월 23일 총상 후 사살당한 채수길과 양민석이 암매장된 곳에서 심한 냄새와 함께 시신의 일부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6월 1일 임시휴교로 방학 중인 친구들과 함께 주남마을 뒤 저수지를 다녀오던 임○○가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맡고 친구들과 함께 찾다가 교련복 바지를 입은 시신을 발견하고 동사무소에 신고했다.<sup>143</sup> 이 두 구의 시신은 6월 2일 광주시 공무원 조○○, 광주경찰서 추○○ 경장이 수습했으며,<sup>144</sup> 6월 3일 전남대병원에서 검시되었다.<sup>145</sup>

한편, 계엄군은 6월 초 가매장한 시신들을 처리하기 위해 매장한 위치를 알고 있던 병사들을 동원했다. 민간인 희생자의 시신을 찾아 수습할 목적으로 당시 매장에 가담한 병사들을 다시 매장 현장으로 보냈다.<sup>146</sup> 이들이 찾던 시신은 5월 29일 광주시에서 수습한 7구와 별도로 제11공수여단 본부 근처에 매장되었던 채수길, 양민석 등 부상 학살 피해자 2구, 부영산 정상의 김부열 시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장 도○○ 중위는 영현장교의 역할로 희생자 명단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미 시신은 수습된 뒤였다고 했다. 62대대장 이제원은 부상자를 죽여놓고 보고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자신은 부상자들을 여단 본부에 보냈으니 부상자를 죽인 것은 여단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었다.<sup>147</sup>

142 5·18조사위, 「정○○ 진술녹취」(2021. 9. 6.), 8쪽; 「조○○ 진술조서」(1996. 1. 9.), 4쪽.(102-113, 443쪽)

143 임○○, 「국회 청문회 속기록」(1989. 1. 27.), 69쪽, 71쪽.(104-273)

144 「국회 청문회 속기록」(1989. 1. 27.), 70, 72쪽.(104-273)

145 「1980년 사체매장 관련 서류철」, 156쪽.(104-124) 채수길과 양민석은 1980년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각 163번, 164번으로 검시 당시 모두 성명불상이었다.

14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규진 진술조서」(1995. 5. 31.), 19쪽.(102-21, 887쪽)

147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도○○ 면담보고」(2006. 10. 9.), 5쪽.(104-209, 237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 144116, 「이제원 진술조서」(1995. 6. 26.), 17쪽.(102-17, 698~699쪽)

62대대 4지역대장 최규진의 진술과 광주시 공무원 조○○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1980년 6월 2일 생존 부상자 채수길, 양민석의 시신이 발굴되어 인도될 때 당시 총살에 가담했던 도○○ 중위, 정○○ 중사 등 제11공수여단 병력은 시신이 모두 수습된 뒤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sup>148</sup>

한편, 시신의 상체 일부가 분리된 시신이 1980년 6월 7일(토) 지원동 뒷산 상봉(부영산을 말함)에서 수습되어 같은 날 11시 조선대병원에서 검시되었다.<sup>149</sup> 제11공수여단 61대대 2지역대 6중대 16지대장 오○○ 중위는 같은 날 2지역대장 이종호 소령과 함께 부영산 현장에 와서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시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했다.<sup>150</sup> 한편 6월 12일경 연락받은 유족이 유류품 중 허리띠가 김부열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부열의 모친은 1980년 6월 12일 광주시청 사회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1980년 이후에도 암매장한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암매장한 곳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1989년 1월 14일 지원동 바랑산<sup>151</sup>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sup>152</sup> 이 유골은 윤○○(남, 73년생, 지원동 거주, 땅꾼)이 1980년 5월말 사촌 형과 함께 뱀을 잡으러 다니다가 발견했는데, 두개골 왼쪽 귀 부근에 구멍을 확인하고 두려워서 신고를 못 했다고 한다. 1987년 9월 동생 윤○○과 함께 다시 확인했으며, 1989년 1월 13일 YMCA에 신고했다.

출토된 유골은 다리 부분이 위쪽으로 하여 앞으로 엮어진 상태였으며, 신발(260cm, 농구화), 청색 바지(혁명 발견치 못함), 곤색 상의(상표 “대도마켓”), 담배, 금 또는 아

148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 면담보고」(2006. 12. 10.), 4쪽(104-210, 105쪽); 「도○○ 면담보고」(2006. 10. 9.), 5쪽(104-209, 237쪽); 「한○○ 면담보고」(2006. 10. 24.), 7~8쪽(104-209, 352~353쪽)

149 「광주소요사태사망자조사」 17쪽.

150 5·18조사위, 「오○○ 진술조서」(2회)(2023. 2. 3.), 14쪽.

151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부영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는 현장이 구 화약고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보아 바랑산으로 판단된다. 부영산은 소태동과 월남동의 경계로 바랑산에서 주남마을 방면으로 직선거리 약 1km 떨어져 있다.

152 5·18광주민중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보고서(안)」(1990. 2.), 193~194쪽.(901-22)

말감 치료를 받은 치아가 발견되었다. 2002년 전남대의대 법의학교실에서 이 유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도했으나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서열이 불완전하고 그 외에 STR 유전자좌의 유전자형 분석도 불완전”하여 희생자의 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다.<sup>153</sup> 김부열에 대한 제11공수여단 61대대원의 진술과 또 다른 정황을 목격한 62대대원의 진술로 보아 이 유골은 임옥환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2. 광주-나주(송암동)

### 가.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의 외곽 봉쇄 작전 시작과 민간인 피해

#### 1) 제20사단 61연대 2대대 송암동 투입 전 피해

송암동 1번 국도에 대한 외곽 봉쇄 작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광주와 나주의 경계 부근을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하던 정○○, 고○○, 남○○ 등 시민, 시위 대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확인된다.

목포고등학교 3학년 정○○(남, 60년생)은 5월 20일 18시30분 광주에서 목포로 가기 위해 나주를 향해 걸어가던 중 포충사 입구(대촌 지산마을 또는 옥천사 입구) 부근에서 군인 2명에게 연행되어 불상의 장소에서 3일 동안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이후 상무대에 서도 구타당한 뒤 풀려났다.<sup>154</sup>

고○○(남, 55년생)은 5월 21일 14시 광주 화정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대촌 집으로 가던 중 한두재 검문소(대촌 입구에서 남평 가는 곳)에서 최○○(또는 최○○)와 함께 체포되어 가혹 행위를 당했다.<sup>155</sup>

나주 영산포에 살면서 5월 19일부터 항쟁에 참여했던 남○○(남, 34년생)는 5월 21일

<sup>153</sup>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5·18묘역 무연고 분묘 발굴 및 유골감정(2차)」(2002. 11. 30.), 27쪽.

<sup>154</sup> 보상심의자료 1343번 221쪽.

<sup>155</sup> 보상심의자료 2025번 368~410쪽.

옥천사 입구(남선연탄 바리케이드)에서 총상을 입었다.<sup>156</sup>

5월 21일 석산고 학생 고○○ 등 15명이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몰고 나온 군용 레커차를 타고 15시경 광주시 남구 양과동(광산구 대촌면 양과리) 포충사 입구 포도밭을 지나던 중 계엄군이 쏜 총격으로 차량이 전복되었다. 김형관(남, 59년생)이 “두부총상”으로 사망하고 강○○이 뇌를 다쳐 수술했으며, 김재홍(남, 61년생)과 정국성(남, 62년생)이 총상 후 사망했다. 이들 외에도 여러 명이 중경상을 입고 적십자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sup>157</sup>

## 2)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의 송암동 투입

### 도로 봉쇄 작전 이동

5월 20일 18시55분 61연대 2대대 5중대와 6중대가 도보로 광주-나주 간 도로 차단에 투입되기 시작했다.<sup>158</sup>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장 김형곤 중령은 이동 중인 5월 21일 19시경 자위권 발동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자위권 발동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때는 다음 날인 5월 22일이었다.<sup>159</sup> 5월 22일 00시15분에는 증원 병력으로 61연대 1대대 1중대와 수색중대가 도착하여 남평간이활주로와 한두재에 배치되었다.<sup>160</sup>

156 보상심의자료 1901번 85~139쪽.

157 「5·18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153번; 5·18조사위, 「강○○ 진술조서」(2021. 4. 8.), 6쪽; 「김○○ 진술조서」(2021. 4. 7.), 7~9쪽; 「박○○ 진술조서」(2021. 4. 9.), 4~5쪽.

158 보병 제20사단, 「충정작전상보」, 4쪽.(104-197);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1. 11. 22.), 3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광택 진술조서」(1994. 12. 27.), 13쪽.(102-24, 214쪽)

15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형곤 진술조서」(1995. 2. 20.), 12~13쪽.(102-23, 252~253쪽)

160 보병 제20사단, 「충정작전상보」, 4~5쪽.(104-197)



대대 본부 등 주둔과 3개의 검문소(바리케이드) 설치

제20사단 61연대 2대대 대대본부는 남선연탄 공장 위 공터와 야산에 설치되었다.<sup>161</sup> 6중대는 대대본부 근처에, 5중대는 도로 건너편 야산에 주둔했다고 한다.<sup>162</sup> 5중대는 뒷산을 수색하기도 했다. 61연대의 도로 차단 바리케이드는 송암동 남선연탄 공장 입구와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한두재, 남평 간이활주로에 설치되었다.

남선연탄 공장 입구의 바리케이드는 2대대 5중대와 6중대가 담당했다. 2대대 6중대 3소대 화기 분대 이○○ 병장은 바리케이드 설치를 담당한 3분대를 이끌고 철도를 건너 도로를 오르려던 중 뒤에서 총을 쏘아 앞드려야 했다고 진술했다.<sup>163</sup> 이 총격은 나주에서 올라오던 시위대 차량을 향한 것이었다. 2대대 6중대 1소대 김○○ 일병은 5월 22일 아침에 야 도로에 바리케이드 설치를 완성했다고 한다. 당시 시위대가 장갑차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 있어 도로상에 철조망을 치고, 모래 마대를 쌓아 초소를 만들었다고 했다.<sup>164</sup> 한두재 부근 차단은 61연대 수색 중대가, 남평 간이활주로 차단은 61연대 1대대 1중대가 담당했다.

### 3) 나주에서 올라오던 민간인 피해

5월 21일 오전부터 계엄군에 의한 참상을 광주 외부지역에 알리기 위해 차량 시위대가 광주를 떠나 나주, 함평, 화순, 영암, 목포 등을 향하기 시작했다. 도중에 계엄군의 발포 소식이 알려지자 시위대들은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각 지역의 경찰서, 파출소를 습격하

161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 2. 28.), 2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길섭 진술조서」(1995. 6. 2.), 2쪽.(102-22, 63쪽)

162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 2. 28.), 2쪽; 「김○○ 진술조서」(2021. 9. 14.), 4쪽; 「한○○ 진술녹취」(2021. 9. 2.), 5쪽. 6중대 1소대 김○○ 일병은 1소대가 연탄공장 위 야산 문중 묘지에 있었다고 했으며, 같은 6중대 3소대 이○○ 병장, 한○○ 일병은 6중대가 남선연탄 공장 쪽에 있었으며 5중대는 건너편에 있었다고 했다.

163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1. 11. 22.), 7쪽.

164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1. 9. 14.), 5쪽.

였다. 총기 습득 등 전남 지역 일대에서 시위와 무장 활동을 벌인 차들은 오후 나주 시내와 남평 비상활주로에 집결한 뒤 광주로 향했다.

제20사단 61연대 2대대가 배치되기 전에 효천역 앞을 지난 차량 시위대는 큰 피해 없이 광주에 도착하기도 했지만, 배치 뒤에는 차들이 총격받기 시작했다. 제20사단 전투상보에 따르면, 5월 21일 22시11분 61연대 2대대 작전 지역에서 버스 6대와 대치했는데, 시위대 버스에서 먼저 발사하여 교전이 시작되어 다음 날 04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을 사살하고, 소총 16정, 포로 1명, 실탄 500여 발을 노획했다고 밝혔다. 이때 계엄군 측도 2명이 부상을 입어 1명을 헬기로 후송했다.<sup>165</sup>

위 총격받은 차량으로 광주고속버스, 시내버스, 광천교통 마이크로버스, 8톤 트럭, 1톤 트럭, 승용차, 군용 레커차 등 7대가 파악되었으며,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해 이후 사망한 민간인은 최소 5명 이상으로 판단된다.

#### 총격의 시작과 5중대 3소대 김○○ 병장의 총상

5월 21일 21시 남선연탄 공장 앞 도로에서 있었던 총격에 대해, 국군 제20사단의 전투상보에는 장애물을 설치하던 계엄군에 대해 목포 방면에서 올라오던 시위대 차량의 총격이 먼저 있었던 교전 상황이라며 계엄군 측 군인 1명이 관통상을 입었다고 기록했다.<sup>166</sup> 하지만 이를 목격한 주민의 증언은 달랐다. 남선연탄 구매계장 김○○은 22시경 철로변에 매복했던 군인들이 먼저 시위대 차량을 향해 10여 분간 공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sup>167</sup> 당시 계엄군이었던 병사들의 진술은 훨씬 구체적이다. 바리케이드를 만들기 전에 나주에서 오는 시위대 차량을 보게 되었고, 이를 막는다며 매복조로부터 총격이 시작된 것이었

<sup>165</sup> 보병 제20사단, 『총정작전상보』, 4~5쪽.(104-197)

<sup>166</sup> 제20사단, 『전투상보』(1981), 『5·18민주화운동 관련 핵심자료』 제36권 36쪽.

<sup>167</sup>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1996. 1. 10.), 292쪽.(102-111)

다. 정황으로 보아 부상당한 계엄군은 시위대보다는 같은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61연대 2대대 5중대 2소대원 김○○ 상병은 계엄군의 도착과 동시에 나주에서 차량이 들어왔고, 이를 막는다며 총격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1개 소대만 산 위에 주둔했고 나머지 2개 소대는 발두령에서 사격을 했다. 도로 건너편(심씨 제각 공동묘지 산)에 있던 1소대도 함께 총을 쏘았는데, 2소대로서는 시위대가 총을 쏘는지 1소대가 총을 쏘는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3소대원 1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고 했다. 이후 보니 당시 시위대의 대응 사격이 없었으므로 반대편 소대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5중대 2소대원 이○○ 일병의 진술에 따르면, 5월 21일 총상을 입은 계엄군은 5중대 3소대 김○○ 병장이었다. 그는 두부총창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sup>168</sup>

## ○ 차량 피해

### 광주고속버스

5월 21일 21시 강복원(남, 59년생)이 운전하고 신동윤 등 20여 명이 탄 광주고속버스가 나주, 목포 등에서 시위를 한 뒤 광주로 올라오던 중, 남선연탄 공장 앞에서 길 오른쪽 산에 매복해 외곽 봉쇄 작전을 벌이고 있던 계엄군의 총격을 받고 길옆 오른쪽 논으로 처박혔다. 운전자 강복원이 '경동맥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이○○(남, 62년생)는 가슴과 팔에 총상, 현○○(남, 62년생)은 오른쪽 무릎관통상, 오○○(남, 65년생)은 왼쪽 팔목과 머리 부상, 유재옥(남, 45년생)은 복부총상, 정○○(남, 44년생)은 흉부개방창 총상을 입었다.<sup>169</sup>

168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1. 8. 30.), 7~8쪽; 「이○○ 진술조서」(2021. 10. 6.), 5~8쪽; 「충정작전 서훈 공적 내용」 51쪽.(104-163)

169 강복원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109번; 오○○ 보상심의자료 2016번 70~116쪽; 유재옥 보상심의자료 1993번 1~39쪽; 정○○ 보상심의자료 1996번 245~264쪽. 가슴과 팔에 총상을 입은 참고인 이○○는 버스가 총

### 시내버스

영암군 신북면에 살던 김○○(남, 36년생)은 5월 21일 오전에 광주로 올라왔다가 계엄군의 발포 후 금남로에 세워진 광주 시내버스 3대를 타고 나주와 영암을 돌면서 시위를 한 뒤 여러 차량과 함께 다시 광주를 향했는데, 밤 21시경 남선연탄 공장 앞 도로에서 공장이 있던 방향의 야산에 매복한 계엄군의 총격을 받았다. 시내버스는 총격에 놀란 운전자의 급정거 과정에서 전복되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운전자의 팔이 부러졌고, 당시 버스에는 2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총에 맞은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sup>170</sup>

### 광전교통 마이크로버스

5월 21일 광주 시내에서 남○○(여, 57년생) 등 30여 명이 탄 마이크로버스가 시내에서 시위를 한 뒤 나주를 거쳐 영암, 강진, 해남 등에서 차량시위를 계속했다. 나주 영산포에서 버스에 탄 신○○(남, 59년생)은 권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버스를 지휘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이후 해남 사람들이 타고 출발한 버스 2대와 함께 광주로 오다가 21시 남선연탄 공장에서 총격받아 가로수를 들이받고 도로에 멈추었다. 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은 총격과 차량 전복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 8톤 트럭

대한통운 노안출장소 8톤 트럭 기사 박○○(남, 50년생)는 5월 21일 시위대가 가져간

.....  
격당한 지점에 대해 광주와 나주의 경계지점이었으며 충격당한 다른 사람으로 운전기사와 무릎관통 총상자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총상자에 대해 참고인 박○○은 운전기사 외에 가슴부상자와 다리부상자가 있었다고 했으며, 참고인 현○○은 오른쪽 무릎에 총상을 입었다고 했다. 세 사람의 증언을 종합하면 사망한 운전기사는 강복원, 가슴총상자는 이○○, 무릎총상자는 현○○임을 알 수 있고,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고속버스를 타고 있다가 남선연탄 공장 앞 계엄군 바리케이드 부근에서 충격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70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1. 3. 11.), 6~7쪽, 10쪽; 김○○ 보상심의자료 1885번 187~253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6.), 307쪽.(102-111)

트럭을 찾아 나주로 갔다가 17시경 나주터미널에서 트럭을 발견하고 차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오히려 설득당해 그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로 올라왔다. 음식을 실은 트럭이었으므로 가장 늦게 올라갔다고 한다. 21시경 앞에서 충격받은 차들이 길을 막고 있던 남선연탄 공장 부근에 도착하자 트럭에도 총알이 날아왔다. 박○○는 적재함과 뒷대우 사이에서 밤새 공격을 받았는데, 다행히 총알은 피했지만, 파편상은 피할 수 없었다.<sup>171</sup>

### 1톤 트럭

김○○(남, 49년생)은 5월 21일 20시 해 질 무렵 1톤 트럭을 타고 나주에 모여 광주로 올라갔다. 트럭에는 운전석에 4명 등 모두 3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한다. 나주터미널에서 출발할 때 고속버스, 승용차, 다시 버스가 먼저 가고 그 뒤를 따랐다. 모두 4대로 기억했다. 트럭은 남선연탄 공장 부근에서 장애물이 있는지 좌우로 피해서 가더니 총소리가 났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사가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옆에 있던 후배도 목숨을 잃었다. 김○○도 척추 옆에 총상을 입었다.<sup>172</sup>

### 포니 승용차 또는 택시

송○○(남, 63년생)은 21시경 영암사람들과 함께 광우교통 버스를 타고 나주에서 광주로 진입하다가 버스를 추월한 승용차가 남선연탄 공장 부근 산에서 날아온 총알에 도로 옆을 들이받고 멈추는 모습을 목격했다.<sup>173</sup>

171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1. 7. 28.), 3~5쪽; 보상심의자료 1445번 1~118쪽.

172 참고인 김○○의 구술이 수록되어 있는 『5·18가 나주사람들』에는 충격받을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이 광주고속버스라고 했지만, 2021. 5·18조사위의 조사에서 1톤 트럭 운전석 바로 뒤 적재함에서 사망한 후배와 함께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출처,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1. 7. 29.), 4~8쪽]

173 영산포에서 광우교통에 탄 사람으로 이○○(61년생), 나○○(59년생)이 확인된다. 남평에서 21:30 광주로 들어가려 했으나 연탄공장 부근에서 총소리가 나서 나주 방면으로 되돌아왔다고 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463쪽; 5·18조사위, 「송○○ 진술조서」(2021. 3. 11.), 4쪽.

### 군용 레커차

나주 영산포 본영동에 살던 임종인(남, 59년생)은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의 버스를 타고 나간 뒤 광주-나주 간 도로 효천역 부근에서 총격받았다.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에는 “목포에서 광주로 광목도로상 폭도 BUS에서 응사하므로”, “Hell 기로 연병장”, “61R 6C(61연대 6중대)”라고 적시되어 있다. 나주를 출발한 시위대 차량이 남선연탄 공장 앞 바리케이드를 지나다 총격받은 날이 5월 21일 21시경이므로 임종인은 5월 21일 이곳에서 계엄군 제20사단 61연대 6중대에 의해 총격받고 5월 22일 헬리콥터에 의해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이송된 뒤 같은 날 17시30분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기록으로 보아 희생자는 총격 즉시 사망하지 않고 5월 22일 후송 과정 또는 후송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이송된 희생자 박재영이 5월 22일 05시40분 사망했음에도 사망 기록이 17시30분으로 되어 있으며, 위 김광택, 이○○ 두 계엄군 역시 희생자들이 이미 사망한 뒤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임종인의 사망 시간이 병원기록의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

61연대 2대대 6중대 3소대 이○○ 병장은 군용 레커차에 시민군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채 엎드려 있었는데, 상체가 클랙슨을 누르고 있어서인지 아침까지 소리가 났다고 한다.<sup>174</sup> 이 군용 레커차의 운전자로 추정되는 희생자는 임종인(5월 22일 17시30분, 사망)<sup>175</sup>이다. 61연대 2대대 6중대장 김광택 대위는 5월 23일 송암동에서 철수하면서 병사들을 지휘하여 가매장한 희생자 시신들을 헬기에 직접 실었다고 진술했는데, 위 이○○ 병장은 이 시신 중 한 구가 레커차 운전기사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sup>176</sup>

174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1. 11. 22.), 11쪽.

175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15쪽.(102-214); 「5·18관련 사망자 검시내용」 84번; 보상심의자료 1851번 354쪽; 「5·18과 나주사람들」, 460쪽.

176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1. 11. 22.), 17~18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광택 진술조서」(1994. 12. 27.), 12~13쪽.(102-24, 213~214쪽);

## ○ 개인 피해

나주시 다도면 신동리 97에 살면서 동명택시(또는 동양택시) 회사의 운전기사였던 박인천(남, 54년생)<sup>177</sup>은 5월 21일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시위 차량에 올랐다가 송암동에서 계엄군의 충격에 사망했다. 대퇴부에 관통 총상을 입은 채 오랜 시간 피를 흘린 것이 사망의 원인이었다.

북구청의 「인명피해상황조사」에는 문〇〇가 5월 21일 광주-나주 간 도로상에서 사망하여 도청에 안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에는 문〇〇가 5월 21일 사입구 0.5×0.5, 사출구 0.5×0.5의 경부 관통 총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내용은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검시 당시 문〇〇로 알려진 시신은 5월 21일 송암동 사건 희생자 박인천과 나란히 상무관에 있었음이 이창성 기자의 적십자병원 영안실 사진에서 확인되었다. 이상 기록들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위 문〇〇는 5월 21일 송암동 사건의 희생자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문〇〇가 얼마 뒤 생존 귀환하였다. 참고인 문〇〇는 문〇〇의 한 친구가 그의 이름표가 부착된 교련복을 입고 나갔다가 희생된 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문〇〇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났었다고 진술했다. 문〇〇의 생존 사실이 알려지자 문〇〇로 알려진 시신은 무명 열사로 있다가 2021년 전남대학교 법의학 교실과 (주)디엔에이링크의 DNA검사 결과 양창근(남, 64년생)으로 신원이 확인되었다.<sup>178</sup> 따라서 5월 21일 광주-나주 간 도로상에서 충격에 희생된 사람은 양창근으로 판단된다.

나주 반남면 청송리에 살던 박재구(남, 51년생)는 5월 19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 5월 21일 16시경 4대의 차량을 인솔하여 고향인 나주 반남면 등에서 시위를

177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121번; 박인천 시체검안서(1980. 6. 9.);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19쪽.(102-219); 보상심의자료 1848번 82쪽; 「시체인도인수증」; 5·18조사위, 「박〇〇 통화보고」(2022. 11. 25.), 1쪽.

178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23쪽.(102-219);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1권, 506쪽;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107번; 5·18조사위, 「문〇〇 진술조서」(2023. 1. 5.), 3쪽.



별이면서 반납지서 무기고 열쇠통에 총을 쏘아 문을 여는 등의 활동을 한 뒤 영암을 거쳐 광주로 돌아오던 중 효덕파출소를 지나 언덕에 이르렀을 때 시체 2구를 발견하고 기사와 함께 차에서 내려 광주 시내로 옮기려는 순간 매복해 있던 계엄군들로부터 구타당하고 대검에 찔리는 부상을 입고 1984년 4월 25일 사망했다.<sup>179</sup>

#### 4) 광주에서 나주로 향하던 차량의 피해

제20사단 61연대 2대대 5중대와 6중대가 매복하고 있던 남선연탄 공장 앞 도로에 다 시 5대의 버스와 1대의 트럭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나주 방면이 아니라 광주 방면에서 온 차들이었다. 이들은 조금 전인 21시경 효천역 부근에서 계엄군의 총격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위대 차들이었다.

효천역 부근에서 계엄군의 대규모 총격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한 군용 트럭 1대가 포함된 모두 6대의 시위대 차량 중 고속버스 1대가 남선연탄 공장 앞 도로에서 계엄군의 집중 사격을 받아 파괴되고 3명이 총상을 입었다.

5월 21일 낮 영암 신북에서 시위대 차를 타고 출발하여 저녁에 계엄군의 공격이 있기 전 무사히 광주 백운동에 도착한 노경운<sup>180</sup>, 강○○, 류○○ 등 신북면 주민 일행은 송암동에서 계엄군의 공격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했다. 이들이 탄 버스의 양쪽 옆에는 페인트로 “영암 신북”이라고 쓰여 있었다. 백운동에서 5대의 버스와 1대의 트럭 등 모두 여섯 대의 차량이 출동했다.

도착한 송암동 피격 현장에는 버스 3대가 방치되어 있었다. 버스 1대는 눈에 빠져 있었으며 2대는 도로 가운데에 있었다. 이 중 1대의 버스 안에는 운전기사가 목에 총을 맞은

179 박재구 보상심의자료 1911번 133~212쪽.

180 노경운은 5월 22일 20:00경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흉부 관통상 등으로 사망했다. 사망 직전 활동한 곳이 전남 대와 서방 지역이었으며 주유소가 보이는 곳에서 총격받았다는 진술로 보아 그가 총격받은 장소는 광주교도소 봉쇄 지역으로 판단된다. [출처, 시체검안서, 5·18조사위, 「장○○ 진술조서」(2022. 12. 20.), 5~6쪽.]

채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 총상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sup>181</sup> 부상자와 생존자들은 광주에서 온 차량에 나누어 탔다. 처음부터 광주 방향으로 차를 돌려 주차했던 4대의 버스가 먼저 무사히 피격 현장을 빠져나갔다. “영암 신북” 버스는 나주 방향으로 주차했던 차를 돌려 나가려는 순간 계엄군의 총격이 시작되었다. 강○○은 발목에 총을 맞은 여성 등 부상자들을 버스 안으로 구조한 뒤 광주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는 순간 계엄군의 사격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강○○ 일행이 탄 버스가 총격받아서인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총격에 고장 난 버스가 움직이지 않자, 버스에 있던 시위 대원들은 새로 발생한 3명의 부상자와 함께 군용 트럭으로 옮겨타 광주로 돌아왔다. 트럭이 현장에서 멀어질 때까지 총격은 계속되었다.<sup>182</sup>

## 나.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의 외곽 봉쇄 작전 중 민간인 피해

### 1) 2대대의 마을 수색과 전날 희생자 및 차량 처리

전날 시위대 차량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계엄군은 날이 밝자 인근 지역과 피격 차량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다. 제20사단 61연대 2대대 정보장교 김길섭 대위는 5월 22일 아침 운전자가 사망한 버스 1대와 군용 레커차 1대, 그리고 차종이 분명하지 않은 차량 1대를 보았다고 했다.<sup>183</sup> 광주 출신인 5중대 2소대원 김○○ 상병은 길을 잘 안다는 이유로 부상당한 3소대 김○○ 병장을 상무대로 이송한 뒤 5월 22일 아침 복귀하면서 송암공단 부근에 7~8대의 민간 차량이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sup>184</sup>

마을을 수색한 제20사단 61연대 2대대는 지난밤 총격에 희생당한 시위 대원들의 시신

181 5·18조사위, 「구○○ 진술조서」(2021. 5. 12.), 12~13쪽. 진술을 종합하면 목에 총을 맞고 사망한 사람은 강복원이었다.

182 5·18조사위, 「강○○ 진술조서」(2021. 4. 29.), 11~15쪽; 「류○○ 진술조서」(2021. 9. 13.), 8~10쪽.

18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길섭 진술조서」(1995. 6. 2.), 3쪽.(102-22, 64쪽)

184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1. 8. 30.), 14쪽.

을 확인한 뒤 이를 처리하려고 했다. 송암식당 김○○은 9구의 시신을 목격했는데 계엄군이 이 시신들을 트럭에 실은 뒤 남평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sup>185</sup> 한편, 이와 관련된 계엄군 측의 진술은 크게 다르다. 제20사단 61연대장 김동진 대령은 2구의 시체를 가매장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sup>186</sup>

61연대 2대대장 김형곤 중령은 버스 1대와 트럭(택커차 또는 1톤 트럭) 1대가 전복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3구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61연대 2대대 6중대장 김광택 대위는 논두렁에 버스 2대, 도로 위에 트럭과 2대의 차량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트럭의 적재함에서 남자 시신 1구를 목격했으며, 이후 2구의 시신을 더 목격했다. 3구의 시신을 발견한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장 김형곤 중령은 연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나중에 후송할 테니 시신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까운 곳에 가마니로 덮어서 두었다고 한다. 2대대 정보장교 김길섭 대위 역시 사망한 버스 운전사를 가매장한 사실을 기억했다.<sup>187</sup>

## 2) 계속된 차량 피해

### 승용차

5월 22일 05시 김○○(남, 50년생), 박○○(남, 46년생)이 탄 승용차(전남1가 6659)가 한두채를 넘자 2~3대의 트럭이 도로를 막고 있었고 나갈 길을 찾던 중 길을 막았던 군용 트럭 뒤에서 군인들이 다가왔다. 차 유리문을 열고 말하던 중 총알이 날아와 앞 유리가 깨졌고 일행은 겁에 질려 차에서 내린 뒤 길에 엎드렸다. 군인 3~4명이 달려와 옷옷을 벗기고 손을 뒤로하여 포승을 당한 뒤 1개 소대가량이 매복하던 산으로 끌려갔다. 정신을

<sup>185</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 12. 29.), 3~4쪽.(102-111, 270~271쪽)

<sup>186</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동진 진술조서」(1995. 3. 22.), 18~19쪽.(102-23, 369~370쪽)

<sup>187</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형곤 진술조서」(1995. 2. 20.), 17~18쪽.(102-23, 257~258쪽); 「김광택 진술조서」(1994. 12. 27.), 12~13쪽.(102-24, 213~214쪽); 「김길섭 진술조서」(1995. 6. 2.), 9쪽.(102-22, 70쪽)

차린 뒤 계엄군이 다른 차량을 공격하는 소리를 들었다. 차에 있던 사람이 “그만 쏘세요. 사람이 죽는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사격이 멈췄다. 다른 피해자와 서로 다른 군용 트럭에 태워져 남선연탄 공장 앞 차단선으로 이동한 뒤 다시 “버스가 온다”, “돌린다. 돌린다”는 말과 함께 집중 사격을 가하는 총소리가 들렸다고 한다.<sup>188</sup>

포니 승용차(박재영, 황○○, 이○○)

5월 22일 05시40분 광주에서 목포 방향으로 포니 승용차를 타고 가던 황○○ 일행이 2대대 군인들의 사격으로 운전기사 박재영이 사망하고, 황○○과 그의 아내가 총상을 입었다. 총격당한 곳은 나주시 남평 광남식당이 있던 한두재로 당시 제20사단 61연대 수색 중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들은 광주에서 목포로 향하면서 새벽에 61연대 2대대 5중대와 6중대가 지키던 남선연탄 공장 앞 차단선에서 검문받고 통과되었으나 61연대 수색 중대가 지키던 한두재 부근의 차단선에서 멈춘 뒤 총격당한 것이었다.<sup>189</sup>

레커차

5월 22일 07시30분경 광산군 동곡면(현 광산구 동곡동) 면사무소 근처에 있던 하산다리에서 군용 레커차가 추락하여 운전자 황성술과 탑승자 김영두 등 2명이 사망하고 송○○(남, 63년생)이 중상을 입었다.<sup>190</sup>

188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1. 8. 3.), 5~9쪽; 「김○○ 진술」(1980. 6. 16.), 『5·18광주민중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109~113쪽; 「박○○ 진술」(1980. 5. 22., 1980. 6. 9.), 『5·18광주민중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84~88쪽; 김○○ 보상심의자료 1871번 129~175쪽.

189 5·18조사위, 「황○○ 진술녹취」(2021. 1. 28.), 4~5쪽.

190 5·18조사위, 「송○○ 진술조서」(2021. 3. 11.), 6쪽; 「박○○ 진술조서」(2021. 4. 26.), 11쪽; 「우○○ 진술조서」(2021. 5. 26.), 6~7쪽; 「정○○ 진술조서」(2021. 6. 24.), 4~5쪽.

포니 승용차(왕태경, 장○○, 해○○, 임○○)

5월 22일 09시 61연대 2대대 5, 6중대가 남선연탄 공장 앞길에서 광원여객 전무의 승용차를 타고 광주를 빠져나가던 4명의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왕태경이 사망하고 장○○, 해○○, 임○○가 총상을 입었다.

왕태경 일행이 효천삼거리에 진입하면서 도로를 가로막은 여러 대의 대형버스와 그 사이로 군인들이 보였다.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해○○는 연탄공장이 있던 오른쪽 산자락과 그 밑의 논에서 40여 명의 군인들이 매복해 있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운전자 장○○은 연탄공장 앞 도로를 차단한 군인들, 오른쪽 철로 옆 산자락과 왼쪽 산등성이에서도 군인들의 모습을 보았다.<sup>191</sup>

차를 멈추려는 순간 총알이 날아왔다. 왕태경이 머리에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다른 사람들도 어깨와 다리 등에 총상을 입었다. 총격이 멈추자 고개를 들어 밖을 살피는데 이를 본 계엄군의 “살았어요, 대위님!” 소리가 난 뒤 다시 사격이 시작되었다.<sup>192</sup>

2차 총격을 멈춘 뒤 계엄군 2명이 와서 나오라고 했다.<sup>193</sup> 일행은 차에서 죽느니 내려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손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군인들은 50여 미터 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sup>194</sup> 왕태경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있었던 광원여객 공장장 장○○(36년생)은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오른쪽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

이 총격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제20사단 61연대 2대대 정보장교 김길섭 대위는 차 밖으로 소총을 흔들며 다가와 집중사격이 가해진 것이라고 기억했다. 이 진술에 따르면, 500미터 전방에서 소총을 보고 차량에 총격이 시작되었고, 이 총격은 전진하던 차

19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해○○ 진술조서」(1996. 1. 3.), 5쪽.(102-111, 264쪽); 「장○○ 진술조서」(1996. 1. 5.), 2~3쪽.(102-111, 249~250쪽)

19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장○○ 진술조서」(1996. 1. 5.), 3~4쪽.(102-111, 250~251쪽)

193 5·18조사위, 「임○○ 진술녹취」(2021. 7. 7.), 5~6쪽.

19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해○○ 진술조서」(1996. 1. 3.), 3쪽.(102-111, 262쪽)

량이 300미터 전방에 멈출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차단선 현장에 있었던 61연대 2대대 6중대 3소대 이○○ 병장 역시 다가오는 차량에서 소총을 본 것으로 진술했다.<sup>195</sup>

피격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왕태경이 소총을 흔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승용차 안에 있었던 해○○는 소총을 흔들기는커녕 휴대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왕태경이 흔들며 보여주었다는 소총의 행방에 대해 김길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sup>196</sup>

### 3) 남평 간이활주로 봉쇄 작전

61연대 1대대 1중대가 외곽 봉쇄 작전을 담당하던 남평 간이활주로에서는 심각한 충돌이 없었다고 한다. 5월 21일 밤 활주루에 도착한 61연대 1대대 1중대장 조치규 대위는 군용 트럭 4대로 길을 막았는데 5월 22일 07시경 3대의 광주고속버스를 설득하여 충돌 없이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61연대 1대대 1중대 3소대원 김○○ 하사의 진술에 따르면, 5월 21일 부대원들이 타고 갔던 4대의 트럭으로 바리케이드를 삼고 병력은 분산하여 매복해 있었고, 5월 22일 새벽 나주에서 광주로 향하는 7~8대의 시위대 차량이 올라오는 것을 목격했다.<sup>197</sup>

### 4) 행인 등 개별 피해

남선연탄 공장과 한두재의 바리케이드를 지나던 차들이 오전에 피해를 본 반면, 오후

<sup>195</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길섭 진술조서」(1996. 1. 8.), 16~17쪽, (102-104, 303~304쪽); 「이○○ 진술조서」(2021. 11. 22.), 14~15쪽.

<sup>196</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길섭 진술조서」(1996. 1. 8.), 19쪽, (102-104, 306쪽)

<sup>197</sup>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4. 14.), 10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조치규 진술조서」(1995. 1. 24.), 8~9쪽, (102-24, 304~305쪽)

에는 개인들이 피해를 봤다.

송암동 남선연탄 공장 앞에서는 남광식당 직원이었던 박주삼(남, 61년생)이 5월 22일 13시 광주고속버스에 탑승한 20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송암동 남선연탄 공장 앞 야산에서 총격을 받은 뒤,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았으나 계엄군에게 연행되었다. 얼마 후 풀려났지만 총격과 고문의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1981년 8월 25일 사망했다.<sup>198</sup> 나주 남평면 동사리에 살던 제봉사 장○○(남, 56년생)는 5월 22일 송암동 연탄공장 앞에서 오른쪽 요골 및 척골(팔)에 총상을 입었다.<sup>199</sup>

광주 서구 월산 4동에 살던 양희영(61년생)은 5월 21일 집을 나간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다가 가족들에 의해 5월 22일 17시경 백운동 로터리에서 효천삼거리 방면으로 100미터 떨어진 철길 골목(서울장 여관 옆 공터)<sup>200</sup>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함께 있던 시신은 모두 4구였다고 한다. 희생자의 시신은 고향인 영광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가 1987년 망월동으로 이장되었다. 양희영에 대한 검시 관련 자료는 없으며, 1988년 국회 5·18광주 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5월 21일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희영의 동생 양희태는 5월 21일 형과 함께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 상태이다.<sup>201202</sup>

한두재에서는 광주에서 양복점에 근무하던 공○○(남, 62년생)가 5월 22일 11시 남평

198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5권, 673~693쪽; 보상심의자료 1740번 135쪽. 위 자료총서 제25권 238쪽에 실린 적십자병원의 「부상자 실태조사표」에는 박주삼의 이름이 박추상으로 되어 있다. 보상심의자료 1913번 351~391쪽.

199 보상심의자료 1961번 139~171쪽.

200 보상심의자료 1849번 확인서(1989. 1. 27.)에서 정○○는 현장 확인 과정에서 양희영의 시체를 발견한 장소를 백운동로터리 철독 옆 서울장여관 옆 공터라고 했다. 광주시 남구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장 여관의 주소지는 주월동 957번지 15호였다.

201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조사특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소개』, 101~102쪽, (102-112); 보상심의자료 1849번 1~93쪽.

202 보상심의자료 1861번 1~236쪽. 희생자 양희영, 양희태의 큰형 양○○은 당시 군 복무 중이었고 둘째 형 양○○은 영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므로 두 동생의 죽음을 목격하지 못했다. [출처, 5·18조사위, 『양○○, 양○○ 전화통화보고』(2022. 11. 25.)]



으로 귀가하던 중 검문 후 가혹 행위를 당했다.<sup>203</sup> 광주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김○○(남, 50년생)은 광주 상황이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1980년 5월 22일 16시경 자전거를 타고 나주 남평에 있는 처가로 가던 중 한두재 바리케이드 부근에서 계엄군들로부터 충격당하여 우측 대퇴부와 우측 손가락(이지) 절단을 당하는 피해를 보았다. 당시 자전거 앞에는 딸, 뒤에는 아들이 타고 있었고, 아내는 아기를 업고 거리를 두고 따라오던 중이었다.<sup>204</sup>

## 다. 제20사단과 보병학교 교체 전후 민간인 피해

### 1) 민간인 피해

광전교통 버스를 탄 박○○(남, 57년생)이 1980년 5월 23일 11시경 남평 다리를 건너 양쪽에 산이 있는 한두재를 지나다가 산 위로부터 충격을 받았다. 이에 버스가 넘어졌고 박○○은 머리를 버스에 부딪쳐 정신을 잃은 뒤 무안 박병원에서 6일간 치료받았다.<sup>205</sup> 이 때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나주에 살던 김○○(남, 54년생)은 광주에서 시위를 구경하고 귀가하던 중 5월 23일 12시경 남평면 수원리 한두재에서 계엄군에게 잡혀 18시 헬기에 실려 상무대로 끌려갔으며 42일 만에 석방되었다.<sup>206</sup>

5월 23일 14시 배○○ 등 남선연탄 공장 앞 바리케이드를 지나던 민간인들이 계엄군에게 검거된 뒤 대검에 찢리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얼마 뒤 배○○은 풀려났으나 박○○, 김○○ 등의 청년들은 상무대로 이송되어 고문을 수반한 조사를 받고 불법 구금되었다.<sup>207</sup>

203 보상심의자료 2055번 32~60쪽.

20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5.), 2~3쪽.(102~111, 237~238쪽)

205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1. 3. 29.), 5쪽; 보상심의자료 1906번 179~216쪽.

206 김○○ 보상심의자료 1871번 33쪽.

207 배○○ 보상심의자료 1916번 1~27쪽; 박○○ 보상심의자료 1909번 213~252쪽; 김○○ 보상심의자료 2006번

한일운수 차량 정비 견습공 김○○(남, 64년생)가 1980년 5월 23일 15시경 나주시 남평면 입구 광목 간 도로 한두재에서 집단구타당해 이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은 뒤 상무대로 끌려갔다가 7월 5일 석방되었다.<sup>208</sup>

## 2)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와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대의 임무 교대

### 임무 교대

전교사의 조정 지시로 5월 23일 16시 제20사단 61연대 2대대가 상무대를 향해 떠나고 그 자리에 보병학교 교도대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다. 한편, 제20사단 61연대 2대대가 배치되었던 곳에 대한 인수인계는 2대대장 김형곤 중령과 교도 대대장 김호근 중령 사이에 직접 이루어졌다고 한다.<sup>209</sup> 보병학교 교도대대 화기 중대와 전술 2중대가 남선연탄 공장 부근에 배치되었고, 전술 1중대와 전술 3중대가 효천역 부근에 배치되었다.

### 교체된 보병학교 교도대대, 민간인 희생자 시신 목격

5월 23일 11시경 제20사단 61연대 2대대로부터 외곽 봉쇄 작전의 임무를 넘겨받기 시작한 전교사 교도대대가 방치된 민간인들의 시신을 목격했다. 교도 대대장 김호근 중령은 5~6구의 시신과 레커차와 승합차, 승용차가 있었다고 했다. 김호근 중령은 시신이 목격된 장소는 분노처리장 부근이었으며, 5월 23일 저녁에 시신을 수습하러 온 민간인들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했다.<sup>210</sup>

403~448쪽.

20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5.), 1~2쪽.(102~112, 82~83쪽); 김○○ 보상심의자료 1732번 238~246쪽.

209 5·18조사위, 「김호근 진술조서」(2021. 11. 24.), 5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형곤 진술조서」(1995. 2. 20.), 20쪽.(102- 23, 260쪽)

210 5·18조사위, 「김호근 진술녹취」(2021. 11. 24.), 22쪽, 35쪽, 45쪽.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시신을 목격한 보병학교 교도 대대원들은 대부분 화기 중대였는데, 이들이 배치된 곳이 남선연탄 공장 앞 차단선이었다. 화기 중대 1소대장 양○○ 중위는 송암동에 도착하여 파손된 승용차 2대와 레커차 1대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승용차 안에 시신 1~2구가 있었고 얼마 뒤 민간인 3~4명이 가마니를 들고 와서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을 목격했다.<sup>211</sup>

5월 23일 17시경 송암동 차단진지 부근에 도착한 보병학교 교도대대 화기 중대 3소대 박○○ 병장은 마을 주민들이 시체들을 손수레에 싣고 옮기는 모습을 목격했다. 같은 소대 박○ 중사는 송암동에 도착했을 때 끝 채취를 위해 만들어진 천막 안에 시신들이 방치된 것을 목격했다. 화기 중대 5소대원 안○○ 중사는 도로 위에 광전교통 마이크로버스, 브리사 승용차, 군용 5톤 레커차, 2대의 광주고속 직행버스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며, 같은 5소대원 이○○ 상병은 송암동에 도착하여 고속버스 1대, 25인승 버스 1대와 여러 대의 트럭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특히 25인승 버스에는 탄흔이 가득하여 탑승자들이 무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같은 5소대원 강○○ 상병은 탄흔이 남은 버스 1대와 GMC트럭 1대를 목격했다.<sup>212</sup>

효천역 부근에서 나주 방면 도로 차단 임무를 수행하던 전술 3중대 1소대원 정○○ 하사는 17시경 도착 후 대형버스 1대와 도로 아래 개울에서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 1구를 목격했다고 한다. 전술 3중대의 후방에 있던 전술 1중대 행정병(보급병) 고○○ 병장은 식사를 공급하면서 송암동 차단선 부근에 있던 버스 1대와 승용차 1대를 목격했다.<sup>213</sup>

211 5·18조사위, 「양○○ 진술녹취」(2021. 6. 9.), 12쪽.

212 5·18조사위, 「박○○ 진술녹취」(2021. 3. 10.), 6쪽; 「박○ 진술녹취」(2021. 6. 24.), 9쪽; 「안○○ 진술녹취」(2021. 3. 24.), 17~18쪽; 「이○○ 진술녹취」(2021. 4. 23.), 4, 14쪽; 「강○○ 진술녹취」(2021. 5. 14.), 1, 22, 25쪽.

213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3. 2. 1.), 8쪽; 「고○○ 진술녹취」(2021. 9. 14.), 14~16쪽.

## 라. 계엄군 간 교전과 제11공수여단에 의한 민간인 피해

1) 송암동에서 마주친 보병학교 교도대대, 무장 시위대, 그리고 제11공수여단

### 가) 보병학교 교도대대 배치

남선연탄 공장 앞과 효천역 앞 도로에 보병학교 교도대대 4개 중대 600여 명이 주둔했다. 이들은 제20사단이 주둔했던 매복 진지를 모래주머니 등으로 강화했고, 효천삼거리 방면으로 3인 1조인 청음초(聽音哨) 3개를 운영했다.

### 교도대대 병력 배치

광주-나주 간 외곽 봉쇄를 위해 송암동에 배치된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대는 예하 전술 1, 2, 3중대와 화기 중대였다. 교도 대대장 김호근 중령 등의 진술에 따르면, 남선연탄 앞 도로에 설치된 광주 방면의 차단선에는 앞쪽에 화기 중대, 그 뒤로 전술 2중대가 예비로 배치되었고, 효천역 앞 도로에 설치된 나주 방면의 차단선에는 앞에 전술 3중대, 그 뒤로 전술 1중대가 예비로 배치되었다.<sup>214</sup>

교도대대 화기 중대와 전술 2중대가 배치된 곳에는 이미 제20사단 61연대 2대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와 진지, 개인호가 있었다. 무기는 M16소총 외에 M60기관총, M203 유탄발사기가 있었다. 90mm 무반동총은 5월 24일 오전에 보급되었다.<sup>215</sup>

남선연탄 공장 앞 광주 방면 차단을 담당할 화기 중대는 5월 23일과 5월 24일 두 번에 걸쳐 투입되었다. 5월 23일에는 10여 대의 트럭으로, 5월 24일에는 헬기로 이동했다. 1소대는 철로변 논가, 2소대는 심씨 제각 뒤 야산, 3소대는 도로 위 바리케이드에 배치되었다.<sup>216</sup> 3소대 뒤 레커차와 1소대 지역에 90mm 무반동총이 설치되었고 M60기관총이

<sup>214</sup> 5·18조사위, 「김호근 진술녹취」(2021. 11. 24.), 5쪽; 「최○○ 진술녹취」(2021. 9. 17.), 5쪽.

<sup>215</sup> 5·18조사위, 「박○○ 진술녹취」(2021. 3. 10.), 6쪽; 「김호근 진술녹취」(2021. 11. 24.), 5쪽.

<sup>216</sup> 5·18조사위, 「이○○ 진술녹취」(2021. 4. 23.), 20쪽; 「박○○ 진술녹취」(2021. 3. 10.), 11~12쪽; 「김○○ 진술녹취」

바리케이드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었다.<sup>217</sup>

교도대대 병력 중 유일한 총상 부상자였던 화기 중대 1소대 박○○ 상병은 M60기관총 부사수로 5월 23일 2인 1조로 광주 쪽 철길 위 가장 앞에 있는 진지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화기 중대 3소대 박○ 중사는 철길 너머 밭에 있는 참호에 배치되었는데 가까운 곳에 박○○ 상병의 참호가 있었다고 했다. 화기 중대 5소대원 이○○ 상병은 M60기관총 1정과 개인화기를 가진 5~6명의 병력과 함께 제각 방면 야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숙영했으며, 청음초 2명은 커브 길 부근 길 건너편에 배치되었다고 했다.<sup>218</sup> 이 청음초보다 앞쪽에 배치된 부대는 없었다고 한다.<sup>219</sup>

효천역 부근에 배치되었던 전술 3중대 1소대원 정○○ 하사는 17시경 도착하여 대대본부에서 나주 방향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부서진 대형버스 1대로 길을 차단했다. 이 버스에는 “김○○ 석방, 전두환 사형, 조선대 학생회”라는 빨간색 스프레이 글씨가 쓰여 있었다. 그는 길 양쪽 산에 직접 참호를 팠다고 하는데,<sup>220</sup> 제20사단이 주둔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보병학교 교도대대 화기 중대 3소대 박○○ 병장은 무전기를 가진 병사가 산에 있었다고 했으며, 전술 3중대 1소대 정○○ 하사는 송암동에서 무전기를 담당했는데 제11공수여단과의 교전이 벌어지기 직전 대대장과 청음초 사이에 오가는 교신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청음초가 하는 말은 들을 수 없었으나 대대장의 말은 들을 수 있었다.<sup>221</sup>

(2021. 5. 21.), 7쪽.

217 5·18조사위, 「정○○ 진술녹취」(2021. 4. 16.), 7~8쪽.

218 5·18조사위, 「박○○ 진술녹취」(2021. 5. 28.), 11쪽; 「박○ 진술녹취」(2021. 6. 24.), 6~7쪽, 49~50쪽; 「이○○ 진술녹취」(2021. 4. 23.), 3쪽.

219 5·18조사위, 「강○○ 진술녹취」(2021. 5. 14.), 20쪽.

220 5·18조사위, 「정○○ 진술녹취」(2022. 7. 19.), 4~6쪽.

221 5·18조사위, 「박○○ 진술녹취」(2021. 3. 10.), 21쪽; 「정○○ 진술조서」(2023. 2. 1.), 14~15쪽.

### 관측 초소 또는 청음초 운영

제11공수여단에서 작성한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에 따르면, 보병학교 교도대대는 “관측수까지 운용한 매복조”가 있었다.<sup>222</sup> 교도 대대장 김호근 중령과 화기 중대장 김수근 대위 및 남선연탄 앞의 차단선에 있었던 화기 중대원들 진술에 따르면, 전방의 커브 길이 시야를 가리므로 그 부근에 청음초를 배치했다고 한다.<sup>223</sup>

### 보병학교 화기 중대의 바리케이드를 지난 제20사단 61연대 2대대

5월 24일 09시경 송암동 지역을 차단하던 보병학교 교도대대가 광주-화순 간 외곽 봉쇄 작전을 벌이던 제11공수여단, 제7공수여단과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이동하던 제20사단 61연대 2대대의 차량 제대에게 차단선을 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11공수여단 「전투상보」에 따르면, 제20사단 61연대 2대대는 819번 도로와 1번 도로를 통해 송암동 삼거리까지 왔고, 여기에서 다시 지원동으로 가는 비포장도로를 이용했다고 한다. 효천역 차단선과 남선연탄 공장 앞 차단선 사이인 송암공단 입구 도로로 진입했던 것이고, 따라서 화기중대와 전술 2중대는 이 차량들을 목격했지만 전술 3중대와 전술 1중대는 목격하지 못할 수 있다.

### 시민군 장갑차 이동 정보와 90mm 무반동총 배치

화기 중대 2소대장 김○○ 소위는 5월 24일 상무대 연병장에서 보병학교 참모장(대령)으로부터 90mm 무반동총을 가져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시민군에게 탈취당한 장갑차가 나타날 경우 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병학

222 제11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63쪽(104-53)

223 5·18조사위, 「강○○ 통화보고」(2021. 5. 10.), 2쪽; 「김호근 진술녹취」(2021. 11. 24.), 7쪽; 「양○○ 진술녹취」(2021. 6. 9.), 17~18쪽; 「정○○ 진술녹취」(2021. 4. 16.), 7쪽; 「김○○ 진술녹취」(2021. 4. 30.), 58~59쪽.

교 교도대대 화기 중대 3소대원 박○○ 병장은 5월 24일 10시경 “정오까지 장갑차와 600명가량의 시민군이 효천역을 향해 올 것”이라는 정보가 전파되었다고 한다. 이후 처음 출동 장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90mm 무반동총 1정이 배치되었다.<sup>224</sup>

정○○ 병장 일행이 송암동 바리케이드에 도착한 뒤 4대의 무반동총이 배치되었는데, 정○○ 병장이 담당한 무반동총 1층은 레커차 적재함에, 강○○ 상병이 담당한 무반동총 2층은 같은 레커차 운전석 위에 배치되었다. 무반동총이 레커차 위에 설치된 이유는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나머지 3층과 4층은 철길 방면 도랑 언덕에 배치되었다.<sup>225</sup> 무반동총 사이에는 M60기관총 4정이 배치되었다고 했다.<sup>226</sup>

#### 나) 무장 시위대 트럭, 송암동 도착

효덕초 앞에 내린 무장 시위대

도청의 시위대 측에서 무기 회수를 위해 트럭 한 대가 무장 시위대를 태우고 출발했다. 10번 트럭이었다.<sup>227</sup> 도중에 여러 시위 대원들이 트럭에 타고 내렸다. 마지막으로 효덕초 앞에서 내린 무장 시위 대원은 김종철, 박○○(이명 박찬호), 이○○, 이○○(이명 이정남), 최○○, 최○○ 등 6명이었다. 트럭 운전기사는 김○○이었는데, 당시 조수석에도 시위 대원이 있었다.

주민 김○○의 아내 박○○는 무장 시위 대원들이 타고 온 트럭이 효덕초 앞에 있던 식육점 옆집 앞 도로에 멈추는 모습을 목격했다. 목공소를 경영하던 박○○도 이 모습을 목격했다. 윤○○의 아내 김○○은 딸을 찾으러 나왔다가 트럭에서 5~6명의 청년들이 내리

224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5. 21.), 7~8쪽; 「박○○ 진술녹취」(2021. 3. 10.), 10쪽.

225 5·18조사위, 「김호근 진술녹취」(2021. 11. 24.), 36쪽; 「정○○ 진술녹취」(2021. 4. 16.), 6~8쪽. 교도 대대장 김호근 중령(36쪽), 화기 중대 2소대장 김○○ 소위(10쪽)도 레커차에 무반동총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226 5·18조사위, 「강○○ 진술녹취」(2021. 5. 14.), 7쪽.

227 최○○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224쪽.



는 모습을 목격했다.<sup>228</sup>

#### 시위대의 경계 활동과 청음초

무장 시위대를 태운 트럭 운전자는 효천삼거리를 약간 지나 마을 상점 앞에 도착하자 차를 돌려 광주 방향으로 정차한 뒤 적재함에 타고 있던 무장 시위대 일행에게 모두 빨리 내리라고 소리쳤다. 적재함에 탔던 시위 대원들은 왜 이곳에서 내려야 하는지, 무슨 임무를 맡았는지 몰라 내리는 것을 주저했다. 먼저 무장한 청년<sup>229</sup>과 20대 청년이 적재함에서 내렸고, 이어 내린 박○○도 운전자로부터 카빈소총과 실탄을 지급받았다. 이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26세가량의 시위 대원이 적재함에 올라타 나머지 대원 2명에게 카빈소총과 실탄을 나누어 주었다. 이○○은 소총을 받지 않았다.

차에서 내린 6명은 3명씩 나뉘어 도로 양쪽을 경계하는 임무를 받고 움직이려던 순간 “군인이 온다”는 마을 주민의 외침을 들었다.<sup>230</sup> 광주로 되돌아가려던 이○○은 이때까지도 트럭 적재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군 장갑차가 도로 쪽으로 나오는 모습을 본 뒤에야 경찰 방석모를 쓰고 트럭에서 뛰어내려 청색 대문이 있는 집(주민 최○○의 집)으로 피신했다. 트럭의 운전자와 보조원 역시 장갑차를 목격한 뒤 급하게 광주로 돌아갔다.<sup>231</sup>

교도 대대장 김호근 중령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3명의 주간 청음초가 5~6명의 무장 시위 대원들이 차를 세워놓고 효천삼거리로 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sup>232</sup>

228 5·18조사위, 「박○○ 진술녹취」(2020. 9. 15.), 24쪽;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936, 120쪽.(102-11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4.), 2쪽.(102-111, 159쪽)

229 박○○, 최○○ 등 당시 함께 했던 무장 시위대 일행이 조사도 함께 받았으므로 총살당한 1명 외에 나머지 5명 시위 대원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들은 트럭의 적재함에서 가장 먼저 내린 20세가량의 청년의 이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청년이 희생자 김중철로 판단된다. 박○○, 최○○은 그가 청카바 자켓과 검정색 바지를 입었다고 기억했다. 「박○○ 피의자 심문조서」(1980년 7. 9.),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153쪽; 「최○○ 피의자 심문조서」(1980. 7. 10.),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244쪽.

230 「박○○ 피의자 심문조서」(1980. 7. 9.),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151~152쪽.

231 「이○○ 진술서」(1980. 6. 24.),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181, 191쪽.

232 5·18조사위, 「김호근 진술녹취」(2021. 11. 24.), 7쪽.

## 다) 여단 차량 제대 선두, 효천삼거리 도착

제11공수여단, 주남마을에서 송정리 비행장으로 이동

제11공수여단의 전투상보에 따르면, 5월 24일 10시30분 제20사단 61연대에게 외곽 봉쇄 임무를 인계한 제11공수여단은 13시 차량 철수를 개시, 13시30분 차량 이동 간 미상의 폭도로부터 기습 사격을 받았으며, 14시 효천역 전방 500미터 지점(CP078864)에 도착했을 때, 보병학교 매복 병력으로부터 사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sup>233</sup>

광주비행장 이동 명령은 5월 24일 새벽 01시30분에 있었다. 그런데 제11공수여단장 최용 준장의 진술에 의하면, 이동에 대한 지시는 이미 전날인 5월 23일 19시경에 있었다.<sup>234</sup> 제11공수여단 63대대 대대본부 작전병 임○○ 일병에 따르면, 이때 받은 이동 작전 계획은 주남마을을 출발한 차량 제대가 학동, 양동, 돌고개, 농성동, 잣등, 상무대, 서창을 지나 목적지인 송정리 비행장에 도착하는 것이었다고 한다.<sup>235</sup>

## 여단 각 대대의 이동

제11공수여단 예하에는 본부대대를 비롯하여 61대대, 62대대, 63대대가 있었는데 광주에 내려온 뒤 통상 각 대대의 이동은 61대대, 62대대, 63대대의 순서였고 이날의 이동 순서도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63대대가 가장 먼저 출발하게 되었고 이어 61대대, 62대대가 뒤를 이었다. 62대대장 이제원 중령은 63대대가 먼저 출발한 것은 원래 명령서와 다른 것이었다고 진술했으며, 63대대장 조창구 중령 역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철수 순서가 달라졌다고 했다. 61대대장 안부웅 중령은 여단 작전 장교의 구두 지시가 있었고, 61대대의 활동 지역이 산에 있어 철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62제대로 출

<sup>233</sup> 제11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전투상보)」, 55쪽.(104-53)

<sup>234</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용 진술조서」(1994. 12. 27.), 8~9쪽.(102-15, 401~402쪽)

<sup>235</sup> 5·18조사위, 「임○○ 진술조서」(2022. 11. 16.), 37쪽.

발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61대대 본부중대장 정○○ 중위 역시 61대대가 산 중턱에 주둔하고 있어서 집결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61대대 작전장교 최이조 대위는 무전으로 63대대, 직할대, 61대대, 62대대 순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와 3지역대에게 늦게 오라는 무전을 보냈다고 했다.<sup>236</sup>

### 출발 당시 장갑차

선두 장갑차는 529호로 기갑학교 9전차대대 장갑중대 장갑차장 이○○ 중사가 조종했으며, 같은 중대 2소대 운전병 김○○ 상병이 장갑차에 설치된 캘리버50을 잡고 있었다. 이날 출발 당시 이 장갑차에 탄 군인은 2명의 장갑중대원 외에 제11공수여단에서 차량배차를 담당했던 운영장교 강남기 대위, 63대대 정보장교 김진규 대위, 정보하사관 오○○ 중사였고, 전교사에서는 군수지원단 수송근무대 이○○ 하사가 타고 있었다.<sup>237</sup> 선두 장갑차는 소태동 삼거리에 잠시 멈추는 동안 일부 승무원이 바뀌게 되었다. 정보장교와 정보하사관 2명이 내리고 63대대장과 당번병, 작전장교와 작전하사관 4명이 탔다. 한편 또 다른 장갑차 515호는 차량 제대의 마지막 부대인 62대대의 후미를 따라갔다.

### 소태동 삼거리에서 바뀐 선두 차량 제대 순서

63대대 9지역대 8중대 23지대 김○○ 중사는 63대대 8지역대가 제일 먼저 가다가 길

236 5·18조사위, 「최이조 진술조서」(2023. 7. 13.), 30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제원 진술조서」(1995. 6. 26.), 19쪽.(102-17, 700쪽); 「조창구 진술조서」(1994. 12. 14.), 24쪽.(102-15, 169쪽); 「안부웅 진술조서」(1995. 2. 13.), 58쪽.(102-13, 789쪽); 「정○○ 진술조서」(1995. 5. 8.), 12쪽.(102-21, 68쪽). 진술에 따르면, 당시 늦잠을 잔 대원은 61대대 3지역대 장○○ 하사였다고 한다.

237 5·18조사위, 「강남기 진술녹취」(2020. 6. 8.), 20쪽. 「충정작전 서훈 공적 내용」, 58쪽.(104-163) 강남기 대위는 전교사 측에서 안내 하사관이 타고 있었다고 했고, 「충정작전 서훈 공적 내용」에 이○○ 하사에 대해 “충정작전에 참가하여 11공수 (63)대대장과 APC 장갑차에 동승하여 작전임무 수행 중 광주시 송암동에서 폭도들을 제압 전진 중 90mm 무반동총에 직격당해 장렬히 전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을 잘못 들어 주춤하자 뒤따라오던 9지역대가 먼저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했다.<sup>238</sup> 이에 대해 63대대 본부 중대 대대장 당번병 김○○ 병장은 이동 순서가 바뀐 것은 삼거리가 나오자 잘못 간 것으로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sup>239</sup> 길을 잘못 들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63대대장과 본인, 작전장교, 작전하사관이 장갑차에 탔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5월 24일 제11공수여단의 차량 제대가 주남마을을 떠나 송정리 비행장으로 가기 위해 경유했던 도로가 원래 계획된 경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었다.<sup>240</sup> 제11공수여단 63대대 대대본부 작전병 임○○ 일병은 학동, 농성동, 상무대 등 일부 시위대가 장악하고 있던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작전 계획이 있었으나 5월 24일 13시30분경 부대 선두가 소태동 입구에 도착했을 때 부대 이동 경로를 변경한다는 명령이 내려와 원지교에서 차를 돌려 송암동을 향하게 된 것이었다고 했다.<sup>241</sup> 이때 63대대장 등 4명이 변경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장갑차에 탑승했을 수 있다.

소태동 삼거리를 지났을 때, 차량 행렬의 뒷부분에서 트럭에 선탭하고 있던 63대대 작전장교 차정환 대위와 작전하사관 김○○ 상사, 지프차를 타고 따라오던 63대대장 조창구 중령과 대대장 당번병 김○○ 병장이 장갑차에 올라타면서 앞의 김진규 대위와 오○○ 중사는 63대대 차량 제대의 가장 뒤에 있는 2.5톤 트럭에 옮겨탔다.<sup>242</sup> 이제 선두 529호 장갑차에는 63대대장 조창구 중령, 작전장교 차정환 대위, 작전과 김○○ 상사, 대대장 당번병 김○○ 병장 등 모두 8명이 타게 되었다.

238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2. 2. 9.), 60쪽, 70쪽.

239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2. 1. 5.), 4쪽, 하지만 929호 장갑차에 탑승하여 캘리버50을 담당했던 부조종수 김○○ 상병은 우회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출처, 5·18조사위, 「김○○ 진술조사」(2022. 10. 19.), 10쪽.]

240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5. 17.), 23~24쪽; 「임○○ 진술조사」(2022. 11. 16.), 37~38쪽.

241 5·18조사위, 「임○○ 진술조사」(2022. 11. 16.), 37~38쪽.

242 5·18조사위, 「김○○ 진술조사」(2022. 10. 27.), 14쪽; 「김진규 진술조사」(2022. 9. 22.), 51~52쪽; 「김진규 진술조사」(2022. 10. 6.), 12쪽, 16~17쪽. 통신병 권석원 일병도 장갑차에 탑승했다는 진술이 있으나 권석원 일병은 트럭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임○○ 일병의 직접 목격 진술이 있다.

## 2) 제11공수여단 이동 중 발포와 민간인 피해

### 가) 제11공수여단의 효천삼거리 발포 경위

선두 장갑차 등 63대대, 무장 시위대에게 발포

이OO가 운영하던 잡화가게 앞에 선 트럭에서 총을 멘 무장 시위 대원 6명 중 2명이 내려 가게로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나머지 대원 4명은 도로변에 있었다. 당시 가게 앞에는 3~4명의 주민들이 있었다.<sup>243</sup>

시위 대원 최OO는 가게 주인 등 3~4명의 주민에게 군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순간, 가게 주인이 최OO의 뒤를 가리키며 “아, 군인이다!”라고 소리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뒤를 돌아본 최OO는 선두에 장갑차를 앞세운 공수여단의 군용 차량과 군인들을 보았다. 서로의 표정이 보일 정도의 거리였다. 이때 장갑차는 후진하면서<sup>244</sup> 캘리버50기관총 사격을 가했다고 했다.<sup>245</sup>

식육 잡화가게를 하던 이OO는 가게에 들어온 2명의 무장 시위 대원을 보고 놀라 뒤돌아섰는데 이때부터 총격이 시작되었다고 한다.<sup>246</sup>

차량 제대의 선두에 있던 529호 장갑차를 조종했던 장갑중대원 이OO 중사는 삼거리에서 시위대를 보고 사격이 시작되었다고 기억했다. 선두 529호 장갑차 장착 캘리버50기관총 사수였던 운전병 김OO 상병은 5~6명의 시위대를 보고 총격을 가했다. 삼거리에 오기 전부터 총격을 가하면서 이동했다.

선두 장갑차에서는 캘리버50 사수만 총격을 가한 것이 아니었다. 캘리버50 사수의 바로 뒤에는 탑승자들이 경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열 수 있는 해치가 있었다. 함

243 최OO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225쪽.

244 최OO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225쪽. 일부 계엄군은 당시 장갑차가 후진한 이유가 길을 잘못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245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최OO 면담보고』(2006. 9. 13.), 2쪽.(104-110, 173쪽)

246 이OO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141~142쪽.

게 탑승했던 강남기 대위의 자리로 올라온 차정환 대위가 박을 보고 M16소총 사격을 가했다.<sup>247</sup>

공수부대가 마을에 먼저 사격을 가하면서 보병학교 교도대대와 교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보병학교 전술 3중대 1소대에서 당시 무전기를 담당했던 정○○ 하사가 들은 교도대대 본부 대대장 김호근 중령과 청음초 사이의 무전 교신 내용에서도 확인된다.<sup>248</sup>

### 무장 시위대의 발포 가능성 검토

무장 시위 대원 박○○는 최초 진술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갑차가 총을 쏘면서 오므로 카빈소총으로 1발을 사격한 뒤 민가의 방으로 숨었다고 했으나 이후 진술에서는 총을 발사한 사실을 부인했다.<sup>249</sup> 최○○도 최초 진술에서 빨간 셔츠를 입은 사람(박○○)이 장갑차를 향하여 2발을 발사한 뒤 피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진술에서는 “교전이나 발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라면서 앞의 진술을 반복했다.<sup>250</sup> 최○○의 진술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초기 조사에서 자신은 총을 쏠 줄 몰랐다면 수도 수색하며 압박해 들어오는 계엄군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이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박○○와 최○○도 군인을 향해 총을 쏘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에는 총기 조작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을 쏘려 했으며, 총을 쏜 시위 대원으로 박○○ 외에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7월 9일에는 “계엄군을 당시 보지 못했으며 교전이나 발사할 상황이 아니고 무척 급한 상

247 5·18조사위, 『강남기 진술조서』(2023. 2. 16.), 8쪽;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 면담보고』(2006. 9. 15.), 2쪽(104-110, 170쪽); 『김○○ 면담보고』(2006. 9. 19., 9. 29.), 3쪽(104-209, 198쪽)

248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2. 7. 19.), 15쪽.

249 『박○○ 진술조서』(1980. 5. 24.),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132쪽; 『박○○ 진술조서』(1980. 5. 26.),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140쪽; 『박○○ 진술조서』(1980. 7. 9.),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153쪽.

250 『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1980. 5. 26.),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213쪽; 『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1980. 7. 10.),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244쪽.

황이었습니다.”라고 하며 이전의 진술을 부인했다.<sup>251</sup> 최○○의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조사를 받은 이○○ 역시 “상황이 급박하여 총을 쏠 수도 없었습니다.”라고 했다.<sup>252</sup> 박○○와 최○○가 초기 진술한 날은 5월 24일이었고 최○○의 초기 진술은 5월 26일에 있었다. 5월 24일은 제11공수여단의 수색 과정에서 시위대와 마을 주민들이 연행되어 가혹 행위를 당한 날로 시위 대원 김종철이 계엄군에게 살해당한 날이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초기 진술은 자백을 유도하려는 수사기관에 의해 고문과 공포 속에서 이루어졌다.<sup>253</sup>

### 무장 시위대의 피신

무장 시위 대원 최○○은 전교사 군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효덕초 삼거리에서 내렸다. 이때 계엄군 장갑차와 트럭 행렬이 나타났다. 무장 시위대 최○○ 일행을 목격한 계엄군 측에서 총을 쏘기 시작했고 최○○은 총격에 철모가 벗겨지기도 했으나 무사할 수 있었다. 일행을 놓친 이○○은 광주 시내 방향으로 몇 걸음 되돌아가던 중 진제마을 방향의 비포장도로에서 오고 있는 계엄군과 마주치게 되었다.<sup>254</sup>

김종철, 박○○, 최○○ 등 3명은 가게 건너편 길 위에 있던 두 집 중 한 집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마을 주민 김○○의 옆집인 이○○(1907년생, 며느리 문○○)의 집이었다. 최○○과 박○○는 안방으로, 김종철은 부엌으로, 이○○은 화장실로 피신했다. 최○○에 따르면, 당시 안방에는 이○○, 문○○ 부부와 이○○과 막걸리를 마셨던 마을 주민 한 명이 이

251 「최○○ 진술조서」(1980. 5. 24.),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256쪽; 「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1980. 5. 26.),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268쪽; 「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1980. 7. 9.),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282쪽.

252 「이○○ 참고인진술조서」(1980. 7. 7.),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301쪽.

253 최○○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96쪽. 실제 부상당한 생존 무장 시위 대원에 대한 이후 조사를 통해 계엄군 측은 무장 시위 대원들이 먼저 발포했다는 진술을 받기 위해 고문을 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최○○은 가혹 행위가 수반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가 총을 쏘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문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시위 대원들이 자신은 쏘지 않았지만 “최○○이 총을 쏘았다”는 답변을 했다며 물고문과 발바닥을 맞는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254 5·18조사위, 「이○○ 진술록취」(2021. 11. 11.), 10쪽; 「최○○ 진술조서」(1996. 1. 3.), 20쪽.(102-101, 179쪽)



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sup>255</sup>

1980년 7월 이○○의 진술에 따르면, 같은 마을 주민 김○○(남, 63세)과 집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자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썼고 바로 뒤따라 며느리 문○○이 들어왔다. 약 5분 뒤 짧은 머리에 하늘색 체크무늬 와이셔츠와 오렌지색 바지를 입고 총을 든 학생(박○○)이 먼저 들어오고, 이어 부엌을 통해 빨간 타올에 T셔츠, 빨간 추리닝을 입은 장발 청년(최○○)이 들어왔다. 다시 4~5분 뒤 청카바 자켓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또 다른 장발 청년 1명(김종철)이 들어와 모두 6명이 이불을 덮어쓰고 있었다.<sup>256</sup>

계엄군과 마주친 이○○은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서 계엄군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 군인들을 보고 놀란 이○○은 마찬가지로 겁을 먹고 아이들을 부르는 주민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소총이 없었던 그는 손에 방석모를 든 채, 들어오지 말라는 만류를 무릅쓰고 가게에서 가장 가까운 최○○의 집 딸딸 최○○의 방으로 피신했다. 6명 중 혼자만 그 집으로 피신했다. 도랑으로 숨다가 철모에 총을 맞은 최○○은 근처에 있던 마을 주민 김○○의 집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숨었다.<sup>257</sup>

이상을 정리하면 무장 시위대 김종철, 박○○, 최○○는 문○○의 집 안방으로, 이○○은 문○○의 집 화장실로, 최○○은 효천역 방향 문○○ 옆 집인 김○○의 집 화장실로, 이○○은 문○○ 집 건너편 최○○의 집으로 피신했음을 알 수 있다.

255 최○○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226, 231쪽.

256 「이○○ 진술조서」(1980. 7. 1.),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37권, 309~313쪽.

257 5·18조사위, 「이○○ 진술녹취」(2021. 11. 11.), 10~11쪽; 「이○○ 진술녹취」(2021. 6. 13.), 12~13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 진술조서」(1996. 1. 3.), 18~19쪽.(102-101, 179~180쪽)

## 나) 순식간에 확산된 여단 차량 제대 발포와 민간인 피해

### 이동 중 발포

자동차 대열의 가장 앞에 있던 63대대 장갑차의 최초 발포에 이어 후속 트럭에서 사격을 시작했다. 63대대 9지역대 8중대 23지대 김○○ 중사는 제11공수여단을 향해 총알이 날아온 곳이 진행 차량 제대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당시 마을은 왼쪽과 오른쪽에 다 있었다. 사람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앞에서 총을 쏘니 뒤에 있던 병력들까지 양쪽으로 총을 쏘았을 것이라고 했다. 63대대 본부중대장 오○○ 대위는 총소리가 나자 부대원들이 사격을 시작했다고 한다. 63대대 9지역대 8중대 24지대 통신병 이○○ 일병 역시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물체에 사격이 시작되면 덩달아 모두 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다.<sup>258</sup>

63대대 뒤에 따라오던 61대대는 앞에서 총소리를 듣고 표적도 없이 사격했다고 한다.<sup>259</sup> 61대대 2지역대 4중대장 최영준 대위는 진행하던 왼쪽 언덕에서 총소리가 나서 엄호사격을 했다. 그가 말하는 왼쪽 언덕에는 보병학교 교도대대 화기 중대 2소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61대대 정보장교 장두혁 대위 역시 차량 이동 중 도로 양쪽에서 사격이 있었다고 했다. 61대대 1지역대 1중대 박○○ 일병은 천천히 이동하던 트럭 위에서 주변에 사격을 가한 뒤 모등 사이로 쓰러진 아이를 보았다.<sup>260</sup> 이 아이가 희생자 전재수였다.

가장 뒤에 따라오던 62대대 역시 트럭에 탄 채 도로 양쪽으로 사격을 하면서 진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62대대 본부중대장 이인권 대위는 앞쪽 차량에 타고 있던 병력들이 이동하는 트럭에 앞드린 채 길 양쪽으로 사격을 했으므로 이 때문에 다친 민간인들이 있었

<sup>258</sup>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2. 2. 9.), 73~76쪽;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 면담보고」(2006. 3. 21.), 4쪽(104-109, 17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 5. 22.), 5쪽.(102-21, 479쪽); 「오○○ 진술조서」(1995. 5. 29.), 7쪽(102-21, 751쪽)

<sup>259</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정○○ 진술조서」(1995. 5. 8.), 12쪽.(102-21, 68쪽)

<sup>260</sup> 5·18조사위, 「박○○ 진술녹취」(2021. 12. 21.); 「최영준 진술조서」(1994. 12. 16.), 23~24쪽.(102-24, 99~100쪽); 「장두혁 진술조서」(1995. 4. 26.), 13쪽.(102-24, 627쪽)

을 것이라고 했다. 62대대 5지역대장 박동주 소령도 아이들의 피해는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가한 총격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62대대 4지역대 1중대장 정수남 대위는 62대대 차량 제대 중 가장 앞차의 운전보조석에 타고 있었는데, 효덕초를 지나기 전 적재함에 타고 있던 병사들이 총을 쏘는 모습을 보았다. 같은 지역대 3중대장 최상필 대위는 이동하면서 교도대대의 공격을 받기 전 숲에서 사격을 받았다고 했다.<sup>261</sup> 숲에서 총을 쏘았다면 이는 무장 시위대라기보다 보병학교 교도대대 매복 초소의 공격이었다.

#### ○ 민간인 피해

원제마을에 살던 방광범(남, 67년생)은 5월 24일 원제 저수지에서 제11공수여단의 총격에 의해 희생되었다. 당시 여단 차량 제대의 부대 배치 순서로 보아 61대대 또는 62대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격 당시 그는 전남중학교 1학년이었다. 제11공수여단 여단참모부 통근대 문○○ 하사는 저수지에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있던 계엄군들이 총을 쏘는 모습을 목격했다.<sup>262</sup>

진제마을에 살던 노○○(남, 47년생)는 부화장을 하고 있었다. 도로변에 있는 자택(진월동 159-1)에서 낮잠을 자던 중 총성을 듣고 일어났으나 오른쪽 팔과 옆구리에 총상을 입었다. 지혈을 위해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에도 총탄이 집안으로 날아왔다. 지혈시킨 다음 집 밖으로 나왔을 때 효천삼거리 부근에 장갑차 한 대와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선 채 총을 쏘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들이 노○○를 보자 총구를 돌려 집중 사격을 가했다. 노○○에게 총격을 가한 장갑차와 차들은 여단 차량 제대의 후미였다.<sup>263</sup>

261 5·18조사위, 「정수남 진술조서」(2023. 3. 23.), 7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제원 진술조서」(1994. 12. 22.), 32쪽.(102-15, 268쪽); 「이제원 진술조서」(1995. 6. 26.), 19~20쪽.(102-17, 700~701쪽); 「이인권 진술조서」(1995. 5. 26.), 15쪽.(102-21, 676쪽); 「박동주 진술조서」(1995. 5. 29.), 19쪽.(102-21, 740쪽); 「최상필 진술조서」(1995. 3. 28.), 21쪽.(102-24, 451쪽).

262 5·18조사위, 「문○○ 진술녹취」(2021. 3. 25.), 42~43쪽.

263 5·18조사위, 「박○○ 진술녹취」(2021. 10. 19.), 3~6쪽. 보상심의자료 1899번 150~183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

진제마을에 살던 전재수(남, 69년생)는 효덕초 4학년 학생으로 한씨 제각 부근 소나무 숲에서 이동하던 계엄군의 총격에 사살당한 채 발견되었다. 제11공수여단의 총격이 멈춘 뒤 전재수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서 멀어져가는 군인들을 보고 “이놈의 새끼들! 사람을 씌놓고 어쩔거야!”하자 떠나던 군인들이 돌아서서 주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고 한다.<sup>264</sup>

### 3) 계엄군 간 오인 교전과 민간인 피해

#### 가) 제11공수여단, 매복한 교도대대 공격

90mm 무반동총 공격 이전 양쪽 산에서 가한 총격

교도대대가 먼저 공격을 하면서 계엄군 간에 총격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공수여단 측의 인식이었다. 그런데 이 주장은 90mm 무반동총의 공격 이전부터 누군가의 발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보지 않고 지나친 것이었다.

63대대장 조창구 중령은 교전이 시작되기 전에 야산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때의 야산은 금당산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대가 매복해 있던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교도대대 병력이 아닌 무장 시위대에 의한 공격 같다고 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6명의 무장 시위대는 계엄군에게 총격을 가할 처지가 되지 못했으며, 교도대대는 제11공수여단의 공격을 받은 후 반격을 시작했다. 한편, 63대대 8지역대 5중대 15지대 이○○ 중사는 10~20명의 무장 시위대가 사격을 가해왔다고 진술했다. 63대대 8지역대 6중대 17지대 의무하사관 박○○ 하사 역시 무장 시위대가 발포하자 공수부대가 이에 무차별 응사했다고 진술했다. 예비군 복장을 한 사람이 총을

제144116, 『노○○ 진술조서』(1996. 1. 3.), 2~3쪽.(102-111, 165~167쪽)

264 조○○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97쪽.

쏘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이는 공격을 당한 보병학교 교도대대의 청음초가 피신하던 모습과 비슷하다. 63대대 7지역대장 안보영 소령, 61대대 정보장교 장두혁 대위, 62대대 본부중대장 이인권 대위는 교전이 벌어지기 전 양쪽 산에서 먼저 사격을 해와 응사했다고 진술했다. 62대대 4지역대 3중대 9지대 김○○ 일병 역시 옥천사 방면 금당산에서 나는 총소리를 듣고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금당산 방면의 산 중턱에 전교사 교도대대의 매복 진지가 있었으며, 62대대는 차량 제대의 후미 부분에 있었다. 62대대 6지역대 9중대 통신병 경○○ 일병은 숲에 있던 시위대가 사격을 하여 응사한 것이라고 했다.<sup>265</sup> 총을 쏜 자들이 숲에 있었다면 시위대라기보다는 교도대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진술에서 공통되게 확인되는 사실은 제11공수여단의 차량 제대가 전교사 측의 90mm 무반동총의 발사 이전부터 양쪽 산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 공수여단, 교도대대 바리케이드 공격

당시 청음초였던 화기 중대 3소대 강○○ 상병은 효천삼거리를 돌아 나온 장갑차가 교도대대의 바리케이드를 보고 사격을 가하면서 청음초소를 지나는 모습과 이에 교도대대의 화기 중대가 응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시위대를 보고 총격을 시작한 제11공수여단 선두 장갑차가 그 연장선에서 숲속의 교도대대를 시위대로 오인하고 먼저 사격을 가했고 이에 교도대대가 응사를 시작한 것이다.

보병학교 교도대대 화기 중대 3소대원 박○○ 병장은 바리케이드에 있으면서 커브 길을 돌아 나오는 장갑차가 도로 옆 민가를 향해 캐리버50 기관총을 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시민군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화기 중대 3소대 김○○ 상병은 장갑차에서 한 중사가 켈리 .....

265 5·18조사위, 「최○○ 김○○ 진술녹취」(2021. 4. 30.), 35쪽;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박○○ 면담보고」(2006. 9. 14.), 2쪽.(104-110, 180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조창구 진술조서」(1995. 6. 23.), 7쪽.(102-17, 678쪽); 「이○○ 진술조서」(1995. 4. 18.), 11쪽.(102-20, 464쪽); 「안보영 진술조서」(1995. 6. 4.), 13쪽.(102-22, 130쪽); 「장두혁 진술조서」(1995. 4. 26.), 13쪽.(102-24, 627쪽); 「이인권 진술조서」(1995. 5. 26.), 15쪽.(102-21, 676쪽); 「경○○ 진술조서」(1995. 4. 17.), 15~16쪽.(102-20, 380~381쪽)

버50으로 청음초 병력과 차단선 전교사 병력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sup>266</sup>

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 김순현 준장은 여단이 먼저 사격을 하면서 오히려 교도대대가 무장 시위대로 보았다고 한다.<sup>267</sup> 교도 대대장 김호근 중령도 총격받은 청음초 병력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일어나지 않자 죽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 살아왔다고 했다. 교도대대 화기 중대장 김수근 대위는 장갑차가 교도대대 병력을 향해 사격하며 다가오자 청음초 병력 1명이 진지를 벗어나 차단선으로 뛰어오던 중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제11공수여단의 차량 제대에서 먼저 사격을 가해왔다고 했다. 보병학교 교도대대 화기 중대 5소대 무반동총 담당 정○○ 병장은 차단선 전방 도로에서 총소리가 들리면서 청음초 병력이 본대로 뛰어 들어왔는데, 그들의 발밑으로 총탄이 날아와 박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뒤로 장갑차가 청음초 병력을 향해 총을 쏘면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고 했다. 화기 중대 5소대원 강○○ 상병은 장갑차가 커브 길 변에 있던 청음초 병력을 향해 총을 쏘자 병력들이 몸을 웅크리며 숨는 모습을 목격했다. 화기 중대 3소대 김○○ 상병은 장갑차의 캘리버50 기관총이 청음초를 향해 총격을 가하자 강○○ 상병 등 청음초 병력이 이를 피하기 위해 바닥을 구르며 철길을 넘어 본 부대로 복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sup>268</sup>

이상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효덕초 앞 삼거리에서 6인의 무장 시위 대원에게 총격을 가한 제11공수여단은 1번 국도에 진입하면서 양쪽 산에 매복한 보병학교 교도대대의 청음초 또는 매복 진지를 목격하고 총격을 가했고, 이에 교도대대의 매복 진지에서도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고 판단된다.

<sup>266</sup> 5·18조사위, 「강○○ 전화통화(2021. 5. 10.), 2~3쪽; 「박○○ 진술녹취」(2021. 3. 10.), 9쪽; 「김○○ 진술녹취」(2021. 4. 30.), 38쪽.

<sup>267</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순현 진술조서」(1995. 5. 29.), 61~62쪽,(102-21, 814~815쪽)

<sup>268</sup> 5·18조사위, 「김호근 진술녹취」(2021. 11. 24.), 29쪽; 「김수근 통화보고」(2021. 12. 2.), 4~5쪽; 「정○○ 진술녹취」(2021. 4. 16.), 9쪽; 「강○○ 진술녹취」(2021. 5. 14.), 18쪽; 「김○○ 진술녹취」(2021. 4. 30.), 38쪽.

## 나) 교도대대, 무반동총 등으로 제11공수여단 공격

### 교도대대 보병학교 화기 중대의 공격

화기 중대 1소대장 양○○ 중위는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칠 무렵 대대 교육장교가 폭도들이 오고 있으므로 진지 배치를 빨리하라는 무전 연락을 받았다. 이 명령에 따라 식사를 중단하고 진지 배치에 들어갔고, 대대 교육장교는 바로 90mm 무반동총 사수를 찾았다.<sup>269</sup>

보병학교 교도대대 화기 중대 5소대 무반동총 담당 정○○ 병장은 총성과 함께 청음초 병력이 총격을 받으며 피하거나 본부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다. 이 상황에서 김수근 화기 중대장의 사격 준비 명령이 내려졌다.<sup>270</sup> 위 정○○ 병장은 무반동총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박스 상태로 보관하던 중이어서 사격 명령에 즉시 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사이 소총과 기관총, 유탄발사기의 공격이 먼저 시작되었다.

화기 중대 3소대 김○○ 상병은 교도 대대장이 차단선에 접근하는 장갑차를 보고 “야! 저것부터 잡아”라는 명령에 따라 정○○ 병장이 무반동총을 발사했고 이를 기점으로 총격이 시작되었다고 했다.<sup>271</sup>

한편 장갑차 공격을 받자 제11공수여단의 차량 제대가 이동을 멈추었다. 트럭에 탑승한 계엄군들이 하차하며 일부는 차량 주변과 야산으로 산개하면서 교도대대에게 총격을 가했고 교도대대도 이에 응사하였다. 교전은 15분 정도 계속되었는데 오인 교전임을 알게 된 교도대대가 먼저 사격을 멈춘 뒤에도 5분 이상 공수여단의 사격은 계속되었다. 이후 교도대대는 여단 병력에 의해 무장 해제당했다.<sup>272</sup>

화기 중대 5소대원 2총사수였던 강○○ 상병은 90mm 무반동총 발사 후 소총 사격을

269 5·18조사위, 「양○○ 진술녹취」(2021. 6. 9.), 14~15쪽.

270 5·18조사위, 「정○○ 진술녹취」(2021. 4. 16.), 9쪽.

271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4. 30.), 38쪽.

272 5·18조사위, 「정○○ 진술녹취」(2021. 4. 16.), 9~11쪽.



가하면서 차량 대열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군복을 입은 것을 보고 아군임을 눈치챘다고 하며, 화기 중대 1소대장 양○○ 중위에 따르면, 교전 중인 상대방이 계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멈춘 트럭에서 방독면을 찬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모습을 본 뒤부터였다고 한다.<sup>273</sup>

#### 하늘에서 본 송암동 현장

계엄군 간의 교전 상황은 하늘에서도 목격되었다. 먼저 수송용 헬기로 이동하던 제7공수여단 병력들이 지상의 전투 상황을 목격했다. 헬기로 이동하던 제7공수여단 35대대 작전장교 이장수 대위는 도로 위에 차들이 지그재그로 얽혀 야단이 나 있었다고 했다.<sup>274</sup>

하늘에서 현장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차량 제대를 엄호하던 두 대의 코브라 헬기 조종사들이었다.<sup>275</sup> 육군 제1항공여단 31항공단 단장 방영제는 이정부 중령이 제1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코브라 2대에게 무차별 제압 사격을 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육군 1항공여단 31항공단 103항공대 AH-1J헬기 부조종사 구지웅 대위 역시 산 위로 위협사격을 가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sup>276</sup>

#### 다) 90mm 무반동총 피격 후 제11공수여단의 대응 사격

63대대, 61대대, 62대대의 순으로 진행하던 제11공수여단의 차량 제대는 전교사 보병 학교 교도대대의 본격적인 공격과 동시에 전면적인 포위 반격에 나섰다. 가장 먼저 피해

273 5·18조사위, 「강○○ 진술녹취」(2021. 5. 14.), 3, 8~9쪽; 「양○○ 진술녹취」(2021. 6. 9.), 18쪽.

27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장수 진술조서」(1995. 4. 20.), 23쪽.(102-24, 551쪽)

275 제11공수여단 참모장 양대인은 계엄군 간 교전이 있기 전 이미 헬기가 차량 제대를 엄호하고 있었다고 했다.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양대인 진술조서」(1995. 4. 28.), 24쪽.(102-20, 665쪽)]

27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방영제 진술조서」(1995. 5. 17.), 12쪽.(102-21, 404쪽); 「구지웅 진술조서」(1995. 5. 24.), 9쪽.(102-24, 824쪽)

를 본 선두의 63대대는 차량의 좌우로 내려 양쪽의 산과 민가를 향해 소총을 쏘았으며, 61대대와 62대대는 진행이 멈춰진 차량 대오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전교사 보병학교의 매복 진지를 공격했다.

61대대 1지역대장 정태덕 소령은 61대대와 62대대 역시 양쪽으로 사격을 30여 분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61대대 1지역대 3중대장 김영익 대위는 두 번의 “팡”소리를 들었고, 이후 금당산 쪽에서 나는 총소리를 듣고 이 방향의 산속으로 사격을 가했다고 했다. 금당산 자락에는 보병학교 교도대대의 매복 진지가 있었다.<sup>277</sup>

보병학교와 교전이 본격화되면서 62대대에서도 총상자가 나타났다. 교전 지역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6지역대 9중대 통신병 경○○ 일병은 인근 민가를 수색하려던 중 총격당했다고 한다.<sup>278</sup>

제11공수여단의 공격으로 교도대대 측 피해도 있었다. 보병학교 교도대대 화기 중대 1소대 M60 부사수 박○○ 상병은 전방을 확인하라는 명령에 따라 총안구로 살피던 중 왼쪽 어깨가 노출되면서 총격받아 부상당했다.<sup>279</sup>

#### 4) 오인 교전 중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발포

6인의 무장 시위대를 목격한 이후부터 시작된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대와 제11공수여단의 전면적인 교전 과정에서 무차별 발포에 의해 민간인들 총격 피해가 발생했다. 효덕초 운동장에서 김○○, 인성고 입구에서 박연옥, 장철석, 벽돌공장에서 최○○, 김○○, 김○○이 총격으로 사망 또는 부상당했다. 이 외에도 이○○, 김○○, 김평용의 총격 피해 사

27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정태덕 진술조서」(1994. 12. 20.), 28쪽.(102-24, 179쪽); 「김영익 진술조서」(1995. 5. 4.), 18쪽.(102-24, 697쪽)

278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10. 26.), 44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경○○ 진술조서」(1995. 4. 17.), 15쪽.(102-20, 380쪽)

279 5·18조사위, 「박○○ 진술녹취」(2021. 5. 28.), 21쪽; 「광주사태환자명단」, 40쪽.(104-57)

실이 확인되었다.

일성마을 벽돌공장에 피신한 최○○은 일렬로 늘어선 20여 명의 공수부대 군인들이 무차별하게 총을 쏘며 다가오는 모습을 묘사했다.<sup>280</sup>

하수구로 피신하다가 먼저 피신한 박연옥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모습을 목격한 김○○(남, 42년생)은 이후 함께 하수구에 숨어 있다가 항복하며 일어나던 남성이 집중 사격을 받아 죽는 것을 보았다.<sup>281</sup>

철로길 넘어 일성마을에 살고 있던 권근립의 모친 김○○은 교전 후 마을 수색을 벌인 제11공수여단이 마을을 공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sup>282</sup>

시위대 일행이 도피한 집 주인 문○○에 따르면, 계엄군의 집 공격으로 인해 총에 맞은 그릇이 모두 깨졌으며, 텔레비전도 망가졌다. 벽에도 총탄 자국이 가득했고, 마당에까지 탄피가 수두룩했다. 금당이발관 윤○○의 아내 김○○은 철문으로 된 이발소 출입구 문과 안쪽에 있던 화장실 문까지 총구멍이 여러 개 나 있었다고 했다. 벽돌공장에서 총상을 입은 최○○의 아내 엄○○는 군차량들이 지원동 방면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 5·18이 끝났나 보다는 생각을 하고 집으로 가던 순간 군인들이 도로변에 있는 집들을 향해 마구 총을 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일성마을에서 자취하던 남선연탄 공장 직원 서○○은 집안으로 날아드는 총탄 파편을 보고 대문 밖으로 나선 뒤 집 옆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젓소 두 마리를 보면서 몸을 피했다. 하늘에서 헬기가 주민들의 동향을 방송하고 있었고 이를 들은 계엄군이 집집마다 수색을 했다고 한다.<sup>283</sup>

28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 진술조서」(1996. 1. 2.), 3~4쪽.(102-111, 172~173쪽)

28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2.), 3쪽.(102-111, 188쪽)

28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2.), 2쪽.(102-111, 143쪽)

283 5·18조사위, 「문○○ 진술녹취」(2020. 9. 14.), 10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4.), 5쪽.(102-111, 162쪽); 「엄○○ 진술조서」(1996. 1. 2.), 2쪽.(102-111, 181쪽); 「서○○ 진술조서」(1996. 1. 4.), 2쪽.(102-111, 195쪽)

## ○ 민간인 피해

금당마을 효덕초등학교 앞에서는 5월 24일 효덕초 운동장에서 동네 친구들과 놀던 5학년 김○○(남, 69년생)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부상당했다. 학교 운동장에 진입한 계엄군은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했다. 살레시오고 2학년 학생 김평용(남, 63년생)은 영암 본가를 향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14시 효덕초 앞에서 제11공수여단으로부터 양측 족부에 관통 총상을 입고 5월 25일 12시30분 사망했다.<sup>284</sup> 영암초등학교 교감 송정교(남, 29년생)는 5월 24일 15시경 효덕초 앞에서 계엄군의 총격받아 부상당한 뒤 17시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으나 20시40분 사망했다.

인성고 앞에서는 임암동에 살던 박연옥(여, 30년생)은 진흥중학교 1학년인 아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을 찾아가던 중 총소리가 나자 하수구로 피신했는데 계엄군이 하수구 안까지 가한 총격으로 사망했다. 할머니, 형과 함께 광주 서구 광천동에 살던 장철석(남, 62년생)은 5월 24일 12시경 본가가 있던 목포로 가던 중 송암동 인성고 입구에서 공수부대의 총격을 받아 도로변 하수구 콘크리트관으로 피신했으나, 무릎과 양쪽 어깨에 총상을 당했다. 서구 진월동 586번지에 살면서 제지공장 기능공이었던 이○○(남, 48년생)가 5월 24일 오후 라면을 사기 위해 가게에 가던 중 인성고 앞에서 왼쪽 대퇴부에 맹관총상을 입은 뒤 연행되어 전신 구타당했다. 광주시 서구 양림동에 살던 김○○(남, 49년생)이 5월 24일 인성고 앞에서 오른쪽 어깨에 관통상을 당했다.<sup>285</sup> 송하동 13-3에 살던 차○○(남, 52년생)가 5월 24일 집에 가던 중 인성고 정문 앞에서 골반부 관통 총상을 입었다.<sup>286</sup> 30대 여인이 총상 사망한 4세 남아를 군용 지프차에 싣고 와 효덕동 인성고 앞산에 매장했다.

284 국군광주통합병원, 「사망진단서」, 「5·18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79번;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3쪽.(102-214); 모친 이○○ 구술(1999. 3. 23.)

285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5권, 244쪽; 보상심의자료 1888번 263~283쪽.

286 보상심의자료 2071번 164~166쪽.

벽돌제조업 금당산업 직원이었던 최○○(남, 37세)은 인근에 살던 권○○(남, 65세가량), 김○○(남, 당시 55세)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쉬던 중 집중 사격을 받아 복부 등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다. 군인들은 도롯가의 주택을 엄폐물로 삼고 40여 분간 총을 쏘았다고 한다. 총격이 시작되자 가까운 곳을 지나던 사람들과 근처 논에서 일하던 농부 등 20여 명이 공장으로 피신했다.<sup>287</sup> 최○○과 함께 벽돌공장에 있던 김○○(남, 26년생)이 팔이 절단되는 총상을 입었다.

#### 5) 교전이 멈춘 후 수색 작전 등에 의한 민간인 피해

##### 가) 수색, 연행 및 가혹 행위

공수여단은 금당마을 인근에 대한 무차별 사격을 가한 뒤 수색을 시작했다. 젊은 청년들이 보이면 집에서 끌어내 도로변 한곳으로 모았는데, 청년들은 끌려 나오면서부터 구타당했으며 도로변에 끌려 나온 뒤에도 가혹 행위는 계속되었다. 금당마을에서 끌려 나온 사람들은 금성상회 앞 도로에, 일성마을에서 끌려 나온 사람들은 벽돌공장 앞에 집결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 금당마을

계엄군 장갑차와 트럭 행렬로부터 공격을 당해 인근 김○○의 집으로 피신했던 무장 시위대 최○○은 최○○, 이○○, 박○○ 등 다른 시위 대원들보다 먼저 집에서 나와 계엄군에게 체포되었다. 이○○은 이때 체포되지 않았다. 숨이불을 덮고 숨어 있던 이○○은 계엄군의 가택 수색으로 방에서 끌려 나오게 되었다. 맞은편 별채에 있던 40대 주민이 먼저 끌려 나와 있었고 그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자 구타가 시작되었다. 최○○ 등

28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 진술조서」(1996. 1. 2), 2~4쪽.(102~111, 171~173쪽)

무장 시위대 일행이 도피한 집 주인 문○○에 따르면, 마을의 아이들도 계엄군에게 끌려 나갔다.<sup>288</sup>

금당마을에서 가게를 하던 김○○은 대포가 터지는 소리, 빗발치는 총소리가 한참 동안 난 뒤 “사격 중지” 소리를 들었으며, 얼마 뒤 건너편 집과 자신이 사는 집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닫았으므로 이를 열기 위해 소총 개머리판으로 문 유리를 깨는 소리였다. 막걸리를 먹다가 이 소리를 듣고 창고에 숨었던 두 사람이 수색 과정에서 잡혀 연행되었다.<sup>289</sup>

당시 민가를 수색한 계엄군은 소총에 대검을 장착하고 있었다. 금당마을에서 식육 잡화가게를 하던 이○○는 아이들과 함께 두꺼운 이불 속에 숨어 있는 동안 집을 수색하던 계엄군들이 방에 들어와 소총에 장착된 대검으로 이불을 들춰보았다고 진술했다. 부상생존자 김○○의 아내 엄○○도 방 안으로 들어온 계엄군들이 소총에 끼워진 대검을 목에 들이대었다고 했다.<sup>290</sup>

금당이발관을 운영하던 마을 주민 윤○○는 어깨에 총을 맞은 채 김○○의 집 안방으로 들어갔으나 두 명의 군인들에게 끌려 나와 최○○의 집 앞으로 집결 당하면서 피투성이의 젊은 남자 한 명의 시신을 목격했다. 당시 시위 대원 김종철의 시신이 최○○의 집 앞에 있었다. 효천삼거리에서 식육 잡화가게를 하던 이○○는 차가 돌아가는 곳이어서 가게 앞이 계엄군들의 집결지였다고 했다. 가게에 모여 있던 장교들은 이○○ 부부와 가족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집 앞 도로에는 사망한 시위 대원 김종철의 시신이 있었다. 주민 김○○(송암동 43-2 거주)은 계엄군의 총격을 피해 하수구로 피신

288 5·18조사위, 『최○○ 진술녹취』(2020. 9. 14.), 12~13쪽; 『이○○ 진술녹취』(2021. 6. 13.), 23쪽; 『문○○ 진술녹취』(2020. 9. 14.), 11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 진술조서』(1996. 1. 3.), 22쪽.(102-101, 181쪽)

289 김○○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152쪽.

290 이○○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142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 144116, 『엄○○ 진술조서』(1996. 1. 2.), 3쪽.(102-111, 182쪽)

하면서 박연옥과 30대 청년이 총을 맞는 모습을 목격했다. 얼마 뒤 공수부대원 10여 명에 의해 끌려 나온 10여 명이 금성상회(김○○의 집) 앞으로 이동, 집결되었다. 금성상회 앞 도로에는 이미 10여 명이 집결되어 있었다. 모두 30명 정도가 끌려와 무릎을 꿇고 앉아 심사를 받았다. 심사의 기준은 주민인지 아닌지였다.<sup>291</sup>

62대대의 수색은 금당마을에서 이루어졌다. 62대대의 트럭을 타고 있었던 작전보좌관 김옥겸 소령은 무반동총 피격 직후 62대대원들이 하차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한 뒤, 시위대를 색출한다며 인근 마을을 수색하는 모습을 기억했다. 62대대 본부중대장 이인권 대위 역시 무차별 사격 이후 수색 작전을 벌여 시위 대원 3명을 끌고 나와 다른 병력에게 인계했다고 진술했다. 이로 보아 이인권 대위가 수색한 곳은 효천삼거리 부근 금당마을 문○○ 집으로, 연행된 무장 시위 대원 3인은 김종철, 박○○, 최○○였다. 이인권 대위는 이들이 총을 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62대대 4지역대 2중대장 조민선 대위 역시 타고 있던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자 주변 민가를 수색하면서 전경 방석모를 착용한 2~3명을 체포했다. 그는 마을 사람이 아닌 무장 시위대가 가지고 있던 총을 만져보고 사격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시위대 최○○ 일행을 말하는 것으로 4지역대 2중대가 수색한 지역이 금당마을이었음을 보여준다. 위 조민선 대위가 수색하는 모습은 같은 4지역대 1중대장 정수남 대위가 목격했다.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 장 도○○ 중위도 민가 수색에서 방안의 2명을 연행했다고 한다.<sup>292</sup> 62대대 5지역대 6중대 18지대 박○○ 중사도 마을을 수색하면서 민간인 희생자를 목격했으며 연행된 민간인들이 길옆에 무릎이 꿇려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집에서 총과 실탄 등을 가져왔다는 것으

291 이○○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142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 144116, 「문○○ 진술조서」(1996. 1. 2.), 3쪽.(102-111, 151쪽); 「김○○ 진술조서」(1996. 1. 2.), 5쪽.(102-111, 190쪽)

292 5·18조사위, 「정수남 진술조서」(2023. 3. 23.), 6쪽;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한○○ 면담보고」(2006. 10. 24.), 8쪽.(104-209, 352쪽); 「도○○ 면담보고」(2006. 10. 9.), 5쪽.(104-209, 237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 144116, 「김옥겸 진술조서」(1995. 6. 16.), 12~13쪽.(102-22, 525~526쪽); 「이인권 진술조서」(1995. 5. 26.), 15~16쪽.(102-21, 675~676쪽); 「조민선 진술조서」(1995. 4. 19.), 15~16쪽.(102-20, 480~481쪽) “제가 가져온 총을 만져보았는데 사격을 한 사실은 없었고.”(앞의 진술조서 16쪽)



로 보아 같은 곳을 수색한 것으로 판단된다. 62대대 6지역대장 유재영 소령의 진술 역시 금당마을 수색 사실을 보여준다. 3명의 시위대를 잡아왔고, 카빈소총도 보았다.<sup>293</sup>

### 일성마을

남선연탄 운전직 직원으로 송암동 일성마을에서 자취생활 하던 서○○은 헬기에서 “시위대가 마을로 들어갔다”는 방송이 나온 뒤 수색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금당마을에서 목공소를 하던 박○○은 총격을 피해 집에 피신해 있던 중 가택을 수색하던 계엄군에 의해 끌려 나가 길가에 있던 벽돌공장 앞으로 나갔는데 얼마 뒤 마을 청년들이 잡혀 왔고, 마을 주민임을 확인한 뒤 풀어주었다고 했다. 일성마을에서 자취하던 남선연탄 공장 직원 서○○은 집중 사격 후 집 밖으로 나와 소총에 대검을 장착한 계엄군이 집마다 수색하는 모습을 보다가 들켜 잡혔다.<sup>294</sup>

63대대의 수색은 일성마을에서 진행되었다. 63대대 본부중대 대대장 당변병 김○○ 병장은 가다가 포를 맞았으므로 안개가 자욱했다고 했다. 그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 문을 따고 나오자 총격전을 보았으며, 보리밭에서 헬기를 타기 위해 가다가 시민들이 잡혀 무릎을 꿇린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sup>295</sup>

63대대의 바로 뒤에 있던 61대대는 교도대대의 공격을 폭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색을 하면서 차량 대열의 앞쪽으로 이동했다고 한다.<sup>296</sup> 61대대 1지역대 3중대 7지대 우○○ 일병은 남선연탄 공장 뒤 마을, 즉 일성마을을 수색했다고 진술

293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박○○ 면담보고」(2006. 12. 12.), 4~5쪽.(104~210, 133~134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유재영 진술조서」(1995. 4. 21.), 20쪽.(102~20, 545쪽)

294 5·18조사위, 「서○○ 진술조서」(2020. 10. 26.), 8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936쪽, 120쪽.(102~11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서○○ 진술조서」(1996. 1. 4.), 2~3쪽.(102~111, 195~196쪽)

295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2. 1. 5.), 7~8, 57쪽.

296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2. 7. 13.), 39쪽.

했다. 61대대 1지역대 3중대장 김영익 대위는 자신들은 산속으로 사격을 했을 뿐 수색한 사실은 없으며 63대대가 머리를 깎은 무장 시위 대원 2명을 수색하여 잡았던 것이라고 했다.<sup>297</sup> 63대대가 오른편의 민가에서 수색하여 잡았다는 것, 머리가 짧았다는 것으로 보아 시위 대원이라는 이들 두 명은 비록 도청에서 왔다고 했다지만 최○○ 일행이 아니라 남선연탄 공장 직원인 임병철, 선반공 김승후일 수 있다.

보병학교 교도대대의 공격을 피해 트럭에서 뛰어내리다 넘어져 크게 다친 61대대의 2지역대 5중대 15지대 손○○ 일병은 사격 후 금당산 방면을 수색하다가 아래쪽 마을의 한 청년이 누군가의 총격에 의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총상을 입은 청년이 집으로 피신하자 손○○ 일병 등이 마을로 내려가 집에서 끌어냈다. 이들은 어깨에 관통상을 당한 모습을 보고 응급치료 없이 중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피는 많이 나지 않았지만 상처 부위가 크게 부어 있었다고 했다.<sup>298</sup>

61대대 2지역대 6중대 16지대장 오○○ 중위는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내려 금당산 방향으로 남선연탄 공장까지 가택 수색을 하면서 이동했는데 세 채가 모여있는 곳에서 청년 3명을 보고 “나오지 마라”하고 계속 수색했다. 그런데 나중에 듣기로 나오지 말라고 했던 청년 3명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sup>299</sup>

남선연탄 운전직 직원으로 송암동 일성마을 철로 부근에서 자취생활을 하던 서○○(남, 55년생)은 1980년 5월 24일 점심 식사 중 총성과 함께 총탄 파편을 본 뒤 집 밖으로 나갔으나 계엄군에게 연행되어 구타당해 앞니 4개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서○○은 헬기장 근처 밭에서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당한 기억에 대해 진술했다. 체포당할 당

297 5·18조사위, 「우○○ 진술녹취」(2021. 12. 15.), 28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영익 진술조서」(1995. 5. 4.), 18쪽.(102-24, 697쪽)

298 5·18조사위, 「손○○ 진술녹취」(2022. 7. 21.), 87~90쪽.

299 5·18조사위, 「오○○ 진술조서」(2023. 2. 3.), 18~19쪽.

시 계엄군은 착검한 소총을 겨누었다고 진술했다.<sup>300</sup>

## 나) 임의 처형

### 금당마을에서 김종철 사살

5월 24일 14시경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 살던 무장 시위 대원 김종철(남, 62년생)이 효천역 부근의 계엄군을 견제하기 위해 최○○ 등 5명과 함께 트럭을 타고 왔다가 금당마을 문○○ 댁에 피신하던 중 보병학교와 교전을 치른 제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2중대장 조민선 대위, 본부중대 이인권 대위 등의 수색 과정에서 체포되었으며, 62대대 6지역대 선임하사관 강○○ 상사 등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종철, 최○○와 함께 문○○의 집에 숨었던 박○○는 총소리가 멈춘 뒤 수색하던 군인들에게 잡혀 나왔는데, 이때 계엄군이 자신과 최○○ 사이에 서 있던 김종철을 총으로 쏘았다고 했다.<sup>301</sup> 최○○에 따르면, 자신의 오른쪽에 있었던 시위 대원 김○○이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어 희생되었다고 했다.<sup>302</sup> 이○○은 체포되어 도로변으로 끌려 나온 뒤 바로 자신의 뒤에 있던 한 시위 대원이 총을 맞는 느낌이 있었다고 했다. 즉결처분당하듯이 무릎을 꿇고 앉은 채 총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가 직접 목격한 모습은 쓰러진 시신의 포승줄을 대검으로 잘라내는 것이었다고 한다.<sup>303</sup>

300 5·18조사위, 『서○○ 진술조서』(2020. 10. 2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서○○ 진술조서』(1996. 1. 4.), 1~4쪽, (102-111, 194-197쪽)

301 “한참 있다가 총소리가 멈추자 군인들이 총부리를 들이대고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하고 같이 밖으로 나왔어요. 또 한 사람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을 총으로 쏘버리더라고.……그 사람 이름은 모르고, 나보다 나이가 더 먹은 것 같던데. 키는 짝간해, 서로 이름도 모르제.”[박○○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137쪽.]

302 “내 우측이었잖습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총알이 김군 머리를 뚫고 저한테도 오겠구나. 그러면 나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최○○ 구술, 『나뭇가지가 하얗게 쏟아지던 날』(2021), 광주광역시 남구청, 232쪽.]

303 5·18조사위, 『이○○ 진술녹취』(2021. 6. 13.), 30쪽.

사건 발생 직후 최○○의 집 대원제복사 앞에 있던 시신을 직접 옮겼던 안○○은 시신의 머리에 총상으로 보이는 큰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문○○은 체포된 시위대 4명 중 1명이 도로 건너편 최○○ 맥(대원제복사) 대문 앞에서 사살당했다고 진술했다. 그 옆에는 사로잡힌 시위 대원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었다.<sup>304</sup>

제11공수여단 62대대 6지역대 본부 최○○ 중사는 수색하여 연행한 시위대 한 명을 오발 사고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오른쪽 등에 관통상으로 사망했는데, 방아쇠에 손을 건 채 총으로 찌르다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다. 실탄이 들어있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sup>305</sup>고 했지만 당시가 교도대대와 교전한 직후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는 총살 장소가 주민들이 오가는 도로변이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그가 사망한 장소는 문○○과 최○○의 집 사이 대원제복사 앞 도로로 지금은 광주대사거리 제2순환로 효덕교 아래 부분이다.

62대대 6지역대 7중대 19지대 양○○ 일병은 62대대 한 상사가 끌려 나온 무장 시위대 한 명(닝마주이로 보였다고 한다)의 등에 총을 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어 다른 상사(최○○ 또는 최○○ 상사)가 “이 새끼 살아있네”하면서 머리에 확인 사살을 가했다. 시신은 그대로 두고 거적매기 같은 것으로 덮어놓고 갔다. 그가 동료 계엄군에 의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군은 위 희생자 외에 전투경찰 방석모를 쓴 사람까지 모두 두 사람이었다.<sup>306</sup>

계엄군 사망 및 부상자는 헬기에 의해 후송되었다.<sup>307</sup> 민간인이나 무장 시위대 부상자 역시 후송되었으나 무장 시위대 김종철의 시신은 방치되었다.<sup>308</sup> 효덕초 옆에 살면서 공수

304 5·18조사위, 「안○○ 진술녹취」(2021. 10. 21.), 54~55쪽; 「문○○ 진술녹취」(2020. 9. 14.), 12쪽;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6. 1. 4.), 4쪽.(102~111, 161쪽)

305 5·18조사위, 「최○○ 진술녹취7」(2021. 10. 19.), 14, 17쪽.

306 5·18조사위, 「양○○ 진술녹취」(2021. 10. 28.), 46~52쪽.

30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웅 진술조서」(1994. 12. 27.), 9~11쪽.(102~15, 402~404쪽)

308 5·18조사위, 「최○○ 진술조서」(2020. 7. 26.), 15쪽. 참고인인 1980. 7. 1. 상무대 조사과정에서 현장 검증 중 송양

부대의 수색으로 연행당한 무장 시위 대원의 죽음을 목격한 주민 안○○은 5월 24일 16시경 같은 마을 주민 김○○, 정○○과 함께 모두 4구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가장 먼저 대원 제복사 앞에 있던 시신을 육교 부근(지금 5·18유적비에서 30미터 정도 광주 방면 이동)으로 옮겼다고 했다.<sup>309</sup> 이 장소는 일성마을 피해자 권근립, 김승후, 임병철의 시신이 있던 곳이다. 한편, 김○○(시위 대원 최○○이 숨었던 집의 주인)의 아내 박○○은 수습해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시신은 사건 발생 후 3일 정도 지금의 버스정류장 옆 공원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했다.<sup>310</sup>

5월 21일부터 5월 26일 사이에 연고가 확인되지 않는 시신이 발견될 경우 시위대가 장악한 구역에서는 도청으로 이송된 반면, 계엄군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거적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5·18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던 광주시청 사회과 공무원 조○○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나 효덕동 주택 옆 논바닥에서 20세 정도의 청년 남성이 총상을 입은 채 사망한 시신을 1구 발견하여 상무관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sup>311</sup>

김종철의 시신은 5월 29일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채 전남대학병원에서 검시되었으며, 생존 연행자 남○○ 유족이 오인 인수하여 광주공원묘지에 묘지번호 59번으로 5월 30일 매장되었다.<sup>312</sup> 한편, 김종철의 행방을 찾아다니던 유족들은 7월 7일 집에 있는 옷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았고, 이를 가지고 광주경찰서로 찾아갔다. 이후 주민등록증의 좌우 엄지손가락 지문 대조로 경찰서가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에게 묘지 번호 59번이 김종철이라

.....  
 동에서 이○○(1907년 생)으로부터 사건 당일 오후 이 시신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금당산 기슭에 묻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며느리 문○○은 이에 대해 시아버지로부터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5·18조사위, 「문○○ 진술녹취」(2020. 9. 14.), 23쪽.]

309 5·18조사위, 「안○○ 진술조서」(2023. 4. 6.), 2, 6쪽.

310 5·18조사위, 「박○○ 진술녹취」(2020. 9. 15.), 21~22쪽.

31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조○○ 진술조서」(1996. 1. 9.), 5쪽.(102~113, 444쪽)

312 「수사보고(최규하 및 광주사태 사망자 165명)」(102~84, 405~407쪽)

고 알려왔다고 한다.<sup>313</sup> 「시체인도인수증」에 따르면, 희생자의 시신이 인도된 날은 7월 9일이었다.<sup>314</sup>

일성마을 권근립, 임병철, 김승후 사살

포항제철소 직원으로 송하동 58-2(묘법사) 거주에 살았던 권근립(남, 55년생)은 5월 24일 15시30분 등에 계엄군의 총을 맞고 손가락 부분은 대검에 잘린 채로 사망했다. 같은 마을 청년 임병철, 김승후 등 2명도 함께 총살당했다.<sup>315</sup>

제11공수여단 군수처 운영장교 강남기는 당시 잡혀 온 사람들은 10~20명이었는데 여성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4~5명의 공수부대원들이 하수구 고랑으로 잡혀 온 사람들을 대검으로 찌르면서 가혹 행위를 저질렀으며, 얼마 뒤 나타난 한 장교가 잡혀 온 사람에게 등 뒤에서 소총을 쏘았다고 한다.<sup>316</sup> 하천에서 자행된 이 상황은 권근립, 임병철, 김승후의 사살 당시와 일치한다.

송암식당(송암농장) 김○○은 주민 3명이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법륜사 뒤로 간 뒤 총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이 절은 묘법사였을 것이다. 권근립의 모친 김○○은 제11공수여단의 무차별 총격이 끝난 뒤 아들을 찾아다니다가 묘법사 앞 철길에서 1명의 시신, 도랑에서 아들과 마을 청년 등 2명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다.<sup>317</sup>

63세대 7지역대 3중대 7지대 나○○는 수로가 있던 철로변 집에서 연탄공장 회사원 등 2명의 청년이 잡혀 와 구타당한 뒤 수로 위에서 세 발씩 총격에 사살당하는 모습을 목격

313 김○○ 구술(1988. 9.)

314 광주광역시, 「시체인도인수증」(104-229, 19쪽)

315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27쪽.(102-219); 「5·18 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58번; 광주지방검찰청 공안과, 「권근립」, 971~982쪽.(102-84)

316 5·18조사위, 「강남기 진술녹취」(2020. 6. 8.), 2, 4쪽.

31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 12. 29.), 8쪽.(102-111, 275쪽); 「김○○ 진술조서」(1996. 1. 2.), 2~3쪽.(102-111, 143~144쪽)

했다. 당시 지휘관은 “저 새끼들 살려놔 봐야 나중에 골치 아파!”라고 했고, 이 말을 들은 3중대원 한 명이 수로 위에 엮어놓은 뒤 머리에 총을 쏘았다. 이어 확인 사살도 있었다. 7지역대 본부 인사계 선임하사관 박○○ 상사가 연발로 사망자들의 등에 총격을 가했다. 63대대 9지역대 8중대 24지대 박○○ 일병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박○○이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모습을 목격했다.<sup>318</sup> 위 박○○ 상사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해남 등 전남지역 피해

### ○ 나주

검시 자료에 따르면, 나주 성북동에 살던 이○○(남, 63년생)은 5월 21일 17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망하여, 6월 16일 나주읍 대호리 소재 공동묘지에서 검시되어 차량 사로 판단되었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살던 광신여객 운전기사 이○○(남, 50년생)은 5월 24일 동료기사 박○○이 운전하는 용달차를 타고 나주 공산면으로 가다가 영산포에서 검문받던 중 총상을 입었다. 오발 사고였다고 한다.<sup>319</sup>

### ○ 함평

함평에 주둔하던 179지단 제717 예비군 대대는 버스 3대에 탑승한 차량 시위대가 5월 21일 11시30분 함평읍 파출소에 도착했고, 이중 버스 2대, 약 100명이 11시35분부터 23시10분경까지 군부대 앞에서 대치했다. 5월 23일에는 학교사거리(부대에서 8km 떨어진 집)를 차단하고 검문을 시작했다.<sup>320</sup>

318 5·18조사위, 「나○○ 진술녹취」(2021. 10. 14.), 83~84쪽; 「박○○ 진술녹취」(2021. 2. 17.), 27쪽.

319 이○○ 보상심의자료 2042번 91~131쪽

320 제31사단, 「전투상보」, 32~39쪽.(104-50)



함평읍에 살던 김○(남, 60년생), 김○○(남, 61년생), 오○○(남, 56년생)<sup>321</sup>은 5월 21일 광주에서 온 시위 대원들이 버스를 타고 함평에 와서 광주의 실상을 호소한 뒤 영광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 이어 5월 22일 11시경 함평 장날 김○○ 등이 주도하여 200~300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시민궐기대회<sup>322</sup>가 함평공원에서 열렸다.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가 나왔다. 궐기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구호를 외치며 시내로 들어왔다. 이 가운데 일부는 흥분하여 12시30분 함평전화국을 점거했으며, 13시30분 함평경찰서를 습격했다.<sup>323</sup> 이후 30여 명의 시민들이 지프차를 선두로 함평터미널에 세워진 목포 삼양시내버스 등 두 대의 버스를 타고 광주로 출발했다. 하지만 나주 남평 비행장에서 막히게 되었다. 이 때 모인 수십 대의 차량에는 무기가 몇 개 없었으므로 무기를 얻기 위해 해남 군부대로 이동했다. 하늘에는 헬기가 따라왔고 군부대에 도착했으나 부대 주위에는 이미 기관총 등으로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다. 시위대는 이에 다시 나주 남평활주로로 갔다가 목포로 내려가던 중 5월 23일 새벽에 함평에 도착했다. 함평군청에 연락하여 총과 실탄을 반납하고 해산했다고 한다.

무안읍에 살던 이○○(남, 61년생)는 5월 23일 10시경 학교사거리에서 왼쪽 대퇴부에 세 발의 총격받았다. 같은 때 목포 택시 운전자 김○○(남, 54년생)은 서울을 가려는 시민을 태우고 무안 일로면, 몽탄면, 함평군 엄다면으로 나와 함평군 학교사거리(함평역 부근)에 왔을 때, 무장 군인들의 검문에 걸려 구타당했다.

나주에 살던 박○○(남, 61년생), 김○○(남, 57년생)은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영암에서 탄 2명 등과 함께 가다가 5월 22일 해남 우슬재에서 총격받아 해남에 들어가지 못하고

321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 10. 5.), 2~3쪽; 「김○○ 진술조서」(2022. 10. 5.), 2~4쪽; 「오○○ 진술조서」(2022. 10. 5.), 2~3쪽.

322 511사업단 「광주사태수사결과(전남합동수사단)」 자료 92쪽에 일시별로 시위대의 움직임을 정리하였는데, “동일(5월 22일) 영광, 함평, 완도, 승주 등지에서 시민궐기대회”라고 하여 함평에서 시민집회가 있었음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323 511사업단 「광주사태수사결과」

강진군 성전면에서 하루를 보낸 뒤 5월 23일 16시 목포로 가던 중 함평 학교사거리에서 연행되어 함평 전경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함평군 신광면 배○○(남, 59년생)는 김○○, 김○○, 조○○, 채○○, 조○○, 홍○○, 배○○(남, 60년생) 등과 함께 5월 19일 12시부터 24시까지 트럭을 타고 함평 일대에서 시위를 하다가 5월 22일경 함평경찰서에 검거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sup>324</sup>

### ○ 무안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또는 왕산리)에는 제31사단 61훈련단 (93연대) 2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5월 21일 무안에 도착한 시위대는 목포로 이동하거나 무안 해제면까지 진출했다. 무안버스터미널에는 500여 명이 운집하기도 했다. 군청 옆에 있던 무안읍 파출소에서 무기가 탈취되었지만 곧 한 시민의 설득으로 반납되었다고 한다. 일부 시민들은 시위대의 호소에 동참하여 광주로 가는 차에 탔지만 진입에 실패하고 2~3일 동안 전남지역에서 시위했다고 한다.

5월 22일 지산부대 앞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고 시민들의 이동이 통제되었다. 목포에 살던 태원여객 운전기사 김○○(남, 35년생)은 5월 22일 22시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국도상에서 계엄군의 검문에 불응한다며 총격받고 오른쪽 발목과 왼쪽 무릎에 총상을 입었다. 목포 죽교동에 살던 김○○(남, 55년생)도 5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검문에 불응한다며 총격당해 손과 고관절에 부상을 입었다. 목포 서산동에 살던 용다방 주방장 김○○(남, 55년생)는 차량 시위에 참여했는데 5월 24일 18시30분경 무안읍으로 가던 중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군부대 앞에서 총격받아 손가락에 총상을 입었다. 한편, 의정부에 살던 임소레(여, 23년생), 김병권(남, 57년생), 김병태(남, 66년생) 등 일가족 3명은 가족의 장례를 .....

<sup>324</sup> 이○○ 보상심의자료 1943번 174쪽; 김○○ 보상심의자료 1471번 1~86쪽; 박○○ 보상심의자료 2041번 106~154쪽; 김○○ 보상심의자료 2042번 283~328쪽; 배○○ 보상심의자료 1425번 1~78쪽; 배○○ 보상심의자료 1425번 79~210쪽.

치르기 위해 무안 몽탄면 다산리 고향에 왔다가 박광진(남, 75년생)을 데리고 돌아가던 중 5월 20일 10시30분 몽탄 사창역에서 광주역으로 가는 여수행 완행열차를 탄 뒤 행방 불명되었다.<sup>325</sup>

○ 목포

목포에 시위대 차량이 나타난 날은 5월 21일이었다. 목포 대성동에 살던 목포대생 박○○(남, 59년생)는 5월 21일 저녁 목포 각 곳에서 시위하던 차량들이 저녁 목포역앞에 모였다. 이후 며칠 동안 목포역장실이 시위대의 모임 장소로 쓰였다. 목포역 앞에서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11시부터 집회가 있었다. 목포 시내버스 태원여객 운전기사 이○○(남, 55년생)는 5월 21일 10시경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가 방치된 것을 보고 회사에 가져다주려던 중 시위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차량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목포역 앞에 18시에 모이는 내용을 방송했다. 차량 방송은 5월 23일까지 했다. 26일 총을 반납하고 27일 가두 행진을 했다. 시위가 있는 동안 500미터 이상의 도롯가가 목포 시민들로 가득 찼다고 한다. 시위에 참여하던 복학생 김○○(남, 57년생)는 100여 명과 함께 45인승 버스 3대에 타고 목포를 향했다. 도중에 200~300정의 소총을 확보했다. 목포에 도착하여 시내를 몇 바퀴 돌면서 광주의 실상을 알렸다. 목포에 도착한 뒤에 도청 앞 발포로 사망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15시부터 16시까지 흰 천과 국화꽃을 준비해 분향소와 연단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모았다. 7천여 명이 모였다. 대회 후 광주로 올라왔다. 목포시 서산동 명신이밭소 종업원 배○○(남, 44년생)은 시위대 버스를 탔다. 같은 날 광주로 올라가려고 목포 시내를 벗어나 무안의 저수지 근처 아세아 자동차 운전학원 앞 차단선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막혔다. 차 안에서 끌려 나와 예비군 훈련을 받던 군부대(무안 삼향

.....  
<sup>325</sup> 김○○ 보상심의자료 1873번 133쪽; 김○○ 보상심의자료 1898번 76~128쪽; 김○○ 보상심의자료 2029번 257~286쪽; 임소레 등 보상심의자료 2088번 1~211쪽.

읍 지산리)로 연행되었다.<sup>326</sup>

5월 22일 신원미상의 23세가량 청년이 목포시내 시위 중 차에서 추락하여 뇌진탕을 당했다. 목포적십자병원에서 5월 23일 사망했다. 5월 31일 13시 무안군 삼양면 옥암리(현 목포시 옥암동) 소재 공동묘지에 가매장되었다.<sup>327</sup>

목포시 산정동에 살던 운전기사 정○○(남, 51년생)은 5월 23일 안면부 관통창을 입어 목포 콜롬반 병원에서 97일간 치료를 받았다. 노동력 상실률은 100%였다. 목포역 앞 오거리 기다림 음악다방 주방에서 일하던 김○○(남, 55년생)는 과일을 사러 가다가 총을 맞은 버스 기사를 목격했다. 두 대의 버스가 보였는데 광주에서 내려오다가 총을 맞은 것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정○○을 목격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산군 본량지서 야간타격대 방위병 정○○(남, 59년생)은 5월 20일 광주공원에서 시위에 참가한 뒤 5월 21일 삼도에서 송정리로 나왔다. 삼양타이어에서 카고 트럭에 타고 시위를 했으며, 5월 22일 노안초등학교에 있는 광주고속 시외버스를 타고 가던 중 송정리비행장 입구 검문소에 막혀 해남 군부대로 가게 되었다. 5월 23일 무안 삼향읍 지산리 예비군부대에서 체포되었다.<sup>328</sup>

#### ○ 영암

목격 주민 진술에 따르면, 광주에서 온 시위대 버스가 영암에 처음 나타난 때는 5월 21일 11시경이었다. 이를 보고 이○○, 전○○, 이○○, 한○○, 유○○이 나주 반남면에서 버려진 택시를 타고 영암을 돌며 시위를 했다. 운전은 이○○이 했다. 5월 22일 차가 좁아 1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금지저수지에서 학생 7~8명을 태우고 시종파출소 뒷산에서 총

<sup>326</sup>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2. 10. 11.), 4쪽; 「양○○ 진술조서」(2022. 11. 23.), 4쪽; 「이○○ 진술조서」(2022. 10. 6.), 2~3쪽; 「김○○ 진술조서」(2022. 8. 10.), 3쪽; 「배○○ 진술조서」(2022. 8. 3.), 2~3쪽.

<sup>327</sup> 광주시, 전라남도 사망자 관련철, 525쪽, 527쪽; 「5·18관련사망자검시내용」 11번.

<sup>328</sup>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 1. 12.), 2쪽; 「정○○ 진술조서」(2022. 9. 20.), 2~3쪽; 정○○ 보상심의자료 1966번 252~289쪽

기를 습득했다. 경운기로 2만 발 정도의 실탄을 옮기는 중대장과 방위병을 보고 빼앗아 영암으로 갔다. 하지만 이후 영암산악회 사람들에게 무장해제당한 뒤 해산되었다.

농사를 짓던 이○○(남, 50년생), 박○○, 신북고등학교 2학년생 박○○(남, 60년생), 서○○(남, 64년생) 등은 5월 21일 신북터미널에서 시위대를 목격하고 5월 22일 10시경 2.5톤 트럭으로 차량 시위대에 합류했다. 시종파출소 뒷산에서 매장된 300여 정의 소총을 발견하여 실탄은 없었으나 이를 가지고 21시경 나주시청에 모였다. 광주로 올라가다가 나주대교 부근에서 헬기를 보고 영암으로 돌아와 신북중학교에서 잠을 잤다. 5월 23일 영암초등학교에서 무장해제를 당한 뒤 연행되었다.

5월 21일 신북터미널에 온 시위대 차량에 올라탄 신북면 사람들도 있었다. 박○○(남, 58년생)은 김○○, 현○○, 김○○ 등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함평을 거쳐 목포로 갔다. 20시경 나주에서 모여 광주로 향하다 송암동에서 총격받았다.

덕진면에 살던 서○○(남, 40년생)은 광주 소식을 듣고 버스 2대에 70여 명과 함께 신북면을 경유하여 광주로 출발했다. 광주로 가던 중 10여 대의 버스가 나주경찰서에 집결하여 무장했으나 먼저 갔던 버스로부터 효천역에서 군인들의 총격에 죽고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영암으로 돌아왔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가 집인 전남대 농대 1년 박문규(남, 62년생)는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에 가담하고 5월 22일 친구 서○○과 함께 시위대 차를 타고 와 성산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마을 친구 김○○(남, 62년생), 김○○(남, 60년생), 서○○(남, 60년생), 강○○ 등 4명과 함께 신북지서를 습격하기로 모의한 뒤 5월 23일 20시경 신북면 이천리 한세다리 부근에서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치며 다니다가 이천리 2구 앞 국도에서 이천리 주민 이○○ 등 10여 명과 충돌하여 사망했다. 경찰은 초기에 신북면 이천리 주민 이○○의 오토바이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라이트가 깨지자 주민들 간의 패싸움으로

비화되어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sup>329</sup>

#### ○ 영광

묘량면 연암리에서 상점을 하던 이○○(남, 54년생)이 5월 21일 21시(또는 17시) 영광군 묘량면 연암리 밀재에서 군인 7~8명에게 구타당했으며, 같은 날 23:00 영광읍 단주 3리에 있는 3대대 사무실에서도 구타당했다. 5월 21일 17시경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 3명이 영광 밀재를 차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의 통행을 제재하기 위해 돌과 나무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가 연행된 것이었다.<sup>330</sup>

#### ○ 해남

해남에는 제31사단 93연대 2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제31사단 93연대 2대대장 장운태 중령에 따르면, 5월 22일 21시 우슬재에 40명, 마산면 상등리에 10명을 배치했다.<sup>331</sup>

5월 21일 10시30분경 광주에서 온 시위대가 처음 목격되었다. 일반 트럭 1대와 지프차 1대였다. 트럭 적재함에는 6~7명이 타고 있었고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다. 공수부대가 광주시민을 살상하고 있다는 내용을 호소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sup>332</sup> 시위대는 제31사단 93연대 2대대 앞에서 5월 21일 19시30분, 5월 22일 08시40분, 16시05분 등 세 차례 대치했다.<sup>333</sup>

329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2. 10. 19.), 2쪽; 「전○○ 진술조서」(2022. 10. 19.), 2~3쪽; 「박○○ 진술조서」(2022. 10. 19.), 2~6쪽; 「서○○ 진술조서」(2022. 8. 3.), 2~3쪽; 「이○○ 진술조서」(2022. 10. 19.), 2~3쪽; 「박○○ 진술조서」(2021. 5. 12.), 2~3쪽; 「서○○ 진술조서」(2022. 10. 19.), 2~3쪽; 박문규 보상심의자료 1176번 270쪽.

330 이○○ 보상심의자료 1949번 125~135쪽.

331 「장운태 진술조서」(1995. 6. 2.), 6~8쪽.(102-22, 51~53쪽)

332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 10. 13.), 2~3쪽.

333 제31사단, 「전투상보」, 27~29쪽.(104-50)

### 해남읍 백야리 제31사단 93연대 앞

김○○(남, 61년생)은 5월 23일 01시40분경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군부대 앞길에서 군의 총격으로 파편상을 입었다.<sup>334</sup> 광주에서 5월 20일 시위대 차량에 탑승한 담양공업고등학교 2학년생 한○○(남, 63년생)은 해남에서 차량 시위 활동을 하다가 광주를 향하려 했으나 도로가 차단되자 다시 돌아와 해남, 완도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5월 23일 해남 모 군부대 인근에서 차량 탑승자 전원이 군부대로 연행되었다. 6월 30일경 석방되었다.<sup>335</sup>

### 해남읍 해리 우슬재

5월 23일 03시 검은색 관용 지프차 1대와 2.5톤 트럭 1대로 영암을 출발한 차량 시위대는 04시56분(또는 05시30분) 해남읍 해리 우슬재 바리케이드에서 제31사단 93연대 2대대 40명의 공격을 받아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총상을 입었다.

처음 나주에서 출발했을 때 김○○가 운전하던 관용 지프차에는 7명, 강○○이 운전하던 트럭에는 5명이 타고 있었다. 해남 우슬재에 도착했을 때 아래 입구에는 재를 넘지 못하고 기다리던 배○○ 등 4명이 있었다. 이들은 뒤에 있던 2.5톤 트럭에 탔다. 일행이 16명이 된 두 대의 차량은 우슬재 정상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보고 멈추었지만, 매복하던 계엄군이 트럭을 향해 경고사격했고 트럭에서도 공포탄을 쏘았다. 직후 계엄군의 매복을 눈치챈 트럭과 지프차는 방향을 돌려 황급히 도망가려 했는데, 트럭은 총격받으면서 우슬재를 벗어났으나 지프차는 도로 옆 도랑에 빠졌다.

김○○가 운전하던 지프차에서는 유○○이 총상을 당했으며, 김○○, 박○○, 서○○, 유○○, 이○○은 총상을 당하지 않았으나 체포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 포승줄에 묶여 7명

334 보상심의자료 1469번 69~161쪽.

335 보상심의자료 2032번 300~311쪽.



이 모두 군부대로 끌려갔다.<sup>336</sup>

지프차의 뒤를 따라 우슬재에 오르던 2.5톤 트럭은 강OO이 운전했으며 보조석에는 김귀환과 강OO이 타고 있었다. 강OO, 김귀환(사망), 구OO, 배OO이 총격받았으며, 정OO, 이OO 등은 총상을 당하지 않았으나 체포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 강OO의 구술에 따르면, 김귀환은 차 보조석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총격받아 사망한 것이었다.<sup>337</sup>

#### 마산면 상등리 남부산업 앞

5월 23일 10시 50여 명이 탑승한 광주고속버스 2대가 진도를 다녀오다가 10명의 계엄군이 배치된 마산면 상등리 남부산업 앞 도로에서 총격받아 박영천이 사망하고 김OO, 정OO이 총상을 입었으며, 김OO 등이 체포되어 해남읍 백야리 군부대로 끌려가 구타당했다. 부상자들은 이후 강진도립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사망자는 해남군에서 지원한 관에 넣어 부대 내 임시 안치되었다.<sup>338</sup>

336 김OO 보상심의자료 2050번 252~278쪽; 김OO 보상심의자료 2050번 279~301쪽; 박OO 보상심의자료 2029번 205~252쪽; 이OO 보상심의자료 1441번 72~75쪽; 『서OO 진술조서』(2022. 11. 30.), 3~5쪽; 유OO 보상심의자료 1936번 254쪽; 유OO 보상심의자료 1507번 1~98쪽; 이OO 보상심의자료 1441번 1~106쪽.

337 서OO 구술자료(1999. 5. 2.); 강OO 보상심의자료 1864번 306~323쪽; 구OO 보상심의자료 1095번 149~150쪽; 배OO 보상심의자료 1916번 73~76쪽; 배OO 구술자료(1999. 4. 14.); 이OO 보상심의자료 2035번 144~147쪽; 이OO 구술자료(1999. 4. 13.); 이OO 보상심의자료 2025번 249~307쪽; 김OO 보상심의자료 1871번 39쪽; 정OO 보상심의자료 2047번 185~224쪽; 정OO 보상심의자료 1249번 113~197쪽.

338 박영천 보상심의자료 1848번 136~169쪽; 김OO 보상심의자료 1875번 1~33쪽; 정OO 보상심의자료 1966번 127~136쪽; 김OO 보상심의자료 1413번 221~299쪽.

### 3. 광주-송정(국군광주통합병원)

#### 가. 외곽 봉쇄 작전을 위한 부대 배치

##### 군 투입 직전의 화정동 일대 현황

5월 21일 08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온 제20사단 차량이 농성동 사거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국군광주통합병원 앞 도로로 집결하여 계엄군의 시내 진입을 가로막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국군광주통합병원 입원 기록에 따르면 계엄군 부상자는 5월 19일 제11공수여단 2명, 5월 20일 제11공수여단 4명, 5월 21일 제3공수여단 5명 등 8명이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5월 21일까지 상무대에서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이르는 도로에 군의 통행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제20사단 62연대 3대대 한○○은 당시까지 국군광주통합병원 앞 도로의 시위대가 병원을 드나드는 차량을 막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자신도 국군광주통합병원에 들어가서 농성동 쪽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62연대 3대대가 도로를 차단했던 이유가 군인들 치료를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5월 21일 저녁 시민군들이 상무대로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sup>339</sup>

하지만 5월 21일 부상당한 계엄군이 5월 22일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5월 23일 입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군광주통합병원 김연균 원장의 수기 기록인 「5·18 입원환자 현황」(1980년 5월)에는 5월 23일 제11공수여단 김○○, 조○○, 한○○, 제3공수여단 강○○의 입원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5월 21일 광주-화순 간, 광주교도소 입구 등에서 부상당했다. 이는 시위대에 의해 계엄군의 국군광주통합병원 앞 도로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도로가 통제된 때는 5월 22일 오전부터로 판단할 수 있다.

339 5·18조사위, 「한○○ 진술녹취」(2021. 4. 20.), 11~12쪽.

### 외곽 봉쇄 작전의 시작과 대처

제20사단 61연대 1대대의 도청 제11공수여단 교대 명령이 실행되지 못한 뒤 5월 21일 18시20분 외곽 봉쇄 작전 명령이 내려왔다. 제20사단 62연대 2대대장 이종규 중령은 5월 21일 17시 연대장으로부터 부상자 치료 목적으로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출동하여 상무대 쪽으로 시위대가 없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sup>340</sup>

제20사단 전투상보에 따르면, 5월 21일 18시20분경 제20사단 62연대 2대대가 국군광주통합병원 입구에서 시민들과 대치했다.<sup>341</sup> 2대대장 이종규 중령은 상무대와 국군광주통합병원 중간지점에 600~700명의 군중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었고, 18시20분 2대대가 국군광주통합병원 입구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고 진술했다.<sup>342</sup>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5중대장 이상균 대위는 그 위치가 병원에서 상무대 방향으로 약 1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했다.<sup>343</sup>

### 전차와 장갑차 배치

제20사단장 박준병 소장은 기갑학교 교장에게 전차 지원을 요청하였고 6대의 전차 중 3대가 제20사단에 배속되었다.<sup>344</sup>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6중대장 이기양 대위는 5월 21일 오후 기갑학교 앞 도로로 집결하여 대형을 갖추고 시위대와 마주 대치했다. 늦은 밤 탱크 3대가 지원되어 2대대 전방에 배치되었는데, 시위대 측에서는 타이어를 불태우면서 구호를 외쳤다고 했다.<sup>345</sup>

340 5·18조사위, 「이종규 진술조서」(1995. 6. 23.), 8쪽.(102-23, 41쪽)

341 제20사단, 「전투상보」

342 5·18조사위, 「이종규 진술조서」(1995. 6. 23.), 7~8쪽.(102-23, 40~41쪽)

343 지금의 지하철 쌍촌역과 운천역의 중간 지점을 말한다. 광주 보안사가 있었다;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상균 진술조서」(1995. 6. 8.), 4쪽.(102-24, 885쪽)

34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박준병 진술조서」(1995. 3. 21.), 31쪽.(102-16, 78쪽)

34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기양 진술조서」(1994. 12. 27.), 9쪽.(102-24, 230쪽)

## 나. 5월 22일 국군광주통합병원 사건

### ○ 작전 명령, 남화맨션 등 관측 지점 점령 및 수색

5월 22일 15시 국군광주통합병원을 17시까지 확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sup>346</sup> 이 명령이 내려온 직후 7중대 1소대가 병원 측 관측 고지에 해당하는 남화맨션 옥상을 점령했다. 7중대 1소대장 박○○ 중위는 도로변(우측 남화맨션 방면) 민간 건물 4층 옥상을 점령하고 도로 아래를 관찰하면서 수색대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sup>347</sup> 제20사단 작전요도에 따르면, 한성아파트 방면에는 5중대가 담당했다.

작전이 시작되자 이들은 비록 정조준은 아니었으나 일부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이 때문에 도로변에 있던 같은 계엄군으로부터 오인을 받아 사격을 당하기도 했다.

5월 22일 16시 전차가 있던 방면에서 62연대 장교들이 집결하여 작전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에 따라 17시 7중대와 8중대가 도로 양옆에 있는 민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7중대는 전진하는 도로의 오른쪽을 담당했는데 그쪽에는 남화맨션과 국군광주통합병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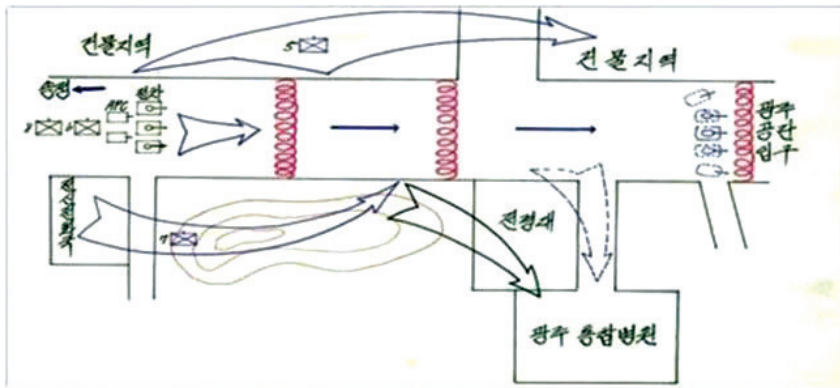
### ○ 제20사단 62연대 2대대의 전진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6중대장 이기양 대위는 5월 22일 16시 대대장이 중대장들을 탱크 쪽으로 집결시켜 국군광주통합병원 탈환 작전 명령을 내렸다. 6중대가 탱크 3대를 이끌고 도로를 따라 국군광주통합병원 쪽으로 전진했으며, 5중대와 7중대 등 2개 중대는 도로 양옆으로 각각 언덕과 민가 지역 뒷길을 따라 진출했다. 나머지 8중대는 예비로 운영되었다.

<sup>346</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중규 진술조서」(1995. 6. 23.), 10쪽, (102-23, 43쪽)

<sup>347</sup>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3. 8.)

중대로 돌아온 중대장은 60명 정도를 선발하여 실탄을 장전하고 탱크 뒤에 20명씩 뒤따르도록 했다. 대대장의 작전개시 명령을 무전으로 받고 소대장 일부와 함께 탱크에 타고 앞으로 나아갔다.<sup>348</sup>



〈그림 4-2-1〉 광주국군통합병원 진입로 확보 작전 요도

주위 건물의 옥상에는 수색조에 해당하는 7중대 1소대원 등이 건물의 옥상들을 점령하면서 군인들이 전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도로를 따라 전진하는 군인들은 좌우의 인도를 따라 전봇대 등을 은폐물, 엄폐물로 삼아 구간 전진을 했다.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6중대 2소대 하OO 상병은 중대장과 소대장이 장갑차에 탑승한 채로 전진했으며 사병들은 도롯가에서 전진했다고 했다.<sup>349</sup>

34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기양 진술조서」(1994. 12. 27.), 9쪽.(102-24, 230쪽)

349 5·18조사위, 「하OO 진술요지」(2022. 11. 30.), 2쪽.

○ 총격의 시작

제20사단장 박준병 소장은 5월 22일 17시 제20사단 62연대 2대대가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으로부터 부상자 치료를 위해 국군광주통합병원 도로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진하던 중 주공 고층아파트에서 사격이 가해져 교전이 전개되었다고 했다.<sup>350</sup>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5중대장 이상균 대위는 앞쪽 봉고차에서 총을 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 APC와 병력이 시위대와 대치선을 넘어가자 몇 분 지나지 않아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의 총소리는 시위대의 것으로 생각하여 대오를 지어 가던 병력이 일순간에 도둑가의 배수로 등으로 산개했다. 시위대들이 계속 사격을 가해오므로 사격을 요청하였다. 6중대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자 응사를 허용했다.<sup>351</sup>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6중대장 이기양 대위는 6중대 사병 1명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는 무전 연락이 있었다고 했다. 확인해보니 1명(2소대 하○○ 상병)이 어깨 부위 관통상을 입었고, 이에 사격을 건의했으나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다시 1명(김○○ 일병)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대대장이 위협 사격을 승인하여 사격이 개시되었고 시위대는 두블력이 떨어진 공단 입구까지 후퇴했다.<sup>352</sup> 제20사단 62연대 2대대장 이종규 중령은 무전으로 6중대장으로부터 민간인의 사격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sup>353</sup>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5중대 1소대 송○○ 하사는 사격이 시작되자 좌우 측 배수로를 통해 계속 나아갔다.<sup>354</sup>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5중대장 이상균 대위는“저희 중대원들이 주위 건물을 향해 사격하는 것은 저도 보았으며, 앞에 가던 병력이 사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상식적으로

35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박준병 진술조서」(1995. 3. 21.), 32쪽.(102-16, 79쪽)

35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상균 진술조서」(1995. 6. 8.), 9~10쪽.(102-24, 890~891쪽)

35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기양 진술조서」(1994. 12. 27.), 10쪽.(102-24, 231쪽)

353 5·18조사위, 「이종규 진술조서」(2023. 2. 21.), 5쪽.

354 5·18조사위, 「송○○ 진술녹취」(2021. 4. 27.), 11쪽.

생각할 때는 시위대가 사격할 때, 앞에 가던 병력도 이에 대해서 응사를 하면서 전진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시위대들이 주택이나 옥상 등에서 총을 쏘았으므로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sup>355</sup>

#### ○ 한성아파트 방면

##### 사망자

쌍촌동에 살던 함광수(남, 63년생)는 5월 22일 17시 내방동 자택(쌍촌동, 주소지는 화정동 856-17) 옥상에서 구경 중 피격 사망했다.<sup>356</sup>

내방동에 살던 벽돌공장 노동자 조규영(남, 42년생)은 5월 22일 18시 한성아파트 뒤 벽돌공장 공사장 모래더미 위에서 계엄군을 구경하다가 복부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sup>357</sup>

내방동에 살면서 화정동 벽돌공장일을 돕던 임정식(남, 62년생)은 5월 22일 17시 인천 약국 뒤에 숨어 있다가 다리에 총격을 당한 외삼촌(손○○)에게 가던 모친을 발견하고 뛰어나가다가 총을 맞고 쓰러졌다.<sup>358</sup>

형, 동생과 함께 대건신학대에 살던 김영선(남, 59년생)은 5월 22일 18시 광산구 비아에 살고 있던 모친의 약을 사드린다고 집을 나섰다가 집 앞 골목(대건신학대 앞)에서 좌측 흉부 관통총상을 당해 사망했다.<sup>359</sup>

완도에 살던 김재평(남, 51년생)은 출산한 아내를 보기 위해 완도에서 광주로 왔다가 5월 22일 17시50분 국군광주통합병원 옆 이층집에서 턱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sup>360</sup>

35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상균 진술조서」(1995. 6. 8.), 10~12쪽.(102-24, 891~893쪽)

356 함○○ 구술자료(1988. 8.)

357 이○○ 구술자료(1988. 9.)

358 임○○ 구술자료(1988. 9.)

359 김○○호, 최○○순 구술자료(1999. 1. 26.)

360 고○○ 구술자료(1988. 9.)



## 부상자

화정동이 집인 인천 중앙직업훈련소 2학년생 최○○(남, 55년생)은 1층은 가게, 2층은 체육사인 자택 건물의 옥상에서 역기를 하던 중 척추에 충격받았다.<sup>361</sup>

광산군 송정읍에 살면서 일신방직에 근무하던 이○○(여, 60년생)은 차가 끊겨 친척 집인 서구 내방동 한성아파트 207호에서 지내던 중 거실로 갑자기 날아온 총탄을 오른쪽 가슴에 맞고 의식을 잃은 뒤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sup>362</sup>

내방동 한성아파트 401호에 살던 김○○(여, 17년생)은 집 안에서 창을 통해 밖을 쳐다보던 중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sup>363</sup>

내방동(835-40)에서 자취하던 전○○(남, 62년생)은 (5월 23일)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광주로 진입할 때 자취집 근처 가게에 빵과 라면을 사러 나갔다가 오른손 약지에 총상을 입고 골목으로 피신했다가 연행되었다.<sup>364</sup>

쌍촌동에 살면서 학동에서 미장원을 경영하던 최○○(여, 41년생)은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150미터 떨어진 집에서 17시 뉴스를 보다가 두려운 생각에 2층으로 올라갔다가 방안으로 날아온 총탄에 우측 상박골 총상을 입고, 21시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sup>365</sup>

내방동 839-13에 살던 손○○(남, 43년생, 희생자 임정식의 외삼촌)는 집 근처 인천 약국 뒤에서 왼쪽 대퇴부 파편창 총상을 입고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았다.<sup>366</sup>

361 최○○ 구술자료(1989. 4.), 보상심의자료 1978번 306~353쪽.

36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조서」(1996. 1. 3.), 1~2쪽.(102-111, 453~454쪽); 보상심의자료 1946번 56~89쪽.

363 김○○ 보상심의자료 1870번 225~275쪽.

364 보상심의자료 2010번 217~251쪽.

365 최○○ 구술자료(1988. 1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 진술조서」(1995. 1. 3.), 1~3쪽.(102-111, 448~450쪽)

366 보상심의자료 1992번 159~210쪽.

화정동 740-51에 살았던 김○○의 모친 손○○(여, 50년생)은 왼쪽 아래턱에 맞으며 목 뒤로 관통되는 총상을 입고 101일간 조선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총탄이 아들 김○○(76년생)의 오른 손목을 관통했다.<sup>367</sup>

내방동 840-45에서 자취하던 서석고 3학년 박○○(남, 62년생)은 자택 2층 거실에서 뒷창문을 통해 큰 도로를 살피던 중 얼굴과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sup>368</sup>

서석고 3학년 학생 김○○(남, 61년생)과 이웃에 살던 이○○(남, 60년생)은 5월 22일 국군광주통합병원 근처에서 연행되어 구타당한 뒤 상무대,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sup>369</sup> 구타당해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군인들 차에 태우려는 순간군인(변광열 일병)이 어깨에 총을 맞아 도로에 떨어졌다.

화정동(319-8)에 살던 석산고등학교 2학년 박○○(남, 62년생)은 (5월 20일 14시경) 동네 슈퍼마켓에 가던 중 포박되어 트럭에 실렸다. 이때 뒤에 있던 경계병(변광열 일병 추정)이 총격당해 등 뒤에서 쓰러졌다.<sup>370</sup>

#### ○ 남화맨션 방면

##### 사망자

화정초등학교 맞은편 쌍촌동에 살던 이매실(여, 12년생)은 5월 22일 18시 2층 방에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있던 중 방안으로 날아온 총알이 턱에 맞아 사망했다.<sup>371</sup>

367 조선대병원 진료기록부 7쪽; 「손○○ 진술서」(1996. 1. 6.), 2쪽.(102-111, 459쪽); 보상심의자료 1923번 355~416쪽.

368 보상심의자료 48번.

369 김○○ 보상심의자료 1332번 1~114쪽; 이○○ 보상심의자료 1947번 288~326쪽.

370 보상심의자료 2855번 1~136쪽.

371 김○○ 구술자료(1999. 3. 16.)

부상자

쌍촌동 1002-41 딸 집에 있던 김○○(여, 33년생)가 총상을 입었다. 사망자 이매실의 옆집이다.<sup>372</sup>

쌍촌동 대건신학대학 옆에 살던 유○○(남, 45년생)과 그의 딸 유○○(여, 71년생)가 총상을 입었다. 장갑차가 지나는 모습을 보고 문을 닫는 순간 유○○의 턱에 총을 맞았고, 옆에 있던 딸 유○○도 파편에 맞아 눈과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다.<sup>373</sup>

화정동에 살던 임산부 이○○(여, 57년생)는 살던 집이 잣등 육교와 50미터 거리 떨어져 있었는데, 도로에서 이동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육교 쪽으로 향해 있는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육교 방면에서 날아온 총알이 오른쪽 눈 아랫부분을 맞고 오른쪽 귀로 관통했다.<sup>374</sup>

화정동(750-17)에 살던 효광여중생 전○○(여, 67년생)는 우완관절 파편창을 입고 국군광주통합병원에서 3주일 입원 치료했다.<sup>375</sup>

오빠 송○○이 사는 남화맨션 A동 501호에 놀러왔던 송○○(여, 58년생)는 갑자기 나는 총소리를 듣고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목 밑 가슴에 총을 맞고 정신을 잃었다.<sup>376</sup>

내방동에 살던 강○○(남, 28년생)는 잣등 목욕탕 앞(화정국민학교 앞)에서 가슴에 유탄을 맞고 목욕탕 뒤에 있는 집 부엌에 숨었다가 군용 트럭에 실려 상무대로 가 헌병대에 감금당한 채 가혹행위를 당했다.<sup>377</sup>

화정동(776-42)에 살던 서석고등학교 교사 임○○(남, 51년생)은 5월 22일 18시 국군광주통합병원 뒤 화정동 남화맨션에 사는 동료 교사 집에 다녀오다가 병원 앞 육교에서

372 김○○ 보상심의자료 5159번  
 373 유○○ 구술자료(1989. 1.); 유○○ 보상심의자료 1936번 257~287쪽; 유○○ 보상심의자료 1936번 168~188쪽.  
 37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조서』(1996. 1. 3.), 1~3쪽.(102-111, 462~464쪽)  
 375 국군광주통합병원 입원기록  
 376 보상심의자료 1681번 1~132쪽.  
 377 강대정, 강○○ 구술자료(1988. 10.); 강○○ 보상심의자료 1866번 225~251쪽.

올라오던 계엄군에게 연행되었다.<sup>378</sup>

### ○ 잣등 도로

#### 부상자

최○○(남, 61년생)은 학동에 살면서 공용터미널 부근 공업사에 다니던 중 퇴근 후 5월 22일 17시30분 화정동 이모 집으로 가던 중 잣등에서 계엄군 5~6명에게 구타당해 실신했다.<sup>379</sup>

광산군 서창면 마룩리에 살던 김○○, 임○○, 차○○이 5월 22일 16시 계엄군에게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sup>380</sup> 김○○(남, 54년생)은 도망치다가 총을 맞은 30대 아주머니(공군 상사 김○○의 아내 손○○, 33세)와 아이(김○○, 5세)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 중 계엄군에게 구타 후 상무대로 잡혀갔다.(5월 22일~7월 3일) 손○○과 김○○은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광산군 서창에 살던 선반공 임○○(남, 60년생)는 누나 집을 다녀오던 중 국군광주통합병원 근처에서 총소리가 나자, 골목길로 피하던 중 피정센터 근처에서 친구 차오진과 마을 선배 김○○을 만나 함께 달렸으나 막다른 골목에서 매복한 계엄군에게 총격당하자 가정집으로 들어갔다가 총을 맞은 여성을 발견하고 지혈한 뒤 그 집 지하에 숨었다. 지하에는 중년 남성 1명과 젊은 여성 2명이 먼저 숨어 있었고 수색하는 포승줄에 묶인 채 계엄군에게 모두 연행되었다. 차○○(남, 60년생)은 가혹행위를 받으며 총기를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강요받았다.

쌍촌동에 살던 김○○(남, 50년생)은 5월 22일 17시 화정동 잣등 육교 밑을 지나다 근처 미장원으로 들어가 숨었으나 따라 들어온 군인들이 개머리판으로 때렸다. 깨어보니

378 보상심의자료 2019번 94~131쪽.

379 보상심의자료 1998번 430~457쪽.

380 김○○ 보상심의자료 1127번 701쪽; 임○○ 보상심의자료 2049번 352~353쪽; 차○○ 보상심의자료 2048번 274쪽.

쌍촌동 기갑학교 의무대였다.<sup>381</sup>

원○○(남, 54년생)은 5월 22일 12시경 모친과 함께 광산군 서창면 마륵리에서 오치동으로 걸어가던 중 쌍촌동에서 나는 총소리를 듣고 청년 3명 등 10여 명과 함께 인근 가정집 지하실로 피신했으나 이중 청년 4명이 계엄군에게 끌려 나와 폭행을 당한 뒤 상무대로 연행, 다시 가혹행위를 당했다.<sup>382</sup>

화정동 외숙모 집에 살던 이○○(남, 57년생)는 금남로에서 건축일을 마치고 귀가 중 국군광주통합병원 건너편에서 5~6명과 함께 끌려간 후 트럭에 실려 상무대로 연행되었다.<sup>383</sup>

나주 다시면 북암리에 살았던 고등학교 3학년생 임○○(남, 62년생)은 5월 22일 17시 친구 5명과 함께 집으로 내려가던 중 화정동 잣등 안기부 쪽에서 연행되었다.<sup>384</sup>

쌍촌동(954-25)에 살았던 타일공 최○○(남, 56년생)는 5월 22일 18시경 집으로 가던 중 피정센터 앞에서 연행되면서 심하게 구타당했다.<sup>385</sup>

○ 화정동 사거리 수미다방 앞

사망자

방위병 손광식(남, 60년생)은 5월 22일 19시30분(검시 자료) 화정동에서 M16 총격으로 사망했다.

화정동에 살면서 석유배달업을 하던 양희남(남, 50년생)은 집 담 밖에서 나는 신음 소

381 서울지방경찰청 1995형제144116, 「유○○ 진술서」(1996. 1. 4.), 1~2쪽.(102-111, 469~470쪽); 김○○ 보상심의자료 1889번 1~61쪽.

382 보상심의자료 1233번 253~307쪽.

383 보상심의자료 2072번 330~390쪽.

384 보상심의자료 2034번 113~142쪽.

385 보상심의자료 2027번 91~138쪽.

리를 듣고 막냇동생과 함께 총을 맞은 방위병 손광식을 구하다가 국군광주통합병원 담 밑에 있는 병커에서 쏘는 총격을 복부에 당했다. 동생은 양희남을 업고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들어갔으나 22시(검시 자료) 사망하고 말았다.

### 부상자

국군광주통합병원 맞은 편에서 가게를 하던 최○○(여, 19년생)은 집안으로 날아온 총알이 왼쪽 귀를 스치고 볼에 박혔다.<sup>386</sup>

광산군 서창면 마륵리에 살던 요리사 서○○(남, 55년생)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화정동 사거리를 지나 잿등(화정동 743-14)을 넘어설 때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고 이를 본 계엄군이 머리, 가슴 등을 무차별 구타했다.<sup>387</sup>

내방동에 살던 전○○(남, 52년생)은 생필품을 사러 나왔다가 화정동 로터리 부근에서 오른쪽 무릎에 총상을 입었다.<sup>388</sup>

전북 옥구군에 살던 백○○(남, 56년생)은 전기공사를 위해 광주에 왔다가 5월 22일 국군광주통합병원 앞에 있는 회사 사장의 집에 있던 중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상무대로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sup>389</sup>

### ○ 중앙정보부 앞

화정동에 살던 택시 기사 김○○(남, 50년생)은 군인과 대치 중인 시위대로부터 받은 수류탄 2박스를 사용하기 위험하므로 병원 정문에 있던 장교에게 전달하고 오다가 소년

386 최○○ 구술자료(1988. 12.)

387 서○○ 구술자료(1999. 10. 26.); 전남대병원 진료기록부 301쪽; 보상심의자료 1920번 128~192쪽.

388 보상심의자료 1964번 460~492쪽.

389 보상심의자료 2021번 96~128쪽.

원 입구(중앙정보부 앞 공터)에서 전신 구타당해 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sup>390</sup>

쌍촌동에 살던 김○○(남, 61년생), 양돈업자 이○○(42년생), 운전기사 노○○(40년생) 등 4명은 5월 21일 쌍촌동 보안대 입구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과격하게 행동하는 남녀를 잡아 안기부로 갔으나, 두 사람은 풀어주고 노○○ 일행들만 상무대로 연행당해 가혹행위를 당했다.<sup>391</sup>

○ 공단 입구

양3동에 살던 권○○(남, 58년생)은 5월 22일 화정동에서 총격당해 농성동으로 도망하여 야산에 피신했다. 밤이 되자 산에서 내려오다가 시위대를 만나 기독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안면부 및 경부 파편창 등을 입었다.<sup>392</sup>

내방동에 살던 문○○(남, 52년생)는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화정동 서부시장 골목에서 좌측 대퇴부에 관통총상을 입었다.<sup>393</sup>

쌍촌동에 살던 문○○(남, 50년생)는 5월 21일 광천동 공단 입구에서 총상으로 우두피열상을 입어 성심병원에서 수술하고 12일간 치료를 받았다.<sup>394</sup>

학생 박○○(남, 61년생)는 광천동 공단 입구 부근에서 우측하악골 등에 관통총상을 입어 광주기독교병원에서 31일간 입원 치료했다.<sup>395</sup>

차량 시위에 참여한 신○○(남, 61년생)은 5월 21일 13시부터 14시까지 광천동 공단 입

390 보상심의자료 2036번 1~42쪽.

391 김○○ 보상심의자료 1890번 266~301쪽; 이○○ 보상심의자료 1955번 66~121쪽; 노○○ 보상심의자료 1900번 297~326쪽; 노○○ 구술자료(1999. 5. 12.).

392 권○○순 구술자료(1999. 8. 5.); 보상심의자료 1869번 319~344쪽.

393 문○○ 구술자료(1999. 7. 29.); 보상심의자료 1903번 156~176쪽; 적십자병원 진료기록부 91쪽.

394 보상심의자료 1904번 300~317쪽.

395 보상심의자료 1904번 99~123쪽.



구 살타공원 사거리에서 총상을 당했다.<sup>396</sup>

○ 김○○, 이○○, 박○○의 피해와 대대장 전령(당번병) 변광열 일병 사망 목격

제20사단 62연대 2대대장 이종규 중령은 자기의 전령 변광열 일병이 전진 대열의 뒤 쪽에서 사망했는데 당시 대대장의 도시락을 전달하려고 따라오다 총격당해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했다.<sup>397</sup>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5중대장 이상균 대위는 자신보다 뒤에서 부상자(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모름)를 트럭에 태우던 변광열 일병이 등에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 주위 건물에서 쏜 총에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sup>398</sup>

변광열이 총격당하는 모습은 체포된 석산고등학교 2학년 박○○, 서석고등학교 3학년 김○○과 이웃에 살던 이○○이 목격했다. 박○○은 트럭 적재함에 이미 실려 있었을 때였으며, 김○○, 이○○은 포승줄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에 의해 차에 실릴 때였다. 화정동과 내방동에 살던 이들은 총격을 피해 가까운 집으로 피신했다가 연행된 경우였다. 작전 지역의 후미에 엮드린 채 잡혀있었고 이들을 이송하기 위한 트럭이 오자 군인들에 의해 차에 실리던 중 군인 한 명이 총격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제20사단 62연대 2대대의 국군광주통합병원 진입로 확보작전이 끝날 무렵에 발생했으므로 변광열 일병의 피격 시간에 대해 18시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사건 발생 전후 피해

이외에도 사건 발생 전, 송○○, 문○○, 윤○○, 임○○, 진○○이 화정동 잣등에서 검거되었으며, 총격당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장○○이 관통총상을, 문○○이 구타당했다. 사

<sup>396</sup> 신○○ 구술자료(1989. 7.); 보상심의자료 1926번 172~223쪽.

<sup>397</sup> 5·18조사위, 「이종규 진술조서」(2023. 2. 21.), 6쪽.

<sup>398</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상균 진술조서」(1995. 6. 8.), 10~14쪽.(102-24, 891~895쪽)

건 발생 후인 5월 23일 윤○○, 정○○이 계엄군에게 집단 구타당했으며, 5월 24일 재수생 김○○, 회사원 임○○, 용접공 허○○가 신학대 옆 골목길에서 20여 명의 군인에게 잡혀 상무대로 끌려갔다.

#### 다. 송정리 비행장 등

서창검문소(서창다리)

서창다리에 설치된 서창검문소에는 5월 21일 제20사단 62연대 3대대 10중대가 배치 명령을 받았다. 중대는 1시간 뒤 서창교에서 철수하여 송정리 비행장 입구 도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구보로 이동했다고 한다. 교체된 부대는 11중대였다. 이곳에서는 5월 21일 08시 등 오○○, 이○○이 군인들에게 검문당한 뒤 연행되었다.

나주 노안면에 살면서 열차로 광주의 화천기공사로 출퇴근하던 이○○(남, 58년생)은 도청 앞 시위 등에 참여하다가 5월 21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창다리 검문소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글귀가 적힌 사진 때문에 무릎을 꿇린 채 소총 개머리판과 군화 발로 심한 폭행을 당했다. 두부 타박상 등을 당한 상태에서 상무대로 연행되었다.<sup>399</sup>

광산구 소촌동에 살던 최○○(남, 49년생)은 5월 22일 서창다리에서 계엄군에게 잡혀 곤봉과 소총 개머리판으로 머리 등 전신을 구타당한 뒤 연행되었다.<sup>400</sup>

화정동 형 집에 살던 서석고등학교 3학년 오○○(남, 63년생)는 5월 21일 08시 광산 남산동으로 가던 중 서창검문소에서 연행되어 상무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뒤 6월 4일 석방되었다.<sup>401</sup> 같은 날 서울에서 내려온 김○○(남, 49년생), 학생 김○○(62년생), 5월 22일 김○○(남, 62년생), 5월 23일 동생을 찾아다니던 택시운전기사 김○○(남, 59년생),

399 5·18조사위, 「이○○ 서면질의」(2022. 12. 16.), 1~2쪽; 이○○ 보상심의자료 2021번 129~210쪽.

400 최○○ 보상심의자료 1977번 205~247쪽.

401 오○○ 보상심의자료 1332번 193~317쪽.

송의실고 3년 강○○(남, 62년생) 역시 같은 장소에서 검문 중이던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상무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sup>402</sup>

### 송정리 비행장 입구

송정리 비행장에는 5월 22일 07시22분 제20사단 62연대 3대대가 목포에서 오는 12대의 버스에 탄 200여 명의 시위대를 입구에서 통제했다.<sup>403</sup> 시위대가 무기 반납을 조건으로 광주시 진입을 요구했고, 15시경 소총 57정과 실탄 백여 발을 반납하고 160여 명이 봉쇄 지역을 통과했다고 한다.

기갑학교는 5월 22일 10시40분 전차 6대(3/26명), 장갑차 3대(1/4)를 제20사단 62연대에 배속시켰다. 책임 장교는 나형운 9전차대대 2중대장이었다. 비행장 입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위대와 대치했으며, 18시 송정역까지 제20사단 62연대 200명과 함께 무력시위를 실시했다. 송정리역에서 1시간 주둔 후 최초 위치였던 비행장 입구로 돌아와 도로 봉쇄를 계속하다가 5월 24일 08시15분 전차 2대와 장갑차 1대가 철수 복귀했다.<sup>404</sup>

그런데 이때 5월 21일 나주에서 차량 시위에 참여하여 송정리 비행장 입구 계엄군과 대치하던 김○○(남, 53년생)이 계엄군의 소총 개머리판 공격으로 왼쪽 이마에 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sup>405</sup>

### 삼양타이어

삼양타이어에는 5월 22일 제20사단 60연대 3대대 1개 중대가 배치됐다. 3대대장 길영

402 김○○ 보상심의자료 1321번 80~167쪽; 김○○ 보상심의자료 2000번 100~140쪽; 김○○ 보상심의자료 1713번 69~74쪽; 김○○ 보상심의자료 1890번 214~265쪽; 강○○ 보상심의자료 2028번 304~348쪽.

40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박준병 진술조서」(1995. 3. 21.), 32쪽.(102-16, 79쪽)

404 「기갑학교 부대사」, 256쪽.(246-1)

405 김○○ 보상심의자료 3859번 1~77쪽.

철 중령은 5월 22일 송정리 봉쇄 지점을 지나가려는 시위대 차량에 (공포) 사격을 가하여 1명을 체포했다. 5월 23일 03시36분 송정리 삼양타이어 공장에 무장 시위대 30여 명이 다가와 예비군 중대가 위협 사격했다.<sup>406</sup>

송정리역(광산경찰서, 광산여고) 등

5월 22일 16시경 북구 중흥동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던 정○○(남, 51년생)는 일을 중단하고 평동 집으로 돌아오던 중 송정리 광산여고 앞에서 계엄군에게 구타당한 뒤 상무대로 끌려가 삼양타이어 방화 용의자라며 가혹행위를 당했다.<sup>407</sup>

광주에서 지내던 김○○(남, 59년생)은 5월 24일 나주 왕곡면 신원리 집을 가려고 걸어 송정리역을 지나던 중 7~8명의 군인들에게 연행당하는 과정에서 대검에 찔리고 구타당했다.<sup>408</sup>

이외에도 5월 23일 나주 영산포에살던 정○○(남, 58년생)이 광산경찰서로, 이○○(남, 47년생)이 송정읍사무소 앞에서 계엄군에 연행되었다.<sup>409</sup> 5월 22일 나주 남평 집으로 향하던 금호고 2학년 이○○(남, 61년생)가 송정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연행되었으며, 5월 23일 고향인 진도로 향하던 전남대생 이○○(남, 60년생), 하○○, 이○○ 등 3명이 송정리역을 지나 다리 근처에서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sup>410</sup>

406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122쪽(104-151)

407 정○○ 보상심의자료 1482번 1~89쪽.

408 김○○ 보상심의자료 2040번 136~139쪽.

409 정○○ 보상심의자료 2056번 26~51쪽; 이○○ 보상심의자료 1253번 1~83쪽.

410 이○○ 보상심의자료 1615번 67~205쪽.

## 4. 광주-장성(광주변전소)

### 가. 제20사단 61연대 3대대의 톨게이트 봉쇄

제20사단 61연대 3대대 239명(11/228)은 5월 21일 18시56분 외곽 봉쇄 작전을 위해 톨게이트에 배치되었다.<sup>411</sup> 제20사단 61연대 3대대 10중대 1소대장 전동운 중위는 고속도로 양쪽에 30미터 정도의 언덕 정상에 개인호를 팠고, 고속도로에는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작은 통로만 남겨놓고 1미터 정도의 차단벽을 만들었으며, 5월 21일 시위대에게 차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광주 외곽으로 이동한다는 고속버스들을 보내주었다고 기억했다.<sup>412</sup>

5월 22일 아침 제20사단 61연대 3대대장 김인식은 군용트럭에 탄 30~40명의 시위대가 접근해 오므로 직접 M16소총으로 위협사격을 가해 물리쳤다고 하며, 제20사단 61연대 3대대 10중대 1소대장 전동운 중위는 새벽에 3~4대의 트럭에 탄 시위대가 차단벽 근처에 왔다가 길이 막혀 돌아갔다고 했다.<sup>413</sup>

5월 22일 광주-담양 간 고속도로 봉쇄 작전 과정에서 무장 시위 대원 김○○(남, 61년생)은 안부총상으로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이하 전남대병원이라 함)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을 잃었다.<sup>414</sup>

### 나. 제31사단 광주변전소 사건

5월 23일 10시 80-7호에 의거 광주 시내 변전소 확보 명령이 내려와 광주변전소에는

411 보병제20사단, 『총정작전상보』 4쪽.(104-197)

412 5·18조사위, 『전동운 진술조서』(2023. 2. 20.), 3쪽.

41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인식 진술조서』(1994. 12. 26.), 7쪽.(102-18, 185쪽); 5·18조사위, 『전동운 진술조서』(2023. 2. 20.), 3쪽.

414 김○○ 보상심의자료 1895번 1~89쪽.

제31사단, 계림변전소에는 제3공수여단이 투입되었다. 광주변전소에는 12시30분 제31사단 11경비대대 4중대 병력 45명(1/44명, 방위병 40명)이 2대의 트럭으로 투입되었다. 한편, 11경비대대 3중대는 5월 22일경 광주-장성 간 영산강을 건너는 산동교에 배치되었다.<sup>415</sup>

11경비대대 4중대원 정○○ 일병의 진술에 따르면, 4중대는 5월 23일 12시30분 2대의 트럭을 타고 제31사단을 출발하여 고속도로를 통해 장성 방면으로 가다가 광주톨게이트를 통해 광주변전소로 향했다. 두 번째 트럭의 적재함에 탔던 그는 금호고등학교 앞에서 5발의 총성을 들었으며 이후 민간인 1명이 사살당한 모습을 보았다. 민간인을 사살한 4중대는 시신을 앞의 트럭에 싣고 다시 제31사단으로 복귀했고 시신은 다음날인 5월 24일 아침 진술인 정○○를 포함한 4명에 의해 유격장 뒤 야산에 매장되었다.<sup>416</sup> 검시 자료에 따르면, 5월 23일 16시경 금호고등학교 앞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민간인은 김상태(남, 50년생)로 확인된다. 조행권 역시 김상태와 같은 시간에 동운동 노상에서 흉부 및 복부 관통총창, 좌상박 및 좌수 관절 복잡골절, 양측 대퇴부 관통총창으로 사망했다. 검시는 위 김상태와 함께 5월 30일 14시40분부터 17시50분까지 조선대병원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검시에 참여한 김이수 검사의 수첩에 동운동 대창주유소 앞 노상에서 27세가량의 청년이 사망한 사실과 김상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같은 시간 금호고등학교 입구 부근(운암동 479-18)에 살던 오정순이 집 화장실에 들어서던 중 두안부 관통총상으로 사망했다.

다음날인 5월 24일 11경비대대는 연병장에 모여 실탄 60발씩을 받았으며, 4중대는 다시 광주변전소로 투입되었다. 이번에는 차량이 아니라 천변을 따라 도보로 이동했다. 11경비대대 4중대원 정○○ 일병은 5월 25일 아침 변전소 정문 앞에서 총격에 사망한 민간인 1명이 가마니에 덮여 있는 모습과 그 옆에 20대 후반의 남성 1명이 신발을 한쪽에

<sup>415</sup>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3. 7. 18.), 2~6쪽.

<sup>416</sup>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3. 7. 18.), 2쪽.

만 신은 채 낮을 잃고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가 충격받은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소대장의 명령으로 변전소 정문 오른쪽 70m 떨어진 도로변에 구덩이를 판 후 가마니와 함께 시신을 매장했다.<sup>417</sup> 이에 대해 계엄사 「상황일지」에는 5월 24일 23시45분 광주변전소 정문 앞 70미터 지점에서 3명을 체포했는데, 1명은 계엄군이 발포한 유탄으로 부상했으나 다음 날인 5월 25일 06시52분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으로 강정배는 5월 23일 23시 안〇〇 외 1명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광주변전소 앞 도로에서 충격받아 부상을 입은 뒤 변전소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 다. 광주톨게이트 사건

기갑학교 K대대 A중대는 5월 23일 19시40분 광주톨게이트에 주둔하던 제20사단 61연대 3대대와 교체 투입되었다.

5월 24일 09시55분 기갑학교 K대대 A중대(11전차대대 3중대 1개 소대와 9전차대대 M557장갑차 1대)<sup>418</sup> 120명(3/117명)이 차단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국군 제31사단 96연대 3대대원 31명(2/29명)과 교전이 벌어져 군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으며 민간인 2명도 총상을 입었다.

당시 제31사단 96연대 3대대원들은 영광에 주둔하던 부대의 일부로 5월 18일부터 96연대 1대대에 배속되어 시위 진압에 동원되었다가 5월 24일 배속이 해제되어 영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sup>419</sup>

이 사건에 대해 「기갑학교 부대사」는 정체불명인 2대의 차량이 사격을 가하면서 질주

<sup>417</sup> 5·18조사위, 「정〇〇 진술요지」(2023. 7. 18.), 2쪽.

<sup>418</sup> 「기갑학교 부대사」, 264쪽.(246-1)

<sup>419</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흥덕 진술조서」(1995. 4. 27.), 12쪽.(102-24, 670쪽)



하자 이를 본 기갑학교 군인들이 이들을 폭도로 오인하고 사격을 가했다고 했다.<sup>420</sup> 군은 오인 교전의 책임을 두고 제31사단 96연대 박동조 대령의 책임을 물었다.<sup>421</sup>

그런데 같은 시간 광주시 북구 연제동 외촌마을 앞 호남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한 밭에서 참깨를 심던 김○○(여, 09년생)<sup>422</sup>와 옆의 고추밭을 매던 젊은 주부의 여아 이○○(여, 75년생)<sup>423</sup>이 총상을 입었다. 김○○은 왼쪽 발목에 총탄을 맞았고 네 살 동생을 업고 뛰던 이○○은 충격을 피해 엎드리던 중 가슴에 총탄을 맞았다.<sup>424</sup>

김○○의 며느리 이○○의 진술에 따르면, 전날인 5월 23일부터 밭이 있던 방향의 야산에 군인들이 매복하고 있었는데, 5월 24일 10시 산속에 있던 군인들은 처음에는 양쪽 고속도로를 향해서 쏘는 것 같았으나 민간인들이 도망을 가자 이번에는 이들을 향해서 쏘기 시작했다. 총격당한 주민들이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치자 군인들은 총격을 멈추고 한 군인이 다가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매복지로 가자고 했다. 아들이 김○○를 업고 도착했을 때 가슴에 총을 맞은 여섯 살 여아도 함께 있었다. 총상을 입은 민간인 2명은 중상이었고 제31사단 의무대로 왔다가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밭은 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으로 가까운 곳에 소대장 김형식 대위가 지휘하던 매복 초소가 있었다.

420 「기갑학교 부대사」, 272쪽.(246-1)

421 「사건부」, 245-3, 5쪽. 공무상병인증서 등을 통해 대위 송준욱 대위, 하사 이○○, 장○○, 하○○, 상병 최○○, 일병 송○○, 서○○, 이병 원○○, 안○○ 등 9명의 부상 사실이 확인된다.

422 김○○ 보상심의자료 1894번 25~95쪽.

423 이○○ 보상심의자료 1948번 117~153쪽.

42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조서」(1996. 1. 10.), 1~3쪽.(102-112, 160~162쪽)

## 5. 광주-담양(광주교도소)

### 가. 제31사단 사건

제31사단 96연대 2대대와 병참선 11경비대대는 광주교도소에 주둔한 뒤 5월 21일 08시 50분 차량에 탄 시위대 50여 명이 교도소로 접근하자 설득하여 돌려보냈다. 제31사단 전투상보에 따르면, 교도소 주변에서 08시58분 버스 2, 트럭 1 포함 400여 명이 접근, 09시05분 버스 1대에 승차한 100여 명이 다가온 뒤 20여 명 산에 하차, 10시10분 20여 명이 탄 군용트럭이 교도소 부근 주유소에서 주유, 10시22분 주유 군용트럭 외 버스, 민간 트럭에 탄 150여 명이 주유소 앞에서 2~3회 선회, 11시02분 APC 1, 군용트럭 1, 군용짚차 1에 탄 50여 명이 M16소총 휴대하고 교도소에 접근, 15시00분 중앙고속버스 1대, 대한통운 1대, 군용트럭 1대 주유 후 교도소 접근, 15시38분 경찰기동순찰차와 20여 대의 차량이 목격되었다.<sup>425</sup>

구○○ 등 시위대 일행은 5월 21일 군인들이 고속도로를 차단한다는 소리를 듣고 차 두 대로 광주교도소로 갔다고 한다. 교도소 부근 주유소 앞에는 이미 1개 중대 31사 병력이 지키고 있었고, 중대장 한 사람이 다가와 돌아가라고 했다.<sup>426</sup>

하지만 5월 21일 광주교도소에 제31사단이 주둔하면서 이곳을 지나려던 민간인들이 연행되거나 총격당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보상심의자료에서 5월 21일 14시 김○○, 15시 이○○, 15시(추정) 김만석, 16시 오○○, 김○○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sup>427</sup> 김○○과 오○○, 김○○은 구타당했으며, 이○○과 김○○은 총상을 입었다.

5월 21일 19시 제31사단 96연대 2대대와 병참선 11경비대대는 차량 26대를 이용하여

<sup>425</sup> 제31사단, 「전투상보」(104-50, 43~45쪽)

<sup>426</sup> 5·18조사위, 「구○○ 진술조서」(2021. 5. 13), 7~8쪽.

<sup>427</sup> 김○○ 보상심의자료 1876번 1~71쪽; 이○○ 보상심의자료 1080번 29~31쪽; 김만석 보상심의자료 1309번 1~141쪽; 오○○ 보상심의자료 1934번 160~212쪽; 김○○ 보상심의자료 1892번 46~78쪽.

사단 사령부로 이동했다.<sup>428</sup>

## 나. 제3공수여단 사건

5월 21일 14시 전남대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제3공수여단은 교도소 방어 임무를 받고, 16시30분 15대대를 선두로 출발하였다. 전남대 후문, 오치동을 거쳐 고속도로를 통해 17시30분 광주교도소 주유소 삼거리에 도착하여 제31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19시20분 교도소에 주둔, 자체방어 진지를 편성하였다. 제3공수여단이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교도소 인근에서 광주-담양 간 외곽 봉쇄 작전을 수행하면서 민간인을 체포·연행하거나 총격을 가하여 사망·부상케 한 경우는 20회 이상이다.

### 1) 5월 21일 제3공수여단의 이동과 민간인 피해

계엄군 진술에 따르면, 전남대를 나온 제3공수여단이 광주교도소에 도착할 무렵인 17시경 두 차례의 총격을 받았다고 한다. 선두의 15대대 무전병 강○○ 하사가 왼쪽 팔에 관통 총상을 입었으며, 후미의 16대대가 시위대 차량으로부터 총격받았다.<sup>429</sup>

11대대는 광주 방면 주유소부터 교도소 입구 사이에 배치되어 국도를 지나는 차량과 시민들을 차단했다. 12대대는 정문에서 본관까지 담당했는데 정문부터 5, 6, 7, 8지역대 순으로 배치되었다. 13대대는 교도소 남쪽 측면 국도변 1감시대에서 2감시대 방향으로 9, 10, 11, 12지역대 순으로 배치되었다. 15대대는 교도소 북쪽 측면 고속도로변에 4감시대에서 3감시대 방향으로 13, 14, 15, 16지역대 순으로 배치되었다. 16대대는 교도소 동쪽 측면에 배치되었다. 야산에서 2인 1조로 매복했으며 수색 정찰을 하기도 했다.<sup>430</sup>

<sup>428</sup> 511위원회, 「제31사단 관계관 간담회 결과」, 4쪽.(245-9, 23쪽)

<sup>429</sup> 5·18조사위, 「강○○ 진술요지」(2022. 12. 15.), 4쪽.

<sup>430</sup> 5·18조사위, 「장호인 진술요지」(2022. 2. 4.), 3쪽; 「강재도 진술조서」(2023. 2. 17.), 17쪽; 「정승규 진술조서」(2023.

제3공수여단의 외곽 봉쇄 작전에 의한 피해는 교체 직후인 16시30분과 18시 이○○와 박○○이 차단선에서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 뒤 19시20분 광주에서 업무를 보고 픽업트럭을 타고 담양 대덕면의 집으로 돌아가던 고규석, 임은택, 이○○, 박○○ 등 일행 4명이 총격받아 고규석, 임은택이 사망했다. 5월 21일 오전 고규석은 자동차 매매로, 임은택은 소값을 받으러, 이○○은 벽지를 사기 위해, 박○○은 특별한 이유 없이 광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규석이 운전하는 픽업차(또와식품)를 타고 담양을 향했다.<sup>431</sup> 각자의 일을 보고 함께 돌아가던 일행은 19시20분 광주-담양 간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교도소 입구에 바리케이드의 모습을 보고 이를 치우고 가는데 갑자기 총격을 받았다. 생존자 박○○(남, 59년생)은 총격에 차가 멈추고 차량 바닥에 그대로 누워있었는데 7, 8명의 군인이 머리를 잡고 끌어내려 발로 차고 총 개머리판으로 때렸다고 했다. 당시 고규석, 임은택은 사망해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었고 이○○은 차에서 내려와 논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공수부대에게 사로잡힌 이○○과 박○○은 해당 차량에 총이 없는 것을 확인한 지휘관에 의해 풀려났다. 이 사건에 대해 제3공수여단은 시위대와의 교전 중 발생한 부수적 피해로 기록했다.<sup>432</sup>

22시에는 3대의 시위대 차량 중 버스에 탔던 최열락이 총격에 사망했으며, 같은 때 버스에 탔던 김○○도 교도소 앞을 지나다 우대퇴부에 관통총상을 입었다. 검시 자료에 따르면, 보일러 수리공 최열락(남, 53년생)은 5월 21일 22시 광성여객을 운전하고 교도소로 갔다가 사살되고, 6월 2일 주민 신고로 광주교도소 앞 야산에서 발굴되어 6월 3일 전남대병원 영안실에서 검시되었다.<sup>433</sup> 법원 뒤 자개공장에서 일하던 김○○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총격을 받아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청년 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자신은

2. 16), 15쪽.

43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조서」(1996. 1. 3.), 2쪽.(102-111, 370쪽)

432 「5·18관련자료(제3공수특전여단)」 『핵심자료 22권』, 23쪽; 계엄군의 1차 교전 주장.

433 「광주사태 검시참여결과보고」, 739~759쪽.(102-85)

광주교도소 옆으로 끌려가 하루를 지낸 뒤 5월 22일 상무대를 거쳐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sup>434,435</sup>

담양 창평면 장화리에 살던 3톤 화물트럭 운전기사 이○○(남, 52년생)는 5월 21일 시위대를 태우고 차를 운전하여 광주 톨게이트를 통해 담양으로 가던 중 동광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차량으로 막혀 있어 광주교도소 앞의 길로 갔으나 교도소 정문 검문소에서 강제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sup>436</sup> 임동에 있던 공업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박○○(남, 60년생)이 17시 퇴근하여 망월동에 있던 집으로 돌아가던 중 18시경 광주교도소 앞에서 계엄군에 의해 구타당한 뒤 5월 29일 상무대로 이송되었다.<sup>437</sup>

해남 산이면에서 농사를 짓던 김인태(남, 32년생)는 살레지오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의 밀린 하숙비를 직접 낸 뒤 실종되었다가 5월 21일(또는 5월 20일) 광주교도소 앞 야산에서 시위대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되어 상무관으로 이송되었다. 시신의 주머니에는 신분증이 있었으므로 도청의 시위대가 이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

## 2) 5월 22일 민간인 피해의 본격화

제3공수여단 12대대장 김완배는 당시 상황을 ‘5월 22일 00시40분경 차량에 탑승한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12대대 지역에 사격하여 응사한 사실이 있는데 본인은 참호 뒤편에서 가면 상태에 있다가 총소리를 듣고는 놀라 깬는데 한동안 사격이 계속되었고, 날이 밝아 확인해 보니 1명이 초과상(김○○를 말함)을 입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체

<sup>434</sup> 김○○ 보상심의자료 1895번 131쪽.

<sup>435</sup> 함수부(1980), 「훈방대상자」, 김○○는 C급(단순시위 자진참가자)으로 분류되었다. 김○○는 1999년 5·18기념재단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환자 후송을 하던 중 계림동파출소 부근에서 돌에 맞아 보행이 불가능하자 시위대 관광버스에 승차하여 잠이 들었는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나가는 길목에서 5. 21. 23:30경 총에 맞고 차 안에 숨어 있었다. 아침에 군인들이 와서 확인을 하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교도소로 끌고 들어갔으며, 당시 차에는 사람이 죽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출처, 5·18기념재단(1999. 6. 18.), 「5·18민주화운동 구술채록 자료 전사연구」]

<sup>436</sup> 이○○ 보상심의자료 2005번 281~296쪽.

<sup>437</sup> 박○○ 보상심의자료 1905번 206~235쪽.

포해 온 일이 있고, 당시 현장에는 시위대가 버리고 간 차량이 3대 정도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계엄군의 2차 교전 주장, 그림2 참조)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12대대 7지역대 9중대장 김홍건은 “5월 21일 23시가 지나서 야간에 고속도로 쪽 도로를 통하여 시위대들이 여러 대의 차량에 타고 한꺼번에 와서는 집중사격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여단에서도 그 방향으로 있던 병력들이 한꺼번에 응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sup>438</sup> 위와 같은 내용은 5·18조사위에서도 12대대 6지역대 8중대 화기하사 송○○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sup>439</sup>

5월 22일 아침에 현장에 가 보았던 작전하사 조○○는 야간에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M1, 카빈 등 총기와 실탄을 노획하였고, 지프차 운전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sup>440</sup> 또 5. 22. 06:00경에 교전 현장을 수색하였던 3공수여단 12대대 8지역대장 박경수는 “5. 22. 01:00경에는 시위대가 광주에서 화순 쪽으로 무기고를 탈취하려 간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시위대와 교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441442</sup>

지난밤 고속버스 등에 총격을 가한 제3공수여단은 5월 22일 아침 버스를 수색하여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시신 1구를 확인하고 전날 시신을 내렸던 곳에 두었다고 한다.<sup>443</sup>

43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홍건 진술조서」(1995. 5. 18.), 15쪽.(102-24, 802쪽)

439 교도소 도착 당일 24:00경 광주-담양 고속도로 방향에서 시위 차량 8~12대(전투상보 6대)가 교도소로 오면서 사격하여 이에 응사하는 총격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18조사위, 「송○○ 진술녹취」(2021. 1. 15).

44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조○○ 진술조서」(1995. 6. 16.), 19쪽.

44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박경수 진술조서」(1995. 6. 14.), 12~13쪽.(102-22, 471~472쪽)

442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3공수여단 「전투상보」의 5. 22. 00:00경 교전 상황에서 무장 시위대가 탑승한 차량은 고속도로상에 있었다고 보고, 당시 작전 요도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교도소 사이에는 진출입로 등 도로가 없다는 점에서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시위대가 교도소를 공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출처, 서울고등검찰청, 상고이유서(12·12 및 5·18사건), 1997년, 146-147쪽.]

443 5·18조사위, 「김○○ 진술녹취」(2021. 4. 6.), 1쪽; 「김○○ 진술녹취」(2021. 10. 7.), 11쪽. 제3공수여단 15대대 13지역대 3중대 김○○ 중사는 5. 22. 아침 부상자를 확인하고 사망자를 수습했다. [5·18조사위, 「김○○ 진술조사카드」(2022. 7. 14.)]

서종덕(남, 62년생, 옛행상)은 5월 22일 00시40분경 고속버스에 탑승했다가 광주-담양 간 고속도로에서 피격 사망했다. “신원불상이었다가 사체 검시 때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여 신원을 확인했다. 사체 출처는 광주교도소 앞 노상.”으로 기재되어 신원이 밝혀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sup>444</sup> 「5·18관련자료(제3공수특전여단)」에서 서종덕의 사망 시간에 발생한 사건 내용이 확인된다.<sup>445</sup>

나주 공산면에 살던 이○○(남, 52년생)은 5월 22일 03시 충기를 얻기 위해 서방사거리에서 담양 창평면 제31사단 96연대 예비군 관리대로 가던 중 광주교도소 앞에서 계엄군에게 체포되어 구타당한 뒤 제31사단 헌병대로 이송되었다.<sup>446</sup>

경남 양산에 살던 버스 운전기사 박경구(남, 29년생)는 5월 22일 광주교도소 앞에서 총격받은 뒤 담양 동산의원에서 1일간 치료를 받았다.<sup>447</sup> 경남 양산군 기장을 죽성리에 살던 심○○(남, 14년생)는 5월 21일 기장면을 출발한 관광버스의 운전석 바로 뒤에서 타고 5월 22일 아침 교도소 앞을 지나던 중 총격으로 복부관통총상을 입었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82년 9월 28일 사망했다.<sup>448</sup> 관광버스가 총격당한 사실에 대해 제3공수여단 11대대 1지역대 4중대장 육병호가 진술했다.

5월 22일 08시20분~08시50분 제3공수여단은 수색 작전을 하고, 노획된 버스 1대를 정문에서 약 50미터 이격 지점에 세워 도로를 차단하였다. 수색조가 복귀한 후 2.5톤 차량에 탑승한 무장 시위대가 교도소 전방 50m 지점의 바리케이드에 봉착해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자 11대대에서 즉각 응사하였다고 한다.<sup>449</sup> 그러나 3공수여단 지휘관들의 1995년 서울지검 등 진술을 보면 사건 발생지점이 교도소 정문 50m 전방이 아니라 교도소 전

444 「광주사태 검시참여결과보고」, 102-85, 164~176쪽.

445 「5·18관련자료(제3공수특전여단)」, 『핵심자료 22권』, 23쪽.

446 보상심의자료 1344번 194~252쪽.

447 보상심의자료 1904번 155~172쪽.

448 5·18조사위, 「심○○ 면담보고」(2022. 11. 2.), 2쪽; 심○○ 보상심의자료 1928번 244~306쪽.

449 제3공수여단(1980), 「전투상보」, 21쪽.



방 200m 거리의 주유소 삼거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작전참모 김종현은 1995년 국방부검찰부에서 5월 22일 09시경 기관총을 설치한 트럭 1대가 멀리서부터 기관총을 교도소 정면을 향하여 난사하면서 달려오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11대대 병력이 응사하였는데 트럭 운전수와 기관총사수로 보이는 또 다른 사람 1명이 총을 맞고 죽었으며, 트럭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달아났다고 진술하였다.<sup>450</sup>

2.5톤 트럭에 타고 있던 이명진(남, 43년생), 이용충(남, 54년생)은 5월 22일 09시경 2.5톤 트럭을 타고 가던 중 광주교도소 앞 국도변에서 11대대 1지역대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함께 트럭에 탔던 3명은 도주했고 시신 2구는 정문 앞 묘지 옆 언덕에 가매장되었다. 「5·18관련자료(제3공수특전여단)」에는 “09시 5명 탑승 2.5톤 트럭 총격, 2명 사살, 3명 도주. 2.5톤 트럭 1대 입수”, “수색 복귀 후 09시경에 2.5톤 탑승한 폭도 6명이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교도소로 접근했으나 50미터 전방의 바리케이드에 봉착 진출을 못 하자 이에 11대대에서 즉각 응사 2명 사살, 4명은 부상을 입고 도주”했다고 적혀있다.<sup>451</sup>(계엄군의 3차 교전 주장, 그림2 참조)

5월 22일 09시50분 보성군 복내면에 살던 채○○(남, 61년생)은 차량 시위에 참여한 뒤 말바우시장을 지나 광주교도소 방면으로 가던 중 무등도서관을 지나 학산실업고 앞에서 총격받아 흉부관통총상을 입었다.<sup>452</sup>

5월 22일 10시 서만오(남, 55년생, 운수업)는 3대의 트럭 속에 타고 가다가 총격받아 사망했다. 문화동사무소 공무원 정○○(남, 37년생)은 (5월 22일) 오전 시간대에 문화동사무소에서 담양 방면으로 약 20m 떨어진 지점에서 시민군 10여 명이 탄 차량이 공수부대의

45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종현 진술조서」(1995. 5. 15.), 20쪽. 작전하사관은 5. 22. 09:00경 기관총을 설치한 트럭 1대가 멀리서부터 기관총을 교도소 정면을 향하여 난사하면서 달려오다가, 11대대 병력이 응사를 하여, 탑승자 2명이 사망하였다는 상황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조○○ 진술조서」(1995. 6. 16.), 19쪽.]

451 「5·18관련자료(제3공수특전여단)」 『핵심자료 22권』, 23쪽.

452 5·18조사위, 「채○○ 진술조서」(2023. 4. 21.), 2~3쪽.

충격받는 모습을 보았다. 차량 적재함에 타고 있던 남자 중 1명이 바닥에 떨어진 뒤 신분증을 꺼내고 죽었으며, 얼마 뒤 계엄군 트럭이 와서 시신 1구를 싣고 현재 각화 금호아파트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희생자의 신분증을 확보하고 다음 날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유족들에게 연락이 되었다.<sup>453</sup> 이 시간에 희생된 사람 중 이명진, 이용충은 신분증이 없어 유족에게 연락되지 못했으므로 참고인 정○○이 목격한 희생자는 서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

5월 22일 10시 화물 운송일을 하던 김○○(남, 34년생)는 5월 22일 아내 김○○(여, 37년생), 딸 김○○(여, 75년생)을 화물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다른 가족이 있던 진도로 가려던 중 백운동을 피해 비아 방면으로 가려 했으나 산동교 검문소에서 막혔고 다시 담양 쪽으로 가라는 군인의 말에 따라 이동하다가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다시 검문에 걸려 돌아가던 중 뒤에서 충격받아 일가족이 총상을 입었다. 총상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지 않았던 김○○는 장교에게 항의하자 손을 저으며 가라고 하는 데 그쳤다. 총상을 입은 김○○는 광주 시내로 차를 몰고 가다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전남대병원이었다. 아내 김○○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딸 김○○은 하반신이 마비된 중증장애인이 되었다.<sup>454</sup>

곡성경찰서 죽곡지서에서 근무하던 김○○(남, 44년생)는 5월 18일 동원 명령을 받고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다가 5월 21일 17시30분경 철수 명령을 받고 문화동에서 민박 후 5월 22일 10시경 광주교도소 200m 전방 도로를 통과하던 중 시민군 차량이 교도소 쪽으로 접근하자 이를 경비하던 계엄군이 총격을 가했다. 이때 도로 오른쪽 보리밭으로 피하던 중 충격에 의해 좌측흉부 관통상을 입었다.<sup>455</sup>

453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2. 3. 3.), 2~3쪽.

45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 진술조서」(1995. 12. 28.), 3~5쪽.(102-111, 354~356쪽); 김○○ 구술자료(1995. 2. 5.)

455 보상심의자료 1287번 82~103쪽.

양○○(남, 54년생, 운전 정비)은 5월 22일 11시30분 서방 신진자동차 면허 교습소 앞에서 우측 상완부 총창 골절상을 입었으며, 광주시 방림동에 살던 정○○(남, 57년생)은 5월 22일 11시35분 총격에 의한 두피 탄피상과 뇌진탕 부상을 당했다.<sup>456</sup>

재수하며 광주 산수동에서 자취했던 김병연(남, 62년생)은 5월 22일 14시20분 송○○(남, 62년생), 송○○와 함께 거주하던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137로 귀가하던 중 북구 두암동 학산실업학교 건너편 보리밭에서 제3공수여단의 총격으로 좌전흉부 맹관총상을 당해 사망했다.<sup>457</sup>

운전기사 이○○(남, 58년생)이 5월 22일 18시55분(또는 16시) 교도소 부근 자택(동신고교 앞)으로 가던 중 학산실업학교에서 북부 좌우측 대퇴부 총상을 입었다.<sup>458</sup>

영암 신북면에서 올라온 차량 시위대원으로 5월 22일 01시 송암동 남선연탄 앞 바리케이드 총격에서 생존했으나 같은 날 20시경 5톤 군용 트럭의 적재함을 타고 넓은 포장도로가 있는 어느 외곽 봉쇄 지역을 지나던 중 총격받고 쓰러졌다. 당시 함께 트럭에 타고 있었던 친구 장○○이 이를 목격했다. 그는 총상을 입은 노경운과 함께 시민군 장갑차를 타고 적십자병원으로 가던 중 노경운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sup>459</sup> 노경운은 5월 22일 전남대로 갔으며, 이후 주로 광주교도소 부근인 서방 지역에서 시위했고, 총격받은 곳이 주유소 부근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노경운이 총격받은 곳은 제3공수여단 11대대가 경비하고 있던 광주교도소 입구 문화주유소 인근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시위에 참여하던 김○○(남, 64년생), 5월 22일 광주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던 중 교도소 부근에서 왼손과 양다리에 총상을 당했다.<sup>460</sup> 교도

456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소개」(102-113, 99쪽); 양○○ 보상심의자료 1931번 453쪽; 정○○ 보상심의자료 1969번 136쪽.

457 「광주사태 검시참여결과보고」, 215~226쪽.(102-85)

458 전남대병원 진료기록부, 132쪽; 이○○ 보상심의자료 1944번 259쪽.

459 5·18조사위, 「장○○ 진술조서」(2022. 12. 20.), 5~6쪽;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10쪽.(102-218); 「5·18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

460 보상심의자료 1896번 251~305쪽.

소 부근 무산동 주민 조OO은 차를 타고 가다가 총격받아 총상을 입었다.<sup>461</sup> 같은 마을 주민 김OO(남, 28년생)은 좌측경부 및 좌측상지 총상을 입었다.<sup>462</sup>

문화동 주민 김OO(남, 38년생)는 21시 공수부대원에게 개머리판으로 구타당하여 뇌 좌상 주관절 타박상을 입었다.<sup>463</sup> 조선대 나OO(남, 60년생), 박OO(남, 59년생)은 5월 22일 교도소 입구에서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했다.<sup>464</sup> 박OO은 시위 진압이 격화되자 담양으로 피신하던 중 광주교도소 옆 야산에서 연행되었다. 담양 대원면 주민 김OO(남, 36세)은 두부타박상을 입었다.<sup>465</sup>



〈그림 4-2-2〉 광주교도소 2차, 3차 충돌 요도

461 전남대병원 진료기록부, 138쪽. 조OO의 보상심의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462 노준채 외과 진료기록부, 65쪽. 김OO 보상심의자료 1899번 283~305쪽, 5. 22. 1일간 노준채 외과에서 진료했다고 기록되었다.

463 전남대병원 진료기록부, 294쪽; 김OO 보상심의자료 2115번 298~299쪽.

464 보상심의자료 1749번 41~53쪽, 5·18조사위, 『박OO 진술서』(2022. 12. 14.), 2쪽.

465 전남대병원 진료기록부, 174쪽. 김OO의 보상심의기록은 없다.

### 3) 5월 23일 계속된 피해

제3공수여단은 5월 23일 09시 재보급을 위한 수색 정찰을 실시하고, 헬기로 재보급하는 동안 도로 주변 봉쇄 및 약 2km 정도까지 추진진지를 점령하고 주요 감제고지를 장악하였다.<sup>466</sup> 12대대장 김완배는 5월 23일 상황에 대한 진술에서 “오전, 오후로 수색 정찰 및 매복하였는데, 12대대는 담양으로 가는 국도가 보이는 삼양설탕 간판이 있는 곳까지 정찰과 수색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sup>467</sup>

작전참모 김종헌은 “5월 23일에는 헬기를 이용한 재보급 작전이 있어서 시위대의 총격으로부터 안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도소 전방으로 각 대대 팀을 배치하였는데, 그때 전방으로 11대대가 가장 멀리, 그 다음 12대대가 길목에 배치되었을 때 5월 23일 10시 20분경인지 그때쯤 소방차에 탑승한 시위대가 총을 쏘며 공격하였으며 11대대에서 응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468</sup> 구체적인 상황은 12대대 7지역대 9중대장 김홍건이 진술하였다.<sup>469</sup>

5월 23일 10시20분경 추진진지에서 소방차에 총격을 가한 병력은 11대대 4지역대였

<sup>466</sup> 제3공수여단(1980), 「전투상보」, 22쪽. 임수원 11대대장은 1985년 군사편찬연구소에 제출한 ‘작전참가 지휘관/참모 소감문’에서 1980. 5. 22. 상황을 “5. 23. 10:20 소방차에 탑승하여 교도소로 공격해 오는 폭도 4명 체포(앞바퀴 및 허부사격). 5. 23. 15:00-19:00 전방 추진진지. 부대가 교도소를 방어하면서 계속 공격에 대비하고, 방호 임무를 수행 중, 차후 임무수행을 위한 부대이동 대비상황에 따른, 재보급(식탄, 식량)을 위한 헬기회랑 확보를 위해, 진지를 추진토록 지시받고, 정문에서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 2Km 정도 추진하여 진지편성 헬기에 의한 재보급이 실시”되었다고 진술하였다.(군사편찬연구소(1985), 「작전참가 지휘관/참모 소감문」, 44~46쪽.)

<sup>467</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완배 피의자신문조서(2회)」(1995. 6. 16.), 14쪽.(102-17, 587쪽) 12대대 8지역대장 박경수는 ‘교도소 도착 후 각 지역대별로 배치되었을 때 삼양설탕 간판이 있는 고지에서 시위대가 사격해서 22:00경 6지역대가 고지를 점령하고 매복조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박경수 진술조서」(1995. 6. 14.), 12쪽.(102-22, 471쪽)] 박경수의 진술에 따르면 3공수여단의 광주교도소 도착 후 5. 21. 22:00부터 설탕고지는 줄곧 12대대 6지역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sup>468</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종헌 진술조서」(1995. 5. 15.), 20~21쪽

<sup>469</sup> ‘5. 23.에는 시위대의 총격으로부터 안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대대가 일부 병력을 교도소 밖의 전방으로 전진 배치하였는데, 그때 교도소에서 광주 쪽을 보았을 때 전방 오른쪽에 있던 산 위의 설탕 선전간판 옆에 12대대의 병력을, 전방 왼쪽으로서 어느 건물의 옥상에 다른 대대(11대) 병력을 배치하여 광주 쪽의 길목에 배치되었다. 그러던 중 5. 23. 10:20경인지 교도소에서 보니 소방차에 탑승한 시위대가 총을 쏘며 공격해 왔는데, 전진 배치되어 있던 건물 옥상의 병력들이 응사하자 소방차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홍건 진술조서」(1995. 5. 18.), 15쪽.(102-24, 802쪽)]



다.<sup>470</sup>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11대대장 임수원은 1995년 육본 고등검찰부에서 “5월 23일 10:20경에도 여러 대의 차량이 왔었는데 바리케이드 때문에 소방차 1대만 밀고 들어오면서 사격해 오길래 11대대 병력이 소방차 바퀴를 쏘아 정지시키고 시위대 4명을 생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sup>471</sup>(계엄군의 4차 교전 주장)

5월 23일 10시20분 도청 앞에서 소방차를 타고 가다가 문화동 동일실업학교 앞 노상에서 충격받은 뒤 체포되어 광주교도소로 끌려간 시위대원은 양○○(남, 56년생), 심○○(남, 58년생), 한○○, 정○○ 등 4명이었다. 이들은 끌려간 뒤 구타당했는데 양○○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대검에 찢리는 가혹행위를 당했다.<sup>472</sup>

5월 23일 19시 상황의 발생 장소는 주유소 삼거리 전방 추진진지로 11대대 작전지역이었다. 11대대는 5월 23일 헬기보급 작전을 수행할 때 교도소로부터 가장 멀리 나갔던 병력이었다. 무장 시위대의 규모는 2.5톤 트럭 한 대에 탑승한 43명이었다. 1995년 서울지검 조사에서 진술한 작전참모 김종현은 “5월 23일 19시경에는 헬기 보급작전이 끝나고 각 대대의 전방 추진진지에서 병력들이 철수할 때인데, 이때 다수의 시위대가 총을 쏘며 공격해 온다는 무전보고를 들었으며, 이때 가장 전방에 있던 11대대가 응사하여 1명을 사살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sup>473</sup> 5월 23일 19시 상황의 발생 장소는 12:00경 11대대 작전지역이었던 동일실고(학산중학교) 앞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인근으로 볼 수 있다.(계엄군의 5차 교전 주장)

이 사건으로 광주시 북구 임동에 살던 운전원 안병섭(남, 58년생)은 5월 23일 08시25분 광주교도소 부근에서 좌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검시는 5월 27일 18시30분

<sup>470</sup> 11대대 4지역대 15중대 통신 중사 이양교는 당시 3공수여단 병력이 소방차가 올라오는 것을 M203 고폭탄 1발을 쏘아 차량 시트에 박혔으나 터지지는 않았고, 이에 운전기사는 차량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 내려 차량을 방호물 삼아 움직였다고 진술하였다.[5·18조사위, 「이양교 진술녹취」(2020. 7. 7).]

<sup>471</sup> 육본 고등검찰부 「임수원 피의자신문조서」, 『5·18 수사기록』 23권, 30953쪽.

<sup>472</sup> 양○○ 보상심의자료 1379번 67~140쪽; 심○○ 보상심의자료 1928번 221~243쪽.

<sup>473</sup>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종현 진술조서」(1995. 5. 15.), 21쪽.

상무관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북구 풍향동에 살던 박○○(남, 58년생), 곽○○(남, 59년생)는 담양으로 가던 중 북구 문흥동 친구 집에서 이틀을 지내고 5월 23일 집으로 돌아가던 중 15시15분 지금의 광주시립도서관(무등도서관)이 보이는 문흥동 야산 산길에서 매복한 공수부대원들에게 체포되어 교도소 안으로 끌려 들어가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sup>474</sup>

이외에도 이○○(남, 59년생)는 5월 23일 10시30분 시위대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정찰하던 중 현 광주시립도서관(무등도서관) 부근 동일실업학교 앞에서 계엄군의 기습 총격받아 오른쪽 대퇴부에 총상을 입은 뒤 광주교도소로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 순찰차를 찾으러 갔다가 총상을 입었다. 바로 뒤에는 소방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찾으려던 순찰차를 발견했고 순찰차에서는 위험하니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를 눈치채지 못한 순간 총격받기 시작했다. 세 사람 모두 사로잡혔다.<sup>475</sup> 최○○(남, 59년생)은 5월 23일 16시 두암동 신진자동차교습소 앞에서 총격받고 우측상완 골개방성, 우측상안부 총상을 입고 광주교도소로 끌려갔다.<sup>476</sup>

#### 4)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와 민간인 피해 비교

20회 이상의 민간인 피해 사건 중에서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에서 무장 시위대가 광주교도소에 접근하면서 발포했다고 적시한 것은 <1차> 5월 21일 19시20분, <2차> 5월 22일 00시40분~00시50분, <3차> 5월 22일 9시~9시05분, <4차> 5월 23일 10시20분, <5차> 5월 23일 19시~19시40분 등 모두 5회이다. 5회 중 ‘교전’<sup>477</sup>이라고 표시한 경우는

474 곽○○ 보상심의자료 1296번 69~137쪽.

475 이○○ 보상심의자료 1943번 230쪽; 이○○ 구술자료(1999. 5. 13.)

476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소개』 99쪽.(102-113)

477 군사용어상 ‘교전’이란 “개인 또는 소부대간에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공격과 이에 대한 대응 행위이다. 무력 충돌은 강도와 범위, 지속 기간을 기준으로 전쟁, 전투, 교전으로 구분되는데, 교전은 소규모의 무력 충돌이 지역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육군본부(1999), 『군사용어사전』; 육군본부(2019), 야전교범 1-1 『군사용어』]



〈2차〉, 〈4차〉, 〈5차〉이다.<sup>478</sup>

1997년 판결에서 〈2차〉와 〈3차〉를 무장 시위대와의 ‘교전’으로 본 대법원은 제3공수여단이 교도소에 진지를 구축하고 난 이후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국가보안시설(가급)인 광주교도소에 무장 시위대가 접근하여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공격행위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하지만 ‘교전’으로 인정하지 않은 〈1차〉 상황은 15대대장 외 5명이 고속도로를 차단하기 위한 바리케이드 작업 중에 발생하였으며, 〈4차〉 상황은 ‘추진진지서’의 교전이라는 표기에서 보듯 교도소 밖 계엄군이 작전을 수행하던 곳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또한 〈5차〉 상황은 제3공수여단이 철수하던 중 교도소 전방 500미터 지점인 주유소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무장 시위대와의 ‘교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표 4-2-1〉제3공수여단 광주교도소 임무 수행 시 교도소 인근 시위대 동향

일시/차수	3공수여단 「전투상보」	광주교도소 「소요사태 상황보고」
5. 21. 17:20	이동 중 폭도의 저격에 의해 1명 부상	
〈1차〉 5. 21. 19:20	바리케이드 작업 중(구난차 1, 트럭 2, APC 이용) 폭도들 기관총 난사	[5. 21. 20:00] 4감시 서쪽 20m 지점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에 탑승한 무장폭도의 공격을 받고 계엄군이 응사 접전
〈2차〉 5. 22. 00:40- 00:50	광주교도소 폭도 기습, 피아교전	당소 서북쪽 고속도로에서 5대의 차량에 분승 침투 시도한 무장폭도와 지원군 교전 격퇴 [5. 22. 5:30] 고속도로 주변 수미상 폭도 침투 산발적 교전 격퇴

<sup>478</sup> 제3공수여단이 1980. 5. 21. 17:30부터 5. 23. 19:00까지 광주-담양 간 외곽 봉쇄 작전 중 민간인을 체포·연행하거나 총격을 가하여 사망·부상케 한 경우는 20차례 이상이다. 이 중에서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에 교도소 습격이라 적시한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1차〉, 〈2차〉 등으로 표시한다.

일시/차수	3공수여단 「전투상보」	광주교도소 「소요사태 상황보고」
〈3차〉 5. 22. 9:00-9:05	폭도 교도소 기습. 2.5톤에 5명 탑승 기관총 난사 돌진	[5. 22. 8:50-9:00] 정문 300m 지점까지 침투한 수 미상의 무장 폭도 지원군과 교전 격퇴 [5. 22. 10:00-13:00] 군용차량 2대에 LMG 장치 당소 앞 200m 지점까지 침투한 무장폭도와 교전격퇴. LMG 1정, 차량 2대 획득, 폭도 약간명 체포
〈4차〉 5. 23. 10:20	추진진지서 교전. 소방차 1대에 폭도 탑승 CAR 사격하며 돌진	
〈5차〉 5. 23. 19:00-19:40	철수 작전 중 교전. 주유소 삼거리서 2.5톤 1대에 폭도 3명 탑승 CAR 난사하며 접근	

〈표 4-2-2〉 광주교도소 공격 시위대의 규모 및 피해 상황

일시/차수	발생 장소	시위대 규모	전과 (시위대 무장)	시위대 피해	가해 대대
〈1차〉 5. 21. 19:20	고속도로 차단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인 2명(고귀석, 임은택) 사망,</li> <li>• 2명(이○○, 박○○) 부상</li> </ul>	• 15대대
	주유소 3거리 전방	트럭(버스) 1대	민간인 제보로 M1 소총 1정 회수	차를 버리고 도주	• 11대대 1지역대
〈2차〉 5. 22. 00:40-00:50	고속도로 진입로 바리케이드 차단지점	차량 6대	차량 6대, M1 소총 4정, 칼빈 3정, 실탄 M1 74발, LMG 39발, 칼빈 25발(칼빈과 LMG 바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위대 1명(서중덕) 사살</li> <li>• 1명 생포(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대대</li> <li>• 4감시대 경계병</li> </ul>
〈3차〉 5. 22. 9:00-9:05	주유소 삼거리	2.5톤 1대에 5명	차량 2.5톤 1대, LMG 1정, M1 1정, 칼빈 1정(실탄 230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위대 2명(이명진, 이용충) 사살</li> <li>• 4명 부상 후 도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대대 1, 2지역대</li> <li>• 1, 4감시대 경계병</li> </ul>
〈4차〉 5. 23. 10:20	11대대 추진진지 동일실고(학산중) 앞	소방차 1대에 4명	소방차 1대, 칼빈 1정(실탄 20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명 생포(한○○, 정○○, 양○○, 심○○)</li> </ul>	• 11대대 4지역대

일시/차수	발생 장소	시위대 규모	전과 (시위대 무장)	시위대 피해	가해 대대
〈5차〉 5. 23. 19:00- 19:40	동일실고 앞에 설치된 차량 바리케이드 전방	2.5톤 1대 에 3명	2.5톤 1대, 칼빈 1정(실탄 14발), LMG 실탄 13발	• 1명 사살(안병 섭) <sup>479</sup> • 2명 생포(박○ ○, 곽○○) <sup>480</sup>	• 11대대

#### 다. 제20사단 62연대 사건

광주교도소에 제3공수여단과 교체된 제20사단 62연대가 주둔하는 동안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었다.

담양에 살던 유○○(여, 60년생)은 5월 18일 이후 귀가하지 않는 남편 장○○(5월 20일 국군광주통합병원 입원)을 찾아 5월 24일 친구 2명과 함께 조선대, 전남대, 도청 앞 등을 찾다가 20시경 동료 직원의 승합차를 타고 담양으로 가던 중 교도소 앞에서 검문받고 끌려 나와 구타당해 실신했다.<sup>481</sup>

담양군 용면에 살면서 공업사를 운영하던 박○○(남, 54년생), 광주에 살던 김○○(남, 57년생)가 함께 고향인 담양으로 걸어가다가 5월 25일(또는 24일) 10시 문화동 검문소(현 무등도서관 부근)에서 계엄군에게 연행되어 지프차로 광주교도소로 이동, 11일간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는 6월 5일 상무대로 이송되어 6월 6일 10시 206명과 함께 석방되었다.<sup>482</sup>

479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광주지검 검시조서』, 『5·18민주화운동자료총서』 20권, 387쪽. 검시조서에는 운전원이었던 안병섭은 1980. 5. 23. 08:25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M-16 총상으로 사망하였다. 사망시간에 대한 오차가 있으나 5. 23. 광주교도소 앞에서 사망한 시민은 안병섭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3공수여단 『상황일지』에서 정리하고 있는 5. 23. 19:00-19:40 상황의 사망자로 보인다.

480 합수부(1980. 7. 20.), 『훈방대상자』, 『광주사태 관련자료』, 박○○, 곽○○는 합수부 훈방자 D급(단순 시위 참가자, 기타 경미한 혐의자 및 혐의 규명 불능자)으로 분류되었다. 1980. 5. 23.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체포된 인원은 박○○과 곽○○뿐이었다. 박○○, 곽○○의 ‘범죄사실’란에는 이들이 5. 23. 15:00경 현 광주시립도서관(설탕고지)가 보이는 야산 사이길로 걸어서 집으로 가던 길에 계엄군에 체포되어 광주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481 유○○ 보상심의자료 1190번 891~942쪽.

482 박○○ 보상심의자료 1906번 334~372쪽; 김○○ 보상심의자료 1988번 152~182쪽.

윤전기사 김○○(남, 56년생)과 그의 아내 정○○, 강○○, 강○○가 5월 25일 15시 두암동 동일실업학교 앞 계엄군 검문소에서 연행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sup>483</sup>

## 라. 담양 제31사단 사건

5월 21일 제31사단 96연대 1대대(1훈련대, 창평 예비군대대)가 담양에 배치되었다. 제31사단 96연대 1대대 1소대장 이○○에 따르면, 5월 21일 사단으로 철수한 뒤 제31사단의 각 병력이 외곽지역 봉쇄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1대대 중 도청에서 철수하였던 30여 명의 병력이 모두 담양읍 입구로 이동하여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계 임무를 수행하였다.<sup>484</sup>

광주 서석동에 살던 유○○(남, 61년생)는 5월 22일 제31사단 96연대 창평 예비군 관리대대 앞에서 연행되어 폭행당했다.<sup>485</sup> 정○○(남, 63년생)은 5월 22일 09시경 창평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서 군인에게 잡혀 구타당했다. 함께 있던 나○○, 유○○가 카빈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sup>486</sup>

김○○(남, 60년생), 이○○(남, 60년생), 장○○(남, 56년생)이 5월 23일 14시경 담양군 창평면 예비군 관리대대(창평 예비군대대, 대대장 김운관)로 연행되어 구타당했다. 이들은 5월 26일 14시경 석방되었다.<sup>487</sup> 5월 21일 오전 광주 시내에서 차량 시위에 참여하던 김○○, 이○○ 등 시위대들이 무기를 구하기 위해 나주와 해남 등의 경찰서를 다니다가 송정역에서 광주 시내로 들어가려 했으나 상무대 앞에 있던 바리케이드로 인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나주로 갔다가 영암, 강진, 해남을 다니며 광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83 보상심의자료 2028번 180쪽; 강○○ 구술, 『5·18민중항쟁 영상채록 전사자료』, 72쪽.

48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 진술조서』(1995. 5. 11.), 12쪽.(102-24, 758쪽)

485 보상심의자료 2059번 291쪽.

486 보상심의자료 1530번 225~288쪽.

487 5·18조사위, 『김○○723\*(김○○) 진술조서』(2022. 11. 22.), 3쪽; 김○○ 보상심의자료 1128번 56쪽; 이○○ 구술자료(2000. 2. 24.); 장○○ 보상심의자료 1128번 205~425쪽.

찾았다. 화순에서 차 고장으로 20여 명이 걸어가다가 화순탄광 통근 차를 타게 되었고 곡성 삼기면에서 삼기지서장이 차에 올라와 설득하여 총을 버스에 둔 채 내리게 되었다. 이후 걸어서 창평으로 가다가 담양 창평 예비군대대의 검문에 걸려 모두 잡혔다.

## 제3절 소결

조사 결과,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계엄군의 외곽 봉쇄 작전 과정에서 71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되었으며, 208명의 민간인이 총상을 당하거나 폭력에 의해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망자 71명을 가해 수단으로 분류하면, 63명(88.8%)은 총격, 4명(5.6%)은 폭행, 4명(5.6%)은 차량 전복 등에 의한 사망이었다. 이를 다시 봉쇄 작전의 특성으로 분류하면, 35명(49.3%)은 차량 탑승 중, 32명(45.1%)은 보행 중, 4명(5.6%)은 집에 있던 중 사망했다. 피해자의 거주민 여부로 분류하면, 19명(26.8%)은 거주민, 52명(74.2%)은 군 매복지를 지나는 외부인이었다. 71명의 사망자 중 “저항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엄군에 의해 고의로 살해된 2명 이상의 비무장 민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66명으로 판단된다.

실종자는 7명으로 임옥환의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군의 외곽 봉쇄 작전과 실종 경위의 관련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부상자 208명을 가해 수단으로 분류하면, 111명(53.4%)은 총격, 89명(42.8%)은 폭행, 8명(3.8%)은 간접 피해에 의한 부상이었다. 봉쇄 작전의 특성으로 분류하면, 89명(42.8%)은 차량 탑승 중, 96명(46.2%)은 보행 중, 23명(11.0%)은 집에 있던 중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의 거주지 여부로 분류하면, 65명(31.3%)은 거주민, 143명(68.7%)은 군 매복지를 지나는 외부인이었다.

외곽 봉쇄 작전 중 민간인 피해 및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 주체는 제31사단 11경비대대, 전교사 기갑학교, 제3공수여단,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 제20사단

61연대와 62연대로 확인된다. 이들에 대한 지휘책임은 특전사령관, 전교사 사령관, 계엄 사령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게 이른다.







## 제5장

#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 제1절 연행·구금·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 1. 조사 배경

#### 가. 조사 배경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지역계엄에서 전국계엄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여 모든 정치활동과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 금지, 모든 대학 휴교 조치 등을 단행하였다. 이와 함께 5월 18일 새벽 3시를 기해 전국 31개 주요 대학과 136개 보안목표에 계엄군 25,000여 명을 배치시키고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회 주요 간부 등의 검거에 나섰다.

한편 1980년 5월 18일 오전 전남대에 배치된 계엄군의 학교 출입금지 조치와 폭행 등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하자, 계엄군이 이를 강경 진압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되어 같은 달 5월 27일까지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진압과정 또는 수사과정에서 수천 명이 연행·구금되었다.

육군본부가 1982년에 발간한 「계엄사」에서는 소위 광주소요 관련자가 검거 2,577명, 구속 371명, 불구속 9명, 훈방 2,197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전국적으로 예비검속자 명단에 올라 영장 없이 체포되거나 검거된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 등에 대해 검찰이 1995년에 발표한 예비검속 관련 총 검거자수 2,699명 등을 합하면,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한 시기의 연행·구금자 수는 중복자수를 감안하더라도, 5,000명을 훨씬 상회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거된 사람들은 당시 합수단(치안본부·경찰서), 보안사(지역 보안대)뿐만 아니라 군부대(헌병대·상무대)에 구금되어, 이중 상당수가 영장 없는 불



법 구금, 폭행, 고문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았음이 나중에 언론과 국가조사 등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한 시기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예비검속과 소위 광주소요사태, 반군부 시위 등을 이유로 수천 명이 계엄당국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당시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 등이 진상규명을 신청하였으므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2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2021년 8월 23일 직권조사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3과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추진하였다. 이 사건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은 2023년 12월 26일 제116차 전원위원회에 진상규명 의견으로 상정되어 표결로 원안이 수정의결되었다.<sup>1</sup>

## 나. 조사 범위

이 사건의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2호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조문과 동법 제2조(정의) 3호의 가, “피해자”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라는 조문에 대하여, 5·18조사위는 첫째, 대법원의 판결<sup>2</sup>을 존중하고, 둘째, 5·18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전국적 범위에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인정해왔던 사실을 고려하며, 셋째,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맞서서 전국적으로 저항했던 5·18민주화운동 이전, 소위 ‘민주화의 봄’ 시기부터 1981년 1월 24일 계엄해제 직전까지의 시기에 정치

1 이종현, 차기환, 이동욱 위원은 이 사건 진상규명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 소수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책에 수록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해당 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대법원 96도3376호, 「판결문」(1997.4.17.).

인, 재야인사, 학생, 시민이 연행되거나 검거된 사건 일체를 조사대상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5·18조사위는 이 사건의 조사범위에 따른 조사과제를 ①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전국적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하는 등 포고령 위반,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되거나 기소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②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전후 예비검속 사건, ③ 5·18민주화운동 기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사건, ④ 5·18민주화운동 이후 계엄해제 때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알리거나, 그와 관련한 인권침해사건 등으로 정하였다.<sup>3</sup>

## 2. 조사 결과

### 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1) 사건 개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하 내란음모사건)은 1979년 12·12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신군부는 민주화와 헌정질서 수립을 촉구하는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들을 5월 17일 전후로 체포하여 국기문란행위(내란음모) 및 5·18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이는 신군부가 1980년 5월 초순경부터 계획한 이른바'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조사계획'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계엄 당국은 “김대중이 국민연합과 복학생 조직을 이용하여 각 대학 총학생회장을 사주, 학원소요를 일으켰고, 정부 전복을 기도한 내란선동 배후조종자이며, 광주사태

3 이종협, 차기환, 이동욱 위원의 소수의견에는 이 사건 조사범위와 관련한 반대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책에 수록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해당 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는 김대중으로부터 데모 자금과 사주를 받은 정동년과 광주지역 불순분자들의 선동에 의한 내란 폭동”이라고 발표하였다.

김대중과 문익환 등 국민연합 인사들은 1980년 5월 17일 체포되어 군검찰에 송치되는 7월 12일까지 중앙정보부 남산 지하에서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구금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은 1980년 11월 3일 육본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김대중 이외 23명도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김대중을 비롯한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 2) 조사 결과

### 가) 합동수사본부의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 착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함께 유신독재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긴급조치가 해제되었다. 유신독재를 반대했던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구속 및 정치규제도 풀렸다. 국회에서는 민주헌정 회복작업이 추진되었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도 상승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일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최규하 대통령은<sup>4</sup> 정국 안정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1980년 3월 대학교 개강과 함께 시국사건 관련 제

4 1979년 10월 27일부터 1979년 12월 5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을 역임했고, 1979년 12월 6일 제10대 대통령에 당

적생들이 복학하면서 소위 ‘민주화의 봄’이라 불리는 1980년 4, 5월을 맞이하였다. 학생들의 계엄철폐 등의 민주화 요구는 전국에 걸쳐 분출되었으며, 1980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의 대규모 가두시위가 전개되었다<sup>5</sup>.

재야인사 및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에 대하여, 12·12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비상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1980년 5월 초순 이전부터 신군부에 의한 지속적인 정국 장악을 위하여 시국수습 방안과 국기문란 조사계획을 준비”하였음을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이 1996년 1월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술<sup>6</sup>하였다.

이는 199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이학봉<sup>7</sup>과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장 김근수<sup>8</sup>가 진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진술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1980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경까지 이학봉 합수단장은 보안사 정보처, 경찰, 중앙정보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국기문란자 명단과 권력형부정축재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980년 5월 13일 20:00경 보안사령관실에서 권정달 정보처장, 이학봉 합수단장과 함께 작성된 국기문란자 명단과 권력형부정축재자 명단을 검토하여 체포자 선정작업을 완료하였다.

1980년 5월 17일 11:00경 합동수사본부의 각 국장, 치안본부 3부장, 시경 관계자를 보안사령부로 소집하여 김대중을 비롯한 재야인사, 학생 등 국기문란자 및 권력형부정축재자 체포자 명단을 배포하였고, 중앙정보부 김근수 안전조사국장에게 국기문란자 중 국민연합에 속한 자들을 검거하여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국기문란자가 있는 지역의 해당 보안부대장에게 전통으로 검거지시를 내렸다.

.....  
선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최규하 대통령이란 대통령권한대행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5 1980년 4월~5월 당시 신문자료.

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권정달 진술조서」(1996.1.4.), 『5·18사건 수사 기록』 102권, 106264~106267쪽.

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학봉 진술조서」(1995.3.28.), 『5·18사건 수사 기록』 16권, 25235~25239쪽.

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근수 진술조서」(1995.4.17.), 『5·18사건 수사 기록』 20권, 28603~28605쪽.

1980년 5월 17일 14시경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장 김근수는 합동수사본부의 국기문란자 조사계획에 따라 체포자별로 중앙정보부 수사관 2~3명으로 배정된 수사팀을 편성하였다. 5월 17일 19시경 중앙정보부 수사관들 전부를 남산 대공수사국 강당에 소집하여 수사팀별로 분배·담당시킨 체포 대상자를 22시를 기해 체포 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특히 김대중 체포 관련 수사팀에게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수경사 병력 1개 분대 정도를 지원받아 출동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경비사령부 헌병단장 성환옥은 1995년 12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진술에서 “5월 17일 저녁, 중앙정보부 최규희 부국장의 요청을 받고 헌병단 소속의 장교 1명과 2개 분대 병력을 지원하여 주었다”라고 진술<sup>9</sup>하였고, 1980년 수도권경비사령부(이하 수경사) 부대사에서 『80.5.18. 중정지원: 1/18(특정인 체포 작전)』이라고 기재된 수경사 병력출동 현황표<sup>10</sup>에서도 김대중 체포 수사팀이 수경사 병력과 함께 출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내란음모사건 관련 국민연합 인사 및 복학생들의 체포자 명단은 아래 <표 5-1-1>과 같다. 그 외 내란음모사건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학민은 1980년 5월 18일에 검거<sup>11</sup>되었고, 서원석은 관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sup>12</sup>받았으며, 1980년 5월 22일 중앙정보부가 조성우와 함께 장기표, 심재권을 국가기반 문란사범 혐의자로 지명수배한 전언통신문<sup>13</sup> 또한 확인되었다.

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성환옥 진술조서」(1995.12.24.), 『5·18사건 수사 기록』 96권, 104095쪽.

10 수도권경비사령부, 『부대사』(1980), 56쪽.

1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학민에 대한 범죄인지보고(1980년 5월 18일 강남서에서 검거)」, 『5·18사건 수사 기록』, 80222쪽.

1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서원석에 대한 수도권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서」(1980.11.13.), 『5·18사건 수사 기록』, 54253쪽.

1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국가기반 문란사범 관련 혐의자 지명수배 의뢰 전언통신문」, 『5·18사건 수사 기록』, 71274쪽.

〈표 5-1-1〉 김대중 등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 명단(36명)

연번	성명	직업	죄명	확정판결	비고
1	김대중	평민당 총재	내란음모, 국보법, 반공법, 외화관리법, 계엄법 등 위반	사형	81. 1. 23. 무기로 감형 82. 3. 3. 징역20년 감형 82. 12. 24.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2	문익환	전민통련 의장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징역15년	81. 1. 23. 징역10년 감형 82. 3. 3. 징역5년 감형 82. 12. 24.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3	이문영	고대 교수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징역15년	81. 1. 23. 징역15년 감형 82. 3. 3. 징역8년 감형 82. 12. 24. 형집행정지 84. 8. 14. 사면복권
4	예춘호	한겨레당 대표위원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징역15년	81. 1. 23. 징역8년 감형 82. 3. 3.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5	고은태	시인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교사	징역15년	81. 1. 23. 징역10년 감형 82. 3. 3. 징역5년 감형 82. 8. 15. 형집행정지 83. 12. 23. 사면복권
6	김상현	민주당 부총재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징역10년	81. 1. 23. 징역7년 감형 82. 3. 3. 징역4년 감형 82. 8. 15.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7	이신범	민주사상연구소장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징역12년	81. 1. 23. 징역9년 감형 82. 3. 3. 징역8년 감형 82. 12. 24.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8	조성우	전민청협 의장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징역15년	81. 1. 23. 징역10년 감형 82. 3. 3. 징역9년 감형 82. 12. 24.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9	이해찬	평민당 국회의원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교사	징역10년	81. 1. 23. 징역7년 감형 82. 3. 3. 징역6년 감형 82. 12. 24.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연번	성명	직업	죄명	확정판결	비고
10	이석표	민주사상연구소장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징역7년	81. 1. 23. 징역5년 감형 82. 3. 3. 징역4년 감형 82. 8. 15.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11	송기원	전 중앙대 학생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징역6년	81. 1. 23. 징역7년 감형 82. 3. 3. 징역6년 감형 82. 12. 24. 형집행정지 83. 12. 23. 사면복권
12	설훈	김대중 비서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징역10년	81. 1. 23. 징역7년 감형 82. 3. 3. 징역6년 감형 82. 12. 24. 형집행정지 83. 12. 23. 사면복권
13	심재철	전 서울대 학생회장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징역5년	80. 11. 3. 사면 83. 12. 23. 복권
14	서남동	연세대 교수	계엄법 위반	징역2년6월	80. 11. 3. 사면 83. 8. 12. 복권
15	김종완	평민당 국회의원	계엄법 위반	징역4년	80. 3. 3. 형집행정지 87. 7. 10. 복권
16	한승헌	변호사	계엄법 위반	징역4년	81. 5. 11. 사면 83. 8. 12. 복권
17	이해동	목사	계엄법 위반	징역4년	81. 5. 11. 사면 83. 8. 12. 복권
18	김윤식	무직	계엄법 위반	징역 2년 6월, 집유 3년	81. 5. 11. 사면
19	한완상	서울대 교수	계엄법 위반	징역 2년 6월	80. 11. 4. 사면 84. 8. 14. 복권
20	유인호	중앙대 교수	계엄법 위반	징역 2년	81. 3. 3. 사면 83. 8. 12. 복권
21	송건호	한겨레신문 발행인	계엄법 위반	징역 2년	81. 3. 3. 사면 83. 8. 12. 복권
22	이호철	소설가	계엄법 위반	징역 3년 6월	80. 11. 3. 사면 83. 8. 12. 복권
23	이택돈	전 국회의원	계엄법 위반	징역 2년, 집유 3년	83. 8. 12. 복권
24	김녹영	전 국회의원	계엄법 위반	징역 3년, 집유 5년(사망)	83. 8. 12. 복권 사망
25	박성철	전 김대중 경호차장	계엄법 위반	징역 2년 (사망)	81. 5. 11. 사면 85. 1. 30. 사망

연번	성명	직업	죄명	확정판결	비고
26	한화갑	김대중 비서	계엄법 위반	징역 4년	81. 8. 15.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27	김옥두	김대중 비서	계엄법 위반	징역 3년	81. 8. 15.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28	함윤식	전 김대중 비서	계엄법 위반	징역 3년	81. 8. 15.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29	김홍일	무직	계엄법 위반	징역 3년	81. 5. 11. 사면 87. 7. 10. 복권
30	권혁충	무직	계엄법 위반	징역 1년 6월	81. 5. 11. 사면 87. 7. 10. 복권
31	전대열	전 민주통일당 정책 연구실장	계엄법 위반	징역 1년 6월	81. 5. 11. 사면 84. 8. 14. 복권
32	김대현	전 김대중 경호원	계엄법 위반	징역 1년 6월	81. 5. 11. 사면 87. 7. 10. 복권
33	오대영	식료품 판매업	계엄법 위반	징역 1년 6월	81. 5. 11. 사면 87. 7. 10. 복권
34	손주향	평민당 의원	계엄법 위반	징역 3년	81. 1. 12. 형집행정지 81. 3. 3. 사면 87. 7. 10. 복권
35	박정훈	무직	계엄법 위반	징역 3년	81. 12. 15. 사면 83. 8. 12. 복권
36	박세경	변호사	계엄법 위반	징역 2년, 집유 3년	80. 11. 8. 형집행정지 87. 7. 10. 사면복권

출처: 국군기무사령부(1988), 1988. 8. 김대중 등 내란음모 관련 기본자료, 162~166쪽

## 나) 합동수사본부 체포과정에서의 구타 등 인권침해

합동수사본부의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에 따라,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장 김근수의 지시를 받고 김대중을 체포하기 위해 동교동으로 출동한 중앙정보부 수사관 이기동은 “5월 17일에 김근수 국장이 중앙정보부 남산 강당(대공수사국 강당)으로 전국 대공수사과 요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단에게 230명 규모의 체포자 명단(김대중 세력을 포함한 정치인, 재야, 복학생 등 반정부 인사)을 제시하며 수사관들을 각각 지정하여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김근수 국장은 총을 휴

대할 것을 명령하였고, 유사시에 사용할 것을 허용하였습니다.”라고 2023년 10월 20일 5·18조사위의 면담조사에서 진술하였다.

김대중의 동교동 자택에서 진행된 김대중 체포과정에 대하여 이희호는 “1980년 5월 17일 23시 30분경 계엄군 여러 명이 김대중을 연행하는 과정에 동교동 집 안에 있는 비서진 및 경호원들과 계엄군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갑자기 전깃불이 나가면서 곤봉과 총으로 구타와 폭행을 하고 유리창이 깨지며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대중이 연행된 뒤 촛불과 후레쉬로 집안을 확인해보니 여기저기 핏자국이 흩어져 있었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방극래는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이 10여cm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희호는 “그날 밤부터 계엄군들이 집주위를 에워싸고 외부인 출입을 막았으며, 집안에는 계엄군 2명이 총을 들고 24시간 대문을 지키고 있었고, 바깥출입을 일체 못하게 하여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가택연금이 해제된 1981년 1월까지 병원에도 못 가고 집안에서 구급약으로 치료해야 했다.”라고 증언<sup>14</sup>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보부 수사관 이기동은 2023년 10월 20일 5·18조사위 면담조사에서 “본인이 김대중 체포를 담당하게 되어 합동수사단 헌병들(장교 1, 사병 28)을 대동하고 김대중 동태 파악 담당 요원(중앙정보부 안전국 요원)의 안내를 받아 남산에서 출발하여 자정 직전에 동교동에 도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김대중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경사 헌병들과 김대중 비서진 사이의 몸싸움을 진정시키면서 “현재 소총에 장탄이 되어 있고 착검이 되어 있으니 절대로 무기를 사용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진술과 “3명 정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음”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통해 착검한 소총을 지닌 군 병력 및 유사시 발포를 허용받은 권총을 소지한 수사관들과 김대중 비서진 사이에 몸싸움과 함께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비서진 중 상해를

14 2005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회 상이 관련 신청인 방극래에 대한 이희호의 참고인 진술.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경사 헌병단장 성환옥은 “중앙정보부에 지원 나갔던 장교가 돌아와서 김대중씨 집에 들어갈 때 사소한 마찰이 있었다는 결과보고를 받았다”라는 서울중앙지검 진술<sup>15</sup>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그 외 1980년 5월 17일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국기문란 사범으로 체포된 민주인사들의 당시 체포상황에 대해서는 이문영, 송건호 등 14명의 진술이 있다.

#### 다)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장 김근수의 1995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검 진술과 1995년 5월 24일 중앙정보부 수사관 최태용의 서울중앙지검 진술에 따르면, 중앙정보부 수사관 홍순걸이 문익환을, 중앙정보부 수사관 서재봉이 예춘호를, 중앙정보부 수사관 이덕형이 김상현을, 중앙정보부 수사관 윤하경이 이신범을, 중앙정보부 수사관 최태용이 김대중을 수사하였고, 이해동은 2020년 11월 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 녹취에서 ‘손중덕’이 본인을 체포하고 수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구속자와 담당 수사관의 현황은 <표 5-1-2>와 같다.

1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성환옥 진술조서」(1995.12.24.), 『5·18사건 수사 기록』 96권, 104095~104096쪽.

〈표 5-1-2〉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장 김근수, 중앙정보부 수사관 최태용의 진술과 이해동의 진술

연번	성명	담당 수사관	비고
1	김대중	최태용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장 김근수 진술 (1995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검 정수28604~28605)
2	문익환	홍순걸	중앙정보부 최태용 진술 (1995년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정수29513~29514)
3	예춘호	서재봉	중앙정보부 최태용 진술 (1995년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정수29513~29514)
4	김상현	이덕형	중앙정보부 안전조사국장 김근수 진술 (1995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검 정수28604~28605)
5	이신범	윤하경	중앙정보부 최태용 진술 (1995년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정수29513~29514)
6	이해동	손중덕	이해동 구술녹취문 103쪽 (2020년 11월 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해동 구술녹취문)

중앙정보부는 합동수사본부의 묵인하에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의 명의를 도장을 도용하여 수사기록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사실은 당시 보안사 육군 준위 양일근<sup>16</sup>, 장병화<sup>17</sup>, 고병천<sup>18</sup>의 5·18조사위 면담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고, 합동수사본부 5국에서 수사를 받은 복학생들 또한 중앙정보부의 수사를 받은 후에 합동수사본부 5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합동수사본부 수사기록<sup>19,20,21</sup>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자 명의도용 수사기록 작성은 1980년 당시 시행법인 형

16 5·18조사위, 「보안사령부 육군 준위 양일근 진술조서」(2023.11.1).

17 5·18조사위, 「보안사령부 육군 준위 장병화 진술조서」(2023.10.19).

18 5·18조사위, 「보안사령부 육군 준위 고병천 진술조서」(2023.10.24).

1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대중 등 24명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수사·재판기록 중 피의자 이해찬 수사기록」, 『5·18사건 수사 기록』, 77300쪽.

2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대중 등 24명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수사·재판기록 중 피의자 이석표 수사기록」, 『5·18사건 수사 기록』, 77848쪽.

2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대중 등 24명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수사·재판기록 중 피의자 조성우 수사기록」, 『5·18사건 수사 기록』, 77101쪽.

법상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합동수사본부는 당시 시행법인 군법회의 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로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들을 수사한 것이다.

1995년 5월 17일 내란음모사건 고소·고발인으로서 이신범 외 13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합동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진술<sup>22</sup>하였다. 그러나 김근수는 2023년 11월 2일 5·18조사위 진술에서 “조직적으로 고문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대중은 재야인사이기 때문에 매일 군의관을 대기시켰습니다. 고함 지르고 뺨을 때리거나 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고문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CCTV로 보는 과정에서도 그런 경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라면서, “수사관들이 저 모르게 할 수는 있었으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까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 과정에 김근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개인적 가혹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조직적’인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중앙정보부의 수사를 받았던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김대중의 지시로 국민연합을 주축으로 하여 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사주·선동·배후 조종,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였다”는 자백을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관련자의 해당 진술은 1980년 합동수사본부 재판기록인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sup>23</sup>에도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고, 1998년과 2000년 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 심의에서 구타나 고문 등이 존재하였던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속영장 없는 장기 구금상태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잠 안 재우기·모멸감 주기·협박, 구타를 포함한 고문 등의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가 ‘조직적’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고소·고발장」, 『5·18사건 수사 기록』, 22931~24245쪽.

23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문익환의 상고이유서」(1980.11.26.), 『5·18사건 수사 기록』, 59439~59440쪽.

### 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장기 구금 수사

1980년 5월 22일 합동수사본부는 『김대중에 대한 계엄사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하였다. 김대중, 문익환, 이문영, 예춘호, 고은태, 김상현을 1980년 5월 17, 18일 체포하여 군검찰부로 송치하기 전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중앙정보부 남산 지하실에서 수사하다가 1980년 7월 9일에서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남동, 김종완, 한승현, 이해동, 김윤식, 한완상, 유인호, 송진호, 이호철, 이택돈, 김녹영 또한 1980년 5월 17, 18일 체포하여 군검찰부로 송치하기 전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로 중앙정보부 남산 지하실에서 구금수사를 하였고, 군검찰부로 송치하기 전인 1980년 7월 14일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복학생들인 이신범, 조성우, 이해찬, 이석표, 송기원, 설훈, 심재철도 체포된 6월 중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되어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수사를 받은 후 합동수사본부 5국으로 이송되어 수사받았음을 이해찬과 이석표, 조성우, 한화갑의 5·18조사위 면담조사와 1980년 합동수사본부 수사기록에서 확인하였다.

김근수는 해당 사실에 관하여 2023년 11월 2일 5·18조사위 면담조사에서 “과거에는 비밀비재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불법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보안사 준위 장병화는 “구속영장 없는 장기 감금상태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위법이 맞습니다”라고 2023년 10월 19일 5·18조사위 면담조사에서 진술하였다. 합동수사본부의 행위는 당시 시행법인 군법회의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였다. 또한 합동수사본부는 위법한 수단으로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하였고, 그 사실에 대한 군검찰부의 묵인과 함께 사법절차를 진행하였다.

### 마) 재판과정에서의 불공정성

1988년 12월 6일 제15차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신범은

“80년 8월 16일 새벽 2시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육군교도소에서 저를 깨워가지고 목욕탕 옆의 골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최태곤 과장하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예라고 여덟 번만 하면 다 잘 해결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만일 말을 안 들으면 네 신상에 매우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월 17일 공소장 낭독이 있고 나서 그다음 공판이 진행되기 전에 저를 끌어내서 똑같은 사람들이 ‘국보위 상임위원장도 알고 있는 일인데 네가 여기서 협조하지 않으면 참으로 견뎌내기 어려울 거다.’ 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김상현 증인과 심재철 군도 그런 협박을 당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진술<sup>24</sup>하였다.

또한 이신범은 1980년 11월 25일 상고이유서에서 “원심에서 본인이 밝혔듯이 검찰관들은 80년 7월 초순 중앙정보부 3층에 몇 차례 와서는 사건 날조를 법률적으로 돕는 등, 검찰관들의 방문이 있을 때마다 중앙정보부에서의 본인 등의 고통은 가중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지극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검찰관들의 협박과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을 것임은 재연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1심 공판 중인 법정 에까지 중앙정보부원들이 찾아와 공판정에서의 허위자백을 종용·협박하였음은 제1심 최 후진술 시에 밝힌 대로입니다”라며 육군본부(이하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공판과정을 진술<sup>25</sup>하였다.

문익환의 처 박용길은 “구속기간에 가족 면회 및 변호인 접견 금지, 가족들은 피고들이 5월 17일 연행된 후 84일만인 8월 9일 처음으로 면회가 되었다. 당국의 종용을 받은 몇몇 변호인을 공판 개시 직전 선임할 때 잠깐 접견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모든 접견 때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2명이 동석하여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자유로운 접견이 불가능하며 이는 첫 면회 이후 계속되었다.”라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술<sup>26</sup>하였다.

24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 「제15차 회의록」(1988.12.6), 103쪽.

2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신범 상고이유서」(1980.11.25.), 『5·18사건 수사 기록』 제51권, 59664쪽.

2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박용길 진술서」, 『5·18사건 수사 기록』 제14권, 24185쪽.

또한 문익환은 1980년 11월 26일 상고이유서<sup>27</sup>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하였고 법정 안에 사복을 한 기관원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과 함께 재판절차에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은 1994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고소고발장(서울중앙지검 정수22930~22932)에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 8월 29일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으로 부임한 김충우는 199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안사령부가 김대중 사건의 재판과정에 관여한 경위에 대해 ‘전임 대공처장인 이학봉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가 있으면서, 수감자 동향, 재판부 동향 등 여러 가지 보고를 종합하여 선고일이 되기 전 미리 재판부에 형량을 얼마로 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지침을 내려보내곤 하였다.’고 진술<sup>28</sup>하였다.

육본 법무감실 검찰부장 정기용의 1994년 12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진술<sup>29</sup>과 문익환의 처 박용길의 진술을 종합하면, 내란음모사건의 피고인들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또한 보안사 대공처장 김충우의 “당시 보안사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수사관을 파견하여 수감자 동향,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며, 선고형량까지 정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다”라는 1996년 1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진술과 “공판과정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면서, “분리심문에 들어가게 된 원인이 중앙정보부의 피고인에 대한 협박·회유의 막후공작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이신범의 진술<sup>30</sup>과 1980년 11월 25

2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문익환의 상고이유서」(1980.11.26.), 『5·18사건 수사 기록』, 49403~59456쪽.

2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보안사령부 대공처장 김충우 진술」(1996.1.13.), 『5·18사건 수사 기록』, 107974~107975쪽.

29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육군본부 법무감실 검찰부장 정기용 진술」(1994.12.10.), 『5·18사건 수사 기록』, 26711쪽.

3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신범 상고이유서」(1980.11.25.), 『5·18사건 수사 기록』 제51권, 59664쪽.

일 상고이유서<sup>31</sup>의 기록으로 보아, 군검찰 조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군검찰과 재판부에 대한 보안사와 중앙정보부의 끊임없는 조정과 통제, 피고인들에 대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내란음모사건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라 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방어권마저 재판부에 의해 무시되면서 급속히 불공정하게 진행된 재판이었다.

#### 바) 1980년 5월 22일 『김대중에 대한 계엄사 중간수사 발표』과정 조사

1980년 5월 21일 13시경 광주시 소재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광주시민에 대한 집단발포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5월 21일 하오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광주 일원에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계엄군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난 18일 수백 명의 대학생에 의해 재개된 평화적 시위가 오늘의 엄청난 비상사태로 발전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이라는 『광주사태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sup>32</sup>하였다.

1980년 5월 22일 합동수사본부는 “김대중이 대중선동과 민중봉기로 정부 전복을 기도하고 계엄해제, 언론자유 보장, 특정인 퇴진 등 5개 항을 지시, 학생소요를 배후 조종했다는 내용과 함께 김대중의 학생소요 배후 선동 사실, 사상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자제, 자숙을 요구”하는 『김대중에 대한 계엄사 중간수사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는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상기 『광주사태에 대한 특별담화문』과 함께 1980년 5월 22일 경향신문 1면에 게재되었고, 동아일보 1면에는 『광주사태의 일자별 보도기사』, 1980년 5월 23일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1면에 합동수사본부의 『김대중에 대한 계엄사 중간수사 발표』가 ‘광주

3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신범 상고이유서』(1980.11.25.), 『5·18사건 수사 기록』 제51권, 59658쪽.

32 『경향신문』, 1980.5.22, 1면



사태에 관한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합동수사본부 수사기록에 따르면, 1980년 5월 22일 『김대중에 대한 계엄사 중간수사 발표』까지 작성된 수사기록은 1980년 5월 20일의 김대중 1건, 1980년 5월 19일, 20일의 예춘호 2건, 1980년 5월 19일의 김상현 3건, 1980년 5월 20일, 21일의 한승현 2건, 1980년 5월 21일의 이해동 1건, 1980년 5월 18일, 19일의 한완상 2건으로 총 11건이었음을 확인하였다.

5·18조사위는 1980년 5월 22일 합동수사본부의 『김대중에 대한 계엄사 중간수사 발표』이전의 내란음모사건 관련자의 수사기록을 검토한바, 『김대중에 대한 계엄사 중간수사 발표』에서 제시한 ‘수사 과정에 드러난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1980년 5월 22일 합동수사본부의 『김대중에 대한 계엄사 중간수사 발표』가 시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로 인해 더욱 격렬해진 광주사태, ② 1980년 5월 22일 광주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언론보도와 함께 『김대중에 대한 계엄사 중간수사 발표』가 게재된 사실<sup>33</sup>, ③ “수사가 거의 되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김근수에게 합동수사본부 합수단장 이학봉이 “김대중 씨 중간수사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라.”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김근수의 진술<sup>34</sup>, ④ “저는 위 발표문 작성, 발표에 관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발표문의 작성, 발표 배경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나 그 당시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김대중씨의 진술을 메모한 것과 자료들만 있고 수사기록이 거의 꾸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드러난 양 확정적으로 중간수사내용을 발표한 것은 다소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김대중 수사를 담당하였던 중앙정보부 수사관 최태용의 진술<sup>35</sup>, ⑤ “조사를 해 보니 법률적으로 형법상 내란음모로 판단되었습니다. 광주사태가 일어난 뒤로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국기문란에 해당되었

33 『경향신문』 1980.5.22. 1면.

3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김근수 진술조서』(1995.4.17.), 『5·18사건 수사 기록』 20권, 28614쪽.

35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최태용 진술조서』(1995.5.24.), 『5·18사건 수사 기록』 21권, 29527쪽.

는데 이후 수사를 거쳐 법률자문을 받다 보니 내란음모로 적용되었습니다.”라는 김근수의 진술<sup>36</sup>, ⑥“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표를 먼저하고, 수사를 그 발표에 맞추어 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김근수의 5·18조사위 면담조사 진술<sup>37</sup>, ⑦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하였던 합동수사단에 의해 검거된 학생 등 민주인사들에 대한 조사에서 김대중과의 연관성을 일관되게 취조하였다는 직가의3-17 사건 관련 참고인의 진술로 보아,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대중선동과 민중봉기로 정부 전복을 기도하고 계엄해제, 언론자유 보장, 특정인 퇴진 등 5개 항을 지시, 학생소요를 배후 조종했다”라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내용으로 한 『김대중에 대한 계엄사 중간수사 발표』를 하여 「민중봉기를 통해 정부 전복을 기도한 김대중」과 「광주사태」를 연결, 광주사태 유혈진압에 대한 명분을 세우려 했다고 판단하였다.

#### 사) 김대중의 정동년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배후 조종 여부

1980년 5월 18일 01시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체포된 정동년<sup>38</sup>에 대한 1999년 8월 5·18기념재단의 구술 채록<sup>39</sup>에 따르면, 보안사 요원들에게 체포된 정동년은 1980년 5월 22일경까지 505보안대 지하실에 감금되어 구타와 기합을 당하였고, 1980년 5월 23일경 상무대 군인 영창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상무대 군인 영창으로 이송·유치되어 신문을 받던 중 1980년 5월 28일 새벽 1시경에 서울에서 내려온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이 김대중을 만난 사실을 자백하라면서 구타하였다고 한다.

36 5·18조사위, 「김근수 진술조서」(2023.11.2.).

37 5·18조사위, 「김근수 진술조서」(2023.11.2.).

3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포고령 위반 피의사건 검거 보고(정동년)」 『5·18사건 수사 기록』 77권, 88412쪽.

39 5·18기념재단, 「정동년 구술증언」(1999.8.).

5·18조사위는 정동년에 대한 1980년 전남합수단 수사기록을 확인하였고, 정동년의 구술증언에서 등장하는 서울에서 내려온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의 취조를 받기 전후에 작성된 수사기록을 확인하였다.

정동년의 1980년 합동수사본부 수사기록에 따르면, 정동년은 1980년 5월 18일 01시경 전남합수단에 체포되어 1980년 5월 20일까지 자필 진술서 3회, 피의자신문조서 2회를 작성하였다. 그 기록에는 김대중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며 광주지역 학생소요 사태에 대한 연관성에 관한 수사내용이었다. 김대중을 언급한 수사기록은 1980년 5월 29일 “김대중을 존경하며, 4월 중순경 김대중의 동교동가를 방문하여 인사를 나눴다”라는 기록으로 제4회 진술서와 제3회 신문조서이다.

정동년의 제4회 진술서와 제3회 신문조서 이후 1980년 5월 31일 제5회 진술서부터 김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전남대 박관현, 윤한봉에게 김대중이 주었다고 말하며 데모를 하는 데 사용하라고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정동년의 1999년 8월 5·18기념재단 구술에 따르면 1980년 5월 28일 새벽 1시경에 서울에서 내려온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에게 구타를 당하며 김대중과의 연계에 관해 수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정동년의 이러한 구술은 전남합수단의 정동년에 대한 수사기록의 변화와 일치한다. 또한 정동년을 직접 수사하였던 전남합수단 헌병상사 윤재현은 정동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의 지시 메모에 따라 정동년을 수사하였으며, 정동년 수사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2023년 6월 12일 5·18조사위 면담조사에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윤재현은 ‘정동년의 김대중의 동교동가(동교동 자택)를 방문한 사실’이 전남합수단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국군기무사령부(1980) 광주소요사태 관련철」에 따르면, 광주사태 유혈진압 이후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1980년 5월 30일 오전 광주시민 순화책 및 종합보고서 작성 문제를 논의하는 계엄회의에서 ①‘종합보고서 작성 시 김대중이 복직·복권·복학자 및 민청

관련자들을 이용하여 공산화 수법의 민중봉기로 헌정 중단, 정부 전복을 기도했던 사실을 언급하여 광주시민을 납득시키라'는 지시로 김대중과 1980년 광주사태를 연계시키고 있는 점<sup>40</sup>과 「국군기무사령부(1989), 광주사태 전말보고」의 합동수사본부가 취한 조치로서 ② 광주사태 처리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광주에 파견된 검사 2명, 중앙정보부 수사관 2명이 김대중과 광주사태의 연결을 검토한 후 1980년 7월 18일 '내란 또는 소요죄 제기 여부는 정책적 결정, 단 광주시민은 김대중이 내란수괴라야 광주시민이 납득'한다고 합동 수사본부장에게 건의하였고<sup>41</sup>, ③ '1980년 7월 31일 피의자 정동년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김대중과의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전남합수단에 지시'<sup>42</sup>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정동년의 합동수사본부 수사는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을 매개로 김대중과 광주사태를 연결함으로써, 광주사태가 김대중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발표하여 계엄군의 광주사태 유혈진압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전두환과 신군부가 공안정국을 주도하려는 명분을 갖추려 했다는 주장은 충분히 근거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광주·전남 지역 인권침해 사건

### 1) 사건 개요

5·18조사위는 ① 1980년 5월 18일부터 1981년 1월 24일 전국 비상계엄 동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전남지역에서 군,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연행, 구금,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② 인권침해사건 경위 및 피해 유형에 대하여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년 10개월간 기록조사와 실지조사, 참고인 162명 및

40 국군기무사령부(1980), 「광주소요사태 관련철」, 125~126쪽.

41 국군기무사령부(1989), 「광주사태 전말보고」, 53쪽.

42 국군기무사령부(1989), 「광주사태 전말보고」, 53쪽.

조사대상자 36명에 대한 대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합동수사본부의 이른바 5·17 예비검속에 따른 불법체포 및 연행. 둘째, 계엄군 연행과정의 구타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셋째, 전남합수단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구타, 고문, 협박, 혐의 조작, 기소 왜곡 등 인권침해 발생. 넷째, 헌병대 등 국가권력의 구금과정에서 수용자 구타, 학대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다섯째, 광주교도소 구금과정에서 수용자 구타, 학대로 인한 인권침해 발생 등의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금,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그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5·18민주화운동 관련 연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 가) 5·17 예비검속

전남합수단은 “전남도경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서에서 검거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받고, “대상자별로 보안부대원, 합수요원(헌병, 경찰) 및 경찰 안내원으로 종합 편성”하여 총 22개 조가 22대의 차량을 이용해 5·17 검거계획을 시행하였다.<sup>43</sup> 기무사 기록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확인된 예비검속자 명단은 전남대학교 12명, 조선대학교 10명으로 총 22명이다.<sup>44</sup> 그러나 1996년 검찰 조사과정에서 505보안부대 소속으로 5·18 당시 5·17 예비검속의 실무를 담당하고 지휘했던 서의남은 보안사령부로부터 하달된 검거 대상자의 수가 약 300~400명이었다고 진술하여, 실제 명단과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명단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위 수사계획 및 시행에 관하여, 1980년 당시 505보안부대 대공과 대공계에서 학

43 국군기무사령부(1989), 「기무사 광주 383-1989-13」.

44 국군기무사령부(1989), 「기무사 광주 383-1989-13」.

적변동자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보안 중사 이○○<sup>45</sup>은 ‘검거 대상자 20여 명’을 체포하기 위해 “명단에 따라 조가 편성되었고, 연병장에 다 모여서 지명된 대로 강○○ 수사관과 한 조가 되어 1980년 5월 17일 별로 어둡지 않은 저녁에 차를 타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sup>46</sup> 그는 또 ‘안기부, 경찰 등의 정보를 추려서 작성된 예비검속 리스트’를 505보안부대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었으며 “당시 기관들이 모여서 편성된 합수단 입장에서 문제 인물로 분류된 사람들이 검거 대상이었다”라고 부연하였다.

당시 전남합수단 수사1과 소속 전남경찰국 파견 순경 박○○은 자신에게 할당된 5·17 검거 대상자가 전남대학교 문○○가 맞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왜 기억이 나냐면 문○○가 상당히 강렬하게 저항하니까 같이 나갔던 보안대 사람이 권총을 꺼내서 겨누니까 조용해지면서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별 사고 없이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항이 워낙 강해서 사고가 날까 걱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sup>47</sup>

전남합수단 소속 박○○으로부터 1980년 5월 18일 새벽 연행된 참고인 문○○<sup>48</sup>는 검거 당시 상황에 대해 1980년 5월 17일 밤 12시가 넘어서 민간인 복장의 남성 두 명이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 소속도 밝히지 않고 영장도 없이 검거하려 했으며, “거칠게 항의하니 한 명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권총을 들이댔다.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집 앞에 검은색 계열의 지프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1980년 5월 18일) 새벽 어스름 4시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차에 탔더니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렸고 도착해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서 지하 공간으로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전남합수단 수사1과 소속 경찰 박○○이 묘사한 검거 정황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45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04.06.).

46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04.06.).

47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3.04.20.).

48 5·18조사위, 「문○○ 진술조서」(2022.09.28.).

###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연행

5월 18일에 연행된 사람들은 시위에 직접 참여한 적이 없는 행인들도 많았는데, 공용 터미널, 금남로 등의 장소에서 마구잡이로 진압군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들은 모두 연행 과정에서 구타 피해를 경험했으며, 연행 직후 조선대학교 운동장 등 계엄군 숙영지로 이송된 사람도 많았다. 김○○ 등 참고인은 조선대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구금과정에서 탈의, 삭발, 결박, 구타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월 19일과 5월 20일에는 광주역 앞, 전남대학교 앞 사거리, 대인동 등에서 시위대열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현장에 투입된 진압군에 의해 연행되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광주역 앞과 전남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연행된 이들은 대부분 전남대학교를 거쳐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일부는 곧바로 상무대 헌병대로, 혹은 지방경찰서로 이송되기도 했다.

5월 19일과 5월 20일은 전국예비검속과 전남대 앞 시위상황에 대한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방식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확산하던 시기이다. 이 기간에 연행된 이들은 대부분 시위 현장에서 검거되면서부터 무차별적인 구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이틀 동안 군과 경찰의 연행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극심하였다는 것도 진술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5월 21일에서 5월 26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연행된 사람들은 시위 전후 이동 간에 검문 중이던 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되거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탐문 수사 대상이었다가 검거된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을 연행한 지역은 광주, 서울, 해남 등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연행장소 또한 자택, 식당, 주택가, 검문소 앞, 군부대 앞, 광주교도소 앞 등 다양하였다. 하지만 연행 일자 혹은 장소와 상관없이 다수의 참고인은 연행 이후 구금, 조사과정에서 극심한 구타와 가혹행위 피해를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5월 27일 연행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켰거나 이후 군의 가택수색 등으로 체포된 이들로, 이들의 연행장소는 전남도청과 YWCA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총상을 입거나 군홧발, 총 개머리판 등으로 극심한 구타를 당하는 등의 인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였다. 이날 연행과정은 비록 군 작전에 따른 것이지만, 가장 극심한 폭력이 수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18조사위는 이와 관련하여 5월 27일 전남도청 일대에서 체포되었던 다수의 참고인이 계엄군의 진압작전 중 발포와 구타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진술 또한 확인하였다.

5월 27일 이후 체포, 연행된 5·18 관련자들은 5·17 예비검속에 따른 수배, 5·18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수배, 5·18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고 피탈 관련 방위병에 대한 소환조사 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소는 서울, 부산, 광주, 전남 일대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었다. 5·17 예비검속, 5·18 기간의 연행과 비교했을 때, 5월 27일 이후 연행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발생은 현저히 줄었으나, 신청인 허○○, 김○○, 차○○ 등의 진술을 통해 이 시기에도 여전히 폭력이 동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 가) 전남합수단 개요

5·18조사위는 2023년 2월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남, 전남, 광주 등지에서 36명의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였고, 이중 대면조사의 방법으로 전남합수단 소속으로 활동했던 군인과 경찰 총 27명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전남합수단은 1979년 10·26사건 직후인 1979년 10월 27일<sup>49</sup> 계엄법 제11조, 제12조, 계엄공고 제5호(1979.10.27.) 등을 법적 근거로 하여 조사 방침 일원화를 목적으로 조직,

49 국군기무사령부(1989), 『기무사 광주 383-1980-105』, '합동수사기구 설치계획'.

계엄사령부 내에 본부가 설치된 합동수사본부의 전남지역 분소<sup>50</sup>이다.

기무사 기록에 따르면, 전남합수단은 “계엄공고 제5호에 의거 1979년 10월 27일 합동 수사단장 전진섭 대령을 비롯한 보안부대원 8명, 헌병 9명, 경찰 11명, 검사 1명 등 29명으로 구성된 전남합동수사단이 국군 제505보안부대에 설치되어 계엄사건 수사 및 정보 수사기관 업무 조종, 감독 등 계엄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전남합수단은 1980년 5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80명이 활동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5·18조사위 조사 결과, 전남합수단은 1979년 말에 이미 조직되어 1980년 8월에는 최대 106명까지 인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1980년 5·18 관련자들에 대한 마지막 군사재판<sup>51</sup>이 열린 1980년 10월 말까지<sup>52</sup> 1년 가까이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합수단은 경찰, 헌병, 국가정보기관, 보안사 등 4개의 사법기관이 합동으로 계엄법(1949)에 명시된 군법회의 기소 범죄들<sup>53</sup>을 조사하고 처리한 임시수사기구이다. 전남경찰국, 광주경찰서, 서부경찰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전투교육사령부(이하 ‘전교사’) 헌병대와 육군범죄수사단(이하 ‘육군범수단’) 헌병, 중앙정보부, 전국 보안부대 군인들이 전남합수단에 파견되어 5·18민주화운동 관련한 수사와 송치, 기소 업무를 수행했다. 광주지검의 일반 검사와 전교사 군법무관과 검찰관, 중앙정보부 수사과장 등이 자문단으로 파견되어 수사와 송치, 기소과정에 관여하였다.

전남합수단의 최우선 과제였던 5·18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과정은 관련 법과 사전에 결정된 업무 수행체계보다는 보안사령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확인

50 계엄사령부(1979.10.27.), 「계엄사령부 공고 제5호」.

51 국군기무사령부(1989), 「기무사 광주 383-1989-13」 ‘공판진행계획- 내란 선고 공판 1980.10.15.(화)’.

52 5·18조사위, 「윤○○ 진술조서」(2023.06.12.) “나는 제일 마지막에 이○○씨와 같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5개월 가까이 있었습니다. 1980년 10월 말까지 광주에 있었습니다.”.

53 1.내란에 관한 죄 2.외환에 관한 죄 3.국교에 관한 죄 4.공무집행을 방해한 죄 5.범인은닉 또는 징빙연명죄 6.소요죄 7.방화죄 8.일수에 관한 죄 9.음료수에 관한 죄 10.통화위조죄 11.문서위조죄 12.유가증권위조죄 13.인장위조죄 14.위증죄 15.무고죄 16.간음죄 17.살인죄 18.상해죄 19.체포 또는 감금죄 20.협박죄 21.절도 또는 강도죄 22.횡령 또는 배임죄 23.장물죄 24.회기 또는 장낙죄 25.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된다. 기무사 기록<sup>54</sup>에 따르면, 전체 연행자 중 “처벌범위는 500명 정도로” 맞추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실제 전남합수단에서 5·18과 관련하여 처리한 기소자 수는 404명으로 위 기록에 명시된 숫자에 근접한다. 같은 문건을 통해 전남합수단은 보안사령부로부터 광주 사건은 내란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전남합수단은 실제 5·18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 기소 죄명을 ‘내란’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 수괴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남합수단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진술<sup>55</sup>을 확보하였다. 이와 관련해 5·18 관련 기소가 왜곡되었다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 다수의 진술을 확인하였다. 전남합수단 수사관이었던 김○○은 분명 포고령 위반으로 조사했던 사건인데 내란으로 처리된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이 쇼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sup>57</sup>하였다.

또한 위로부터 지침에 의한 전남합수단의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황도 확인하였다. 5·18조사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사의 과정이 ‘김대중과의 연관성’을 캐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와 관련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가혹행위가 동반되었다는 진술도 확보하였다. 조사대상자 김○○은 “학생들이 일어난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을 김대중씨와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조사대상자 박○○은 “조선대생을 김대중과 연관시켜라”는 상부(수사1과장 진○○)의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조사대상자 윤○○은 “이○○씨가 (정○○을) 다시 한번 조사해보라고 하면서 그때는 사람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여, 전남합수단의 조사과정에서 원하는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폭력이 동원되었다는 사

54 국군기무사령부(1989), 「기무사 광주 383-1989-3」, ‘광주사태 전말보고’, 53쪽.

55 5·18조사위, 「안○○ 진술 공증녹취록」(2021.03.17.).

56 5·18조사위, 「조○○ 진술조서」(2023.11.15.).

57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06.21.).

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었다.

다수의 전남합수단 파견 경찰과 광주, 목포, 화순, 함평, 영암, 해남, 강진경찰서 등 지역 경찰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5·18 관련자에 대해 숙연한 마음으로 인권침해나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sup>58</sup>한 반면, 피해 참고인들은 광주와 전남지역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극심한 구타의 주체였다고 진술<sup>59</sup>하였다.

전남합수단 소속 헌병의 경우, 지역에 상주하였던 전교사 헌병대 소속 헌병하사관과 서울에서 파견된 육군범죄수사단 헌병수사관 모두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sup>60</sup>하였지만, 다수의 참고인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가해자의 성, 이름, 혹은 계급과 소속을 기억하였고, 5·18조사위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하였다.

전남합수단 소속 중앙정보부 파견 수사관 역시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그들이 피의자신문조사를 했던 사실, 자신들이 담당했던 참고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수사기록과 5·18조사위 조사에 응한 참고인 진술을 통해 중앙정보부 파견 수사관들이 피의자 신문조사를 직접 수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전남합수단 소속 보안부대 파견 수사관 중 일부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가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5·18 관련자 조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남합수단 수사과정에서 물고문,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sup>61</sup>라거나 “상무대 헌병대 조사

58 5·18조사위, 「전○○ 진술조서」(2023.03.20.).

59 참고인 김○○, 정○○, 정○○, 이○○, 박○○, 이○○ 진술조서.

60 조사대상자 채○○, 차○○ 등 33명.

61 5·18조사위, 「채○○ 진술조서」(2023.04.03.).

공간에서는 잡범들에게 고문을 할 이유가 없다”<sup>62</sup>, “고문을 할 만한 사건이 없다”<sup>63</sup>며 전면 부인하였다.

한편 일부 조사대상자는 “신고를 받고 잡혀 온 사람들인데 본인은 절대 안 했다고 하니 까 그 사실을 규명하려다 보니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거나, “보안사는 수사에 근본 자질이 없는 것 같다. 자질이 없으면 이실직고하라고 밖에 못했겠지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에 의해서 느낌이 크니까 표현도 크겠지요”<sup>64</sup>라고 진술하면서 전남합수단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이에 상당하는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5·18조사위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전남합수단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문헌 기록으로 확인하였다. 1988년 5·18과 관련한 국회특위를 대비한 기무사 문건인 「광주사태 전말보고(합수사항중심)」에는 “최근 한겨레신문 등 일간지에 합수단 수사 시 정동년, 송기숙 등 광주사태 관련자들이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라”고 지적하고, “만약 고문 사실이 인정될 때 재심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어져 무죄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됨.”<sup>65</sup>이라고 기재하여 군 내부의 대응책 마련을 환기했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남합수단은 5·18과 관련하여 3,000명<sup>66</sup>에 육박<sup>67</sup>하는 인원을 연행하여 조사, 사법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 이후<sup>68</sup> 조사대상자의 등급을 A~D의 4단계로 분류하였다. 기준은 전남합수단에서 정하고 보안사령부의 승인을 받은

62 5·18조사위, 「전○○ 진술조서」(2023.03.20.).

63 5·18조사위, 「범○○ 진술조서」(2023.05.22.).

64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06.21.).

65 국군기무사령부(1989), 「기무사 광주 383-1989-9」, 「광주사태 전말보고(합수사항중심)」, 11쪽.

66 5·18조사위, 「조○○ 진술조서」(2023.11.15.), 6쪽; “5월 27일 새벽에 무력진압하면서 길거리 가는 사람부터 집까지 뒤져서 저인망식으로 3,000명을 잡아들여서 상무대에 구금했습니다.”

67 5·18조사위, 「최경조 진술조서」(2023.09.21.), 7쪽; “당시 연행자가 2,700~2,800명이 되었습니다.”

68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3.06.02.), 9쪽; “이 정도 피의자 처리기준 등급분류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합수단 조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인 것 같습니다.”

후 시행되었다.<sup>69</sup> A급은 주동자 및 배후 조종자, B급은 무기 소지자 및 기물 파손자, C급은 시위 자진 참가자 및 협조자, D급은 경미한 피의자로 분류 기준이 기재<sup>70</sup>되어 있다. 전남합수단은 각과의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 조사한 결과에 대해 수사관이 참여한 과장단<sup>71</sup> 회의에서 등급을 결정하였다. 이 중 A, B급은 구속 송치처리 되었고, C급은 선별 구속 송치, D급은 훈방되었다.

### 나) 기소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경위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소된 404명 중 70명에 대한 서면 및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인조사를 통하여 전남합수단의 조사과정에서 구타, 고문,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며 강압적인 조사의 결과 조작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가 양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전남합수단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던 69명의 참고인이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김대중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을 받았고, 이와 관련한 진술을 강요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한 구타와 발길질,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전남합수단 수사관 일부는 조사의 초점이 김대중과의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것

69 5·18조사위, 「최경조 진술조서」(2023.09.21.), 13쪽.;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어요. 이대로 건의해서 올려서 위에서 오케이 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70 국군기무사령부(1989), 「기무사 광주 383-1989-8」, ‘광주내란사건 조사결과보고’96쪽.

71 5·18조사위, 「전○○ 진술조서」(2023.03.20.), 2쪽.; “A, B, C급들로 수사로 나누면 판정위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조서 3쪽; “A, B급은 보안대 소령 등 합수단 1~4과장들이 결정했습니다.”

72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04.06.), 13쪽.; “수사과별로 등급을 분류해서 서의남씨 주관하에 최종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5·18 이후에 폭도라고 해서 A~D급으로 과별로 경찰 등이 다 함께 분류했습니다.”

73 5·18조사위, 「진○○ 진술조서」(2023.05.10.), 11쪽.; “(A, B, C, D급 분류는)직접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동원되어서 했을 겁니다.”

74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06.21.), 6쪽.; “본부에서 A~D등급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방, 구류, 군사재판 회부 등 기준에 따라 조치를 했겠지요.”

이었다고 하였다. 특히 이들은 조사과정에서 김대중과 피의자의 관계를 엮는 것이 조사의 주된 초점이었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담당했던 여러 피의사건이 내란음모사건 하나로 처리된 것을 전남합수단 해단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기무사 기록 「광주사태 전말보고」에는 광주에서 발발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대하여 “내란 또는 소요죄 제기 여부는 정책적 결정, 단 광주시민은 김대중이 내란 수괴라야 납득”이라거나, “피의자 정동년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김대중과의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지시(전남합수단)”라고 기재<sup>75</sup>되어 있다. 이 내용은 5·18조사위의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일치하는 대목으로 전남합수단의 조사가 김대중과의 연관성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다) 불기소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경위

5·18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212명으로, 우리 5·18조사위는 그중 13명을 서면 및 대면으로 조사하여 전남합수단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들 중 5명이 목포지역 보안대와 상무대에서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7명은 상무대와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남합수단의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참고인 13명 역시 기소되었던 참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조사과정에서 김대중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이와 관련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구타 등을 당했다며 인권침해 경험을 진술하였다.

전남합수단의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참고인 중에서도 조사과정에서 물고문을 당했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장소는 지역 경찰서였다. 상무대에서 전남합수단 조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을 통해 돈을 들여 가족과 면회했다는 참고인 김○○의 진술도 있었다. 참고인 차○○는 광주 임동파출소가 불에 타 임시로 마련된 조사 공간인 BBS건물 2

75 국군기무사령부(1989), 「기무사 광주 383-1989-8」, 53쪽.



층에서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전남합수단의 조사과정에서 주요 조사장소였던 상무대, 지역 경찰서 외에 임시 조사 공간에서도 구타와 가혹행위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전남합수단의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참고인 정○○, 김○○, 박○○는 상무대에서 있었던 조사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sup>76</sup> 진압봉으로 보이는 나무 도구로 구타<sup>77</sup>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유○○의 경우 여러 장소를 거치며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라) 훈방자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경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전남합수단의 조사를 받고 훈방된 사람의 수는 2,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우리 5·18조사위는 이중 광주·전남지역 참고인 55명에 대하여 서면 및 대면조사 방법으로 훈방자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 진술을 확보하였다.

훈방자 조사과정에서도 기소자, 불기소자 조사과정과 유사한 유형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동반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극심한 구타를 동반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정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고인 김○○, 박○○, 정○○ 등도 전남합수단의 조사과정에서 김대중 관련 질문을 받고 이와 관련한 진술을 강요당한 정황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전남합수단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된 참고인들은 남녀 구분 없이 욕설과 구타를 동반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전남합수단 및 지역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5·18조사위는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76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2.05.06.).

77 5·18조사위, 「김○○ 서면답변서」(2022.12.).

78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2.09.22.).

\* 살해 협박, 나무 도구를 사용한 구타<sup>79</sup>, 발길질, 결박, 탈의, 물고문<sup>80</sup>, 필기구를 사용한 손가락 부위 가혹행위, 송곳을 사용한 손가락 고문, 나무를 사용한 허벅지 부위 가혹행위, 수면 방해, 진술 강요, 강제 무인, 혐의 조작, 기소 왜곡, 잠 안 재우기, 기타 가혹행위<sup>81</sup>

5·18조사위가 조사한 전남합수단, 전교사 헌병대, 전남지역 경찰 대부분은 상술한 참고인들의 구금 및 조사과정에서의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피해 규모를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 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구금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 가) 헌병대 영창

1980년 5월 19일부터 상무대 헌병대 영창<sup>82</sup>에 5·18 관련자가 수용되기 시작하여 이후 제31사단 헌병대 영창<sup>83</sup>, 공군 헌병대 영창<sup>84</sup> 등 군의 헌병대 영창에 구금되었다. 당시 5·18과 관련하여 연행되어 온 민간인의 수가 2,000여 명에 달하였고, 군 헌병대 영창의

79 전남합수단과 지역 경찰이 5·18민주화운동과 김대중의 관계를 연결지어 내란사건으로 만드는 조사과정에서 가장 흔한 인권침해 사례는 구타였음이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기소된 참고인 69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전남합수단의 조사과정에서 구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전남합수단 수사 과정에서의 구타 도구는 곤봉, 야전침대에 끼우는 나무봉, 나무 막대 외에 손과 군화발 등도 동원되었다. 엎드려 뺨쳐 자세를 명령한 후 엉덩이와 허벅지를 내리치는 방식, 5·18 관련 피조사자의 무릎 뒤에 나무를 끼운 다음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게 해서 허벅지를 밟거나 때리는 방식 등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구타 정황이다.

80 전남합수단의 5·18 관련자에 대한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에는 물고문 외의 다른 형태로 전기고문 등이 동원된 사실도 참고인 윤OO, 윤OO, 김OO, 김OO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81 전남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탈의와 일명 ‘통닭구이’ 혹은 ‘오징어구이’라고 불리는 자세로 피조사자를 구타하는 가혹행위도 자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참고인 김OO, 박OO, 나OO, 박OO 등이 통닭구이/오징어구이 구타 피해를 진술하였다. 이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손과 손가락에 가한 고문에 준하는 가혹행위도 확인되었는데, 이로 인해 일부 참고인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도 있었다고 한다. 참고인 김OO, 김OO, 김OO 등이 5·18조사위 조사에서 도구를 이용해 손가락을 꺾는 가혹행위 피해를 진술했다. 또 다른 사례로 전남합수단의 군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터 특정 진술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른 피조사자를 눈앞에서 고문하거나 구타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82 5·18조사위, 「허OO 진술조서」(2023.10.04.).

83 이OO, 서면답변서.

84 김OO 공증녹취록, 임OO 진술조서.

수용 규모가 부족해지자 합동수사본부는 전교사 헌병대 내 임시막사<sup>85</sup>나 상무대 교회<sup>86</sup>, 보안부대 보호실 1개소, 광주교도소, 시내 2개 경찰서 보호실<sup>87</sup> 등의 시설에 분산하여 수용하기도 하였다.

헌병대 영창 등 시설의 과밀포화 상태는 다수의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의 진술로 확인된다. 1980년 5·18 기간을 전후로 상무대 헌병대 형무서기로 근무했던 참고인 허○○은 “인원이 가장 많이 왔을 때는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원래 전쟁포로를 수용하는 곳이어서 전시 최대 수용인원이 벽에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가 445명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훨씬 넘었습니다. 영창도 좁아서 포개서 자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당에도 수용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가혹행위가 없었고, 훈방되고 나서 인원이 조금 정리되었을 때 방별로 수용하고 그러면서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sup>88</sup>

당시 상무대 헌병대 영창에 구금되었던 참고인 10명<sup>89</sup>이 당시 영창 형무반장이었던 헌병 중사 박○○<sup>90</sup>로부터 극심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은 “당시 형무반장이었던 박○○ 중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냥 사람을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여 정신병자라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당시 수감되어 있던 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체격도 작았는데 화장실을 자주 갔습니다. 그러자 간수였던 최 일병이 김○○의 팔을 철창 밖으로 내게 한 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

85 국군기무사령부(1989), 「기무사 광주 383-1989-1」, '예상질문 및 답변자료', 481~482쪽, 5·18조사위, 「장○○ 진술조서」(2023.05.16.).

86 국군기무사령부(1989), 「기무사 광주 383-1989-1」, '예상질문 및 답변자료', 481~482쪽, 참고인 정○○, 차○○, 김○○, 선○○, 김○○, 김○○, 오○○, 이○○, 김○○, 정○○, 최○○, 양○○, 박○○, 임○○, 최○○, 문○○, 마○○.

87 국군기무사령부(1989), 「기무사 광주 383-1989-1」, '예상질문 및 답변자료', 481~482쪽.

88 5·18조사위, 「허○○ 진술조서」(2023.10.04.).

89 김○○, 김○○, 나○○, 나○○, 마○○, 박○○, 양○○, 윤○○, 이○○, 한○○.

90 사망.

였다.<sup>91</sup> 또한 참고인 5명<sup>92</sup>은 당시 상무대 헌병대 영창 당번병으로 간수 역할을 했던 정○  
○ 상병과 최○○ 일병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가해자로 지목된 정○○는 “2,000명을 통제하기 위해 군부대 시범케이스라는 게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요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엄숙하게 하려고 했다”면서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수감자는 시범케이스로 불러서 구타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 7명<sup>93</sup> 등 영창에 구금되었던 5·18 관련자들이 빈번하게 묘사한 가혹행위로 영창 철창을 잡고 매달리게 한 뒤 몽둥이로 구타하는 일명 ‘철창타기’<sup>94</sup>에 대해서도 정○○는 “철창타기는 사실이다”라고 인정<sup>95</sup>하였다.

당시 전교사 헌병대 군기과장이었던 헌병 소령 우○○는 “당시 음성적으로 어땠을지 모르지만 폭행과 같은 보고가 올라오고 위에서 조치에 대해 지시한 일이 없었다”며 가혹행위에 대해 보거나 들은 일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다수의 참고인이 상무대 헌병대 영창에서 부족한 식사, 비위생적인 구금환경으로 인한 피부병 발병 등의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우○○는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영창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 제 나름대로는 별일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죄송하다”고 진술<sup>96</sup>하였다.

군 헌병대 이외에도 5·18 관련자들은 상무대 교회, 광주 및 전남지역 경찰서, 임의의 조사장소 등에서 구금과정 중 구타와 가혹행위, 또는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91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08.31.).

92 김○○, 이○○, 양○○, 염○○, 이○○.

93 김○○, 김○○, 도○○, 원○○, 이○○, 김○○, 이○○.

94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08.16.), 「정○○ 진술조서」(2022.06.15.).

95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3.03.20.).

96 5·18조사위, 「우○○ 진술조서」(2023.09.06.).

## 나) 광주교도소

1980년 9월 말부터 보통군법회의에서 광주·전남지역 기소자 40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은 곧바로 광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sup>97</sup> 5·18조사위는 구금 기간 교도소에서 이뤄진 수용자에 대한 처우 문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다.

참고인 염○○는 “우리가 처음 교도소 방에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애국가를 불렀다고 교도관들이 우리 동지들을 방에서 끌어내어 복도에 무릎을 꿇린 후 발가락을 군화로 밟는 식으로 구타”를 당했고,<sup>98</sup> 참고인 도○○은 “면회를 시켜달라고 시위를 하였는데 그때 지하실로 끌려가 구둑발로 채이는 등 구타”를 당했고,<sup>99</sup> 참고인 이○○도 교도관에게 항의를 하자 교도관들이 끌고 나가 “몽둥이나 교도관들이 쓴 붓을 이용하여”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sup>100</sup> 진술하였다. 한편 참고인 이○○는 항의하던 사람들이 포승줄로 맞는 것을 목격했고,<sup>101</sup> 참고인 양○○은 수용자 구○○가 교도관들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해 세 차례 기절하는 것을 목격<sup>102</sup>했다고 진술하였다.

광주교도소에서는 수용자에게 순화교육을 강제하였다. 교도소 내에서 이를 집단 거부하거나 항의가 있었으며, 순화교육 거부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일환으로 단식농성이 이뤄졌다. 참고인 양○○은 “순화교육이라는 것은 피티체조, 오리걸음,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같은 것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몇 사람이 이를 거부하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또 이의 일환으로 단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도소에서 나를 주모자

97 광주·전남지역 재소자 전원이 광주교도소로 이감된 것은 아니다. 김○○과 홍○○은 충청남도 홍성교도소로 이감되었다.

98 5·18조사위, 「염○○ 진술조서」(2022.07.16.).

99 5·18조사위, 「도○○ 진술조서」(2022.09.19.).

100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2.07.13.).

101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2.05.14.).

102 얼굴 등에 심하게 상처가 난 윤○○은 교도소 내에서 폭행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가족들과의 면회도 제한되었다고 한다.: 5·18조사위, 「양○○ 진술조서」(2022.07.27.).

로 몰아 교도관들이 끌고 나가 곤봉이나 주먹으로 구타를 하였습니다. 다만 상무대 영창에서 조사받을 때와 같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수갑을 채우고 먹방<sup>103</sup>에 수감하여 그곳에서 10일 정도 생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sup>104</sup> 참고인 윤○○는 “먹방이라고 0.4평 정도 되는 공간<sup>105</sup>에 포승을 채운 채로 수감하는 것입니다. 먹방은 아주 작은 독방 안의 독방으로 창도 없고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는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그런 방에 보름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정신이상일 것입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시키는 삼청교육 같은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먹방에 보름이 넘게 수감”되었으며,<sup>106</sup> 김○○는 “4~5개월간 손발이 묶인 채로 독방”에 있었다고<sup>107</sup> 진술하였다. 이밖에 정○○, 이○○ 등이 독방에 금지처분 되는 징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sup>108</sup>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일부 재소자는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하는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 참고인 박○○는 “교도소 보안과 애들이 단식투쟁할 때 발로 밟고 강제급식하고 그랬습니다. 주유소 호스 같은 걸로 입을 벌리고 몸을 묶은 채 밀어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sup>109</sup> 참고인 서○○도 포승줄로 결박한 후에 꿰여온 죽을 깔대기를 이용해 강제로 주입시켰다고 진술하였다.<sup>110</sup> 광주교도소에서는 교도소의 환경 문제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수용자를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여 마산 등 타 지역 교도소로 강제 이송시킨 사례도 있었다.

103 먹방은 먹물을 뿌린 듯이 캄캄한 방이라는 뜻으로, 교도소에서 사고를 일으키면 일정 기간 좁은 독방에 재소자를 구금하는 징벌방이다.

104 5·18조사위, 「양○○ 진술조서」(2022.07.08.).

105 0.4평의 징벌방은 눕는 것이 불가능하여 잠을 잘 때도 꾸그려 앉아서 새우잠을 자야 한다.

106 5·18조사위, 「윤○○ 진술조서」(2022.07.26.).

107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08.23.).

108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2.06.30.); 「이○○ 진술조서」(2022.07.13.).

109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2.10.11.).

110 5·18조사위, 「서○○ 진술조서」(2022.11.16.).

## 5) 석방 또는 훈방 이후의 피해사실 확인

### 가) 신체적 후유장애

참고인 박○○은 상무대 영창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안 들려 보청기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박○○ 이외에도 구타와 고문으로 인한 골절, 신경통과 타박상, 청각과 시각 훼손 등 신체적 장애를 겪게 됐다고 진술하였다.<sup>111</sup> 참고인 김○○은 “허리가 가장 안 좋고 그 영향으로 걸을 때 오른쪽 다리를 온전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협착된 이후로는 발가락 신경 하나가 죽어서 오른쪽 발가락 다섯 개가 다 움직이지 않아서 더 심하게 다리를 절면서” 견게 됐다며 타박상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호소했다.<sup>112</sup> 김재홍 외 참고인들은 허리 통증, 무릎, 어깨 관절 등에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약물치료, 진통제 복용, 수술 등 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호소하였다.

참고인들이 신체적 후유장애로 가장 많이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골병’이었다. 참고인 전○○은 “석방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했습니다. 구타로 인해 골병이 들어서 20대 젊은 나이부터 지금까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전○○ 외에 다른 참고인들은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sup>113</sup>이나 “알병이 들었다”<sup>114</sup>는 진단에 치료 방법도 없이 신체적 고통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많은 참고인이 심각한 구타와 폭행으로 신체적 타격을 받았으며, 깊은 속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11 구타와 고문으로 김○○은 성대결절, 임○○와 오○○은 뒀니 골절, 이○○와 박○○은 고막이 손상되었다.; 5·18 조사위, 「박○○ 진술조서」(2022.10.06.), 「김○○ 진술조서」(2022.08.21.), 「임○○진술조서」(2022.11.15.), 「오○○진술조서」(2022.10.5.), 「이○○진술조서」(2022.06.18.).

112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10.20.).

113 5·18조사위, 「문○○ 진술조서」(2022.09.28.).

114 5·18조사위, 「선○○ 진술조서」(2022.10.04.).



## 나) 정신적 후유장애

참고인들이 신체적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은 정신적 후유장애였다. 참고인 정○○처럼 수면장애(악몽, 불면증), 불안감, 울화를 겪고 있는 경우,<sup>115</sup> 참고인 황○○처럼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sup>116</sup> 심지어 참고인 최○○처럼 정신적 후유장애로 자살을 시도한 극단적 사례까지 있었다.<sup>117</sup>

참고인 정○○ 외 다수가 상처와 정신적 후유증으로 불안(공포, 우울, 화병 등)과 수면장애(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등)를 겪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밤에 잘 때는 늘 불을 켜고 잡니다. 악몽은 예사이고 무섭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게 되면 상무대에서 폭행당한 것이 생각나서 난동”을 부리는 등 감정조절 장애를 겪거나<sup>118</sup> ,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찰이나 군인만 보면 울분이 차오르고 무작정 죽이고 싶습니다. 꿈에 헛것이 보이고 나도 모르게 끌려 나가고 하는 꿈을 꾸고, 소리치다가 잠에서 깨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울증도 좀 심했습니다.”<sup>119</sup> 라는 진술들이 있었으며, 또한 정신적 후유장애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수면제, 안정제 등을 복용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참고인 황○○ 외 27명은<sup>120</sup> 5·18조사위 조사과정에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대인기피증, 조현증,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환청과 환시 등)로 인해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고, 현재까지도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정○○는 “보안대에서 일주일간 고문받은 게 항상 생각이 납니다. 사실

115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2.10.13.).

116 5·18조사위, 「황○○ 진술조서」(2022.10.28.).

117 5·18조사위, 「최○○ 진술조서」(2022.06.10.).

118 5·18조사위, 「윤○○ 진술조서」(2022.12.27.); 이외에도 감정조절장애나 분노조절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119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02.17.).

120 황○○, 윤○○, 나○○, 김○○, 김○○, 박○○, 김○○, 양○○, 나○○, 최○○, 이○○, 한○○, 김○○, 김○○, 김○○, 차○○, 이○○, 박○○, 양○○, 이○○, 김○○, 김○○, 정○○, 나○○, 정○○, 김○○, 김○○, 박○○ 등은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거나 수면제, 치료제 등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은 수면제와 우울증약을 안 먹고는 잠을 못 잡니다. 20일에 한 번씩 처방을 받습니다. 약을 먹은 지는 한 10년이 됐고, 잠 못 자고 불안한 상태는 석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우울증 같은 정신병이 평생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약이 자꾸 강해지니까 위장이 안 좋아지지만 안 먹으면 못 사니까 계속 약을 먹고” 있으며,<sup>121</sup> 나○○은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고, 참고인 김○○은 정신과 격리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다.<sup>122</sup> 참고인 최○○, 김○○, 배○○, 이○○, 이○○, 김○○, 김○○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후유증으로 가장 극단적인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sup>123</sup>

#### 다) 삶의 파괴와 가족의 해체

참고인 이○○은 “석방된 후 상무대 영창에 있을 때 받은 고문과 구타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sup>124</sup>라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참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후유장애로 인해 일상적 생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직업 생활, 감시와 사찰로 인한 외부 경계 및 폐쇄적 삶, 사회적 낙인, 가족의 피해와 가족관계 해체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었다.

참고인들은 “멀쩡하게 생업을 할 수가 없어서”<sup>125</sup> 취업이나 취직을 포기하거나, “면접까지 갔으나 신원조회를 하면 ‘포고령 위반 구류 후 미상’으로 번번이 좌절”<sup>126</sup>되는 등 취

121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2.09.30.).

122 5·18조사위, 「나○○ 진술조서」(2022.04.26.), 「김○○ 진술조서」(2023.01.12.).

123 5·18조사위, 「최○○ 진술조서」(2022.06.10.), 「김○○ 진술조서」(2022.06.21.), 「배○○ 진술조서」(2022.08.03.), 「이○○ 진술조서」(2022.07.25.), 「이○○ 진술조서」(2022.07.27.), 「김○○ 진술조서」(2022.08.31.), 「김○○ 진술조서」(2022.10.05.).

124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2.11.28.).

125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3.02.17.).

126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10.13.), 「임○○ 진술조서」(2022.11.15.).

업에 실패하거나 합격이 취소<sup>127</sup>되기도 했으며, “거리낄 것 없이 자유롭게 직장생활을 했는데, 5·18 이후로 위협과 시선 같은 것들을 견딜 힘이 없어서<sup>128</sup>” 회사를 그만두거나 쫓겨나는 등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참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후유장애로 인해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감정조절과 분노조절장애로 가족이나 주변인들과 갈등을 겪거나 폐쇄적인 삶을 살아왔다. 참고인 전○○ 외 4명이 이혼하였고,<sup>129</sup> 가족과의 연락도 두절 된 채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 다. 전북 지역 인권침해 사건

### 1) 인권침해사건 개요

〈표 5-1-3〉 전북지역 인권침해 사건 개요

연번	사건명	사건요지
1	전북대 5.2 시위사건 (최초 가두진출 사건)	- 5.2. 전북 최초 가두시위 - 경찰차 불태움 발생
2	전북대학교 농성장 연행 사건	- 5.18. 전북대 학생회관에 출동한 7공수 31대대는 학생 33명 체포, 전주경찰서 구금
3	전라북도 대학생 예비검속 사건	- 5.18.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검거하지 못한 학생 수배, 검거 - 5.18. 자택 체포, 이후 수배하여 검거 - 원광대학교 수배 및 체포 - 군산대 예비검속, 취업 방해 등
4	성지야학 사건	- 5.27. 신흥고에 제공할 유인물 제작 등
5	신흥고 5.27. 민주화 운동 사건	- 5.27. 신흥고 민주화운동
6	전주시 고교생 연합 벽서, 유인물 배포 사건	- 6월 벽서 및 유인물 배포

127 5·18조사위, 「위○○ 진술조서」(2022.11.18.).

128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2.05.12.), 「김○○ 진술조서」(2022.11.22.).

129 전○○, 한○○, 김○○, 최○○, 이○○.

연번	사건명	사건요지
7	전투경찰 김상희 우편검열 사건	- 동생, 누나에게 보내는 편지 검열
8	국립대 교수 해직사건	- 전북대 교수 이석영 등 3명 - 보안대 고문 폭행, 사직서
9	5.24 유인물 사건 (김현장 유인물 살포)	- 5.24. 집회 유인물(김현장 제공 유인물 재 제작물) 제작, 배포
10	5.19 대자보 및 시위사건	- 5.19. 보안대, 전북대 정문 앞 등 대자보 부착 - 5.18. 이세종 사망, 33명 체포 사실 기재 최초 유인물
11	신민당 유인물 배포사건	5.16. 신민당 유인물 배포 등
12	박창신 신부 테러사건	6.25. 박창신 신부 테러
13	이세종 사건	전북대 학생회관에서 추락사

## 2) 사건별 조사 결과

### 가) 전북대 5·2 시위 사건(최초 가두진출 시위사건)

1980년 봄 학원자율화 분위기 속에서 1980년 4월 15일 전북대 총학생회장 선거가 실시되어 회장 김희수, 부회장 황덕구, 총여학생회장 문희선이 당선되었다.

전북대는 1980년 5월 2일 학교 내에서 총학생회 출범식 행사를 가진 데 이어 11시경부터 가두로 진출하여 학교에서 전라북도도청 광장까지 이어진 가두행진에서 경찰과 충돌하였다. 누군가에 의해 경찰 시위진압 지휘 차량(지프차)이 금암분수대 로타리에서 불태워졌고, 투석 시위도 있었으며,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도청 광장에서 학생과 전주시민 등 6천여 명이 모여 “전두환 퇴진, 계엄해제”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12시경부터 1시간여 갖고 17시경까지 가두시위 후 학교로 복귀하였다.

학교로 돌아온 김희수 회장 등 총학생회 간부들은 학생회관에서 학생처장으로부터 “경찰의 체포가 없을 것이다.”는 말을 전해 듣고 19시경 이날 시위로 부상당한 학생과 경찰들이 입원해 있는 전북대병원에 문병하러 갔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날 전북대병원에서 체포된 사람은 김희수, 황덕구, 유동수 등 3명이었고, 김병태(화학공학과 과대표, 귀가 도중 전북 이리시 자가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 최주원(의과대학, 밤 12시경 자가에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포) 등은 주소지에서 체포되었으며 시위에 참석했던 다수 학생이 수배(수배 시 제적이 동시에 이루어짐)되었다.

체포된 학생들은 이후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과정에서 전주경찰서나 전주 보안대 유치장→제35사단 헌병대 영창→상무대 영창을 거치면서 갖은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군사재판을 받았다.

그 후 체포되어 사법절차가 완료된 학생들에게는 1981년 3월 3일 국방부 장관 명의로 사면장이 교부되었으나, 학교로의 복귀는 약 3년 후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사회로 진출이 늦어졌을 뿐 아니라 경찰의 취업방해 공작으로 대부분 취업에 실패하는 피해를 입었다.

## 나) 전북대학교 농성장 연행 사건

제7공수여단 31대대(대대장 중령 박영일, 육사23기, 하나회, 예비역 소장)는 작전명령<sup>130</sup>을 받고 1980년 5월 18일 0시 01분경 대대장 등 199명(27/172)이 제35사단이 제공한 군용트럭(2와 1/2톤)에 분승하여 주둔지인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을 출발하여 01시경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sup>131</sup> 앞 공터에 도착하여 1시간 이상 대기하면서 임무 분담 및 경찰로부터 상황 설명(꼭 체포해야 할 사람으로 이광철과 김형근의 명단을 제공받음)을 들었다.

<sup>130</sup> 제7공수여단에서 2000.9.23. 작성한 “부대 역사일지 존안 건의”에 의하면 출동 경위에 대하여 2군 작상전 제 275호(1980.5.15.) 병력 출동 대기(지시)에 의거 투입 대기 중 2군 구두 출동 지시(1980.5.17.) 및 특전사 승인에 의거 1980.5.17. 20:01부로 2군 작전 통제하에 충남대, 전북대, 조선대, 전남대를 각각 1980.5.18. 02:00까지 점령 임무를 받았다.

<sup>131</sup>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142-1번지 소재, 전북대학교와 약 1.5km 이격된 거리이다.

이후 제7공수여단 31대대 계엄군은 전북대학교 학생회관까지 약 1.5km를 걸어서 이동하였다. 도보로 이동한 이유는 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으나, 학생회관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체포하기 위해 은밀히 기동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관에 도착한 계엄군들은 건물 외부를 포위한 후, 약 50여 명이 건물 내에 진입하여 2층 농성장과 3층 총여학생회 사무실 등에서 잠을 자던 이병욱 등 33명을 체포하였다. 이들이 학생들을 2층 학생회관에서 연행하기 위해 포승줄로 묶는 시간대에 고 이세종이 추락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당시 체포된 학생 33명은 이날 새벽 전주경찰서의 경찰버스에 실려 전주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김운주는 전주경찰서에 도착한 직후 전주 보안부대로 이송되었다. 계엄군들은 학생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압봉과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를 하였으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게 하고 손목을 포승줄에 묶어(전체를 하나의 포승줄로 묶인 것과 같이 묶어 도피하지 못하도록 함) 연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전주경찰서로 연행된 학생들은 유치장에 수감되지 않고, 유치장 입구에 마련된 간이 유치장이나 사무실 등에 구금되어 책상 위 등에서 쪽잠을 자며 1주일 이상 조사를 받았다. 또한 학생들은 약 1주일가량 전주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구속이나 석방 등 정당한 법률 절차와 다르게 제35사단 헌병대 유치장으로 모두 이감되어 기합, 비인간적인 대우와 구타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후 전주 보안부대 정보과장 중령 장재설에게 불려가 각서를 쓰고 석방되거나, 정식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상무대 헌병대 유치장으로 이감되었다.

#### 다) 전북 지역 대학생 예비검속 사건

전북지역 보안부대(제510 보안부대)에서는 5·17비상계엄 확대를 앞두고 1주일 전, 정보과장(중령 장재설)과 대공과장(소령 임봉영)이 각각 2회씩 보안사령부에서 정보처장 권정달과 대공처장 이학봉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체포할 사람 명단을 보고(장재

설→권정달)하고 또 하달(이학봉→임봉영)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980년 5월 18일 검거하려고 했던 전라북도 내 시위 주도 학생은 모두 46명이었음을 확인했다(전교사 상황일지(1980년 5월 18일) 체포 현황).

전라북도에서는 제7공수 31대대가 1980년 5월 18일 01시경 전북대학교에 출동하여 학생회관에서 위 전북대 현황 속 검거자 1명이 김운주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전주대학교 심영배, 군산대학교 문장주(개명 후 문성주) 등이었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외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전주공업전문대학 등에서 학생회장 등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체포를 위해 1980년 5월 17일 오후부터 주소지 및 자취방 등 소재지에 도착하여 감시를 하다가, 1980년 5월 18일 00시를 기해 일제히 체포하였다.

이때 체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1980년 6월 8일자로 자수 권고문을 전달했으나, 자수하는 학생 수가 적어 재차 1980년 6월 16일자로 작성된 전라북도 경찰국장 명의의 자수 권고 강조 서한문을 사찰을 담당하던 정보과 형사가 학생들의 부모를 찾아가 전달하며 사실상 가택수색을 했던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 후 계엄사에서는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시 체포하지 못한 사람과 자수 권고에도 응하지 않았던 전라북도 소재 대학의 학생 23명(전국 329명)의 명단을 t신문에 발표하면서 공개수배에 나섰다. 이 공개수배를 통해 검거·자수한 이광철, 최인규, 김남규, 박종훈, 이송재, 최갑선, 김형근, 강형근, 이충래, 이호성, 진주환, 강익현 등은 모두 군사재판에 기소되었다.

이 사건 가해자 조사를 통해 전주보안대 정보과장 장재설은 당시 보안부대 정보과의 중요한 임무 2가지 중 하나는 김대중과 같이 신군부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학생이 주축이 된 시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이외에 학생들에 대한 예비검속자 명단을 작성, 보고했음도 진술하였다.<sup>132</sup>

132 5·18조사위, 「장재설 진술조서」(2023.7.18).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이리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했던 전북합수단 편성요원 김영진 형사 또한 예비검속자 14명<sup>133</sup>의 명단을 작성, 보고한 경위와 체포한 경위, 체포 후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들을 진술하였다.<sup>134</sup>

## 라) 성지야학 사건

성지야학은 1976년 10월경 방위병 이상호와 하연호가 의기투합하여 김제 호남잠사 노동자들(약 1,000여 명)에게 야학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어 1983년까지 운영되었다.

성지야학 운영자 이상호와 하연호는 1980년 5월 21일경 재수생이었던 김병민<sup>135</sup>으로부터 김현장을 소개받았다. 이때 김현장은 ‘전두환의 광주 살육작전’유인물을 전달했다. 이후 유인물은 전주교 전주교구 김동준 신부(김현장이 김 신부를 별도로 접촉하고 유인물 전달) 지원으로 다량 인쇄되었으며, 김병민을 통해 약 2,000여 매가 성지야학에 전달되었다. 이 유인물은 성지야학 교사<sup>136</sup>들을 통해 전주 시내 일원에 배포되었다.

또한 이상호는 1980년 5월 27일 전주시 고등학생 연합시위를 계획하였다. 이 유인물이 고등학생들에게 그대로 배포하기에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유인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sup>137</sup>하였다(전주고 등 다른 고등학교가 모두 불참하여 1980.5.27. 신흥

133 강익현, 소희영, 이호성, 김기섭, 성경환, 이종래, 황은자, 진상해(진주환), 오광근, 김길성, 송봉길, 박경자, 최석항 등이었다.

134 5·18조사위, 「김영진 진술조서」(2023.5.4).

135 김병민은 1980년 5월 18일경 광주에서 김현장의 도움으로 광주를 탈출하여 전주로 왔으며, 이상호와 하연호에게 김현장을 소개해 주었다. 1980.5.27. 신흥고 민주화운동 후 조사과정에서 발각되어 수배 중 1980.8.20. 서울에서 체포되어 김제경찰서에서 조사(8.20.~9.2.)받았고, 이후 전주경찰서를 거쳐 철원의 군부대로 이송되어 삼청교육을 받았는데, 이 당시 구타로 인한 체력 저하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거쳐 석방되었다고 한다.

136 성지야학 교사는 이상호와 하연호 외에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교사가 되었으며 유재민, 조정호, 박성균, 최철원, 나현균, 박정희, 박화룡, 하기승, 최상경, 이창구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137 이 고등학생용 유인물은 이상호가 원고를 작성하였고, 가리방 글씨는 박화룡, 등사는 박성균, 박화용, 나현균,

고등학교만 시위 계획됨). 유인물 제작을 이상호로부터 지시받은 조정호와 유재민은 야 학교사 박성균 집에서 1980년 5월 24일~5월 25일 약 1,000매를 등사하여 1980년 5월 26일 둘이서 이상호<sup>138</sup>의 집으로 옮기던 중 중앙정보부 전주분실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상호는 중앙정보부 전주분실, 전주경찰서, 전주 보안부대 등을 거치며 간첩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받았으며 구타, 폭행,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라는 강요<sup>139</sup>도 받았으며, 결국 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81년 8월 15일 특사로 석방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김명희(이상호와 전주시 고교생 간 매개자,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하연호, 유재민<sup>140</sup>, 조정호, 박상균(박성균의 형), 김영호, 박성균, 최철원, 나현균(서울대, 성지야학 교사), 이창구, 박정희, 박화룡, 김병민, 김인수(신흥고), 박영화(신흥고), 허민(신흥고), 김현숙(완산여상), 조광호(남성고, 조정호의 동생), 최상경, 하기송 등이 전주경찰서에 연행되어 10일 이상의 구타를 수반한 조사를 받고 전주 보안부대로 이송되어 정신교육과 각서를 제출하고 석방되었다.

경찰은 성지야학 교사 박성균(전북대)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박성균이 도피하여 집에 없자 형 박상균을 이유 없이 체포하였으며, 박성균의 부친 박형태<sup>141</sup>는 직위해제 후 좌천

유재민, 조정호가 같이 하였다.

138 이상호는 당시 풍남전수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1980.5.26. 16시경 전주시 평화동 풍남전수학교 근처의 자취방에서 중앙정보부 전주분실 요원에게 체포되었으며, 유인물을 이상호 집으로 옮겼던 유재민, 조정호도 미행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체포되어 유인물이 압수되었다. 이들은 모두 중앙정보부 전주분실로 연행되어 1차 조사를 받고 전주경찰서로 이송되어 2차 조사를 수일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수반한 조사 후, 이상호와 하연호는 전주 보안부대로 이송되어 역시 구타와 가혹행위를 수반한 3차 조사를 받았다.

139 1980.5.27. 02시 같이 성지야학을 설립 운영했던 하연호를 체포한 전주경찰서에서는 이상호의 자취방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 특정 싸이클에 스키치테이프를 붙여 고정시켜 놓고, "이상호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는 장면을 보았다."는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140 당시 성지야학 교사(전북대 학생)로 2022.8.26. 대인조사.

141 1980.5.27. 김제군청 내무과장으로 근무하다 이 성지야학 사건으로 도지사 김학중의 엄중 문책 조치(시범 조치 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 따라 대기발령 되었으며, 한참 후 남원군청 사회과장으로 좌천 발령(1980.5. 당시 약 100km 이격)받았다고 한다.

되는 인사상 불이익도 받았다.

이 사건은 전북지역 인권침해 사건 중 유일하게 중앙정보부 전주분실에서 직접 체포에 나선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감청을 통해 이상호를 감시하였고, 간첩 혐의로 체포하여 심한 구타와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계엄포고령 위반죄만 적용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확인했다.

#### 마) 전주 신흥고등학교 5·27 민주화운동

전주 신흥고등학교는 1900년 9월 9일 미국 선교사 레이놀즈가 기독교 선교 목적으로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소위 기독교 미션 스쿨이며, 1980년 5월 27일 당시 많은 재학생이 KSCM(한국기독교학생회)<sup>142</sup>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전주시 KSCM은 신흥고 외에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전주고, 전주여고, 기전여고, 성심여고, 완산여상 등의 학생이 많이 가입하였으며, 김명희는 1979년 3월부터 KSCM의 간사를 맡아 고교생의 의식화 학습을 주관하였다.

성지야학 운영자 이상호는 1980년 5월 21일경 김현장으로부터 유인물(전두환의 광주 살육작전)을 전달받고, 하연호를 통해 김명희를 소개받았다. 이렇게 신흥고 민주화운동은 이상호→김명희→신흥고 대표 학생으로 연결망을 갖게 되었다.

당시 이상호는 김명희를 내세워 1980년 5월 27일 전주시 고등학생 연합시위를 계획했다. 그러나 다수 학교가 불참하기로 하면서 KSCM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신흥고만의 시위를 계획하고, 유인물을 제공하기로 했다.

142 KSCM(Korea Student Christian Movement, 한국기독교학생회)는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기독교 단체로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가입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 단체와 같은 성격의 단체로 KSCF(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가 있다. 이 단체는 대학생이 가입하는 단체로 성격은 같으나 회원 신분만 다르다.

신흥고에 제공하려던 유인물을 준비한 이상호는 신흥고 시위 하루 전인 1980년 5월 26일 중앙정보부 전주본실에 체포되었다. 유인물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명희와 신흥고 KSCM 핵심 간부 학생들은 허천일이 다니던 교회<sup>143</sup>에 가서 김현장이 전해준 유인물을 본 기억을 더듬어 호소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1980년 5월 27일 09시경 신흥고 전교생 1,500여 명이 운동장에서 약 2시간 동안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정문 진출을 시도하며 계엄해제 등을 요구하였다. 그 후 체육관에서 한 시간여가량 자체 성토타회 후 귀가하면서 시위가 종료되었다. 이후 토요일까지 4일간 학교는 휴업하였다.

이날 시위 후 저녁 시간(19시경)에 전주 보안부대 정보과장 장재설 중령은 교장 양영옥을 정보과장실로 불러 신흥고 민주화운동을 막지 못한 것을 힐책하고, 주동 학생들을 징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신흥고는 학생 26명<sup>144</sup>을 휴업일을 포함하여 징계하고 이를 전주 보안부대에 통보하였다.

## 바) 전주시 고교생 연합 벽서, 유인물 배포사건

이 사건은 전주 신흥고 3학년 이우봉과 이강희,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3학

143 김명희는 2022.5.22. 5·18조사위 조사에서 1980.5.26. 유인물을 건네주기로 했던 이상호가 1시간 이상 나타나지 않자 문제가 생겼음을 알고 계획된 신흥고 민주화운동에 사용할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 허천일이 다니던 전주 시 팔복동 소재 신상교회로 허천일, 박영화, 이재유, 김인수 등과 함께 가서 유인물 호소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에 보았던 김현장 유인물(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 내용을 기억하여 토의하여 문안을 작성했으며, 허천일이 자필로 등사지에 원고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144 3학년 박영화(지도 휴학, 이후 자퇴), 3학년 박일규(무기정학), 3학년 고석(무기정학), 3학년 채범석(무기정학, 이후 제적), 3학년 김인수(무기정학, 이후 제적), 3학년 이재유(무기정학), 3학년 허천일(무기정학), 2학년 허민(무기정학), 3학년 박현우(3주 정학, 이후 제적), 3학년 김의신(3주 정학), 2학년 차춘남(3주 정학), 3학년 조인규(2주 정학), 3학년 조영진(2주 정학), 3학년 유건영(2주 정학), 3학년 김용선(2주 정학), 3학년 김진길(2주 정학), 3학년 신연재(2주 정학), 3학년 김남규(2주 정학), 3학년 이종길(2주 정학), 3학년 배을섭(2주 정학), 3학년 이정우(2주 정학), 3학년 최이천(2주 정학), 3학년 전정철(2주 정학), 3학년 강원국(1주 정학), 3학년 황찬규(1주 정학), 3학년 이상호(자퇴) 등이다.

년 유창훈 등 3명<sup>145</sup>이 1980년 6월 초순경부터 체포된 6월 26일까지 심야에 전주 시내 남녀 고등학교와 기전전문대학, 아파트 등을 돌며 광주의 참상 전달과 민주화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벽서와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건이다.

유인물은 이강희가 다니던 교회에서 등사기를 빌렸고, 용지는 세 사람이 보충수업비와 독서실비 등의 용돈을 모아서 마련했다. 이들은 매일 밤 500매 이상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의 내용은 당시 전북대 의과대학에 다니던 이광영을 통해 ‘광주살육작전’ 유인물과 영자 잡지 ‘News Week’ 번역문을 활용해서 이강희 집 2층 골방에서 등사 제작했다. 유인물의 배포는 이강희와 유창훈이 한 조를 이루고, 이우봉은 단독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 6월 26일 이우봉 체포 이후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 3명 중 이우봉과 이강희는 1심의 전교사 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8월 단기 6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를 통해 이우봉은 서울고법의 1981년 4월 17일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지만, 미성년자였던 이강희(1962년 2월 15일생)는 성년이었던 이우봉(1961년 1월 7일생)과 달리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1981년 5월 25일 보호처분으로 뒤늦게 석방되었다.

#### 사) 전투경찰 김상희 우편검열 사건

1980년 5월 22일 전라북도 경찰국 제2기동대 소속 일경 김상희는 1980년 5월 14일 전북대학생 시위진압에 출동했던 상황을 누나와 동생에게 북한 방송에서 들었던 광주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인용하여 학생회 활동에 주의를 당부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

김상희는 1980년 6월 5일 소속 전경 기동대 행정반에 불려간 후 중대장과 함께 전북도 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발송했던 2통의 편지를 내놓은 백환기 경사에게 그 경위를 조사받

145 이 3명의 학생은 한국기독교학생회(KSCM) 소속 학생들로 평소 김명희(한일신학교 3학년, KSCM 간사)로부터 1979.3. 이후 계속하여 의식화 학습을 받아 온 학생들이었다.

았다. 1980년 6월 13일 전북도경국장 경무관 김재국이 전경대를 방문하여 김상희에게 “김 일경은 전북합수단에서 ‘훈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영창 징계를 받고 임지에서 잘 근무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날 백환기 경사는 김상희를 불러 서울 합수본부에서 보고하라고 한다며 재조사를 하고, 다음날(6월 14일) 서울 합수본부에 보고하였다.

이후 백환기 경사는 서울 합수본부에 출장을 다녀온 다음날인 1980년 6월 15일 김상희를 불러 진행사항을 알려주었다. 전경대 내무반에서 10여 명이 함께 북한 방송을 들었다는 말을 ‘김상희 혼자 들은 것’으로 수정하여 보고했다고 한다. 이때 백 경사는 북한 방송을 세 사람 이상이 들었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과대표인 동생에게 시위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 맞지 않느냐, 또한 편지가 우편검열에 적발되어 동생에게 전달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백 경사가 이렇게 김상희를 불러 말한 것은 자신은 압력을 받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김상희에게 다음 절차에서 항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다고 김상희는 진술하였다.

김상희는 1980년 8월 8일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 및 반공법 위반 죄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항고,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1981년 9월 12일 전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였다. 1981년 9월 12일 출소할 당시 속초경찰서 이희재 경사가 전주교도소로 찾아와 보안처분 대상자가 되었으니 속초경찰서에 신고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그 후 1981년 9월 23일~1985년 1월 28일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면제를 받을 때까지 매일 경찰관에게 한 달간의 행적을 신고하는 감시대상자가 되어 취업도 제한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아) 전북대학교 교수 해직사건

전북대학교 교수 이석영, 남정길, 변홍규, 김용성 등 4명은 1980년 대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전주 보안부대에 체포되었으며 모두 강제로 사직서를 썼다고 한다. 당

시 전주 보안부대 방첩과 수사계장 준위 오복래가 이들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였으며 보안사에 결과를 보고했다.<sup>146</sup>

이때 해직된 교수 4명 중 3명은 한국기독교교회 소속 교수들이었으며, 이들 모두 1984년 3월 교육부로부터 전남대학교 교수로 복직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남정길(철학과), 변홍규(사범대 교육학과), 김용성(사범대 국어교육과) 등 3명만 전남대학교에 복직했고, 이석영은 전북대학교 아니면 복직을 안 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전남대학교에 복직했던 교수들은 1984년 8월 전북대학교로 돌아왔고, 그해 9월에 이석영 교수는 농대에 복직하였다.

#### 자) 1980.5.24. 유인물 배포 사건(김현장 유인물 배포)

이 사건은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1980년 5월 23일 광주에서 온 김현장이 1980년 5월 21일경 전해 준 유인물을 내용으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2,000여 매를 등사하여, 5월 24일 15시 집회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이다. 이 유인물은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의 참상을 전주시민에게 알리고, 학생 지도부 공백을 메꾸고 세력의 결집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작성 경위는 전북대학교 학생 이승희, 최백렬, 정해동, 박영식, 황철 등 12명이 1980년 5월 18일 전주역 오거리 광장에서 열리지 못한 집회(이때 1천 명 이상의 군중이 운집함)에서 접촉 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후 이들 12명은 1980년 5월 23일 전북대 선배 김준배(교사, 전주시 효자동 주공아파트) 집에서 유인물 2,000매를 등사하였다. 이때 친필 글씨(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는 이승희가 가필하였으며, 유인물 배포는 작성에 참여했던 학생들이(이 학생들은 전북대학교 써클 회장급 학생이었음) 각각 다른 학생들을 동원하여 1980년 5월 23일 21시에서 5월 24일 새벽 사이에 전주 시내 일원에 배포함

<sup>146</sup>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오복래 진술조사」(2023.6.16.), 당시 준위, 전주 보안부대 방첩과 수사계장.



였다.

5월 24일 15시경 전주역 앞 오거리 광장 주변에 평상시와 달리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데다가 수많은 경찰이 잠복하여 행사는 무산되었고, 주변에서 박영식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시위 지도부 공백을 해소하고 세력을 결집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상황과 정신을 전주에 전파하고 그에 동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평화시위를 계획했던 유인물 제작, 배포사건으로 확인되었다.

#### 차) 1980.5.19. 대자보 및 시위사건

1980년 5월 19일 대자보 부착 및 시위사건은 전북대 학생 이홍복 등이 1980년 5월 18일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계엄군이 진입하여 농성학생 33명을 체포한 것과 고 이세종이 사망한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부착한 사건이다.

1980년 5월 18일 아침 이홍복은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학교에 갔다가 정문 폐쇄와 농성장에서 33명이 체포된 사실과 이세종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이홍복은 같은 농과대학 친구 전종원 등 4명과 함께 이 사실을 대자보를 작성하여 주변에 알리기로 하였다. 이들은 종이와 매직펜을 구입하여 전주 보안부대 뒷골목에 있던 전종원의 자취방에서 새벽 4시까지 대자보를 작성하였다. 이들은 대자보 부착팀을 2명 2개 조로 나누고 5월 19일 04시경부터 전주 보안부대 담벼락을 시작으로 전북대학교 정문 앞까지 옮겨가며 10시경까지 이 대자보를 부착하였으나, 경찰 등 당국에 발각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이홍복은 1980년 5월 19일 17시경 전주역 앞 오거리에서 운집한 군중 60~70명이 차로로 뛰어들어 “계엄철폐와 연행학생 석방”을 외친 약 1분여간의 반짝 시위에 참여했다. 이 시위로 계엄군과 경찰의 불심검문이 시작되었다. 검문을 받던 이홍복의 수첩에서 검은 리본(1980년 5월 16일 전북대학교 학내 시위 때 착용)이 땅에 떨어지고 도망을

치던 이홍복은 제7공수 계엄군의 추격으로 체포되었다. 이때 이 검문에서 같이 체포된 학생은 이호(단국대 2학년), 김상수(전주공전 2학년), 유세호(전북대 상대 2학년) 등 4명이었다. 체포된 이홍복은 군용트럭(2.5톤 일반 작전용 트럭)과 장갑차로 옮겨지며 심하게 폭행당했다. 특히 계엄군 중령은 장갑차에서 권총을 입에 넣고 휘적거리며 “내가 작전 참모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 카) 신민당원, 서울대 학생회 유인물 배포사건

이 사건은 신민당원 이준상(2004년 6월 23일 사망)이 1980년 5월 16일 서울에서 신민당원 양길정으로부터 배부받은 서울대학생회 명의의 유인물 “유신 잔당 타도에 총력을” 8매를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주민 조기수 등 3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진안경찰서에 체포된 사건이다.

이준상은 재판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81년 3월 3일 대통령 사면장을 받고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또한 이준상은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1980년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성동구치소 제1기 순화교육(속칭 교도소 삼청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 타) 박창신 신부 테러 사건

박창신 신부는 1980년 5월 21일 천주교 전주교구 “긴급 사제단회의”에서 소위 김현장 유인물을 배부받았으나, 당시 관리하고 있던 9개 공소에 분배하기에 양이 적어서 이를 추가 인쇄하여 배포하였다(박 신부는 이때 전주교구 카농 지도신부였음).

박 신부는 성당과 공소에 앰프를 걸어 놓고 유인물에 게재된 내용과 같이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살육작전을 벌여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공수부대원들에게는 쌀도 팔아서 안 되고, 방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강론과 홍보를 하였다.

1980년 6월 25일 23시 20분. 한국전쟁 30주년 기념일에 머리가 짧은 괴한 4명이 전라북도 익산군 여산면 여산성당 사제관에 난입하여, 쇠 파이프 등 흉기를 휘둘러 박 신부는 혼절하였고, 같이 있던 금마공소 청년회장 임을영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박창신 신부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1980년 6월 사건 직후와 1988년 10월 5일 권노갑 국회의원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수사 촉구 등으로 군경 합동수사까지 전개했으나 범인을 색출하지 못했다.

5·18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발생 직후 수사에 착수했던 이리경찰서 수사과에서 성당 주변에서 쇠 파이프 1개, 쇠 파이프를 썬 것으로 추정되는 농민신문 1장, 담배꽂초 여러 개 등 증거를 수집했던 사실과 증인 이종철(쇠 파이프를 공수부대 군인에게 잘라준 사실 증언)과 신동식(1980년 6월 25일 야간에 제7공수여단 근처 금마→사건 발생 장소에 군인 같은 사람 4명을 태워다 준 택시기사)을 확보하여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리경찰서가 수사진행 사항을 전북도경에 보고한 후 전주 보안대 정보과장 장재설이 현장에 나와서 수사를 지휘하였으며,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고, 이때 전주지검 변화석 검사도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한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쇠 파이프를 잘라준 증인을 확보했던 담당 형사 오승철은 증인 확보 보고 후 수사에서 배제되어 이리경찰서로 복귀하였다. 이와 같은 수사 마무리 처리에 반발한 당시 이리경찰서장 전옥현은 정보과 김용관 형사에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며 오승철 형사와 이종철 증인을 여관에 불러 관련 경위를 녹음해 오라는 지시를 했고, 이후 이 녹음테이프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전주 보안대를 통해 전북도경국장에게 알려지자 전옥현 서장은 감찰조사를 받고 전임지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이던 1980년 7월 16일 의원면직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sup>147</sup>

<sup>147</sup>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소장 육군 현병감실 기록(전북도경 수사기록) 2023.10.30. 입수. 이 사건과 관련한 위 이리경찰서장 전옥현 등 당시 이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모두 사망하여 조사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제7공수여단 부대원에 의한 박창신 신부 테러 혐의점이 확인된 과정에서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보안부대가 나서서 수사를 서둘러 종결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 전주지검 검사도 관여한 사실 또한 확인했다.

#### 파) 이세종 사망 사건

이 사건은 이세종이 1980년 5월 18일 1시 30분에서 1시 50분경 사이 제7공수여단 31대대의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진압 당시 이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계엄 당국에서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세간에 이세종이 도피를 위해 보안등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참고인들에 대한 5·18조사위 조사 결과, 이세종은 1980년 5월 18일 01시 30분경 학생회관 2층 농성장에서 김제 중앙중학교 동창 유광석과 함께 1층 경비실에 있는 전화로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농성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내려가려던 중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엄군 선발대와 마주쳤다. 이때 유광석은 2층 화장실로 계엄군과 3~4미터 사이를 두고 도피하여 화장실 창문을 넘으려다 뒷덜미가 잡혀 체포되었고<sup>148</sup>, 이세종은 3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도피했다. 이 장면을 다른 동료 학생인 양상민이 목격했다. 이후 양상민은 계엄군을 피해 많은 학생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2층 농장으로 도주했으나 뒤따라온 계엄군에게 그 안에서 붙잡혀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sup>149</sup>

또한 이세종이 3층으로 올라갔을 때 부산한 발자국 소리에 3층 등사실에 있던 또 다른 동료 학생 이상원이 밖으로 나오다가 2층에서 3층으로 헐레벌떡 올라오는 이세종과 그를 쫓아오던 계엄군 3명과 마주쳤는데, 이때 이상원은 이세종과 2~3미터 거리를 두고 쫓아

148 5·18조사위, 「유광석 진술조서」(2023.8.17.).

149 5·18조사위, 「양상민 진술조서」(2023.9.9.).

온 계엄군 3명을 보았다. 이 계엄군 중 한 명이 이세종의 무릎을 진압봉으로 때리고, 다른 한 명이 소총 개머리판으로 이세종의 머리를 내리찍었으며, 그 후 이세종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이때 이상원은 나머지 한 명으로부터 진압봉으로 맞고 2층 농성장으로 연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sup>150</sup>

한편 동료 학생 이병욱은 4층에 있던 2개의 씨클룸 중 합창부 씨클룸에서 잠을 자다가 학생회관 밖으로 연행되어 여러 명의 계엄군에게 매질을 당한 후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을 때(이때 2층에서는 학생들이 포승줄로 묶이고 있던 시간이었고 외부는 조용했음) 학생회관의 북쪽 스쿨버스 승강장 쪽에서 세찬 물 뿌리는 소리 같은 ‘짜아악’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sup>151</sup>

한편 1980년 5월 17일 자정 무렵 당시 학생회관 건물 1층 계단 밑에 있던 경비실에는 수위와 학생과 소속 경비원 당직자 임남철이 근무했다. 계엄군들이 자동차를 타고 도착하지 않았고(나중에 보니 학생회관 정문 앞에 군용트럭이 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허리를 숙이고 학생회관으로 진입하는 장면(이때 계엄군 소령이 와서 나가지 말고 경비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고, 경비실을 오가며 자신과 수위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과 이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한다. 또한 5월 18일 새벽 04시경 경비실에서 위 계엄군 소령으로부터 “학생이 한 명 떨어져 죽었다”는 말을 처음 들었으며, 가보려고 했으나 못 가게 했고 그 후 학생들이 경찰버스에 실려 간 후에(이때는 날이 새 밝이 환했음) 처음으로 “비스듬히 옆으로 눕혀진 이세종”을 보고 이세종임을 알아보고 움직여보려고 했으나 “검시관이 올 때까지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고(이때 날이 흰하게 밝았음) 경비실로 돌아왔다고 한다.<sup>152</sup>

이후 임남철은 같은 날 7시 30분경 검찰 수사관 일행 3명이 와서 같이 이세종 시신을

150 5·18조사위, 「이상원 서면진술서 1차」(2023.10.19), 「이상원 서면진술서 2차」(2023.10.22).

151 5·18조사위, 「이병욱 진술조서」(2022.8.11).

152 5·18조사위, 「임남철 진술조서」(2023.7.30).

확인하자고 하여, 2차로 이세종 시신을 확인하고 이들과 함께 4층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이세종의 시신으로부터 수직 지점을 관찰하던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여기에서 떨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옥상의 북쪽 오른편 모서리 보안등 밑 좌우측에서 신발 자국 15개가량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 후 30분가량 경비실에서 수위와 단둘이 있다가 08시경 전주경찰서에서 오전 내내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에서 보았던 것(신발 자국이 난 것을 목격, 그 보안등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 등)을 그대로 진술하였음을 확인했다.<sup>153</sup>

이후 제35사단에서는 상급부대인 전투교육사령부에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인 1980년 5월 18일 9시 30분경 이세종 사망 사건 상황보고를 하였는데, 이 상황보고에서 이세종이 추락하여 신음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적시되어 있는 제7공수여단 31대대 소속 중사 양길홍은 5·18조사위 조사에서 어떠한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세종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sup>154</sup> 한편 제35사단 헌병대장 소령 장길영은 1980년 5월 18일 새벽 원광대학교 예비검속 체포 작전 종료 후 복귀하여, 사단장으로부터 전북대학교 학생 변사사건의 사실확인을 지시받고, 전북대 학생회관 현장에 출동하여 공수부대 중령이 주관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경찰과 검찰 수사관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도 확인했다.<sup>155</sup>

이세종의 사인과 관련한 위 목격 진술 외에도 이세종의「사체검안서」(1980) 및 “직접적인 사인 외에도 상박골 골절 및 슬개골 골절 등 복합골절의 양상과 함께 상당한 타박상이

153 이 사건에 대한 보고사항은 1980. 당시 작성된 「전교사 정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건 당시 '전주지검 안상수 검사가 현장에 출동 지휘하여 진상규명 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담당 검사(안상수)의 검사는 없었고, 검찰 수사관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또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군 수사기관(관할 제35사단 군검찰부로 판단됨)에서 수사하도록 이송한 것을 확인했다.

154 「전교사 정보일지」에 발견자로 기재되어 있는 '중사 양길호'는 '양길홍'의 오타이며, 양길홍에 대해서는 5·18조사위에서 2023.5.8. 및 2023.9.5. 2차에 걸쳐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양길홍은 대면조사에서 “전북대학교에 출동한 사실은 있지만, 이세종의 추락 전후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 자신의 이름이 왜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155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 「장길영 진술조서」(2000.3.29.).

존재한다”라는 내용의「의견서」(1993년)를 작성했던 1980년 당시 부검의 이동근의 진술<sup>156</sup>과 ‘1999년 국립5·18민주묘지로 이장 당시 희생자의 두개골에 큰 구멍이 나 있었다’는 유가족의 진술<sup>157</sup> 등을 종합하면, 이세종은 계엄군의 구타로 인해 추락 전 이미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5·18조사위가 주최한 ‘법의학 전문가 자문단 회의(2023.12.4.)’에서 일부 자문위원은 이세종의 사인에 대해 “둔력에 의한 손상(추락)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군 기록에 기재된 것처럼 추락사였는지, 계엄군의 구타로 인한 것이었는지는 5·18조사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엄군의 구타가 희생자의 사망과 관련성이 높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이세종의 시신은 5월 18일 01시 40분에서 01시 50분 사이 학생회관 외부에서 발견되어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고, 5월 19일 부검 후 유가족들에 의해 전북 김제군 월촌면 연정리에 매장되었다가, 1998년 6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되어, 1999년 국립5·18민주묘지로 이장되었다.

## 라. 서울·경인 지역 인권침해 사건

### 1) 개요

신군부는 1980년 5월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 방안’, ‘국기문란자 조사계획’, ‘권력형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마련한 후,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검토·추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계획에 따라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해 지역계엄에서 전국계엄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

<sup>156</sup> 5·18조사위, 「이동근 진술조서」(2023.7.21).

<sup>157</sup> 5·18조사위, 「이세정 진술조서」(2023.7.1).



하여 모든 정치활동과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 금지, 모든 대학 휴교 조치 등을 단행하였다. 이와 함께 5월 18일 새벽 3시를 기해 전국 31개 주요 대학과 136개 목표에 계엄군 25,000여 명을 배치하고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회 주요 간부 등의 검거에 나섰다.

## 2) 사건별 조사결과

### 가) 예비검속 사건

서울·경인 지역의 예비검속 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란음모사건 관련자는 보고서의 앞에서 이미 다루었으므로, 학생운동 관련자에 대한 조사 결과만 기술하였다.

#### (1) 참고인 박○○(2022년 10월 5일 진술 조사)

참고인은 1980년 당시 고려대생으로 조○○, 설○ 등이 가입한 언더써클인 겨레사랑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당시 각종 학내·외 시위에 동참하였지만 총학생회 간부가 아니어서 학생들을 체포, 연행한다는 소문을 듣고도 피신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 5월 17일 21시경 권총을 겨누는 수사관 2명에 의해 체포되어, 청량리경찰서로 연행되어 일주일간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성북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참고인의 학생시위 관련 내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던 수사관들은 겨레사랑회원 명단과 고려대 써클연합회장 박○○, 그리고 김대중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를 7월 초경까지 하였다. 이때 수사관들은 참고인의 무릎을 꿇리고 발바닥을 100대씩 몽둥이로 때리기, 물고문, 통닭구이 등의 구타, 가혹행위, 고문을 하였다고 한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을 때 고려대 교수 2명도 구금되어 있었으며, 석방된 일부 학생들은 강제징집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참고인이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반 모씨

와 이광수는 당시 성북경찰서 근무자를 조회한 결과 정보과 반○○과 이○○라는 수사관이 실제 근무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up>158</sup>. 5·18조사위 조사 결과, 이○○는 본인은 학원 사찰만 하였고 연행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다. 하지만 외근하고 경찰서로 복귀하여 목격한 바로는 연행된 학생들이 상당히 고초를 겪었고, 직접 목격하진 못 했지만 김○○, 김○○, 이○○ 등 수사과에서 정보과로 전입 온 인원들이 연행자들을 과격하게 다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sup>159</sup>

## (2) 참고인 신○○(2022년 7월 7일 진술 조사)

참고인은 1980년 당시 경희대 복학생이었으며,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10개월간 수감생활 중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여 1980년 3월 복학하였다. 참고인은 복학생협의회 대표를 맡아 재단 비리 등 학내문제와 시국 관련 시위를 주도하며,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연합시위에 경희대생 2,000여명을 동원하는 것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후 청량리 본가로 귀가 중 합수부 요원 3~4명이 골목길에 대기하다 머리에 권총을 들이대며 서대문 합동수사본부 수사5국(이하 합수5국)으로 연행되었다. 그 후 김대중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지원자금 30만 원을 받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자 수사관들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구타하였고, 조사실 앞에서 대기 중일 때는 경계조 33현병으로부터 수도치기(일명 청와대 목침)와 각종 얼차려 등을 받았다고 한다. 36일간 조사 후 청량리경찰서로 이송되었다가 이틀 후 서대문구치소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구치소 수용 시 삼청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참고인은 거부하여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2심에서 징역1년 확정 후 공주교도소로 이감되어 그곳에서 4주간 독방에 있었으며 하루 8시

158 「1980년 성북경찰서 정보과 근무자 명단 제출(성북경찰서 경무과-9793)」(2022.11.3).

159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이○○ 진술조서」(2022.12.20).

간씩 포복, 목봉체조, 창살 매달리기, 모래 가마니 들고 선착순 뛰기 등 삼청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참고인의 구금사실은 당시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등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대중으로부터 지원자금을 받아 시위를 주도했다는 허위사실에 대한 자백 강요와 관련하여 같은 시기에 동일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다른 참고인들 또한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사관과 경계조 33헌병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 방식도 수도치기, 얼차려 방식 등 대부분의 피해진술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구타와 가혹행위의 실제 여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전면 부인하여 확인되지 않았는데, 당시 합수5국 수사관들은 참고인의 주장처럼 조사대상자를 직접 연행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인계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계조로 주로 구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33헌병 병사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관 대부분이 보지 못했거나 없었다는 등 부정하였다.

## 나) 유인물 배포사건

### (1) 사건 요지

유인물 배포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및 이후 서울 각 지역에서 학교별, 복학생 모임, 교회 모임, 연합씨클 등 다양한 집단에서 시도되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학교별 제작·배포였는데, 학생들은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일부는 개인 단독으로 유인물, 대자보 등을 제작·배포하다 연행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연행되어 조사받은 기관은 각 경찰서, 보안사 서울부대, 중앙정보부 남산, 서울시경 대공분실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약 1년에서 2년간의 기간을 복역하거나 기소유예, 공소기각 등의 처분

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 사건 관련 사례

### (가) 참고인 한○○(2022년 7월 27일 진술 조사)

참고인은 1980년 당시 군 전역 후 복학한 국민대 학생이었으며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였다. 그해 5월 중순경 광주의 실상을 전해 듣고, 인천 본가 인근 교회에서 유인물 1,500매를 2회에 걸쳐 제작, 학교 본관 옥상과 학생식당에서 살포하였는데, 이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성북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수사관들은 성북경찰서 지하 보일러실에서 수사관들이 김대중으로부터 활동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양손과 발을 묶은 채, 천정 배관에 거꾸로 줄로 매달아 일명 비행기 타기 고문을 하였다고 한다. 참고인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자, 수사관들은 참고인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후 물을 붓는 물고문을 하였고, 한번은 수사관들이 시켜 먹고 남은 짬뽕 국물을 부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일가량 지하 보일러실에서 취조를 하였고, 이후 정보과 조사실에서 보름가량 유인물 제작 및 배포과정을 취조하였다. 이때도 책상 두 개에 붓을 걸쳐놓고 매다는 일명 통닭구이 상태에서 머리 밑에 대야를 놓고 물고문을 하거나 발바닥을 때리는 구타, 가혹행위, 고문 등을 하였다고 한다. 참고인은 이후 서대문구치소를 거쳐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최종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1년 5월 21일 석방되었다.

참고인의 연행 및 구금 사실은 당시 재판기록 등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었다.<sup>160</sup> 그러나 참고인이 가해자로 특정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사망하였고 그중 2명의 신병을 확인하여 그중 1명을 조사한 결과, 본인은 구타, 가혹행위, 고문 등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수

160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판결문 239호(1980.7.5.).

사과에서 전입 온 김○○, 김○○, 이○○ 등이 심하게 학생들을 다뤘다고 진술하였다.<sup>161</sup> 이 중 조사대상자 김○○은 조사를 거부하여,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5·18조사위는 「5·18진상규명법」에 의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다. 김○○은 이 또한 불응하여, 다시 5·18조사위가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과태료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sup>162</sup>

위와 같이 가해자로 특정된 당시 수사관이 조사를 거부하여 참고인의 주장대로 성북경찰서 지하 보일러실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물고문 등을 자행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성북경찰서로 연행된 학생 중 참고인 진술조사를 한 6명이 지하실에 끌려가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가장 가혹하게 조사한 사람이 김○○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확인하였다.<sup>163</sup>

(나) 참고인 김○○(2022년 8월 3일 진술 조사)

참고인은 1980년 당시 동덕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학내 시위와 각 대학 연합시위를 주도하였다가 5·17비상계엄확대 조치로 수배되어 외가인 나주로 도피하던 중, 5월 19일 광주의 실상을 목격하고 두려움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던 중 중앙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다.

중앙경찰서에서는 수사관들이 참고인에게 김대중이 자금을 대주어 시위를 부추겼고 그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손이나 서류철 등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수시로 구타하였으며, 참고인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약 35일간 불법구금되어 조사받은 후

161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이○○ 진술조서」(2022.12.20.).

162 5·18조사위는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2023.10.11.부로 위 김○○의 재산 일부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였다.

163 5·18조사위,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2.8.22.), 「참고인 도○○ 진술조서」(2022.8.12.),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8.26.),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10.5.), 「참고인 지○○ 진술조서」(2022.9.29.).

훈방되었고 3개월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참고인은 종암경찰서 유치장에서 알게 된 수유리 소재 한빛교회 청년부 학생들을 통해 광주 실상에 관한 많은 정보를 듣게 되었고, 후배 4명과 광주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강연회가 열린 학교 대강당에서 배포했다가 다시 연행되었다. 한 달가량 종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서류철과 손바닥,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어깨를 구타하며 ‘빨갱이년’이라는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 서울구치소 이송 후 혼거 방에 수용되어 다른 수용자들에게 참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보고토록 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고 생리불순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진료를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이감되어 독방에 수용되어 1981년 11월 3일 만기 출소 시까지 한 달에 한 번 가족 면회만 가능한 상태로 격리 수용되었다. 그해 8월경부터 기침이 심하여 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석방 후 각혈을 하여 검진 결과 결핵 판정을 받고 1년 6개월간 약물치료를 하였다고 한다.

참고인의 구금 사실은 재판기록과 수형기록 등으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었으며,<sup>164</sup> 함께 유인물 제작 및 배포에 참여했던 2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진술조사 결과 조사과정에서 동일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sup>165</sup>

당시 종암경찰서 근무자 연명부는 확보하였으나, 각 과별 분류가 아닌 계급별로 작성한 경찰서 근무자 연명부로 당시 정보과에 근무하며 학생들을 수사한 수사관은 특정할 수 없었다. 서울구치소와 춘천교도소 역시 가해자 특징이 제한되어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164 수도권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군형 제499호 판결문, 확인서(1980.12.24.), 서울고등법원 판결문(1981.4.30. 선고), 출소 증명원(안양교도소, 1998.1.11.).

165 5·18조사위, 「참고인 장○○ 진술조서」(2022.8.1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8.10.).

(다) 참고인 강○○(2022년 7월 19일 진술 조사)

참고인은 1980년 연세대 복학생으로 복학생협의회에서 활동하였다. 5월 17일 계엄군의 체포, 연행을 피해 있던 중 광주 소식을 듣고 서대문 부근 서점에서 김현장으로부터 ‘전두환의 광주살육작전’유인물을 받아 읽고 광주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알리는 시위를 계획하고 유인물 2,000여 매를 제작했다. 5월 24일 종로 단성사 앞에서 배포를 시도하였으나 계엄군의 삼엄한 경계로 실행하지 못하고 인근 골목에 살포 후 귀가하였다. 5월 26일 학교 인근 식당에서 주인의 신고로 체포되어 서대문경찰서를 거쳐 합수5국으로 연행되었다.

연행 후 일주일간 조사 없이 수사관 2명과 감시조 33헌병 2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고,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북한과의 연계성, 광주 사태와 김대중의 연계성 등을 추궁당하였다고 한다. 조사 간 구타는 기본이었고 책상 두 개 사이에 봉을 끼워 거꾸로 매다는 일명 통닭구이, 물고문 등을 당하였다. 33헌병 두 명이 교대로 감시하며 조사를 받지 않을 때는 벽을 보고 물구나무서기를 하게 한 상태에서 군화발로 허리를 걷어찼고, 구타를 하다가 군화발을 입에 집어넣어 턱이 탈구되는 바람에 33헌병들이 억지로 끼워 맞추었다고 한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습관적 탈구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의 연행 및 구금 사실은 재판기록 등으로 확인되며<sup>166</sup>, 합수5국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과 경계조 33헌병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고문 등의 방식은 동일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동일하다.<sup>167</sup> 참고인이 주장하는 상습적 탈구후유증

166 군형 제316349호, 「수경사 보통군법회의 판결문」(1980.9.26.).

167 5·18조사위, 「신청인 윤○○ 진술조서」(2022.6.29.), 「참고인 윤○○ 진술조서」(2022.8.20.), 「신청인 신○○ 진술조서」(2022.5.13.), 「신청인 형○○ 진술조서」(2022.5.2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7.2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7.2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2.7.25.),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2.4.6.), 「참고인 신○○ 진술조서」(2022.7.7.)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2.8.22.).



에 관해서도 5·18 민주화운동관련 3차 보상심의에서 장애10급 판정<sup>168</sup>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 주장하는 구타와 일명 통닭구이 등의 가혹행위 및 물고문이 실제 자행되었는지의 여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이를 전면 부인하여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경계조로 주로 구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33헌병 병사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관 대부분이 보지 못했거나 없었다는 등 사실을 부정하였다.

## 다) 학생시위 사건

### (1) 사건 요지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시행되자 각 학생회는 사전 계획에 따라 5월 18일 영등포 시위, 5월 19일 서울역 시위 등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조기에 진압되었다. 군 기록에 따르면, 5월 18일 영등포역 시위는 '5.18. 18:40경 학생 80명이 계엄 해제하라는 농성을 하다가 18시 45분에 경찰이 출동하자 시장 방향으로 도주'<sup>169</sup>, 5월 19일 서울역 시위는 '서울대생 300여 명이 서울역 버스정류소에 삼삼오오 집결, 시위로 변화하는 것을 즉시 경찰 대처하여 해산함. 40여 명 검거 연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sup>170</sup>

이후 학생시위는 휴교령으로 인해 그해 9월이 되어서야 광주 실상을 알리는 시위 등이 학내에서 발생하였다.

168 5·18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서(1998.4.17. 치과 장애 10급)」.

169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 「10.26. 상황일지(3-2)」(1980), 102쪽.

170 제700보안부대, 「광주시태 동향」(1980), 293쪽, 보안사『383-1980-97』.

## (2) 사건 관련 사례

(가) 참고인 최○○(2022년 4월 6일 진술 조사)

1980년 당시 이화여대 복학생으로 각 대학의 복학생들이 결성한 복학생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였다. 주요 구성원은 이해찬, 문국주, 이호열, 김준묵, 조성우, 설훈 등 20여 명이었다. 5월 17일 예비검속을 피해 도피하며 주 1회 회합을 갖고 광주 실상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계획하였다. 그해 6월 13일 종로2가 화신백화점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전 직장으로 도피하였다. 그곳에서 연행되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 구금 후 합수5국으로 이송되어 약 25일간 불법구금되어 수사관들과 33헌병들로부터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뺨과 머리를 구타당하였고, 앉았다 일어나는 군대식 열차려를 탈진할 때까지 받았다. 또한 옆에서 이해찬과 김병곤이 무지막지한 구타를 당하는 모습에 공개를 못 들고 눈을 못 마주칠 만큼 공포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합수5국의 조사내용은 김대중으로부터 50만 원의 활동자금을 받았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끝까지 부인하자 시위 주동과 화염병 제작 등으로 기소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구치소 독방에 약 4개월가량 수용되었고 수용 시 군인들에 의해 목봉체조와 PT체조 등 삼청교육을 하루 4시간씩 한 달간 받았는데, 이후 자체 양성된 교도관들에 의해 다시 한 달간 삼청교육이 지속되었다고 한다. 2심 확정 후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어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쳐 징벌방에 수용되기도 하였고 1981년 8월 15일 석방되었다.

참고인의 구금 사실 등은 당시 진술조서, 재판기록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sup>171</sup>. 또한 동일 장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받았던 다른 피해자들도 참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김대중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허위진술을 강요

171 군형 제318호,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판결문 확인서」(1980.9.26.), 군형항 제602호, 「육군고등법원 판결문」(1981.2.10.), 「대법원 판결문」(1981.6.23.).

받았다는 등의 진술도 서로 일치하였다.<sup>172</sup>

참고인이 최초 연행되어 조사받았던 합수5국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고문 위협 등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 (나) 참고인 이○○(2022년 8월 23일 진술 조사)

참고인은 1980년 한국신학대학에 재학 중 시국 토론 관련 학내싸움에서 활동하였는데, 5·17비상계엄 확대로 휴교령이 내려져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며 광주의 실상에 대해 소문으로만 들어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해 9월 개강 후 참고인은 한신대생 유동운이 전남도청에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상시가 작성한 ‘피의 선언’이라는 원고를 전달받아 유인물 150부를 작성하였고, 학교 채플(예배)시간에 유인물을 배포하며 희생당한 광주시민들과 유동운을 비롯한 학생들을 위해 추모기도를 하자고 하였다. 유인물 낭독 후 운동장으로 나가 침묵행진을 하다가 ‘살인마 전두환’, ‘광주 진상을 밝혀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교내에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북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북부경찰서 정보과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하며 손과 발로 온몸을 구타하였다고 한다. 약 2주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 서울고법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어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되어 1982년 8월 15일에 석방되었다.

참고인의 구금 사실은 당시 진술조서, 재판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sup>173</sup> 동일 장소에

172 5·18조사위, 「신청인 형○○ 진술조서」(2022.5.23.), 「신청인 윤○○ 진술조서」(2022.6.29.), 「참고인 윤○○ 진술조서」(2022.8.20.), 「신청인 신○○ 진술조서」(2022.5.1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7.2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7.2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2.7.25.), 「참고인 신○○ 진술조서」(2022.7.7.),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2.8.22.).

173 80군형제469호, 「수도경비사령부보통군법회의 판결문」(1980.12.20.).

서 조사를 받았던 다른 2명의 피해자들 진술에서도<sup>174</sup>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유인물 작성과 시위 주도를 사주한 사람을 진술하라며 구타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시 북부경찰서 근무자 명단은 확보하였으나 과별로 분류하지 않고 계급별로 분류한 연명부만 남아 있어, 참고인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행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참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 3) 서울·경인 지역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규명한 주요 사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신청인과 참고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의 진술에서 인권침해 방식이나 피해 장소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일치되는 진술과 기록 등으로 봤을 때,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침해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받은 수사관들 대부분은 가해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70대 중반부터 80대 중반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태(치매)를 내세워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 심지어 본인이 수사하고 작성하여 날인한 당시 수사기록(진술조서)을 제시하여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이를 부인하였다.<sup>175</sup> 다만 일부 조사대상자들은 일명 통닭구이 등 고문하며 조사할 때 옆에서 붓을 잡아주는 등의 보조를 했다거나<sup>176</sup>, 또한 피해자 설훈이 성북경찰서에서 1차 조사 후 합동수사단 5국으로 인계될 시 구타, 가혹행위, 고문 등으로 인해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인수거부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sup>177</sup> 등을 하여,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174 5·18조사위, 「참고인 유○○ 진술조서」(2022.8.23.),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2.9.1.).

175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심○○ 진술조서」(2023.4.8.).

176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이○○ 진술조서」(2023.1.10.).

177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심○○ 진술조서」(2023.4.3.); 며칠 후 설훈은 다시 합수5국에서 신병을 인수하여, 조사를 했다고 한다..

인정하는 진술을 통해 가해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합수5국에 경계조로 파견 근무한 33헌병대 병사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수사관 3명은 33헌병대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지만, 또 다른 수사관 3명은 33헌병대가 4명씩 경계조로 나와 있었고, 이들이 피해자들을 구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sup>178</sup> 또한 33헌병대 지대장이었던 최익현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33헌병들의 연행자에 대한 구타가 있었다는 전언을 들은 바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33헌병대 장급 이상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다.<sup>179</sup> 위의 진술 등에 대해 육군본부 등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33헌병대는 1979년 11월 2일부터 1980년 8월 27일까지 합동수사본부 경계조로 파견되어 근무했다는 것이 밝혀져, 33헌병대가 애초에 없었다는 일부 수사관의 진술은 허위였음을 확인하였다.<sup>180</sup>

그리고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합수5국 수사관들은 진술조사 때 피해자들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지하실은 없었고, 조사실 수가 적었으며, 또한 조사실이 좁거나 개방적이어서 구조상 가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수사단 편성 및 운영계획」 수사단 현황<sup>181</sup>에 따르면, 합수5국의 수용시설(실)은 32개소로 기재되어 있어 건물에 지하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다른 수사국에 비해 2~3배 많은 수용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사실 수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조사받은 피해자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연행장소가 합수5국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5·18조사위는 경찰청 등을 통해 당시 건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 등을 확보하려 노력하였으나, 실제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

178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이○○ 진술조서」(2023.1.10.), 「조사대상자 장○○ 진술조서」(2023.4.12.).

179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최○○ 진술서」(2022.12.26.).

180 육군본부,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19-79호」, 『헌병약사(162-1980)』, 407~409쪽, 대통령경호실 작전 912-732(1980.8.27.).

181 5·18조사위 수집 군 관련 핵심자료 3권 37. 수사단 편성과 운영계획 471~484쪽.

한편 청량리경찰서 소속 최○○은 경희대와 한국외대에서 연행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해자로 지목<sup>182</sup>하였고, 조사관이 대인조사 당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제시하였음에도 그는 인권침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성북경찰서 소속 김○○ 또한 당시 성북경찰서에 연행된 대부분 피해자가 그를 지목하며 구타와 가혹행위, 고문이 심했다고 하였으며, 당시 정보과 동료였던 이○○는 “김○○ 등이 연행학생들을 과격하게 다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sup>183</sup>

위와 같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김○○을 조사하기 위해, 5·18조사위는 조사 일자와 장소 등을 그와 협의하였고, 김○○이 희망하는 조사장소인 양구경찰서 조사실<sup>184</sup>에서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김○○이 신분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 진행을 방해하여 결국 조사가 무산되었다. 이후 2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마저 불응하자, 5·18조사위는 「5·18진상규명법」 제28조(동행명령장 발부)에 의거 전원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2023년 2월 20일)하였다. 하지만 김○○은 이마저도 불응하여 결국 동법 제70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 10월 11일 그의 재산 일부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였다.

이외에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초 연행일부터 구속 연장 청구일까지 대부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특히 장기간 구금되었더라도 기소유예나 훈방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당시의 진술조서 등을 통해 최초 연행 시점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sup>185</sup>. 또한 일부는 구속기소 되었어도 구금 기록이 체포 당시가 아닌 구속영장 발부 시점부터 기재되어

182 5·18조사위, 「신청인 장○○ 진술조서」(2022.5.12.), 「참고인 정○○ 진술조서」(2022.6.2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8.3.), 「참고인 임○○ 진술조서」(2022.8.4.), 「참고인 윤○○ 진술조서」(2022.8.20.).

183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이○○ 진술조서」(2022.12.20.).

184 5·18조사위, 조사3과-1598(2022.12.19.), 「직가의3-17 조사대상자 김○○ 외 2명 면담조사 계획보고」.

185 최○○, 김○○, 조성우, 이해찬, 설훈.

있었고, 경찰서나 합수5국 등에 최초 연행된 일자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서,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이 재판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려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마. 대전·충청 지역 인권침해 사건

### 1) 조사대상 사건별 개요

① 충남대 예비검속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적되었던 복학생과 1979년 11월 29일 충남대 YWCA 위장결혼식 사건, 시국선언문 낭독 및 배포사건, 흥사단아카데미와 청람회 등 동아리 회원 주도 학생들에 의한 병영집체교육 거부, 학칙개정 등을 통한 호국단 폐지, 총학생회 출범, 1980년 5월 1일 전국 최초 교외 시국 시위를 시작으로 5월 16일까지 유인물 배포 및 교내·외 시국 시위를 주도하였다. ② 공주사대 예비검속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적되었던 복학생, 누동학원 및 이인 상록학원 등 사설학원 참여자, 금강회·상록회·한삼회 회원 등 동아리 주도 학생들에 의해 병영집체교육 거부, 학칙개정 등을 통한 호국단 폐지, 총학생회 출범, 1980년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벽서, 유인물 배포 및 교내·외 시국 시위를 주도하였다. ③ 목원대 예비검속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적되었던 복학생과 1979년 11월 30일 목원대 YMCA 위장결혼식 사건, 시국 선언문 낭독 및 배포사건, 전통민중예술연구회 등 동아리 회원 주도 학생들에 의해 학칙개정을 통한 총학생회 출범, 학내문제로 시위를 하다가 1980년 5월 8일부터 5월 16일까지 유인물 배포 및 교내·외 시국 시위를 주도하였다. ④ 단국대 천안캠퍼스 예비검속 사건은 학도호국단 출신의 총학생회장 선출로 인해 경영학과 및 동아리 등의 중심으로 1980년 5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유인물 배포, 교내·외 시국 시위와 서울캠퍼스로 상경하여 시국 시위를 주도하였다. ⑤ 충북대 예비검속 사건은 청주제일교회 출신의 청주기독교청년회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에 의해 미래문제연구회와 국제문화연구회, 한사상연구회, 민속



연구회, 기독교사상연구회 등 30개 동아리연합회의 병영집체교육 거부, 학칙개정을 통한 호국단 폐지, 총학생회 출범, 1980년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유인물 배포 및 교내·외 시국시위를 주도하였다. ⑥ 청주대 예비검속 사건은 청주제일교회 출신의 청주기독교청년회 등에서 활동하던 학생들과 동아리연합회에 의해 학칙개정 등을 통해 총학생회가 출범하였으나 비운동권 학생이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및 씨클연합회에서 1980년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유인물 ‘함성’ 등을 배포 및 교내·외 시국시위를 주도하였다. ⑦ 청주사대 예비검속 사건은 1979년 남녀공학으로 변경 및 학도호국단체제로 학내(재단) 비리 문제로 시위를 이어가다가 청주제일교회 출신의 청주기독교청년회와 2학년 남학생의 씨클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유인물 배포 및 교내·외 시국시위를 주도하였다. 대전·충청 지역 대학은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예비검속이 내려졌고, 상당수 학생이 연행·구금·조사과정 등에서 폭행, 가혹행위 및 고문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사건은 1979년 11월 24일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 참석하고, 11월 26일 청주도시산업선교회에서 충북 기장노회(기독교장로회) 서부시찰회(월례회)에서 YWCA 위장결혼식 내용과 가지고 온 유인물을 배포하고, 5월 17일 말경 청주대 김용명(학자추 부위원장)의 부탁으로 시국 유인물 ‘함성’ 제작 및 7월 13일 정병석이 보내온 광주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김준태 시인의 ‘광주여 무등산이여’등)을 제작하여 청주 시내에 배포하였고, 이후 연행·구금·조사과정 등에서 폭행, 가혹행위 및 고문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

## 2) 대전·충청지역 조사 결과

### 가) 일부 인원의 체포(자수)·훈방(출소) 일자 및 명단 특정

전국 예비검속자 명단은 확인되지 않으며, 충청지역의 예비검속자 명단도 확보하지 못

하였다. 하지만 육군본부 상황일지 상에는 1980년 5월 17일부터 5월 18일까지 체포·연행되어 구금된 인원이 39명<sup>186</sup>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체포되지 않아 수배로 검거되거나 자수한 피해자가 계엄사 등의 수배자 명단, 계엄사 상황실의 야간정보상황보고 등에 30명<sup>187</sup>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980년 7월 4일 육군 헌병 수사실의 학생시위 처리현황<sup>188</sup>에는 충남 117명, 충북 35명 등 충남지역 152명이 검거되었으나 그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 판결문 및 수사기록, 육군 검찰단 형사사건부, 교도소 수형자 신분장, 상황일지, 야간정보상황보고 등에서 예비검속 및 수사받은 대상자를 확인하여 207명의 명단을 특정하였다.

#### 나) 체포 및 연행·구금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1980년 5월 17일 밤부터 5월 18일까지 자택, 자취 및 하숙방, 학교 강의실 등에서 잠을 자거나 일상생활을 하던 중 경찰 등에 의해 불시의 신분확인<sup>189</sup> 및 미란다 고지 없이 폭행 등을 당하며 체포·연행되어 구금되었다. 이때 체포당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나중에 불심검문 등에 의해 체포되었거나, 부모, 친구, 교수 등이 불법가택 및 사업장 수색, 사찰, 조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부모나 지인이 설득에 나서거나, 언론기관 수배명단 발표 등으로 '자수할 경우 선처하겠다'라는 약속 등을 믿고 자수하여 대전·충청지역 각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연행(자수) 후 구금과정에서도 구금 이

186 「10.26 2군 상황일지」(6-2) 1980.5.17.~5.19.일자 3관구에서 육군본부로 보고한 내용으로 5·18조사위 진실규명 과제의 피해자가 39명이다.

187 치안본부가 합동수사본부(또는 보안사)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일정보보고로 누락된 날짜도 있으나 1960.6.13.부터 1980.12.15.까지의 보고가 M/F로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었다.

188 1980.7.4. 육군 헌병 수사실의 「학생시위 처리현황」에는 충남 117명, 충북 35명 등 충남지역 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나 그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우리 5·18조사위 조사기록에서 확인된 명단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89 충남대 이○○의 동생 이△△은 '형으로 오인하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저를 체포 및 연행하면서 손에 수갑을 채우고 폭행 등을 당하면서 도마동파출소로 연행된 이후 신원 확인 이후 풀려났다고 진술하였다.

유 등 미란다 고지 없이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항의하던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남녀 혼방 및 잡범과 같은 곳에 구금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무실, 창고, 강당, 내무실 등에도 구금되었다.

다) 조사과정에서의 구타, 고문, 협박, 강요에 의한 혐의 조작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연행되어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 또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무실 등에 구금되어 폭행 등을 당하며 신원확인 등의 기본조사를 받거나, 기본조사 없이 또는 기본조사를 받고 이송된 충남경찰국 대공분실, 충남·북합수단(보안대) 지하 조사실 및 사무실 등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고문(물고문, 관절뽑기, 통닭구이 등), 열차려, 협박과 회유, 허위진술 강요 등과 관련자 대질, 압수품 및 채증사진 제시가 수반된 시국 시위, 유인물 제작 및 배포, 김대중과 야당 정치인 및 재야 시민운동가 등의 연관성을 묻는 등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충남·북합수단(보안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은 기소, 불기소, 혼방 등으로 처리되었다.

라) 대전·충청 지역 제32사단 시위학생 순화교육 관련 인권침해

1980년 5월경 충남지역 예비검속 및 시국시위 관련자를 체포하여 대전시 중구 소재 충남합수단 조사 이후, 혼방자 77명에 대하여 충남합수단 보안시위(1980년 5월 18일) 관련 학생 정신순화 교육계획에 의거 1980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충남 연기군 서면 소재 제32사단 포병단 601포병대대 막사에 구금하여 순화교육을 실시한 뒤 재교육 심사를 통해 전원 혼방하였다. 이는 1980년 8월 4일 삼청계획에 의해 실시된 공식적인 삼청교육과 다르나 교육실시 방식 등은 동일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대전보안대에서 보고한 제32사단 포병단 순화교육 결과<sup>190</sup>에서 확인되었다.

190 보안사령부, 「광주사태시 32사단 상황」(1980),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A0170181.

마) 보안사 등의 지시에 의한 학사징계, 선택적 재입학, 학생 특별관리 등의 인권침해  
 보안사의 하반기 학원대책,<sup>191</sup> 대학 전면 개강에 따른 학원대책<sup>192</sup> 등의 지시에 따라  
 1980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충청지역 각 대학교에서는 학생활동 제한 및 징계 강화  
 방안으로 학칙개정,<sup>193</sup> 학생 특별지도, 정화위원회 신설 등 학생 지도를 강화하고, 시국  
 시위 관련 학생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를 한 뒤, 그 내용을 문교부에 보고하였  
 다. 또한 1984년에는 징계 제적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복학이 아닌 재입학을  
 선택적으로 승인하였는데, 재입학자<sup>194</sup>에게 본인과 부모의 연대각서 징구, 재입학금 추가  
 납입 등의 조치 후 재입학이 이루어졌다. 피해자 중 일부가 재입학 불승인 등의 이유로  
 교육 기회를 상실하여 2023.12월 현재까지 졸업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sup>195</sup>되는 등 교육받  
 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 등의 침해를 받았다.

191 보안사령부, 「'80 하반기 학원 대책 - 개강 시기 판단에 따른 대책」(1980.7.10.). 여기에는 문교부가 취할 대책으  
 로 “문제 교수 및 학생에 대한 과감한 정화로 개강 전 불안 요인 완전 제거”를 위해 △ 위해도가 높은 문제 교  
 수에 대해서는 조기 숙청 △ 소신이 없는 보직교수에 대해서는 능력 본위로 부서 교체 △ 10.26 이후 문제 활동  
 을 해 온 위험성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A, B, C급으로 분류, 제적, 무기정학 등 조치를 적시하고 있다.

192 「대학전면 개강에 따른 학원 대책」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 학원 정보망 부식(扶植) 현황 △ 대학별 출입 요  
 원 현황 △ 대학 통신문 구축현황 △ 대학 총학장 경질 상황 △ 대학별 신문 발달 교수현황 △ 대학별 처벌(학사  
 및 형사) △ 미검 수배자 현황 △ 불온 유인물 발생 및 검거상황 등이 들어 있다.

193 충남대학교 「1980년 학무회의록」 전국총학장회의 상황시달(7. 3.회의록), 권고 휴학 신설, 교내의 20인 이상의  
 집회 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 학생활동 제한, 총장의 직접 징계권 부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및 편입학 금지 신  
 설 등 학칙개정(7. 28.), 학교정화위원회 구성 및 임무, 학생지도 강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 등의 내용이 확인된  
 다.

194 충북대학교 징계관련 서류(3)에는 ‘ 3. 해당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유기정학, 근신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  
 도교수의 특별지도를 이행하여야 하며 학부모 학생 연서로 각서를 징구하여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95 2023. 10. 30. 현재까지 각 대학교에서 회신된 기록에 의한 징계자 및 미졸업자는 충남대 15/3명, 목원대 7/1명,  
 공주사대 19/0명, 천안단국대 1/1명, 충북대 9/1명, 청주대 8/0명, 청주사대 10/2명, 부산대 1/1명 등 징계자 70  
 명/ 미졸업자 11명으로 확인되나 원 징계기록이 없는 대학교의 경우 누락되어 회신되는 등 각 대학교 징계현황  
 회신기록보다 징계 관련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 불법적인 재소자 순화교육 등 인권침해

충청지역 기소자(피해자)들은 3관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 항소,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기간 중 수감환경 개선 요구, 공안사범, 특히 수용자, 요시찰, 경호 요시찰자로 지정하여 관리되는 등 차별적인 대우 개선 요구,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위한 평화적 단식 등의 이유로 형벌 도구인 계구 착용, 독방, 폭행 등 불법적인 징벌을 받았다.

또한 육군계엄군법회의(2심)를 준비하는 미결수 신분 상태임에도 기소자(피해자)의 동의는 물론 법적 근거도 없는 법무부 재소자 특별 순화교육<sup>196</sup> 지침에 의거 1980년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주간(1일 3시간씩) 목봉체조, 유격체조 등 삼청교육과 같은 방식의 재소자 순화교육을 받았고, 그중 충남대 김○○ 등 3명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후 기결수 신분 상태에서 추가로 1981년 재소자 순화교육(4주간, 1일 6시간 30분씩)을 받았다.

196 법무부(1988), 『법무부사』에는 '1980년 9월 20일 재소자에게 심신 단련과 정신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반사회적인 악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부도덕적, 반질서적, 퇴폐적 의식구조를 개혁, 순환하기 위하여 전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성적 우수자에게는 가석방, 귀휴 등을 실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공주교도소(2020년) 『1500년의 시간과 공간 공주교도사』에는 1980년 8월 2일부터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이 시작됨에 따라 '법무부 『재소자 특별순화교육 지침시달』(보안240-16946, 1980.8.30.)에 따라 1차적으로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같은 해 9월 14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에서 선발된 교도관들이 전방 군부대 유격장에서 교육을 마치고 각 교도소로 돌아와 재소자 순화교육 교관으로 활동하였다. 1980년 9월 22일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일제히 수용자 특별순화교육 1기 발대식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5-1-1〉 공주교도소 재소자 순화교육 장면

출처: 공주교도소(2020), 『1500년의 시간과 공간 공주교도사』

또한 안기부, 교도소 등이 공조하여 피해자의 사상을 개조하는 정신교화 공작활동을 하였다. 교도소 출소 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고 당시 정권의 정책 기조에 적극 동조한다는 연대각서 제출을 받았으며, 출소 당시 주소지 관할 경찰관이 출소하는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이 확인<sup>197</sup>되는 등 기본권 및 사상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

#### 사) 군 강제징집 및 녹화교육 등 인권침해

전두환의 지시로 만들어진 국방부의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입영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충청지역 예비검속 관련자(12명)<sup>198</sup>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석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혼방되어 각 대학교에서 제적, 강요에 의한 지도 휴학 등의 징계를 통해 군으로 강제징집

<sup>197</sup> 대전·충청지역 재판 회부(기소)된 피해자(32명)의 「수형자 신분장」의 동태사항에는 교도소 구금기간의 단식투쟁 등에 의한 징벌, 재소자 순화교육 선정 및 수료, 공안사범, 경호요시찰자, 요시찰 등 지정, 출소 전 연대각서 및 관할경찰관 신병인수증, 면회 및 서신기록 등의 관련 기록이 있다.

<sup>198</sup> 대전·충청지역 과제의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대상자는 충남대 1명, 공주사대 5명, 충북대 5명, 청주대 1명이며, 대상 과제 외의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대상자는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군 입대)되었다. 강제징집 이후 보안사의 녹화사업에 의하여 학생운동 활동 사항과 조직 체계 등을 조사받았다. 그리고 대상자의 생각과 이념을 바꾸도록 하는 사상전향 녹화(정신순화)교육을 실시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였으며, 선도업무라는 관리 명목으로 군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sup>199</sup> 등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훼손하고 신체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 아) 피해자 사찰 등 인권침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운영 중이던 호구조사와 보호관찰, 요시찰 및 보호관찰법 등이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에게도 적용되었다. 수사기관의 정보활동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정보활동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피해 당사자 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균형을 벗어나면 불법적 사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치안본부 지시로 피해자를 격리 보호한 사실과 법적 범주를 벗어난 정보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관할 보안대에서는 전역한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등 사찰한 사실도 확인하였다.<sup>200</sup> 그리고 신원조회<sup>201</sup>를 통해 취업 및 임용에 제약을 주는

199 충청지역의 보안사 녹화사업대상자 관련 기록은 기본내사 사항, 특수학번자 심사카드, 특수학번자 심사결과보고, 순화(녹화)결과보고, 진술서, 서약서(보안), 선서문(각서), 관리실태 보고(군 생활 중), (군 복무 및 전역 후) 활용계획서, 활용결과 보고, 접촉 결과보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대상자의 인적 사항, 학력과 경력, 가족사항, 재산 관계, 전과 관계, 좌경의식 경위 및 활동 내역(1980년 시위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내용은 보안사령부로 보고 및 관할 보안대 업무협조 등을 통해 시국 시위 관련 학생들에 대한 사찰 등 관리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 충청지역의 보안사 녹화사업대상자들의 기록에는 대상자 전역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보안사령부와 주소지 관할 보안대로 관련 문서 및 대상자 관리를 이관하여 주소지 관할 보안대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를 받아 전역한 대상자에 대한 보안대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고 주기적인 대상(피해)자 및 대상(피해)자의 주변인(시국시위 관련자, 사업주 및 직장동료 등)의 면담 등을 통해 동향 등을 파악하여 사찰관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201 ○○시 및 □□도교육청의 정◇◇ 등 인사기록 회신 결과에는 졸업년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가 아닌 위 임용 일자로부터 짧게는 10일부터 길게는 3년 동안 교사로 임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시교육청 인사기록 회신 결과 내용 중, 정◇◇의 1986.2.7. 충청●도 경찰국장 명의의 「신원조사회보서」 상별 관계란에는 '본명은



등 직업선택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오○○(◇◇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은 1984년 5월경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5·16군사정권 퇴진 집회 개최에 따른 치안본부 시위 주도자 격리 보호에 따라 ◇◇경찰서 정보과장 김○○의 지시로 총○대 김◎◎를 충북 청원군 남이면 소재 안○사라는 절에서 방 1개를 빌려 1주일간 1:1로 격리 보호한 사실과 보호관찰자 및 관계자에 대해 주기적인 관찰 및 면담 등 법적 범주를 벗어난 정보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sup>202</sup>

### 자)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피해자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신체적·정신적 인권침해를 당했다. 피해자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부당한 공권력의 침해를 인내하며 생활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

## 바. 강원 지역 인권침해 사건

### 1) 개요

강원지역 대학가는 1980년 3월 개강과 함께 기존 학도호국단 체제라는 제약된 학생자치권을 회복시키고자 총학생회, 각 단과대 학생회 부활을 추진하였다. 그 노력의 결실로 4월 무렵 각 대학은 직선제 학생회를 출범시키고 이내 신군부 퇴진, 군사정권 거부, 노동권 보장, 학원민주화 등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5월 초 전국 대학의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신군부는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각 대학에 계엄군을 배치하고 지역 합동수사

1981.1.13. 반정부시위 주동자로 육군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로 △△대학에서 제적처분되었던 자임'이라고 기재 사항이 확인되는 바, 위 전력과 정관영의 임용은 분명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 5·18조사위, 「오○○ 진술조서」(2023.10.20.).

단을 설치하여<sup>203</sup> 소위 ‘학원소요’ 주도 학생들과 그 이외에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으로 대표되는 재야인사, 광주에 실상을 알리려 한 학생 등을 연행 후 구금시킨 후 조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 2) 춘천지역

### 가) 개요

1980년 4월 서울신문 오보 사건을 기점으로 강원대 학생들은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한다. 그간 강원대 일부 학생들은 1979년 9월 개강과 동시에 박정희 정권의 유신통치에 대항하다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수용되거나 11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 가담 등 민주화운동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다 강원대 학생들은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하자 1980년 봄, 개강을 앞두고 ‘학원민주화추진준비위원회’와 이후 ‘총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학생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를 출범시켰다. 학생회와 여러 씨클이 연합한 학내외 집회로 신군부 퇴진, 군부정권 거부,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사회 변혁을 요구하였다.

강원대는 전국총학생회장단 모임에도 참여함과 동시에 학내에서는 5월 초 ‘민주화대행진’기간을 천명하고 집중적인 사회운동을 펼쳤다. 이에 계엄사령부는 전국계엄 확대를 명분으로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단행하고 각 학교에 휴교령과 계엄군을 배치하였으며,

203 1980.5.17. 계엄포고 제10호 전국계엄 선포(작명18-80호).

204 작명 18-80호 의거 계엄군 경계병력 배치: 대학교 11곳 36/811명, 2군단/3군단/동경사/군지사.

205 춘천지구합동수사단, 원주지구합동수사단, 동해안경비사령부합동수사단(강릉지구), 사북합동수사단 등 4개 합동수사단이 설치되었으며 사북합동수사단의 경우 사북항쟁으로 1001보안부대(원주)에서 관장하였다.

206 계엄사 생산 문건에 따르면 ‘문제 학생 검거 및 처리현황 - 목표/검거/처리(훈방, 경찰이첩, 군재회부)’라는 목표 인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일제 연행을 위한 구체적 사전 검거 계획이 있었으며 1980년 5월에도 이른바 ‘예비검속’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5·18조사위는 이와 관련한 당시 지역 보안대 구성원 일부의 진술을 확보하고 보안사 생산 기록물의 관련 기재 내용을 확인하였다.

102보안부대(춘천, 위장명 ‘강원공사’)를 거점으로 춘천지구합동수사단을 설치하였다.<sup>207</sup> 계엄사 기록에 따르면 춘천지구합동수사단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법처리한 건은 ‘목표 43명, 검거 46명, 훈방 29명, 경찰이첩 1명, 군재회부 16명’으로 학생회 지도부, 씨클 지도부를 비롯하여 과거 긴급조치 위반자, 집회 적극 가담자 등을 사전 목표로 하여 5월 18일 자정에 일제 검거하였다.<sup>208</sup> 연행된 이들은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102보안부대 혹은 춘천경찰서로 이송되어 구금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수사단으로 파견된 2군단 헌병대 소속 군인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sup>209</sup> 아래의 <표 5-1-4>은 5·18조사위가 신청인, 참고인의 피해 사실을 종합한 것이다.

<표 5-1-4> 춘천지역 연행, 구금 시기·장소별 분류

연행시기 (1980년)	① 5월 17일 23:00 ~ 5월 18일 새벽 ② 1차 연행 시도 이후 ③ 계엄사 보도처 수배 전후	
연행장소	자택, 학내 등	
구금장소	①춘천경찰서 ②춘천지구합동수사단(102보안부대=춘천보안대)	
	남성	여성
구속장소① (영장 발부 후)	2군단 헌병대 임시구치소	춘천교도소
구속장소② (1심 판결 후)	춘천교도소 / 영등포구치소	영등포구치소
구속장소③ (확정판결 후)	청주교도소	청주교도소
훈방대상자	2군단 화학대 유격장 → 15사단 전방 반공교육 → 춘천지구합동수사단 가족 인계	

207 춘천지구합동수사단(2군단합동수사단)은 계엄사 기록에 따르면 총 13명, 군 4/5명, 관 4명으로 구성되었다.

208 훈방자는 2군단 유격훈련장에서 1주일간의 순화교육을 받았고, 군법재판 회부자들은 미결수임에도 각 수용시설에서 순화교육 시도와 실시가 있었다.

209 5·18조사위는 1980년 당시 합수단의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 사실을 102보안부대 구성원의 진술로 확인하였다.

## 나) 강원대 예비검속 사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동수사단은 검거 목표를 세우고 철저히 계획에 의한 연행에 나섰다. 이러한 1980년의 상황을 이른바 ‘예비검속’이라 정의하였을 때 그 대상을 분류하면, ① 1979년 9월부터 10·26 사건까지 긴급조치 위반 혐의자, ② 1980년 2월부터 추진한 ‘학원민주화추진준비위원회’, ‘총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구성원, ③ 강원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④ 씨클 ‘민중문화연구회’로 나열할 수 있다. 주로 2월부터 5월까지 학생 중심의 사회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였다.

이들은 5월 18일 0시를 전후하여 춘천, 홍천, 속초 등 자택 및 거주지와 학내에서 합동수사단에 의해 연행되었다. 일제 검거되지 않은 이들은 이후 계엄사 보도처에서 각 언론매체를 통해 수배되었으며 결국 모두 연행되었다. 한편 춘천 이외 지역에서의 연행은 1980년 5월의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 춘천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과거 사회운동 관여 혐의가 있거나 씨클 지도부였던 학생들의 경우이다.

## 다) 강원대 광주 진상 유인물 살포 미수사건

강원대 씨클 ‘인문학술회’와 ‘민중문화연구회’ 소속 학생 일부가 계엄군이 광주에서 행한 만행을 접하고 이를 춘천지역에도 알리고자 유인물을 배포하기 위해 계획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 사건 연루자 2명은 기소, 1명은 기소중지, 2명은 훈방되었다.

## 라) 기타 사건(민주헌정동지회 연루사건 등)

‘민주헌정동지회 강원총책’으로 1980년 6월 17일자 계엄사 수배자 명단에 오른 함○○와 관련된 사건이다. 함○○는 강원대 교수인 박○○과 개인적 인연이 있었고 1980년 당시 박○○에게 민주헌정동지회에 입회시킬 강원대 학생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강원대 씨클 ‘민중문화연구회’ 소속 학생 5명의 이름으로 입회원서가 작성된 것을 두

고 합동수사단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연루시켜 함〇〇가 민주헌정동지회를 통해 강원대 학생을 포섭한 것으로 보아 연행, 구금하였다. 함〇〇는 이 과정에서 내란음모사건 혐의로 가혹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였다.

이외 재수생이었던 정〇〇이 여행차 춘천을 방문하였는데 음식점에서 전두환을 비판하였다가 주변인의 신고로 합동수사단으로 연행, 이후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 마)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연행자들은 102보안부대(춘천, 위장명 ‘강원공사’) 지하실과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제 검거로 수용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춘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할 인원을 매일 선발하였다.<sup>210</sup> 보안부대 지하실에서 날을 지새울 때는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고통받아야 했고,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는 가혹행위가 없어 이감을 간절히 바라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로는 합동수사단의 검거과정에서 학내에 진입한 계엄군에 의해 구타를 당한 경우를 진술로 확인하였다. 물리적 가해뿐 아니라 연행 당시 헌법상, 형사소송법상의 기본권이 무시된 것을 공통으로 진술하였으며, 무엇보다 연행자들의 구금 사실이 보호자에게 통보되지 않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에 구금되고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인지를 가족들은 알 수 없었다.<sup>211</sup>

102보안부대(춘천, 위장명 ‘강원공사’) 구금 시에는 지하실에서 대부분의 가혹행위가 발

<sup>210</sup> 5·18조사위는 1980년 당시 춘천경찰서가 생산한 「치안일지」 상에서 ‘문제학생’을 남녀 기준으로 일자별 수용인원을 기록해 둔 사실과 일부 검거자 명단을 확인하였다.

<sup>211</sup> 헌법재판소는 “계엄 하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도 가급적 회피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간 내에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생하였다. 특히 여성 구금자의 경우 월경으로 인한 하혈을 겪어야 했고 생리대를 지급받는 등의 조치가 전혀 없었으며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한 여성 진술인은 첫 임신에 유산을 겪어야 했고 또 한 여성 피해자는 자녀 둘을 낳았으나 모두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훈방대상자들은 6월 말 일주일간 2군단 유격훈련장과 예하 전방부대 철책 경계근무를 하는 등 순화교육 후 귀가할 수 있었다. 구속기소된 이들은 남성은 2군단 헌병대 구치소, 여성은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었고, 1심 이후 남성은 춘천교도소를 거쳐 남녀 모두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 이후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확정판결 이전 즉 미결수임에도 교도관들에 의해 목봉체조 등의 PT훈련을 포함한 순화교육을 강요받았고 남성의 경우 형수정에 포박된 채 삭발을 당하였다고 한다.

### 3) 원주지역

#### 가) 개요

1980년 3월 상지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가는 학원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4월에는 사북지역에서 노동자 항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1001보안부대(원주, 위장명‘천일공사’)를 거점으로 각각 원주지구합동수사단, 사북합동수사단이 설치되고 1001보안부대는 사북합동수사단에 인력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원주지구합동수사단은 상지대 학생들을 연행, 구금한 뒤 순화교육 후 훈방조치하였다.<sup>212213</sup>

2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북조사결과보고서」(2009).

213 원주지구합동수사단(군지사합동수사단)은 계엄사 기록에 따르면 총 32명, 군 8/10명, 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5-1-5〉 원주지역 연행, 구금 시기·장소별 분류

연행시기 (1980년)	① 5월 17일 23:00~5월 18일 새벽 ② 1차 연행 시도 이후 ③ 수배 이후
연행장소	자택 등
구금장소	① 원주경찰서 ② 원주지구합동수사단(1001보안부대=원주보안대=천일공사)
훈방대상자	원주보안대 연병장 순화교육
구속장소① <sup>214</sup> (영장 발부 후)	1군지사 헌병대 임시구치소
구속장소② (2심 항소심)	영등포구치소
구속장소③ (3심 최종심)	청주교도소

#### 나) 상지대 예비검속 사건

상지대는 총학생회 구성 직전 영어교육학과, 원주고 동문회, 예비역모임 등이 주체가 되어 학원민주화운동을 전개하고, 총학생회 출범 이후에는 전국총학생회장단 모임에 참석하여 뜻을 함께하였다. 그러나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총학생회, 기존 사회운동을 전개하던 이들이 일시에 연행되었고 1001보안부대에서 가혹행위와 함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영어교육학과 전조영 교수는 학생들을 선동하여 사회운동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학생들은 순화교육 후 훈방되었다.

#### 다)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연행 이후 구금 기간 중 조사는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다가 1001보안부대로 이동하여 조사와 열차려를 받는 등을 반복하였다. 피해 진술인들은 조사 중에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에 의해 군홧발에 차이거나 구타당하였다. 순화교육에는 유격훈련 형태의 열차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훈방 이후 일부 학생은 배후조종자로 지목된 전조영의 군법재판(군법

<sup>214</sup> 구속, 기소 대상자는 전○○ 교수 1명이며 대부분의 연행 구금자는 훈방되었다.



회의)의 증인으로 참석했고, 전조영은 1심 징역 1년 6월, 2심 무죄로 석방되었다.<sup>215</sup> 연행되었던 학생들 대부분은 학사징계를 받았고 현재도 당해 기록은 말소되지 않고 학적부에 적시되어 있다.

#### 4) 강릉지역

##### 가) 개요

관동대, 강릉대 학생들은 1980년 4월부터 직선제 학생회 부활과 함께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관동대의 경우 총학생회 선거캠프가 선거 이후에도 유지되며 운동에 동력을 부여하였다. 이를 학원소요로 인식한 계엄 당국은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107보안부대(강릉, 위장명‘영동공사’)에 동해안경비사령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관련 학생들을 우선 연행, 구금하였다.

##### 나) 관동대 예비검속 사건

총학생회 선거 이후에도 조직이 유지되었고 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지도부 그룹이 5월 18일 자정을 전후로 연행되었다. 특기할 점은 관동대의 경우 당초 목표한 검거자 수는 28명인데 실제 연행 인원은 42명에 달했다. 한편 군사재판(군법회의) 회부가 2건인데 이는 모두 김대중과 관련한 사안이었다.<sup>216</sup>

215 5·18조사위는 전○○의 대인조사를 추진하였으나 2022년 12월경 사망함으로써 직접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였고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216 이들은 각각 한국정치문화연구소, 민주헌정동지회 활동을 문제 삼아 김대중, 동교동계 정치권과의 연루 혐의로 회부되었으나 공소취소되어 석방되었다.

#### 다) 연행, 구금, 조사과정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연행된 이들은 강릉경찰서 유치장, 107보안부대 지하실에 구금되었고 동해안경비사령 부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의 연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받으며 강압적 조사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들은 조사 이후에는 관동대 강당에서 약 일주일간 순화교육을 받으며 반성문 작성 등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

#### 5) 소결

강원지역 합동수사단의 가혹행위는 잠 안 재우기, 얼굴에 천을 덮어 물 붓기, 군화발 구타, 무릎 뒤에 각목 끼우고 허벅지 짓누르기, 통신장비 전선으로 전기고문, 손발 묶어 봉에 매달기 등 다양하였다. 여성 구금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사를 위해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함으로써 운동의 주모자를 색출하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연루시키고자 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

1980년 5월부터 이어진 일제 검거로 춘천지역의 강원대는 교수 3명이 의원면직, 학생은 제적 12명, 유기정학 7명, 근신 4명의 학사징계를 받았고, 원주지역 상지대 교수는 1명이 퇴직 처리, 상지대와 상지실전 학생은 무기정학 9명, 유기정학 9명의 학사징계가 내려졌으며, 강릉지역 관동대 학생 제적 2명, 근신 15명, 경고 25명의 학사징계 처분이 따랐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연행, 구금자에 대한 재심과 형사보상 등이 인용되었음에도 여전히 학사징계의 경우 말소되지 않고 학적부에 기재되어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부 징계자들의 이력이 말소된 경우가 있다. 이는 1980년 5·18 관련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인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민주화운동 참여에 대한 무죄 판결의 효력을 고려하여 학사징계 이력을 말소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18조사위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기록조사와 대인조사를 병행 진행하였다. 일부 기록과 합동수사단 구성원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나, 기록 대부분을 찾을 수 없었고 합동수사단 구성원을 특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특히 관련 기록과 관련하여 계엄 하 민간인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관련 사건기록이 일절 존재하지 않고 행정문서만 일부 존안되어 있었다. 한편 일부 특정인의 경우 사건기록, 예컨대 1980년 연행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증거물 등과 같은 일체의 문서가 존안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록 보존기관에서도 당해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합동수사단에 소속된 수사관들을 특정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사건기록에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실명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과 광주·전남합동수사단의 경우 편제표뿐 아니라 5·17조치에 따른 검거 체포조까지 존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보아 당시 전국에 설치된 합동수사단이 관련 기록을 생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강원지역은 특기할만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5·18조사위는 현 안보지원사령부의 협조로 1980년 당시 지역 보안대 근무자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강원지역 합동수사단에서의 가해사실과 관련한 진술을 일부 확보할 수 있었다.

## 사. 대구·경북 지역 인권침해 사건

### 1) 대구·경북 지역 인권침해사건 개요

1980년 대구·경북 지역은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를 중심으로 연합의 성격으로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유신 정권하에서 긴급조치 9호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던 학생과 민주인사들이 10·26 사건 이후 석방되었고, 1980년에 들어서 제적생들이 복학하기 시작하

였다. 이 지역 각 대학은 1980년 2월경부터 기존 학도호국단 체제를 타파하고 직선제 총학생회 추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4월이 넘어서자 ‘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위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979년 10월 27일 04시 전국 비상계엄선포 이후 경북지구 계엄분소가 편성되었는데, 경북계엄분소는 5관구사령부(공고 제1호)에 합동수사단이 설치(공고 제5호)되었으며, 제5관구보통군법회의가 경북지구 계엄군법회의로 전환(계엄업무 제3호 하달)되었다. 그리고 합동수사기구 설치 본부는 1002보안부대로 지정(치안 제1호 하달)되었다. 경북계엄분소의 분석에 따르면, 경북계엄분소의 활동은 1979년 11월, 1980년에는 3월에 강화되었는데, 10·26 이후에는 계엄 초기로서 활동 강화가 필요했고, 1980년 3월에는 학생소요가 시작되어 당면부대에서의 저지 방안을 강화했기 때문이었다.<sup>217</sup>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에는 각 대학에 계엄군이 주둔하게 된다.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일시에 학원소요 관련자들은 예비검속으로 연행되었는데, 이는 경북지구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경북지구합수단은 대구보안대(당시 1002보안부대, 위장명‘태백공사’)에 설치되고, 계엄 하 모든 수사 사건들을 일원화하였는데, 이를 위해 지역 경찰들과 보안사 수사관, 헌병 등이 합수단의 수사, 체포 인력으로 파견되었다.

## 2) 대구지역 사건

### 가) 개요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운동이 점점 거세지던 1980년 5월, 경북합수단과 보안부대는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대구지역 시위 주동 학생들과 긴급조치 위반

.....  
<sup>217</sup> 경북지구계엄분소(1980), 「계엄사후보고」, 2~16쪽.

전력자 등에 대해 대규모 예비검속에 나섰다. 경북합수단은 대구 일선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조를 꾸려 검거 대상자를 연행했는데, 연행 후에는 제50사단 내 향토관과 진격관이라 부르는 부대 내 강당 시설에 연행자들을 구금하였다. 그곳에서 제50사단 군인들이 구금자들을 관리토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sup>218</sup> 이들에 대한 수사는 경북합수단으로 이동하여 받기도 하고, 반대로 경북합수단에서 제50사단 진격관, 향토관으로 와서 수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상북도 경찰국 정보과 소속의 외청인 대공분실(이른바‘원대동 대공분실’)에서도 연행, 구금 및 수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경북지역 계엄분소 치안처에서 근무했던 최○○에 의하면 계엄 후 헌병, 보안대, 경찰이 합수단을 구성했다. 예비검속과 관련한 지침은 합수단으로만 공유되고 헌병에는 별도 공유되지 않았다고 하며, 명령계통과 관련해 헌병 병력이 출동하는데 헌병계통이 아닌 합수단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고, 보안대가 각종 수사를 주도했다고 진술했다.<sup>219</sup>

## 나) 경북대 관련 사건

### (1) 경북대 예비검속 사건

경북대 예비검속은 총학생회 부활이나 시위를 기획하거나 적극 참여했거나, 지하씨클에 소속되어 시위에 가담했거나, 혹은 4·19혁명 20주년 기념식에서 박정희 흉상 파괴 미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학생들을 체포한 사건이다. 이때 연행된 학생 중에는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김부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218 사병 김모가 심한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이에 5·18조사위가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219 5·18조사위, 「참고인 최○○ 진술조서」(2022.12.2). 최○○은 당시 제5관구사령부에서 경북지역 계엄분소 치안처로 파견 나가 치안·정보하사관으로 근무하며, 대구경북지역 각 경찰서 정보과로부터 지역의 집회동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한다. 또한 50사단에 구금되어 수사를 받은 후, 5관구사령부로 이송돼 온 50사단 구금자들은 학생 약 60여 명, 민간인 2명 등으로 기억하며, 수사기록 일체도 같이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50사단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많이 당했다고 들어서 5관구사령부에서는 구타와 가혹행위는 일절 없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체포되기도 하였다.

손○○은 경북대 77학번으로 KSCF(한국기독교학생연맹)에 가입, 유신반대 운동을 하다 제적되었고, 1980년 3월 사면으로 복학한 후 5월 가두시위에 학생들을 이끌고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고 한다. 이후 예비검속을 피하다 5월 21일 체포되어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미검거자 행방과 KSCF 동료들의 행선지를 추궁당하며 집단구타를 당하였다. 이후 제50사단 진격관에서 일주일 동안 실탄을 장전하고 착용한 군인 수십 명이 무자비한 구타와 포박, 원산폭격, 명석말이 등 얼차려를 가했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김대중이 김부검을 통해 운동권에 지시하고 자금을 줬으며 친구 함○○가 돈과 지령을 받았다는 조직도를 그려놓고, 손○○에게 KSCF활동과 함○○와의 관계를 추궁했다고 한다. 이후 추가로 대공요원들에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들이 수도로 뺨을 가격하거나, 날카로운 볼펜으로 손가락을 찌는 보다 가혹하고 전문적인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그는 1달 정도 이후 5관구사령부 헌병대로 이송되어 군사훈련 등을 받았고, 8월 21일 기소유예로 풀려났으나 9월 4일자로 강제징집되었다. 복무 중에 지역 보안대의 동향 파악 등을 받았고, 1983년 4월 말 207보안대에서 녹화사업 교육을 받고 전역 후 원주지역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한다.<sup>220</sup>

강○○은 경북대 72학번으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제적되었다. 1980년 초에 복학하여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으나, 당선되지는 못하고 후배들과 가두투쟁 등 학생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한다. 그는 5월 18일 오전 10시경 경주의 처갓집에서 대구 북부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제50사단 향토관으로 연행되었는데, 그곳에서 김대중의 자금수수, 학생운동 배후 조종 등과 함○○, 이○○, 석○○, 박○○ 등 후배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당하며 진압봉과 군홧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 등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2개월 후인 7월경 제5관구사령부를 거쳐 9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20 5·18조사위, 「손○○ 진술조서」(2022.7.27.).

2년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경찰의 사찰이 지속되었고, 당시 구타와 고문으로 인해 양쪽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악몽과 불면증, 피해망상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고 하였다.<sup>221</sup>

## (2) 경북대 광주학살 유인물 배포사건

김○○은 1980년 당시 경북대 국문과 4학년으로 그해 4월경부터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인 5월 28일 동급생 이○○, 계명대 선배 최○○와 함께 광주에서 온 유인물(투사회보, X군의 마지막 편지)을 돌려보고, 6월 5일 경북대 유○○, 장○○, 영남대 박○○ 등과 결의하여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6월 13일경 5,000부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유인물의 내용은 ‘광주사태에 대해 전두환이 특수살육훈련 훈련을 받은 계엄군을 투입하였고, 5·17비상계엄 확대는 쿠데타이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며, 6월 14일 경북대 서문에 약 20여 명의 학생이 모여 2인 1조로 500부씩 대구 시내에 살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그해 9월 초경 대부분 체포되어 경북도 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김○○은 그곳 지하 취조실에서 수사관 3인에게 처음에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다가, 이후 눈과 발이 봉대로 감긴 채 삼각자와 몽둥이로 발바닥을 수십 차례 맞았으며, 나중에는 통닭구이와 주전자로 물을 붓는 물고문도 당했다고 한다. 취조 내용은 학생시위 본인의 사진을 들이대며 시위 주동 여부와 유인물 배포 경위, 김대중의 사주 등에 대한 것이었으며, 15일 정도 지난 후에 구타와 고문이 멈췄다고 한다. 그는 그곳에서 한 달 정도 구금되었다가 서부경찰서를 거쳐 화원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81년 4월 10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며, 1994년경까지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고 하였다. 김○○ 외 장○○, 정○○, 이○○, 권○○, 유○○

221 5·18조사위, 「강○○ 진술조서」(2022.11.18.).



○, 박○○ 등도 비슷한 경위를 겪었다고 하였다.<sup>222</sup>

## 다) 계명대 관련 사건

### (1) 계명대 예비검속 사건

계명대는 1980년 3월경부터 복학생협의회가 구성되어 총학생회를 부활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후 계명대 총학생회는 학내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5월부터는 사회 민주화운동으로 전환하고, ‘정치일정 공개, 전두환과 신현확의 퇴진, 언론자유 보장, 노동3권 보장’등을 내세우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다. 5월 12일에는 처음으로 경찰저지선을 돌파하였고, 5월 13일에는 야간 횡불시위로 가두진출, 5월 14일에는 계명대, 경북대, 영남대가 연합시위를 벌였다. 특히 5월 14일 시위는 계명대 김진태, 경북대 함중호, 영남대 이태헌 등 각 학교 복학생협의회 대표들이 만나 전국 상황과 대구지역의 투쟁 방향을 논의하고, 5.14. 대구백화점 앞 연합시위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위는 계명대가 먼저 도착하고 다른 대학이 교수들의 만류 등으로 늦어지면서, 계명대 학생들은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진압 병력에게 강제진압 당해서 배희진 총학생회장 등 10여 명이 체포되었고, 나머지 도피한 지도부들은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전후로 대부분 체포되었다.

김○○은 계명대 경제학과 77학번으로 1979년에 연합시위를 주동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제적되었다. 1980년 2월 복학하여 복학생협의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였고, 이후 총학생회의 부활과 집회 및 시위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5월 14일 대구백화점 앞 연합시위를 주도하다가 배희진 총학생회장 등과 함께 진압 병력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제 50사단으로 연행되었는데, 이들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진압봉과 개머리판으로 구타

222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6.8).

를 당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연병장에 널부러져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부대 내 진격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구타와 얼차려를 해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연행되어 오다가, 3일쯤 지난 5월 17일경 분위기가 엄격해지더니 제50사단 보안대로 끌고 가서 취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은 그곳에서 팬티만 입은 채 별다른 조사도 없이 구타, 다리 사이에 각목 끼우고 올라타기, পে타이어로 만든 채찍으로 때리기, 얼굴에 수건 덮고 물 붓기 등을 당했다고 한다. 며칠 뒤 헌병대 영창을 거쳐 대구보안대(태백공사)로 이송되어 본격적인 수사를 받았다. 주로 김대중 자금수수, 선배들과의 관계, 연합시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추궁받으며 계속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러한 수사는 6월 27일경 대구지역 배후조종 수괴로 지명수배된 김○○가 체포되면서 마무리된 것 같다고 하였다. 이후 제5관구사령부 헌병대 영창으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 약 70~80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해 9월 1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를 거쳐 영등포구치소, 청주교도소로 이감되었다. 1982년 8월 15일에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었다고 한다.<sup>223</sup>

## (2) 홍정희 사건

임○○는 계명대 철학과 67학번으로 1969년 삼선개헌 반대로 구속, 1972년경 시국강연으로 제적되었다가 1976년 졸업하였다. 1979년 부마항쟁 시에는 부산 중부교회 최○○ 목사가 체포되자 그와의 관계 때문에 3주 동안 중앙정보부 대구지부에서 수사를 받다가 10.26 이후 석방되었다고 한다. 임○○는 1970년경 백○○, 최○○ 등과 함께 계명대 민주화운동 씨클인 홍정희를 만들어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는데, 예전부터 정보과 형사들의 동향 파악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1980년 6월 1일 새벽 사복형사 4명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되어 경북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 그곳에는 계명대 동지인 이○○, 최○○, 백○○, 서○○ 등과 대구의 민주당 인사인 김○○ 등이 있었다고 한다. 임○○는 밤에

223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10.26).

는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낮에는 대공분실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는데, 한번은 구타당하다 실신하여 발작과 경련을 일으켜 대구 서구 대신동 소재 아세아신경외과로 실려 가 치료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그 후유증으로 뇌전증이 생겨 지금까지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임○○는 당시 수사당국이 5·18의 배후로 김대중이 있고, 광주에 시위가 발생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도 시위를 지시하여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각본을 짜놓은 상태에서 계명대 홍정희 멤버 몇 명이 김대중을 만난 사실이 있자, 모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연루시키려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며, 본인에게도 ‘김대중 접촉과 자금수수, 김대중 지시로 대구지역 시위자금 전달’ 여부를 캐물었다고 한다. 이후 대구 회원교도소로 이송되어 있다가 이 사건 관련자 5인 모두 1980년 8월 4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고 한다.<sup>224</sup>

## 라) 영남대 관련 사건

영남대는 1970년대부터 천록회, 한얼회 등 지하씨클이 중심이 되어 학생운동을 이끌었고, 1980년에 들어서자 1970년대 제적되었던 복학생들이 복학하면서 총학생회 부활과 학내민주화를 주도하였다. 특히 1980년 초 박근혜가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에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투쟁이 거세게 진행되었고, 일부 교수들도 이에 동조하여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4·19혁명 이후에는 학생운동의 기류가 학내 투쟁에서 교외 투쟁으로 발전하여 ‘유신잔재 척결, 전두환·신현확 사퇴’ 등의 구호로 경북대 및 계명대 등과 연합시위를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특히 5월 14일 3개 대학 연합시위에는 영남대에서 1만여 명이 넘는 학생이 경산에서 대구로 32km를 행진했다고 한다. 영남대에서는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전후로 대부분의 총학생회 간부 및 복학생들이 예비검속 대상이 되어 체포 및 연행되었다.

224 5·18조사위, 『임○○ 진술조서』(2022.6.27.). 이 홍정희 사건 관련자는 임○○, 백○○, 서○○, 최○○, 김○○ 등 5인이다.

정○○는 영남대 경영학과 75학번으로 지하씨클 천록회에 가입하여 학생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는 1980년 4월 영남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이후에는 박근혜 재단 이사장 부임 반대 투쟁 및 학내 민주화운동, 5월 이후에는 반군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특히 5월 14일 3개 대학 연합시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경산부터 대구까지 32km를 1만여 명의 학생을 이끌고 나섰는데, 담티고개에서 헬기까지 동원한 군인과 경찰저지선을 만나자 이를 우회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남부정류장에 다시 집결했고, 다시 이 저지선을 돌파하여 반월당 사거리까지 진출했다고 한다. 그곳에 도착하니 계명대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진압군과 싸우고 있었고, 경북대는 대구역 인근에서 싸우고 있어서, 연합시위가 불가능함을 알고 영남대 학생들은 명덕네거리 2.28 기념탑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시위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정○○는 5·17비상계엄 확대 뉴스를 보고 도피하였는데, 부산 테레사여고 수녀원, 경북 영주 등에 숨어 있다가, 가족들을 협박한 경찰에게 6월 초순에 소백산 골짜기에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후 경북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되었고, 도착하자마자 부친이 보는 앞에서 3~4명의 경찰관에게 구타당하여 반실신하였다. 이후 취조 과정에서도 몽둥이 등으로 구타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경북도경 대공분실, 제50사단 헌병대, 대구 보안부대(태백공사)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고, 특히 보안대에서는 칠성판에 거꾸로 매달고 얼굴을 가격하거나, 몽둥이로 구타를 2~3일간 계속했으며, ‘이○○, 김○○ 교수와 관계, 김대중의 지령과 자금수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조했으며, 가혹행위 끝에 실신한 상태에서 진술조서에 손가락을 강제로 갖다 대고 무인을 찍었다고 한다. 이후 5관구사령부를 거쳐 8월경 훈방되었으며, 이후에도 상당기간 보안사 등의 사찰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하였다.<sup>225</sup>

이○○은 영남대 국사학과 76학번으로 1979년 ‘영남대 유신 민주주의 장례식 사건’ 관

225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2.10.18.).

런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해 12월 7일 석방된 후, 1980년 3월 복학하여 복학생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영남대는 유신잔당들이 교내 이사회를 장악한데다, 박근혜 재단 이사장 부임 소식까지 겹쳐 이와 관련한 학내 반대시위가 계속되었다. 당시 신군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학외투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은 대구 운동권 학생대표로 그해 4~5월 광주에 장○○, 이○○ 등과 함께 두 차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집회 시 마이크를 잡고 대구 상황을 전해주거나, 전남대와 조선대의 학생운동 지도부 및 김상윤, 정동년 등 재야인사들을 만나 광주와 대구의 상황을 교류하고, 계엄령이나 휴교령에 대응하는 연대투쟁을 논의하였다고 한다.

그는 5월 16일경 수배가 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경주, 부산 등으로 도피하였으며, 5월 말경 부산 지인의 병원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경산경찰서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대구 보안부대(태백공사)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 들어서니 수배자 명단과 사진이 걸려 있었고, 본인의 사진에 빨간색으로 X자를 치고 ‘검거’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다음에는 조사실로 끌려가 무차별 구타를 1~2시간 정도 당했다고 하며, 이후 밤에는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있고, 낮에는 경북도경 대공분실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하며 열흘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수사관들은 ‘광주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김대중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구타 외에도 손가락에 불펜 끼워 비틀기, 무릎 뒤에 철봉 끼워 밟기, 욕조에서 물고문 겁주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제50사단 헌병대 영창으로 이송되었으며, 그곳 진격관에서 책상을 여러 개 놓고 조사를 받았는데, 엎드려뺨쳐 후 몽둥이 구타나 뺨이나 머리 때리기를 주로 당했고, 특히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강당 중간에 구금자를 던져놓고 긴 몽둥이로 엄청나게 구타했다고 하며, 영창에서는 잠을 안 재우고 불침번 세우기, 철창타기 등의 가혹행위를 헌병들이 했다고 한다. 그곳의 구금자들은 이후 제5관구사령부 헌병대 영창으로 이감되어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지만, PT체조나 제식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이태현은 1980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9월 초순 군사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며, 이후 1990년 대 초까지 경찰과 보안사의 사찰을 받았다고 하였다.<sup>226</sup>

## 마) 기타 사건

### (1) 두레양서협동조합 사건

대구 두레양서협동조합은 1978년 9월에 경북지역 4H씨클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대구 대명동에 두레서점을 발족하고 사회과학 관련 금서 등을 공유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했다. 1980년 5월 17일부터 1박 2일 동안 광주 YMCA에서 열린 ‘함평 고구마 사건 진상보고대회’에 참석한 가톨릭농민회 소속 이○○, 정○○이 5·18을 목격하고 유인물을 들고 대구로 복귀하여 5월 20일경 두레서점에서 회원들에게 광주 상황을 전달하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5월 26일 광주 참상을 알리는 ‘민주시민에게 고함’이라는 유인물 5,000부를 제작하였고, 5월 28일 18시경 동성로에서 살포할 예정이었다가 광주의 상황 종료로 인해 5월 27일경 모두 소각하고 도피하였다고 한다. 두레서점 회원들을 도·감청 등으로 감시해오던 대구 정보기관은 그해 9월 초부터 두레서점 회원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9월 11일 정○○, 김○○, 9월 15일 이○○, 곽○○, 이○○, 정○○ 등이 체포되었다. 나머지도 차례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연행되었던 김○○에 따르면, 체포되어 경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취조와 가혹행위를 당한 두레양서협동조합 관련자는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광주 5·18을 어떻게 알았는지, 5·18 관련 유인물 제작 경위, 대구 운동권과의 관계’등을 추궁당하였다고 한다. 당시 연행·구금자였던 서○○(개명 전 서○○)는 대공분실이 ‘두레서점과 양서협동조합이 대구·경북 지역 운동권과 연계하여 반국가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내란을 음모하기 위해 5·18에 관여했다’는 ‘간첩단’ 그림을 그려놓고 이에

226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2.7.15.).

맞는 진술을 받기 위해 갖은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행자들은 구타뿐만 아니라 무릎 뒤에 각목 끼우고 밟기, 통닭구이, 얼굴에 수건 덮고 물 붓기, 욕조에 상체 집어넣기 등 다양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한편 이들이 연행, 구금되자 가톨릭농민회에서 지속적인 항의를 하였다. 10월 초부터는 수사 방향이 ‘국가전복 간첩단 사건’에서 ‘5·18 유인물 살포 및 불온서적 배포’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며, 10월 초에 상당수가 훈방처리되었다. 10월 8일 나머지 관련자 8명이 기소되어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되었다. 김○○은 1981년 4월 4일, 정○○은 1982년 8월 11일 석방되었다.<sup>227</sup>

## (2) 전민노련 유인물 배포사건

김○○은 1980년 당시 한국노총 전국연합노조 대구·경북 지부장이자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 전국위원장이었다. 전민노련은 그해 5월 윤상원(광주·전남 책임자), 유동우, 양성조(청계피복), 이태복 등이 중심이 되어 부천에서 결성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5·18이 발생하자 서울에서 이태복이 5월 20일 포항에 내려와 ‘광주에서 윤상원을 비롯한 많은 동지가 죽어가고 있으니, 도와주러 가자’고 하여, 5월 22일 두 사람이 광주에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군인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어 다시 대구로 돌아왔고, 5월 23일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대구·경북노조 조직부장 황○○과 함께 수천 장을 제작하여 대구 두레서점에 일부를 전달하고, 나머지는 대구 시내에 살포하였다고 한다. 김○○은 5월 말 노조지부 사무실에 출근하다 체포되어 대구 보안부대(태백공사)로 연행되었다. ‘황○○ 조직부장의 행방, 5·18 관련 유인물 살포 경위’등을 추궁당하며 몽둥이와 구둑발로 구타를 심하게 당했으며, 계속 모른다고 하자 이를 뒤에 훈방되었

<sup>227</sup>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10.14.), 「김○○ 진술조서」(2022.4.22.), 「김○○ 진술조서」(2022.11.25.), 「서○○ 진술조서」(2022.5.26.), 「이○○ 진술조서」(2022.6.16.), 「이○○ 진술조서」(2022.10.20.), 「정○○ 진술조서」(2022.11.10.), 「황○○ 진술조서」(2022.9.16.) 등 이 사건 관련자 8인 진술조서 참조.



다고 한다. 훈방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도피생활을 하다가 그해 11월경부터 포항제철 협력사에서 근무하였다. 1981년 8월 1일 출근길에 다시 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수사관들이 윤상원, 이태복과 관련한 전민노련 활동과 전민노련과 5·18과의 관련성 등을 추궁하며,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가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이태복은 무기징역, 본인은 징역 4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982년 7월경 석방되었다고 한다.<sup>228</sup>

### (3) 노동야학 관련 예비검속 사건

전○○은 1978년부터 대구에 내려와 구미도시산업선교회 실무자로 일하며 밤에는 대구 북구 원대동 염색공단의 메아리야학과 서구 이현공단의 만남야학 두 군데를 운영했다고 한다. 그는 원래 1976년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3·1구국선언 사건 관련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고, 1979년에는 구미노동자 부당해고 사건 관련 투쟁으로 구속된 적도 있어서, 이미 대구 남부경찰서에서는 그를 요시찰 인물로 분류하고 감시해왔다고 한다.

전○○1980년 5월 17일 야간에 대구 중앙파출소 근처 심지다방에서 야학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일찻집 모금행사를 개최하였다. 당시 학생운동 및 야학 활동을 하던 동료들이 많이 참석했다. 그중 일부가 시위와 예비검속 등으로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말을 전해줬다고 한다. 그는 본인도 몸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그날은 근처 여인숙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자택에 짐을 가지러 들렀다가 체포되었다. 대구 남부경찰서를 거쳐, 5월 19일 제50사단 헌병대 영창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영창은 1층짜리 건물에 방 4~5개가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으며, 그곳에서 경북대 석○○, 함○○, 계명대 권○○, 김○○ 등이

228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5.12). 이태복은 1981년 전민노련과 전민학련 결성 관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른바 '학림사건'이다.

잡혀 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구금 후 첫 열흘 정도는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 사이 학생들이 조사받고 오면 머리가 깨지거나 하는 등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을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가혹행위를 목격했다고 한다. 본인의 조사 때에는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 구타,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군홧발로 밟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한다. 취조 내용은 ‘야학과 학생운동과 연관성, 학생운동 주모자와의 관계, 광주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것이었고, 어느 정도 조사하다가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제5관구사령부 헌병대로 보내졌다가 6월 15일경 훈방되었다고 한다.<sup>229</sup>

### 3) 경북지역 사건

#### 가) 경주 동국대 예비검속 사건

김○○은 1980년 당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사학과 2학년으로, 그해 4월 총학생회장이 되어 4~5월에 학교-형산강-황선공원-경주역전-경주중앙시장-팔우정로타리(경주시청 앞) 등을 행진하는 가두시위를 4~5차례 이끌었다고 한다. 그는 5월 18일 자정, 사복을 입은 경주경찰서 정보과 3명의 형사에 의해 경주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오전 10시경 제50사단 헌병대로 이송되었는데, 연병장에 도착하자마자 약 100여 명의 학생이 포복을 하고 있었고, 다수의 군인이 그 학생들을 밟고 몽둥이로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김○○은 5월 27일경부터 제50사단 진격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전 진격관 내에서 또다시 군인들이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지금부터 개다”라며 포복을 시키고, 군홧발로 짓밟고, 몽둥이로 때렸으며, 이때 목의 5번 경추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광주 상황이 종료된 5월 27일부터 개별조사를 받았는데, 취조 사

229 5·18조사위, 「전○○ 진술조사」(2022.5.12.).

향은 ‘김대중을 만났는지, 김대중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고 학생시위를 주도하였는지’ 등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실 김○○은 1980년 4월 말 김대중이 김유신 장군 관련 김해 김씨 추모제로 경주에 내려왔을 때, 학생 10여 명과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다. 당시 같이 배석했던 최○○ 선배가 체포된 후 이 사실을 실토하는 바람에 본인이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는 대로 모두 진술했다고 한다. 또한 수사관들은 리영희 교수의 제자였던 조○ 교수와 학생운동과의 관계를 캐물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여 물에 불린 참나무 몽둥이로 무차별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제5관구사령부 헌병대로 이송되었다가 그해 9월 5일 훈방되었다. 학교에서 제적된 후 2~3개월 뒤에 입대 영장이 나와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당시 목발을 짚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황이라 입대를 면했다고 하며, 1985년에 복학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sup>230</sup>

#### 나) 경주 유인물 배포 사건

1980년 당시 경희대학교 학보사 기자였던 신○○은 ‘함평 고구마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광주에 와있던 차에 1980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광주 상황을 지켜봤다. 고향인 경주로 돌아온 후인 5월 21일 고등학교 동창 김○○, 성당 후배 김○○와 함께 광주 상황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 5.22. 새벽에 경주 시내에 배포하였다고 한다. 이후 상경한 신○○은 5월 27일 새벽 동대문구 이문동 친형님 집에서 사복형사 2명에 의해 경주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경희대 대학주보 편집국장으로서 있던 이○○ 역시 신경준 조사 이후 6월 5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신○○은 경주경찰서에서 조사 때는 가혹행위가 없었으나, 2~3일 후 경북지구합수단으로 김○○과 함께 이송된 이후에는 구타를 당한 후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수사관

230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5.7.), 김○○은 1980년 5월 18일 체포되어 9월 초 훈방될 때까지 100여 일 구금되었으나 관련 기록에는 64일 구금된 것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은 ‘김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는지, 왜 광주에 갔는지’ 등을 추궁하였으며, 그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대학주보 편집국장인 이○○가 김대중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의 지시로 광주에 갔다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는 경북합수단에서 5~7일 조사받은 후 제50사단 헌병대로 이송되었다가, 6월 초에 화원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7월 14일 포고령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영등포구치소와 청주교도소를 거쳐 1981년 3월 1일 석방되었다.<sup>231</sup>

한편 1980년 당시 경희대 대학주보 편집국장이던 이○○는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후 피신하였는데, 6월 5일 대구의 친구 노○○(영남대 법대생)를 만나기 위해 대구 가톨릭문화회관으로 들어가던 중 사복경찰 2명에 의해 대구 중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중부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최근 2개월의 행적을 추궁하며 구타하였고, 이후 대구 보안부대(경북지구합수단)로 이송되자마자 무자비한 구타와 통닭구이와 물고문을 당했으며, 이어서 전기고문을 하려고 하자, 그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시키는 대로 진술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에 수사관이 경희대 학보사 기자 신○○의 진술서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김대중, 정연주(전 동아일보 해직기자)와 본인이 조직으로 엮여 있었는데, 그는 경희대 주보사 편집국장으로서 학생 기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그 돈으로 신○○이 광주를 취재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본인은 경주 유인물 살포의 총책으로 지목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더 이상 특별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자 다시 중부경찰서로 이송되었고, 1주일 정도 있다가 청량리경찰서로 이송된 후 그해 8월 7일 석방되었다고 하였다.<sup>232</sup>

231 5·18조사위, 「신청인 신○○ 진술조서」(2022.6.22), 신○○청주교도소에 있을 때 강제 순화교육을 3개월 받았다고 한다.

232 5·18조사위, 「신청인 이○○ 진술조서」(2022.6.22).

## 아. 부산·경남 지역 인권침해 사건

부산과 경남지역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을 겪고, 1980년 봄 신군부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80년 3월 직선제 총학생회 구성을 위해 대학가는 학내민주화 운동을 추진하였고, 각 대학의 총학생회 구성을 마친 후 그 흐름이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지역 학생운동의 양태는 교내시위를 넘어서 가두시위, 시국성토대회 등으로 발전하였다. 계엄당국에 의하면 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부산·경남지역 소요는 가두시위, 농성 등 부산 96건, 경남 36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각 대학가는 5월 초 민주화운동 집중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단행되자,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연행, 구금되었거나, 긴급조치 위반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이 있었다. 부산지구합동수사단, 경남지구합동수사단의 주도로 연행, 구금, 조사가 이어졌다. 한편 5월 18일자로 각 대학은 휴교령이 내려지고 계엄군이 주둔하였다.

부산지구, 경남지구합동수사단의 주된 조사내용은 학원소요 관련 학생과 정치, 재계 인사들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의 관계였다. 부산경남계엄분소가 별도로 작성한 계엄사후보고서 내용 중 1980년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자 수사처리 결과를 정리해보면,<sup>233</sup> 첫 번째는 수사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 김대중의 내란 실행을 전제하고 연행자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지구합동수사단 수사계장의 진술에 따르면 시국 인사 수사에 있어서 수사과장(대공과장) 전국 회의가 있었고, 검거명단을 받아 지역 합수단은 이를 실행하는 식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산지구합동수사단의 경우 임○○의 사망 사건이 있었다.<sup>234</sup>

<sup>233</sup> 부산경남계엄분소, 부산경남계엄사후보고서, 국가기록원(관리번호: 221-155).

<sup>234</sup>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1), 「진정 제47호 임○○ 사망 사건」.

## 1) 부산지역 인권침해 사건

### 가) 개요

1980년 당시 부산지역은 501보안부대(위장명‘삼일공사’)를 중심으로 부산지구합동수사단이 부마민주항쟁, 1980년 학원소요 관련자, 동명목재 노동자 투쟁 및 재산헌납 사건 등을 수사하였다. 그간 부산지역에서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참여자 및 지역의 재야인사 등이 체포되어 엄청난 고초를 겪은 바 있었다.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인한 예비검속에서 많은 수의 복학생, 재학생, 재야인사들이 연행, 구금되었다.<sup>235</sup>

부산·경남계엄분소는 ‘1980년 5월 18일~8월 30일 소요학생 수사, 학생소요에 관련된 학생 및 민간인 연행 조사 후 처리/조치 또는 결과’관련, 학생 및 민간인 총 85명(구속 10, 이첩 10, 훈방 65)을 연행하여 처리방침에 의거, 조사 처리하였다고 보고하였다.<sup>236</sup>

### 나) 부산대 학원소요 관련

1980년 5월 부산대 학원소요 관련 주요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1-6>과 같다.<sup>237</sup>

235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추오 진술조서」(2023.10.6).

236 부산·경남계엄분소(1980), 「계엄사후보고서」, 7쪽. 처리방침은 ‘구속 입건 처리: 배후 정치 세력 엄단, 재범 우려자 구속 입건, 부적격학생의 처벌, 훈방처리: 자수 및 개전의 정이 있는 자 관용, 활용 학생 훈방, 전 관련 학생 정신훈화’였다. 구체적인 인원은 다음과 같다. 부산대학 30명(구속 6, 훈방 24), 동아대학 21명(구속 1, 훈방 20), 부산수산 8명(훈방 8), 산업대 1명(훈방 1), 부산공전 2명(훈방 2), 고려신대 2명(훈방 2), 민간인 21명(구속 3, 이첩 10, 훈방 8)이었다.

237 부산대학교 학내 시위상황은 노○○(부산대학교 기계과 4년)의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1980. 10. 4.), 「공소장」 및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1980. 10. 30.)「공판조서」, 부산지구합동수사단((1980년 9월 10.), 노○○ 피의자신문조서(2회), 부산지구합동수사단(1980), 김○(부산대학교 철학과 3년 학생회장) 자술서(1980년 5월 20일) 및 피의자신문조서(1980. 5. 21.·23.·31.),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0. 10. 판결 「80보군형제 13-1-6호」 등을 근거로 재정리하였다. 이들 부산대학교 재학생 조○○, 신○○, 김○○ 각 징역3년, 정○○, 김○○은 각 징역 1년6월, 이○○은 징역 1년에 처하되, 이○○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표 5-1-6〉 부산대 학원소요 현황

일시	장소	내용
1980. 5. 8. 10:00~ 5. 9. 09:00	부산대학교 운동장	- 학생시국공개토론회 - 법대생(회장 배성희) 주도로 약 150명이 독자적으로 스크럼을 짜고 운동장을 돌며 계엄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 교내 문창회관 회의실에서 5. 9. 09:00까지 50명이 철야농성
5. 9. 11:00	부산대학교 운동 장	- 시국토론대회 - 김○○, 정○○의 지휘로 약 500명의 학생이 스크럼을 짜고 “유신잔당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교내를 일주하며 시위 - 12:00경 교문 앞에서 회장단이 학도호국단기 9매를 찢어 불태움
5. 14. 13:30~18:00	부산대학교 운동 장	- 상대생이 주최한 전국학생시국공개토론회(상대 회장 정인제 주최) - 운동장에서 시위하다 18:00경 가두시위 하고자 교문 밖 30미터 지점까지 진출하였으나 경찰 출동으로 저지되자 동 장소에서 1시간 연좌시위
5. 14. 19:00 ~ 5. 15. 09:00	부산대학교 도서 관	19:00경부터 익일 09:00까지 교내 도서관에서 학생 1,200명 철야농성
5. 15.	정문, 강당	유신잔당 퇴진, 비상계엄 철폐 요구 농성
1980. 5. 19. 18:00~19:40 도심 세 곳에서 유인물 살포	미화당백화점, 부영극장 근처, 남포동 상가 3층	“부산대학교 성진포고문에 즈음하여” 약 200매를 3등분하여 노○○은 미화당백화점 3층, 김○○은 부영극장 부근, 배○○은 남포동 상가 골목 등 변화가에서 위 유인물을 도로를 향해 살포. 김○○은 현장에서 연행됨

### (1) 부산대 예비검속 사건

부산대 예비검속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1980년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총학생회 구성원의 경우 사전 검거 대상에 해당하여,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일시에 연행된 사건이다.<sup>238</sup> 5·18조사위는 이와 관련한 대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 사람들이 5월 17일 밤부터 5월 20일까지 부산지구합동수사단에 연행되었

238 제2관구보통군법회의, 조○○, 신○○, 정○○, 이○○, 김○○, 「공소장」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sup>239</sup>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자택에서 연행되었으며, 구금과 조사과정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군홧발 구타, 소총 개머리판 구타, 전기고문 위협, 주전자 물 담아 얼굴 뒤로 하고 물 붓기 등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하였다.

신청인 조○○은 부산대 공대 74학번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두 차례 구속된 적이 있었다. 1980년 3학년으로 복학하여 복학생들을 대표하였으며, 총학생회 선거에도 출마했다고 한다. 1980년 5월 17일 23시경 자택에서 권총으로 위협하는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부산 보안대로 연행되었다. 연행자들을 모아 놓은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해병대원들로부터 개머리판과 군홧발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으며, 취조 시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부산 책임자로 지목되어 보안대 조사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몇 차례 육군 통합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고 한다.<sup>240</sup>

고 사○○은 부산대 경제학과 74학번으로 1974년 가두시위 건으로 제적되었다가 1980년 복학하여 당시 2학년이었다. 그해 4월 3일 부산대 학원민주화추진총연합을 결성하여, 총학생회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학생시위를 주도하였다고 한다. 1980년 5월 18일 새벽경 자택에서 수사관 4인에게 체포되어 부산 보안대로 연행되었다. 그곳에서 김대중의 사주를 받아 학생시위를 배후조종했다는 이유로 약 4일간 심한 구타를 당해 요추 3~5번을 다치는 등 신체적 피해가 컸다. 이때 고 사○○은 당시 ‘이대로 죽겠다’ 싶어 동래경찰서

239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 5·18조사위, 「배○○ 진술조서」(2022.12.12.), 「이○○ 진술조서」(2022.12.5.), 「이○○ 진술조서」(2022.6.9.), 「신○○ 진술조서」(2022.6.10.), 「김○○ 진술조서」(故사○○ 배우자, 2022.5.13.), 「이○○ 진술조서」(2022.6.16.).
- 긴급조치 위반자
- 5·18조사위, 「참고인 조○○ 진술조서」(2022.7.26.).
- 총학생회 관련
- 5·18조사위, 「참고인 안○○ 진술조서」(2022.4.29.).

240 5·18조사위, 신청인 조○○ 진술조서(2022.7.26.)

의 본인 사찰 담당 형사를 불러달라고 했고, 그 형사가 와서 보안대에 보증하면서 그해 5월 21일경 풀려났다고 한다.<sup>241</sup>

## (2) 부산대 유인물(성전포고문) 배포사건

부산대생 노○○, 김○(김○○), 배○○ 등이 1980년 5월 19일‘부산대학교 성전포고문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후 검거되어 기소된 사건이다.<sup>242243</sup> 김○영은 살포 직후 현장 근처의 계엄군에게 발각되었고 노○○은 배○○과 도피하였으나, 1980년 9월 체포되었다. 배○○ 역시 6월 자수하여 연행되었다. 유인물의 내용은“당국은 5·18 반동조치로써 계엄확대 강화 및 민주인사 구속 등 실로 목불인견적 탄압을 가하는바 … 현 정권 음모와 반민주적 태도는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우리 부대인에게 촛보라도 양보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들은 부산합수단에서 구금과 조사과정에서 구타 및 고문을 당하였고 조사내용에는 김대중과의 연루 의혹을 추궁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노○○은 1980년 당시 부산대 4학년으로 지하씨클과 문성야학에서 활동하였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학교 정문이 봉쇄되자 시위를 준비했다. 다음 날인 5월 18일 문성야학에서 ‘부산대학교 성전포고문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1,000부 제작하고 친구 김○이 부영극장, 배○○이 구뚝방 골목 2층 건물, 노○○이 미화당백화점에서 살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다음날인 5월 19일 노○○은 미화당백화점 3층에서 유인물을 살포한 후 동료들과의 약속장소인 미문화원 앞으로 갔으나, 김○이 오지 않아 바로 도피하여 서울, 목포 등지로 옮겨 다녔다. 결국 그해 9월 초경 체포되어 부산보안대로 연행되었

241 5·18조사위, 신청인 김○○(고 사○○의 처) 진술조서(2022.6.9.), 고 사○○의 부산 보안대 구금 및 가혹행위 사실에 대해 당시 같이 구금되어 있었던 신○○, 정○○, 조○○, 김○○(이상 학생), 정○○(부산대 교수) 등 5인의 인우보증이 있다.

242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김○○, 2022.4.1.), 「노○○ 진술조서」(2022.4.1.), 「조○○ 진술조서」(2022.4.15.), 「황○○ 진술조서」(2022.4.21.).

243 제2관구보통군법회의, 피고인 노○○, 김○(김○○), 배○○의 「공소사실」.

다. 조사과정 중에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부산구치소와 영등포구치소로 이감되어 항소심 끝에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1981년 3월 3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부림사건으로 다시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했다고 한다.<sup>244</sup>

#### 다) 동아대 학원소요 관련

동아대학교에서는 1980년 4월 14일 학교 재단의 부조리와 독선적인 처사를 규탄하고, 4월 16일에는 언론의 사명감을 망각한 편파적인 교지를 대신해 독자적인 학교 소식지인 ‘무명지’를 제작하여 4월 20일과 4월 30일 두 차례 교내 강의실 및 도서관 등지에서 배포하였다.<sup>245</sup>

부산경남 계엄분소의 「학원소요 현황」에 따르면, 5월 15일 동아대학교 강당에서 150명의 학생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국성토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150명의 학생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문 밖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sup>246</sup>

#### (1) 동아대 예비검속 사건<sup>247</sup>

동아대 역시 긴급조치 위반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5·17비상계엄 조치 직후 예비검속되었다. 여기에는 1980년 총학생회 부활 운동을 한 학생들과 학생운동을 주도한 씨클 구성원들까지 대부분 포함되었다.

244 5·18조사위, 「신청인 노OO 진술조서」(2022.3.31.).

245 보안사령부(1983), 「변OO」동아대학교 무명지 발간 주동자에 대한 수사중간 보고

246 계엄사령부(1980), 「계엄사후보고」 55~56쪽.

247 5·18조사위, 「이OO(故이OO 여동생) 진술조서」(2022.4.28.), 「김OO 진술조서」(2022.5.13.), 「이OO 진술조서」(2022.5.26.), 「김OO 진술조서」(2022.7.27.).

## (2) 동아독서회 집회 미수 사건<sup>248</sup>

동아대 씨클 동아독서회는 1980년 3월부터 주요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궁극적으로 광주에서의 비극을 접한 뒤 성○○, 이○○, 신○○, 김○○, 정○○, 김○○, 강○○, 김○○, 김○○ 등이 5월 25일 남포동 집회를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일시에 연행된 사건이다. 이들에게는 당시 계엄법상 정치 목적의 일체의 집회가 금지됨에도 이를 계획한 것에 대한 혐의가 부여되었다.<sup>249</sup>

정○○은 1980년 당시 동아대 3학년으로 '동아독서회' 선배 신○○의 자택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비극을 공감하고, 시위와 유인물 살포를 5월 25일 오후 6시경 부산시 남포동 일대 극장가에서 하기로 계획했다. 하루 전인 5월 24일 새벽에 신○○의 자택에서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합수부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정○○은 그곳에서 구타와 좌우로 굴리기, 푸쉬업 500회 기합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약 35일 정도 구금되었다가 불기소 석방되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1980년 7월 30일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통보받고, 1982년 3월에야 복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250</sup>

## (3) 지하신문「무명지」사건

1980년 4월 동아대 학보지가 학교 측에 일방적 조치로 정간되자 변○○,<sup>251</sup> 권○○, 이○○, 김○○ 등은 지하신문「무명지」를 발간키로 하고 학내에 배포하였다. 이들은 5·17비상계엄 조치 이후 수배가 내려졌다. 변○○은 도피하다가 6~7월경 연행되어 10여 일간

248 보안사령부(1983), 「최○○」.

249 제2관사보통군법회의, 신○○의 「공소장」.

250 5·18조사위, 「정○○ 진술조서」(2022.3.31.). 정○○의 선배 신○○의 판결문(1980.11.20.)에는 '1980.5.21. 17:00경 이○○, 정○○, 김○○, 김○○, 성○○, 강○○, 김○○와 피고인의 자택에 모여 정치 목적의 집회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신○○은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다.

251 보안사령부(1983), 「변○○」; "피의자는 동아대학교 시위 관련 혐의로 자체 수배되었던 자로 그간 부모의 꾸준한 자수 설득으로 자수코자 귀가 자택에서 대기 중 80.6.29. 10:20경 검거된 자로서..."

조사 후 훈방되었다. 이와 연루되어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동아대 김○○ 교수는 지하신문「무명지」발간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연행, 구금되었다가 조사과정에서「무명지」발간과 전혀 무관함을 소명하였음에도 학교로부터 권고사직당하였다.<sup>252</sup>

### 라) 민주헌정동지회 회원의 김대중 내란음모 연루 사건

5·17비상계엄 조치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하여 민주헌정동지회 회원들을 연행하여 조사하였다.<sup>253</sup> 그 과정에서 강압과 구타, 고문 위협과 실행 등이 자행되었음을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였다. 1980년 5월경 전국 대공과장 회의에서 정치계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받았고 지역 합수단에서 이들을 연행하였다. 비상계엄해제, 구속인사 석방, 전두환 퇴진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유언비어 유포 및 날조와 함께 김대중의 사조직인 민주헌정동지회의 조직적 내란음모 혐의로 연행, 구금되어 이후 사법처리되었다.

김○○는 1980년 당시 부산에서 비닐공장을 운영하며 1973년경부터 민주헌정동지회 활동을 했다. 당시 부산지부 책임자는 노○○였다고 한다. 5월 17일에는 광주에서 민주헌정동지회 모임이 있어서 홍남순 변호사 집에 있다가 부산 자택에서의 예비검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5월 21일경 최○○ 전남지부장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김대중을 죽이려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주기에, 광주에서 걸어 화순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때부터 도피하면서 위 유인물을 정○○, 이○○ 등과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다가 당시 엄궁동 자택에 합수부 요원들이 진을 치고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6월 19일 부산 보안대에 자수하였다고 한다. 보안대에서는 주로 김대중과 관련한 사항, 부산지부 책임자 노○○의 행방 등을 물으며 침상에 앉은 채로 또는 벽에 손을 짚은

252 5·18조사위,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4.14).

253 제2관사보통군법회의, 박○○, 이○○, 김○○의 「공소장」

채 구타를 많이 당했고, 어느 날은 상태를 보러 온 군의관이 너무 처참한 상태를 보고 울어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던 기억도 있다고 하였다. 김○○는 이후 15P 헌병대(53사단 헌병대)로 이송되어 그곳에서도 김○○헌병에게 구타를 또 당했다고 기억하며, 부산 주례교도소, 영등포구치소, 청주교도소를 거쳐 1981년 석가탄신일 특사로 석방되었다고 한다.<sup>254</sup>

1980년 당시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 조사연구부장이었던 이○○은 5월 18일 가톨릭 농민대회 준비를 위해 광주에 머물다가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상황을 목격했다. 5월 20일 대전을 거쳐 5월 21일 부산으로 와서 김○○, 허○○ 등 후배들에게 광주의 참상을 알렸다고 한다.<sup>255</sup> 허○○는 당시 기독교장로회 전국 청년회 부회장이자 민주헌정동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광주의 소식을 듣고, ‘살인마 인간백정 전두환이 광주에서 학살을 하고 있다. 부산시민은 5월 25일 서면 태화백화점에서 모이자’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박○○, 박○○, 김○○, 박○○, 문○○, 손○○, 진○○ 등 8명과 2천 매 정도를 제작하여 부산 시내에 살포했다고 한다. 허○○는 도피 중이던 7월 말경 엄궁동 다방에서 합수단에 체포되어 보안대(삼일공사)로 연행된 후 계속 구타를 당하며 조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당시 수사관들은 “임○○ 목사가 이 방에서 조사받았고, 요 계단을 올라가다 죽었다”면서 겁을 줬다고 하며, 열흘 정도 지나서 혼방되었다고 한다. 허○○는 조사 당시 동향 거제도 출신의 대공과장 윤성태 중령을 기억하였다.<sup>256</sup>

#### 마) 기타 사건

고 임○○ 목사는 1980년 당시 제일감리교회 목사로 197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에 앞장

254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5.26).

255 5·18조사위, 「이○○ 진술조서」(2022.8.9).

256 5·18조사위, 「허○○ 진술조서」(2022.8.8).

서 왔으며, 이 때문에 항상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다고 한다. 임○○ 목사는 1980년 7월 19일 부산합수단에 출두하여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을 수사받던 중 7월 21일 의식을 잃고 보안대 인근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7월 26일 사망하였다. 합수단 측은 조사를 다 받고 돌아가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했지만, 간호사 출신인 임○○ 목사의 아내는 고인의 왼편 뒷머리에 3센치 정도의 상처와 구타 흔적을 분명히 확인하였다고 한다.<sup>257</sup>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1)에서 이 사건(임○○ 사망 사건, 진정 47호)을 다뤘으나, 부산합수단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sup>258</sup>

또 다른 사건으로 참고인 김○○은 치과 기공사였는데, “광주사태의 실제 사망자 수는 3,000명이며 계엄군끼리 총격전이 벌어져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등의 언사로 기소되었다.<sup>259</sup> 참고인 김○○은 한양대생으로 부산의 주점에서 “광주에서는 데모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있느냐” 등의 발언으로 기소되었다고 한다.<sup>260</sup>

## 2) 경남지역

### 가) 개요

경남대(마산), 마산대(마산), 경상대(진주) 등에서 있었던 경남지역의 민주화운동은 학내 민주화운동에서 비상계엄해제, 노동3권 보장과 같은 주제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학원 소요 관련자들은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예비검속되었다. 이후 유인물 배포사건 등 관련자도 연행되었다. 특히 마산지역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하여 연행, 구금된 경우

257 5·18조사위, 「고 임○○ 목사의 아들 임○○ 진술조서」(2022.6.22.)

258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백○○ 진술조서」(2001.5.29.), 「구○○ 진술조서」(2001.5.31.) 등의 기록이 있으나,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59 제2관사보통군법회의, 김○○, 김○○의 「공소장」

260 5·18조사위, 「참고인 김○○진술조서」(2022.10.6.).



1980년 5월 학원소요와 별개로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에 예비검속되었다.<sup>261262</sup>

1980년 5월의 학원소요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당시 502보안부대(위장명‘해양공사’)에 설치된 경남지구합동수사단(마산 죽전 보안대)에 의해 연행, 구금되었다. 진주에 위치한 경상대의 경우 진주경찰서, 진주 보안대로 연행 후 마산으로 이송되었다.<sup>263</sup> 조사는 김대중과의 관계 혹은 자금유용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264</sup> 경남지구합동수사단은 헌병, 경찰 등이 차출되어 운영되었으며 연행,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주도하였음을 확인하였다.<sup>265</sup> 조사 종료 후에는 1980년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3일간 제39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고 이후 버스로 경남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풀려났다고 한다.<sup>266267</sup> 또한 경남합수단에서 제39사단 헌병대 영창으로 이송된 경우, 최소 일주일 이상 목봉체조, PT체조, 영창 철창에 매달리기 등 순화교육이 있었고 이후 헌병대에서 풀려났다고 한다.<sup>268</sup>

### (1) 마산지역 학원소요 관련 사건(경남대, 마산대)

마산지역은 부마민주항쟁에 이어 1980년 5월 역시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다. 경남대

261 5·18조사위,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7.25.), 「박○○ 진술조서」(2022.8.9.).

262 보안사령부(1983), 「배○○」

263 5·18조사위,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9.2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11.23.).

264 5·18조사위, 「참고인 옥○○ 진술조서」(2022.10.21.), 「신청인 이○○ 진술조서」(2022.6.15.), 「신청인 하○○ 진술조서」(2022.6.15.), 「참고인 박○○진술조서」(2022.7.25.), 「박○○ 진술조서」(2022.8.9.), 「김○○ 진술조서」(2022.7.20.),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9.26.).

265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손○○ 서면조사」(2023.11.2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7.20.), 「참고인 옥○○ 진술조서」(2022.10.21.).

266 2군사령부(1980), 「2군상황일지」, 69쪽. “6.2.데모 주도학생 입영 훈련 동향. 경남지역 데모 주동 학생 45명(경남대 15, 마산대 9, 경상대 3)은 80.6.1.~6.3. 11:40(2박 3일) 간 제39사단 신교대에서 훈련 중에 있음.”

267 5·18조사위, 「참고인 김○○ 진술조서」(2022.7.20.), 「신청인 이○○진술조서」(2022.6.15.).

268 5·18조사위, 「신청인 하○○ 진술조서」(2022.6.15.),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2.7.25.), 「박○○ 진술조서」(2022.8.9.).

와 마산대는 총학생회 부활과 함께 그를 중심으로 학내 및 가두시위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평화적 시위를 지향하였다. 1980년 5월 17일 직전 계엄당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주요 학생들은 피신하기로 하고 은신하였으나, 곧 주변인에 대한 압박이 있으면서 이내 자수하거나 검거되었다.

옥○○는 경남대 74학번으로 군 전역 후 복학하여 1980년 당시 행정학과 3학년으로 경남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학생회 출범을 이끌었다고 한다.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체포를 피해 거제도로 피신했다. 열흘 정도 후 거제도로 찾아온 마산경찰서 편상철 형사와 보안대 중사에게 체포되어 죽전 보안대로 연행되었다. 옥○○는 보안대 건물 뒤편 막사에 있다가 호명되면 보안대 건물 지하로 끌려가 취조를 받았는데, ‘북한이나 일본에 다녀왔는지, 김대중에게 돈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당하며, 회전판에 묶여 각목으로 구타당하고, 막사에 있을 때는 개머리판 등으로 구타당했다고 한다. 이후 보름 정도 있다가 경남대 윤○○ 학장이 찾아와 설득하여 보안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학교에서는 무기정학을 받았다고 한다.<sup>269</sup>

김○○는 1980년 당시 마산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으로, 1980년 5월, 3·15의거탑, 마산역 등 가두시위 당시 시국선언 및 낭독과 선봉에서 북을 치며 마산대학교 학생들이 이끌었다고 하며, 5월 24일 수산리에서 손○○, 편○○ 등 수사관 4인에게 체포되어 손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눈이 가려진 채 502보안대(해양공사)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그는 보안대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자마자 몽둥이로 사정없이 구타당했다고 하며, 이후 간첩이냐고 물으며, ‘김대중과 어떤 관계인지, 김대중 돈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받으며 몽둥이로 계속 맞았다고 한다. 그곳에는 이○○, 이○○, 임○○ 등의 동료도 있었고, 대학생 30여 명과 민간인 20여 명 정도가 벽을 보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헌병들이 졸면 개머리판으로 구타했으며, 특히 많이 맞은 동료는 똥을 싸기도 했으며, 나중에 정신이 이상한 것을 목격

269 5·18조사위, 「참고인 옥○○ 진술조서」(2022.10.21).

했다고 기억했다. 이후 제39사단 영창으로 이송되어 낮에는 PT체조를 하고, 밤에는 철장에 매달리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3일 정도 있다가 C급으로 분류되어 연행 11일쯤 후인 6월 초에 훈방되었다고 한다. 김○○은 보안대에서 군화발에 차여 왼쪽 귀에서 피가 났는데, 이후 병원에 다녀도 그 귀가 안 들린다고 하였다. 또한 정교사 2급 자격이 있는데도 교사가 될 수 없었고, 경찰의 사찰로 가족의 고통이 매우 심했다고 하였다.<sup>270</sup>

## (2) 진주지역 학원소요 관련 사건(경상대)

진주에 위치한 경상대는 총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이후 총학생회 직선제 개편에 성공하였다. 1980년 5월 시국선언문 낭독, 가두시위 등을 전개하며 성토대회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총학생회 간부들이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이 외에 연세대에서 공유받은 유인물을 배포하다 적발되어 사법처리된 사건도 있었다.<sup>271</sup>

김○○은 1980년 당시 경상대 외국어교육학과 2학년으로 1980년 5월 12일 열린 시국 성토대회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였고, 시위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경상대는 5월 13일 휴교령이 내려서 김○○은 고향인 남해로 내려갔다. 열흘쯤 후 성명불상의 형사가 이름을 물으며 체포한 후 지프차에 태워져 경남 보안대 진주분실로 연행되었다고 한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총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넣고 발로 밟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후 진술서를 쓰고 진주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곳에는 총학생회 간부 등 20~30명 정도가 구금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3일 정도 후 마산 죽전 보안대에서 1~2일 있다가 제39사단 헌병대 유격장에서 유격훈련과 정신교육을 받고 훈방되었다고 한다. 이후 학교로부터 무기정학을 받았고, 1981년 3월 학교로부터 직권휴학처분을 받고

270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2.7.20).

271 제2관사보통군법회의, 피고인 김○○, 김○○의 「공소장」.

특수학번자가 되어 강제징집되었으며, 군대에서도 보안대의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sup>272</sup>

### 3. 소결

이 사건 조사 결과, 신군부는 1980년 5월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 방안」,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 「권력형부정축재자 수사계획」 등을 마련한 후,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검토·추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계획에 따라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전국적으로 학생·정치인·재야인사의 체포를 시작하였다. 이에 저항하며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을 강경하게 진압하여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광주외 참상을 알리거나, 신군부의 집권에 저항하는 국민을 체포, 연행, 구금한 후에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 등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직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결재받은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 보고」 문건을 보면, 재야세력과 시위학생 등을 ‘국가기반 문란사범’으로 규정하고, ▲ 체포 대상자를 과거 행적에 따라 선별하고, ▲ 전 대상자 동시 신병 확보하여 조사 착수할 것, ▲ 시행 최단 시간 내에 목표 달성이라는 방침을 세워 전격적이고, 광범위하게 전국의 모든 김대중 관련 인사, 재야인사, 반정부 전력의 복학생, 학생운동 지도부, 긴급조치 위반 전력자 등을 예비검속으로 체포, 연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과제별 조사 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첫째,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조사 결과, 전국의 김대중 관련자에 대한 체포·연행과정에서 협박과 구타 등의 강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 연행 이후 구속영장 발부 등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장기 구금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는 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은

272 5·18조사위, 「김○○ 진술조사」(2022.11.23.).

상태에서 회유와 협박뿐만 아니라 구타와 고문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확인되었다. 재판과정에서는 보안사가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정동년 등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김대중과 5·18민주화운동을 연계시키려 했다는 것도 합동수사본부 기록과 진술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신군부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김대중과 그를 추종하는 불순분자의 사주와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낙인을 찍어 폄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광주·전남 지역의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 이 사건 관련자들은 예비검속,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발생한 연행, 구금과정, 전남합수단 수사과정, 현병대 구금과정, 교도소 재소기간 등에서 발생한 구타와 기합, 고문, 협박과 회유, 혐의 조작, 강제 순화교육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이들은 구속영장 없이 최소 3일에서 3개월 이상 불법 구금을 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장소는 주로 전교사 현병대 조사실과 영창, 505보안대 등이었지만, 이외에 전남대, 국군광주통합병원 지하실, 제31사단 영창, 경찰서 유치장, K-57 공군 현병대 영창, 목포 지산부대, 화순경찰서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5·18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관련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보안사령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처리하였다. 또한 이들의 사법처리를 위해 기소 죄명을 '내란'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해 수괴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남합수단 내부 논의가 있었다. 포고령 위반으로 조사했던 사건인데 내란으로 처리된 사건들이 있었다는 당시 수사관의 진술도 확인하였다. 이렇게 '내란'으로 처리하기 위해, 또는 '김대중과의 연계'를 위해 이 사건 관련자들은 협박과 구타, 고문을 더 당해야 했다고 한다. 몽둥이와 군홧발 등으로 때리고 짓밟는 구타 외에 고문의 사례는 실로 다양해서, 수건을 얼굴에 덮고 고춧가루 물 붓기, 전기고문, 송곳 등으로 찌르기, 매달고 때리기 등 갖가지 고문 기술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인권침해 가해자와 관련하여, 전남합수단 경찰들은 지역에 같이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가혹행위를 차마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를 당한 참고인들은 지역 경찰이 오히려 더 극심한 구타와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교사 헌병이나 육군 범수단 파견 수사관들도 가혹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가해자들의 성명이나 계급, 소속 등과 그들이 행한 가혹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일치하는 진술을 다수 확인하였다.

셋째, 전북지역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 주요 사건으로는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동시에 전북대에 진입한 제7공수여단에 의해 학생회관에서 농성 중이던 학생들 중 33명이 체포되었고, 이세종 사망 사건 등이 확인되었다. 체포된 학생들은 전주경찰서와 제35사단 헌병대로 이송되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예비검속과 관련하여 전북지역에서는 5월 18일 46명이 수배되어 6명이 체포되었다. 이후 모두 체포되거나, 자수하였다. 이외에 성지야학에서 ‘광주살육작전’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 5월 27일 신흥고에서 광주 참상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대학생 시위 배후조종 혐의로 전북대 교수들이 연행되어 해직된 사건 등이 있었다.

한편 박창신 신부 테러 사건은 1980년 6월 25일 발생했다. 여산성당 박창신 주임신부는 1980년 5월 21일 천주교 ‘긴급 사제단 회의’에서 소위 ‘김현장 유인물’을 배부받고, 추가로 인쇄하여 이를 여산성당 산하 9개 공소에 배포하였다. 또한 성당과 공소에 앰프를 걸어놓고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살육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등의 강론을 하였다고 한다. 6월 25일 23시 20분경 여산성당에 짧은 머리의 괴한 4명이 난입하여 쇠 파이프를 휘둘렀고, 박 신부는 이 사건으로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다.

이세종 사망 사건은 ▲ 유○○은 이세종과 1층으로 내려가다가 2층으로 올라오는 계엄군과 마주친 후 이세종이 3층 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봤고, ▲ 이○○은 3층에 있다가 도

망치는 이세종과 그를 쫓는 계엄군 3명과 마주쳤다. 그때 이세종이 무릎을 진압봉으로,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맞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본인은 진압봉에 맞아 2층 농성장으로 끌려가서 이후 상황을 모르며, ▲ 이○○은 맨 처음 학생회관에서 잡혀 건물 밖으로 혼자 끌려 나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을 때, 학생회관의 북쪽 스쿨버스 승강장에서 세찬 물 뿌리는 소리 같은 ‘짜아악’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였다. 다만 이러한 진술 외에 다른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공수여단 31대대원 12명, 전주 보안부대 간부 3명에 대해 대면조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이세종의 시신에서 확인된 골절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확실한 조사 결과로 내세우기 힘들었다.

넷째, 서울·경인 지역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 각 대학 총학생회 간부나 복학생,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한 예비검속 사건, 광주 참상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사건 등이 확인되었다. 가해사실 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연행자들이 합동수사본부 수사5국 또는 각 경찰서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당했다. 장소나 가혹행위 방식 등에 대한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수5국 수사관들이나 경찰관들은 이를 모두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심지어 본인이 수사하고 작성하여 날인한 당시 수사기록(진술조서)을 제시하여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이를 부인하였다. 다만 일부 조사대상자들은 일명 통닭구이 등 고문하며 조사할 때 옆에서 붓을 잡아주는 등의 보조 정도만 했다거나, 또한 피해자 설훈이 성북경찰서에서 1차 조사 후 합동수사단 5국으로 인계될 시 구타, 가혹행위, 고문 등으로 인해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인수거부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등을 하여,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은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충청지역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 충남대, 목원대, 공주사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충북대, 청주대, 청주사대 등의 총학생회 간부와 복학생들에 대한 예비검속 사건이



다수 있었다. 이외에 청주 도시산업선교회에서 광주 참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사건 등이 확인되었다. 기록조사를 통해 확인한 충청지역 예비검속 대상자는 총 207명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자택 등에서 체포되어 각 지역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조사과정에서는 충남합수단과 충북합수단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모두 제32사단 헌병대 영창에 수감되었다가 군사재판에 회부되거나, 훈방자는 제32사단 포병단에서 순화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훈방이나 석방된 사람들 일부는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이나 사찰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연행 직후 각 경찰서에서 구타 등을 당하며 신원확인 등 기본적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충남경찰국 대공분실, 충남·북 보안대 지하실 및 합수단으로 이송되었다. 보안대 등으로 인계된 직후에는 지하실로 끌려가 우선 군복으로 환복을 시킨 후, 인적불상 수사관 등에게 곡괭이 자루,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였다. 그 이후 보안대나 합수단 조사관이 들어와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진술서를 검토한 이후 거짓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 등을 가했다고 한다.

여섯째, 강원지역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 1980년 5월 당시 강원지역에는 4개의 합동수사단이 존재했는데, ① 춘천지구합동수사단, ② 원주지구합동수사단, ③ 사북합동수사단, ④ 강릉지구합동수사단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사북합수단을 제외한 3개의 합수단이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함께 일제 예비검속에 투입되었다. 이미 5월 17일 23시경에는 지원 병력과 함께 각 대학에 진입하여 학생들을 연행하였다. 이어서 연행된 학생들은 각 지역 보안부대와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 등에 구금되었고 곧이어 합동수사단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강원대를 중심으로 강원대 예비검속 사건과 강원대 광주학살 유인물 살포 미수 사건 등과 관련한 주요 연행자들은 소요 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혐의로 구금되었다. 합동수사단의 조사 이후 일부는 기소되고 훈방대상자들은 일주일간의 이른바 '순화교육'

을 받은 뒤 풀려났다. 강원대의 체포 대상자들은 총학생회 간부 또는 ‘민중문화연구회’와 ‘인문학술회’ 등의 이념씨클 소속으로, 총학생회 간부들보다 오히려 이념씨클 소속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사재판에 기소되었다.

이들은 주로 춘천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과정의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를 공통적인 진술을 확인하였다. 조사내용은 학생시위를 하게 된 경위 전반을 묻고 결국 김대중의 자금을 받아 혹은 그의 사주로 일으킨 소요인지를 집중 추궁당하였다고 한다. 이 밖에 원주지역에서는 원주합수단이 주로 상지대 학생들을, 강릉지역에서는 강릉합수단이 주로 관동대 학생들을 연행하였다. 특히 관동대는 군 기록에 따르면 예비검속 대상자가 목표 28명이었으나, 검거 42명으로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두 지역 또한 춘천 보안대와 마찬가지로 가혹행위를 심하게 당했다.

일곱째, 대구·경북 지역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 1980년 대구·경북 지역은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를 중심으로 연합의 성격으로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다가, 경북합수단과 보안부대가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후 대구지역 시위 주동 학생들과 긴급조치 위반 전력자 등에 대해 대규모 예비검속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북합수단은 대구 일선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조를 꾸려 검거 대상자를 연행했는데, 연행 후에는 제50사단 내 향토관과 진격관이라 부르는 부대 내 강당 시설에 연행자들을 구금하였다. 그곳에서 제50사단 군인들이 구금자들을 관리토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고 한다. 구금자에 대한 수사는 경북합수단으로 이동하여 받기도 하고, 반대로 경북합수단에서 제50사단 진격관, 향토관으로 와서 수사하기도 하였다. 경북도경찰국 정보과 소속의 외청인 대공분실(이른바 ‘원대동 대공분실’)에서도 연행, 구금 및 수사가 이루어졌다.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제50사단으로 연행된 이들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진압봉과 개머리판으로 구타당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연병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부대 내 진격관으로 이동하여 계속 구타와 얼차려를 받았다고 했다. 그 이후에는 제50사단 보안대로 끌

고 가서 취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금자들은 그곳에서 팬티만 입은 채 별다른 조사도 없이 구타, 다리 사이에 각목 끼우고 올라타기, 페타이어로 만든 채찍으로 때리기, 얼굴에 수건 덮고 물 붓기 등을 당했다고 한다. 그중에 대구보안대(태백공사)로 이송되어 본격적인 수사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김대중 자금수수, 선배들과의 관계, 연합시위 관련 사항 등을 추궁받으며 계속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여덟째, 부산·경남 지역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 부산지역에서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부마항쟁 참여자 및 지역의 재야인사 등이 체포되어 엄청난 고초를 겪은 바 있었다. 5·17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인한 예비검속을 통하여 또다시 많은 수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복학생, 총학생회 간부, 재야인사 등이 연행, 구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군 기록에 따르면 부산·경남 계엄분소는 '1980년 5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학생소요에 관련된 학생 및 민간인 연행 조사 후 처리, 조치 또는 결과'관련, 학생 및 민간인 총 85명(구속 10, 이첩 10, 훈방 65)을 연행했다고 한다. 부산지역 인권침해사건으로는 부산대와 동아대의 예비검속 사건, 부산대 유인물(성전포고문) 배포사건, 동아독서회 집회 미수 사건, 민주현정동지회원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7월 19일 부산합수단에 출두하여 조사받던 부산 제일감리교회 목사 임○○이 7월 21일 의식을 잃은 후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된 후 7월 26일 사망한 임○○ 사망 사건이 있다.

당시 예비검속 등으로 부산 보안대(삼일공사)로 연행된 사람들은 그곳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해병대에게 개머리판과 군화발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구타와 좌우로 굴리기, 푸쉬업 500회 등의 기합 등도 있었다고 하고, 취조 시에는 구타와 함께 전기고문 위협, 주전자 물 담아 얼굴 뒤로 하고 물 붓기 등을 당했다고 한다.

경남대와 마산대(마산), 경상대(진주) 등에서도 총학생회 부활과 함께 학내 및 가두시위가 진행되었다. 예비검속이 시작되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총학생회 중심으로 검거되었다고 하며, 마산은 죽전 보안대, 진주는 진주 보안대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구금과정

에서 몽둥이와 개머리판, 군홧발 등으로 구타를 계속 당했다고 한다. 또한 이 지역은 훈방 이전에 제39사단 헌병대 유격장에서 순화교육과 정신교육을 받기도 했다.

위와 같이 전국 각 지역에서 1980년 5월 예비검속을 시작으로 수많은 정치인과 재야인사, 긴급조치 위반 전력자, 복학생, 총학생회 간부 등이 각 지역의 합수단 또는 경찰서에 연행,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협박, 구타, 기합,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대부분 영장 없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었던 이유는 대부분 1980년 당시 신군부의 집권 음모에 광주를 포함한 전국의 학생들과 연대하며 저항하였고, 5·18민주화운동이 진행되거나 또는 계엄군의 강경진압으로 무참히 끝난 후에도,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제작·살포하고, 시위를 계획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당시 연행·구금자의 일부는 조사과정에서 사망하기도 하였고, 상당수는 당시의 가혹행위 등으로 평생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조사를 다 마친 후에도 훈방자는 군부대에서, 기소자는 교정기관에서 강제 순화교육을 받아야 했다. 대부분 연행 이후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강제로 입대하였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또한 1990년대까지 정보기관의 사찰을 받아야 했고, 사회적으로도 빨갱이라며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많았으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5·18조사위의 진술조사과정에서 대부분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40여 년 전 겪었던 가혹행위 등을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하며 괴로워하였고,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제2절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탄압

### 1. 조사 배경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권력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탄압 행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으로 국한되지 않았다. 사망자 유가족과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은 5·18민주화운동 이후에도 경찰 및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사찰, 감시, 연행의 대상이었으며,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약되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많은 인사들은 내란죄, 계엄법 위반 등으로 오랫동안 수배 상태로 지내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고 취업이 제한되거나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는 사례도 빈번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이러한 인권탄압 행위는 신군부 내란집단이 집권한 전두환 정권 7년에 걸쳐 매우 강압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시·사찰하였으며, 망월동 시립묘지에 묻힌 희생자들의 유해를 다른 곳으로 분산,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반인도적 공작을 실행하였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자 배상 등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되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되기도 하였다.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민주정부 체제로 이행하였으나, 내란집단의 주역인 노태우가 집권하고 신군부 세력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었다.

이 조사보고서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노태우 정권 기간에 발생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진상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 8월 6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7차례의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보상 대상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5·18관련자’라고 한다)’의 범위를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로 제한하였기<sup>273</sup> 때문에, 피해 조사 범위 역시 ‘사망, 행방불명, 상이’와 관련된 육체적 희생과 피해로 국한되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공백을 채우려는 시도이며, 국가폭력에 의한 5·18피해자에 대한 인권탄압의 실상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과제는 ‘5·18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단체 탄압사건’, ‘5·18피해자 수배·학사징계·해직 사건’, ‘5·18피해자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사건’이다.

각 사건의 피해자들은 5·18이 전두환 등 군사반란 및 내란 범죄자들의 범행에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사회적 조치가 마련되기까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제반 자유와 권리가 지속적으로 제한되거나 침해받는 등 2차적 인권침해의 고통과 불이익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40여 년 동안 5·18민주화운동의 정치적 쟁점이나 사건의 전개 과정 등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정작 피해자 개인이 겪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5·18관련자’의 범위가 신체적 상이와 관련한 피해에 국한되어 정신적·사회경제적 피해 등 포괄적인 기본권 침해는 주목하지 않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5·18조사위는 각 사건의 1) 사건 발생의 배경과 경위 2) 지시 및 계획 입안 3) 관계 기관의 역할과 집행 체계 4) 사건 전개 과정 5) 피해 실태 6) 위법사항 및 문제점 등을

27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90.08.06.)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계적으로 조사해 5·18피해자 탄압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안)은 2023년 12월 23일 제114차 전원위원회에 진상규명 의견으로 상정되어 표결(6:2)로 원안 의결되었다.<sup>274</sup>

## 2. 조사 결과

### 가. 5·18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단체 탄압사건

#### 1) 5·18 사망자 묘역 해체 공작 사건

##### 가) 개요

1980년 5·18광주민중화운동이 계엄군에 의해 진압된 후, 광주시는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와의 협의하여 민간인 사망자 126구의 유해를 망월동 시립공원묘지에 안장하였다. 사망자 유해가 집단으로 안치된 망월동 시립묘지 제3묘역은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과 비극적 사건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1981년 5월 18일 5·18유가족 등은 망월동 시립묘지에서 5·18 제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 후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 명이 연행되고 일부 유가족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다.<sup>275</sup> 1982년 5월 18일에는 제2주기 추모식이 망월동에서 합동위령제 형태로 거행되었다. 당일 오후 광주 시내 일부 교회와 성당에서 추모행사를 마친 후, 행사 참여자들이 가두로 진출하여 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시민 일부가 연행되었다.

망월동 시립묘지에서 추모행사가 개최되고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정부는 5·18망월묘역이 저항 투쟁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고 여기고, 망월 묘역에 묻힌 희생자들의 묘지를 분산, 이전하여 5·18망월묘역을 해체할 필요성을 인식하였

<sup>274</sup> 이 보고서에 대해 이종협, 차기환 위원은 소수의견을 제출하였다. 위원의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별책에 수록된 「국가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탄압사건」진상규명조사결과 보고서 해당 쪽 참조.

<sup>275</sup> 나간채, 2012, 『한국의 오월운동』, 한울아카데미, 83쪽.



다.<sup>276</sup>

전두환 정권은 1982년 9월에 망월동 시립묘지에 안장된 126기 전체를 5차에 걸쳐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이전시킬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이른바 ‘비둘기 시행계획’<sup>277</sup>이라는 위장 명칭으로 광주의 505보안부대 주도로 실행되었고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 한다) 경찰, 전라남도과 광주시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1984년 9월까지 26기의 묘지가 이장되고 종결되었다.

이 계획은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직접 묘지 이전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기재된 공적 문서가 있고,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와 안기부 등 공안기관과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등의 주도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구상 단계에서부터 정치적 공작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나아가 국가폭력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5·18유가족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사건이었다.

## 나) 묘지 이전 계획

### (1) 보안사령부의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행사가 격렬해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전두환 정권은 망월동 묘지 해체가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보안사 주도로 1982년 9월에 묘지 이전계획을 수립했다. 5·18조사위가 확보한 보안사 작성 ‘유족묘지

276 국군보안사령부(1982),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 3쪽.

277 “비둘기 시행계획”은 1983년 2월부터 보안사령부가 실행한 망월묘역 해체 공작의 일환으로 1차 광주 외 시·군 지역 연고 11기를 대상으로 한 묘지 이전계획을 말한다. 비둘기 시행계획은 단계별로 추진되었으며, 연고자 11명의 정밀 배경 조사, 순화 책임자에 대한 소집 및 교육, 순화 결과 종합 판단에 따라 공원묘지 관리소 운영 등 이전 작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강구하였다.

이전대책 보고'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sup>278</sup>

“ '82.5.18. 저항세(抵抗勢)가 유족묘지에서 2주년 행사 등 동 묘지를 저항투쟁 전진기지화로 악용”

“향후 항구적인 지역안정을 위해 국가 존립을 해친 '광주사태'의 유형적인 잔흔(殘痕)인 유족묘지에 대해 분산 조치가 요망됩니다.”

5·18조사위는 상기 문서에서 보안사가 우선 3가지 안을 마련해, 지역 유력인사 33인의 의견수렴 형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3안을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3안은 지역 정서와 유가족 반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하되, 결국 묘역 전체를 1983년 4월 안에 해체하는 계획이었다. 동 문서에 기록된 이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sup>279</sup>

- 1안: 전부 이전 - 유족묘지에 대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이전 추진
- 2안: 부분 이전
- 3안: 단계적 부분 이전 - 유족의 자율 이전 유도 등

#### ○ 각계 지도층 인사 반응도 측정

- 설문대상: 33인 각계 지도층 인사(명단 별첨)
- 설문기간: 1982. 7.1.-7.15.(2주간)
- 설문방법: 설문 면담 반응 측정
- 설 문 자: 505보안부대장 이용린
- 설문결과: 3안 32명, 1명 이전 반대
- 공통반응: 지역안정을 위해 유족묘 배제 바람직,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278 국군보안사령부(1982),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 3쪽.

279 국군보안사령부(1982),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 9~11쪽.

○ 3안 이전계획 방침

- 전라남도가 이전 시행 주관, 505보안부대가 유족 순화 전담
- 가칭 <새전남건설협의회> 결성, 유족 순화 대책 병행 실시
- 1:1공작적인 차원에서 유족을 설득한 후 단계적 이전 촉구
- 이전 기간
  - 1단계(시행 준비): 1982. 8.-10.(3개월)
  - 2단계(순화 및 이전): 1982. 11.-83. 4.(6개월)
- 시행 관련자
  - 시행주관: 새전남건설도민협의회
  - 시행지원: 광주시장 2급 김양배
  - 순화지원: 505보안부대장 대령 이용린<sup>280</sup>

○ 이전방법

- 분산 이전 원칙
  - 무연고분(11기): 화장(납골당 안치)
  - 선산 소유분(22기): 선산
  - 타 시·군 연고분(36기): 각 시·군에 이전
  - 광주 연고분(47기): 인접 시·군 배정 분산
  - 타 도분(10기): 해당 도 이전

이 문서에서 확인한 묘지 이전 계획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이 계획이 마치 광주 지역사회의 실제 여론인 것처럼 조장하기 위해 지역 지도층 인사들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둘째, 망월동의 희생자 묘역이 지역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처럼 왜곡해 희생자

.....  
<sup>280</sup> 이용린은 1981년 12월부터 1982년 6월까지 광주 505보안부대장으로 재직하고 1982년 6월부터 1985년 5월까지 국정원 광주분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이용린은 2022.05.26., 2023.10.11., 2023.10.23., 3차례에 걸친 본 5·18조사 위와의 면담에서 '망월동 5·18희생자 묘지이전'과 '광주전남지역개발협의회(이하, 전개협)'에 대해 "그건 본인이 아이디어를 냈고 전개협 발족을 주도했으며 기금 모금도 적극적으로 조성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유족과 피해자들을 광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 했다.

셋째, 실제로는 505보안대가 묘지 이전계획을 주도했지만, 관변단체인 (가칭)‘새전남 건설도민협의회’를 실행 주체로 내세워 묘지 이장이 마치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위장했다.

## (2) 묘지이전 계획 변경

1982년 9월에 보안사가 수립한 이장계획에 의하면, 126기를 5차에 걸쳐 사망자 연고지로 이전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1차로 타 시·도에 연고가 있는 9기를 이전시키고, 2차로 자도(전남) 타 시·군 연고지 28기, 3차로 선산이 있는 32기, 4차로 광주시 연고 46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연고 11기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sup>281</sup>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일이 1983년 1월로 연기되었고, 1차 이전 대상을 자도 타 시·군에 연고가 있는 묘지 등 순화가 가능한 10명을 먼저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5·18 3주기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sup>28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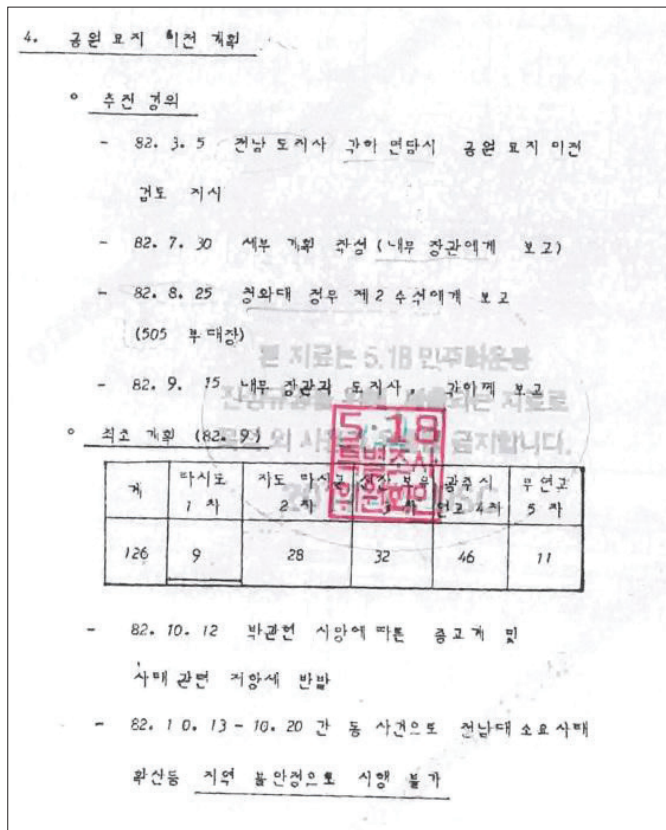
이러한 계획이 변경된 데는 1982년 10월 12일 수감 중에 의문사한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박관현 사건의 영향이 매우 컸다. 이른바 ‘광주사태’ 주범 중 한 명인 박관현은 1982년에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교도소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중 1982년 10월 12일에 사망하였다. 이 사건으로 전남대학교 등 광주 일원에서 10일에 걸쳐 시위가 발생하고 광주 시민사회도 적극 동참하자 보안사는 묘지 이전계획이 이러한 시위를 더 자극할 것으로 판단했다.

281 국군보안사령부(1983), 「광주사태관련 현황」, 『5·18행불자인정자가족회 해체유도(624보안부대)』 134~135쪽.

282 국군보안사령부(1983), 「비둘기 시행계획(1차 타 시·군 연고분)」, 『5·18행불자인정자가족회 해체유도(624보안부대)』, 401~409쪽.

다) 전두환의 직접 지시

5·18조사위는 보안사가 1983년 2월에 작성한 ‘광주사태 관련 현황’과 ‘광주사태 관련 치유상황 보고 동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당시 대통령 전두환(각하)이 묘지 이전 검토를 직접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sup>283</sup> (아래 <그림 5-2-1> 참조)



<그림 5-2-1> 공원묘지 이전 검토 지시

공원묘지 이전계획의 추진 경위를 작성한 이 문서에 따르면, 1982년 3월 5일, 전남도지사(김창식)가 각하(전두환)를 면담한 자리에서 공원묘지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83 국군보안사령부(1983), 「광주사태관련 현황」, 『5·18행불자인정자가족회 해체유도(610보안부대)』, 134쪽.

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 지시에 따라 전남도는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1982년 7월 30일 내무부 장관(노태우)에게 보고했고, 505보안부대장(이용린)은 8월 25일 청와대 정무2수석에게 보고했으며, 내무부 장관과 도지사는 9월 15일에 각하(전두환)께 보고했다.

### 라) 묘지 이전 공작과 (사)전남지역개발협의회

사단법인 전남지역개발협의회는 505보안부대가 1982년 8월 묘지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안기부가 제안한 ‘새전남건설도민협의회’ 설립안을 수정·변경하여 설립한 단체다. 이 단체는 묘지 이장에 필요한 지역 여론 조성, 유족 설득, 위로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 단체의 발기인으로는 광주의 유력 기업체와 언론사 대표, 교수,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였다. 지역개발이라는 설립 취지와는 별개로 505보안부대와 안기부 광주분실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행했던 각종 공작의 대리 임무를 수행했다.<sup>284</sup>

5·18조사위 조사 결과, 보안사가 생산한 다수의 공적 자료에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회유와 압력 등 묘지 이전 공작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묘지 이전에 동의하고 이장한 유족에게 ‘전남지역개발협의회’로부터 1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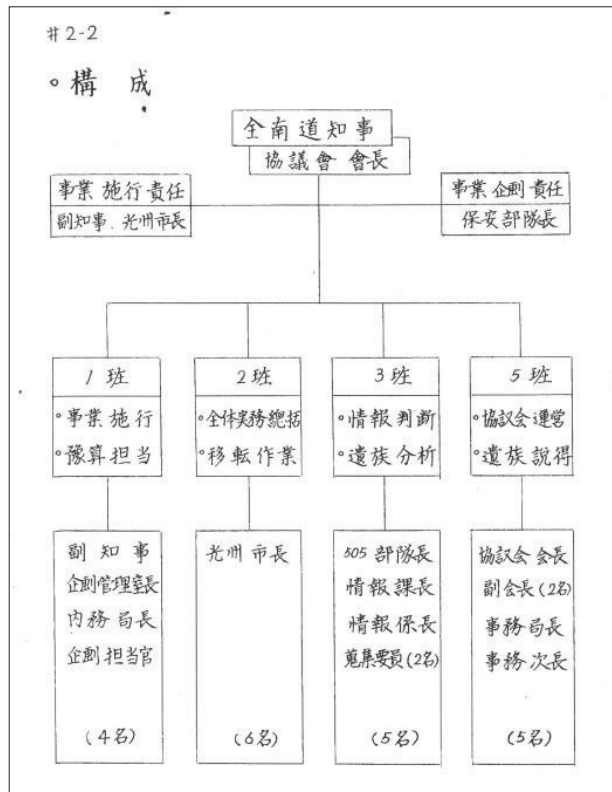
### 마) 비둘기 시행계획

505보안부대는 ‘비둘기 시행계획’이라는 위장 명칭으로 198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묘지 이전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5·18조사위는 505보안부대가 작성한 비둘기 시행계획(1

.....  
284 1982년 12월 15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사)전남지역개발협의회가 창립되었다. 그해 12월 30일, 내무부장관 제 82-2호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났다. 설립 발기인은 고광표(대창석유 회장), 권OO(변호사), 김OO(평통운영 위원), 김종태(광주일보 사장), 김OO(화가), 마OO(언론중재위원), 박건홍(전, 군수), 박OO(OO피혁 사장), 박OO(광주교속 사장), 박OO(OO대 교수), 박OO(전 OO일보 부사장), 임광행(보해양조 회장), 임OO(OO과의원 원장), 허진득(광주기독교병원장)이었다.

차 타 시·군 연고분) 문건을 입수하여 묘지 이전계획의 실행 주체와 기관별 역할을 확인했다.<sup>285</sup>

5·18조사위는 상기 문서철에서 ‘비둘기 시행계획’을 담당할 조직체계와 관련 기관별 역할을 확인했다. 아래 기구 구성에서 보는 것처럼 형식상 시행 주체를 전남지역개발협의회를 내세워 묘지 이전이 민간 주도로 시행되는 것처럼 위장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총 4개 반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남도와 광주시에서 10명, 보안부대에서 5명, 전남지역개발협의회에서 5명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아래 <그림 5-2-2> 참조)



<그림 5-2-2> 비둘기 시행계획 기구 구성

285 국군보안사령부(1983), 『비둘기 시행계획(1차 타 시·군 연고분)』, 『5·18행불자인정자가족회 해체유도(624보안부대)』, 401-409쪽.



1반	2반	3반	5반
○ 사업 시행 ○ 예산 담당	○ 전체 실무 총괄 ○ 이전 작업	○ 정보 판단 ○ 유족 분석	○ 협의회 운영 ○ 유족 설득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기획담당관	광주시장	505부대장 정보과장 정보계장 모집 요원(2명)	협의회 회장 부회장(2인) 사무국장 사무차장
4명	6명	5명	5명

505보안부대는 유가족 생활실태 등 정보를 분석해 이장 동의를 얻기 쉬울 것으로 판단되는 ‘1차 공작 대상자’ 11기를 선정해 공작을 추진했다. 이 문서는 유가족이 이장에 동의하는 과정을 “순화(醇化)”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순화의 단계별 과제와 담당 기관별 역할은 아래와 같다.

〈표 5-2-1〉 순화작업의 단계별 계획 및 담당 기관

단계별	시행 내용	담당기관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고자(11명) 정밀 배경 조사</li> <li>조사 자료를 통해 신원 및 환경 분석</li> </ul>	505보안부대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화 책임자에 대한 소집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시행계획의 배경 설명</li> <li>- 순화 방향 및 시행 요령</li> <li>- 유의 사항 등</li> </ul> </li> </ul> </li> <li>현장 시장, 군수 직접 책임하에 1:1 정밀 순화</li> </ul>	전남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화 결과 종합 판단에 따라 시행</li> <li>공원묘지 관리소 운영, 장의사 용역 체결</li> <li>이전 작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 강구</li> </ul>	전남도 505보안부대 전남지역개발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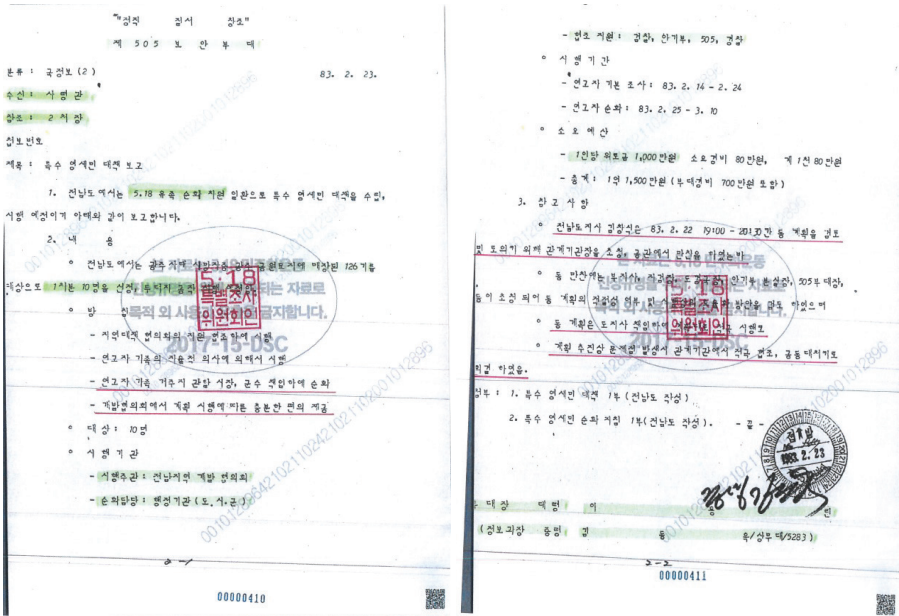
#### 바) 묘지 이전 회유 공작

묘지 이전은 유가족의 동의와 협조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505보안부대와 안기부는 물론이고 각급 행정기관이 동원되어 ‘순화’작업을 실시했다. (아래 〈그림 5-2-3〉 참조)

5·18조사위는 당시 관련 기록에서 505보안부대 등 사찰기관이 유가족을 직업별로 분

류하고 활동 성향에 따라서 ‘극렬’, ‘온건’으로, 그리고 극렬은 다시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서 38명의 유족을 집중 순화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sup>286</sup> 이 ‘순화’의 목적은 단순히 묘지 이전 공작의 실행에 국한되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단체를 결성해 진상규명과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등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정치 세력화되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강구된 것이었다.

5·18조사위는 당시 생산된 문서에서 505보안부대가 유가족 순화공작을 전담했음을 확인했다. 기무사령부가 보관하고 있는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계획 수행을 주관하며, 505보안부대는 유족 순화에 대해 전담”이라고 언급되어 있다.<sup>287</sup> 또한 “1대1 공작적 차원에서 유족을 설득한 후 결과에 따라 단계적 이전을 촉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림 5-2-3〉 특수 영세민 대책 (5·18유족 순화 차원) 공문 사본

286 국군보안사령부(1983), 「광주사태관련 현황」, 『5·18행불자인정자가족회 해체유도(610보안부대)』 131쪽.

287 국군보안사령부(1982),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 9쪽.

이들은 묘지 이전 공작 대상자로 선정된 유족이나 연고자 중에 공무원, 교사, 군인과 같은 공직자의 경우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공작에 이용했다. 5월 27일 사망자인 서호빈의 형 서○○은 5·18조사위 조사에서 당시 부친이 현직 교사였기 때문에 이장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sup>288</sup> 사망자 김병연의 모친 이○○도 남편이 공무원 신분이어서 이장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돌아올 수 있는 ‘보복’이 두려워 이장 요구에 응했다고 진술했다.<sup>289</sup> 최초 총상 사망자 김안부의 부인 김○○은 남편을 잃고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전남지역개발협회의회의 위로금을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진술했다.<sup>290</sup> 사망자 김정선의 모친 박○○은 아들 유해를 고향인 고흥의 선산으로 이장했는데, 당시 가정형편상 전남지역개발협회의회의 회유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진술했다.<sup>291</sup>

#### 사) ‘묘지 이전 반대’ 탄압

5·18조사위는 유가족들이 묘지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고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983년 3월 4일 사망자 민○○의 묘지가 최초로 이장된 사실을 알게 된 유족 30여 명은 1983년 3월 6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공용터미널까지 묘지 이전 중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다.<sup>292</sup> 1983년 4월 18일에 3기의 묘지가 추가로 이장된 것을 알게 된 유족들은 전남지역개발협회의회를 방문하여 강력히 항의하다가 유족회

288 5·18조사위, 「참고인 서○○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8.25).

289 5·18조사위, 「참고인 이○○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6.27).

290 5·18조사위, 「참고인 김○○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8.26).

291 5·18조사위, 「참고인 박○○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8.26).

292 「유족탄압사례 및 일지」, 『광주민중항쟁비망록』 남풍, / 「20년 투쟁사」, <http://518민주유공자유족회.com>.

회장 전계량을 비롯하여 15명이 연행되었으며, 전계량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풀려났다.<sup>293</sup> 1983년 7월 유족 대표들이 묘지 이전 중단을 요구하며 김창식 전남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다가 30여 명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그 후 묘지 이전 공작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1984년 9월까지 4회에 걸쳐 60여 명에 달하는 유족들이 연행되거나 타 지역으로 강제로 소개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sup>294</sup>

묘지 이전 공작은 1983년 3월 4일 민○○ 묘지 이장을 시작으로, 유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1984년 9월 22일 김○○ 묘지 이장을 끝으로 중단되었고 총 26기가 타 지역으로 이장되었다. 5·18조사위는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가 조사한 망월묘역 이장자 명단을 입수하였고, 이어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와 광주시립공원묘지관리사무소의 묘적부 자료를 입수, 분석하여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sup>295</sup> 이 26기는 나중에 국립5·18민주묘지에 재안장되었다.

## 아) 요약

### (1) 5·18망월묘역 해체 공작을 주도한 주체

보안사 예하 505보안부대가 계획의 입안과 실무작업 등 실질적인 실행 주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5·18조사위는 대통령 전두환이 이러한 계획 검토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했다.<sup>296</sup>

293 「유족탄압사례 및 일지」, 『광주민중항쟁비망록』 남풍, / 「20년 투쟁사」, <http://518민주유공자유족회.com>.

294 「유족탄압사례 및 일지」, 『광주민중항쟁비망록』 남풍, / 「20년 투쟁사」, <http://518민주유공자유족회.com>.

295 5·18조사위는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묘적부 사본[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1310(2023.05.26)]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묘적부 사본[영락공원관리팀-1053(2023.05.23), 1793(2023.08.31)]을 입수하여 ‘망월묘역 이장자 명단’(광주CBS 박준일 기자, 1991, 월간(말) 5월호)과 대조 분석한 결과, 26기의 이장 기록을 확인하였다.

296 국군보안사령부(1983), 「광주사태관련 현황」, 『5·18행불자인정자가족회 해체유도(610보안부대)』, 134쪽.

## (2) (사)전남지역개발협의회 설립과 역할

505보안부대는 묘지 이장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1982년 12월 15일 (사)전남지역개발협의회를 발족시켰다. 505보안부대는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사)전남지역개발협의회를 통해 이장하는 유가족에게 1천만 원의 보상금과 이장비를 지급했다.

## (3) 묘지 이전 규모

5·18조사위는 5·18유족회의 증언과 기록 확인을 통해 1983년 3월에서 1984년 9월 사이에 총 26기의 묘지가 이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26기는 후에 ‘국립5·18민주묘지’에 재안장되었다.

## (4) 인권침해

505보안부대 등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묘지 이전을 회유하고 강요하였으며<sup>297</sup>, 묘지 이장에 반대하는 유족들을 불법적으로 연행, 구금, 격리하는 등 다수의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음을 유가족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유가족들은 가족을 ‘애도할 권리’를 봉쇄당한 것이다.

.....

297 사망자 서호빈의 형인 참고인 서○○은 5·18조사위와의 면담조사(2022.08.25.)에서 동생이 사망한 후 당시 초등 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자식을 두 번 죽이는 것 같다.’며 이장을 안 하고 싶다 하셨는데도 수사기관에서 빈번하게 찾아오고 시청(국장)과 교육청 쪽을 통해 ‘이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표를 내라.’는 식의 압박에 결국 이장을 하게 되었는데, 공동묘지 돌발에다 묻히게 되니 원통한 마음에 그곳에 온 시청 직원에게 죽인다고 낫을 들고 쫓아다녔다고 진술했다.

## 2) 5·18피해자 단체 탄압사건

### 가) 유가족 단체 탄압

#### (1) 초기 순화 공작(1981-1984)

전두환 정권 시절 가장 혹독한 고통을 겪은 이들은 166명에 달하는 사망자 유가족이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1980년 5월 29일 합동장례식이 치러진 후 1980년 5월 31일 ‘5·18광주의거유족회’를 창립했다. 이 단체는 나중에 공안기관의 지속적인 회유와 와해 공작으로 내부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매년 추모행사를 주도하는 등 사실상 5·18 피해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발전했다.

5·18조사위는 505보안부대가 1982년 초에 유가족 순화계획을 세우고, 이의 실행을 위한 단계적인 공작에 착수했음을 확인했다.<sup>298</sup> 상기 문서는 유가족 순화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목적: 불법 극렬 저항조직인 동 유족회를 순화·와해시켜 사태 2주년을 앞둔 광주권의 핵심적인 동요 진원을 배제함으로써 지역안정 정착 촉진.

이 문서에 따르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애도할 권리와 국가폭력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는 지역안정을 해치는 불법 극렬행위로 폄하되었고, 이러한 행위를 보안사는 ‘공작’ 차원에서 순화-와해시켜야 할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이 문서에서 보안사는 유가족 순화를 위한 공작 방침을 아래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공작적 차원에서 조직 와해
- 시혜 전체의 회유 지양
- 부당요구 조건의 일절 불허

298 국군보안사령부(1982),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 9쪽.

- 순화된 자부터 취업 알선, 편의 제공 등 간접 지원

나아가 보안사는 유족을 성향과 행동의 급진성 정도에 따라 A, B, C급으로 분류한 다음, 극렬 인물 30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순화공작을 실시했다. 5·18조사위가 보안사 문서에서 확인한 등급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sup>299</sup>

- A급: 대정부 강경 비판자, 여타 유족 선동 조종 행위자, 폭도 판정 유족으로 보상금 지원 요구자
- B급: 보상금 비수령자로 대정부 불만 포지자, 유족 임원 중 온건자, 문제 집회 참석 빈번자
- C급: 타의로 문제집회 참석 빈번자, 피동적인 자

5·18조사위는 공안기관의 유가족 탄압이 단순한 사찰이나 감시, 회유 등을 통한 순화공작에 그치지 않고, 강제력을 동원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유린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도 확인했다. 초기에 유족회를 이끌었던 정수만은 추모행사에서의 반미주의적 발언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었으며, 이른바 강경파로 분류된 전계량 회장은 1981년에서 1985년 사이에 최소한 30차례 연행되었다.<sup>300</sup>

사망자 이정연의 모친 구○○은 5·18조사위 조사에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은 거의 일상적인 일이었으며,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진상규명 농성을 하다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15일 동안 감금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sup>301</sup>

1980년 5월 22일 교도소 근처에서 사망한 최열락의 부인 송○○은 5·18조사위 조사에서 1980년 당시 합동수사본부가 남편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교도소를 습격한 폭도로 간

299 국군보안사령부(1983), 『광주사태관련 현황』, 『5·18행불자인정자가족회 해체유도(610보안부대)』, 131쪽.

300 5·18조사위, 「참고인 전○○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5.10.).

301 5·18조사위, 「참고인 구○○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3.11.29.).



주했으며, 그 후로도 자신과 가족까지 북한과 연계된 불순분자로 매도해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부가 자신의 남편을 친북 불순분자로 간주하자 송○○은 한동안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말할 수 없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하고 광주를 떠나 타지로 이사했다고 진술했다.<sup>302</sup>

사망자 안중필의 모친 이○○은 5·18조사위 조사에서 유족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시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으며, 이로 인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서 결국 임대료도 회수하지 못하고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했다.<sup>30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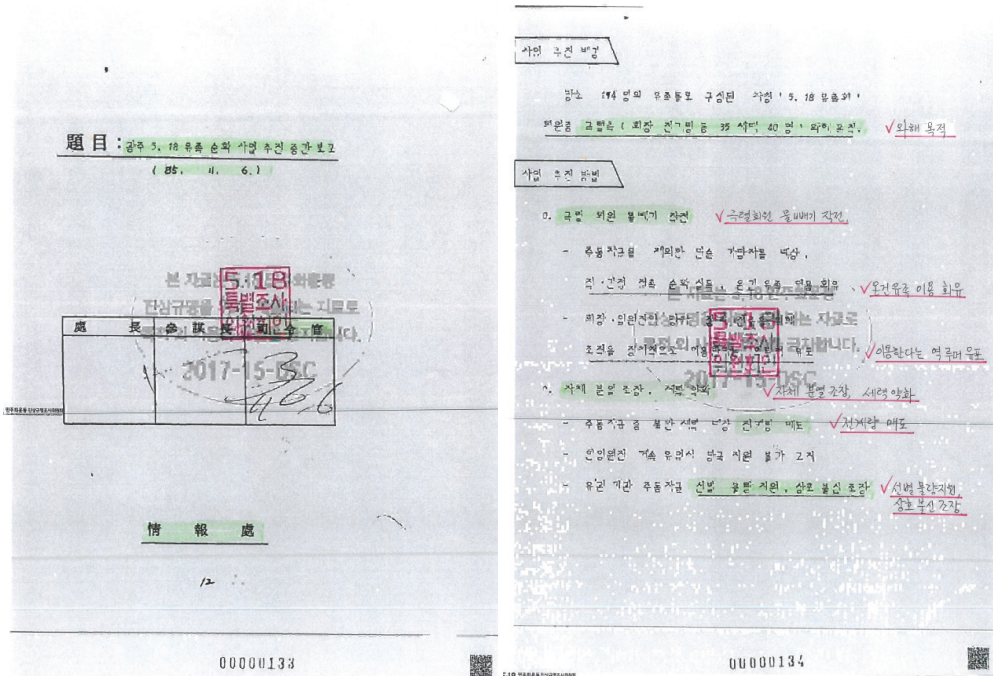
## (2) 후기 순화 공작(1985-1988)

5·18조사위는 유족 순화 및 유족회 와해 공작이 전두환 정권 후반부에 더 체계적으로 실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초기의 순화공작에도 불구하고 유족회가 와해되지 않고 더 활성화되자, 보안사는 유족회 내부 갈등을 유발시켜 유족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조직 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해 유족 내부에 협조망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5·18조사위는 보안사 정보처가 1985년에 작성한 ‘광주5·18유족순화사업 추진 중간보고’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sup>304</sup> 이 문서가 보안사령관까지 결재된 것을 보면 그 중요도가 짐작된다. (아래 <그림 5-2-4> 참조)

302 5·18조사위, 「참고인 송○○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3.11.30).

303 5·18조사위, 「참고인 이○○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6.17).

304 국군보안사령부(1982), 「광주5·18유족순화사업추진 중간보고」, 『유족묘지 이전대책 보고』, 133-135, 169-170쪽.



〈그림 5-2-4〉 유족 순화사업 추진 중간보고

이 문서에 따르면 유족회 회원 중 이른바 ‘극렬’ 6명은 각 인물 별로 공작을 담당할 요원을 배정하였으며 이들 요원은 공작 활동 내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했다. 이 공작은 505보안대 정보과장이 지휘하였는데, 1985년 1년 간 유족회 모임에 단순 추종 참여하는 임OO 등 15명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 및 면담을 통해 월례회 모임 불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극렬’ 유족으로 분류된 전계량 회장 등 6명에 대해서는 505보안부대 유OO 준위, 박OO 상사, 신OO 5급의 활동 요원에게 1대1로 밀착 감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족 중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협조망’ 구축 등의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특히 505보안부대와 경찰 등은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유족을 중심으로 이른바 ‘온건’ 유족회를 별도로 설립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5·18조사위는 관련 문서에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서 온건 유족들에게는 의료보험 카드 발급, 취업 알선, 자녀 학비 면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유족회 탈퇴를 지속적으로 권유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5·18조사위는 보안사 등에서 친·인척 중에 현역 군인이 있는 유족을 대상으로 유족 순화 및 유족회 와해 공작을 실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5·18조사위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보안사는 1986~1987년 사이에 군 관련 친·인척이 있는 6명의 유족에게 접근해서 유족회 탈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친·인척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을 예상한다면 보안사의 이러한 행태는 강요와 협박에 가까운 것이었다.

### (3) 유가족 인권탄압 사건 정리

1981년에서 1988년경까지 전두환 정권 기간에 사망자와 행불자 유족들이 어떤 탄압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표 5-2-2> 참조)

<표 5-2-2> 유족 탄압일지

년	월	사건	출처
1981	5	5.10, 박○○ 회장 사무실 현판식 무산	2
		5·18 1주기 추모행사, 추도사 낭독 정수만 유족, 경찰에 연행 구속	1,2
1982	2	4명 유족 연행 구금 - 이순자 내광	1
	7	7.18, 신태호 망언 40여 명 항의 방문, 8명 연행	2,3
		7.29, 신태호 면담 요청, 18명 연행	2,3
	12	유족 4명 총장로 진상규명 시위 - 전원 연행	1,2

년	월	사건	출처
1983	4	납치, 구금(대전, 현충사) - 전두환 내광	1
		4.18, 지개협 방문, 사무국장 '묘 이장 1천만 원 위로금 지급 확인', 광주경찰서, 유족회 회장 등 4명 출두 진술서 작성 강요, 이튿날 석방	2
		망월동 묘지 이장 저지 항의 - 15명 연행(3회)	1
	6	6.17, 공작에 넘어간 관제 유족 12명, 전계량 회장 폭행	2
	7	7.6, 전계량 회장 집에 유족 13명이 무단침입 난동	1,2
		김창식 도지사 면담 요구, 30여 명 강제 연행	1
11	김창식 도지사 면담 요구, 30여 명 강제 연행	2	
1984	2	2.13, 고광표 지역개발협의회장 묘지 이장 항의 면담 요구 농성, 9명 경찰서 연행	1,2
		2.14, 고광표 지역개발협의회장 방문 13명 연행 등 총 4회에 걸쳐 60여 명 연행	1,2
	4	전계량 회장 연행 - 한신대 초청 강연	1
	5	5·18 남동천주교회 추모 미사 후 금남로 시위, 4명 연행	2
	10	10.11, 기종도, 박관현 열사 추모집회 참석 저지, 6명 납치격리(대구, 삼척, 여수 등)	1,2
		회원 납치, 연금 - 전두환 방문(진도 연륙교 준공식)	1
10.15, 가톨릭센터 항의 농성, 18명 강제연행		2	
1985	2	전두환 광주 순시, 현수막 시위 - 3명 연행	1,2
	3	21명 강제 연행 전북지역 유기 - 도지사 면담 요청	1
	4	연행 구금(기동대 버스 10여 시간) - 4·19기념행사	1
		청년부 창립총회 참석 회원 17명 연행, 구타. 경찰이 무전기로 김길자 머리 구타, 한국병원 10일간 입원 <sup>305</sup>	1
	5	회원 15명 강제 연행 - 김길자 회원 폭행 항의	1
	6	30여 명 연행- 국방장관 국회 망언 기자회견 및 항의 농성	1
	9	다수 회원 가택연금 및 3명 연행 - 전두환 내광	1

305 5·18조사위, 「참고인 김OO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5.19), 32쪽: "1985년 4월 유가족청년부 창립총회. 참석하기 위해 가다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경찰에 의해 무전기로 머리를 구타당해 한국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유족회원 17명이 연행되어 구타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

년	월	사건	출처	
1986	1	노태우 내광 시 회원 6명 연행	1	
	2	전두환 내광 시 다수 회원 2~5일간 가택연금 및 감시, 강원도까지 연행	1	
	5	5·18 6주기 추모행사 후 금남로 등에서 회원 9명 연행	1	
		남동성당 추모미사 연좌 농성 최루탄에 맞아 전○○ 우측 눈 실명, 김○○ 부상	1	
	7	진상규명 촉구 광주우체국 앞 가두시위 5명 연행	1	
	8	성고문 폭로 가두시위로 회원 12명 연행	1	
	9	전두환 내광 시 회원 8명 연행	1	
	10	광주교도소에서 부상자 회장 이지현 씨 면회 요구하다 회원 2명 7일간 구류	1	
	11	전 윤성민 국방장관 내광 시 회원 6명 연행, 일부 회원 3일간 가택연금	1	
	1987	2	전두환 내광 가택연금, 연행 납치. 정○○ 유인물 배포 중 연행	1
		3	박종철 49제 정○○ 회원 서부경찰서 연행. 노태우 내광 시 회원 3명 연행	1
5		5·18추모제 후 가두시위 21명 연행, 이○○, 김○○ 구속 서울시립대 강연 유언비어 유포죄, 박○○ 3일간 유치	1	
10		전두환 내광, 회원 10명 연행 전두환 내광 계란 투척, 8명 연행 이지현 면회 거부 항의, 구○○, 이○○ 7일 구류 처분	1	
12		노태우 집권저지투쟁 시위 8명 연행	1	
1988	3	상경 중 회원 2명 연행, 경기도 지역에 유기	1	
	8	전두환 구속수사 촉구 40여 명 상경, 전원 연행 12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	1	
	11	미문화원 앞 시위 박○○ 회원 안면부 부상	1	
	12	45명 상경, 국회의장 면담 요청-전원 연행 전계량, 주○○, 박○○ 불구속 입건	1	

- [출처] 1. 「20년 투쟁사」,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홈페이지(<http://518민주유공자유족회.com>.)  
 2.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편, 1989.05, 「광주학살진상규명 및 정신계승 투쟁과 관련된 유족회 탄압일지」, 『광주민중항쟁비망록』 347-350쪽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11.04., 「1980년대 민주화운동(VI)」, 205-208쪽

## 나) 부상자 단체 탄압 사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은 5·18민주화운동 이후에도 여러 고통을 겪었다. 부상 치료 중에도 폭도로 분류되어 합동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조기 퇴원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합동수사본부는 부상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 등에 수사반을 설치하고 부상자들을 조사한 후 피의자를 6등급으로 분류하였고, 1, 2등급은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해 수사를 강행했다. 부상자 김○○은 전남대병원 입원 중, 합동수사본부에서 파견된 성명불상의 조사자(2인 이상)가 부상 상태, 시위 참여, 총기 소지 등을 추궁하였고 자신은 C등급으로 판정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A, B등급자는 강제로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주장했다.<sup>306</sup>

1980년 6월부터 계엄사령부는 부상자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 또는 다른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상자들을 강제로 퇴원시키기 시작했다. 박석연(5·18광주의거부상자회'초대 회장)은 5월 21일 도청 앞에서 왼쪽 다리 관통상을 입고 전남대병원에서 발목 부문을 120mm나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1980년 12월 강제 퇴원을 당했다. 박석연은 계엄사령부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정당한 치료보장, 생존권과 배상 요구 등 법적 투쟁을 시작했으나 계엄사령부와 505보안대로 끌려가 재판을 포기하라는 협박과 고문을 당했다.<sup>307</sup>

1980년 12월, 이광영, 유○○, 서민○○ 장○○ 등 기독교병원에 입원했던 부상자들이 중심이 되어 부상피해자 명단 400명을 확보하고 부상피해자 단체설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505보안부대, 안기부, 경찰 정보과 등으로 강제연행되어 조사받았으며, 단체설립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sup>308</sup>

306 5·18조사위, 「참고인 김○○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10.12).

307 나간채, 2012, 『한국의 오월운동』, 한울아카데미, 99-100쪽;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02,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년사(1982-2002)』, 284쪽.

308 이광영, 1988, 「제145회 -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 제29차」,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회의록』, 250쪽.



1982년 8월 1일, 부상자 60여 명이 모여 ‘5·18부상자회’가 결성되었으나.<sup>309</sup> 단체 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광영은 5·18 관련 행사나 정부 요인이 광주에 방문할 때는 감시, 연금, 구금당하고 타 지방의 산간벽지 사찰로 강제로 소개되었다. 그의 생전 진술에 의하면 1982년에서 1984년 사이에 최소 10차례의 강제격리를 당했다.<sup>310</sup>

부상자회 설립에 깊이 관여했던 박○○은 1982년 부상자회 설립 이후 1994년까지 12년에 걸쳐 경찰의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고 진술했다.<sup>311</sup> 광주에 전두환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올 때마다 강제로 격리당했으며, 특히 ‘전남지역개발협의회’가 부상 피해자를 조사해서 등급을 매기고 보상금 지급에 차등을 두는 등 회원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부상자회 회원 유○○은 당시 부상자회 활동 목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었는데,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강제격리, 불법구금 등의 인권탄압을 받았으며,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sup>312</sup>

부상자회 회원 김○○은 1983년 5·18 제3주기 추모제를 망월묘역에서 개최하였으나 상당수 회원이 가택연금 조치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1982년에 창립된 <전남지역개발협의회>는 시위 참여 강도를 기준으로 부상자에게 등급을 매겼는데 A, B, C급은 폭도로 분류하여 위로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등 피해자들 간 반목과 박탈감을 조성해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었다.<sup>313</sup>

5·18조사위는 진술조사와 보안사 생산 문서 등을 통해 부상자 단체 탄압 사실을 확인하였다.<sup>314</sup>

309 5·18조사위, 「참고인 심○○ 진술조서」(2023.11.23.), 부상자회 초대 회장은 이지현, 초대 사무국장은 심인식이 맡았다. 나중에 이지현이 수배되면서 심인식이 회장 대행을 맡았다.

310 이광영, 1988, 「제145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위 제29차」,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회의록』, 250쪽.

311 5·18조사위, 「참고인 박○○ 진술조서」(2023.11.22.).

312 5·18조사위, 「참고인 유○○ 진술조서」(2023.11.23.).

313 5·18조사위, 「참고인 김○○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10.12.).

31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2002)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년사(1982-2002)』, 103쪽.



- 1983.04. 청와대 앞 전두환 대통령 면담신청 거부로 투쟁, 회장단 종로경찰서 연행 연금.
- 1984.05.04. 로마 교황 방문 당시, 유족, 부상자, 구속자 등 강제로 광주 외부 지역으로 격리당함.<sup>315</sup>
- 1984.05.14. 전국총학생회 초청 서울대 시국 대토론회 증언차 참석 중 회장단(김후식, 정○○, 이광영 등) 관악경찰서에 연행됨.
- 1986.02.15. 전두환 초도 순시 때 경찰들이 집에 침입하자 문을 참지 못한 이지현이 '나가라'며 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하여 구속. 징역 1년 6월 수감. 광주교도소에서는 사형수 방에 수감. 12.16. 춘천교도소로 이감 후 10일간 포승에 묶인 후 먹방에 수감. 교도소 내 단식투쟁 과정에 강제급식을 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당함.<sup>316</sup>
- 1987.10. 이○○ 회원 노태우 대통령 후보에게 최루탄 투척으로 100일 구속<sup>317</sup>
- 1990.07.21. 5·18민중항쟁 부상자동지회 국회의사당 점거 농성으로 이지현 회장 구속

#### 다) 구속자 단체 탄압 사례

구속자들과 그 가족들은 5·18의 진상을 널리 알리고 정부 사과를 요구하는 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압을 당했다. 구속자들은 실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직, 강제징집, 학사징계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탄압을 받았다.

1980년 9월경 구속자 가족들은 '구속자가족협의회'를 창립했다. 회장 윤이정(홍남순 변호사 부인), 부회장 안○○(명노근 교수 부인), 총무 이○○(정동년 내란수괴 혐의 구속자 부인), 서기 노○○(노준현 대학생 구속자 가족), 김○○(김종배 학생수습대책위원장 가족), 홍○○, 하○○ 등이 참여하였다. 정동년의 부인 이○○는 "구속자 및 연행자 가족들은 1980년 5월 말부터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이었다"고 진술했다.<sup>318</sup> 남편이 내란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에는 최소 3~4명의 사복경찰이 배치되었고 '구

315 5·18조사위, 「참고인 이지현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3.02.08.). "당시 대구로 납치당하였고, 계속 동향 파악과 사찰을 당했다."고 진술함.

316 5·18조사위, 「참고인 이지현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3.02.08.).

317 5·18조사위,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3.11.23.).

318 5·18조사위, 「참고인 이○○ 진술조서」(2023.11.23.).

속자가족회'가 결성되자 구속자 가족들을 향한 인권탄압의 강도는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1981년 2월 17일, 전두환 대통령 광주방문 당시, 광주 YMCA 앞 금남로 시위로 장○○(박○○ 구속자 어머니), 하○○(하△△ 구속자 가족)이 광주경찰서로 끌려가 구타,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1981년 3월 31일~4월 3일, 5·18구속자 대법원 판결을 방청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16명의 구속자 가족은 대법원 기각 판결이 나오자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1980년 말부터 구속자들이 풀려나면서 구속자들의 집단행동과 모임 결성도 활발해졌다. 전두환 정권의 공안통치 때문에 구속자들은 초기에는 비밀스럽게 활동했으나 1984년에 '구속자협의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었고, 회장은 홍남순 변호사가 맡았다.

당시 '구속자협의회'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위○○은 '구속자협의회'가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sup>319</sup> 구속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1985년 5월에 '5·18민중혁명 희생자 위령탑 건립 및 기념사업 범국민운동 추진위원회'(이하, '5·18위령탑 건립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기부 등 공안기관으로부터 조직적인 탄압이 있었으며,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윤○○은 1년 이상 수배생활을 했다. '5·18위령탑 건립위원회'간사 위○○은 수배 중인 윤○○과 연락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다.

'구속자협의회'는 초기에는 피해자 권익을 위한 민간단체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는 반독재 투쟁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사회운동단체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속자 및 소속 단체에 대한 탄압의 강도는 더 강해졌다.

1986년 '구속자협의회' 회장 홍남순이 대통령직선제 회복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였고

319 5·18조사위, 「참고인 위○○ 진술조서」(2023.11.27.).

회원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다수의 회원이 구속되었고, 위○○은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 라) 행방불명자 가족회 외해 공작 사건

‘광주사태’를 ‘민주화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한 노태우 정부에서도 이러한 공작은 계속되었다. 5·18조사위는 1989년에 행방불명자(이하, 행불자)인정자 가족들이 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안사령부가 주도하여 모임 결성을 방해하는 공작을 실행했음을 확인했다.

1989년에 정부는 5·18피해자를 추가 심사하여 32명을 행방불명자로 인정하였다. 이 가족들이 모여서 ‘행불자인정자가족회(이하, 행불자가족회)’를 결성하였다. 행불자가족회가 유족회와 합세하여 반정부 단체로 발전할 것을 우려한 정부는 1990년 초에 단체를 와해시킬 계획을 세우고 610보안부대가 주도하여 실행에 옮겼다. 5·18조사위가 확보한 610보안부대의 ‘5·18행불자인정자 가족회 해체 유도’ 문서는<sup>320</sup> 이 계획의 개요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610보안부대에서는 5·18 10년 차 최소화를 위해 ‘군 관련 유족 건전화 사업’의 일환으로 2.24.부터 5·18 관련 단체인 5·18추가신고 행불자 가족회 외해사업을 추진, 4.18. 동회의 해체 결의를 유도하는 한편 5·18온건 유족회로의 영입을 추진.”

위 문서에 따르면 1단계는 협조자 포섭단계로 행불자회 회장과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회유하고, 2단계에서는 610보안부대 담당관이 직접 나서서 간부와 회원들을 포섭하고, 3단계에서는 조직을 해체한 다음 온건 유족회로 흡수하는, 3단계의 해체 유도 계획이 실행되었다.

320 국군보안사령부, 『5·18관련단체 대정부투쟁 약화 활동』, 『5·18행불자인정자가족회 해체유도(610보안부대)』, 1쪽.

보안사가 계획 실행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기존의 강경 유족회 활동을 비난하고 유족회 간부들의 개인 비리를 부각하는 작업이었다. 505보안부대와 610보안부대 등을 중심으로 “강경 유족회 간부들이 정계 진출 등 개인 출세를 위해서 유족회를 이용하고 있으며, 강경 유족회 활동이 광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허위 선전하였다.

이러한 공작의 최종 목적은 유족 간 갈등을 조장하여 강경 유족회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유족들을 노태우 정권의 시책에 적극 동조하는 집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이었다. 회원 6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건유족회’는 1990년 3월 1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당시 야당인 평민당이 광주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4월 16일에는 정부의 보상금 지급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5·18조사위는 관련 문서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온건유족회’의 이러한 친정부 활동이 505보안부대의 공작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1990년 4월 5일, ‘강경 유족회’ 회장 전계량을 비난하는 유인물(제목: 전계량을 5·18의 이름으로 타도하자!)이 배포되었고, 4월 17일에는 일부 유족들이 ‘5·18기념사업추진위원장’ 명노근 집을 방문하여 “김대중의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5·18조사위는 관련 문서를 입수하여 이 사건 역시 그 배후에 505보안부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sup>321</sup>

#### 마) 1988년 ‘광주사태 관련자 순화사업 추진’계획

노태우 정권하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사찰, 회유 공작은 계속되었다. 5·18조사위는 이러한 공작이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에 보안사 주도로 입안되었다는 사실을 확

321 국군보안사령부, 『5·18관련단체 대정부투쟁 약화 활동』, 『5·18행불자인정자가족회 해체유도(610보안부대)』, 7~8쪽.

인했다. 보안사가 작성한 ‘광주사태 관련자 순화사업 추진’이라는 문서를 보면, 1988년 1월부터 12월까지 광주사태 관련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순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간의 공작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늦어도 1987년 하반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sup>322</sup> 이 문서에 따르면 피해자 ‘순화’를 위해 5·18 관련자를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5·18유족회, 구속자협의회, 전남민주청년협의회, 부상자회 등의 이른바 강경단체에 대해서는 봉쇄 등의 강경조치를 취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봉쇄’는 그간의 공작 행태 등으로 미루어 해체 혹은 해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나. 5·18피해자 수배·학사징계·해직 사건

### 1) 5·18피해자 수배 사건

#### 가) 개요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수배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에 배포된 ‘수배자 명단, 전단, 지시, 하달 공문 등’(이하, 수배자 명단이라 한다.) 15종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sup>323</sup>

이 15종의 수배자 명단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전후하여 1981년 5월경까지 정부가 발부한 명단이다. 이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은 1980년 5월 20일, 합동수사본부가 지역 보안부대와 치안본부에 하달한 「수배자 명단」(대상자 166명)이다. 이후 합동수사본부의 ‘광주사태’ 관련자 1차 수사결과 발표(1980년 7월 3일)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결과 발표(1980년 7월 4일)를 앞둔 시기에 수배자 명단 하달과 수배 전단 벽보

<sup>322</sup> 국군보안사령부(1988), 「광주사태관련자 순화사업추진」, 『유족모지 이전대책 보고』, 138~147쪽.

<sup>323</sup> 「대학 전면개강에 따른 학원대책 참고자료」(1980.09.02.)에 수록되어 있는 미검자 명단에 합수 수배자 8명이 추가된 것을 포함하면 16종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게시가 집중되었다. 수배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1980년 6월 17일 합동수사본부가 지역 보안부대와 치안본부에 하달과 동시에 모든 언론에 공개한 「수배자 명단」으로 대상자는 311명이었다.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것은 1981년 5월 치안본부가 모든 경찰관이 항시 휴대하도록 수첩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 『수배자 수첩』으로 ‘광주사태’관련자 등 계엄기간 중 검거하지 못한 인사 40명이 수록되어 있다.

5·18조사위가 확보한 수배자 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연인원 1,293명인데, 이 가운데 중복자, 착오 또는 오기로 판단되는 인원을 제외한 수배자는 594명(부정축재 혐의 2명 포함)이다. 5·18조사위는 이 가운데 252명의 수배 혐의는 ‘국기문란’, ‘광주사태’, ‘소요’, ‘포고령 위반’, ‘시위 주도’, ‘배후 조종’, ‘내란 선동’, ‘학원시위’, ‘유인물 제작 살포’ 등으로 다양하지만, 모두 「5·18보상법」에 근거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배경

### (1) 시국 수습방안과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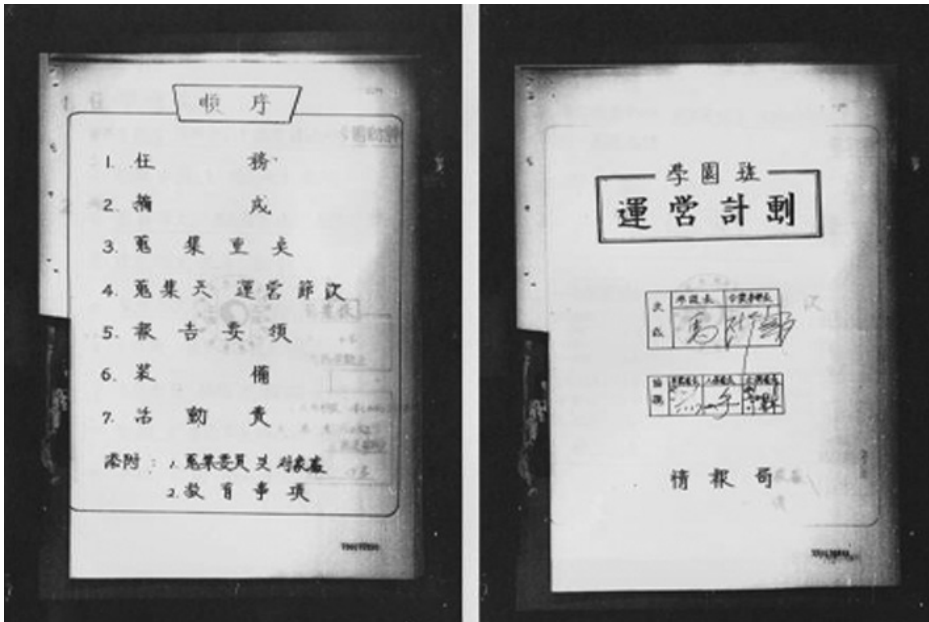
전두환 내란집단의 시국 수습방안 논의가 보안사 주도로 시작된 것은 1980년 4월 말부터이다. 당시 주요 국가 수사기관의 장을 모두 겸직하고 있던 전두환과 그의 참모였던 권정달 정보처장, 허화평 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 인사처장, 정도영 보안처장 등이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군부가 전면에서 정국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시작했다.<sup>324</sup>

1980년 5월 1일 보안사는 전두환 사령관의 서명 결재를 받아 학원 동정을 수집하는 전

324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권정달 진술조서」(1996.01.04.), 『5·18사건 수사 기록』 102권, 106264~106267쪽.

담조직으로 반장 외 분석계 6명, 수집계 17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학원반<sup>325</sup>을 설치하였고, 복학생 동정, 대학 간 연합체 구성 여부, 교외 저항세와의 접촉 동향 등을 정보수집 중점대상으로 적시했다. (아래 <그림 5-2-5> 참조)

1980년 5월 초 전두환(보안사령관 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처장 권정달에게 ‘시국 수습방안’을 정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권정달은 정보처 산하 4~5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정세분석반을 동원하여 문안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두환은 이학봉 대공처장 겸 계엄사 합수단장에게 “학원소요사태 근절을 위해 학생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치인과 재야인사, 복학생 및 재학생 대표들을 검거하여야 한다.”며 국기문란사범 명단 작성과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그림 5-2-5> 학원반 운영계획

325 보안사령부(1980.05.01), 『學園班 運營計劃』, 정보국이 작성하고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참모장, 군수처장, 인사처장, 기획처장의 결재 서명이 있다.



1980년 5월 13일 이학봉 대공처장은 권정달 정보처장으로부터 부정축재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사전 검거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학생시위 배후조종자는 ‘국기문란자’로, 부정부패 행위자는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분류하겠다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당일 저녁 8시경 권정달 정보처장과 함께 대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sup>326</sup>

이학봉은 1980년 5월 15일 검거대상자 선정기준, 명단, 혐의 내용을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 2건의 보고서로 정리하여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최종 보고하였다.<sup>327</sup> 이학봉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사전검거 대상자 명단’ 선정과 관련, “학생시위에 관해서는 꾸준히 수집해온 정보를 1980년 5월초부터 종합분석하여 수사계획을 세웠으며 부정축재자에 대해서는 권정달 정보처장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했다.<sup>328</sup>

## (2) 예비검속

1980년 5월 16일 이학봉 대공처장은 국기문란자와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검거대상이 된 인사들의 거주 지역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역 보안부대 대공과장을 사령부로 불러 ‘검거대상자 명단’을 건네주고 지시가 떨어지면 즉시 시행하도록 명령했다.<sup>329</sup>

이학봉은 다음날(1980년 5월 17일) 11시경 중앙정보부, 경찰,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를 소집해 5월 17일 24시 발표될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연합 관계자는 중앙정보부 수사국장(김○○)에게, 권력형 부정축재자는 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김△△)에게, 학생들은 치안본부 3부장에게 당일 22시를 기해 일제히 검거해 수사하도

32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학봉 피의자신문조서」(1995.12.12., 1996.01.09.), 『5·18사건 수사기록』 제102권.

327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학봉 피의자신문조서」(1995.12.12., 1996.01.09.), 『5·18사건 수사기록』 제102권.

32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학봉 피의자신문조서」(1996.01.09.), 『5·18사건 수사기록』 제102권.

329 505보안부대(1980.06.), 「광주사태 합동수사」.

록 하고, 대상자 검거 시각은 당일 22시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같은 날 13시경 각 지역 보안부대에 22시를 기해 대상자를 일제히 검거하도록 지시하는 전언통신문을 내려보냈다.<sup>330</sup>

광주지역 예비검속<sup>331</sup> 대상자는 전남대 12명(박관현, 윤한봉, 정동년, 박선정, 윤목현, 한상석, 박진, 윤강욱, 문덕희, 하태수, 박형선, 김상윤), 조선대 10명(박종민, 김운기, 이경, 유소영, 송찬식, 이강래, 유재도, 이권섭, 양희승, 구교성)이며, 차량 22대에 보안부대원과 경찰 등 86명이 동원됐다. 또한 시행 전 보안을 유지할 것, 대상자가 무기를 소지했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를 소지하도록 했으며 ‘미온적 수사’를 금지하고 ‘사령부는 17일 17~18시 행동을 개시하니 지방에서는 23시 행동을 개시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었다.<sup>332</sup>

광주지역에서 예비검속 대상자로 1980년 5월 17일 자정 전후 검거된 김상윤과 양희승, 그리고 김대중계 정치조직인 ‘정치문화연구소’ 부소장으로 예비검속 대상이었으나 현장에서 도망쳐 ‘중요수배자’로 집중 추적을 당한 박정훈과 그의 아내 김○○은 우리 5·18조사위 면담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은 검거 시각과 무기를 소지하도록 명시한 「광주사태 합동수사」의 내용과 부합한다.

### 김상윤의 진술<sup>333</sup>

당시 녹두서점이 살림집을 겸하고 있었는데 5월 17일 밤 11시 30분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330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학봉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996.01.09.), 『5·18사건 수사기록』 제102권.

331 이 보고서의 “예비검속”은 검찰이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에서 사용한 ‘사전 검속’과 같은 의미로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앞서 지역 보안부대 대공과장들에게 건네준 검거 대상자를 예비검속자로 판단하였다. 505보안부대 이재우 보안부대장과 서의남 대공과장은 검찰 진술조서에서 대공과장 회의에서 전달받은 명단을 ‘예비검속자 명단’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예비검속 대상자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과 근거로 선정하였는지는 ‘시국 수습방안’과 ‘국기문란자 수사계획’문서를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

332 505보안부대(1980.06.), 「광주사태 합동수사」

333 5·18조사위, 「참고인 김○○ 면담조사 녹취록」(2022.08.09.), 5~6쪽.

나서 혹시 후배들이 찾아왔나 하고 문을 여니까 권총을 얼굴에 딱 들이대면서 “김상윤이지?” 하더라고요. 합수단에서 나온 거예요. 서광주경찰서 정보과 형사 한 명을 포함해 5명이 왔더라고요.

#### 양희승의 진술<sup>334</sup>

17일 밤 예비검속은 피한 뒤 18일 오후 3시 반 경 농성동 친구 집에 숨으러 갔다가 잠복 중 이던 보안사 요원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아파트 문이 열려 들어서니 눈앞에 딱 보이는 게 권총이야. ‘너 양희승이지? 들어와.’ 군복은 아니고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곧바로 보안대로 연행했습니다.

#### 박정훈과 김○○의 진술<sup>335</sup>

5월 초에 중앙정보부 3국장(정치국장)이 ○○대 선배인데 만나자고 해서 한번 만났고 며칠 뒤 직원이 찾아와서 지금 자기들에게 협조해라.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이번에 3김씨를 싹~ 보낸다. 지금 빨리 대답을 해달라.’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다.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안 만났다.

5월 17일 저녁에 집에 누워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 ‘아무개냐’고 묻더니 ‘금방 찾아뵙겠다’고 해 잡으러 온 걸 알고 옆집으로 난 창문을 통해 옆집 마당으로 도망쳤다.(박정훈)

남편이 옆집을 통해 나간 뒤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군화를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와 “남편 어디로 빼돌렸냐”며 집안을 수색했고 열댓 명이 들어와 거실이 꽉 찼다. 어디를 가도 따라다니고 꼭 밤이면 깨워서 취조를 했다. 명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열흘? 20일? 아무튼 셀 수도 없게 집안에 상주하며 감시했다.(김○○)

### (3) 예비검속 대상자 규모

수배사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국기문란자 수사계획’과 1980년 5월 16일 지역 보안부대 대공과장에게 하달된 사전 검거대상자 명단은 1995년 검찰의 12·12, 5·18사건 수사과정에서도 확보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 대상자의 면면과 정

334 5·18조사위, 「참고인 양○○ 면담조사 녹취록」(2022.08.19.), 25~26쪽.

335 5·18조사위, 「참고인 박정훈·김○○ 면담조사 녹취록」(2022.09.23.), 7쪽, 12~13쪽.

확한 인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sup>336</sup>

예비검속 대상자의 전체 규모와 관련, 서울지검의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1995)에는 “비상계엄 확대와 병행하여 실시한 이른바 사전검속으로 체포한 인원은 모두 2,699명으로 2,144명은 훈방되었고, 404명이 기소”<sup>337</sup> 되었다고 적시되어 있다. 예비검속 대상자 수는 ‘사전검속으로 체포’된 2,699명에 미검자(수배자)가 더해져야 한다. 미검자 명단일 것으로 추정되는 5월 20일 하달 수배자 명단에 들어 있는 166명을 더하면 예비검속 대상자는 최소 2,865명으로 추정할 수 있고, 5월 17일 이후 중요 수배 대상자(66명)와 합수(단) 수배 대상자(262명) 등 328명<sup>338</sup> 중 중복된 166명(5월 20일 수배자 명단)을 뺀 162명을 더하면 추정 예비검속 대상자는 3,027명으로 늘어난다.

## 다) 수배 유형과 규모

### (1) 수배 유형

5·18조사위가 확보한 수배자 명단이나 전단, 「주요정보상황」<sup>339</sup>과 「야간정보상황보고」에 나타난 수배의 유형은 크게 △중요 수배자 △합수(단) 수배자 △기타 수배자로 구분된다. 기타 수배와 자체 수배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기록된 경우도 있지만, 일일정보보고의

336 서울지검(1996.01.05.) 「시국수습방안 보고서의 현존 여부 확인 보고」, 5·18사건 수사 당시 서울지검 이종찬 3차장검사가 당시 국군기무사령관 임재문에게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이 작성한 「시국수습방안」 보고서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1992년 발생한 세칭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대민사찰 폭로사건’ 이후 기무사령부에서 존안하고 있던 서류 일체를 폐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기무사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보고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5·18사건 주임검사(김상희 부장검사)에게 보고한 문서가 남아 있다.

337 이학봉은 위 진술초서에서 “예비검속 과정에서 체포한 인원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약 3천여 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서의남 505보안부대 대공과장은 5월 17일 보안사 대공과장 회의에서 받은 전남 지역 예비검속자 명단은 대략 400명가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338 국군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MF문서 중 「야간정보상황보고」의 ‘수배자 검거 및 처리상황’ 집계 표에는 중요수배자 66명, 합수수배자 262명(1980년 8월 말, 8명 추가되어 270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339 1980. 6. 19. 이전에는 일일정보보고의 표제가 「주요정보상황」이었으나 6월 20일 이후 「야간정보상황보고」로 변경된다.

수배자 검거 실적 관리 또한 ‘중요 수배자’, ‘합수 수배자’, ‘기타 수배자’의 3가지 유형으로 일관되게 기록돼 있다.

이와 별도로 수배자 명단이나 전단에 ‘광주사태 관련’, ‘광주사태 수배자’라는 분류나 용어는 예비검속 단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1980년 5월 30일 이후 작성, 배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배자 명단(手配者名單)(2)’와 ‘수배자 명단(手配者名單)(3)’에 등재된 명단에는 수배 사유를 ‘광주사태 관련’이라고 적시한 것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5·18조사위가 입수한 15종의 수배자 명단에 의하면, ‘광주사태 관련’으로 명시되어 수배된 사람은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 등 43명<sup>340</sup>으로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관련자’로 기 확인된 252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5·18조사위는 ‘5·18관련자’로 인정된 다수가 당시는 ‘광주사태 관련자’만이 아닌 학원 소요, 김대중 내란 사건, 계엄포고령 위반, 내란 선동 혐의 등을 이유로 수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중요 수배자’ 분류 기준을 서술한 문서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대상자들이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 민주헌정동지회나 민주문화연구소,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조선 및 동아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복학생 등으로 보안사에서 국기문란자로 지목했거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관련자로 지목했던 인사들이어서 중요 예비검속 대상자 가운데 검거하지 못한 인사들로 판단된다.

‘합수 수배자’는 합동수사단 수배자, 합동수사단 조정 수배자로 기록된 것도 있어 수사의 주체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인 점은 확인된다. 1980년 6월 17일 합동수사본부가 모든 언론에 공개수배한 311명 중 ‘중요 수배자’ 49명을 빼 나머지 262명이 ‘합수(단) 수배자’로 관리<sup>341</sup>되었기 때문이다. 또 ‘합수(단) 수배자’에는 박관현, 박석무, 박효선, 윤

340 수배자 명단에 ‘광주사태 관련’이라는 사유가 적시된 수배자는 강신석, 구교성, 김경천, 김무영, 김정수, 김천배, 김태중, 김현장, 김형태, 노병호, 명노근, 문병란, 문승훈, 박관현, 박광웅, 박용구, 박석무, 박효선, 송기숙, 안진오, 안철, 양강섭, 오재일, 윤한봉, 은명기, 이경, 이석연, 이성학, 이우정, 이정무, 이행자, 이흥길, 장두석, 정경자, 정재필, 정재호, 정태성, 최운용, 최형식, 한봉철, 한상석, 황인갑 등 43명이다.

341 「야간정보상황보고」 1980년 6월 18일, 이날 보고에는 합수단 수배자에 대해 “6.17. 공개수배자 311명 중 중요 수

한봉, 김태중 등 ‘광주사태’관련자로 분류되기도 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8월 하순에는 방○○, 이○○, 이소선 등 노동운동 관련 인사 3명과 이효재, 손보기, 임진창 등 대학교수 3명을 포함한 8명이 추가되었다. 이들이 ‘합수 수배자’에 추가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었다.

‘기타 수배자’는 수사과정에서 각 지역 수사기관이 수배한 인사들로서 ‘광주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들과 ‘광주사태’ 관련 유인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타 수배자’는 6월 18일 730명에서 7월 10일부터는 1,210명으로 대폭 증가하는데 이는 ‘광주’관련 유인물 제작·살포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한 결과로 추정된다.

## (2) 수배자 규모

「상황일지」와 「야간정보상황보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수배자의 유형별 규모는 △중요 수배자 66명 △합수(단) 수배자 270명 △기타수배자 1,210명으로 총 1,546명이다. ‘중요 수배자’ 66명과 ‘합수 수배자’ 270명의 명단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타 수배자’의 경우, 수배자 명단 또는 수배 전단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불기소 연명부」에 미검거로 기소중지된 명단, 「야간정보상황보고」에 자수 또는 검거했다고 기록된 256명의 이름은 확인되었으나 이외 954명의 명단은 확인할 수 없었다.

## (3) 수배자 명단 분석

5·18조사위가 입수한 수배자 명단 또는 전단지 15종에 이름이 기록된 인물은 1,293명이나, 이 가운데 중복, 또는 착오나 오기로 보이는 인사를 제외하면 594명이며 부정축재 혐의로 수배된 2명을 빼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국기문란’, ‘학원소요’, ‘광주사태 관련’

.....  
배자 49명을 제외한 나머지 26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등을 이유로 수배된 사람은 모두 592명이다. 이 가운데 252명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18조사위가 발굴, 입수한 ‘수배자 명단’ 15종의 일람표와 견본, 그리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 5-2-3> 참조).

① 수배자 명단(受配者名單)

작성일자는 1980년 5월 20일이고 대상자는 166명이다. 전국의 지역 보안부대와 치안본부에 하달한 명단이다. 입수된 명단은 하달 공문이 함께 들어있지 않지만 1980년 6월 17일「수배자 명단 하달(통보)」과 글자체(타자기)가 같고 수배자 번호 순서, 1~20번까지 현상금 100만 원이 명시돼 있는 점이 동일하며, “1980년 5월 20일 기 하달한 수배 명단을 이 문서로 대체”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이 명단이 5월 20일 하달한 수배 명단으로 판단된다. 장기표·심재권·심재철·이철·김부겸·이해찬·박계동·신계륜·설훈·조성우·장신규·김규복·박광호·김광훈·배기선·이현배·박정훈·송창달·김병곤·김태홍 등 1~20번까지는 주소와 본적, 인상착의, 현상금 1백만 원이 적시돼 있고, 21~168번까지는 학교, 학과, 학년 및 주소지만 적시되어 있다. 또 오○○·오△△(권력형 부정축재자)·이병주·노향기·박종률·계훈제·김홍업 등 ‘중요 수배자’는 146번 이후 후 순번에 올라와 있다.

② 「중점 대상자 긴급수배 지시」(중점수배자 명단 포함)

1980년 5월 21일 발송 문서로 합동수사본부가 전국 보안부대와 치안본부에 하달하였다. 대상자는 △오○○·오△△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2명 △김태홍·노향기·이병주·정태기 등 ‘문제언론인’ 4명 △박종률·장을병·김홍일·계훈제 등 ‘재야 저항세’ 8명 △기타(김홍일 관련) 2명 △이철·심재철·김경택·정문화·신계륜 등 학생 29명으로 총 45명이다.



## ③ 「중요 사범(포고령 위반)수배자」

대상자 중 1980년 5월 26일 체포된 윤여연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1980년 5월 26일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상자는 이철·심재철·박우섭·이해찬·김부겸·박계동·신계륜·박광호·박성혁·윤여연·장신규·윤승수·안숙·김광훈 등 서울대와 고려대 복학생,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 등 14명인데 이중 학생회장이 9명이다.

## ④ 「중요 수배 대상자 명단」

1980년 5월 28일 총 54명이 담긴 명단으로 △정치인 7명(이 중 2명은 △오○○·오△△ 등 권력형 부정축재자) △언론인 4명 △교수 2명 △사회단체 1명 △재야 저항세 11명 △대학생 29명이다.

## ⑤ 「수배자 명단(1)」

1980년 6월 중순 전국 공공계시관 등에 부착되었던 지명수배 전단이다. 권력형 부정축재자 오○○, 김태홍·이병주·정태기 등 언론인, 김홍업·계훈제·배기선 등 김대중 사건 관련자, 장기표·심재권 등 복학생이 올라와 있고 대상자는 20명이다. 예비검속 대상자 중 중요 미체포자로 추정된다.

## ⑥ 「수배자 명단(2)」

1980년 6월 중순 전국 공공계시관 등에 부착되었던 지명수배 전단이다. △이협·유중람 등 김대중 관련자 △박효선·박석무·윤한봉 등 '광주사태' 관련자와 △임상택·오세범·이명준 등 서울지역 학내의 시위 관련 복학생이 기록된 수배 전단으로 대상자는 24명이다.

⑦ 「수배자 명단(3)」

1980년 6월 중순 전국 공공계시관 등에 부착되었던 지명수배 전단이다. 대상자는 모두 24명으로 19명은 수배 사유가 ‘광주사태 관련’으로 적시되어 있다. 김도길·김천배·노병호·정경자·박몽구·황인갑·문승훈·이성학·은명기·박광웅·최형식 등이다.

⑧ 「중요사범 수배자(합수·중정·경찰)」

제목과 날짜(1980년 6월 13일)가 적힌 표지가 있고 전단지 형태이다. 대상자는 57명으로 대상자마다 합수, 중정, 경찰 등으로 수배(또는 수사)기관이 적시되어 있다.

- 합수부: 이현배·심재권·장기표·조성우·심재철·이해찬·김병곤 등 1~23번까지 23명
- 중정: 이용희·김재위·장을병·계훈제·박종률 등 24~29번까지 6명
- 경찰: 오치성·이병주·정태기·노향기·문희상·문국주·김경택 등 30~57번까지 28명

⑨ 「긴급수배자 명단」

1980년 6월 13일~6월 17일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배포된 명단으로 추정된다. 장기표·심재권·심재철·이철·김부겸·이해찬·박계동·신계륜·설훈·조성우·장신규·김규복·박광호·김광훈·배기선·이현배·박정훈·송창달·김병곤·김태홍 등 20명의 사진과 원적, 본적, 주소, 키, 인상 등이 적혀 있다.

⑩ 「긴급수배자 명단」

1980년 6월 17일~6월 23일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 배포된 명단으로 추정된다. 장기표·심재권·조성우·이현배·박정훈·송창달·배기선·김병곤·이용희·김재위·장을병·유갑중·계훈제·정동훈·박종률 15명의 사진과 원적, 본적, 주소지, 키, 인상 등이 들어 있다.

## ⑪ 「수배자 명단 하달(통보)」

1980년 6월 17일 합동수사본부가 전국 지역 보안부대장과 치안본부장에게 하달한 수배 공문과 수배자 명단이다. 명단에 들어 있는 수배 대상자는 총 329명이나 공문 하단에 중복자와 기 검거자를 부기하고 있어 이들을 제외하면 수배자는 총 311명이다. 또한 “1980년 5월 20일 기 하달한 수배 명단을 이 문서로 대체”라는 문구가 덧붙여져 있고, ① 「수배자 명단」과 동일한 글자체(타자기)에 1~20번 수배자 이름과 순서와 1백만 원 현상금이 적시된 것도 동일해 ① 「수배자명단」이 5월 20일 하달된 수배 명단임을 추정할 수 있다.

## ⑫ 「중요사범 수배자」

1980년 5월 27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항쟁과 직접 관련된 25명에 대한 수배 전단지로 추정된다. 수기(手記)로 작성한 뒤 대량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윤한봉(1번)에 이어 박효선·이경·박관현·박석무·이석연·이우정·구교성·양강섭·한상석·송기숙·김정수·문병란·명노근·안진오·김경천·이홍길·강신석·장두석·안철·정태성·정재필·오재일·김태중·최운용까지 모두 수배 사유가 ‘광주사태 관련’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⑬ 「불기소 연명부」

기소유예(149명), 기소중지(65명), 공소권 없음(2명)) 등 불기소자 총 212명의 명부로, 이 가운데 기소중지의 사유가 미체포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이 수배 중이었음이 확인된다. 수록된 인물들의 사건 종결 연월일 기록으로 보아 작성 시기는 1980년 8월~10월 하순으로 추정된다.

⑭ 「수배자 수첩」

표지에 작성기관이 치안본부로 인쇄돼 있고 휴대용 수첩 형태(“수배자 완검 시까지 항상 휴대 활용할 것”이라고 적혀 있음)이다. 대상자는 계훈제·김태중·김현장·노병호·문국주·박관현·윤한봉·장기표·심재권·최영선·최운용 등 40명이다. 수배자 개인별 사진, 주소, 연고지, 수배 사유, 인상착의, 현상금 등이 적시되어 있고, 수배 사유는 ‘광주사태 관련’, ‘김대중사건 관련’, ‘학원소요사건 관련’, ‘무림사건 관련’ 등이다. 이들 가운데 1981년 5월 7일 유인물 살포사건 및 5월 20일 학내 시위 관련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981년 5월 20일 이후 제작·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⑮ 「아간정보상황보고」

1980년 6월~12월 치안본부가 작성해 계엄사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일정보보고로 ‘중요 수배자’, ‘합수 수배자’, ‘기타 수배자’의 검거실적과 유인물 사건 발생 현황을 일제표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어 ‘수배자’ 413명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검 수배자 현황」: 「대학 전면 개강에 따른 학원대책 참고자료」(보안사, 1980년 9월 2일)에 포함된 현황자료여서 별도의 수배자 명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8월 31일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중요 수배자 18명 △합수 수배자 30명 △기타 수배자 21명 등 총 69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외에도 이○○(이화여대 교수), 방○○(섬유노조 ○○○○지부장), 손○○(연세대 교수), 임○○(서강대 교수), 이○○(○○방직 노조), 이○○(○○피복노조 고문), 백○○(중앙대 3), 김○○(민주현정동지회 회원) 등 8명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표 5-2-3〉 수배자 명단 일람표

번호	제목	형태	작성 기관	작성일자	대상자 수	주요 대상자	출처
1	手配者名單	명단	합수 본부	1980. 5.20.	166명	예비검속 미검자로 추정	국방부 과거사 위
2	중점대상자 긴급수 배지시 및 명단	명단	합수 본부	1980. 5.21.	45명	부정축재자(2) 문제연 론인(4) 재야저항세(8) 김홍일 관련자(2) 학생 (29)	국가기 록원 M/F
3	重要事犯(布告令違 反) 手配者	전단	합수 본부	1980. 5.20.~28.	14명	서울지역 대학총학생회 장과 복학생	국가기 록원
4	重要手配對象者 名 單	명단	합수 본부	1980. 5.28.	54명	DJ 관련 재야 및 대학 생	국가기 록원 M/F
5	手配者名單(1)	전단	합수 본부	1980. 5.30.이후 (추정)	20명	5.21.자 중점대상자 긴급 수배 미검자	5·18 기념재 단
6	手配者名單(2)	전단	합수 본부	1980. 5.30.이후 (추정)	24명	광주사태관련자(7명) 및 서울지역 학내외 시 위, DJ 관련자	5·18 기념재 단
7	手配者名單(3)	전단	합수 본부	1980. 5.30.이후 (추정)	24명	24명 중 20명이 광주사 태 관련	5·18 기념재 단
8	重要事犯手配者- 合搜 中情 警察	명단	합수 본부	1980. 6.13.	57명	6.13. 현재 미검자	5·18 조사위
9	緊急手配者名單	명단	합수 본부	1980. 6.13.~17. (추정)	20명	장기표, 심재권 등 서울 지역 복학생과 총학생회 장	국가기 록원 M/F
10	緊急手配者名單	명단	합수 본부	1980. 6.17.~23. (추정)	15명	복학생 및 DJ 관련 인 사	국가기 록원 M/F
11	수배자명단 하달 (통보)	명단	합수 본부	1980. 6.17.	311명	6.17 현재 학원사태 등 시국 관련 수배자 명단 합수본부 발표.	국방부 과거사 위
12	重要事犯手配者	전단	합수 본부	1980. 6.15.	25명	'광주사태 관련' 수배자 27명 중 자수(김성용, 조철현) 2명을 뺀 25명	국가기 록원 M/F

번호	제목	형태	작성 기관	작성일자	대상자 수	주요 대상자	출처
13	불기소 연명부	명단	합수 본부	1980. 8.~10.	65명	연명부 명단 중 미체포 로 기소중지된 명단	기무사
14	手配者手帖	수첩	치안 본부	1981. 5. 하순	40명	1979.11. YWCA 위 장결혼 사건부터 1981.5.7. 덕성여대 유인물 사건 주동자까지	5·18 조사위
15	夜間情報狀況報告	명단	계엄 사	1980. 6.~12.	413명	자수 또는 검거자 일일 보고	국가기 록원 M/F
종합	수배자 명단 15종 종합				1,293명		

## 라) 수배 피해 실태

### (1) 도피

수배된 뒤 체포될 때까지의 기간은 개인차가 크고 다양하지만, 당시 엄혹한 상황에서 수배자들은 모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도피처를 찾아야 했고, 숨어 지내야 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기 어려웠다. 학업이나 생업에도 종사할 수 없어 사회, 경제적 어려움도 피할 수 없었다.

예비검속 대상자였으나 보안사의 5월 17일 검거를 피한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의 경우, 1982년 4월 5일 서울 공릉동에서 체포되기까지 6차례나 수배자 명단에 올랐으며, 체포 후 1심에서 내란주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교도소 내 비민주적 행정에 맞서 항의단식을 하다 1982년 10월 12일 사망했다.

박관현과 함께 예비검속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5·18관련 마지막 수배자 윤○○(○○대 복학생)의 경우, 1980년 5월 22일 광주에서 빠져나온 뒤 1년 가까이 서울에서 은신하다 35일간 외항선 화장실에 숨어 미국으로 밀항, 망명했다. 미국에서도 민주화운동을 계속한 그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수배령을 해제한 1993년 5월 20일까지 13년간 수배자로 살

아야 했다. 그는 1998년 재심에서 보상금 등<sup>342</sup>을 받았으나 13년에 걸친 수배로 인한 고통과 희생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예비검속되었으나 정작 수사과정에서는 김대중 관련 혐의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훈방된 인사들도 적지 않지만, 수배자들의 경우 중요 수배자로 분류되어 집중적인 추적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철, 장신규, 박광호, 장기표의 경우처럼 1980년 5월 20일부터 현상금 1백만 원이 걸렸으나 정작 자수 또는 체포 후 기소되지 않고 훈방되기도 해, 예비검속 또는 수배 대상자 선정 자체가 부정확한 정보와 개연성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수배기간 동안 본인은 물론 가족, 친지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았을 압박과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는 수배자 자수기간을 설정, 발표하면서 기간 내에 자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적에서 제적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자수기간 안에 자수해 훈방된 복학생에 대해 대대적으로 제적 또는 제명 조치를 하였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사찰, 심한 경우 불시 가택수색은 물론이고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례도 있고, 은신처를 제공한 지인이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범인은닉죄로 구속기소되기도 했으며, 학사징계나 직장에서 해직되는 등 2차 피해가 가중되었다. ‘광주사태’ 관련자로 수배되었던 박몽구(1980년 5월 당시 전남대 복학생 협의회장, 1980년 7월 12일 체포)는 5·18조사위 면담조사에서 “나를 숨겨주었던 친구 배○○(전남대 사대)이 범인은닉죄로 구속되고 학교에서 제적되었다.”고 진술했다.<sup>343</sup>

5월 17일 예비검속을 피해 수배생활을 하다 1980년 6월말 자수한 노향기는 5·18조사위 면담조사에서 “나를 숨겨준 고교 동기 회장 하던 박○○하고 총무 하던 세무사, 총무의

342 「5·18보상법」 제8조(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려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43 5·18조사위, 「참고인 박몽구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6.30.), 41~42쪽.



동네 친구 등 3명이 경찰(서울동부경찰서)에 구속되었어요.”라고 진술했다.<sup>344</sup> 목포 기독교 학생청년회장으로 예비검속 대상이었던 한봉철도 도피 기간 중 예비군 중대장이던 부친 한재욱이 경찰에 끌려가 구타를 당하고 해고되었다고 진술했다.<sup>345</sup>

## (2) 수배자 검거 작전 - 일제 검문검색과 연고선 수색

수배자에 대한 검거는 지역 보안부대와 치안본부(전국 경찰)가 담당하였고 검거 독려를 위한 유인(포상)으로 현상금 외에 1계급 특진을 내걸기도 하였다. 합동수사본부는 ‘광주사태’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6월 17일 수배자들이 자수할 경우 선처하겠다고 6월 30일까지를 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와 가족, 친지를 통한 설득작업을 벌였다.

또한 수배자 검거 지시 공문과 명단 하달, 검거자에 대한 포상과 1계급 특진 외에도 수배자 검거를 위한 불시검문과 일제 검문검색을 수시로 실시했다. 보안사는 1980년 5월 26일과 5월 31일 두 차례 「중요수배자 조기검거계획」을 수립했고 1980년 5월 29일~12월 14일 6개월여 동안 최소 19회의 검문검색과 연고선 일제검색을 실시했다. (아래 <그림 5-2-6> 참조) 여기에는 연인원 182,000명 이상의 경찰과 군 병력이 동원되었고 전국 연 87,943개소에서 시민 542,000명 이상이 검문 또는 검색을 당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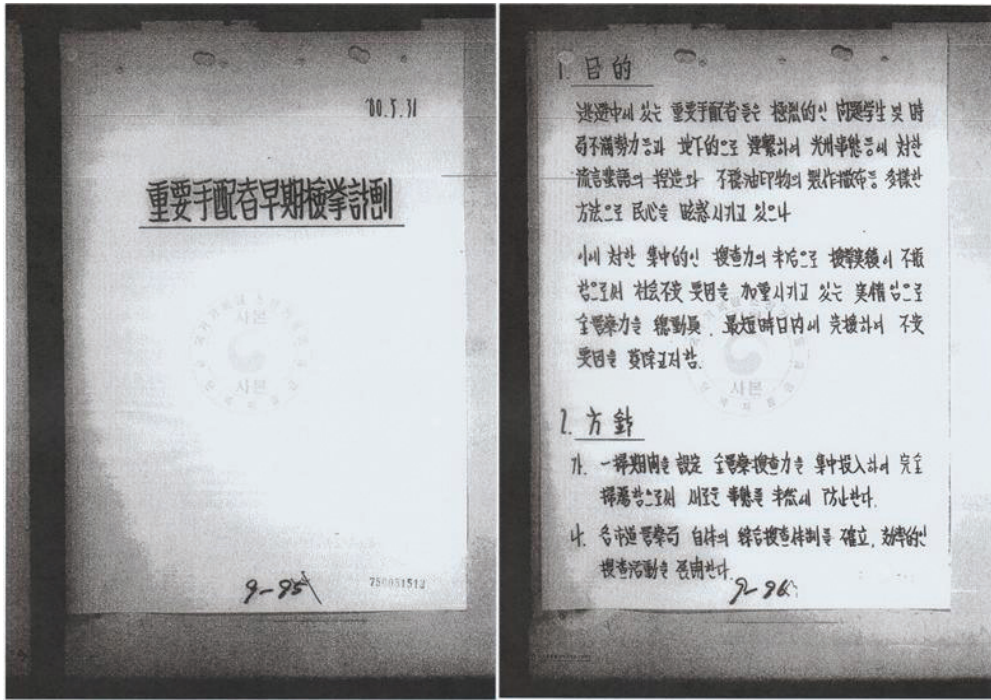
그러나 일제 검문검색과 연고선 일제 검색을 통한 수배자 검거실적은 5명을 검거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5·18조사위는 계엄사 상황실의 「상황일지」<sup>346</sup>와 「야간정보상황보고」<sup>347</sup>를 통해 확인된 검문검색과 연고선 일제수색을 분석해 일람표로 작성하였다.

344 5·18조사위, 「참고인 노향기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7.27.), 6쪽.

345 5·18조사위, 「참고인 한봉철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9.27.), 15~16쪽.

346 계엄사령부(1980.05.16.~05.31.), 「5·18민주화운동 관련 군 자료집(1979~1981)」 8권.

347 일일정보보고(1980.06.13.~12.15.), 「국가기록원 M/F 문서기록」 치안본부가 합동수사본부(또는 보안사)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일정보보고로 1980.6.13.~12.15.간 6개월여의 보고가 '국가기록원'의 M/F 문서기록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5-2-6〉 중요 수배자 조기 검거 계획

### (3) 수배자 명단 언론 공개와 자수 기간 설정

1980년 5월 20일부터 수배자 명단을 치안본부와 지역 보안부대에 하달하던 합수본부는 1980년 6월 16일 학생시위 및 ‘광주사태’ 관련, 유인물 제작·배포 관련 수배자에 대해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죄(免罪) 처리하겠다”며, 1980년 6월 18일~6월 30일 13일간을 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6월 17일자로 모든 언론에 수배 대상자 31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5·18조사위가 입수한 「학생시위 등 관련자 자수기간 설정」이라는 제목의 보안사 문서(M/F)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이희성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1980년 6월 16일) 이 문서의 기안처가 보안사 2처(정보처)이며 결재란에 전두환(당시 보안사령관)이 서명으로 결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간 중 자수자에 대해서는 선처(형 감경 또는 면죄)한다면서 “자수

제1장

제2장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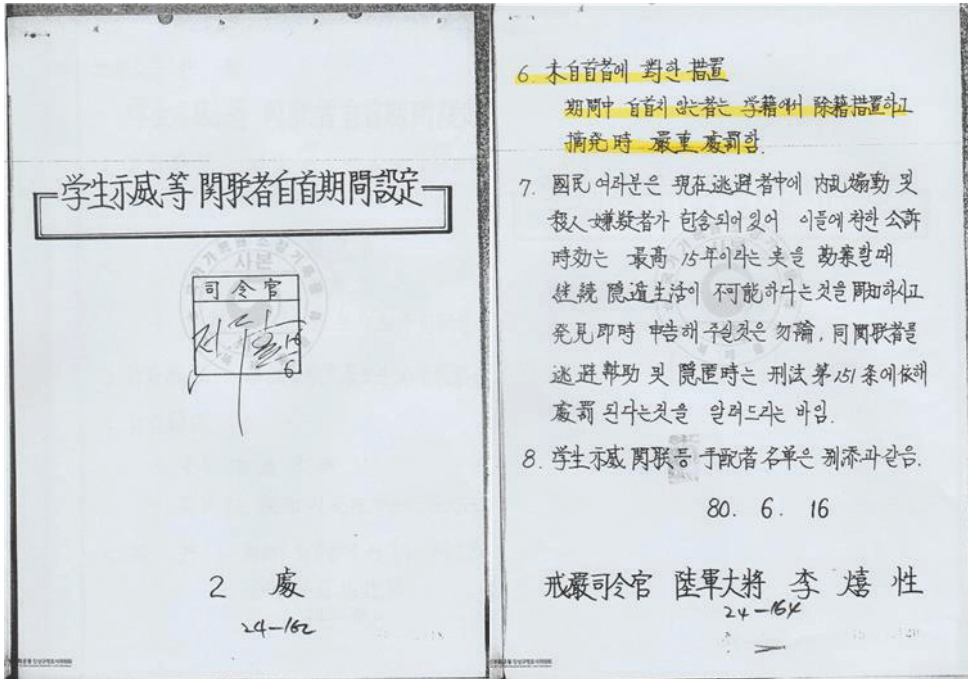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하지 않는 자는 학적에서 제적조치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한다고 명시하였다. (아래 <그림 5-2-7> 참조)



<그림 5-2-7> 학생시위 등 관련자 자수기간 설정 결재문서

이 조치에 따라 실제로 전남대는 학장회의를 열어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지명수배한 자로 자수하지 않은 학생 4명을 ‘80. 8. 11.부로 소급 제적처리한다”는 안건을 의결하고 정경자(사대 교육3), 송선태(인문대 국문3), 김영휴(의대), 문승훈(사대 국사교육) 4명을 제적조치했다.<sup>348</sup>

계엄사령부는 1980년 7월 3일 ‘광주사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수기한인 6월 18 일~6월 30일 자수한 사람은 모두 247명이며 이 중 144명을 훈방했다.”고 밝히고 자수기

<sup>348</sup> 전남대학교 학생처 생산자료(1980.08.11), 제28회 학장회의록 중 징계대상 명단, 「학장회의록」

간을 7월 4일~7월 10일간 1주일 더 연장했다.<sup>349</sup>

#### 마) 요약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계획인 ‘시국 수습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였고, 예비검속과 미검자에 대한 수배는 그 시국 수습방안의 세부 내용인 ‘국기문란자 수사계획’에 따른 조치였음이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sup>350</sup> 따라서 예비검속과 예비검속 미검자에 대한 수배는 폭동 실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더구나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구체적인 혐의나 법적 근거, 절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공개수배하였으나 정작 체포 뒤 며칠간의 간단한 조사만 하고 훈방된 사례가 적지 않은 데서도 확인된다.<sup>351</sup>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병행 실시한 예비검속으로 체포한 인원 2,699명 가운데 정작 기소된 인원은 404명(15%)이었고 2,144명이 훈방된 것은 계엄사 합수본부의 공권력 남용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 시까지 수배당한 인사는 당시 국가 수사기관의 문서로 확인된 것만 △중요 수배자 66명 △합수(단) 수배자 270명 △기타 수배자 1,210명 등 모두 1,546명이다. 이 가운데 신원(이름)이 확인된 사람은 59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952명의 명단은 확인할 수 없었다.

5·18조사위는 신원이 확인된 594명의 명단과 5·18보상심의위원회 보상 관련 서류를 교차 분석하여, 594명 중 252명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49 『동아일보』, 1980. 7. 3.

350 대법원 96도3376호, 「판결문」 (1997.04.17.).

351 육군본부(1982),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의 통계에 의하면 포고령 위반검거자 3,992명 중 훈방자가 2,901명(72.7%)이다.

## 2) 5·18피해자 학사징계 사건

### 가) 개요

많은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퇴학, 제적, 강제 휴학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징계조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나아가 이러한 징계조치는 당사자의 사회적 경력단절로 이어져 사회,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이러한 2차 피해의 실태도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학사징계 여부와 그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5·18관련자'로 수배, 연행, 구금, 구속된 사람 중 고등학생 이상 학생은 706명이다. 이들을 전수조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5·18피해자의 학사징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5·18조사위는 '5·18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심의 관련 자료(이하, 보상자료)를 분석해 '5·18관련자' 중 학생을 선별한 다음, 이 학생들의 소속 학교에 공문을 보내<sup>352</sup> 학사징계(기간: 1980년~1981년) 관련 자료를 회신받는 방법으로 대상자 명단을 작성했다. 보상자료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자료에서 일부 대학의 학사징계자 명단을 입수해 보완조사를 실시했다.

5·18조사위는 이 작업을 통해 전체 명단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현재까지 33개 대학과 2개 고등학교 소속 457명의 학사징계자 명단을 확보하였으며, 이들 중 285명은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연행, 구금, 상이 등의 피해가 입증되어 '5·18관련자'로 인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5·18진상규명법」의 규정에 따른 '광주 관련 지역' 피해자는 75명이다.

352 5·18조사위, 조사과-735 (2022.08.24.), 「학생활동 관련 학사징계자 명단 등 회신 협조 요청」.



## 나) 배경

학생들에 대한 학사징계는 신군부가 1980년 5월 초부터 학원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980년 5월 5일 보안사가 작성한 「학원사태 종합분석 및 대책」에는 학생징계의 기준을 3등급으로 나눴는데 ‘A급(포고령 위반 구속자)은 제적, B급(연행, 즉심회부자)은 정학, C급(훈방자, 교수·학부모 각서)은 경고’이다.<sup>353</sup> 그러나 1980년 7월 말 각 대학에서 이뤄진 학사징계에서는 훈방된 학생에게도 무기정학이나 제적조치가 내려져 실제로는 학사징계의 수위가 더 높았다.

이후 계엄사의 지시로 각 시·도에 학원사태수습대책협의회가 설치(1980년 5월 8일)되고, 각 대학에는 학생상담지도실(1980년 6월 10일)이, 문교부 대학교육국에는 심의관실(1980년 6월 20일)이 신설되었다. 또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1980년 7월 15일 전국 각 대학에 서한을 보내 총장의 징계권 강화 등 학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학칙개정(총·학장 직접징계권 및 지도휴학제 도입, 제적 학생의 재입학 또는 타 대학 입학금지 명문화)을 요구하였고, 1980년 7월 이후 포고령 위반 학생들을 학교와 사회로부터 격리하려는 목적으로 학사징계와 강제징집을 실시했다.

이 시기 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학원대책회의가 수시로 개최되었는데 보안사,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는 대학 당국과 국가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학원통제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당시는 비상계엄령 시기였기 때문에 보안사가 정책조정권을 주도했다.<sup>354</sup>

1980년 6월 20일 각 대학 학생처를 통해 학내문제를 관리 통제할 전담조직으로 문교부에 심의관실이 설치된 이후, 전국 71개 대학은 문교부의 지시<sup>355</sup>에 따라 총·학장회의

<sup>353</sup> 육군본부, 국군보안사령부(1980.5.5.), 「학원사태 종합분석 및 대책」

<sup>354</sup> 문교부(1980.07.15.), 「강제징집 등, 학원통제에 관한 대학자료 조사보고」, 27쪽.

<sup>355</sup> 전국 대학 학생처장회의(1980.06.27.), 「각 대학 학장회의록, 2004.02.20.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 세종문화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렸고 “학원사태 관련 학생은 학사징계를 철저히 하여 07.20.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각 대학 총·학장은 07. 31.까지 심의관실을 경유하여 문교부 장관에게 소속 대

또는 학생처장회의(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안사령부,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포고령 위반 연행학생들에 대한 학사징계를 결정하고 7월 31일까지 문교부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5·18민주화운동 시기에 이뤄진 학사징계는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의 지시와 문교부의 지침에 따라 이뤄졌고 학사징계의 내용은 제적, 정학(무기, 유기), 근신·경고, 총·화장 직권휴학(이 경우 군 미필자는 학적변동에 따른 강제징집이 뒤따랐다) 등이었다.

비상계엄 해제요구 시위 등 계엄포고령 위반 학생에 대한 학사징계는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반란과 내란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연행, 수배, 구금, 구속 등 형사처벌과 병행한 2차 탄압으로, 구속자는 물론 기소유예 또는 훈방된 학생들까지도 거의 예외 없이 학사징계 대상이 되었다.

#### 다) 학사징계 규모와 피해 실태

##### (1) 피해 규모

조사를 통해 확인한 ‘학원소요 관련’ 학사징계 피해자의 규모는 집계 시기와 집계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계엄해제 후 육군본부가 편찬한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1982년)을 기준으로 △제적 523명 △무기정학 181명 △유기정학 228명 △근신 948명 등 합계 1,880명이다.<sup>356</sup> (1980년 9월 개강 이후 교내 시위 관련 처벌자 76명 포함).

이 가운데 등록금 멸실 및 학업중단 등 실질적 피해가 있는 학사징계(제적, 무기 또는 유기정학) 피해자는 932명이다. (아래 <그림 5-2-8> 참조)

.....  
학생들에 대한 징계결과를 보고하였다.(2004.02.20. 교육인적자원부가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각 대학 학장회의록).

<sup>356</sup> 육군본부(1982.03.), 『戒嚴史-10.26事態와 國難克服』, 337쪽.



(다) 學園 取扱關係者 措置 現況

• 問題學生 學事處理 (80. 3. 5~5. 16)

計	除 籍	無期 停學	有期 停學	誦 償
1,880	523	181	228	948

※ 80. 9 開辦以後 校內 示威관련 처벌자 76名

〈그림 5-2-8〉 학원소요 관련자 조치 현황

‘5·18관련자’로 인정된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생은 245명이나, 이들 가운데 담양공고 윤○○ 외 학사징계를 당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주 신흥고교생의 1980년 5월 27일 교내 시위와 관련, 25명이 무기정학(7명) 또는 유기정학(17명), 휴학(1명)의 징계를 받은 사실은 확인하였다<sup>357</sup>.

1980년 8월 31일 현재 징계자 수가 많은 것은 대학 전면개강(9월 3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문교부가 대학의 학칙개정과 문제학생 징계를 7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징계자, 특히 제적자가 102명 늘어난 것은 2학기 중 학내 시위와 유인물 살포 등이 전국적으로 이어졌고, 정학 등 학사징계를 이미 당한 학생이 다시 시위나 유인물 제작에 참여해 추가 징계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학원대책 가운데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요선도 대상 학생은 71개 대학, 1,727명이며 순화 불능 학생은 총·학장이 직권휴학 조치하고, 입영대상자는 바로 입영조치”<sup>358</sup>한다는 것으로, 이는 직권휴학과 입영이 대학 총·학장이 실행한 학사징계의 일환임을 방증한다.

아래의 〈표 5-2-4〉 학사징계 관련 통계 중 ‘서울시 경찰국’의 통계는 서울시경 관내 대학의 통계로,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학사징계를 당

357 5.27신흥민주화운동, 「전주 신흥고 90년사, 전주 신흥고 홈페이지」; <https://school.jbedu.kr/jsh/MABBE>.

358 국군보안사령부(1980.09.03.), 「대학 전면개강에 따른 학원대책, 개강에 따른 학원 전망 및 대책」.

한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서울지역에 많았음을 보여준다. 제적처분을 받은 대학생의 경우, 거의 같은 시점에 작성된 보안사의 통계(1980년 8월 31일 현재)와 서울시 경찰국의 통계(1980년 8월 28일)를 비교하면 전국 421명 중 서울지역 대학생이 261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한다.

〈표 5-2-4〉 학사징계 관련 통계

	제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견책·기타	계
「학원정보 판단-9.3. 개학 중심」, <sup>359</sup> 서울시 경찰국, 1980.8.28.	261	78	108	369	816
「대학 전면개강에 따른 학원대책」, 보안사, 1980.9.3.(1980.8.31. 현재)	421	178	211	912	1,722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 <sup>360</sup> 육군본부, 1982.3.	523	181	228	948	1,880

\* 〈계엄사후보고서(1)〉에는 이 통계에 대해 “시위, 불온 유인물 살포 등 학원소요 관련자로 처벌된 자임”으로 명기되어 있고, 기간은 1980.3.5.~5.16.으로 손글씨로 표기되어 있음.  
기간이 1980년 3월 5일~5월 16일로 되어있는 것은 「계엄사」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데 따른 착오로 판단된다.

계엄기간 동안 학사징계 피해자 규모는 △제적 523명 △무기정학 181명 △유기정학 228명으로 확인<sup>361</sup> 되었으나, 5·18조사위는 피해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료 제공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다수 대학의 경우 보존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학사징계 피해자 전체 명단은 확인할 수 없었다.

5·18조사위는 각 대학 회신자료와 ‘5·18보상심의위원회’ 자료, 국가기록원에서 입수

359 서울시경찰국(1980.08.28.), 「서울시경 관내 33개 대학의 학사징계 통계」.

360 육군본부가 1982년 펴낸 이 보고서에는 1980년 9월 개강 이후 교내 시위 관련 처벌자 76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기간은 1980.3.5.~5.16.으로 기록돼 있다. 〈계엄사후보고서(1)〉에서도 이 통계에 대해 “시위, 불온 유인물 살포 등 학원소요 관련자로 처벌된 자임”으로 명기되어 있고, 기간은 1980.3.5.~5.16.으로 손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엄사」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데 따른 오류로 보인다.

361 육군본부(1982),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

한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현재 33개 대학과 2개 고교의 학사징계 피해자 457명의 명단을 확보하였으며 이 중 285명은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관련자’로 인정되었고 ‘광주 관련 지역’ 피해자는 75명임을 확인하였다.

## (2) 학사징계 피해 실태

학사징계, 특히 한 학기 이상 정학이나 제적(또는 제명) 징계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 멸실은 물론 복학(재입학)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 기간 학업중단이 불가피해 졸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사회진출이나 대학원 진학 등이 늦어지는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제명이나 정학 등 학사징계에 따른 학적 변동으로 정상적인 징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징집된 경우가 많았고, 당시 대학에서 교련 과목을 이수하면 1년에 2개월씩 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있었으나 이들의 경우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5·18보상법」에 따르면 1979년 12월 12일 이후 5·18 전후의 신군부 내란에 반대하여 시위하거나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이유로 수배, 연행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수배, 연행, 구금되었다가 기소유예, 면소, 훈방된 뒤 학교로부터 학사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도 모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각 대학이 관리하는 학사징계 기록(징계자 명부 또는 총학장회의록)은 사건 발생 40여 년이 경과해 대학 당국이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본 5·18조사 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학사징계 피해자 명단 모두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라) 소결

한 학기 이상의 정학이나 제적(출학, 제명 등 포함) 징계의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이 멸실되는 것은 물론 복학(또는 재입학)이 이뤄질 때까지 상당 기간 학업중단과 졸업 지연의 피해가 불가피했고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등도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피해가 이어졌다.

또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제적이거나 정학 등 학사징계에 따른 학적 변동으로 정상적인 징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기징집을 당한 경우가 많았고, 군 복무 중 ‘특수학적변동자’로 보안사의 특별관리를 받아야 했다. 또 당시 대학에서 일반군사교육(교련 과목)을 3학년까지 6학기 이수해야 했고, 교련을 이수하면 1년에 2개월씩 군 복무 기간 단축 혜택이 있었으나 학사징계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교련을 이수했더라도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sup>362</sup>

1979년 12월 12일 이후 5·18 전후의 신군부 내란에 반대하여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은 물론이고 수배, 연행, 구금되었다가 기소유예, 면소, 훈방된 경우에도 ‘학사징계’ 처벌을 받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장기간의 2차 인권침해 상태가 지속되었다.

.....

362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징집된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2022.10.28.면담)과 훈방되고 하루만에 강제징집된 승전대 총학생회 부회장 이○○(2022.11.23.면담)은 우리 5·18조사위 참고인 진술조사에서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980년 당시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9834호) 제9조 제3항은 3년간 교련을 이수한 자는 6개월, 2년 이수한 자는 4개월, 1년 이수한 자는 2개월 각각 복무기간을 단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련을 거부한 자와 학칙에 따른 징계로 퇴학하거나 제적된 자는 감면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 3) 5·18피해자 해직 사건

#### 가) 개요

##### (1) 조사 대상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해직 또는 해고<sup>363</sup> 피해를 입은 사례는 광범위한 직종에 걸쳐 있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에 주요한 걸림돌로 판단하고 집중적인 대책 마련을 한 대상은 대학과 언론인<sup>364</sup>이었다. 그리고 신군부가 ‘광주사태’ 악화의 책임을 공수부대가 아닌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안병하 전남도경국장 과 도경 산하 전남 각 경찰서장 등 13명을 구속 또는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직하였다.

5·18조사위는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개입과 부당한 행사가 확인된 4개 유형(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언론인, 교수, 교사, 경찰)의 해직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sup>365</sup>

5·18피해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사기업 등에 취업했다가 나중에 신원조회 등의 과정에서 전력이 드러나 해직되는 등,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은 구체적 사례들이 있었으나, 5·18조사위는 제한된 조사 일정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sup>366</sup> 이

<sup>363</sup> 해직과 해고는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이나 일반적으로 공무원 등 공직자를 그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경우 해직이라고 하고 사기업 등 민간기업에서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내보내는 경우 해고라고 한다. 공무원인 경찰관과 달리 교수나 교사의 경우 국공립이 아닌 사립대학이나 학교가 많았고 언론사의 경우 KBS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사기업이지만 그 직무가 지닌 공공성과 피해의 집단성을 감안해 용어를 ‘해직’으로 통일하였다.

<sup>364</sup> 보안사령부는 1980년 3월 언론대책반 설치와 K-공작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는 학원반을 설치·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9년 12·12 이후 매월 한두 차례씩 학원대책을 수립하였다.

<sup>365</sup> 우리 5·18조사위의 피해자 면담조사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지명수배자를 숨겨준 혐의로, 또는 수배자의 부모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 등이 있어 추가적인 확인조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sup>366</sup> 참고인 이○○ 면담조사(2022.07.28.) 진술녹취록; 40~46쪽. 전남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0년 5월 18일 검거되어 구속기소되었다가 1심 선고 당일 가석방된 이○○은 5·18조사위의 면담조사에서 “81년 대학 3학년 중퇴 학력으로 건축기사 2급 자격과 1급 자격을 딴 뒤 25대 1의 경쟁을 뚫고 포항제철을 설계하는, ‘스메크’라는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 보름쯤 후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자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합격증을 그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참고인 서○○(2023.05.16.) 진술녹취록; 28~39쪽.; 영남대 법대 학생회장으로 50사단에 예비검속됐다 60여 일 만에 훈방되고 학교에서 학원소요를 이유로 근신처분을 당한 서○○은 5·18조사위 면담조사에서 “1982년 졸업 후 해군장교를 지원해 신체검사, 필기시험, 면접까지 통과했는데도 신원조회 때문에 합격 취소를 당했고 그

에 대한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

## (2) 해직의 유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해직은 ㉔징계면직(징계해고: 파면, 해임) ㉕직권면직(정리해고) ㉖강제성 의원면직(강제사직)은 물론이고 ㉗원천해직(국립사범대학 졸업자의 경우 등록금 감면을 받는 대신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교사로 복무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임용기관이 임용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임용을 거부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5·18조사위는 이를 준용하였다.

조사 대상인 4개 직군의 경우, 교사, 경찰관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당연해직되거나 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은 뒤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직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교수들의 경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나 5·18 관련(전남대, 조선대, 전북대 교수)으로 예비검속 대상에 포함되어 조사받았거나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당연해직된 경우도 있지만,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지 않고도 1980년 4월~5월 대학별 교수성명 발표나 지식인 시국선언에 적극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해직되거나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직되었다.

언론인의 경우 기자협회 간부, 경향신문, 문화방송 기자들, 동아일보 기자 일부는 개별 사건으로 구속되고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되기도 했으나, 대다수는 1980년 5월 20일~5월 27일 기간 계엄사령부의 보도검열로 광주의 참상에 대한 보도가 나가지 못하는 데 항의해 제작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해직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언론사별 자체정화라는 형식으로 해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뒤 카투사에도 합격했지만 그마저도 신원조회 때문에 탈락되어 포병으로 군 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구속되어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수와 교사, 언론인 다수는 '5·18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제작 거부 해직언론인 대다수와 변형윤, 김동길, 이효재, 김진균, 탁희준 교수 등 대학교수 시국선언이나 지식인 134인 선언(1980년 5월 15일) 참여를 이유로 해직된 교수들은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 일부 개정 이전에는 5·18보상 신청의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 나) 언론인 해직 사건

### (1) 언론인 해직 사건의 배경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3월 하순 보안사 정보처(처장 권정달 대령)에 언론조종반<sup>367</sup>(반장 이상재 준위)을 설치, 언론계 중진들을 접촉·회유해 전두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환경 조성 and 민주화 대신 안보와 안정 쪽으로 언론보도를 유도하는 공작을 진행하는 한편, 4월부터 시작된 언론계 내 보도검열 철폐와 자유언론 실천 결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기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보안사 언론조종반은 곧바로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장급 이상 중진 94명에 대한 비밀 접촉 및 회유공작계획인 「K-공작계획」<sup>368</sup>을 수립, 전두환 사령관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접촉을 통해 이들의 정치 성향(민주화 또는 안정), 3김씨(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등을 파악해 등급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공수부대의 강경진압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격화되자 보안사는 5월 19일 22개 중앙언론사 편집부장이나 정치부장을 서울시청 회의실에 소집, 통신의 경우 검열을 마치기 전 송신 금지, 생방송 금지, 계엄사 중요 발표 직후 발표내용이 경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광고 방영 금지', 그동안 검열면제 대상이었던 문화·체육면까지 포함한 모

<sup>367</sup> 국군보안사령부(1980.03.27), 「언론조종반 운영계획(言論操縱班 運營計劃)」, 전두환 사령관 서명 결재문서.

<sup>368</sup> 국군보안사령부(1980.03. 하순), 「K-공작계획」, 전두환 사령관 서명이 남아 있다.



든 언론, 출판, 방송 내용은 사전검열 등 보도통제 지침을 통고하고,<sup>369</sup> 5월 21일부터는 보도검열단 장교의 계급을 모두 중령으로 격상하고 문공부, 경제기획원, 중앙정보부 직원을 전문 분야 요원으로 보강했다.<sup>370</sup>

한편 언론인들은 1980년 5월 전국 대학가의 주요 이슈가 재단 비리나 어용교수 문제 등 학내문제에서 벗어나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 정치일정 단축 등 사회 민주화로 옮겨가고 대규모 가두시위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1980년 5월 16일 기자회견은 “5월 18일까지 계엄사가 언론에 대한 보도검열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5월 20일부터 신문·방송·통신 등 모두 제작 거부를하기로 결의”하였다.<sup>371</sup> 경향신문 기자들은 5월 20일부터, 다른 신문·방송·통신사들도 속속 기자회견분회 회의를 열어 “광주소요사태에 관한 보도관제 계속에 항의”하는 제작 거부에 돌입했다.<sup>372</sup> “제작 거부는 대개 입사 5년 차 이하 평기자들 중심이었고 이에 따라 신문·방송·통신사 모두 각 부의 차장급 이상 간부들이 취재와 편집 등 제작업무를 전담할 수밖에 없었다. 일선 기자들의 취재와 편집 등 제작 거부로 신문은 인쇄와 발송이 평균 2시간 지연되었고, 통신은 기사량이 격감하였으며 방송은 보도시간을 단축하는 현상이 불가피했다.”<sup>373</sup> 제작 거부를 계속하던 각 사의 일선 기자들은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입 후인 1980년 5월 28일부터 제작 거부를 해제하고 제작에 참여하기 시작했다.<sup>374</sup>

언론사 기자들이 일제히 제작을 거부하는 사태를 경험한 보안사는 “문제 해소 시에도

369 국군보안사령부 언론반(1980.05.19), 「보도통제지침 통고조치 결과 보고」.

370 보안사령부 언론반(1980.05.21), 「보도검열팀 강화계획」.

371 1980년 5월 16일 회장단과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보도검열 철폐와 제작 거부를 결의한 기자회견 간부들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동시에 실시된 예비검속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372 국군보안사령부 언론반(1980.05.24), 「중앙 각 언론사 제작거부사태 분석보고」.

373 위 각주 372)의 보고: 보안사 언론반은 제작 거부자들이 “민중항거의 기사화 회피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언동을 하고 있다며 “각 사의 제작거부 주동자는 회사별로 2~5명 선”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374 국군보안사령부(1980.05.28), 「언론사 제작거부 기자 동정보고」.

주동 과격분자를 색출, 후환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할 필요”<sup>375</sup>가 있다는 판단 하에, ‘광주사태’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수사결과를 발표(7월 3일, 7월 4일)한 뒤인 7월 하순부터 해직 대상 언론인 명단을 작성, 권정달 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을 통해 이광표 문공부장관에게 전달하였다.<sup>376</sup> 문공부장관은 각 언론사 사장을 개별적으로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언론계 자체정화계획」<sup>377</sup>과 함께 해직 대상자를 통보하면서 각 언론사의 자체정화 형식으로 해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강제했다.<sup>378</sup>

이에 따라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는 7월 29일과 7월 30일 각각 긴급총회를 열어 언론계 자율숙정을 결의하였고 8월 1일에서 8월 15일까지 중앙언론사와 지방언론사는 자체정화라는 형식으로 언론인을 최소 711명 이상 해고하였다.<sup>379</sup>

보안사령부는 또한 자체정화 형식으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해 6개월, 1년 또는 영구적으로 △언론사 관련 단체 △공무원 △국영기업 △정부투자 및 출자법인과 단체 △사기업의 홍보 및 광고 담당 요원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들 제한업종 외에 취업할 경우 퇴직 언론사의 재직 증명 발급과정에서 각서를 받아 문공부

375 국군보안사령부(1980.05.24), 「중앙 각 언론사 제작거부사태 분석보고」.

376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상재 신문조사」(1996.01.04.), 『5·18사건 수사기록』 제102권. 이상재 보안사령부 언론대책반장은 “80.7. 하순. 포고령 위반자를 중심으로 해직 대상 언론인 90여 명의 명단을 권정달 정보처장에게 전달했고 권정달이 이 명단을 이광표 문공부장관에게 주었으며, 그 집행방법으로 작성한 「언론계 자체정화계획」도 함께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377 국보위 문공분과위원회, 「言論界自體淨化計劃」, 국보위 문공분과위 문서로 되어있으나 이상재는 본인이 작성해 권정달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인정하였다(위 검찰 신문조사). 이 계획은 해직 대상 언론인에 대한 숙정방법으로 △1단계(7.25.~7.30.) - 신문협회·방송협회 긴급총회 열어 자체정화 결의 △2단계(8.1.~8.10.) - 각 사 발행인 책임 아래 자체 정화위원회 설치 및 자체 숙정 △3단계(8.11.~8.30. - 소기의 성과가 없을 시 합수에서 조사처리라고 명시해 자체정화 형식을 빌린 강제해직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378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상재 신문조사」(1996.01.04.), 『5·18사건 수사기록』 제102권.

379 711명은 보안사 언론조종반이 각 언론사로부터 언론인 해직 결과를 보고받은 뒤인 1980년 9월 1일 하달한 「정화언론인 취업 허용 제한기준」에 따른 것이다. 해직언론인의 숫자와 관련해 이상재 언론조종반 반장은 자신이 권정달 정보처장에게 전달한 숫자는 90명이라고 하고 이수정 당시 문공부 공보국장은 권정달이 이광표 문공부장관에게 건네준 해직대상 기자는 336명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큰 차이가 있다.

에 제출하도록 강요했다.<sup>380</sup>

〈표 5-2-5〉 정화언론인 취업제한 기간

구분	총계	부국장 이상	부장 이하	언론사 취업 불허자		
				국시 부정 및 반정부	편집국장 주필	소계
인원	711	42	627	28	14	42
기간		1년	6개월	영구		

언론인 대량해고에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6월 9일 제작 거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경향신문·문화방송의 서동구 조사국장과 노성대 보도국 부국장 등 9명을 유언비어 유포 등 혐의로 연행하고, 심송무 기자 등 동아일보·동아방송 기자 3명도 연행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제작 거부 결의를 한 기자협회 회장단 등 간부를 비롯해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돼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된 것으로 확인된 언론인은 현재까지 22명이다. 이들 중 21명은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연행, 구금, 상이 등의 피해가 입증되어 ‘5·18관련자’로 인정되었다. (아래 〈표 5-2-6〉 참조)

380 국군보안사령부(1980.09.01), 「淨化言論人 就業許容制限基準」.

〈표 5-2-6〉 검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된 언론인 명단

구분	이름	직책
기자협회	김태홍	기자협회 회장, 합동통신 기자
	노향기	기자협회 부회장, 한국일보 기자
	이수언	기자협회 부회장, 부산일보 서울주재 기자
	박정삼	서울경제 기자
	김동선	기자협회보 편집실장
	안양노	기자협회 간사, 서울경제 기자
	송학엽	기자협회 사무국장
경향신문 문화방송	서동구	경향신문 조사국장
	이경일	경향신문 외신부장
	홍수원	경향신문 외신부 기자
	박우정	경향신문 외신부 기자
	표완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고영재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박성득	경향신문 편집부 기자
	노성대	MBC 보도국 부국장
	오효진	MBC 사회부 기자
동아일보	심송무	사회부 기자
	박종렬	동아방송 사회부 기자
	천승준	동아방송 방송위원
CBS	손주영	정경부 차장
	한용상	정경부 차장
	정성진	정경부 차장

## (2) 언론인 해직 사건 경과

언론인 해직 관련 주요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0.03.27.: 보안사령부 정보처(처장 권정달 대령)에 언론조종반(반장 이상재 준위) 설치.

- 1980.03. 하순: 언론계 중진 94명에 대한 비밀 접촉·회유공작인 “K-공작계획”을 수립하여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보고.
- 1980.05.07.: 중앙일보·동양방송 기자들, 비상계엄 조기해제 및 자유언론실천결의.
- 1980.05.09.: 합동통신·기독교방송 기자들, 자유언론 실천 결의문 채택
- 1980.05.10.: 경향신문·동아방송 기자들, 보도검열 거부 및 계엄 해제 결의문 채택.
- 1980.05.12.: 한국일보 및 자매지 기자들, 비상계엄 해제 및 보도검열 철폐 결의문 채택.
- 1980.05.13.: 전남일보, 언론자유실천 결의문 채택. MBC 기자들, 계엄령 조속 해제, 언론 검열 폐지 등 결의
- 1980.05.14.: 매일신문, 영남일보 기자들, 계엄해제 및 사실보도 결의문 채택.
- 1980.05.16.: 기자협회, 5.20. 0시를 기해 계엄사의 보도 검열을 거부하기로 결의.
- 1980.05.17.: 계엄사 합수부, 제작 거부 결의 기자협회 회장 등 5명 체포·수배 (08.02. 포고령 위반죄로 실형 선고)
- 1980.05.19.: 보안사, 22개 언론사 편집부장 불러 계엄확대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새로운 보도통제 지침 통고.
- 1980.05.20: 경향신문 기자 등 제작 거부 돌입.
- 1980.05.21.: 보안사, 보도검열팀 강화계획 수립.
- 1980.05.24.: 보안사, 「중앙 각 언론사 제작 거부 사태 분석보고」.
- 1980.05.28.: 보안사, 「언론사 제작 거부 기자 동정보고」.
- 1980.06.09.: 계엄사, 경향신문과 MBC기자 9명과 동아일보 기자 3명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
- 1980.07. 하순: 보안사 언론조종반, 포고령 위반자를 중심으로 해직대상 언론인 90여 명 명단과 「언론계 자체정화계획」을 작성,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을 통해 이광표 문공부장 관에게 전달.
- 1980.07.29.: 신문협회 긴급총회 열어 자율숙정 결의.
- 1980.07.30: 방송협회, 긴급총회 열어 자율숙정 결의.
- 1980.08.01.~15.: 중앙언론사와 지방언론사, 언론인 집단 해고.
- 1980.09.01.: 보안사 언론조종반, 「정화언론인 취업허용 제한기준」하달.
- 1980.12.20: 계엄사, CBS 기자 등 4명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수배.

### (3) 언론인 해직 피해자 규모

이상재 언론조종반 반장은 1995년 검찰 조사에서 90여 명의 자율숙정 명단을 권정달 정보처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반면, 당시 보안사와 문공부 간 가교역할을 했던 이수정 문공부 공보국장은 검찰 신문에서 권정달 정보처장이 이광표 문공부장관에게 전달한 해직 대상 언론인의 수는 33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8명은 개별적으로 보안사와 접촉해 해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로는 298명이었고, 그 외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해직한 사람이 635명이라고 진술했다.<sup>381</sup> 이 숫자를 합하면 해직자는 모두 933명이 된다.

반면 보안사 언론조종반이 1980년 9월 1일 작성해 하달한 「정화언론인 취업 허용 제한 기준」과 「정화언론인 취업 허용 건의」에는 자율정화라는 형식으로 해직된 언론인의 총수를 711명으로 집계하고 각 언론인 명단과 함께 해직 사유를 반정부, 국시 부정, 제작 거부, 부조리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보안사가 선정해 각 언론사에 전달한 해직 대상 언론인의 숫자는 관계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국가권력 등에 의한 해직 피해 언론인의 정확한 숫자는 확정할 수 없다. 단, 보안사가 각 언론사의 해직 조치 결과를 보고받아 1980년 9월 1일 작성한 「언론인 정화 결과보고」와 「정화언론인 취업 허용 제한기준」, 1980년 9월 15일 작성한 「정화언론인 취업 허용 건의」의 기록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제작 거부, 반정부, 국시 부정 등을 해직 사유로 적시한 해직 언론인을 추려보면 254명으로 확인되었다.

## 나) 교수 해직 사건

### (1) 교수 해직 사건의 배경

1980년 4월 19일 4·19혁명 20주년 기념일 행사 이후 대학가의 이슈가 대학생 병영집

381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이수정 신문조사」(1996.01.05.), 『5·18사건 수사기록』 제102권.

체교육 거부 등에서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정부 주도 개헌 중지 등 정치 이슈로 옮겨가고 참여 열기가 고조될 조짐을 보이자 보안사는 학원정보 수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 전두환 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학원반’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sup>382</sup>

일부 사립대학의 족벌경영체제와 대학생 병영집체교육 문제로 학내 분규와 시위가 점차 열기를 띠면서 서울대 등 재경 주요 대학교수 361명이 공동으로 △대학의 족벌체제 경영 배제 △군사교육의 근본적 조기 개선 △대학의 자율경영과 교수재임용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최근 학원사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고, 대학가의 민주화 요구 열기가 점차 고조되면서 1980년 5월 7일 한국외국어대, 5월 8일 연세대, 5월 9일 이화여대, 중앙대와 숙명여대 등 서울에서만 12개 대학 1,843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다.

전국적으로 대학생의 가두시위가 광범하게 진행되던 5월 15일에는 서울대학교수협의회장 변형윤 교수 등 교수, 언론인, 법조인, 문인 등이 참여한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으로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 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는 74명<sup>383</sup>이었다.

보안사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수사의 틀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6월 하순부터 5월 17일 전국 모든 대학을 폐쇄한 데 따른 법정 수업일수를 감안, 휴교령 해제 시점을 가늠하기 시작하면서 개강에 따른 학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안사는 6월 24일 작성한 「학원사태 지지 시국선언 교수에 대한 조치 검토」<sup>384</sup>에 “시국

382 「학원반 운영계획」(1980.05.01.) 보안사 참모장, 군수처장, 인사처장의 서명과 전두환 사령관의 서명이 있는 문서로 정보수집의 중점을 △문제교수 및 학생씨클 동향 △처벌학생(긴급조치 위반) 복교 동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정보망 운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주요 첩보 유출이 가능한 첩보원을 운영하되 위해분자에 관한 첩보 유출에 중점 △장기 운영을 원칙으로 △정보망비 지급은 보수식 고정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지급, 선물, 편의제공, 접대 등 다양하게 운영 가능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383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 참여교수 74명은 추천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비록 유신 지지에 나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전두환 정권하에서도 다시 침묵으로 처신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당시 시국선언 참여 교수 74명 중 강만길, 이문영, 한완상, 김진균, 문동환, 유인호 교수 등 27명이 ‘보직박탈’교수에 포함되었다.

384 이 검토보고서 첨부문서에는 △4월 24일 재경대학 교수 361명의 ‘최근 학원사태에 관한 성명’의 주동교수 20명 △5월 15일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 서명 교수 28명 △각 대학 시국선언 교수 중 주동급 10개교 100명의 명단과 함께 △각 교수 시국성명의 내용과 평가 △함세웅 신부, 박형규 목사, 함석헌 씨알의 소리 대표, 고은 자유실천



선언 교수들에 대한 조치 없이 개강할 경우, △자신들의 시국선언과 연행·수배된 학생들의 소요 행위를 영웅적인 민주투사로 미화시키는 등으로 학생 층동 △안정과 변영을 희구하는 민심에 기초한 정부의 5·17조치를 비민주시하여 비판하는 등 선량한 학생들을 의식화 △선량한 교수들을 선동할 뿐 아니라 성실한 교수들을 빈축, 어용으로 지목, 여론을 환기하는 등 학생들과 교수 간 이간 책동 △면학을 위한 자체 방위력 육성 및 정보요원의 학내활동 등 학원안정대책 수행을 학원사찰로 부상, 학생을 자극, 사태 재연을 유도하는 행위가 우려된다”며 이들 교수에 대한 대책 검토가 긴요하다고 하였다.

보안사는 검토한 대책의 일환으로 1980년 4월 24일 재경 대학교수 361명의 성명 주동자 20명과 5월 15일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 주동 28명에 대해서는 계엄사령부에 출두하게 하여 엄중 경고하고, 여타 대학 자체 시국선언 주동자(연대, 외대, 숙대 중앙대, 한신대, 감신대, 동국대, 고대, 인하대, 이대 등 10개 대학 100명)는 문교부에 엄중 경고할 것을 지시했다.

보안사의 7월 이후 하반기 학원대책<sup>385</sup>에서는 강도가 이전보다 높아져 개강 후 학원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문제 교수와 학생을 학교로부터 격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해도가 높은 문제 교수 조기 숙정 △문제성 있는 학생의 등급을 분류, 제적·무기정학 등의 조치에 두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문제 학생과 교수’에 대한 처리 지침을 문교부에 하달하면서 문교부 학사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제 학생과 교수’에 대한 처리를 7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1980년 7월 말까지 교수들에 대한 해직과 학생의 학사징계를 마무리하고 문교부에 그 결과를 보고했다.

문인협의회 회장, 이문영 고려대 교수, 김찬국 연세대 교수 등의 대학 강연을 ‘불순세력 학생의식화 강연상황’이라는 제목 아래 표로 정리해 놓고 있다.

385 보안사령부, 「'80 하반기 학원대책 - 개강시기 판단에 따른 대책」, 1980.07.10. 여기에는 문교부가 취할 대책으로 “문제교수 및 학생에 대한 과감한 정화로 개강 전 불안 요인 완전 제거”를 위해 △위해도가 높은 문제교수에 대해서는 조기 숙정 △소신이 없는 보직교수에 대해서는 능력 본위로 부서 교체 △10.26 이후 문제활동을 해온 위험성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A, B, C급으로 분류, 제적·무기정학 등 조치를 적시하고 있다.

1980년 9월 3일 대학 휴교령 전면해제 하루 전인 9월 2일 보고된 보안사의 「대학 전면 개강에 따른 학원대책」<sup>386</sup>에는 개강에 대비해 취한 △학원 사태 주동자 검거 및 처리 △학원 사태 관련 학생 징계 △학원 사태 관련 교수 조치 △대학 학칙개정 △학생지도 기능 강화 조치로 대학의 총·학장 경질 상황 등 조치 결과가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포고령 위반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학칙 규정에 따라 당연해직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국강연이나 시국선언 주동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 없이 해직된 교수들에 대해서도 보안사 학원반이 명단 작성에 관여한 것까지는 확인되나, 해직 대상자 명단이 어떻게 작성되고 문교부와 각 대학에 전달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 (2) 교수 해직사건의 경과

1980년 교수해직 관련 주요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80.04.24.: 서울 소재 주요 대학 교수 361명 대학의 족벌체제 운영 배제, 군사교육의 근본적 조기 개선, 대학의 자율운영과 교수재임용 폐지 등을 요구하는 ‘최근 학원사태에 관한 성명’ 발표.
- 1980.05.01.: 전두환 보안사령관, 보안사 정보처가 마련한 ‘학원반 운영 계획’ 결재.
- 1980.05.07.: 연세대 교수 120명이 ‘민주화를 위한 시국선언’ 발표, 계엄 해제와 민주화 조기 실현, 집체교육 수정 등을 요구했고 김덕 등 한국외국어대 교수 84명도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며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 조기 실현 요구.
- 1980.05.08.: 이화여대 교수 300명 시국 선언문 발표, 계엄해제 및 과도 정부 단축 촉구. 이○○ 교수 등 숙명여대 교수 80명도 “학생들의 요구에 진지한 자세로 자성하고 학원의 비민주적 요소 제거를 위해 학생들과 공동협력”할 것을 촉구.

386 「대학 전면개강에 따른 학원대책」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학원정보망(情報網) 부식(扶植) 현황 △대학별 출입원 현황 △대학통신망 구축 현황 △대학 총·학장 경질상황 △대학별 신분박탈 교수 현황 △대학별 처벌(학사 및 형사) △미검 수배자 현황 △불온 유인물 발생 및 검거상황 등이 들어 있다.

- 1980.05.09.: 중앙대 교수 150명, '민주화를 위한 시국선언'을 통해 계엄 해제와 정치 일정 단축, 집체교육 근본개선을 요구. 문동환 교수 등 한신대 교수 10명도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입장 표명.
- 1980.05.10.: 동국대 교수 198명, '학원 자율화와 민주화에 대한 시국 선언'으로 "학생들의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
- 1980.05.12.: 고려대 교수 236명, '군은 국방의무를 사명으로 하고, 학생들의 열성적인 행동을 인정한다'는 시국선언 발표.
- 1980.05.15.: 학계·언론계·법조계·문인 등 지식인 134명 '비상계엄 즉각 해제와 학원의 병영적 성격 청산'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대학 교수 28명 서명.
- 1980.06.24.: 보안사령부, 「학원사태 지지 시국선언교수에 조치 검토」보고.
- 1980.07.10.: 보안사령부, 「1980 하반기 학원대책 - 개강 시기 판단에 따른 대책」보고.
- 1980.07.26.: 고대 김용준, 조기준, 이○○, 이문영, 조용범, 김진만 교수 등 5명 해직조치.
- 1980.07.30.: 연세대, 김찬국, 서남동, 성내운, 김동길, 이○○ 교수 등 5명 해직 조치.
- 1980.07.30.: 문교부, 교수 86명 해직 발표.
- 1980.08.04.: 한신대, 문동환, 안병무, 황성규 교수 사임.
- 1980.08.09.: 성균관대, 시국선언 교수 4명 해임 조치.
- 1980.08.28.: 경남대, 김○○, 조○○, 배○○ 교수 해임 조치.
- 1980.09.02.: 보안사령부, 39개 대학에서 교수 87명을 '신분박탈'했다고 집계(「대학 전면 개강에 따른 학원대책」)

### (3) 교수 해직 피해자 규모와 명단

전두환 신군부의 5·17 내란과 관련하여 해직된 교수(신분박탈 교수)는 87명<sup>387</sup>으로 이 가운데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면서 당연해직된 교수는 19명,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해직된 교수는 68명이었다. 또한 학생지도의 책임을 물어 총장·학장이 경질된 대학도 23개(국립대 7개, 사립대 16개)에 이른다. 5·18조사위는 조사 결과, 이 중에서 33명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연행, 구금, 상이 등의 피해가 입증되어 '5·18관련자'로 인정받았

.....  
 387 국군보안사령부(1980.9.3), 「대학 전면개강에 따른 학원대책 참고자료」.

으며 '광주 관련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서 33명 중 2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표 5-2-7>, <표 5-2-8>, <표 5-2-9> 참조)

<표 5-2-7> 학원 사태 관련 교수 조치

대학 수	계	해직	보직·해임	경고
39	203	87	56	60

<표 5-2-8> 총장·학장 경질 대학

국립(7)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공주사대, 체육대, 제주대
사립(16)	연세대, 홍익대,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조선대, 영남대, 한신대, 광운공대, 세종대, 충신대, 덕성여대, 청주사대, 순천향대

<표 5-2-9> 대학별 신분박탈 교수 현황

대학명	성명(전공)
서울대(4)	변○○(경제학), 이○○(철학), 한○○(사회학), 김○○(사회학)
고려대(6)	이○○(행정학), 강○○(사학), 김○○(화학), 조○○(경제학), 이○○(사학), 김○○(경제학)
연세대(5)	김○○(사학), 김○○(신학), 서○○(신학), 성○○(교육학), 이○○(국문학)
성대(4)	장○○(정치학), 이○○(국문학), 탁○○(경제학), 송○○(사학)
서강대(2)	임○○(사회학), 길○○(사학)
중앙대(1)	유○○(경제학)
한양대(2)	최○○(국문학), 이○○(신문학)
숙대(2)	김○○(사학), 이○○(사학)
이대(6)	이○○(사회학), 서○○(기독교학), 현○○(기독교학), 백○○(법학), 백○○(교육학), 김○○(불문학)
홍익대(1)	정○○(경제학)
건국대(2)	천○○(철학), 김○○(정치학)
서울여대(1)	이○○(기독교학)
한신대(2)	안○○(신학), 문○○(신학)

대학명	성명(전공)
송전대(1)	조OO(철학)
세종대(4)	정OO(국문학), 이OO(국문학), 주OO(사학), 최OO(무역학)
동아대(1)	김OO(행정학)
강원대(3)	유OO(교육학), 박OO(경영학), 문OO(교육학)
충남대(2)	황OO(사회학), 이OO(사회학)
전북대(4)	남OO(국문학), 이OO(화학), 김OO(국문학), 변OO(교육학)
전주대(1)	태OO(국민윤리)
전남대(13)	명OO(영문학) 송OO(국문학) 김OO(영문학) 오OO(교육사회학) 정OO(국문학) 이OO(법학) 이OO(한국사) 이공구(행정학) 박OO(수의학) 안OO(경제학) 노OO(교육심리학) 김OO(사학) 민OO(경제학)
조선대(15)	임OO(국문학), 박OO(영문학), 최OO(체육학), 유OO(체육학), 박OO(경영학), 조OO(법학), 조OO(영문학), 노OO(체육학), 채OO(행정학), 권OO(경제학), 김OO(정치학), 김OO(국문학), 김OO(경제학), 정OO(연문학), 김OO(법학)
경남대(1)	김OO(국문학)
마산대(3)	최OO(법학), 정OO(국문학), 이OO(국문학)
경기공전(1)	김OO(국문학)

※ 5·18관련자로 인정된 33명(굵은 글씨) 중 '광주 관련 지역' 피해자 26명

## 라) 5·18관련 교사 해직 및 교원임용제외 사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자들은 취업이 제한되거나 나중에 신분이 밝혀져 해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사 해직 및 교원임용제외 사건이다.

### (1) 교사 해직 사건 경과와 피해 사례

5·18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교사들은 광주와 전주 일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부산, 강원 등 타 지역에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 제작에 참여하는 등 계엄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복무규정에 따라 당연해직된 경우이다. 현재까지 13명이 확인되었고 대부분 사립학교에 재직 중 해직되었다. 이들 중

정○○, 황○○은 1981년 ‘아람회사건’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해직된 교사이다. 확인된 해직교사 13명은 모두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관련자’로 심의 결정되었고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박○○·윤○○(광주 대동고), 김○○(전남고), 장○○(전남대사대부고), 윤○○(광주여상), 정해직(전남 노동국교 광곡분교), 오○○(광주 춘태여상), 신○○(부산 영남상고), 이○○(전주 완산상고), 황○○(대전공고), 정○○(서울 봉천초교), 김○○(강원 고성고)

## (2) 교원임용제외 사건 경과와 피해 사례

1980년 당시 교육부는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발령하고 의무적으로 5년간 교사로 복무하게 했다. 그런데도 당시 정권은 재학 중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속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은 학생활동, 시위 전력 등을 이유로 ‘성행불량자’로 분류하여<sup>388</sup> 교원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 진출 기회를 차단하였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임용제외 피해자로 전남대 사범대학의 문승훈, 위경중, 정경자, 조기태, 유증열과 광주교육대학의 정남석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sup>389</sup>에 근거하여 20여 년이 지나 교원 임용이 되었으나 경력, 호봉 등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조사위는 당시 국립사범대와 교육대생 중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제한된 조사 일정상 그 이상 진척하지 못했다.

388 교육법 제77조 3호에 ‘성행불량자는 교원임용에서 제외’라는 조항을 근거로 대학 학칙에서 학생활동, 집회, 시위 참여자에 성행불량자 조항을 적용하여 징계하고 이러한 징계사유를 학적부 등에 기재하여 임용 기회를 차단했다.

389 국립사범대(교대 및 한국교원대 포함) 졸업자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이 되지 못한 자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1999.09.02. 시행, 2001.03.28. 일부개정) 관계사무가 종료되어 2013년 폐지되었다.

## 마) 경찰관 해직 사건

### (1) 경찰관 해직 사건의 배경

5·18민주화운동 관련 경찰관 해직 사건은 ‘광주사태 진압’ 후 신군부 세력이 국정 전면에 등장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전두환)에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전남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전남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지방경찰청이 2017년 5·18관련 경찰 사료 수집과 활동조사 TF 운영을 통한 선행조사를 시행해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 경찰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2017년 10월 발간함으로써 공식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진 상태이다.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찰관 해직 사건의 경과와 피해를 정리하였다.

전두환 신군부는 5·18민주화운동이 계엄군의 과잉, 과격진압으로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였음에도 초기 진압 실패의 책임이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있다며 「광주사태 진상규명 계획」을 세우고, ‘폭도들의 시외탈출 시 전남도경과 일선 경찰관서의 차단지시’ 등 조치사항, 경찰서와 예비군 무기와 실탄 피탈의 경우 등을 조사하며 경찰을 압박하였다.<sup>390</sup>

신군부는 시민군의 도청점거 항쟁이 진행 중이던 5월 26일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눌 수 없다.”며 강경진압을 거부하고 우발적 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의 총기를 회수한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을 직위해제하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연행, 수사하였다. 이후 6월 2일자로 안 국장은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진압 경찰관의 무장을 지시하지 않고 시민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경찰서에서 철수시키거나 총기류를 인근 섬

390 이 보고서는 5월 21일 8시 10분경 20사단 6연대가 광주 진입차 공단 입구를 통과하던 중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차량 14대를 빼앗긴 일과 5월 24일 2차례 계엄군 간 오인사격으로 13명이 죽고 다수가 부상한 사건 등 진압 작전 실패와 오인총격전으로 인한 자체 피해 등 군의 과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경찰 등에 책임 전가를 시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으로 옮긴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연행되어 구속되었다가 7월 7일자로 파면되었다.

한편 「광주사태 진상규명계획」에 따른 조사를 토대로 6월 1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 위원회(위원장 전두환)는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 등 전남경찰청 간부 13명에 대한 문책을 지시하였고, 안택수 전남도경 작전과장과 김상윤 나주경찰서장 등 총경급 11명은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직되었다.

## (2) 경찰관 해직 사건 경과

- 1980.05.26.: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 직위해제.
- 1980.06.02.: 안병하 도경찰국장 의원면직.
- 1980.06.19.: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 안병하 등 경찰관 13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치안본부장에 지시 하달.
- 1980.07.07.: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파면.
- 1980.07.16.: 치안본부, 김상윤 나주경찰서장 11명 의원면직, 양○○ 전남 경찰국 경무과장 17명 감봉 징계 후 국보위에 보고.

## (3) 경찰관 해직 피해자 규모와 명단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 직위해제, 이준규 목포서장 구속·파면 외 안수택 도경 작전과장 등 총경급 간부 11명은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직되어 해직자는 총 13명이었고, 이들 중 안병하 국장과 이준규 서장은 ‘5·18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외 17명은 감봉, 4명은 견책 처분을 받는 등 2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해직된 경찰관의 명단은 아래의 <표 5-2-10>과 같다.

〈표 5-2-10〉 해직 경찰 명단 ('5·18관련자'로 인정된 2인은 굵은 글씨로 표시)

이름	직위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안병하	전남도경찰국장	직위해제/의원면직	1980.05.26. / 1980.06.02.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파면	1980.07.07.	
문인주	도경 정보2과장	의원면직	1980.07.16.	
박진석	여수경찰서장	〃	〃	
이종철	곡성경찰서장	〃	〃	
김병륜	무안경찰서장	〃	〃	
박승훈	구례경찰서장	〃	〃	
양〇〇	도경 경무과 총경	〃	〃	감봉 2월 병과
서〇〇	도경 경비과장	〃	〃	
안〇〇	도경 작전과장	〃	〃	감봉 1월 병과
김희순	영암경찰서장	〃	〃	감봉 3월 병과
김상운	나주경찰서장	〃	〃	〃
안병환	화순경찰서장	〃	1980.06.30.	

## 다. 5·18피해자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사건

### 1) 개요

5·18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대에 끌려가거나 군대생활 중에 이른바 녹화사업 대상자로 지목되어 인권탄압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 실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 차원의 공식적 조사가 있었지만,<sup>391</sup>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어떤 피해를 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

<sup>391</sup>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1988년 13대 국회의 이른바 '5공 청문회' 이후 5차례의 조사가 있었다.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가 그것이다.

된 바가 없다. 이 장에서는 5·18피해자들의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피해 규모, 피해 경위, 가해집단의 실행 메커니즘을 확인한다.

## 2)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실시 배경

### (가) 강제징집<sup>392</sup>

강제징집은 1980년 5월 이후 1984년 11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제적, 무기정학, 권고휴학 등에 의해 강제로 학적이 변동된 대학생을 국방부, 문교부, 병무청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병역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에 징집시킨 것을 말한다.

전두환 신군부는 집권 후 즉각 1980년 9월 4일 계엄포고령 위반자 64명을 강제로 집단입영시키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보안사령부가 주도하는 녹화사업 대상자로 편입되었다. 강제징집은 1981년 12월 1일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이 마련된 후부터는 시위 현장에서 검거되면 신체검사도 없이 군부대로 직접 인계하는 등 극단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984년 9월 22일 대통령령으로 ‘소요 관련 대학생 조기입영 방침’ 폐지가 결정되고 병역법이 개정되어 1984년 11월 강제징집은 표면상 폐지되었다. 그러나 강제징집 대상자 관리 카드(이른바 ‘ASP카드’)에 1989년 입대자까지 포함된 것을 보면, 노태우 정권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녹화사업

녹화사업은 강제징집자(일부 정상 입대자 포함) 중에서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인물을

392 ‘강제징집’이라는 용어는 최초 1970~1980년대 대학가 및 종교계 등에서 정부가 사용하는 ‘조기징집’에 대한 대체어로 사용되어왔다. 공식석상에서는 1984년 3월 13일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병오 의원이 ‘강제징집의 법적 근거와 녹화사업의 진상을 밝히라’며 사용한 후 일반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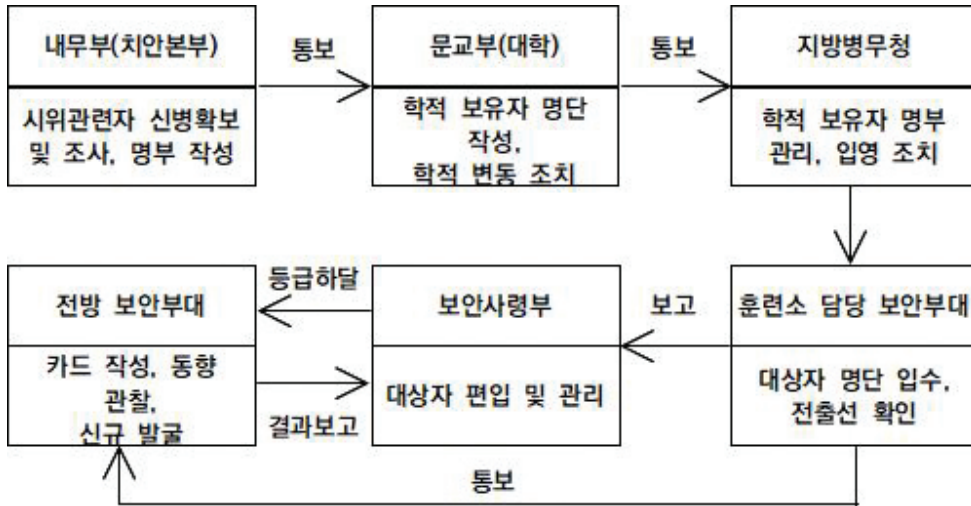
대상으로 ‘좌경오염 방지’라는 명목하에 학생운동 활동 사항과 조직체계 등을 조사하고 (개인별·심사(審査)), 대상자의 생각과 이념을 바꾸도록 하는 ‘순화(醇化)’ 업무를 진행하고, ‘순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에게는 출신대학의 학생운동 관련 첩보 등을 수집해오도록 요구하는 등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것을 말한다.

1982~1983년 기간 중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실행과정에서 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가족을 비롯해 정치권 및 종교계, 대학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녹화사업은 1984년 12월 폐지되었다. 그 결과 형식상으로는 1984년 10월 12일부터 ‘특수학적변동자’란 용어를 폐기하였고 이 업무를 담당했던 보안사령부 대공처 심사과가 폐지되었다.

### 3)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실행

#### 가) 조직 체계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은 전두환의 지시로 보안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의 전체 과정을 관리했다. 강제징집은 학생 신분인 해당자의 학적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교부와 해당 대학의 학적관리시스템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대상자의 신병 확보, 조사 명부 작성 등의 실무는 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내무부 소관이었다. 이러한 관리 체계를 도해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5-2-9〉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관리 체계

보안사 심사과는 입대한 특수학적변동자(이하 특별자) 전원을 동향관찰 대상자로 편입하여 관리하도록 예하 보안부대에 지시하였다. 심사과(지도계)는 국방부 보안부대가 중앙병무청으로부터 입수한 강제징집자 명단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전방 사단의 보안부대로부터도 특별자의 소속대 배치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예하 보안부대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 대학 및 경찰과 협조하여 강제징집자를 파악, 그 명단을 심사과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녹화사업 대상자의 편입 및 관리체계를 입체적으로 구축하였다.

국방부 보안부대는 중앙병무청과 협조하여 전체 강제징집자의 인적 사항과 입영일자, 입영부대, 입영사유와 근거 등을 파악해서 입영명령서 발부 5일 이내에 사령부 심사과에 보고하였다. 지방병무청을 담당하는 10개 예하 보안부대는 각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지역 내 학생시위 관련 군 입영자의 명단을 파악해서 입영명령서 발부 2일 이내에 사령부 심사과에 보고하는 한편, 보충대 및 훈련소를 담당하는 보안부대에도 그 명단을 통보하였다.

보충대와 훈련소를 담당하는 보안부대는 강제징집자가 훈련을 마치고 전방 사단 등 소속 부대로 배치될 때 전출선을 확인하여 인사명령 2일 이내에 사령부 심사과에 보고하면서 최초 입영부대에도 그 전출선을 통보하였다.

보안사 심사과는 대학 소재지 관할 보안부대로 하여금 평소 대학 당국 및 해당 경찰서와 협조하여 시위 관련 학적변동자의 인적 사항(본적, 주소, 학과, 학년, 성명, 생년월일), 학적 관계(제적, 제명, 권고휴학, 자진휴학, 정학 등), 서클 가입활동 관계(서클명, 직위, 활동사항), 학적변동 사유 및 근거를 파악하여 학적변동 발생 7일 이내에 심사과로 보고하도록 하여 심사과 자체에서도 녹화사업 대상자를 발굴했다.

## 나) 강제징집 대상

### (1)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광주 지역에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거나 이른바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특별자로 편입되어 입대한 경우이다. 혹은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유인물을 작성, 제작하여 5·18의 진상을 알리고자 시위를 했거나, 하려다가 잡힌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한두 달간의 가혹한 조사를 거쳐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 등 조치를 받고 대학에서 제적 등 학사징계 조치되어 강제징집되었다.

### (2) 5월 시위 참여자

1980년 5월에 학내·외에서 시위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1980년 5월 15일, 이른바 ‘서울역 회군’ 이후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수배, 예비검속 그리고 검거, 자수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상당수가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 제작, 배포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고 구속되었다. 이런 이유로 제적 등 학사징계를 통해 특별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강제징집되었다.

### (3) 계엄포고령 위반자

계엄령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까지 광주를 포함한 전국 단위에서 계엄포고령 10호를 위반한 혐의로 수배된 경우이다. 광주에서 체포되거나 자수하게 되면 대부분 전투병과사령부의 상무대 영창으로 이송되고, 이외 지역에서는 지역 합수단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석방되었다. 이 경우 대학은 바로 학사징계 조치하였고 제적된 경우, 학적변동자로 영장이 나와 병역법에서 정한 기일을 채우지 않고 바로 입대하였다. 무기정확조치된 경우,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어 가족의 권유로 마지못해 입대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자진입대이기 때문에 이른바 특변자는 아니지만 결국 군에서는 특변자로 편입되고 녹화공작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표 5-2-11〉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규모

구분	대상자 수	비고
강제징집	1,152명	이 가운데 921명 '녹화사업' 실시, 231명 미실시
녹화사업	1,192명	강제징집자 921명, 정상 입대자 247명, 민간인 24명

\*국방부 과거사위원회(2007년)

## 4) 피해 규모와 유형

### 가) 자료 조사

전두환 정권하에서 자행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보안사령부가 1980년부터 생산하고 관리한 ASP(Anti-government Student Power)카드 등 존안문서이다. 이 카드는 당시 학생운동과 시국사건에 관련되어 제적 등 학사징계 조치 후 강제로 입대한 인물들의 신상을 기록한 것이다.

5·18조사위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ASP카드 등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대상



자 개인별 존안자료 2,417건과 명단 3부(중복 포함 각 2,311명/ 2,188명/ 2,403명)를 입수해 중복기재자를 제외한 2,921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5·18조사위는 ASP카드 등 존안자료를 분석해 1980~1984년 사이에 학적변동 또는 녹화사업 대상으로 편입된 사유가 ‘광주사태 관련자’, ‘5월 소요 참여자’,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으로 기재된 249명을 선별하였다. 한편, 5·18조사위는 위 2,921명의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자 명단 중에서 ‘5·18보상심의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결정한 70명을 선별해 학적부, 병적기록표, 5·18보상심의위원회 자료 등 공적 문서와 보안사가 생산한 존안문서를 실증분석해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피해사실을 재확인했다.

## 나)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편입 유형

### (1) 권고휴학과 자진휴학

문교부와 대학 당국은 학생과에서 자체 수집한 정보와 보안사령부, 안기부, 경찰 등 관계기관들의 협조와 정보를 바탕으로 운동권 학생들을 등급별로 선별해서 관리하였다. ‘순화’ 및 ‘선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도휴학 혹은 권고휴학 제도’를 이용해 강제로 휴학시킨 후 병무청에 ‘학적변동’을 통보하여 법이 정한 소정의 입영절차를 무시하고 신속히 강제징집하였다. 대학이 일방적으로 권고휴학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sup>393</sup>

5·18조사위는 ASP카드 분석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권고휴학 또는 자진휴학 과정을 거쳐서 강제입대하고 녹화사업 대상으로 편입되었음을 확인했다. 한국신학대학교의 김○○은 같은 학교 출신으로 5월 27일 도청에서 사망한 유동운의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무기정학과 복학을 거쳐 1982년 8월 18일 권고휴학을 당했다. 전남대

393 전남대 이○○은 1980년 12월 교내 시위 계획이 드러나 권고휴학 당했다. 전남대 유○○도 대학의 조기징집 의뢰로 1981.2.20. 휴학계 제출 후 신검 사흘 만에 입대하였다. ‘김대중 최후진술서’를 선배에게 받아서 읽고 후배에게 준 것이 조기징집의 사유이다.

이○○도 같은 사건으로 연루되어 광주 서부경찰서로 연행되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풀려나서 1981년 3월 권고휴학조치를 당했다. 같은 사건의 전남대 홍○○은 1981년 2월 12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으며, 1982년 3월 자진휴학하고 입대하여 녹화공작 대상에 포함되었다. 조선대 이○○은 1980년 9월 25일 자진휴학했다. 1980년 6월 무기정학을 받은 영남대 이○○은 1981년 2월 자진휴학하고 1981년 3월 4일에 강제입대했다. 강원대 김○○은 자진휴학, 강원대 전○○은 권고휴학하였다. 강원대 전○○도 한 달도 안 되어 군대에 갔고, 김○○은 휴학하자마자 당일 입대하였다. 부모가 교사이거나 공직에 있을 때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sup>394</sup>

## (2) 학사징계 후 강제징집

학교 당국이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과 같은 학사징계 후에 학생과 부모에게 입대를 권유해 학생이 스스로 포기하고 자진휴학하여 입대하는 사례도 있었다.<sup>395</sup> 공식적인 학생회 간부<sup>396</sup>나 시위 등 학생운동 참여자는 물론이고, 과 대표, 씨클 대표<sup>397</sup> 혹은 학내 행사위

394 전남대 이○○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은 5월 18일 전남대 정문 앞 시위를 시작해 도청 앞으로 와서 오후 5시 반경까지 가두시위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수배되자 진주로 도피하였으나, 학사징계(무기정학)되고 교사인 어머니의 권유로 1980년 7월 20일 자수 후 상무대에 구금 조사받고 8월 2일 훈방되었다. 무기정학된 것도 몰랐고 교수가 학교에 오지 말라 하고 어머니도 집에서 못 나가게 하니 할 수 있는 게 없어 1981년 4월 신체검사를 신청했다. 신체검사 후 다음날 입대하라 해서 1주 여유를 달라고 요구하여 1주 후 입영하였다.

395 조선대 이○○은 1979년 불교학생회 회장이 되었고 1980년 5월 석가탄신일 행사를 준비하다가 데모에 연루되어 잡혀서 7월 9일 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되었다. 7월 31일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9월 25일 자진휴학하여 1981년 1월 13일 입대하였다. 서울대 김○○은 농대 부회장으로서 가두시위를 주동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7월 28일 제적되었고 9월 4일 강제징집되었다. 고려대 이○○은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1980년 5월 16일 장례식을 주도하고 시위를 주동했다. 1980년 6월 제적되었으며 형 집행면제로 석방되었다가 1980년 9월 2일 강제징집되었다.

396 성균관대 장○○은 1980년 문과대 학생회장으로 시위를 주도하다가 7월 29일 제적되어 1981년 1월 14일 입대했다. 계명대 김○○은 총학생회 체육부장으로서 4~5월 학내 시위에 가담했다가 1980년 8월 21일 군법회의에서 공소기각으로 석방되고 9월 12일 학교에서 제적되었고 9월 4일 단체로 강제징집되었다.

397 조선대 권○○은 1980년 조선대 민속극 연구회 회장이었다. 1980년 4월 교문 앞 봉산탈춤 공연이 문제가 되어 1980년 6월 25일 피검되고 1980년 7월 31일 근신, 9월 5일 구속되어 조사받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나서 1981년 3월 3일 권고휴학 당했고 4월 21일 강집되었다. 전북대 김○○도 5월 20일 구속되고 8월 25일 군법회의에서 선

원으로 활동한 사람들, 심지어는 학도호국단 간부도 시위에 관여하면 지도휴학 처리되었으며,<sup>398</sup> 연행조사를 받고 교수의 권유로 휴학하고 군에 징집되는 경우도 있었다.

### (3) 구치시설에서 석방 후 강제징집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관련되거나 계엄포고령 위반 등으로 구속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소유예나 재판과정에서의 공소취소·공소기각·선고유예 등으로 석방되었다. 입대를 조건으로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량이 줄어든 사례도 있었다.<sup>399</sup> 보안사령부가 이들의 사법처리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면,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학칙<sup>400</sup>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의 학사징계를 결정하고 병무청에 학적변동을 근거로 연기했던 신체검사를 주소지로 통지하였다.

5·18조사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1980년 9월 4일에 최초로 64명이 집단으로 강제징집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상당수가 5·18민주화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한 예로 서울대생 김○○, 이○○, 손○○는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하자 직접 확인하기 위해 손○○와 이○○이 광주에 내려가 사실을 확인한 후 진상을 폭로하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고함’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5월 23일 구로동에 배포했다. 이들은 전부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가 1980년 9월 4일 각각 다른 사단의 포병부대로 징집되었다.

.....  
고유예되어 9월 4일 입대했다.

398 강원대 김○○는 학도호국단 간부로 1980년 5월 17일 검거되어 조사받고 기소유예되었다. 1980년 9월 복학하였다가 1981년 4월 8일 자진휴학하는 날 바로 입대했다. 학도호국단은 1975년 4월 30일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며 국가의 병영체제화를 선언한 후 1975년 5월 20일 전국 고등학교 및 대학에 설치됐다. 그러나 1980년 민주화의 봄과 함께 사라졌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총학생회로 대체되었다가 5공 정권에서 다시 부활됐다. 1984년 학원자율화 때 호국단은 폐지되고 총학생회가 부활했다.

399 경희대 토목공학과 윤○○은 군검찰관이 입대할 것을 조건부로 공소취하되어 석방되었다.

400 충북대 학칙 제64조 2항(학원자율화 및 시국성토시위 가담), 전남대 학칙 제62조, 교학규정 제80조, 81조, 전북대 학칙 제65조 1항 1호 및 3호, 연세대 학칙 제71조 1항, 성균관대 학칙 제73조 1항 등.

#### (4) 집단적 강제징집

1981년 1월 무림사건<sup>401</sup> 관련자 17명이 집단으로 강제징집되었고, 1981년 5월 동학회 사건<sup>402</sup> 11명, 1981년 7월 학림사건<sup>403</sup> 24명, 1981년 11월 9일 고려대, 한국외국어대 문무대사건<sup>404</sup> 159명의 관련자들이 집단으로 강제징집되었다. 1981년 11월 28일 연세대 교내 시위사건 김○○, 정○○ 포함 15명, 1982년 11월 6일 종로연합시위 관련 이○○외 20명, 1983년 4월 2일 휴학생들이 연합시위를 한다는 첩보에 따라 휴학생 강제징집, 1983년 5월 2일~ 5월 7일 전방집체훈련 시위 관련자 집단 강제징집 등 사건별로 혹은 주요 정치 일정에 따라서 집단으로 강제징집되는 경우가 많았다.

#### (5) 비(非)특수학변자

보안사령부의 학적변동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집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강제징집된 70명 중에서 10명이 이 사례에 해당된다. 지역별로는 대학 출신자 7명 가운데 수도권 1명, 충청도 1명, 영남 2명, 호남 3명이다. 수도권 26명 중에는 비특변자로 항공대 김○○가 있다. 김○○는 1982년 8월 자진휴학하여 비특변자였으나 나중에 활동이 알려져 ASP카드에 등재되고 녹화사업을 받게 됐다.

401 무림사건은 1980.12.11. 서울대학교에서 「반파쇼 학우투쟁 선언문」을 발표한 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 구속하거나 강제입대시킨 사건이다. 공안당국은 이 학생들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으로 몰아 고문조사를 진행하여 9명을 구속하고 17명을 강제징집했다.

402 야학연합회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일명 '동학회사건'이라 불렀다.

403 학생운동가들은 1980년 9월부터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학림(學林)')으로 불림)을 구성해 과감한 시위전술, 대학 간 연대투쟁을 시도하고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과 함께 조직적인 반정부투쟁을 시도하였다. '전민학련'은 전국 12개 대학에 30여 명의 조직원을 확보하고, 210명의 예비조직원을 두었으며, 학생운동의 노동운동으로의 이전인 노학연대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공안기관은 1981년 7월 '학림사건'을 발표했고, 26명을 기소하고 24명을 강제징집했다.

404 이범재는 「운동권 대학생들의 사상을 개조하라 - 강제징집·녹화사업의 실태」 2003.『기억과 전망』 5호, 256쪽)에서 "1981.11.9. 고려대 '대학생 병영집체훈련' 중 발생한 세칭 '문무대 사건'으로 109명이 한꺼번에 징계(제적 19명, 무기정학 1명, 직권 휴학 89명)를 당하고 강제징집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외대 학생들도 50명이 병영집체훈련에서 징계당하고 강제징집되었다.

충남대의 정○○은 1983년 2월 충남대 대학원을 수료한 후 징집영장을 받아 정상적으로 1983년 5월 군에 입대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위 전력이 밝혀지면서 ASP카드에 등재되어 보안사 관리 대상이 되었다. 영남대 대학원을 자진중퇴한 장○○은 505보안대에, 김○○은 미군 2사단 지원사령부 헌병중대에 서무병(카투사)으로 근무했다. 두 사람 모두 나중에 5·18 관련 시위 전력이 밝혀져서 ASP카드에 등재되었다.

전남지역 대학 출신자 20명 중 비특변자는 3명으로 확인되었다. 전남대 임○○은 5·18 당시에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1980년 봄 학내 시위에 참여하였고, 1980년 10월 19일 유인물 소지 혐의로 검거되어 1981년 3월 휴학했고, 1981년 1월 12일에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보통군법회의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전남대 최○○은 1980년 10월 19일 전남대에 광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1980년 10월 20일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81년 1월 14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후 1982년 3월 24일 군수학교 교무처에 행정서기병으로 근무했으나 나중에 시위 전력이 밝혀져서 ASP카드 관리 대상으로 편입되었다. 전남대 홍○○은 1981년 2월 12일에는 포고령 위반으로 보통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1982년 3월에 자진 휴학하여 1982년 6월 22일 7사단 5연대에 소총수로 입대하여 관리 대상에 편입되었다.

대학생은 아니지만,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장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특수학번자로 편입되어 고초를 겪은 경우도 있었다. 박○○은 목포 ○○고를 1980년 1월에 졸업하고 3월 신검을 받고 대기 중이다가 무장시위에 참여하고 5월 23일 검거되어 1980년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이미 신체검사도 받은 상태라 기다리는데 영장이 나오지 않아 1981년 1월 우선 징집원을 제출해서 1981년 1월 15일 3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가 나중에 기소유예 전력이 드러나서 학번자로 편입되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김○○은 무장시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81년 4월 21일 27사단 77연대에서 소총수로 복무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서○○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학번자로

편입되었다.

#### (6) ASP카드 기록과 5·18민주화운동 연관성

김○○, 이○○, 이○○ 등 3명은 편입사유가 ‘광주사태’로 적시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다.

이○○(전남대)은 1980년 대동고 3학년으로 1980년 5월 27일 새벽 YWCA에서 연행되었다가 1981년 전남대에 진학했다. 대학 진학 후, 1982년 10월 12일 박관현 열사 유인물을 시내에 배포하였고 1983년 6월 징계(지도 휴학)를 거쳐 1983년 8월 22일 특별자로 강제징집되어 녹화사업을 당했다. 전남대 82학번인 유○○은 1980년 당시 대동고 2학년으로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앞에서 연행된 전력이 있다. 1982년에 전남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1983년 자진휴학해 1983년 12월 23일 입대하였는데, 입대 후 녹화사업 대상자가 되었다.

세 명의 피해자(이○○, 손○○, 김○○)는 서울대 학생들인데,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공수부대의 진압이 시작된 후 직접 광주에 와서 현장을 보고 서울에 와서 5월 23일 유인물 제작 활동을 하다가 잡혀 연행된 경우이다. 이○○은 8월 20일 수경사 보통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 손○○는 공소기각, 김○○는 경찰서에서 훈방되어 1980년 9월 4일 같은 날 강제징집 되었다. ASP보호카드의 편입사유에 손○○는 ‘광주사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고려대학생 이○○은 이미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류, 무기정학, 시위 주동을 한 경력이 있었다. 1980년 복학해 학내 시위를 주도했는데, ‘5월 광주사태와 관련’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한편 경희대 오○○의 경우는 1980년 3월 학생협의회 의장을 맡아 5월 시위를 주도했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1980년 9월 4일 강제징집되어 입대했다. 그러나 그의 ASP보호카드 중 편입사유에는 5·18 ‘광주사태’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처럼 같은 유형, 같은 사건으로 강제징집되었어도 광주·전남 지역이 아닌 경우 ‘광주사태’가 편입사유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시위 관련’, ‘유인물 제작’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 5) 피해 실태

### 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제징집과 녹화공작 피해자들은 동일한 사건으로 최소 두 번 이상의 수사를 받았다. 계엄포고 제10호 위반 혐의에 대한 합수본부의 수사와 녹화사업 당시의 이른바 ‘심사’가 그것이다. 보안사는 고유의 권한 범위를 넘어 군인에 대해 사상검증을 하고 관련자를 색출했다. 영장 없는 구금상태에서 ‘순화’와 ‘심사’ 등 녹화사업을 표방한, 사실상의 범죄수사였다.<sup>405</sup> 아래는 피해자들이 5·18조사위 조사에서 진술한 관련 피해 내용이다.

- 내무반 가서 둘째 주까지 각목, 야구 방망이 이런 것으로 병사들한테 맞았다. 4주간 있다가 나오려니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 1사단 보안대였는데 20명 중에서 18명이 대구, 경북 출신이었다. 한 명이 원주, 한 명이 인천 출신이었다.<sup>406</sup>
- 화천 거기 이제 사단 보안대 가자마자 거기 사단에 보안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ROTC나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가자마자 뭐 뺨을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른바 그게 녹화사업이더만요, 보니까, 녹화사업, 제가 알기로는 가장 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종속이론을 아느냐? 이런 이야기도 물어보고, 나름대로 대답하

<sup>405</sup> 국군보안부대령 제1조에서 정한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에 관한 사항/ 군법회의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과 군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해 국방부에 국군보안부대를 둔다’는 규정 위반/ 형법 제123조 ‘공무원의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같은 법 제124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불법체포, 불법감금’, 같은 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

<sup>406</sup> 5·18조사위, 「참고인 김○○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8.03.), 18쪽.



고 그랬는데, 쪽 과거 행적을 학교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쪽 조서 쓰듯이 계속 노트에 쓰라는 거예요.<sup>407</sup>

- 볼펜 두 자루 딱 줍니다. 성장과정 쓰면 그놈 가져가 다음날 와서 다시 초등학교기, 중학교기, 고등학교, 대학 그다음 군대생활 이걸로 나눠서 써라. 이걸 최후의 진술조서인데 그걸 가져가 그다음에 인자 사안별로 쓰게 합니다. 내가 시화전을 했으면 왜 하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5·18에 어떻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 내가 어떻게 해서 불온한 사상을 갖게 되었는지를 묻는 거야. 너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한 열흘 한 12일 정도 걸렸다...제가 한 문학동인회 조직도를 만들라 그래요. 고문과 회장이 누구고 내가 간사를 했고 이걸 했다고 썼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외 폐지, 교복 자율화, 프로스포츠 출범에 대해 의견을 썼다. 아마 한 400~500장 썼을 거다. 그 뒤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충성서약서를 썼다....그리고 광주 505보안부대에서 넘어온 자료 가지고 집중적으로 캐묻기 시작했다. 조금 차이가 나면 또 집중적으로 물었다.<sup>408</sup>

## 나) 영장 없는 체포, 구금 및 입영 동의 강요

강제징집 피해자들은 불법체포 또는 감금된 상태에서 입영되거나 가혹행위와 부모까지 동원한 설득과 강요로 휴학계 또는 입대지원서를 작성하는 등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징집되었다. 특히 국방부는 직권을 남용하여, 병역법 제20조를 위반하고 병무청의 '징병종결처분'<sup>409</sup> 없이 공안당국의 의지대로 일방적인 현역병 강제징집을 지시하였다. 내무부도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신병확보, 호송 업무까지 맡겨 실질적인 인신 구속 상태에서 학생들을 강제징집하였다.

407 5·18조사위, 「참고인 김○○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4.12.), 12~13쪽.

408 5·18조사위, 「참고인 임○○ 면담조사 진술녹취록」(2022.04.07.), 27~30쪽.

409 병역법 제20조는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를 통한 현역 입영, 보충역 편입, 징집면제, 병역면제 등을 결정하는 '징병종결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 다) 형식적인 징병검사 등 병역법 위반

병역법은 징집대상자들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입영 대상자라 하더라도 훈련소로 가기 전 보충대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재차 판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질병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병이 치유된 후 다시 신체검사하며, 이때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징집 면제 혹은 보충역으로 귀향조치했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특수학적변동자들은 국방부와 내무부의 특별조치 방침에 의해 신체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조치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현역으로 입영할 수 없는 2대 독자나 연령 미달자들도 지원 형식을 빌려 강제징집당했다. 심지어 신체검사 없이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다음 날, 전방부대에 입소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또한 수형자도 실형이 3년 미만이면 입대했던 박정희 정권 시절과 다르게<sup>410</sup> 국방부는 1980년 3월 17일 “학생운동 관련 6월 이상 3년 미만 수형자는 일반수형자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하여 소집면제한다.”는 내용을 병무청과 각 군에 시달했고,<sup>411</sup> 1980. 03. 19. 병무청이 각 지방병무청에 지침을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sup>412</sup> 강제징집 대상자에게는 이런 예외조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대학생으로서 교련수업을 받으면 획득했던 병역단축 혜택도 받지 못했다.

410 1972년 병무청에서는 “3년 미만 수형자는 군 지휘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선병지침을 통해 징집소집 면제한다. 단 병무사범(교련반대 등) 및 시위 관련 수형자는 입영조치한다.”는 방침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그러나 1975.07.11. “긴급조치 위반 수형자는 병무사범에 준하며 3년 미만의 형을 복역한 자는 다시 현역 입영시키라”는 조치를 시달하여 긴급조치 위반 수형자들이 출소하면서 징집되었다.

411 국방부(1980), 「학원 소요 등 수형자 병역처리 방안 검토보고」.

412 국방부 인사국(1980), 「병역제도 관계철」, “긴급조치 위반자의 경우 6년 이상 수형자는 병적 제외(병역법 제7조), 3년 이상 수형자는 징집 제한(병역법 제33조), 6월 이상 3년 미만 수형자는 보충역 처분 후 소집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라) 입대 후 특별관리 등 인권침해

당시 군은 특수학적변동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특기나 능력과 관계없이 최전방부대 소총수로 배치하였으며, 병적기록표에 적색 고무인으로 ‘특수지원’ 또는 ‘특수학번’이라고 표시하여 이들의 복무 동향을 특별히 관찰하였고 관찰 보안부대 협조요청 시에는 관찰 결과를 보안부대에 통보했다. 일부 강제징집자들은 자신이 특별관리 대상임이 알려져서 상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대 전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자 전체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런 사례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자 보안사가 특별자 심사업무의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흔적이 있다.<sup>413</sup>

마) 프락치 활동 강요 등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 대상이 된 학생들은 폭력과 위협 속에서 사상의 전환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한 헌법 위반행위이다. 신청인의 진술과 각종 보고서 등 내부 문건은 물론이고, 신청인에 대한 개인별 존안자료, 특수학적변동자 명단, 선도관리대상자 명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녹화공작과 선도업무 명목의 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더구나 보안사가 제대 후 민간인 신분인 전역자의 동향을 감시하였고, 그를 통해 다른 민간인의 동향을 감시, 파악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법령인 육군보안부대령<sup>414</sup>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413 국군보안사령부(1983.02.14.), 「특수학번자 심사업무 보안강화 지시」

414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에 보안 및 방첩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보안부대를 둔다. 「육군보안부대령」(1970.4.20. 대통령령 제8704호로 타법 폐지되기 전의 것).

### 3. 소결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국가권력의 인권탄압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로 한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사망자 유족, 행방불명자 가족, 부상자, 구속자, 구금자, 가혹행위와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은 전두환 정권 7년에 걸쳐서 감시, 사찰, 불법연행과 구금의 대상이 되었으며,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심대하게 제약되었다. 민주화 이행기였던 노태우 정권하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5·18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지속되었다.

5·18조사위 조사 결과 전두환 정권은 166명에 달하는 사망자 유족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조직적, 공작적 차원에서 실행했다. 전두환 정권은 보안사령부를 앞세워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 126기의 유해가 안치된 망월동 시립묘지를 해체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5·18조사위는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이 5·18피해자의 진상규명과 배상·보상 요구, 책임자 처벌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반정부적 행위로 매도하고 제재를 가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결성한 단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실행했으며, 회유와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폭력 피해자 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피해자들에게 2차적 피해를 가했다.

5·18조사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공·방첩 업무를 담당해야 할 보안사령부가 민간인인 5·18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인권탄압 행위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통제하였으며, 5·18피해자와 관련 단체에 대한 회유공작이 군의 주도로, 안전기획부, 전남도와 광주시, 그리고 관변 민간단체 간 합작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군·관·민’연합은 5·18피해자들의 주장과 요구를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해치는 불순한 행위로 호도하고 5·18피해자를 지역공동체에서 격리시키려 했다.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전국에 배포된 수배 전단 15종을 수집·

분석한 결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된 최소 252명의 명단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 조사를 통해 이들이 수배 중에 겪었던 피해와 고통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제적, 정학, 권고휴학 등 학사징계를 받아 학업이 중단되고 졸업이 지연된 피해자도 최소 285명에 달했음을 확인했다.

5·18조사위는 피해자들이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해직되고 사직을 권고받고, 교원임용 등에서 제외된 다수의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경력단절 피해는 주로 대학교수, 언론인, 경찰 그리고 학교 등 공공기관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대학 졸업생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많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대하거나 군대생활 중 사상 전환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5·18조사위는 ASP카드 등 보안사 존안자료 분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강제징집되었거나 이른바 녹화사업 피해를 당한 사람이 최대 249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5·18조사위는 5·18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강제징집되었거나 녹화사업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 제3절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 1. 조사 배경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규명하려는 과거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2018년 6월 8일에 출범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의 조사 활동으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확인되었으나, 법적 권한의 한계와 짧은 조사 기간(2018년 6월 8~10월 31일)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실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5·18조사위는 2020년 4월 3일 〈공동조사단〉의 조사자료를 인계받아 검토한 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관한 직권조사 개시 결정(2020년 5월 11일)을 했다.

〈표 5-3-1〉 조사대상 사건 목록 (총 19건)

연번	구분	신청일	조사개시 결정일	사건번호 <sup>415</sup>
1	신청사건 8건	2020. 06. 18.	2020. 09. 14. (제17차)	20-가의2-14
2		2020. 07. 23.	2020. 10. 12. (제19차)	20-가의2-25
3		2020. 09. 23.	2020. 12. 14. (제23차)	20-가의2-33
4		2020. 09. 23.	2020. 12. 14. (제23차)	20-가의2-34
5		2020. 10. 21.	2021. 01. 11. (제25차)	20-가의2-40
6		2021. 06. 25.	2021. 10. 25. (제45차)	21-가의2-77
7		2021. 08. 12.	2022. 03. 14. (제54차)	21-가의2-82
8		2021. 12. 22.	2022. 06. 13. (제60차)	21-가의2-181

<sup>415</sup> 당초 직권사건(사건번호: 직가의2-5)에 포함된 개별 사건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으나, 사건별 피해 입증 여부를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 구분·정리하기 위하여 직권사건 번호의 뒤에 임의번호(팔호 안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연번	구분	신청일	조사개시 결정일	사건번호 <sup>415</sup>	
9	직권사건 7건	〈공동조사단〉 자료 이관: 17건 (2020. 4. 3.)	2020. 05. 11. (제10차)  ① 조사 개시: 17건 ② 조사 거부 등: 10건	직가의2-5(1)	직가의 2-5
10				직가의2-5(2)	
11				직가의2-5(3)	
12				직가의2-5(4)	
13				직가의2-5(5)	
14				직가의2-5(6)	
15				직가의2-5(7)	
16	4건	제1~7차 보상자료 전수조사: 26건 (2020. 7. 1.~2021. 2. 28.)	2021. 09. 06. (제42차)  ① 추가 확인: 26+1건 ② 조사 거부 등: 23건	직가의2-5(23)	
17				직가의2-5(24)	
18				직가의2-5(32)	
19				직가의2-5(35)	

5·18조사위는 2018년 〈공동조사단〉의 조사자료, 피해조사 신청 접수, 제1~7차 보상 심의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총 52건의 피해 의혹 사건을 확보하였다. 이 가운데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19건에 대한 대인조사, 기록조사, 실지조사를 추진하여 16건을 ‘진상규명’ 결정하였다. 이 사건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은 2023년 12월 23일 제114차 전원위원회에 진상규명 의견으로 상정되어 표결로 원안이 수정의결되었다.<sup>416</sup>

416 이종협, 차기환, 이동욱 위원은 「직가의2-5」 사건의 ‘진상규명’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에 포함된 조사대상 사건 11건 중 〈직가의2-5(3)〉 사건의 ‘진상규명불능’ 결정에 찬성하며, 그 외 10건 중 2건은 ‘진상규명’ 결정에 찬성하고, 8건은 ‘진상규명’ 결정에 반대하였다. ‘진상규명’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원칙’ 이론을 내세워 ‘5·18 성폭력 사건 피해 인정의 판단기준’을 완화한 뒤 ① 참고인 등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본인 진술이 있고, ② 피해자가 피해 장소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으며, ③ 계엄군이 피해 장소를 포함한 지역에서 작전 중이었고, ④ 위원회에서 조사하지 않아 검증도 되지 않은 유사사례가 있었다는 정도만 확인되면 계엄군이 성폭력 가해자일 개연성이 있다거나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진상규명’을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소수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책에 수록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해당 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조사 결과

### 가. 조사대상 사건별 피해 실상

#### 1) 조사의 범주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 사건을 ① 광주 관련 지역에서 전개된 계엄군의 작전 활동과 ② 연행·구금·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했다. ①의 시간적 범위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5월 18일 0시부터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후 수습과정 일부 기간을 포함하여 5월 30일까지다. ②의 시간적 범위는 1980년 5월 17일 예비검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내란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시점까지이다.

〈표 5-3-2〉 조사 범주와 시공간적 범위

조사 범주	관련 근거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도심 시위진압작전	시국수습 방안(5월초) 소요진압본부 설치(5.14) 소요사태 진압부대 투입 지시 충정작전 작전명령 제1호(5.17.)	80. 5. 18.~21.	광주 도심
외곽봉쇄작전	자위권 보유 천명(5.21) 작지80-4호(5.21. 12:45) 작지80-5호(5.21. 17:50) 계엄훈령 제11호(5.21. 20:30경)	80. 5. 21.~26.	광주·전남 일원
광주재진입작전	상무충정작전(육본 작전지침)	80. 5. 27.	광주·전남 일원
연행·구금·조사과정	계엄포고 제10호 발령 국가기반 문란사범 조사계획 보고	80. 5. 17.~81. 1. 24.	광주 관련 지역

5·18 성폭력 피해 의혹 사건(52건) 중 ‘조사대상 사건’(19건)의 피해 발생 시점과 장소를 〈표 5-3-3〉의 범주로 구분하면, ① 도심 시위진압작전 10건, ② 외곽봉쇄작전 4건, ③ 광주재진입작전 1건, ④ 연행·구금·조사과정 4건이다.<sup>417</sup>

417 〈20-가의2-33〉, 〈20-가의2-34〉 사건은 ‘진상규명’ 원안이 부결되었고, 〈직가의2-5(3)〉 사건은 ‘진상규명 불

〈표 5-3-3〉 '조사대상 사건'과 계엄군 등의 작전상황 구분 (19건)

구분		시위진압작전	외곽봉쇄작전	광주재진입작전	연행·구금·조사과정
시간적 범위		80. 5. 18. ~21.	80. 5. 21. ~26.	80. 5. 27.	80. 5. 17. ~81. 1. 24.
공간적 범위		광주 도심	광주·전남 일원	광주·전남 일원	광주 관련 지역
조사대상 사건 (진상규명)	19건	10건	4건	1건	4건
	(16건)	(8건)	(3건)	(1건)	(4건)

## 2) 사건 발생 상황

### 가) 도심 시위진압작전

조사대상 사건 중 '도심 시위진압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0건이다. 사건 별 심의·의결 결과, '진상규명' 원안이 부결된 신청사건 2건<sup>418</sup>을 제외한 8건의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5-3-4〉 도심 시위진압작전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개요 (5. 18.~21.)

일자	피해 장소	성폭력 발생 상황	사건번호
5. 18.	수창초교 앞	작전구역 도착 직후 강제 탈의	직가의2-5(23)
5. 19.	공용터미널-전남대	강제 탈의 후 전남대 호송	직가의2-5(24)
5. 19.	금남로4가	주택가 골목에서 강제추행	직가의2-5(7)
5. 19.	전남여고 인근	주택가 차량 안에서 강간	직가의2-5(1)
5. 19.	백운동 야산	군용트럭으로 이동 후 강간	직가의2-5(4)
5. 19.	운천저수지 인근	고속버스로 이동 후 강간	직가의2-5(6)
5. 19.	금남로5가	대검으로 탈의 후 강간 미수	직가의2-5(5)
5. 20.	대우병원 인근	강제추행 후 대검 자상	21-가의2-77

등' 원안이 가결되어 조사대상 사건 19건 중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은 16건이다.

<sup>418</sup>〈20-가의2-33〉 사건, 〈20-가의2-34〉 사건.

## (1) 직가의2-5(23) 사건

### (가) 23번 피해자의 진술

#### ① 피해 사실<sup>419</sup>

〈직가의 2-5(23)(이하, 23번 사건)〉 사건은 5월 18일 제7공수여단 병력에 의한 광주 도심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확인된 성폭력 사건 중 처음 확인된 여성에 대한 ‘강제 탈의’ 사례다.

피해 여성은 5월 18일 새벽에 광주에 진주한 제7공수여단이 당일 12시 가톨릭센터를 포함한 금남로 일대의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고, 시내진압작전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여성은 당일 오전 10시경 ○○동 친구 집에서 나와 혼자 수창국민학교가 있는 W남로 5가 일대에서 계엄군을 만나 광주일고 정문 인근으로 피해서 지나가던 중 시위진압과정 중에 있던 제7공수여단 병력에 의해 강제 탈의와 구타를 당했다. 피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두 차례 정도 군인에 의한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 여성에 가해진 성폭력 행위는 이 중 두 번째 군인들의 구타 과정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 3명 가량의 군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이후 5명에서 6명 정도의 군인들이 달려와 진압봉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는 등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sup>420</sup> 이 당시 군인들은 피해자의 바지와 재킷을 찢고, 남방까지 강제 탈의 시켜 최종적으로는 팬티와 브래지어까지만 남겨놓은 알몸 상태로 만들었다. 피해 여성은

<sup>419</sup> 23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내용은 5·18조사위, 조사4과-1045(2023.08.28.), 「직가의 2-5(23) 사건 당사자(23번 피해자) 진술요지서」(2023.08.27.);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23번 피해자」, 『진료기록부』(1993.12.2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23번 피해자」, 『5·18 관련 추가 신고자 현지 확인조사서』(1993.10.15.);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23번 피해자」, 『2차 현지 확인 조사 결과보고』(1993.11.20.);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23번 피해자」, 「현지조사 검토 결과」, 「현지조사 결과」(1993) 참조. 이하 피해 내용은 위의 참고 문헌에 기재된 내용이다.

<sup>420</sup>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첫 번째 군인들은 시위대를 쫓아가던 중 피해 여성의 전신을 구타하였으며, 이후 다른 시위대를 뒤쫓아 간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로 피해자를 구타한 군인들은 첫 번째 군인들과는 다른 군인들이다. 5·18조사위, 조사4과-1045(2023.08.28.), 「직가의 2-5(23) 사건 당사자(23번 피해자) 진술요지서」(2023.08.27.), 4~5쪽.

본능적으로 거의 알몸 상태가 되어버린 자신의 상체를 가리기 위해 몸을 웅크렸으며, 이 과정에서 군인들은 진압봉으로 계속 피해 여성을 구타하였으며, 머리채를 잡아채면서 군홧발로 계속 피해 여성을 짓밟았다. 또한 ‘강제 탈의’를 시키는 과정에서 군인들은 예리한 칼날을 지닌 도구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재킷, 남방을 찢는 만행을 저질렀다. 신체에 가해진 성폭력 외에 피해자는 위원회에 이 당시 온몸에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된 사실과 구타로 인해 앞니가 깨진 피해 사실도 같이 증언하였다.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위원회는 군에서 생산한 작전 관계 문서들을 분석해서 피해자의 증언이 당시 계엄군의 진압작전 상황에 부합하는지 확인했다. 먼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광주일고 인근의 18일 계엄군 배치와 진압작전 상황은 특전사가 작성한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 전투상보』에서 제7공수여단의 배치와 유사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을 공격한 계엄군 상황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제7공수여단 33대대 9지역대 7중대 상병 전〇〇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〇〇은 중대 대형과 같이 대형을 갖춘 채 이동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대략 3에서 5명 정도가 한 조로 묶여 정찰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가해하던 군인들의 숫자 묘사와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sup>421</sup> 또한 피해자를 군인들이 구타할 때 진압봉을 사용해서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군홧발로 짓밟은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묘사 또한 위원회에서 면담조사를 실시한 제7공수여단 병력과 당시 33대대장인 권승만의 진술<sup>422</sup>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엄군의 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 행위는 시위 현장에서 계엄군의 우발적인 행

421 5·18조사위, 「참고인 전〇〇 진술녹취록」(2022.04.26.), 37~40쪽.

422 서울지방검찰청 1995형제144116, 「권승만 진술조서」(1996.01.05.), 9~10쪽, 12쪽.

위라기보다는 상급자의 명령 하에 이루어졌다. 33대대 9지역대 7중대 소속인 ○○하사관 유○○는 시위대를 박살내라는 명령이 있었으며, 진압 당시 진압봉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중대장이나 지역대장이 시위대를 잡았을 때 시위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sup>423</sup> 33대대 9지역대 7중대 ○○ 하사관 조○○ 또한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진압봉으로 머리를 가격하라는 지시와 함께 여자들의 옷통을 벗겨 버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이 시위대 여성들에 대한 ‘강제 탈의’ 행위는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 주어 시위 의지를 꺾으려는 의도 하에 자행된 것이다.<sup>424</sup> 더불어 23번 피해 여성의 옷을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도구로 찢었다는 증언은 당시 진압 작전을 수행할 때 대검을 착용하였다는 군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검이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피해자는 계엄군으로부터 구타와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이후 50세 가량의 여성의 구조로 간신히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증언하고 있는 피해 사실은 피해 직후 피해자가 찾아간 친구 김○○의 증언과 피해자의 어머니 증언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sup>425</sup> 김○○은 피해 여성이 찾아왔을 때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피해 여성의 어머니 또한 피해 여성의 부상 상태에 대해 동일하게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이웃인 전○○와 유○○은 피해자의 부모가 리어카에 피해자를 싣고 집으로 오는 것을 보았

<sup>423</sup> 5·18조사위, 「유○○ 진술요지서」(2023.09.20.), 1~2쪽.

<sup>424</sup> 5·18조사위, 「조○○ 진술요지서」(2023.09.19.), 2쪽. 이러한 수치심과 모욕감은 특히 여성들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는 악영향을 낳았다. 이러한 악영향은 당시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에게 모두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는 것을 이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sup>425</sup>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23번 피해자」, 『5·18 관련 추가 신고자 현지 확인조사서』(1993.10.15.), 2쪽.;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23번 피해자」, 『2차 현지 확인 조사 결과보고』(1993.11.20.), 1쪽.

으며, 당시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하였다.<sup>426</sup> 마을의 반장 고○○과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 회장 최○○은 피해 여성이 5·18 당시 공수부대원으로부터 옷이 찢겨지고, 알몸으로 구타를 당하고, 군홧발로 짓이겨지는 등의 봉변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sup>427</sup>

가족과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서 볼 때, 피해자가 증언하고 있는 피해 사실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당시 계엄군의 광주일고 인근에서의 작전상황과 작전에 투입된 제7공수여단 병사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피해 여성이 증언하고 있는 시위 진압 상황과 붙잡힌 시민, 특히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 상황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피해 경험에 대한 증언으로 5·18 당시 여성으로서 겪은 성적 폭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기를 원했다.

보상심의위에 제출된 피해 여성의 진료기록과 조제기록에 기재된 피해 사실로 볼 때 당시 군인에 의한 성적 학대를 동반한 가혹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때의 끔찍했던 경험과 고통이 피해자에게 평생 정신적·신체적 상흔과 고통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 사실 또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여지가 있다.

## (2) 직가의2-5(24) 사건

### (가) 24번 피해자의 진술<sup>428</sup>

이 사건의 당사자는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당했다. 첫째는 5월 19일 광주시외버스

<sup>426</sup>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23번 피해자」, 『5·18 관련 추가 신고자 현지 확인조사서』(1993.10.15.), 2쪽.

<sup>427</sup>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23번 피해자」, “현지조사 검토 결과”, 「현지조사 결과(1993) 2쪽.;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23번 피해자」, “2차 현지 확인조사 결과 보고”, 「조사 내용」(1993.11.20.), 2쪽.

<sup>428</sup> 5·18조사위, 「24번 피해자 진술요지서」(2023.08.29.)를 참조. 이하 피해 내용은 진술요지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공용터미널 인근에서 연행되어 ‘성적 모욕 및 학대’ 피해를, 둘째는 1980년 10월 22일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5월 19일 오후 2시경 광주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근처에서 시위진압을 하는 계엄군에게 붙들려 불법 연행되는 과정에서 ‘강제 탈의’를 당했다. 피해 여성을 붙잡은 두 명의 군인은 총에 달린 칼로 상의 앞뒤를 찢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의는 물론이고 브래지어까지 찢겨 나갔다. 그 과정에서 군인들이 험한 욕설과 협박조의 말을 내뱉으며 버스 승하차장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해 여성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강제로 군용트럭에 태워져 전남대학교 운동장으로 끌려갔는데, 운동장에 도착하니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연행해온 사람들을 구타하고 기합을 주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피해 여성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군인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이후 한 지휘관이 훈방 조치해주어서 풀려날 수 있었다. 같이 자취를 하는 친구가 등에 묻은 핏자국과 칼자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어서 자신의 가슴에 사선으로 10cm 가량 나 있는 칼자국을 확인하였으나 상처가 깊지 않아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피해 여성은 또한 1980년 10월 22일 오전 자취방에 찾아온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자신의 자취방에 찾아온 2명의 형사는 피해 여성과 친구에게 자신들이 작성한 노트와 유인물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형사 한 명이 친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 피해자와 같이 있던 다른 형사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단 몇 초간에 벌어진 추행이었지만 피해 여성은 자신을 추행한 그 형사를 ‘더러운 손을 가진 괴물’ 같은 인상으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5월 19일 광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일대에서의 진압작전에 대해서 제7공수여단과 제11공수여단의 「전투상보」와 제7공수여단 35대대장 중령 김일옥과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



중령 안부웅 등 당시 진압과정에 참여한 군인들의 진술을 살펴보았다. 5월 19일 09:00~10:00경 61대대는 충장파출소 등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 배치되었고, 62대대와 63대대는 10:40경 61대대 지역에 증원되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한 작전에 투입되었다. 공용터미널에서 시위진압에 가담한 부대는 당시 11공수여단 61대대와 제7공수여단 33대대로 확인된다.<sup>429</sup>

제7공수여단 33대대 병력은 15:55경 광주역, 공용터미널, 광주공원 등지로 착검한 상태에서 위력시위를 하였으며,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시위대 9명을 체포하여 18:30경에 전남대로 복귀하였다. 피해 여성이 진술한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의 공용터미널에 배치되어 진압작전을 수행한 부대는 제11공수여단 61대대 1지역대로 추정되지만, 피해자가 군용트럭에 실려 전남대로 호송된 사실로 보았을 때에는 전남대학교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7공수여단 33대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 33대대 7지역대 3중대 하사관 2명은 “속옷과 상의가 모두 벗겨진 여성이 트럭에 태워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같이 올라간 남성들이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것을 보았다”고 위원회의 면담조사에서 진술하였으며, 묘사된 광경은 피해자의 진술과 매우 흡사하다.<sup>430</sup>

또한 공용터미널에 있는 시민들을 계엄군이 구타하는 장면 또한 터미널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서 진압하였다는 제11공수여단 61대대 1지역대 3중대장 김○○과 같은 부대 1지역대장 정○○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검 사용에 대해서도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7공수여단 33대대 유○○ 하사와 김○○ 일병의 진술에서도 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상황

429 제11공수여단 61대대 1지역대 3중대장 김○○은 19일 14시경 해당 지역에서 시위진압을 하였으며 터미널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서 진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대대 1지역대장 정○○ 또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44116, 「참고인 김○○ 진술조서」(1995.05.04.), 『5·18사건수사기록』 24권, 31712~31739쪽; 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44116, 「참고인 정○○ 진술조서」(1995.12.20.), 『5·18사건수사기록』 24권, 31204쪽; 서울지방검찰청, 『5·18사건 수사기록』(1995),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901-12』 70쪽.

430 5·18조사위, 조사3과-732(2021.06.10.), 「이○○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1.05.26.); 「박○○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1.06.03.).

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sup>431</sup>

앞선 5월 19일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2000년 제4차 보상신청에서 피해자 본인이 밝혔으나, 1980년 10월 22일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찾아온 형사로부터 당한 ‘가슴 추행’ 사실은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본인의 신체에 가해지는 성추행을 경험한 여성이 자신이 당한 사실을 사회나 주변인에게 털어놓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두 번째 사건은 오랜 세월 피해 여성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는 엄청난 상흔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위원회에 진술한 피해 내용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에 관해서는 당시 공용터미널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목격한 당시 피해자의 고등학교 은사인 이○○로부터 확인된다. 이○○는 19일 14시경 순천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제자였던 피해자가 강제 탈의된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였다. 이○○는 계엄군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구타한 뒤 피해자의 등 안으로 대검을 집어넣어 옷을 찢고, 터미널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sup>432</sup>

친구 조○○는 피해자의 등이 칼에 긁힌 채 피가 흐르는 상태로 귀가한 것을 목격하였으며, 두 번째 사건 역시 10월 22일 자취방에서 연행되어 2개월간 같이 구금된 사실을 증언하였다.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연행된 양○○도 구금 시설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sup>431</sup> 제7공수여단 33대대 9지역대 7중대 1지대 소속 유○○ 하사는 옷을 찢는 용도로 대검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3대대 7지역대 1중대 김○○ 일병은 훈련이나 필요 상황에 대비해 중대별로 1자루 정도는 날을 세워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18조사위, 조사4과-1148(2023.09.13.), 「유○○ 진술 녹취록」(2021.06.23.); 5·18조사위, 조사4과-240(2024.5.21.) 「김○○ 진술 녹취록」(2021.09.02.).

<sup>432</sup>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회, 「보상신청-24번 피해자」, 『5·18 관련 추가 신청자 현지 확인 조사서』(2000.04.03.), 35쪽.

에 대해 증언하였다.<sup>433</sup>

5월 19일 당시 공용터미널에서의 피해자 상황과 10월 22일 연행 구금된 상황에 대해서는 위 참고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일 공용터미널에서 피해자가 성적 모욕과 학대를 당한 사실은 숙영지가 전남대였던 제7공수여단이 진압작전을 수행하던 과정에서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강제 탈의에 대한 지시 여부뿐만 아니라 옷을 찢는 용도로 대검을 사용했다는 계엄군의 진술은 피해자가 증언한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한 상황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10월 22일 강제 연행되어 구금되는 과정에서 당한 성추행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 과정, 성추행한 형사에 대한 인상과 행위의 구체성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 사건 후 당시의 경험이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5·18에 대한 기억을 회피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성추행이 일어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3) 직가의2-5(7) 사건

#### (가) 7번 피해자의 진술<sup>434</sup>

〈직가의 2-5(7)(이하 7번 사건)〉 사건의 당사자는 5월 19일 또는 20일경 금남로4가(가톨릭센터 일대) 인근 골목에서 계엄군에게 가슴을 ‘강제추행’ 당하였다.

당시 18세로 금남로4가(가톨릭센터)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피해자는 사건 당

<sup>433</sup>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24번 피해자」 『5·18 관련 추가 신청자 현지 확인 조사서』 (2000.04.03.), 35쪽.

<sup>434</sup> 7번 사건 피해 여성의 피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5.18계엄군등성폭력공동조사단-62(2018.08.17.), 「7번 피해자 면담조사 결과 보고」(2018.08.07.); 5·18조사위, 조사3과-120(2020.06.30.), 「7번 피해자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0.06.19.); 5·18조사위, 조사4과-1131(2023.09.12.), 「7번 피해자 진술 녹취록」(2020.06.19.); 5·18조사위, 「7번 피해자 진술요지서」(2023.09.20.) 조사 내용을 참조. 이하 피해 내용은 위의 참고 문헌에 기재된 내용이다.

일 같이 일하는 동료도 나오지 않아 혼자 출근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곤봉을 든 군인들에 의해 옷이 벗겨진 시민들이 삼각팬티만 입은 상태로 군용트럭에 태워지는 장면과 계엄군에 쫓기던 시민이 대검에 어깨가 찢려 피가 솟구치는 모습을 셔터문이 내려진 틈으로 목격하였다. 금남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14시경 퇴근하겠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가게 뒷골목에 있는 사장 집에 가던 중 뒤에서 따라온 군인이 어깨를 잡아채 벽 쪽으로 본인을 밀치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 그 군인은 숨소리가 거칠어지면서 가슴을 세게 만졌고, 다른 손으로는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해 여성은 당시 자신을 추행하고 있는 군인의 몸에서 나던 담배 냄새와 땀 냄새, 거친 숨소리, 손동작 등이 또렷이 기억 나지만, 흑백사진처럼 기억되고 있다고 위원회와의 면담조사에서 증언했다.

####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2018년 <공동조사단>은 피해자가 사건 직전 군인들이 가톨릭센터에서 시민들을 진압 봉으로 제압하고, 팬티만 입힌 채 군용트럭에 태우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피해 일시를 5월 20일 점심시간 14:00경으로 특정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계엄군에 의한 강제 탈의 및 신체 노출에 관한 기록은 1980년 5월 19일 작성된 광주시 동구청의 「5·18 사태일지」가 최초이다. 제11공수여단 「전투상보」에 따르면, 5월 19일 14:50경 61대대, 62대대, 63대대와 제7공수여단 35대대가 금남로 및 한일은행 앞 군중 2천 명을 진압 및 해산시켰다.<sup>435</sup>

5·18 조사위는 피해자가 오전 시간대에 군용트럭의 무력시위와 대검에 찢린 남성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군용트럭에 속옷 차림으로 실려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묘사가 5월 19일 시위 양상과 유사한 점 등으로 보아 피해 발생 일시와 장소를 5월 20일이 아닌 5월 .....

<sup>435</sup> 제11공수여단, 「광주소요사태 진압작전 전투상보」(1980), 합동참모본부, 57쪽.

19일 14시경 금남로4가 골목으로 판단하였다.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7번 사건 피해자는 2018년 <공동조사단>에서 진술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도심 진압작전 과정에서 계엄군에 의한 유사한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당일 성추행을 당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5월 19일 금남로4가 일대는 “남성은 머리를 때리고, 여성은 상의를 벗겨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하였다는 복수의 계엄군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확인되는 장소이다. 군 기록에서도 해당 장소에서 제11공수여단이 19일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강제 탈의가 중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엄군이 골목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추행하고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진술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여러 정신적 트라우마와 안정되지 못한 가족 환경은 과거에 경험한 성적 고통의 후유증으로 보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경험이 없는 한 그 기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피해자 당한 성폭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4) 직가의2-5(1) 사건

(가) 피해자의 진술<sup>436</sup>

<직가의 2-5(1)(이하 1번 사건)>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 여성은 5월 19일 또는 20일경

<sup>436</sup> 1번 사건 피해 여성의 피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5.18계엄군등성폭력공동조사단-62(2018.08.17.), 「7번 피해자 면담조사 결과 보고」(2018.08.14.); 5·18조사위, 5·18조사위, 조사3과-94(2020.06.17.), 「7번 피해자 면담조사 결과 보고」; 5·18조사위, 조사4과-1131(2023.09.12.), 「7번 피해자 진술 녹취록」(2020.06.12.); 5·18조사위, 조사4과-933(2023.08.10.), 「7번 피해자 상담일지」(2023.07.08.).. 조사 내용을 참조, 이하 피해 내용은 위의 참고 문헌에 기재된 내용이다.

동명동 전남여고 후문 담벼락 부근에서 계엄군 2명으로부터 운간을 당했다.

피해자는 퇴근길에 ○○동 시택에 맡겨놓은 쌍둥이를 데리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를 막고 있는 계엄군들을 피해 근처 전남여고 후문 골목으로 우회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5월 19일 또는 20일 20시에서 21시경 전남여고 후문 담벼락 부근에서 총을 찬 얼룩 무늬 군복의 계엄군 5~6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차량을 멈추었다. 군인들은 차량의 열쇠를 빼앗으며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했으며, 주먹으로 앞니가 흔들릴 정도로 구타하였다. 그리고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옷을 벗긴 후 계엄군 2명이 교대로 강간하였다. 피해 당시 피해자는 계엄군의 입 냄새, 땀 냄새, 숨 쉬는 소리가 많이 났고, 몸이 장작개비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하였다.

사건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후 자궁 밑에 물혹이 생겼으며, 다음날부터 성기 통증, 하혈,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광주 시내가 마비되어 있어 병원에 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월산동에 있는 <박영자조산원>에 가서 유산기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가해 군인의 냄새를 현재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냄새에 민감해졌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거나 예비군 옷만 봐도 임신한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으며, 택시 운전 중에도 군복만 보면 그 울렁증이 더 심해지곤 했다고 한다. 본인은 군인을 손님으로 태우는 것이 싫었으며, 차 안에 같이 있다는 사실조차 끔찍하다고 말했다. 현재에도 정신과와 신경과 치료와 약 복용을 하고 있으며, <공동조사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불면증과 악몽이 더욱 심해졌다고 진술했다. 피해 여성은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약 3년간 상담을 받으면서 이러한 증상이 강간 이후 후유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강간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잠자리가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아졌다고 한다.

(나) 증거 1: 계엄군 진압작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일자를 5월 19일 또는 20일경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일은 MBC 방화사건 이후 주변 일대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 사건이 발생한 일자는 오히려 5월 19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군 기록에 의하면, 5월 19일 04시경 제7공수여단 33대대와 35대대는 제11공수여단 61대대에 거점을 인계하였다. 그리고 10:30경에 62, 63대대 병력을 증원하였고, 14:30경 광주 전 지역에 분산된 대대 병력이 조선대학교에 집결하였으며, 금남로 한일은행 앞에 시위대가 모이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61대대, 62대대, 63대대, 제7공수여단 35대대가 출동하였다.

오후 16:45경 제11공수여단 61대대는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점령해서 일대에 운집한 시위대를 해산시켰고, 62대대는 한일은행 앞에서 작전을 전개했다. 그리고 63대대는 금남로 사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제7공수여단 35대대는 광주소방서 앞에 집결한 상태에서 11공수여단 61대대를 증원하도록 하였다. 제11공수여단 62대대장 이제원과 63대대장 조창구의 진술에 따르면, 19일 15시경 61대대는 도청 앞 금남로 북쪽, 62대대는 도청 앞 금남로 남쪽, 63대대는 중앙국교 앞 사거리 전남여고 맞은편, 35대대는 공용터미널과 광주역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했다.

따라서 5·18조사위는 제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계엄군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작전 상황을 살펴보았다.<sup>437</sup> 진술을 종합해보면, 대인시장, 계림파출소, 동명동 복개 도로, 전남여고까지 63대대가 작전을 전개한 것을 알 수 있다. 작전을 수행할 때에도 3~5명 정도가 한 조 형식으로 정찰을 다녔으며, 전남여고 인근에서는 화단을 비롯해서 주변을 살살이 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화단의 비어 있던 화분에 숨어 있는 여자가 발견되어서 그 자리에서 폭행을 했다는 진술도 있다. 또 다른 계엄군은 그러한 분위기

437 5·18조사위, 조사1과-585(2024.05.27.), 「박○○ 진술 녹취록」(2022.06.16.); 5·18조사위, 조사1과-587(2024.05.27.), 「전○○ 진술 녹취록」(2022.04.26).



와 상황 속에서 군인에 의한 성폭력 등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sup>438</sup>

1980년부터 현재까지 피해 장소 인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동네 주민은 5월 19일과 20일 즈음 피해 현장 사거리에서 천명 규모의 공수부대원들이 진압봉으로 때리고 밟고 다리 밑으로 던지는 등의 과격한 진압이 있었으며, 새벽에도 군인들이 시민들을 쫓아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사건 당일인 19일 피해자는 일을 마치고 ○○동 시택으로 운전을 해서 가던 도중에 전남여고 후문 담벼락에서 군인들과 마주쳤다. 사건이 있던 19일 전남여고 인근 주민은 “전남여고 담벼락 안쪽에서 1개 중대 인원이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5·18조사위가 여러 군 기록과 당시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면 전남여고 맞은편 중앙국교 사거리에서 중대별로 작전을 수행한 부대는 제11공수여단 63대대이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던 당시 자신을 범한 군인들의 입 냄새, 땀 냄새, 숨소리 등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으며, 그때 당시 자신의 몸이 장작개비처럼 느껴졌다는 기억을 또렷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3~5명 정도의 군인들이 조를 이뤄 몰려다녔다는 해당 장소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나 피해자가 묘사하는 계엄군의 숫자와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전남여고 후문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제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병력 2인 이상의 목인 하에 2명의 계엄군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개연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후 유산기가 있어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아이를 더 낳지 못했다는 점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건 이후 군복 입은 군인들에 대한 거부감, 정신과와 신경과 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점, 불면증과 악

<sup>438</sup> 5·18조사위, 「조○○ 진술요지서」(2023.09.19.).

몽에 시달린 점 등의 후유증은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상담 과정에서 ‘강간 이후 후유증’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종합해서 보면 피해자는 5월 19일 제 11공수여단 63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집단강간을 당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높으며, 피해자의 증언 또한 신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5) 직가의2-5(4) 사건

#### (가) 피해자의 진술<sup>439</sup>

당시 피해자는 ○○동 소재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108번 시내버스를 타고 ○○에서 통학을 하였다. 5월 19일 정상수업을 못하고 14시경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유동삼거리까지 30분 정도 걸어가던 중 갑자기 군용화물차 1대가 오더니 얼룩무늬 공수부대 옷을 입은 군인 2명이 내려 총을 들이대며 차에 타라고 했다. 무서움에 주변에 있던 여성 2명과 함께 차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운전사 1명이 있었고, 여성 2명은 화물차 뒤에 호로(차량덮개)가 덮인 적재함에 탑승했다. 대략 1시간 가량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아줌마들과 피해자는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해보았지만 군인들은 총을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으박지르기만 했다. 군인들은 야산으로 끌고 가서 3명의 여성을 1명씩 틀어잡고 치마를 찢어 바닥에 눕혀 강간했다. 반항을 하자 발로 머리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없이 가격하며 강간을 당했다. 군인들은 강간을 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떴다고 한다. 그 뒤 찢어진 치마를 그대로 입고 울면서 길을 따라 내려와서 보니 백운동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강간을 당한 장소가 광주에서 ○○으로 가는 방향에서 우측에 있는 백운동 뒤에 있는 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439 4번 사건 피해 여성의 피해 내용은 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44116, 「참고인 4번 피해자 진술조서」(1996.01.06.), 『5·18사건 수사기록』 112권, 110391~110393쪽; 5·18조사위, 조사3과-808(2021.07.12.), 「4번 피해자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1.06.30.). 조사 내용을 참조. 이하 피해 내용은 위의 참고 문헌에 기재된 내용이다.

피해자는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한 학생이었지만, 사건 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학업을 그만두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 산속을 돌아다니기도 했고, 산에서 잠을 자다가 발견되기도 했다. 가족들이 개인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 나주정신병원에 5회 정도 입원치료를 했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한다. 1986년 국립나주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1990년 광주에서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 피해 여성은 <○○○○복지원>과 무안에 있는 <○○원> 등의 수용시설에서 지내기도 했다.

1990년 제1차 보상신청 당시 장애등급 1급을 판정받았다. 피해자가 부상당한 사실에 대해 23명이 피해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을 썼으며, <○○○○복지원>과 <나주정신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입증되어 5·18 관련 상이자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목격자나 증거가 없어 강간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 (나) 증거 1: 계엄군 진압작전

○○여고에서 유동삼거리에 이르는 도보 최단 거리인 ○○○○○○ 및 ○○○○을 연결하는 지점을 따라 걸었을 경우 약 48분(2.8km)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하교 후 유동삼거리에 도착한 시간은 14:30~16:00경으로 추정되며, 광주에서 ○○으로 가는 월산로 오른쪽에 월산근린공원이 있고, 맞은편 백운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으므로 월산근린공원 일대를 피해 장소로 추정해볼 수 있다.<sup>440</sup>

5월 19일 14:30경 유동삼거리 일대에는 「특전사 전투상보」에 따르면 제11공수여단 61대대, 62대대, 63대대가 금남로 및 한일은행 앞에 모여있는 시민군 2천여 명과 대치 중이었고,<sup>441</sup> 15:50경에는 제7공수여단 33대대가 광주일고에서 광주 시가지 방향으로 기동

440 5·18조사위, 조사3과-344(2021.03.25.), 「실지조사 결과 보고」(2021.07.19.).

441 「특전사전투상보」(1980),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7쪽.

을 하였다. 16시경에는 제7공수여단 35대대가 유동삼거리 200미터 앞까지 진출해서 전방의 제11공수여단과 함께 시위대를 분산시켜 진압작전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작전에 투입된 계엄군 진술을 확인해보면, 제11공수여단과 61대대 소속인 우○○는 당시에 작업복인 민무늬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시위대 체포 및 수송과 관련해서는 60트럭(2½톤)에 시위대를 태우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대대 소속인 박○○과 62대대 소속인 김○○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트럭 운전병은 공수부대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금남로에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덧붙였다. 제11공수여단과 본부대 수송부 성○○은 금남로에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트럭 2~3대를 이용하여 조선대 체육관으로 이동시켰는데, 당시 자신이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시위대 연행 차량을 2번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시내에서 시위대를 체포해서 조선대 체육관으로 연행한 트럭들은 여단 차량이 아니라 주로 타 부대 지원 차량이었으며,<sup>442</sup> 트럭 운전병이 민무늬 군복이었다는 다수의 진술과 제11공수여단과 본부대 수송부가 군용트럭을 운전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18조사위는 4번 피해자의 피해 상황과 유사한 장면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도 확인하였다. 참고인 김○○은 5월 20일 충장로 대로변 화니백화점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지켜보는데, 후진해온 군용트럭에서 내린 계엄군이 참고인의 옆에서 있던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태우고 그대로 가버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sup>443</sup>

<sup>442</sup> 5·18조사위, 조사3과-694(2021.5.26.), 「성○○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1.05.20.).

<sup>443</sup> 국가인권위원회, 5.18계엄군등성폭력공동조사단-88(2023.8.30.), 「김○○ 면담조사 결과 보고」(2018.07.26.), 1~2쪽.; 국가인권위원회, 5.18계엄군등성폭력공동조사단-143(2023.10.31.), 「조사결과보고서」(2018.11.), 92~94쪽.

####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피해자가 이동하던 당시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군 작전과 관련해서는 5월 19일 16시경 제7공수여단 35대대가 유동삼거리 200미터 앞까지 진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제11공수여단이 시위대를 분산시켜 진압하고 있던 상황이었다.<sup>444</sup> 당시 진압작전이 체포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연행자를 군용트럭에 태워 소속 부대의 숙영지(전남대/조선대)로 호송하는데 사용하였던 빈 군용트럭이 가해행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작전상황에서 수명의 군인들이 민간인 여성을 납치하여 1시간 가량 외진 곳으로 이동하여 강간한 일탈적 행위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나 경위 확인은 어렵다.

여성을 군용트럭을 이용해서 납치한 모습을 보았다는 참고인의 목격 진술이 있으며, 사건 후 피해자와 가족은 1989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부터 5·18 당시 강간 피해에 관해 일관되게 증언해오고 있다. 또한, 1996년 정신병이 만성화된 상태였던 피해자가 서울중앙지검 피해 조사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당시 자신의 주민번호 숫자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피해와 가해자 처벌을 호소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5·18 당시 겪은 강간 피해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정서적으로 우울과 불안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적대감과 공포심을 겪고 있는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심지어 집을 나가 <○○원>에 수용되어 가족들에게 발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1990년 제1차 보상신청 결과, 정신적 상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 1급을 판정받았다. 현재 5·18 당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현정동장애’ 등의 병명을 가진 여성들이 <국립나주정신병원> 등에 입원해 있으며, 이 여성들이 1980년

444 5·18조사위, 조사3과-344(2021.03.25), 「실지조사 결과 보고」(2021.07.19).

당시 여고생이거나 10대 여성이었고, 5·18 이후 발병한 바 있다.<sup>445</sup> 위 사항들을 종합해서 고찰해보면, 사건 후 피해자가 입은 정신분열증 등은 강간 피해로 인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각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와 진료내역, 입소기관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 (6) 직가의2-5(6) 사건

### (가) 피해자의 진술<sup>446</sup>

피해 여성은 1980년 당시 20살의 나이로 0000버스 안내원이었다. 피해자가 집단강간을 당한 일자는 5월 19일경이다. 피해자는 19일경 17~18시경 영광 법성포로 운행했다가 빈 차로 월산동 공장에 가려던 중이었다. 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자 김○○는 계엄군에 쫓기던 젊은 사람들을 버스에 태웠고, 얼마 못 가 계엄군이 버스를 세우고 올라타더니 버스 안에 있는 청년들을 진압용으로 마구 구타했다. 계엄군은 그 상태로 버스를 특정 장소로 이동시켰으며 헌병대가 서 있는 어느 지점에서 청년들과 일부 계엄군이 하차하였다. 그 후 3명의 계엄군이 남아 운전사와 피해자를 데리고 화정동, 쌍촌동을 지나 어느 지점에 정차하였다. 계엄군들은 피해자만을 데리고 내렸으며, 큰 방죽이 있는 저수지까지 끌고 가서 집단 강간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을 강간한 군인은 두 명이다.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한 군

<sup>445</sup> 5·18조사위, 대외협력담당관-412(2023.08.10), 「나주보건소, 국립나주병원 자료 조사 결과 보고」, “230809 나주보건소, 국립나주병원 자료 조사 결과 보고”, 1쪽. 국립나주병원 의료행정팀장은 현재 5·18 관련 추정 정신질환자 9명이 입원해 있다고 하였다. 9명 중 가족의 수신 거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직가의2-5(15)> 사건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2002년 자살한 <직가의2-5(46)> 사건 피해자는 동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1982. 4.~1984. 12. 5회 입원하고, 1988. 3.까지 통원 치료하였으며, 1993. 000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분열증 만성화 경향과 인격의 퇴행 현상을 보인다고 진단받은 바 있다.

<sup>446</sup> 6번 사건 피해 여성의 피해 내용은 5·18조사위, 조사4과-799(2023.07.11), 「6번 피해자 상담일지」(2023.06.21); 5·18조사위, 「6번 피해자 진술요지서」(2023.08.02); 5·18조사위, 조사4과-1230(2023.10.04), 「광주트라우마센터 6번 피해자 상담기록지 입수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5.18계엄군등성폭력공동조사단-123(2018.10.08), 「6번 피해자 면담조사 결과 보고」(2018.09.13), 6쪽 조사 내용을 참조. 이하 피해 내용은 위의 참고 문헌에 기재된 내용이다.

인들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은 경상도 말씨를 썼다는 것과 세 명 중 키가 작고 짧은 사람이 “자기는 안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끌려갈 당시에는 자신을 총으로 쏘서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자신을 밀치고 눕게 하더니 옷을 벗기자 강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두 번의 강간을 당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해 당시 하혈을 계속했으며, 피비린내가 심하게 나서 생리가 터진 것으로 생각이 들었으며, 두 번째 강간 당시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기억이 나가서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자신을 강간한 계엄군들이 희미하게 보였다고 했다. 그리고 피해 장소는 독과 길 사이였고 풀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피해자는 회사 제복 치마 앞뒤로 피가 많이 묻은 채 언덕을 내려와서 몇 시간 걸어 자정 무렵 기숙사로 돌아왔다고 했다. 강간을 당하던 당시 피해자는 돌 위에 누웠던 것 때문에 등에도 상처가 났고, 피도 많이 났다고 했다. 기숙사에 돌아와서는 조용히 씻었는데, 음부가 쓰리고 아팠고, 등도 아파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한 기수 위 선배인 양○○에게 피해 사실을 말했으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함구시켰다고 진술했다. 나중에 ○○○○에서는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다고 입단속을 시켰으며,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처럼 티 내지 못하도록 단속했다고 했다.

####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군 기록에 따르면 5월 19일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 투입된 부대는 제11공수여단 61대대이다. 「광주사태 실상」, 「광주지역 소요사태 진압작전」, 「11공수단원의 진압작전 수기」에는 5월 19일 16:45경 61대대가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을 점령하고 일대 운집한 폭도를 해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에 따르면, 17시 공용터미널에 시위대가 2천여 명으로 증가하자 61대대가 저지하고 해산시켰다.<sup>447</sup>

.....  
<sup>447</sup>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 기무사, 65쪽.



계엄군이 작전을 수행할 때 지나가던 버스나 트럭을 강제로 세워 이동한 정황도 계엄군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도청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라는 무전을 받고 지나가던 버스를 잡아타고 8명 정도가 이동했다는 진술이 있다.<sup>448</sup> 19일 18시경 고속버스를 강제로 이동하도록 하였다는 상황 또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18일 광주경찰서로 잡혀 온 시위대가 관광버스 10여 대에 실려 이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 또한 5·18조사위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sup>449</sup>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 중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우선 ○○○○에서 피해자가 근무한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의 재직자 기록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언급하고 있는 동기 임○○, 한 기수 선배인 양○○의 입·퇴사 내역이 확인되었다.<sup>450</sup> 그리고 사건 당시 버스 기사였던 (사건 당시 32~33세 가량) 김○○는 ○○○○ 기록에는 ‘기술원’으로 되어 있는데, ○○○○ 퇴직자 모임인 ○○회의 회장 강○○은 전산화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일 거라며 당시 김○○는 운전 기사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해주었다.<sup>451</sup> 다만 현재는 ○○회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끊긴 상태여서 당시 피해자와 같이 겪었던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피해자가 기억하는 장소와 일자, 시간대에서 제11공수여단 61대대가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시위대를 저지하고 해산시킨 상황이 군 기록과 계엄군의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작전 상황 중 지나가는 트럭과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연행자를 호송하는

<sup>448</sup> 5·18조사위, 조사4과-256(2022.3.23.), 「권○○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2.03.16.).

<sup>449</sup> 5·18조사위, 조사4과-256(2022.3.23.), 「김○○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1.09.07.).

<sup>450</sup> 두 사람의 경우도 현재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사를 진행하면서 접촉할 수가 없었다.

<sup>451</sup> 5·18조사위, 조사4과-1318(2023.10.19.), 「○○○○ 자료 입수 보고」; 5·18조사위, 조사4과-1331(2023.10.20.), 「강○○ 전화통화 결과 보고」(2023.10.19.).

데 사용하였다는 진술 또한 계엄군과의 면담조사에서 확보하였다.

19일 이동 경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화정동, 쌍촌동을 지났으며, 세 명의 계엄군과 내려서 걸어간 곳은 큰 방죽이 있는 저수지였다고 했다. 피해를 당했던 장소는 독과 길 사이였고, 풀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피해 장소가 운천저수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위원회에서는 당시 운천저수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군인들이 강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진 곳인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당시 운천저수지 인근에 살았던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80년 당시 운천저수지 인근은 사람을 끌고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지형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욱이 운천저수지 근처에는 상무대가 있어서 군인들이 성폭력을 저지르고 걸어서 복귀하기에도 가까운 곳이었다.

19일 당시 피해자가 생리를 시작했다는 진술, 피해 당시와 강간 직후 군인들에 대한 기억, 본인의 몸에 남아 있는 상처와 음부의 고통에 대한 묘사, 그리고 기숙사 복귀 이후 약을 사 바른 경험에 대한 설명 등 경험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후에도 전치태반, 자궁경부암과 같이 하혈과 관련된 여성 질환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이 강간으로 인한 피해에 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 (7) 직가의2-5(5) 사건

### (가) 피해자의 진술<sup>452</sup>

피해자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5·18 당시 사진사로 활동한 남편과 함께 시신을 수습

<sup>452</sup> 5번 사건 피해 여성의 피해 내용은 5·18조사위, 조사4과-1006(2023.08.23.), 「5.18기념재단 증언기록 자료 입수 보고」; 5·18조사위, 조사4과-1230(2023.10.04.), 「광주트라우마센터 5번 피해자 상담기록지 입수 보고」; 5·18조사위, 「5번 피해자 진술요지서」(2023.08.30.) 조사 내용을 참조. 이하 피해 내용은 위의 참고 문헌에 기재된 내용이다.

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해 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5월 19일 늦은 밤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19일 낮에 도심 여기저기를 다니며 부상자를 치료하다가 밤에 공수부대원에게 잡혔으며, 공수부대원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희롱을 하며 대검으로 상의와 하의를 찢었다고 했다. 피해자를 덮쳤던 군인이 대검으로 상의를 'X'자 형태로 찢은 후 머리채를 뒤로 젖혀 목을 조르며 눕힌 뒤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응급처치용 가위로 군인의 어깨를 힘껏 찔렀으며, 군인은 바로 총을 겨누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강한 수치심을 느껴 스스로 자신의 오른쪽 윗 가슴 쪽을 자해한 후 기절하였다고 증언했다.

가슴으로 본인의 가슴을 찌를 때 비명을 질렀는지 부근의 <○○○의원>의 원장과 부인이 긴급구조를 해서 황금동에 있는 <○○○의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해가 뜨기 전 '○○○의원' 원장 집에서 나와 조선대 체육관으로 이동하였으며, 남편이 희생자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계속 도왔다. 피해자는 이후 충장로에서도 심 시위진압 작전에서 발생한 부상자나 사망자를 옮기고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총알 파편이 몸에 들어와 마취 없이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남편과 사진을 찍는 중에 계엄군에게 복부 구타를 당했고, 장이 파열된 상태인 줄 모르고 하혈하다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져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이송되었고, 1년 8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기도 하였다. 2017년 제7차 보상심의에 신청한 후 광주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혼수상태일 때 자궁 파열로 자궁이 적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번 피해자는 성폭력 당한 것에 대해 남편에게 말하고 이혼하자고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5·18조사위 조사관에게 털어놓았다. 또한, 수면제를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남편과의 성관계는 전혀 할 수 없었고, 5·18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고 있었다. 무엇보다 5월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당시 강간을 당할 뻔한 일

들과 5·18 때 보았던 장면들이 더 자주 떠올라 힘들다고 조사관에게 증언했다. 부상을 입고 처참하게 죽어가던 사람을 돕지 못하고 외면했던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감도 여전히 든다고 한다.

이러한 후유증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기피하는 증세로 이어졌다. 2014년 9월에 <광주트라우마센터> 상담에서 피해자는 황금동 골목에서 당한 성적 피해를 언급할 때 숨이 막히는 증세를 보여 상담자가 호흡법을 실시한 것을 「상담기록지」에서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상담 중 호흡이 짧아지고 거칠어지며, 몸을 부들부들 떠는 증상을 보였으며, 가슴을 손으로 세게 치며 과각성된 모습을 보였다고 「상담기록지」에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2017년 실시되었던 제7차 보상심의에서 장해등급 14급을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18 당시 겪었던 성폭력 피해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또한 5·18 당시 이야기를 생생하게 회상하는 등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무슨 일이든 5·18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등의 소견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2급 2호를 받기도 하였다.

####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피해 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다. 하지만 피해 일자와 시간에 관해서는 통금시간이 지난 늦은 밤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5월 19일 낮 동구청 지하보도에서 군인 셋이 군화발로 학생의 머리를 짓이겨 머리가 터지는 모습을 보았고, 사진관으로 돌아가 응급처치에 필요한 붕대와 가위 등을 챙겨 나왔다고 하였으며, 계엄군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할 때 응급처치용 가위로 군인의 어깨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았을 때 19일 늦은 밤으로 추정된다. 5·18조사위가 확인한 기록과 계엄군의 진술 등에 의하면 19일 늦은 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황금동 일대에서 작전 중인 부대는 제11공수여단 61대대와 63대대로 판단된다.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5번 사건의 피해 여성은 5월 19일 늦은 밤 황금동 일대에서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2014년 광주트라우마센터 상담과 2017년 제7차 보상심의, 2018년 ○○○○방송 다큐멘터리 출연 등을 통해 증언해왔다.

피해자는 군인으로부터 강간 시도를 당할 때 자신을 자해할 만큼 필사적으로 성폭력에 저항하였다. 그리고 가슴 부위 봉합수술 이후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총알 파편을 맞고 계엄군으로부터 복부 구타를 당해 장 파열에 이르기까지 5·18 기간 헌신적인 활동을 펼쳤다.

피해 여성은 제7차 보상신청 결과 상이와 관련된 부분은 기 인정된 바 있다. 조선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작성한 「외래진료 기록지」나 보상심의 당시 제출한 「소견서」에서 기재된 평가와 진단명, 그리고 ○○병원 ○○○○의 인우보증 내용,<sup>453</sup> 조사과정에서 보인 신체 반응과 후유증 등으로 볼 때 피해 여성은 겪은 5·18 당시 겪었던 성폭력이 신체적·정신적인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8) 21-가의2-77 사건

(가) 피해자 진술<sup>454</sup>

피해자는 5·18 당시 만 18세였고, ○○여고 2학년 중퇴 상태였다. 피해자는 1990년 제1차 보상신청 당시 ‘기흉(우측) 및 배자상’이라는 병명으로 1980년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치료받은 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5월 20일경에 입은 ‘정강이 상처’는 의료기록이 없다고 인정받지 못했고, 성추행 피해 사실은 수치심으로 밝

45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5번 피해자」(2015.06.11.), 『보증내용』.

454 77번 사건 피해 여성의 피해 내용은 5·18조사위, 「77번 피해자 진술조서」(2023.08.03.), 조사 내용을 참조. 이하 피해 여성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계엄군을 피해 전남대 병원 근처의 골목에 숨어 있다가 복수의 군인에게 성추행과 대검에 의한 폭행을 당했다. 다섯 명의 군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그중 두 명의 군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끌고 가서 양쪽 어깨를 잡고 밀치면서 가슴을 추행하였다. 그리고 다른 군인 3명 또한 총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추행하였다. 군인들은 피해자를 성추행한 후 뒤쪽에서 대검으로 어깨에 자상을 입히고 가버렸으며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어버리는 느낌에 쓰러졌다. 군인들이 가고 난 후 피해자는 숨어 있던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 갔다.

피해 여성은 며칠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찾고 대검으로 찢린 부위를 살펴보니 양쪽 어깨와 폐에 상처가 있었다. 가슴을 찢른 것이 폐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양쪽 어깨의 흉터는 5~6센티 정도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비오는 날 어깨 통증이 있다고 진술했다. 성추행 당할 때에도 무릎과 발목 사이 정강이 위치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상해를 입었으며, 병원에서 완쾌되지 못하고 퇴원하여 상처가 아물지 않아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자신감을 상실하고 대인관계에 예민해져 사람들을 기피하는 증세가 생겼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렇듯이 피해자 역시 남편과의 성관계를 두려워하였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으며,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였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할 때 구타를 당한 상처와 통증이 지속되어 현재에도 간혹 마비가 온 상태다. 또한 완경이 되기 전까지 생리 일주일 전부터 가슴에 몽우리가 계속 아팠으며, 통증이 올 때마다 가슴을 강제로 추행당한 당시 기억이 떠올라 힘들어 하고 있다.

####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77번 피해자가 1990년 제1차 보상신청 결과 상이자로 인정된 것은 피해 장소와 상해를

입은 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한 의료기록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으로 피해 일시와 장소가 5월 20일 오후 8시경 대우병원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특정된다.

5·18조사위는 당시 군기록과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장소 인근에서 제11공수여단 61대대 또는 62대대가 작전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제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 2중대 중사 김○○은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처음 출동하여 금남로 위주로 트럭 열 몇 대가 위력시위를 했으며, 황금동, 금남로 대로와 골목 쪽을 통제하였으며, 시위대를 쫓으러 황금동, 충장로 우체국, 학동, 광주 천변에서 진압작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sup>455</sup>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직후 대검으로 어깨, 그리고 가슴에서 폐까지 찢렸다고 증언했다. 20일 당시 진압작전에서 진압방법으로 대검이 사용되었는지도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제11공수여단 62대대 4지역대장 최○○은 자신의 부대원이었던 정○○ 중사가 대검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공격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복귀 후 질책한 바 있다고 했다. 62대대 5지역대장 박○○도 착검을 하고 무력시위를 하였으며, 원 주둔지에 복귀한 후 시위대를 상대로 대검을 사용한 사실을 들었다고 하였다.<sup>456</sup>

제11공수여단 63대대 8지역대 6중대 조○○는 대검은 둘째 날부터 착검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457</sup> 여러 계엄군들의 진술에서는 공통적으로 5월 19일에는 착검하여 무력시위를 실시하였고, 진압상황에는 머리 부분이든 어느 부분이든 마구 구타를 하여 다친 시민이 많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옷을 벗기기도 했다.

<sup>455</sup> 5·18조사위, 조사4과-461(2022.04.29.), 「김○○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2.04.12.).

<sup>456</sup> 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44116, 「박○○ 진술조서」(1995.05.29.), 『5·18사건수사기록』 21권, 29657쪽.

<sup>457</sup> 5·18조사위, 조사4과-361(2022.4.8.), 「조○○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2.04.07.).



####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직접 성폭력을 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억들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언론 인터뷰나 <광주트라우마센터> 상담 과정에서 밝힌 피해 사실에 관한 내용, 그리고 위원회에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5월 20일 전남대병원과 대우병원 인근에서 전개된 제11공수여단 61대대와 62대대의 작전상황과 계엄군의 진술에서 나타난 구타와 대검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가 대우병원 인근 골목에서 당한 성추행 사실은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수치스러움과 가족을 포함한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우려되어 오랫동안 성추행 당한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 놓지 않았다.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40년만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2018년 <공동조사단>에 의해 성폭력 피해 실태가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5·18조사위>의 진상규명의 범위로 포함되었고, 제8차 보상심의(2023.07.01.~12.31)에서 성폭력 피해접수가 비로소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이 증언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어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여전히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아플 때마다 그날의 일들을 잊지를 못한다고 위원회 조사관에게 말했다. 더욱이 피해자는 여성이 겪는 생리적인 고통 또한 5·18 당시의 강제 추행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추행 당할 때의 기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40년 이상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1980년 5월 20일에 성추행을 당했던 기억을 고통으로 갖고 있으며, 남편과의 관계 역시 그날의 기억으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했다. 즉 피해자에게는 당시의 성추행 사건이 신체적·정신적·사회관계적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속 중이라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다.

### 나) 외곽봉쇄작전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외곽봉쇄작전’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총 4건이다. 사건별 심의·의결 결과, ‘진상규명불능’ 원안이 가결된 직권사건 1건<sup>458</sup>을 제외한 3건의 사건 개요는 <표 5-3-5>와 같다.

<표 5-3-5> 외곽봉쇄작전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개요 (5. 21.~26.)

일자	피해 장소	성폭력 발생 상황	사건번호
5. 22.	목포 야산	검문소 피해 야산 이동 중 강간	20-가의2-14
5. 23.	학운동 야산	귀가 중 야산 골짜기로 끌려가 강간	21-가의2-82
5. 24.	효덕동 야산	귀가 중 야산으로 끌려가 강간	20-가의2-40

#### (1) 20-가의2-14 사건

##### (가) 피해자 진술<sup>459</sup>

피해자는 학력 차이를 이유로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지내던 시점에서 두 아이를 뺏기고 쫓겨났다. 목포에 차량 시위대가 나타났던 시점이다.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나주 친정집을 향해 무작정 걸었고, 검문소를 피해 야산으로 오르다 두고 온 아이들이 생각나 서러움에 북받쳐 한참을 울었다. 피해자는 그곳에 나타난 총 3명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들이 피해자를 흠바닥에 눕혔을 때 총 같은 것이 부딪혀 “탁”하는 소리를 듣고 “군인이구나!” 했다.

피해자는 사건 후 자살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첫 번째는 1980년 사건

458 <직가의2-5(3)> 사건

459 14번 피해자의 피해 내용은 5·18조사위, 「14번 피해자 진술조서」(2023.08.01.). 조사 내용을 참조. 이하 피해 여성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이 발생한 해에 저수지에 뛰어내렸고,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 골반에서 뼈를 떼서 팔에 이식수술을 하게 되고 손가락 하나가 마비되었다고 한다. 1993년도에는 온몸에 마비가 와서 1년을 누워 지낸 적도 있으며, 어머니가 풍오줌을 다 받아냈다고 진술했다. 7~8년 전 제초제를 컵에 따라 놓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전화해 5·18때 강간을 당했다고 처음 말했으며, 아버지 무덤가에 화장해서 넣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진술했다. 그게 마지막 자살 시도였다.

음독자살 시도 이후 당뇨 및 고혈압 등 합병증이 발생했고, 자살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찾아간 「국립나주정신병원」에선 ‘당뇨’가 있다고 입원시켜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쓸개가 없는 상태이고, 자궁암 수술, 당뇨약 복용으로 치아 임플란트가 제한되어 치아 탈락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동생 김○○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인기피가 심해 집 밖에 나가지 않았으며, 1981년경부터 광주에 혼자 나가 살게 되면서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아픈 어머니에게 술을 사오라고 할 정도로 알코올 중독 상태가 심각하여 직장생활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본인이 언니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해주었다고 진술했다.

####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5·18조사위는 우선 여러 기록과 정황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시점을 5월 22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이동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피해 장소를 목포 양을산 일대로 특정했다. 그런 다음 5월 22일경 이후 목포 양을산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한 부대를 특정하기 위해 당시 군 기록을 분석하였는데, 제31사단 93연대 1대대로 확인되었다.<sup>460</sup>

460 서울지방검찰청, 「5·18사건수사기록」(1995), 「5·18관련사건수사결과901-12」, 31사단, 「80~82년 부대사」(1982), 80~85쪽.

제31사단 93연대 1대대는 5·18 이전에도 ① 양을산 통신중계소를 군의 보안 목표 시설로 보고 경계근무를 썼으며, 주변 일대의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였다. ② 5·18 직후에는 양을산에 소재한 목포대학교 정문 앞에 텐트를 치고 있었으며, ③ 5월 21일 외곽봉쇄 및 외곽선 차단 시점에는 ‘목포-광주-일로’를 잇는 삼거리에 위치한 석현검문소와 ④ ‘목포-무안’을 잇는 나지막한 산 인근 도로에서 매복 및 차량 통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 발생 장소로 추정되는 양을산 일대에서 군의 보안목표 시설인 ‘통신중계소’가 있고, ‘목포대학교’에서 주둔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양을산에서 (전경이나 경찰이 아닌) 3명의 군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전남대학교병원에 의뢰하여, 피해자의 음독자살 시도 후 나주병원을 거쳐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세척 등을 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동 병원 의료기록에 따르면, “2015년 9월 20일 18시20분경 하이드로(저독성 제초제)를 소주와 함께 마신 채로 발견되어 4000cc 위세척(gastic lavage) 시행한 뒤 본원 응급센터 내원함(taken from 환자 동생)”으로 기재되어 진술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sup>461</sup>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하여, 피해자의 진료 내역 전체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다. 이 기록은 최근 5년간 자료만 확인되는 제한이 있지만, 입수된 자료에서 ① “명시된 기분 정동 장애”와, ②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병원에 내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462</sup> 국립나주정신병원에서 이러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자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달라며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나주병원에서 ‘당뇨가 있어서 입원시켜줄 수 없

461 5·18조사위, 조사4과-1394(2023.10.30.), 「14번 피해자 진료기록부 사본」

4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심사부-2292(2023.09.13.),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조사4과-1127.5), 1~191번;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병원에 내원한 진료기록 확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1~191번 “기타 명시된 기분 정동 장애”로 병원에 내원한 진료기록 확인.

다<sup>463</sup>고 했다는 말은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1993년 온몸에 마비가 와서 1년을 누워지내야 했다는 점, 도로에 뛰어든 자살 시도로 인한 골반뼈 이식수술 기록은 보유기한의 만료로 입수할 수 없었다.

피해자를 상담한 전문위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알코올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한 전문위원은 그 이유로 ①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7~8년 음독자살 직전 동생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였다고 하였으나, 동생 김○○은 언니가 술을 먹으면 본인에게 전화해 5·18때 강간을 당했다는 말과 죽으면 아버지 묘소 옆에 묻어 달라는 말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언니의 자살 시도로 인하여 119가 오고 전대병원에 실려 간 적도 있는 등 정신적 후유증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며, 그로 인해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sup>464</sup> ③ 상담 이후 두 차례 만취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선상님, 다 내 팔자가 박복해서 그런 일이 (중략) 살려달라고 빈 것이 제일 죽고 싶더라우, 뭐 하러 목숨을 구걸 했을까라”라며 흐느껴 울었던 점을 들었다. 상담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들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아들 둘이 있어 돈 벌어 찾으러 와야 한다. 그러니 살려달라’라고 군인에게 사정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후회되는 기억으로, 피해 당시 가장 도려내고 싶은 부분이고 자책이 든다고 하였다.

####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이 사건의 피해 장소로 판단되는 목포 양을산 일대에서 5·18 당시 작전을 수행한 부대는 제31사단 93연대본부와 1대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서 ① 가해자가 제복을 입은 30대 이상의 지위 높은 사람을 포함한 3명이라는 진술, ② 총기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 ③ 해당 시점에 목포에서 경찰과 전경대가 근무복을 입

463 5·18조사위, 「14번 피해자 진술조서」(2023.08.01.).

464 5·18조사위, 「김○○ 진술요지서」(2023.10.17.).

고 근무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진술, ④ 5월 23일 목포·일로·광주로 향하는 삼거리에 위치한 석현검문소에도 외곽봉쇄 및 도로차단을 위해 제31사단 93연대 1대대가 작전을 실시하였다는 기록, ⑤ 5·18 당시 양을산 일대 주요 목진지 등에 배치되어 수색·정찰을 하였다는 군 기록과 계엄군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양을산에 올라 서럽게 우는 소리를 듣고 작전을 수행하던 93연대본부나 1대대 부대원 일부가 소리 나는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강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의 피해 유형은 ‘강간’에 해당한다. 5·18조사위에서 피해조사 접수를 하거나 인지한 52건 중 피해자의 경우처럼 3명 이상으로부터 집단강간 피해를 입은 10대 중후반, 20대 초반 여성의 다수가 ① 며칠 만에 귀가하여 수개월 시름시름 앓다 사망하거나,<sup>465</sup> ②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만성화된 피해자도 있었고,<sup>466</sup> ③ 사건 후 수년이 지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sup>467</sup> 현재까지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도 있다.<sup>468</sup>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이후 1981년부터 38년간 알코올 중독과 억제할 수 없는 자살 충동, 여러 번의 자살 시도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이 손상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있다. 술에 취하면 여동생에게 5·18 때 입었던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고 유언을 남기는 등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수반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동생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5·18조사위 조사에서 진술했다.<sup>469</sup>

465 <직가의2-5(19)> 사건.

466 <직가의2-5(16)> 사건, <직가의2-5(4)> 사건.

467 <직가의2-5(14)> 사건, <직가의2-5(46)> 사건.

468 <직가의2-5(16)> 사건, <직가의2-5(15)> 사건.

469 신청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본인에게 전화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을 때에는 올케언니에게 연락하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한다.

## (2) 21-가의2-82 사건

### (가) 피해자 진술<sup>470</sup>

피해자는 5월22일에서 23일경 오후 다니던 ○○공장에서 퇴근해서 동료와 함께 ○○동 쪽으로 걸어가던 중, 사복 입은 사람 2명과 군복 입은 사람 1명에게 골짜기로 끌려가 구타와 강간을 당했다.

강간을 당한 후 주변을 둘러보니 조선대병원이 보여서 그쪽으로 걸어갔고, 날이 밝아서 어두워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귀가했다고 한다. 같이 강간을 당한 동료는 입고 있던 치마가 다 찢어져 공장에서 가지고 왔던 앞치마를 꺼내서 입혀주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20시경이었다. 어머니에게 “엄마, 아파”라며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7월 넘어서까지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중간에 7월쯤 ○○공장에 월급을 받으러 갔었고, 사건 이후로 함께 강간을 당한 동료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혀 밀쳐지면서 바닥에 엎어질 때 위쪽 치아 3개가 부러졌다. 치료를 받을 때 3개만 새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사재로 5개를 해 넣었고, 피해 당시 돌에 찢어버린 다리 흉터가 남아 있다.<sup>471</sup> 사건 이후 한참 동안 밖을 나가지 못했고, 7월경 월급을 받으러 나갔으나 더 이상의 근무는 불가능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경력도 단절되었다. 사건 이후 악몽에 시달렸는데, 어머니는 피해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를 이해해주었지만, 아버지는 모르고 있어 강권에 마지못해 결혼하였다. 어머니가 그해 사망하셨는데 피해자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다.

강간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백일도 안 된 아기와 함께 가출하였고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서 아는 언니의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470 82번 피해자의 피해 내용은 5·18조사위, 「82번 피해자 진술 녹취록」(2021.08.05.), 조사 내용을 참조. 이하 피해 여성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다.

471 5·18조사위, 조사4과-1090(2023.09.05.), 「82번 피해자 진술 녹취록」(2021.08.05.).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사건이 발생한 학운동(배고픈 다리 일대)은 5·18 당시 지역방위대가 조직되어 왕성한 활동을 벌인 곳이다. 이들의 활동은 21일 밤 계엄군이 주남마을 방면으로 철수한 직후 시작되고, 23일 도청의 지도부가 질서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무기를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지역방위대의 활동으로 인해 학운동 일대 주민들은 낮 시간대에 비교적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었다.<sup>472</sup>

같은 시기, 학운동 인근에서 활동한 군의 작전상황 기록은 5월 21일 18시부터 5월 22일 16시까지 제11공수여단 62대대가 ‘조선대’에서 산등성을 넘어 ‘주남마을’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다.<sup>473</sup>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일자와 관련해서 5월 21일 이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학운동 지역방위대가 23일 오후에 활동을 종료하였다는 점, 군 기록상 계엄군이 21일부터 24일에 걸쳐 해당 지역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 발생 시점은 5월 22일에서 24일 사이로 특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가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핵심 진술’은 ① “사복 차림의 남자 2명과 군복을 입은 남자 1명”, ② “군복 입은 사람은 모자 또는 하이바를 쓰고 있었고, 사복을 입은 사람 중 1명은 스포츠머리에 얼굴이 넓적했다.”이다. 피해 발생 시점과 피해 발생 인근 계엄군 및 지역방위대의 활동을 고려했을 때 사복을 입고 학운동 지역방위대원으로 잠입하여 활동한 편의대일 가능성과 조선대 뒷산에서 주남마을로 철수하던 중 낙오된 군인일 가능성, 지역방위대원일 가능성이 있다. 5·18조사위는 당시 군기록, 진술, 기타 정황 증거를 토대로 각각의 경우에 부합하거나 배척되는 사실과 정황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우선 지역방위대 활동이 활발했던 학운동 민가와 인근에서 사복 입은 계엄군이 발견된

<sup>472</sup> 5·18조사위, 「김OO 진술조서」(2023.05.25.).

<sup>473</sup> 서울지방검찰청 95형제144116, 「피의자 신문조서. 11공수여단 62대대장 중령 이OO」(1994.12.22.), 『5·18사건수사 기록』 15권, 24475~24511쪽.

기록이 다수 확인된다. 사복차림으로 지역방위를 했던 지역방위대원들 중 외지인도 30명 이상이었던 점<sup>474</sup>, 지역방위대원이 총기를 도청에 전부 반납한 5월 23일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sup>475</sup>, 학운동 민가로 낙오했던 계엄군들이 사복차림으로 여러 차례 식별됐다는 진술 및 관련 문헌 등을 통해 학운동 일대에서 사복을 입고 지역방위대에 잠입하여 활동한 편의대이거나 5월 21일 저녁 조선대 뒷산에서 주남마을로 철수하던 제11공수여단에서 낙오된 군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역방위대로 활동한 인원들 중에는 외지인도 30명 이상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방위대로 활동한 민간인에 의한 피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위원회에 피해조사를 신청(2021.8.)하고 한 달 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복용 중이며 아파서 밖을 나가지 못해 일을 못 했다.<sup>476</sup>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해진술 전후의 재외상화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sup>477</sup> 피해자의 약물복용 기록 등 의료기록 입수를 위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지 못해 관련 의료기록을 입수할 수는 없었다. 악몽과 잠꼬대로 인해 배우자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된 다른 사례로 <20-가의2-77>, <20-가의2-40>, <직가의2-5(35)> 등이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1980년 11월 4일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대로 1980년 11월 4일 사망한 시점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사람이 어머니였다. 피해자가 당한 강간이 피해자에게 첫 성관계였고, 세 명에게 피해를 입어 아래가 부어서 걸음을 잘 걷지 못하였으며, 피해 과정에서 치아가 3개 이상 탈락되는 등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피해 사실을 인지한 어머니는 민간요법(뜸 치료)을 통해 딸의 회복을 도

474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3.05.25.); 한국현대사회연구소, 198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537~542쪽.

475 한국현대사회연구소, 198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537~542쪽.

476 5·18조사위, 조사4과-119(2022.02.17.), 「82번 피해자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2.01.26.~28.).

477 5·18조사위, 조사4과-1586(2023.12.13.), 「82번 피해자 진술분석 보고」(2023.12.13.).

왔지만, 충격과 수습, 고통, 극복 상흔의 단계<sup>478</sup>를 통과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다.<sup>479</sup> 남편이 악몽을 꾸고 잠꼬대하는 피해자를 의심하여 아이와 함께 내쫓는 바람에 백일도 안 된 아기는 아는 분의 호적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으로 본인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 현재도 피해자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480</sup>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피해자의 기억은 또렷한 편이며 경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꾸며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예, 바닥에 깔 돌맹이, 가방에 있던 앞치마). 사복 입은 사람의 존재가 사건의 피해 입증에 불리한 진술(군·경이 아닐 수 있으므로)일지 모른다는 계산 없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각인된 “오빠 한 번만 봐주라고”라는 말이 잠결에 나와 결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삶의 서사적 진실도 신뢰성이 높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결혼 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비난과 폭력이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이어져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딸 아이와 함께 쫓겨났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1980년 당시 성폭력 피해자를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비난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통념, 유사한 피해사례에서 확인되는 2차 피해 양상을 종합해볼 때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출생신고도 안 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의 호적에 올려 법적으로 친모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를 받

478 5·18조사위, 조사4과-1586(2023.12.13.), 「82번 피해자 진술분석 보고」(2023.12.13.); 양선화, 2008, 「성폭력 피해 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3권, 한국가족복지학회, 183~224쪽.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폭력 피해는 어머니에게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Carter, B.(1993). Child sexual abuse: Impact on frien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9):959-986,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가족의 반응: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의 적용(최지현,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Vol.31 No.4[2019]).

479 5·18조사위, 조사4과-1586(2023.12.13.), 「82번 피해자 진술분석 보고」(2023.12.13.).

480 5·18조사위, 조사4과-1586(2023.12.13.), 「82번 피해자 진술 녹취록」(2021.08.05.).

았다.

### (3) 20-가의2-40 사건

####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5·18 당시 19세로 ○○버스 ○○○○으로 근무하였으며 효덕동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다. 1980년 5월 24일에 차량시위에 참여하였다가 17시50경 대동고등학교 앞에서 하차해서 집으로 가다가 계엄군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 이후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 창피하여 근처 도랑물로 씻고 밤늦게 귀가했다. 처참한 몰골을 보고 어머니는 ‘무슨 일 있었지?’라고 몇 번을 물어봤으나 ‘아무 일도 없다’고만 대답했다. 그 이후로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sup>481</sup>

사건 이후 우울증으로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어 1981년 12월 ○○버스에서 퇴사했다.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숨겨 왔으며, 남들이 알까 두려워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다. 1985년경 결혼하였으나 수시로 정신이 멍해지고 옆에서 누군가 자신을 끌고 가는 것만 같아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웠고, 어머니가 10여 년 전 돌아가신 것에 대해 현재도 자책하고 있다.<sup>482</sup>

피해자는 진술조사 중에도 ‘무섭고 떨린다’며 진술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진술하기를 반복하면서, 지금도 누군가 쫓아오는 것만 같아 늘 불안하고 두렵다고 하였다. 조사관에게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진술 중 고통스러운 과거의 회상을 힘들어하면 서도 진술 직후 “40년 만에 털어놓으니 짐을 벗어 버린 것 같다”고 홀가분해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10월 27일 첫 피해 진술을 한 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약을 먹어 비

481 5·18조사위, 조사4과-1435(2023.11.07.), 「40번 피해자 진술 녹취록」(2021.10.20.).

482 5·18조사위, 조사4과-1435(2023.11.07.), 「40번 피해자 진술 녹취록」(2021.10.20.); 5·18조사위, 조사지원과-1983(2020.11.09.), 「40번 피해자 진상규명조사신청서」; 5·18조사위, 조사3과-431(2020.11.13.), 「40번 피해자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0.10.20.).

몽사몽 지내는 등 잇고 지내려던 일이 다시 떠올라 힘들다며 진상규명 신청을 철회하겠으니 조사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등 혼란스러운 양가적 감정을 보였다.<sup>483</sup> 이후 전화조사를 4회 추가하였고, 2023년 5월 11일 2차 진술조사 일정을 잡았지만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이후 전화조차 받지 않다가, 2023년 7월 4일, 2023년 8월 16일 두 차례 통화가 되었을 때 신청사건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1980년 5월 24일에서 25일까지 백운동 로터리 일원에는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대 병력들이 대동고등학교에 숙영지를 편성하고 백운동 로터리 일원 차단작전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교도대대는 오인교전 후 대대장 지시하에 차후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백운동 로터리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도대대는 ‘소대’ 건제로 생활하지 않았고, 담당 과목별로 생활해서 이동 간에도 담당 과목별로 소대 규모였던 20여 명씩 이동했다. 백운동 로터리 근방 갈림길에서는 병력 일부가 골목길로 흩어지기도 했다. 이동 간에 지휘체계나 통신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인하였다.<sup>484</sup>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당시 사건 발생 지역인 진월동 일대는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대 병력들의 매복작전 인근지역이었으며, 5월 24일 오인교전 후 상황이 수습된 후 해가 지기 전 저녁 무렵 광주 시내인 백운동 대동고 방면으로 중대가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4일 오인교전 후 상황에 대한 계엄군들의 진술에서 확인된 바는 다음과 같다. ① 전교사 보병학교 교도대

483 5·18조사위, 조사3과-431(2020.11.13.), 「40번 피해자 면담조사 결과 보고」(2020.10.20.).

484 5·18조사위, 조사4과-1643(2023.12.22.), 「김○○ 전화통화 결과 보고」(2023.12.21.).

대 병력은 대대장의 지시하에 차후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백운동 로터리로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② 오후 백운동에 주둔하기 위해 대동고 인근으로 무전병과 병사 2명을 데리고 사전정찰을 다녀오거나, ③ 교도대대가 ‘소대’ 건제로 생활하지 않았고, 담당 과목 별로 생활해서 이동 간에도 담당 과목별로 소대 규모였던 20여 명씩 이동했다는 진술을 확인하였다. ④ 무엇보다 백운동 로터리 근방 갈림길에서는 병력 일부가 골목길로 흩어 지기도 했으며, ⑤ 이동 간에 지휘체계가 통신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작전상황 및 이동방식은 소수의 일탈적인 계엄군이 지나가는 여성을 인적이 없는 야산으로 끌고 가 공동으로 강간하였을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는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 다) 광주재진입작전과 연행·구금·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5·18조사위의 조사대상 사건 중 ‘광주재진입작전과 연행·구금·조사과정’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총 6건이고, 각 사건 개요는 <표 5-3-6>과 같다. <20-가의2-25>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5명은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 외에도 연행 후 신문과정과 구금시설에서 지속적인 성적 모욕과 학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 5-3-6> 광주재진입작전과 연행·구금·조사 과정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개요 (5. 27.~)

일자	피해 장소	성폭력 발생 상황	사건번호
5. 27.	계림동 주택	가택수색 후 강제추행	20-가의2-25
5. 27.	YWCA-통합병원-광산서	호송 차량 탑승 전 재생산폭력	직가의2-5(32)
5. 27.	서석병원-광주시청-광산서	호송 차량 탑승 후 강제추행	21-가의2-181
5. 27.	전남도청-상무대-광산서	상무대 화장실에서 강간	직가의2-5(35)
불상일	상무대-여관-광산서	광산경찰서 인근 여관에서 강간	직가의2-5(2)
10. 22.	자취방-광주 서부서	가택수색 연행 전 강제추행	직가의2-5(24)

## (1) 20-가의2-25 사건

###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5·18 당시 23세 미혼으로 부모님과 함께 광주 계림동 〇〇〇거리 인근 〇〇 학교 앞에 있는 〇〇〇이 딸린 2층 건물에 거주했다. 5월 27일 가택수색을 하던 계엄군이 침입해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 계엄군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저항하자 자신의 손에 든 수류탄의 핀을 뺄 듯 시늉하며 ‘터지면 모두 죽는다’고 위협했다. 이어서 군인이 ‘총으로 배를 쏘면 들어간 구멍은 작지만 총알이 회전하기 때문에 나오는 구멍이 크게 난다’는 말을 하였을 때 너무 공포스러워 “빨리 죽여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이 휘두른 대검에 의해 등 부위에 상처를 입어 옷이 젖을 정도로 피가 흘렀다.<sup>485</sup> 피해자가 기억하기로 당시 군인은 ‘흰 테를 두른 철모’를 쓰고 있었고, ‘민무늬 복장’이었으며, 착용한 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체격에 키는 170cm 정도 되었으며 중부지역의 말투를 사용하였다. 가택에 침입한 계엄군은 가족의 신고로 군당국에 체포되어 어디론가 끌려갔으나, 그뒤로 그 병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사건 이후 저녁이면 군인이 집으로 찾아와 보복할 것 같아 가족이 불안에 떠는 날이 많았고, 군인이 위협했을 때의 공포가 상당하여 한참 동안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으며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부모님의 상가건물에서 〇〇〇을 운영 중이었는데, 가해 군인이 〇〇〇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두려워 폐업을 하고 말았다.<sup>486</sup> 어머니는 사건 후 피해자를 서둘러 혼인시켰고,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더니 술에 취하면 ‘그냥 혼자 살지 왜 시집왔냐!’며 수시로 구타를 하였다. 앞니가 빠질 정도로 폭력에 시달렸는데, 성장한 자식들의 권유로 52세에 남편과 이혼하였

<sup>485</sup> 5·18조사위, 조사3과-353(2020.10.07.), 「25번 피해자 진상규명 신청 검토보고서」

<sup>486</sup> 5·18기념재단, 「요약보고서」(2019.03.06.), 49~50쪽.



다.<sup>487</sup> 어느 해, 5·18 보상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뉴스를 본 어머니의 제안으로 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입증할 서류를 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하였고, 이웃들이 인우보증을 서주겠다고 했지만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부끄러워 포기하고 말았다.

####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피해 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핵심 진술은 “흰 테를 두른 철모를 쓴 민무늬 복장”이다. 철모에 두른 “(하얀) 피아식별띠”는 5월 24일 오인교전 발생 후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5월 25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민무늬 복장”은 5월 27일 07시 25분경 제20사단이 제3·7·11공수여단으로부터 책임 지역 인수를 완료하였는데,<sup>488</sup> 이때 제20사단이 입은 복장이 민무늬 복장이었다. 피해자는 주택에 침입한 계엄군이 ‘수류탄’을 터트릴 것처럼 위협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진압군이 ‘수류탄’을 휴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한 제20사단 62연대 6중대와 8중대 작전활동에 대한 계엄군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제20사단 62연대 6중대 소대장 김○○에 따르면, 인원과 수행 일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5·18 당시 계림국민학교 부근에서 가택 수색 활동을 하였으며, 본인이 가택 수색 중에 젊은 대학생이 집에 숨어있길래 ‘밖에 절대 나오지 마라. 만에 하나 나오면 죽을 수도 있다’고 알려준 일이 있다고 진술했다.<sup>489</sup> 제20사단 62연대 6중대 소대장 김○○는 당시 계림국민학교 부근에서 가택 수색 활동을 할 당시, 숙영할 곳이 마땅치 않아 소대별로 흩어져 일반 주택 옥상에서 하룻밤 숙식을 해결하였다고

487 5·18조사위, 「25번 피해자 진술조서」(2020.07.23).

488 보병제20사단, 「역사자료 전투상보」(1980), 육군본부군사연구실 43-29쪽.

489 5·18조사위, 조사4과-1281(2023.10.14.), 「김○○ 전화통화 결과 보고」(2023.10.13.).

진술하였다.

현장에서 체포된 계엄군에 대한 사건처리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육군본부 육군검찰단’에 『실지조사 통지서』를 발송한 뒤, 방문(2023.8.29.~30.)하여 ① 광주·전남 일원에 서, ② 1980년 5월 1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기간 동안, ③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강간과 추행한 사건조사 및 군법회의 자료를 찾기 위해 열람하였다.<sup>490</sup> 그러나 계엄군에 의한 사건기록은 1건도 없었다.<sup>491</sup>

제20사단 62연대 8중대 1소대장 이○○은 당시 현장에서 강간 사건을 일으킨 가해 군인이 1소대 소속 ‘하사’인 것이 맞다며 인정하였고,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소대장인 자신이 잘 알아야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고 강간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뉘앙스만 현장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5·18 당시 ‘잔적 소탕작전’의 명목으로 수행된 가택 수색 과정에서 상가주택에 침입하여 성폭력을 하려다 체포된 가해 군인은 ‘제20사단 62연대 8중대 1소대 소속 하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흰 테를 두른 철모를 쓴 민무늬 복장의 군인’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5월 27일 광주 재진입작전 후 복귀한 시점에 출동하였다는 경찰의 진술, 『역사자료 전투상보(20사단)』의 작전상황 기록과 당시 계림동 일대에서 가택 수색 작전을 수행한 계엄군 등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사건의 발생일은 5월 27일경으로 추정된다. 가해 군인의 행위는, 착검한 총과 수류탄으로 위협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고 입을 맞추는 과정에서 대검으로 등에 상처를 입혔으므로, 5·18 성폭력 유형 중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5·18조사위에 접수하거나 인지한 5·18 성폭력 피해 의혹 건(총 52건) 중 유일하게 현

490 5·18조사위, 조사4과-1029(2023.08.25.), 『실지조사 통지 보고』(2023.08.25.).

491 육군검찰단, 육군검찰단-7553(2023.10.15.), 『실지조사 자료요청에 대한 판결문 재회신』.

장에서 신고된 사건이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군인을 체포하고도 헌병대에 인계하지 않았고, 가해 군인을 인계해 간 선임하사도 소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1소대장은 현장에서 관련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중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무마된 사건임을 확인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가해 군인에게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공포를 느꼈으며, 가해 군인이 집을 알고 있기에 ‘보복하러 올 것 같다’는 두려움에 운영 중인 ○○○ 문을 닫는 등 성폭력 피해가 경력 단절로 이어졌다. 그리고 서둘러 결혼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결혼 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비난과 폭력이 불행한 결혼생활로 이어져 이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1980년 당시 성폭력 피해자를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비난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통념 관련 연구, 유사한 피해사례에서 확인되는 2차 피해 양상을 종합해볼 때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아 사건처리 기록이 없어 5·18 보상신청도 하지 못하였다. 나이가 들어 피해 사실을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된 시점에 이루어진 피해조사 신청 접수였음에도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취조하듯이 따져 묻자, 피해자가 수치심과 죄인된 심정을 느끼게 되는 등 2차 피해를 받기도 하였다.

## (2) 직가의2-5(32) 사건

###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5월 27일 계엄군의 재진입작전 과정에서 YWCA 1층 주방에서 연행되었다. 계엄군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오다가 전신 구타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검으로 보이는 무기로 성기 부근에 부상을 당했다.

피해 이후 한 달에 생리를 3주씩 하고, 계보린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돈이 없어 상처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고, 혹시 여성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

려고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난소 하나는 살아있어, 결혼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여자로서 민감한 부위의 상처” 때문에 공중목욕탕도 갈 수 없었고 결국 상처부위가 악화되어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되었다.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5·18조사위는 외신의 동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 끌려나오면서 구타를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YWCA에서 총상을 입고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이송된 참고인은 이○○은 총상 직후 연행 과정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으나 병원에서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입원해 있던 또 다른 참고인도 국군광주통합병원에 입원해있던 기간(5.22.~6.20.)에 피해자를 보았으며, 체포 당시 허리와 복부 구타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은 병원에서 하복부 출혈로 걸음걸이가 이상한 피해자를 보았다고 했다.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당시 군기록과 진술 등에 의하면 5월 27일 계엄군은 YWCA를 포함한 주요 거점에 총격을 가하며 진압했고, 연행자들을 “폭도”로 보고 이동과정이나 군용트럭에 태울 때 총개머리판과 군화발로 구타하였음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은 연행 당시 입은 피해가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상태(자상과 하복부 구타로 인한 실신)로 보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 피해자는 군의관이 ‘대검’이라고 말해주어 뽕족한 도구가 대검인 줄 인지했으나 진통제와 붕대 외 별다른 처치가 없었고, 세신사가 발견하기 전까지 자상 입은 부위의 상처가 어떻게 아물었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아, 대검에 의한 성기 자상이 깊숙한 곳을 찌르거나 상처 부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피해자는 병원에서 자신보다 심각한 총상 환자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거동이 가능했으며,

제때 적절한 치료만 받았다면, 염증과 하혈을 진정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 국군광주 통합병원에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연행·구금 과정에서 당한 성기 자상과 굴욕적 대우, 그로 인하여 난소 하나가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끝내 자궁까지 적출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자궁이 없는 여자는 사람 구실 못하는 병신”이라는 말로 압축하여 진술하고 있다.

### (3) 21-가의2-181 사건

####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5·18 당시 상무대 영창과 광산경찰서 등으로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적 모욕을 당했다. 연행 과정에서 군용지프차에서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으며, 남성 수사관이 자신의 상의와 하의 옷 솔기를 샅샅이 만져가며 수색하여 수치심을 느꼈다. 이후 밤 11시경 상무대로 이동했는데 5월 28일 상무대 영창 앞 운동장 모래밭에 하루 종일 꿇어앉아 있었고, 그때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간 기억이 없다. 며칠간 상무대 영창을 거쳐 광산경찰서로 모두 호송되었는데 그때 당시 수사관들이 여성 연행자들에게 냄새가 난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수시로 기합을 주었으며, ‘○○(여성의 성기)를 찢어 버린다’는 식의 성 모욕적인 말을 하여 너무 충격을 받았다.

유치장에 있을 때부터 맞고 도망가고 숨는 꿈을 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매년 5월만 되면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는 등 5월 증후군이 신체적으로 뚜렷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43살까지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고 살았다. 당시에 겪었던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이나 여성훈련도 많이 받았으며, 여성 목회자가 된 것도 당시의 충격으로 ‘여성성’을 잃었다는 세속적 판단이 작용했다.

7월 3일에 혼방되었으나 공황 상태 비슷한 증상이 생겨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다니던 회사도 12월 말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퇴사 이후 가족 부양이 힘들어져 부모님의 생활이 어려워졌고 부모님의 건강도 악화되었다. 삶이 막막한 상태에서 1981년부터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 증거 1: 계엄군의 진압작전

피해자가 연행 및 호송된 구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부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 기록과 사진, 외신 동영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교사 충정작전 제4호에 의거하여 “(2) 광주권 작전, (가) 항에서 광주지역을 2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제20사단, 제31사단이 내곽에 대한 공격 및 잔적 소탕과 (중략) 은밀 침투, 기습 및 동시 제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된 기록을 확인했다. 그 외 여러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를 연행한 부대는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5중대가 유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5월 27일 연행 당시 피해자가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에 관하여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성추행 직후 ‘손으로 가슴을 가리자 군인이 진압봉으로 손등을 쳤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서석병원 옥상을 거쳐 광주시청으로 호송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20사단 전투상보』를 보면, 5월 27일 05시21분경 20사단 62연대 3대대가 광주시청을 점령 완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sup>492</sup> 또한 5·18조사위는 피해자가 연행되는 과정이 찍힌 ‘외신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이 사건의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과 ‘성적 모욕 및 학대’에 해당한다. 5월 27일 광주재 진압작전 상황에서 도청을 진압한 계엄군이 도심 주요 거점에서 피해자를 연행한 뒤, 다

<sup>492</sup> 보병제20사단, 『전투상보』(1980), 43쪽.

른 연행자들과 함께 중간지점에 대기시켜 놓았다가 광주시청으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피해를 탑승시킨 직후 성추행하였고, 이후 여성 연행자를 수감해 둔 광산경찰서 유치장에서는 경찰들로부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기합을 수시로 받았다.

5·18조사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연행된 장소는 제20사단 62연대 2대대 5중대가 배치된 거점이며, 강제추행이 발생한 서석병원 인근에는 제20사단 62연대 3대대 10중대가 배치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압도적인 공포감 속에서 기습적인 추행을 당했다. 앞서 연행되어 구타를 당하고 피를 흘리는 사돈의 모습과 옆자리에 앉은 언니에 대한 기억조차 흐린 상태에서 계엄군이 구타하려고 하면 ‘가슴에 손을 얹는 반사적인 행동’과 ‘아무도 없고 혼자서 죽으러 가는 길’ 같다는 공포가 내면에 가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후 후유증과 2차 피해에 대한 ‘서사적 진술’과 ‘조사신청 동기’는 ① 1980년 당시 여성들의 정조 관념과 성폭력 통념에 부합하며, ②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잃었다는 인식이 결혼을 미루고, 여성 목회자의 길을 걷고,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인 활동에 기여해 온 삶의 방향 전환을 설명해주고, ③ ‘개인적인 수치’로 여겨온 강제추행 경험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발생한 피해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피해 신고를 하였다는 동기 등을 종합해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이유와 배척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4) 직가의2-5(35) 사건

##### (가) 피해자 진술

1980년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는 5월 27일 새벽에 도청 1층 상황실에서 연행되었다. 상무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수사관<sup>493</sup>이 다짜고짜 옷을 올리라고 했고 상의를 올렸더니

<sup>493</sup>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회, 「보상신청-35번 피해자」, 『신고인 진술조사』(1998.02.12), 431쪽에 따르



옆 수사관이 브래지어까지 올려버렸고, 의자에 앉은 상태로 바지까지 내리라고 했으며 그 상태로 조서를 작성하는 성폭행을 당했다. 또한,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에서 병사로부터 강간당했다.

당시의 충격으로 수면제를 사 모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을 잊기 위해 장성 소재 할렐루야기도원 및 담양 소재 기도원 등에서 지내기도 했다. 결혼 후 남편에게 상무대에서 겪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그후 남편의 폭행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꾸리지 못했다.

#### (나) 증거 1: 합동수사단 수사

당시 피해자를 담당한 수사관과 수사실 바깥 경비를 선 군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록을 살펴 봤으나 피해자의 연행, 송치 및 훈방 시점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를 조사한 수사관을 특정할 수 있는 ‘신문조서’는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회가 조사한 제1~7차 보상심의자료 전수조사 결과에서 ‘수사관에 의해 강제 탈의된 상태로 취조를 받는 성고문과 구금 과정에서 성적 모욕 및 학대’를 당한 피해가 다수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에 관해서는 제3차 보상심의 과정에서 이미 인정되었다. 1980년 당시 피해자와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는 피해자가 상무대에서 구금 시 입은 상처로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친척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가 5·18 당시 입은 충격으로 정서불안 증세가 생겼고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는 증세가 생겨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sup>494</sup>

.....  
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복을 입지 않은 수사관으로부터 뺨을 수차례 맞았다.”고 한다.

494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신청-35번 피해자』, 『현지조사결과』(1998.04.), 365쪽.

####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5월 27일 도청에서 진행된 후 상무대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옷을 벗겨 취조하고, 구타하는 등 성고문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의 이유로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5·18조사위가 조사한 보상심의자료 전수조사 결과, 많은 여성 연행자들이 구금과 조사 과정에서 성적 폭언과 협박을 들으며 구타를 당했음이 확인되었다.

상무대 수사실 앞에서 경비를 서던 병사에 의한 강간 피해는 피해자가 제3차 보상신청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던 피해 사실이다. 피해자는 2023년 9월 20일 5·18조사위 조사에서 자신의 생애사적 비밀이던 피해 사실의 전부를 『자필 진술서』로 작성하였고, 국가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가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얻을 이익이 없고, 피해 사실 전후 생애사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합리성, 진술의 동기를 종합해 볼 때, 수사실 앞에서 경비를 서던 병사가 화장실에 따라와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이유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연행되었던 참고인 등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였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sup>495</sup>

### (5) 직가의2-5(2) 사건

####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5·18 당시 도청에서 학생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고, 그해 7월 3일 교생실습 중이던 학교에서 연행되었다. 당시 연행된 여성들은 광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조사는 상무대에서 이루어졌다.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평소와 달리 수사관이 호송차

<sup>495</sup> 5·18조사위, 조사3과-497(2021.04.22.), 「여성 보상심의자료 검수 및 자문 결과 보고」

량에 탑승했고 사식을 사준 뒤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피해자를 담당한 수사관은 1명이며, 가혹행위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생사여탈권을 쥐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에게 두려운 존재였다. 사건 당시 반소매 메리야스를 입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얼굴과 시선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피해자는 출소 후 이불 속에서 나가지 않거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술을 마시며 지냈으며 수면제를 구입해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 당시 겪었던 성폭력에 대한 기억이 반복해서 떠오르고, 악몽에 시달리다가 2014년 세월호참사를 방송으로 본 뒤 희생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처지가 투영되면서 고통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2018년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나 그 여파로 광주를 떠나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sup>496</sup>

2001년 유방암에 걸렸고, 완치되었지만 후유증으로 왼팔(림프)이 부어 피아노를 못 치게 되어 교직(음악 교사)을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말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그 억울함이 유방암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sup>497</sup>

5·18 당시 연행된 사실 때문에 대학 졸업과 교직 발령이 지연되고 교직생활 중에도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학교장이 분기별로 교육위원회에 근무실태 등을 보고하였다. 어머니는 딸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어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교사였던 아버지도 교육청에서 압력이 들어와 휴직하고, 이후 알코올에 의존하다 결국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sup>498</sup> 피해자는 사건 후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엄마로서의 삶만 있었다”고 진술했다.

#### (나) 증거 1: 합동수사단 수사

5·18조사위는 합동수사단 피해자 신문조서에 담당 수사관 이름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496 5·18조사위, 「35번 피해자 진술요지서」(2023.07.12).

497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화순전남대병원: 의사 소견서」(2015.06.25). “상기 환자 상기병증(유방암)으로 2001년 10월 16일 좌측 유방 보존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중략) 현재에도 림프부종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98 「세월호도 5·18도 잊으면 안돼... 우리가 우릴 지켜야죠」, 한겨레, (2014.05.17).

수사관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출석요구서를 보내 3차 조사(2023.09.11.)를 진행했다.

담당수사관 AOO은 '9월 4일 혼방되기 전, 강간하였다면 피해자를 광산경찰서에서 빼내기 위해 『출감의뢰서』를 가져가야 했을 텐데, 당시 저는 그러한 결재를 받은 적도, 그럴 필요도 없던 시기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조사관이 단순가담자로 분류된 여성이 이러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었다면, “출감의뢰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데려올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① 수사관이 한 사람을 데려오려면 “출감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답변하였으며 ② 조사관이 피해자도 헌병대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를 묻자, “저는 피해자를 수사한 뒤로, 3과장실로 가던 길에 헌병대 사무실 앞에서 마주쳤을 뿐, 그 뒤로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담당수사관과 같은 사무실을 썼던 순경은 ① 광산경찰서에 가서 메모지에 적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피의자를 데려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② AOO은 합수단 해체 후 상무대 남문 위병소를 통해 출·퇴근하였으며 이때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했다고 진술하였다.

담당 수사관 AOO은 위원회 1차 조사(2022.04.06.)에서 본인이 피해자를 조사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조사관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신문조서의 필체와 서명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였다. 5·18조사위 조사관이 피해자를 연행한 후 협박과 가혹행위를 하였는지를 묻자, ① 2차 조사(2022.11.16.)에서 ‘김OO이 교생실습 중이던 OO중학교 OO(OO의 손위 동서)을 잘 알고 있고, 연행 직후 OO으로부터 ‘자네가 좀 봐주지, 무자비하게 잡아 가냐’고 연락이 와서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② OO과 OO이 아는 사람이고, 광주지역 경찰들은 나중에 광주에서 피의자를 만날 수도 있어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사관이 2차 조사에서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 1명으로부터 계속 조사를 받았으며, 그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신문조서 상 피해자를 수사한 사람은 AOO 이외 다른 수사관 이름이 기재된 기록이 없음을 언급하자, “저는 모범경찰로서 16년간 근무한 사람”이고 ‘여자관계

도 깨끗'하며 '표창장을 23장이나 받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답변함. 그러나, 위원회가 입수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확인해본바, AOO은 “뇌물수수 혐의와 직장 무단이탈”로 “파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증거 2: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피해자는 2014년 6월 8일 최초로 『5·18기념재단 구술채록』 과정에서 '(자신을) 담당했던 계장급 과장으로부터 마지막에 당한 수모'가 있다며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고, ② 2015년 제7차 보상신청 시 제출한 신청 사유에도 '죽을 때까지 감추고 싶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③ 2018년 5월 8일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공개증언(한겨레 인터뷰)을 하였다.

5·18조사위가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연행된 일자(1980.07.03.)는 김대중을 정점으로 한 내란사건 조직도가 잠정 완성된 시점으로 조사과정에서 협박과 책상에 머리를 찡는 구타, '반반하게 생겼다'는 류의 성적 모욕을 당하긴 하였지만, 조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수사관에게 공손할 필요를 느끼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답변해주거나 전옥주가 있던 독방에 보내 '간첩 용의점'을 찾으라고 할 때에도 최대한 시키는 대로 하는 등 조사에 순수하게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해당 시점이 자신의 출소 여부를 알지 못한 때라는 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여느 때처럼 조사를 마치고 광산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사관이 사식을 사줘 호의로 생각하며 먹었고, 뒤이어 데려간 곳이 여관임을 알았을 때는 자포자기 상태로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담당 수사관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서 담

당 수사관이 사준 ‘비빔밥’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의 연장선으로 작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구금·조사과정에서 겪은 일련의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는 5·18조사위 진술에서 ① 자신이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수사관에게 정신적으로 압도되어 이루어진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인지하고 발화(2023.07.12.)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후 ‘하얀 반팔 메리야쓰’를 입은 채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알 수 없는 눈빛’과 ‘여기서의 일은 밖에 나가면 잊으라’고 훈계조로 말했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피해 당시 상황은 머릿속에서 지워진 채 ‘수사관의 눈빛과 반팔 메리야쓰’가 나오거나 ‘누워있던 시신이 벌떡 일어나고’, ‘훈방장소에 자신만 없는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5·18 당시 불법적인 연행·구금·조사과정에서 합수단 수사관이 업무수행 중에 자행한 성폭력이다.

피해자는 사건 후 어머니가 간경화로 1983년에 사망하고, 교직생활 중이던 아버지가 조기퇴직하였으며, 형제들은 외국에 나가 살게 되는 등 가족해체를 겪었으며, 본인은 기소유예로 풀려난 후 자살 시도를 하고 삶을 포기한 듯 생활하다 결혼했으나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했다. 또한 5·18 때 구금된 사실로 인해 교직 임용이 제때 되지 않았고, 교직생활 중에도 교장이 5·18 관련 활동 여부와 근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상부기관에 정기적으로 하는 등 감시를 받았다. 딸 아이가 성장하여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도맡아 하며, 상처와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감내해오던 중 2001년 유방암 발병을 계기로 교직생활을 접고, 이때 딸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5·18민주유공자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2001년 유방암 발병과 치료를 계기로 도청에서 사망한 5·18 희생자에 대한 죄책감을 털기 위한 활동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과거 5·18 당시 입은 자신의 피해를 상기시키고 재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여,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다가 2014년 세월호참사를 보며 5·18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5회 입원할 정도로 심리적 상태가 악화되었다. ‘반팔 메리야스를 입은 수

사관이 자신을 내려다보던 시선’에 대한 핵심 장면은 침습되는 감각기억과 고통을 동반하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2023년 7월 난소암 전이로 투병 중인 상태이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Me Too)를 보고, 5·18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책임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성폭력 피해를 공개증언하였으나, 언론의 지나친 주목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시달리다 모든 활동을 접고 광주를 떠나 살게 되었다. 공동조사단 조사과정에서도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부담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부적절한 조사방식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오해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받았고,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긴 시간 동안 트라우마가 더 극심해졌다. 5·18조사위는 이런 정신적, 가정적, 신체적 고통이 5·18 때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 나. 5·18 성폭력 사건의 종합적인 피해 실상

5·18조사위는 <공동조사단>에서 확보한 피해자 6명의 진술자료를 포함하여 총 19건을 조사대상 사건으로 확정된 뒤, 각 사건의 피해 실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① 5·18 성폭력 피해 발생 상황, ② 성폭력 피해 유형, ③ 피해자의 사건 후 복합적 후유증으로 구분하여 종합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④ 국가가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치유·회복의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⑤ 조사 결과로 확인된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권고했다.

### 1)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상황 분석

각 사건이 발생한 상황은 도심 시위진압작전에서 8건, 외곽봉쇄작전에서 3건,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과 연행·구금·조사과정에서 6건이 발생했다. 피해 장소와 가해 주체를 중심으로 구분하면, 계엄군의 작전반경에서 군복 등을 입은 사람으로부터 피해가 발



생했고, 전남합수단과 광산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의 연행·구금·조사 업무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 피해 장소는 각 수사관에게 배정된 수사실을 비롯한 연행자 임시 대기 장소, 구금 시설, 호송차량, 상무대와 광산경찰서 유치장 사이 호송구간을 포함한다. 연행·구금·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군과 경찰 모두에게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이다. <직가의2-5(24)> 사건 피해자는 5월 19일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강제탈의된 채 연행되었다가 풀려났고, 10월 22일 ‘김대중 내란음모 최후진술서’ 유인물 제작건으로 자택에서 연행되기 직전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관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했다. <직가의2-5(35)> 사건 피해자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시 도청에서 연행되어 수사관에게 ‘폭도’ 취급을 받으며 성고문을 받았고, 수사실 앞에서 경비를 서던 군인에 의해 상무대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했다. 이 외에도 연행 당시 호송차량 탑승 전후로 ‘강제추행’과 ‘재생산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이후 구금시설에서 ‘성적 모욕 및 학대’ 피해를 받기도 했다.

각 사건이 발생한 상황은 ‘8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유형] 5월 18일 금남로 일대 최초 투입 시점부터 여성에 대한 강제탈의가 이루어졌다. 계엄군들은 작전 초기부터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옷을 찢는 용도로 대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시는 [② 유형] 계엄군 중 일부가 군용트럭에 탑승한 여성 연행자의 가슴과 속살을 만지고, 주택가 후미진 골목에서 여성의 상의를 들추고 추행하는 행위로 이어졌다. [④ 유형] 상가나 주택에 들어가고, 시내버스에 올라타 젊은 청년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이루어진 ‘체포 위주의 진압방식’과 도심 곳곳에 거점 배치되어 통금시간 이후 주변 일대를 2~3명씩 수색·정찰하는 과정에서 강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심에서 2~3명의 군인이 1명의 여성을 강간이나 추행한 경우, 주변에서 망을 봐주는 군인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③ 유형] 군용트럭으로 여성을 납치하거나 연행자 호송에 사용된 버스를 도심 외곽지역으로 몰아 버스 차장을 강간하기도 하였다. <직

가의2-5(4)〉 사건 피해자는 30대 여성 두 명과 함께 군용트럭에 납치되었고,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제보자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이 같은 유형의 피해자가 최소 3명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5월 21일 이후 발생한 성폭력은 [5 유형] 외곽봉쇄지점 이동 간 수명씩 사전정찰을 보내고, 주요 거점 매복·정찰활동, 보호시설 경계 등의 임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했다. 3건 모두 야산과 골짜기에서 2~3명의 군인 등에 의해 발생한 집단강간이다. 〈21-가의2-82〉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회사 동료와 귀가 중에 야산으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으므로 ‘외곽봉쇄작전 단계’에서 발생한 사건 피해자는 4명이다.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과 연행·구금·조사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6 유형] 압도적인 공포 속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7 유형]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성기 자상과 복부 구타로 생식기능을 잃거나 옷이 벗겨진 상태로 취조를 받고, 수사실 복도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했다. 연행·구금·조사과정에서 생리대 대신 신문지를 주거나, 하혈하는 부상자를 방치하고, 수시로 성적 모욕과 기합을 주었다. [8 유형] 전남합수단이 해체된 시점 이후 발생한 성폭력은 상무대와 구금시설 이동 간 피해자를 여관에 데려가 강간하고, 10월 22일 유인물 제작건으로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해 찾아온 수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표 5-3-7〉 5·18 성폭력 피해 발생 상황 (8가지 유형)

도심 시위진압작전 (5. 18.~21.)	① 유형	작전상황 방식: 체포 위주 진압작전, 지시에 의한 강제탈의 피해발생 장소: 도심 대로변, 시위대 집결지, 연행자 대기 장소 등
	② 유형	작전상황 방식: 거점별 경계근무, 책임 지역 수색·임검, 3~5 명씩 야간정찰 피해발생 장소: 상가, 주택가 골목, 군용트럭, 개인차량 등
	③ 유형	작전상황 방식: 연행자 호송 (시위 거점 → 임시 구금장소) 피해발생 장소: 도심 인근 저수지, 야산 등
	④ 유형	작전상황 방식: 시위대를 뒤쫓는 상황에서 구타와 대검 사용 피해발생 장소: 주택가, 상가 골목
외곽봉쇄작전 (5. 21.~26.)	⑤ 유형	작전상황 방식: 작전부대 이동 간 사전정찰, 매복·수색 활동 피해발생 장소: 작전부대 이동 동선과 봉쇄지점 내 야산, 골짜기
광주재진입작전과 연행·구금·조사 과정 (5. 27.~)	⑥ 유형	작전상황 방식: 5월 27일 이후 일명 ‘잔적소탕작전’, 가택 수색 피해발생 장소: 주요 건물, 주택, 상가 등
	⑦ 유형	작전상황 방식: 5월 27일 도심 주요 건물 점령, 주동자 체포 피해발생 장소: 연행 장소, 연행자 호송 차량, 상무대(수사실, 화장실 등)
	⑧ 유형	합수단 해체 전: 구금자별 협박, 회유, 성고문 등 분리 대응 피해발생 장소: 상무대, 505보안부대 수사실, 광산경찰서, 여 관, 교도소 등  합수단 해체 후: 첩보에 의한 대상자 체포 피해발생 장소: 연행 장소(자취방 등), 수사실, 구금시설

## 2) 5·18 성폭력 피해 유형 분석 (5가지 유형)

5·18조사위 조사 결과, ‘5·18 성폭력’의 피해 유형은 강간과 강제추행을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는 국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의미하는 ‘성폭력 범죄’ 유형에 한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sup>499</sup> 총과 수류탄을 이용한 위협과

499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형법」[법률 제19582호 일부개정 2023. 08. 08.]은 강간과 미수(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과 미수(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과 미수(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미수(제299

구타 후 강간, 대검을 이용한 강제탈의 및 신체 노출, 연행자 호송차량을 이용한 납치 후 강간, 성적 모욕 및 성고문, 자상으로 인한 하혈, 구타로 인한 유산 등 조사를 통해 드러난 피해 내용을 종합하면, 평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폭력이 중첩되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표 5-3-8〉 5·18 성폭력 피해 유형 (5가지 유형)

① 유형	강간 및 강간미수	남성 성기의 여성 성기에 대한 삽입 행위뿐 아니라 신체의 내부(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 <sup>500</sup> ,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sup>501</sup>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경우 등 <sup>502</sup>
② 유형	강제추행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sup>503</sup>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
③ 유형	성고문	고문은 “구금하에 있거나 통제하에 있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행위”이며, <sup>504</sup> 이때 강간, 추행, 신체 특정 부위 구타, 탈의, 성적 폭언 등을 그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성고문’에 해당함

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 치상(제301조), 강간 등 살인 치사(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 강도강간(제339조) 등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성 풍속에 관한 죄’로 음행매개(제242조), 음화반포(제243조), 음화제조(제244조), 공연음란(제245조) 등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517호 일부개정 2023. 07. 11.]은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미수(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제9조 및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500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5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법률 제19517호, 2023. 07. 11., 일부개정]

502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503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문」(2020. 03. 26.)

504 국제형사재판소(CC)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2. 마.

④ 유형	성적 모욕 및 학대	성적 언동을 통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성적폭력을 의미함. 여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강제 탈의 및 신체 노출, 유방·성기·둔부 등 특정 부위의 폭행, 성적 폭언 및 성희롱 등 <sup>505</sup>
------	------------	--

⑤ 유형	재생산 폭력	성적 언동을 통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복종을 강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성적폭력을 의미함. 여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강제탈의 및 신체 노출, 유방·성기·둔부 등 특정 부위의 폭행, 성적 폭언 및 성희롱 등
------	--------	--

### 3) 피해자의 사건 후 복합적 후유증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 삼는 ‘최협의설’(항거불능의 폭행·협박)이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상황보다 압도적이고 실질적인 공포 속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주택에 침입한 군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가해 군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음에도 보복할까 두려워 가족 모두가 상당 기간 공포심에 떨어야 했고, 피해 직전 대검에 찢려 피가 치솟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추행 직후 대검에 찢려 의식을 잃기도 했다. 5월 27일 도청과 YWCA 등에서 연행된 피해자들은 총상 입은 사람이 흘리는 피와 신음 소리, 숨이 끊긴 시신들을 보면서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느꼈다. 국군광주통합병원이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강제퇴원해야 했거나 하혈이 멈추지 않아 찾아간 산부인과에서도 자신의 피해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거나 단방약으로 치료한 사람이 대다수이다.

모든 피해자가 사건 후 자살충동을 느꼈고, 대다수가 1회 이상 자살 시도를 하였다. 나이가 어렸던 청소년 피해자들은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과 질환을 앓다가 생을 마감하거

<sup>505</sup> 조사3과-497(2021.04.22.), 「여성 보상심의자료 검수 및 자문 결과 보고」 “자문의견서(양현아)”, 3쪽. 1990년대 초반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1992~1994년)과 르완다 내전(1994년)에서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법정에서는 무력분쟁 속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성기 삽입 중심의 성폭력 개념의 외연을 확장한 점이다. 보스니아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이 보는 앞에서 한 죄수가 다른 죄수의 교환을 물어뜯게 한 행위가 구 유고국제형사법정(ICTY)에서 성폭력으로 기소되었고, 르완다국제형사법정(ICTR)에서는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나체로 공공광장에서 체조(gymnastics)를 강요한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판단한 것이 그 예다.

나 지금까지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힘겹게 투병생활을 이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건 후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상태인 피해자가 3명이고, 현재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피해자가 2명이다. <20-가의2-14> 사건 피해자의 경우, 반복적인 자살 시도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이다. 피해자들은 사건 후 다니던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두문불출하였고, 가족의 강압에 못 이겨 ‘마음에 차지 않은 상대’와 서둘러 혼인을 하고, 고향을 떠나 살게 되기도 하였다.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 16건 중 8명의 피해자가 사건 직후 서둘러 결혼하였고,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는 2명(남편 사망 1명 제외)에 불과했다. 아예 결혼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가 1명, 사건 후 결혼을 미루다 서른이나 마흔을 넘어 결혼한 경우가 4명이다. 1980년 당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비춰볼 때, 결혼을 미루거나 높은 이혼률, 피해사실을 알게 되거나 성관계 거부로 인한 폭력과 부부관계 문제는 대다수의 피해자가 호소한 내용이었다.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폭도”, “불순분자”, “빨갱이”, 심지어 “간첩”으로 매도되었고, 5·18 당시 연행되었던 피해자 중 일부는 석방된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숨기고 침묵해오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생활뿐 아니라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관계 안에서도 충분히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폭도와 빨갱이로 매도되던 사람들이 “5·18민주유공자”가 되어 사회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긴 시간 소외되어 온 것이다.

〈표 5-3-9〉 5·18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후 복합적 후유증

폭력의 역사성 & 억압의 중첩성	국가폭력	폭도, 빨갱이 등의 사회적 낙인과 배제 국가로부터 감시와 통제
	성폭력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재생산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해
	가부장적 성차별 통념	순결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비난, 침묵 강요 성폭력 피해를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보는 시각
피해의 복합성	신체적 후유증	치료 시기를 놓침, 섭식·수면장애, 전신통증 자해·자살 시도, 자살과 사망
	정신적 후유증	자아상 훼손, 복합적 트라우마, 정신분열, 망각, 파편화된 기억 중독(알코올, 약물 등), 외상의 침습(공포, 플래시백, 악몽)
	사회 관계적 2차 피해	학업 중단, 퇴사, 대인관계 단절, 결혼과 성생활 기피, 남성에 대한 두려움, 피해 사실 발화 후 가정폭력, 이혼

이를 종합해보면, 5·18 성폭력 피해는 ① 군부독재와 결부된 국가폭력의 역사성과 ② 성폭력 피해자를 ‘정조를 잃은 여성’으로 비난하는 가부장적인 성차별 통념, ③ 이러한 사회적 통념의 내면화로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는 ‘억압의 중첩성’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생애사 전반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사회 관계적 영역에서 연쇄적으로 누적되는 복합적 후유증을 겪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5·18조사위가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려웠던 사정과도 관련된다.

### 3. 소결

#### 가.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피해의 특수성

5·18 성폭력 사건은 1980년 5월 광주에 주둔한 계엄군 등의 작전상황이나 연행·구금·조사과정에서 발생했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특정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폭력의 역사성’이 주목되어야 할 과거사로서,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군부독재와 결부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후 겪은 신체적·정신적·사회 관계적 2차 피해는 가부장제의 통념과 ‘성차별주의’를 비롯한 ‘억압의 중첩성’이 작용하고 있는 폭력으로 생애사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누적되는 ‘복합적인 피해 실상’을 그 특징으로 한다.

#### 나. 5·18 성폭력 사건 발생과 치유·회복의 책임 주체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과 경찰 등을 대상으로 127회 조사한 결과, 계엄군 등이 민간인을 상대로 상급자의 지시나 그 어떤 조직적 목적을 가지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위진압작전 시 ①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지시는 주택가 주변 후미지거나 막다른 골목에서 여성의 상의를 들추고 추행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옷이 벗겨진 남녀 연행자를 구타하고 단체기합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체포된 자에 대한 구타 및 군중에게 자극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폭동진압작전』 교범을 위반한 행위이다. 또한 계엄군 등의 작전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작전계획과 지침, 지시에 의한 시위대 체포와 호송 및 관리, 가택수색과 임검, 사전정찰과 매복 등 수명씩 조를 이뤄 활동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단독으로 이뤄지기보다 2~5명의 인원이 가해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방조한 특징이 있다.

5·18조사위가 ① 1980년 5월 1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② 광주·전남 일원에서 ③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강간과 추행한 사건처리기록을 찾기 위해 ‘육군본부 육군검찰단’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계엄군에 의한 사건기록은 1건도 없었다. 조사대상 사건 중 유일하게 현장에서 체포된 가해 군인의 사건처리가 군법회의 회부가 아닌 선임하사 선에서 무마된 것을 볼 때, (이 조사의 목적이 은폐된 진실규명이 아닌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상급자 또는 조직 단위의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요컨대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지시가 군사적 목적으로 조직적·체계적인 성폭력을 용인한 근거로는 볼 수 없지만, 광주시민을 ‘폭도’와 ‘빨갱이’, ‘간첩’이나 ‘잔적/포로’로 보는 시각과 함께 계엄군 등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부추기는 기제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한 시민을 불법적으로 연행, 구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성고문과 성적 모욕 및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관 등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없는 조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는 4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체이며,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폭력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 제6장

# 북한군 개입 주장과 5·18민주화운동 왜곡







## 제1절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

### 1. 조사 배경

#### 가. 개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 일원에 침투했다는 주장은 2002년 8월 16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광고에서 처음 식별된다. <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 지만원 명의로 게재된 「대국민 경계령! 좌익 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광고에는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와 관련, 법원은 위 광고 내용을 “허위의 사실”로 판단하고 지만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003년 1월 28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sup>1</sup>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광주 일원 침투 주장은 3년 뒤인 2006년부터 일부 탈북자<sup>2</sup>들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임천용, 이주성, 정명운 등 탈북자들은 월간지 기고, 기자회견, 책자 발간 및 방송 출연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특히 이중 정명운은 자신이 북한특수부대 소속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 ‘실제로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의 존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

1 지만원은 2002년 8월 20일 문화일보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2고합594, 「판결문」(2003.01.28.), 2~3쪽 참조. 이후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우리 정부에서 탈북자를 지칭하는 공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 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5월 11일 조사개시된 과제명의 ‘탈북자’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쳤고 이주성은 그를 주인공으로 한 논픽션 『보랏빛 호수』를 출간하여 그 논란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 임천용과 지만원 등을 지원하는 배후 조직에 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5·18조사위는 ‘5.18 북한군침투주장 조사 TF’라는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했으며, 그 조사 결과를 ‘5·18 북한군 침투 주장 관련 조사 TF 조사 결과’라는 소제목으로 본 보고서 말미에 삽입하였다.<sup>3</sup>

한편 지만원은 2009년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 12.12와 5.18』에서 북한군 침투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후 이를 확장하여 2010년 8월 『솔로몬 앞에선 5.18』을 출판하였다. 이 책에 등장하는 내용은 향후 지만원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 증거의 근간이 되었다.

지만원과 일부 탈북자들이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이 우리 사회 일각에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는 2012년 11월 16일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현대사재조명 강연회」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과 <대한민국특전사전우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는 임천용이 강사로 초청되었는데, 참석자 중에는 정효용 전 국방부장관과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이 있었다.<sup>4</sup>

다음 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주요 국면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3 이 내용은 이 보고서 말미에 ‘바. 5·18 북한군 침투 주장 관련 조사 TF 조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삽입되어 있다.

4 「현대사재조명 강연회」(2012.11.20.),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www.nabuco.org/news/article.html?no=5310](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5310).



〈표 6-1-1〉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관련 주요 국면

연도	내용
2002	지만원, 「대국민 경계령! 좌익 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 광고 게재
2006	임천용, 『한국논단』 기고 및 〈자유북한군인연합〉 기자회견
2007	임천용·이주성·정명운 등 일부 탈북자들, 북한군 침투 주장 확산
2009	국정원, 정명운·임천용 등 탈북자 주장 사실이 아닌 것으로 평가 지만원,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 12.12와 5.18』 출간 임천용,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 5.18』 출간 (‘광수’ 최초 언급 <sup>5)</sup> )
2010	국정원, 정명운·이주성 주장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 지만원에게 통보 지만원, 『솔로몬 앞에 선 5.18』 출간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일명 ‘광수’ 주장 등장
2012	〈대불총〉/〈특전사전우회〉 공동으로 「현대사재조명 강연회」 개최
2013	임천용·정명운 중편 채널 출연, 5·18에 북한군 침투 주장
2014	지만원, 『5·18분석 최종보고서』 출간
2015	필명 ‘노숙자담요’가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일명 ‘광수’ 얼굴분석 결과를 게시하면서 ‘광수’ 주장 확산
2016	지만원, 『5·18 영상고발』 출간
2017	이주성, 『보랏빛 호수』 출간
2020	지만원,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출간
2021	지만원, 『5·18 답변서』 출간
2022	지만원, 『5·18 상고이유서』 출간
2023	지만원,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출간 지만원, 일명 ‘광수’ 주장 등 관련 유죄 확정, 수감

5·18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 침투 주장과 관련, 법원은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해당 주장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 지만원 신문광고에 대한 판결 외에도 2013년 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

5 일명 ‘광수’는 5·18 당시 TV를 보던 북한군들이 이는 얼굴이 TV에 나오자 “야, 저거 광수가 아니야? 광수가 어떻게 저기 나가있어”라고 했다는 주장에서 출발하였다. 자유북한군인연합, 2009,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광명기획, 191쪽.

일성과 짜고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내려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했다.<sup>6</sup> 법원은 5·18 당시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의 핵심 쟁점인 지만원의 일명 ‘광수’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sup>7</sup>

또한, 2020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이주성이 『보랏빛 호수』와 서울역 광장 연설, 그리고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5·18에 북한군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sup>8</sup>

이처럼 5·18 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여전히 5·18은 북한이 최대 1,600여명에 달하는 특수군과 민간인을 파견해 일으킨 게릴라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9</sup> 이와 관련, ‘광수’로 지목된 광주시민 및 북한이탈주민 등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였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라 한다)>에도 진상규명 신청을 접수하는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sup>1011</sup>

이에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5·18진상규명법」) 제3조 제9호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6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321 판결」(2013.01.29.), 이후 상고가 기각되어 2013.11.14.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7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노804 판결」(2022.02.16.), 이후 상고가 기각되어 2023.01.12.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8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67 판결」(2020.06.03.), 이후 항소가 기각되어 2020.11.13.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9 지만원, 2023, 『5·18작전 복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150쪽.

10 지만원/뉴스타운 신문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만원은 일명 ‘광수’로 지목된 피해자 등에 대해 배상금 8,200만원을 지급하고, 뉴스타운은 호외 1,2,3호의 발행·추가발행·배포·인터넷 게시 및 제3자의 발행·추가발행·배포를 금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 51950 판결」(2017.08.11.) 참조.

11 지만원 5·18영상고발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만원은 일명 ‘광수’로 지목된 피해자 등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 배상금 9,500만원을 지급하고, 『5·18영상고발』과 『미니화보 5·18영상고발』의 발행·추가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인터넷 게시 및 제3자의 발행·추가발행·배포를 금지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 55683 판결」(2018.10.25.) 참조.

여 이 사건에 대하여 2021년 8월 23일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지만원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광주 침투 북한특수군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추진하였다. 이 사건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은 2023년 12월 21일 제112차 전원위원회에 ‘진상규명’ 의견으로 상정되어 원안이 수정의결되었다.

## 나. 조사 범위

지만원 및 일부 탈북자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특수군의 숫자는 다양하다. 지만원은 일명 ‘광수’ 661명이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철산(이주성)은 『광주 5·18 탈북자 증언』에서 북한군 200명이 왔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임천용은 「북한 특전부대 출신자의 생생한 증언」에서 450여 명이 내려왔다고 했다가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는 600명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북한군인연합> 최중현 공동대표는 2006년 기자회견에서 광주에 투입된 인원은 모두 600명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북한군’의 범위는 북한군 신분으로 침투한 간첩이나 공비 1~2명이 아닌 “최소한 수백명 규모의 북한특수군 부대”로 한정하였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고 주장하거나, 그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만원이 제시한 논리와 근거를 차용하고 있다.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이 지만원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탈북자는 다시 지만원의 주장을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차용하는 등 주장과 근거가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 지만원이 존재한다.

특히 지만원은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의 기반이 되는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출판도 자신이 도와준 것이라고 5·18조사위 조사에서 진술하였다. 당시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으고 편집을 한 것은 임천용이지만 출판할 수 있도록 돈을 대준 것은 자신

이었다는 것이다.<sup>12</sup> 따라서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 주장의 핵심 인물은 지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 조사를 위해서는 지만원이 제시하는 주장의 근거를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지만원이 제시하는 5·18에 대한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의 근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다. 지만원은 『5·18분석 최종보고서』에서 5·18의 주역이 북한군이라는 증거 18개를 제시한 이래<sup>13</sup>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는 21개를 제시하였고, 『5·18답변서』에서는 그 증거가 42개로 확장되었다.<sup>14</sup> 42개로 확장된 증거는 이후 『5·18작전 복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도 약간의 내용 변화는 있었지만 대부분 유지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지만원이 제시한 42개 증거가 최초로 정립된 출판물이며, 지만원의 주장이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근거 문헌 및 사진 등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검증이 용이한 『5·18답변서』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표 6-1-2〉 『5·18답변서』에 제시된 지만원의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 증거 42개

연번	내 용
1	현장의 총기들
2	지휘체계가 보이는 현장의 사진들
3	600명 단위 사복 별동대의 작전활동
4	극비에 해당하는 20사단 이동정보 획득 후 매복 기습
5	장갑차/군용트럭 300여대 탈취
6	무기고 탈취
7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 총기 탈취
8	민간 사망자 162명 중 총상 사망자 117명, 그 중 88명(75%)이 무기고 총기에 사망

12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지만원 진술조사 2차」(2023.09.27.).

13 지만원, 2014, 『5·18 분석 최종보고서』, 도서출판 시스템, 267~276쪽.

14 지만원, 2021, 『5·18답변서』, 도서출판 시스템.

연번	내 용
9	TNT 폭탄조립 2,100발
10	사망자 중 신원불상자 12명
11	교도소 공격
12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서울서 대학생 5백여 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 기재
13	5·18기념재단의 기록 조작행위
14	시위 지휘자가 대한민국에 없는 사실
15	5·18은 김일성 교시로 이루어졌다는 북한 교과서와 북한 문헌
16	현장 기록에 대한 남북 문헌의 우열
17	시위의 전략 전술 교훈에 대한 남북 문헌의 차이
18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성분 분석, 시간과 내용에서 북한이 앞서
19	5·18기념행사 때 광주시가지에 나타난 김대중-김정일의 캐릭터
20	북한 전역 도시에서 여러 날 거행되는 5·18기념행사
21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하사
22	영화 제작을 통한 모략 북한이 선도, 북한은 1980년 및 1991년에 영화 제작, 한국은 2007년에 영화 제작
23	비밀해제된 미 외교문서 122건
24	황장엽과 김덕홍의 증언
25	공수부대 모함용 세트장 촬영
26	5·18기념재단의 모략
27	도청 앞 발포의 진실과 영화의 진실
28	영화 [김군]의 결론, 김군은 북한 김창수였다
29	청주유골
30	간첩 손성모-북한에서 5·18주도자로 선전 찬양돼
31	믿을 수밖에 없는 광수
32	노숙자담요의 지속적이고 치밀한 분석 작업에 대한 신뢰
33	질서 속에 집단을 이루는 광수들
34	분석 없이도 공감되는 얼굴들
35	시위에 예비군 참여 없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연번	내 용
36	떼죽음 당했다는 475구
37	당시 합참의장에 의한 전남 해안 비워주기
38	방송3사와 광주시의 반복된 현장얼굴 찾기에 나타난 사람 없었다
39	세도집단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봉쇄
40	5월 단체들의 폭력
41	5·18관련 재판 광주법원이 독점
42	5·18 진실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파행적 업무수행

## 2. 조사 결과

『5·18답변서』와 『5·18작전 복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는 지만원이 주장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의 근거 42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는 “안기부 자료에서 신원미상 12명이 바로 북한군 시체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처럼 근거 없이 주관적인 표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타당성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도 일부 존재하며, “검열과 폭력과 세도로 비밀 강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장도 있어 해당 주장들은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표는 지만원의 북한군 개입 주장 근거 42개 중 위와 같은 이유로 5·18조사위에서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항목들이다.

〈표 6-1-3〉 지만원 주장 북한군 개입 증거 42개 중 검증 불필요 항목

연번	제목	내용	검증 불필요 이유
10	사망자 중 신원불상자 12명	안기부 자료에서 신원미상 12명이 바로 북한군 시체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론이다”는 주관적인 추측임
13	〈5·18기념재단〉의 기록 조작행위	‘서울서 대학생 5백여명 광주 도착 환영식’ 기록 삭제 및 조사천 사인을 칼빈총상에서 총상으로 변경	*북한군 개입 주장과 직접 관계 없음

연번	제목	내용	검증 불필요 이유
19	5·18기념행사 때 광주 시가지에 나타난 김대중-김정일의 캐릭터	5·18기념행사 때 광주시가지에 나타는 김대중-김정일 캐릭터는 5·18이 김대중과 김정일의 합작품이라는 광주의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됨	*북한군 개입 주장과 직접 관계 없으며 주관적인 표현임
26	〈5·18기념재단〉의 모략	〈5·18기념재단〉은 계엄군을 살인마로 모략하였으나 당시 계엄군은 시가지를 청소해주고 아이들은 국군아저씨들을 따랐음	*북한군 개입 주장과 직접 관계 없음
27	도청 앞 발포의 진실과 영화의 진실	영화 ‘화려한 휴가’가 도청 앞 발포를 왜곡하였음	*북한군 개입 주장과 직접 관계 없음
34	분석 없이도 공감되는 얼굴들		*논리적, 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없음
39	세도집단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봉쇄	5·18왜곡처벌법, 직장을 가진 5·18 비판자에 대한 탄압	*북한군 개입 주장과 직접 관계 없음
40	5월 단체들의 폭력	교회, 언론사, 지만원에 대한 폭력	*북한군 개입 주장과 직접 관계 없음
41	5.18 관련 재판 광주법원이 독점	광주법원이 5·18 재판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 등 타 지역 법원이 판결하면 무죄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	*북한군 개입 주장과 직접 관계 없음
42	5·18 진실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파행적 업무수행	위원 9명은 문재인이 직접 선발한 사람들로 조사결과는 ‘불문이가지’로 이미 결정돼 있음	*북한군 개입 주장과 직접 관계 없음

## 가. 장비 및 전술 관련 주장 검증

### 1) 침투 및 복귀 전술과 장비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동료나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5·18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를 주장하지만, 저마다 북한군의 침투 및 복귀 경로에 대해서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북한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경로는 주로 해상을 통한 것이었다.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침투 시기를 살펴보면 1980년 5월 21일의 기상은 풍속



10~15kts, 파고 1~1.5m, 월광 상현 68%로 대체로 맑은 날씨였다.<sup>15</sup> 그러나 침투 시간을 살펴보면 24시는 고조에서 저조로 넘어가는 썰물(저조 2시간 30분전) 때로, 조류 방향과 침투 방향이 반대이다. 따라서 계절·월광·기상 조건이 적합했으나 당시 침투 시간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해안 침투 시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sup>1617</sup>

탈북자들은 북한특수군이 별도의 장비 없이 맨몸 수영으로 육지에 도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작모선이 해안에 근접 시 군 경계전력에 의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작모선에서 바로 해안으로 침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만약 공작모선에서 바로 수영 침투를 한다고 하여도 영광해안 평균 유속은 2.8 ~ 4.3kts, 썰물 시 유향은 241°<sup>18</sup>로 수영 침투가 매우 제한된다. 국방부 확인 결과 해군 특수부대의 맨몸 수영 제한 유속은 1kt 이상으로 확인하였다.<sup>19</sup>

탈북자 주장 중 “바다에 뛰어들어 보니 물이 가슴높이까지 차오를 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인 남자 기준으로 수심은 약 1.2m~1.5m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작선의 흘수는 2.3m로, 수심 및 공작선 흘수를 고려했을 시 해당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탈북자들이 침투 장소라고 제시하는 영광해안의 경우 서해안의 특성에 따라 저조 시 넓은 갯벌이 형성되어 은밀 침투가 제한되고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수영침투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침투시간을 고려해보았을 때 배에서 하선하여

15 해군기록정보단에서 기상청의 1980년 5월 일기도 및 기상월보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국방부, 앞의 문서  
 16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협조 요청 회신(군산, 목포 조위자료)」,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1761호, (2020.07.07.)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지원단TF-3753 참고)  
 17 위 문서, 영광해안의 조석시간은 2020년10/11월의 군산, 영광의 조석 시간차이를 계산하여 추정함(통상 영광이 군산보다 저조 20분, 고조 39분 빠름)  
 18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협조 요청 회신(법성포 조류 예측자료)」,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1412호, (2020.07.10.)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지원단TF-3753 참고)  
 19 「간첩 침투/조작설 관련 해상분야 중간 검토결과 통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지원단TF-3753, (2020.12.09.)

수영 및 도보로 침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군 자료에 따르면, 해상 복귀 시에는 비상시를 고려하여 주 및 예비 복귀로를 다수 준비하며 실제 복귀경로 및 일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선정한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으로 안내요원과 접선이 불가능할 경우 일단 현장에서 이탈한 다음 다시 접선을 시도하거나 육상으로 복귀한다.<sup>20</sup> 5·18조사위는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북한특수군의 해상 복귀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주장 내용에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명이나 위치가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불가하였다.

탈북자들은 북한특수군이 땅굴을 통해서도 남한으로 침투했다고 주장하였다. 땅굴 침투시에는 땅굴 입구(北쪽)로부터 출구(南쪽)까지 면밀한 도상정찰을 해서 정확한 위치 및 이동방향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남한의 어느 지역까지 와서 갯도바깥으로 나왔는지는 한밤중이어서 지도상으로 계산해도 잘 알 수 없었다고 했고”<sup>21</sup>와 같이 위치 및 이동방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침투한다는 것은 침투 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땅굴을 굴설할 경우 소음 및 폐석처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대규모 지하수가 발생하고 이를 펌프로 처리하기 위한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폭파를 통한 굴설 작업 시 소음 발생 및 폐석처리를 위한 인력·시간상의 상당한 소요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특수군이 이용했다는 장거리 땅굴은 1980년 당시 기술로는 실제 굴설하고 전술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남한군의 정찰자산에 노출 없이 땅굴이 완성되는 쉽지 않다. 실제로 현재 남한 내까지 출구가 개통된 땅굴이 없으므로 탈북자의 주장을 실현하기에는 상당 부분 제한적임을 확인하였다.

군 자료에서도 소형땅굴을 굴토하고 침투하는 방법은 1970년대에 사용하다 모두 실패하여 이후 사용치 않았고, 1970년대 초반에 구축하던 남침용 대형땅굴도 기도가 노출되

20 국방군사연구소, 『대비정규전사Ⅱ』, 1998, 134~154쪽.

21 자유북한군인연합,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 5·18』, 광명기획, 2009, 328쪽.

어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22</sup>

북한특수군의 복귀와 관련, 탈북자 이철산, 이주성은 각각 저서에서 5월 25일 최고사령부로부터 복귀 명령을 전달받은 이후, 5월 27일 광주에서 철수를 개시하여 문경새재를 경유하고 중부지역으로 추정되는 남방한계선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를 통해 북한군 교리를 확인한 결과, 복귀 시에 정찰국 안내조는 사전 정찰 및 개척된 DMZ코스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 1~3개월 전에 임무를 받고 도상 연구 및 극복연습 반복 실시, 침투 1개월~1주전에 민경초소에 도착, 경계근무 및 장애물 위치 등 경계실태를 관측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탈북자들의 저서에서는 오전 10시 DMZ를 통해 복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침투 및 복귀 시간은 야간 EENT를 고려하여 개시된다. 북한군 교리상에는 통상 침투지점에 23~24시경 도착하여 한국군 경계초소 순찰 및 철책 상태를 정찰하고 통과 시기를 결정하여 23~2시경 철책을 통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탈북자의 저서 속에 등장하는 침투 및 복귀 경로를 검증한 결과 북한군 침투 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장비 및 물자 등

5·18조사위는 탈북자들의 저서를 통해 북한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시 보유한 장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탈북자 이철산의 저서 『광주 5·18탈북자 증언』 중에는 남파 전배정받은 장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훈련장구류라는 것이 총탄 300발, 수류탄 2발, 권총과 카빈총 1정, 단도, 포승 끈, 구급치료 약이었다. 식량은 미숫가루 6일분, 말린 건 쌀 3일분, 영양알약 1달분을 준비하여 한국에서

22 육군본부, 『대침투작전사(1981년~2017년)』, 2017, 37쪽.

지금 사용하는 등산용 배낭에 넣었다. 피복은 위에 잠바형식(색상은 여러 가지), 바지는 미색으로 된 것이고 신발은 남한 운동화 같은 신을 신었다.”<sup>23</sup>

탈북자 이주성의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도 남파 전 배정받은 장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전투원 한 사람당 총탄 300발, 수류탄 2발, 권총 1정, 카빈총 1정, 단도, 포승줄, 구급 치료약을 배정받았다. 식량은 미숫가루 6일분, 말린 건쌀 3일분, 영양 알약(비상용 전투식량) 1개월분이었다. 피복은 잠바 형식으로 바지는 청바지를 비롯해 몇 가지와 신발은 운동화였다.”<sup>24</sup>

이를 1980년대 주요 침투사례<sup>25</sup>와 비교해보면 미숫가루, 찌쌀 등의 식량류를 휴대한 것은 유사하나, 영양제 1개월분 휴대와 관련해서는 80년대 주요 침투사례 시 휴대한 장비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이주성의 저서 『보랏빛 호수』를 살펴보면 “자폭을 위해 남파된 북한군 게릴라들은 특수하게 제작된 옷을 입고 있었다. 목 부위에 폭약 2~3kg과 맞먹는 100g 정도의 고성능 폭탄이 들어 있는 물체를 착용하고 있었다. 5·18광주폭동에 남파되었던 북한군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전규칙이었다.”<sup>26</sup>, “몸 안에서 주먹 크기의 물체를 꺼냈다. 고성능 폭탄이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013번의 몸이 형체도 없이 갈가리 찢어져 날아갔다.”<sup>27</sup>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주성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폭약 2~3kg과 맞먹는 100g 정도의 고성능 폭탄”은 일

23 이철산, 『광주 5·18탈북자 증언』, 자유와 생명, 2012, 23~24쪽.

24 이주성, 『보랏빛 호수』, 비봉출판사, 2017, 115쪽.

25 「5·18민주화운동 남파주장, 북한 특수군 활동분석」,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지원단TF-3267, 2020.11.3.

26 이주성, 『보랏빛 호수』, 비봉출판사, 2017, 148쪽.

27 위의 책, 154쪽.

반 폭약의 20~30배 위력을 가지고 있는 폭약으로 볼 수 있다. 폭약의 위력은 위력 계수로 표현되는데, 그렇다면 이주성이 주장하는 “고성능 폭탄”은 위력 계수가 20 또는 30인 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군 폭파 교범 확인 결과, 위력 계수가 20 또는 30인 폭약은 2007년 현재 미군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sup>28</sup>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 침투·복귀 경로와 사용 전술 및 장비 등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는데, 육·해상 및 땅굴을 통한 침투 및 복귀 경로 주장은 과거 북한 공작원 또는 무장공비 침투 사례와 5·18 당시 우리 군의 경계태세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였을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북한특수군이 사용했다는 전술 역시 당시 주변 지형 및 기상 등 환경과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전술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폭용으로 시신을 분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폭약 관련 주장은 폭발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되었다.

### 3) 현장의 총기들 관련 주장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근거로 “현장에 중화기들을 가볍게 다루는 훈련된 어깨들이 많이 보이고 카빈총을 멘 어깨들의 작전활동이 두드러져 있다. 몸매가 단련되고 총기에 훈련되고 지휘체계가 확립돼 있는 현역조직 하에 행동하는 아래의 어깨들이 광주의 20대 전후의 기층 계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특수군 침투의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하였다.<sup>29</sup>

지만원은 이와 관련하여 세부 근거 9개를 제시하였는데, 5·18조사위는 이중 “중화기들을 가볍게 다루는 훈련된 근육질의 어깨”와 “훈련된 어깨가 육중한 중화기를 거뜰히 어

28 『FM 3-34.214 Explosives and Demolitions』,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July 2007, 1~2쪽, <https://info.publicintelligence.net/USArmy-Explosives.pdf>

29 지만원, 2021, 『5·18 답변서』, 도서출판 시스템, 50~53쪽.

깨에 멘 모습” 2개는 사진만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주관적 표현이라고 판단,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6-1-4〉 지만원 주장 ‘현장의 총기들’ 세부 근거 및 검증 여부 판단

세부 근거	검증 여부
- 중화기들을 가볍게 다루는 훈련된 근육질의 어깨	검증 제외 (사진만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주관적 표현)
- 훈련된 어깨가 육중한 중화기를 거뜰히 어깨에 멘 모습	
1) 군용트럭 보닛에 타이어를 요새로 쌓고 캘리버 50 장착	검증 실시
2) 캘리버 50과 M16소총을 늘어놓고 탄창에 실탄 장입	검증 실시
3) 총기 약실 및 격발장치 점검	검증 실시
4) 총열 교환용 특수 석면장갑을 착용한 전투프로의 모습	검증 실시
5) M1소총을 들고 계엄군을 모략하는데 사용된 세트장과 같은 사진	검증 실시
6) 북한식으로 거꾸로 휴대한 총	검증 실시
7)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의 도청 출입을 통제할 수 없음	검증 실시

### 가) 군용트럭 보닛에 타이어를 요새로 쌓고 캘리버 50 장착

지만원은 “군용트럭 보닛에 타이어로 요새를 쌓고 캘리버 50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는 사진을 북한특수군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빈 타이어를 트럭에 쌓는 것만으로는 총기류에 대한 방탄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sup>30</sup> 지만원이 제시한 사진을 촬영한 신아일보 이창성 기자가 동일한 차량과 인물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사진 속 기관총에는 실탄도 장착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sup>31</sup>

30 미 육군 사격장 안전 팜플렛은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M16소총용) 5.56mm M193 탄약을 방호하기 위해서는 마른 모래 40.6cm, 다진 흙 81.3cm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Department of the Army Pamphlet 385-63, 2003, 『Range Safety』, 24쪽 참조.

31 이창성, 2008, 『28년만의 약속』, 눈빛출판사, 64~65쪽.





〈그림 6-1-1〉 지만원 제시 사진



〈그림 6-1-2〉 같은 차량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그림 6-1-3〉 캘리버 50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된 사진

#### 나) 캘리버 50과 M16소총을 늘어놓고 탄창에 실탄 장입

이 두 사진은 모두 이창성 기자가 촬영한 것이다. 위 사진에는 캘리버 50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반면, 아래 사진 계엄군 차량의 캘리버 50 기관총에는 실탄이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2</sup> 사진에 나온 무장시위대 차량의 캘리버 50 기관총에는 실탄조차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진의 인물들은 지만원이 주장하는 “요새를 쌓고 전투를 준비하는” 훈련된 북한특수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총기 약실 및 격발장치 점검

지만원은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중 일부가 “총기에 훈련되고 (릴레이식으로 전달하는

32 <https://photo.518.org>

등) 지휘체계가 있는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소총을 다루는 것은 특수 기술이 아니라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성인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특히 당시에는 교련 교과를 통해 고등학교 이상 학생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만큼, 총기를 다루거나 지휘체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군대에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고등학교 이상 연령대의 남성들에게는 익숙한 행동이었다.

아래 사진들은 1970년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군사훈련 사진으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당시 시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지만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특수군만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sup>33</sup>



〈그림 6-1-4〉 학도호국단 남녀고교생 반공학생대회(1975)

33 나라기록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 관련 자료 제공 협조요청 회신」(2022.04.07.).



〈그림 6-1-5〉 제4회 고교 교련 합동사열 및 실기대회(1975)



〈그림 6-1-6〉 고려대학교 학생 하계 병영훈련(1976)

또한, 1980년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시 전라남도 거주 20세 이상 49세 이하 남성은



702,898명이었는데, 1980년 전라남도 지역의 일반예비군과 동원예비군을 포함한 향토예비군은 258,378명이었다. 단순 계산으로도 당시 활동이 왕성한 20대에서 40대까지 남성 10명 중 약 3.7명이 무기 사용법을 훈련받은 예비군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343536</sup>

따라서 총기를 다루는 모습과 지휘체계에 따라 행동하는 사진을 근거로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침투했다고 하는 지만원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광수’가 기관총 총열 교환용 석면장갑을 착용했다는 주장

지만원은 “이 어깨가 끼고 있는 장갑은 가열된 총열을 손으로 갈아 끼기 위한 특수 석면장갑, 전문가만이 챙기는 기능성 장갑이다. 몸매와 눈매는 계엄군으로부터도 기대하기 어려운 당당한 자세, 총과 군용 무전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전투프로의 모습이다” 라면서 다음 사진을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림 6-1-7〉 지만원 제시 사진

34 병무청, 「예비역등 자원현황-청별, 역종별」, 『병무통계연보 1981』

35 「총조사인구 총괄」,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0001\\_ENG&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1N0001_ENG&conn_path=13), (조희기간 1980~1980).

36 예비군은 연령 및 계급정년에 따라 편성해제되기 때문에 실제 군 경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관련한 통계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확보 가능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소 인원을 계산하였다.

확인 결과, 해당 사진의 장갑은 기관총 총열 교환용 석면 장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은 해상도가 낮아 장갑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촬영자인 이창성 기자가 2008년 펴낸 『28년만의 약속』 사진집에 원본 인쇄판이 있어 형태를 정확히 식별 가능한데<sup>37</sup>, 우리 군 야전교범에 따르면 기관총 총열 교환용 석면장갑은 손모아장갑 형태인 반면 사진 속 장갑은 손가락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일반 면장갑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군 및 미군 교범을 조사한 결과 사진의 총은 M1918A2 브라우닝 자동소총으로 기관총이 아니며 야전에서 총열 교환도 불가능하므로 석면 장갑이 필요 없고, 지만원이 “실탄 줄”이라고 표현한 탄약띠는 탄알집 장전식인 사진의 총기에는 사용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38</sup>

확인 결과, 지만원 등은 해당 사진의 일반 면장갑을 기관총 총열 교환용 석면장갑으로, 탄알집 장전식 자동소총을 탄약띠 장전식 기관총으로 오인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사진의 인물이 해당 총기에 사용할 수 없는 탄약띠를 걸쳐 놓은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총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거나 특수훈련을 받은 인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지만원 역시 5·18조사위 조사에서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자세히 보지 않아서 사진상의 장갑이 총열교환용 석면장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석면장갑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냥 폼으로 총을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AR도 총열교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자신의 오류를 시인하였다<sup>39</sup>

따라서 이는 사진 판독 오류와 총기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지만원이 북한특수

37 이창성, 『28년만의 약속』, 눈빛출판사, 2008, 95쪽.

38 야교 23-15, 『자동소총(구경 30 M1918)』, 육군본부, 1971

39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지만원 진술조서」(2023.08.24.).

군이 광주에 왔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하게 제기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 5) 한국군은 총을 거꾸로 메지 않는다는 주장

지만원은 일단의 사람들이 구 전남도청에서 우의를 입고 카빈 소총을 거꾸로 메고 있는 사진을 두고 “한국군은 총을 거꾸로 메지 않는다. 사진이 촬영되었을 5월 22일과 23일은 대체로 날씨가 맑았다. 이들 북한군이 위치한 장소는 전남도청 안이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검증한 결과 국군 교범은 물론 당시 학생용 교련 교범에서도 우천시에는 총구를 아래로 하여 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군은 작전 및 훈련시 총구를 아래로 하여 메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 6-1-8〉 지만원 주장에 사용된 사진 (거꾸로 멘 총)

지만원은 사진 촬영 일자를 5.22~23.으로 추정하면서 “대체로 날씨가 맑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진만으로는 촬영 일자를 특정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사진에 나온 인원들은 전원 우의를 착용하고 있어 촬영 전후 비가 내렸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 당시 광주 지역에는 5월 24일 12.6mm, 25일 26.1mm 강우(기상청 날씨누리 과거관측자료)

또한 각종 교범을 통해 우리 군 제식 및 집총동작에도 해당 동작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야전교범 22-5 『제식훈련 및 의식』(1963.12.20. 및 1983.10.30. 2개 판 확인)에 “총구 아래로 한 우로어깨걸어 총” 동작이 규정되어 있으며, 『교련교범』(동명사, 1976.2.20.)의 카빈소총 기계훈련 항목에서도 “카빈소총 다루기: 우천시에는 총구에 물이 들어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구 아래로 한 우로어깨걸어 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총구를 아래로 하여 메는 자세는 북한군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군 제식동작에도 포함된 것으로, 총기 휴대 자세만으로는 북한군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6) 광주시민은 폭탄을 조립할 수 없다는 주장

도청 다이너마이트를 해체한 사람은 있는데 조립자가 없으며, 광주시민들 중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지만원의 주장과 관련, 5·18조사위는 과거 수사 및 재판기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실제로 폭발물을 조립했던 시민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전남합수단이 1980년 12월 4일자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보낸 피의자 박홍철, 차영철 등의 「의견서」 “피의자 박홍철, 피의자 차영철은 동가<sup>40</sup> 마루에서 도화선을 10센치씩 절단 뇌관과 접착 폭약에 꽂아 점화하면 폭발, 살상, 파괴될 수 있도록 각 1개씩 2개를 조작 소지하고, 피의자 이성전, 피의자 김종삼, 피의자 배봉현, 피의자 이 선은 동부락 구순례 당 58세(여)의 집 마루에서 전기 공범 박홍철, 차영철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폭약 20

40 해당 문서에는 화순군 동면 장동리 칠동부락의 진장덕 56세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개 및 뇌관 등으로 16개를 전기와 같이 폭발물로 조작...”이라고 기록하였다.<sup>41</sup> 이중 박홍철은 화순광업소 광부였고, 차영철은 호남탄좌 광부였기 때문에 폭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위와 같이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었다.<sup>42</sup>

### 7) 지휘체계가 보이는 현장의 사진들 주장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현장의 사진들을 보면 몸매가 단련돼 있는 어깨들이 지휘체계를 갖추어 일사불란하게 고도의 전투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20대 전후의 광주 기층 인구들이 연기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모략적 사진전에 동원된 민간인들도 언제나 질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통제되고 있는 무리들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sup>43</sup>

지만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이 세부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5·18조사위는 앞서 ‘1) 현장의 총기들’ 검증과 마찬가지로 이중 사진만으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주관적 표현 등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지만원 42개 주장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해당 주장 항목에서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광주시민을 도청으로 체포해 가는 무장조” 주장에 대해서만 검증하기로 한다.

41 전남합동수사단(1980), 『의견서』(1980.12.34), 국회 기록보존소, 05-9700145-1988-9700145006549-00.

42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박홍철 증언 (증언번호 6035)』, 『차영철 증언 (증언번호 6027)』; 차영철(2020.07.28), 진술녹취록; 이상전(2020.08.07), 진술조서.

43 지만원, 2021, 『5·18 답변서』, 도서출판 시스템, 50~53쪽.

〈표 6-1-5〉 지만원 주장 ‘지휘체계가 보이는 현장의 사진들’ 세부 근거 및 검증 여부 판단

세부 근거	검증 여부
-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차량 탑승자들의 단련된 몸매	검증 제외 (사진만으로 검증이 불가능한 주관적 표현)
- 20사단 지휘부로부터 탈취한 낱차로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향해 달리고 있는 사진은 2차대전 때 그림자만 보아도 공포에 떨었다는 ‘사막의 여우’ 롬멜 군대를 연상케 하는 특공대 모습	
- 손바닥 일부가 나온 사진으로 무공훈련의 정도를 알 수 있음	
- 광주시민들과 대조되는 무장 어깨들의 몸매 사진	
- 질서가 있는 사진, 없는 사진	
- 켈리버 50 기관총 총탄을 탄띠에 끼워 탄통에 넣는 숙달된 모습	‘현장의 총기들’ 에서 검증
- 어깨들에게 성능이 검증된 총기를 릴레이 방식으로 전달	‘현장의 총기들’ 에서 검증
- 지휘체계가 갖추어지고 총기에 훈련되고 전경복을 유니폼으로 입은 현역 조직의 어깨들	‘현장의 총기들’ 에서 검증
- 몽둥이를 들고 머리에 흰색 비 표식을 한 어깨가 장갑차를 유도하고 있음.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보일 수 없는 장면임	‘현장의 총기들’ 에서 검증
- 카빈총 탄창 및 M1소총 클립 장전.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일 수 없는 장면	‘현장의 총기들’ 에서 검증
- 광주시민들 중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뇌관, 도화선이 쌓여 있는 무서운 화약고에서 폭발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없음	‘폭탄조립’ 에서 검증
- 손성모가 찍힌 사진	‘손성모’에서 검증
- 경찰이 질서를 잡는 사진(당시 경찰이 도청에 나타날 수 없음)	‘광수’ 주장 통합 검증
- 여장을 한 남성(리을설) 옆 어깨가 어렵고 황송해하는 표정	‘광수’ 주장 통합 검증
- 광주시민을 도청으로 체포해가는 무장조	검증 실시

## ○ 광주시민을 도청으로 체포해가는 무장조

지만원은 아래 사진들을 근거로 광주시민을 도청으로 체포해가는 무장조가 북한군이 라고 주장하였다.



〈그림 6-1-9〉 지만원 주장, 광주시민을 도청으로 체포해 가는 무장조

이와 관련, 5·18조사위는 과거 진술기록 및 지만원 재판기록 등을 조사하여 사진에 나오는 체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북한군인지 아니면 광주 시민인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당시 전남도청에 위치해 있었던 시민 수습 조직이 간첩 의심자나 범죄 혐의자들을 체포하여 도청 내 조사계에 넘겨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오른쪽 사진에서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은 지만원이 일명 ‘제71광수’ 황장엽이라고 지목하였는데, 해당 인원은 지만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광주시민이며 당시 도청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으로 확인되었다.<sup>44</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휘체계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과 질서가 유지되는 모습, 그리고 시민들에 의한 체포 활동이 찍힌 사진을 두고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침투했다고 하는 지만원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는 고등학교에서도 교련 과목을 편성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성인 남성 대다수는 군대 경험을 보유, 총기를 사용하는 것과 군대식 질서에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또한, 전남도청으로 잡혀가는 사람이 찍힌 사진들을 근거로 시민이 시민을 체포할 수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4 판결」(2022.02.16.), 이후 상고가 기각되어 2023.1.12.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없으니 그들은 북한군이었다는 지만원의 주장은 당시 실제로 시민들에 의해 조직된 전남 도청내 조사 부서에서 간첩과 계엄군 첩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조사하였다는 진술과 증언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 8) 민간 총상 사망자의 75%가 무기고 총기에 사망했다는 주장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으로 등록된 사망자 154명 중 총상 사망자 117명의 75%에 해당하는 88명이 무기고 총에 의해 사망했다면서, 그 근거로 『계엄사』 154쪽과 안기부 보고서 95~103쪽을 제시하였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민간인 사망자의 사인은 발표의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다르다.

1982년 육군본부가 발간한 『계엄사』는 민간인 사망자 162명의 사인을 M1, 카빈 117명, 타박사 18명, 수류탄 파편상 12명, 자상 11명 등으로 분류했다.<sup>45</sup> 1985년 국방부는 민간인 사망자 166명을 총상(M16 29명, 카빈 37명, 기타(총상)67명, 타박사 15명, 차량사 8명, 자상 8명 등으로 분류했다. 1988년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보고서 요지」는 민간인 사망자 165명 중 총상 사망자 133명을 M16 총상 98명, 카빈 총상 28명, 기타 총상 7명으로 분류했다. 5·18민주화운동 직후 1980년 검찰의 검시현황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 165명 가운데 M16 사인이 96명, 카빈 26명, 기타(총상)9명, 자상 4명, 타박사 18명 등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사망자에 대한 검시는 부검 체계의 한계, 시체의 부패 진행 등의 사유로 인해 정확한 사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총상의 경우 사입구와 사출구의 크기는 피격 거리, 직격탄인지 유탄인지 여부, 피격 부위 및 각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입구와 사출구의 직경만으로 가해 총기의 종류를 판단한

45 육군본부, 1982

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의 부검이라고 보기 어렵다.<sup>46</sup>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사인이 카빈이면 광주시민에 의한 총격으로, 사인이 M16이면 계엄군의 총격으로 간주해 논란이 됐다.<sup>47</sup>

검안 당시 판단기준은, 검안의가 사입구와 사출구의 크기를 재어 ① 사입구에 비해 사출구의 크기가 큰 경우와, 사입구만 확인되는 경우, 사입·사출구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으나 손상 부위가 큰 시체는 M16으로 구분하고, ② 그렇지 않은 시체들은 카빈, ③ 둘 다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sup>48</sup> 또 M16 사망자의 경우 앞쪽에서 맞으면 군에 대항하다가 맞은 것으로 하여 ‘폭도’로, 반대의 경우에는 ‘비폭도’로 분류되었다.<sup>49</sup>

5·18조사위는 사망 원인에 따른 사망자 현황이 서로 다른 가운데 신군부의 주장처럼 카빈 총상은 계엄군과 무관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검찰과 군 검시조서를 분석했다. 1988년 검찰은 「광주사태 변사체 검시보고서 요지」에서 카빈사망자를 28명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일부 비대상자를 포함한 오류가 있는 통계로서, 5·18조사위는 검시기록상 카

46 1980년 5·18 당시 검시에 참여했던 검시의사 및 검시 검찰, 국방부 법의학자, 총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는 “총창에서 사용 총기의 구분은 단순히 사입구의 크기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며, 사망 상황, 발사거리, 사입구의 크기와 모양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과거 폭도 및 비폭도로 구분할 때의 판단기준이 법의학적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향후 재분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자문했다. 또 사입구로 M16이나 카빈총을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거 폭도 및 비폭도의 판단기준은 법의학적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총기 분류는 (새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023.09.07./12.04)

47 서울지방검찰청, 사망자 심사 소위원회 경과보고, 1980. 6. 20., 보안사, 사망자 심사보고, 1980. 폭도-비폭도의 구분은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었다.

48 검찰 검시기록상 총상에 의한 사인은 M16과 카빈 외에 기타(총상)으로도 분류되었다. 기타(총상)으로 분류된 총기의 종류도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이 M60 사격을 하였거나 배치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 수사결과와 5·18조사위가 확보한 계엄군의 진술, 그리고 M60 실탄과 카빈 실탄의 제원(7.62mm)이 같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카빈(M16 포함)사망자 중 M60에 의한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9 서울지방검찰청, 「문형배 진술조서」(1995.06.21.), 「참고인 문형배 진술조서」(2022.01.28.). 당시 검안의사 문형배는 “총상의 종류까지 판단해달라는 검찰측의 요구에 정확한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였으나, 최대한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위 기준으로 분류했다. 당시 안기부는 최대한 폭도의 수를 늘리려 하였고, 저와 민간측은 비폭도의 수를 늘리려 애를 썼다.”고 말했다.

빈사망자를 26명으로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사인을 살펴보았다.

사망 원인이 카빈으로 분류된 최승희는 5월 21일 총상을 입고 13:15분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이때는 계엄군과 무장시위대와의 교전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각이다. 비슷한 시각 총상을 입고 ‘14:00 기독교병원 사망’이라고 기재된 조사천도 사인이 카빈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조사천의 경우 유품속 총알 파편에 대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감식결과 M16 총알 탄피로 확인됐다.<sup>50</sup>

이성귀는 5월 21일 09:00~13:50분 사이 전남대정문앞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뒤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이학부건물 뒷산에 암매장되었다가 다음날 학교 직원들에게 발견되어 도청으로 옮겨졌다. 군 검찰관 김이수는 사망자 검시내용을 기록한 수첩에 ‘두부손상에 의한 뇌손상 M16’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군 참여결과보고는 이성귀의 사인을 처음에는 ‘카빈-폭도’에서 ‘비폭도로 추정’으로 정정했고, 최종 사인은 ‘기타 총상’에서 ‘카빈’으로 정정하였다. 5월 20일 자정을 전후 광주역 인근에서 사망한 김재화는 처음에는 M16 사망으로 분류됐는데 검시조서상 ‘신역광장 총상 5. 21. 00:00 노광철 의원 사망’ 기재돼 있고, 군참여 결과 보고에는 ‘근접사로 인한 M16’으로 기재돼있다. 당시 시위대의 무장시기 등을 감안하면, 김재화는 M16 사인으로 판단되나 검찰은 최초 M16사인을 카빈으로 정정했다. 검시조서는 물론 군 작전기록에서도 계엄군에 의한 피격 사실이 확인된 사례도 카빈으로 분류되었다.

5월 20일 광주역 일대에서 계엄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발포로 사망한 김재화·김만두도 카빈 사인으로 분류되었다.<sup>51</sup> 5월 21일 광주교도소 인근 호남고속도로상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피격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규석, 임은택 등의 사인을 카빈에 의한 총상으로 분류하였다.<sup>52</sup>

50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국과-1530-총기폭발물과-23-52, (2023.11.13.)

51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7.18.),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52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광주교도소 작전내역)에 5월 21일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제3공수여단에 의한 두사람의

5·18조사위는 카빈 사망으로 분류된 희생자의 사망 시간, 사망 장소 등을 종합하여 사망 경위를 재구성하였고, 사망 당시의 상황과 목격자 진술, 시체검안서 등을 종합하여 김만두, 김재화 등 24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사망자 관련 금속유품 총알 파편 감식결과 M16 총탄으로 확인된 조사천을 포함한 25명의 사인을 모두 M16으로 판단(추정 포함)하였다. 다만 5·18조사위는 김광복의 사인을 카빈으로 판단하였다.<sup>53</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5·18조사위 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기고 총기로 추정되는 카빈 소총에 의한 사망자는 1명으로, 총상 사망자 117명의 75%에 해당하는 88명이 무기고 총에 의해 사망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 나. 5·18 당시 북한군의 남한 내 활동 관련 주장 검증

### 1) 당시 합참의장이 전남 해안을 비워줬다는 주장

지만원은 류병현 전 합참의장 회고록 내용을 근거로 광주에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 일반 민간인들이 대거 올 수 있었던 것은 군이 전남 해안을 비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5·18조사위에서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지원단 TF의 도움을 받아 해군전력 변산반도 이북 이동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였다.

피격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군 검시참여결과보고」에는 ‘광주로 수금왔다가 담양 자택으로 귀가중 총격으로 사망’이 기재되었다.

53 전남대병원 응급환자기록지(5월 22일)에 ‘공용터미널에서 오후 10시경에 시민의 총에 의해 피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6-1-6〉 『류병현 회고록』과 『무등산 진달래 475송이』 내용 비교

『류병현 회고록』
나는 광주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진력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무장공비들은 과거 주로 변산반도에 상륙해 광주, 지리산 지역으로 침투했다. 따라서 해군참모총장에게 각별히 부탁해 해군의 가용(可用)한 전력(戰力)을 변산반도 쪽으로 돌려 이북의 특전부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sup>54</sup>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류병현은..... ① 5.18 직전 ② 전남 해안을 경비하던 해군 병력을 전북 변산반도 이북으로 이동시켰다는 사실을 밝혔다. ~ 결론적으로 ③ 5.18 직전의 전남해안은 그야말로 북한에게는 무인지경의 앞마당이 되었던 것이다. <sup>55</sup>

위 고딕으로 강조된 부분을 보면 지만원은 류병현 회고록의 원문인 “가용 전력을 변산반도 쪽으로 돌려 이북의 특전부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를 전혀 다른 의미인 “해군 병력을 전북 변산반도 이북으로 이동시켰다”로 오해 또는 왜곡하여 인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5·18조사위에서는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류병현 회고록에 대한 지만원의 주장 ①②③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① “5·18 직전”이라는 시점에 대한 검증이다. 류병현 합참의장은 회고록에서 “나는 광주사태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진력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해군참모총장에게 각별히 부탁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해군의 가용 전력을 변산반도 쪽으로 돌리도록 지시한 시점이 5·18 이후라는 것을 시사하는 문장이다. 또한, 해군 기록물 조사를 통해 당시 합참의 해군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는 5·18 직전이 아닌 5월 27일 또는 그 이전의 근접한 날짜에 내려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때에도 해군 전력의 “변산반도 이북 이동”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54 류병현, 『류병현 회고록』, 조갑제닷컴, 2013, 453쪽.

55 지만원,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도서출판 시스템, 2020, 87쪽.



〈그림 6-1-10〉 80년대 전남·북 책임해역

다음으로는 ② 변산반도 이북 해역의 경계 강화시 전남·북 해역을 책임지고 있는 3해역사령부 전력만을 투입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 검증하였다. 당시 해군 문헌에 대한 조사 결과, 1980년대에는 군산을 기점으로 북쪽 해역은 5해역사에서, 남쪽 해역은 3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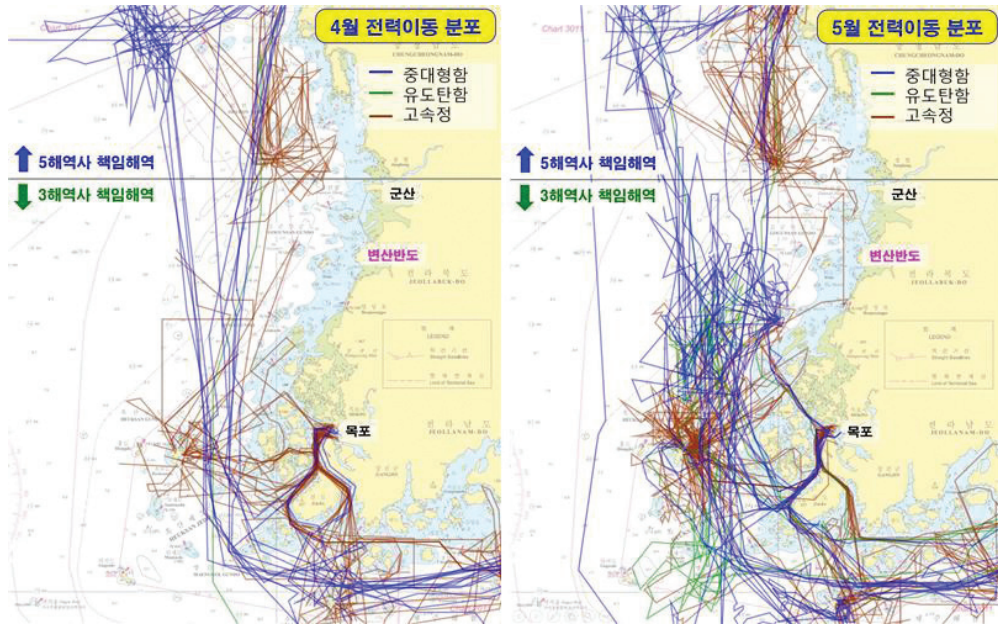
사에서 담당하였으며 경계 강화시 담당 해역사 전력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③ 3해역사 전력이 투입되었다면 “순 전력”이 변산반도 근해로 이동하였을 때 나머지 책임 해역을 무인지경으로 비웠을 것인가에 대해 검증하였다. 조사 결과 당시 3해역사의 책임 해역은 전남·북 해안을 연한 해상이었으며, 책임 해역 대부분이 북한 간첩의 활용 빈도가 높은 침투해역임이 익히 알려져 있어 모든 전력을 변산반도 근해로 투입하여 나머지 책임 해역을 비웠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작전개념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해군 『작전경과보고서』 제40권(1980년)에 나온 월별 경비전력 현황과 고속정 대침투 경비작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해역사별 경비전력의 현저한 증감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1980년 해군사를 통해 5·18 이전인 4월에 3척의 경비전력이 추가되는 등 오히려 그 이전보다 전력이 보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80년도 상황장교 일지의 기록 내용을 조사한 결과 1980년 4~5월중 해군의 해상경비작전은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으며, 5월 28일에는 기동단대가 편성되어 어청도~제주서방 이르는 해역에 대해 특별경비가 실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1980년 4 ~ 5월 3·5해역사 경비함정 47척의 항박일지 80권을 분석,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한 3·5해역사 전력의 이동현황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항박일지의 일자별 항해 정보를 이용, 해도(海圖)에 항적을 표시하여 5월 18일 전후 해군 경비작전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아래 그림은 항박일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1980년 4~5월 월간 해상 전력의 이동 분포를 해도에 표시한 것이다.



〈그림 6-1-11〉 1980년 4~5월 월간 전력 이동 분포

그 결과 5·18민주화운동을 전후로 한 3해역사의 함정 운영은 기동단대 운영 외 특이 사항이 없으며, 경비전력은 특정 구역에 편중되지 않고 책임해역(전남·북 해상) 전반에 걸쳐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기록자료, 해군함정 항박일지 분석결과 1980년 4~5월중 3·5해역사 함정은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경계작전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3해역사 함정의 전남 해역에 대한 경비 공백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고 1980년 4월 부대창설 및 경비전력 증강으로 오히려 전남해역에 대한 경계작전 능력은 더욱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류병현 장군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합참의 해군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는 한국함대에서 예하부대에 기동단대 운영 지시가 하달된 5월 27일 또는 그 이전의 근접한 날짜로 추정되며, 지만원의 “5·18 직전 해군 경비전력이 전남해안을 비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2) 600명 단위 사복 별동대의 작전활동 주장

## ① 1995.7.18. 검찰이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92-93쪽

○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00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짚차 등 지휘용 짚차 14대를 탈취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 1명이 失蹤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負傷을 입었으며, 09:00경

- 92 -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명이 아세아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장

## ② 1985.5. 안기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 현황] 40쪽

14:25	유동 3거미	○ 학생 300명	
	광주공원	○ 학생 300명	각 시위전개

〈그림 6-1-12〉 지만원이 인용한 남한 문서의 “300명 + 300명” 기록

지만원은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가 발표한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 및 1985년 안기부가 작성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 현황」에 나타나는 “300명 단위



2개의 부대”가 1982년과 1985년 북한이 발행한 자료의 “600여명으로 구성된 폭도군중의 한 집단” 및 “600여명의 광주학생시민들”과 일치한다면서 이들이 (북한 특수군) 작전 병력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북괴가 1985년에 발행한 [광주의 분노] 35쪽

600여명으로 구성된 폭도군중의 한 집단은 피혁군 제199지원단 제1훈련소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술한 무기를 탈취하였고 지원동 석산의 독립가옥에 보관되어있는 많은 폭약과 퇴관들을 빼앗아내었다.

④ 북괴가 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595쪽

5월 26일 600여명의 광주학생시민들은 <도청>지하실에서 최후의 항전을 선언한데 이어 남조선에 와있는 미국대사 클레이스민에게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내정불간섭>이라는 구실밑에 그

〈그림 6-1-13〉 지만원이 인용한 북한 문서의 “600명” 기록

그러나 지만원의 이러한 주장은 남한의 자료에서 “300명 + 300명”이 나온 부분을 찾아 북한 자료에 있는 “600여 명”과 연계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만원은 숫자가 단순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만원의 교도소 습격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1980년 5월 21일 야간 교도소에 5차례에 걸쳐 파상공격을 감행한 후 475명이 사망했어야 하는데<sup>56</sup> 그렇다면 위 그림의 북한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5월 26일에 600여 명이 전남도청 지하실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주장은 주장 그 자체는 물론이고 지만원의 다른 주장과도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인과성이 떨어지고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56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55~56쪽.

### 3) 20사단 이동정보 획득 후 매복기습 및 장갑차/군용트럭 300여대 탈취 주장

20사단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과 관련한 지만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제 용병급 부대 300명이 극비사항에 속하는 현역 사단의 이동 계획을 입수했다. 20사단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5월 21일, 08:00 정각에 통과한다는 정보였다. 극비의 이 정보는 20사단 작전참모부와 광주에 소재한 전투교육사령부(전라도 지역 계엄사령부)의 작전참모실만 공유한 정보였다. 이 정보를 북괴 간첩에게 유출한 내부 간첩은 이 두 개의 부서중에 있었을 것이다.

극비의 부대이동 정보를 빼내서 매복할 장소를 선택한 사실, 거기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매복한 사실, 무장한 상태로 사단장용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와 군용트럭 34대를 타고 이동하는 정규군 부대를 상대로 감히 습격 작전을 감행한 사실, 무장한 현역 부대원들을 혼비백산시켜 차량 모두를 탈취한 사실, 그 차량들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유유히 행군한 사실, 또 다른 곳에서 대형버스들을 타고 온 또 다른 300명의 특수군과 09시에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합류하여, 철조망이 쳐진 높은 망루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있던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군납업체를 점령한 사실, 자가용 시대도 아닌데 374대의 군용트럭을 몰고 나간 사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생산되어서 운전매뉴얼을 숙달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는 최신형 장갑차 4대를 운전하고 나간 사실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음미할 필요가 있다.<sup>57</sup>

5.21. 아침 08:00시 정각에 300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시위대’가 광주 톨게이트에 매복해 있다가 이동 중인 20사단 사령부에 기습공격을 가했습니다. 군의 이동 계획은 극비 중 극비입니다. 그런데 이들 300명은 20사단 차량부대가 08:00시에 광주 톨게이트를 정보를 입수하고 매복하였다가 08:00시 정각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달랑 막대기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막대기 하나씩을 가지고 총을 든 부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습격을 받은 20사단 사령부 병사들은 이들의 몸놀림에 혼비백산 흩어졌습니다. 감히 어느 나라 대학생들이 300여 명의 세력을 형성하여 감히 극비 중의 극비인 ‘부대 이동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매복까지 하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300명의 대학생들은 사단장 지프차 1호차를 포함해 무전기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14

57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대의 지프차를 탈취해 위용을 자랑해 가면서 곧장 군용차량을 생산하는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sup>58</sup>

### 가) 제20사단 지휘부 차량 피탈 사건 조사결과

제20사단 지휘부 차량은 1/4톤 지프차 15대로 5월 21일 02:30 용산역에서 고속도로로 이동, 광주 도착시간은 08:10경이었으며, 차량을 열차편으로 이동하기 곤란하여 이승식 군수참모가 육로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고,<sup>59</sup> 화학지원대장 김이영이 지프차에 선탱, 육로로 이동하였다. 인원은 운전병 각 1명, 선탱 인원 각 1명 등 총 30명이었다.<sup>60</sup>

그런데 5월 21일 새벽부터 시위대가 공단 입구에 모여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는 보고가 전교사로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그곳에 모인 시위대 숫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불어나 07:30경에는 2,000명이 이미 넘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05:52 (첩보) 공단 입구에 모닥불을 피우고 군인과 대치”- 「전교사 정보일지」

06:30 공단 입구 도로 차단”- 「전교사 총정작전 결과」

06:50 공단 입구에 400여 명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도로 차단”- 「전교사 정보일지」

07:30 광주공단 2,000명이 바리케이드 및 장애물 설치하여 아스팔트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르고 있음.(20사단 출동 병력 복귀)”- 「전교사 작전일지」

한편 제20사단 차량 피탈 이전, 전교사 제1118야전공병단 소속 185대대가 광주에서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공단 입구에서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차량과 화기를 피탈당했

58 지만원, 2014. 『5·18분석 최종보고서』, 도서출판 시스템.

59 5·18조사위, 20사단 군수참모 「이승식 진술조서」(2023.04.04.), “용산역에 도착하니 육군본부 이동관리 처장이 나와 있었고, 말하기를 열차편성을 해놓았으니 도착하는 순으로 곧바로 출발하라고 하여, 61연대와 62연대가 대대별로 용산역으로 도착하는 대로 광주로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연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광주로 이동할 지휘부 차량 12대를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화학대장 김이영 소령에게 지휘하여 광주로 가라고 지시하고, 사령부는 마지막 편으로 용산에서 광주로 이동하였습니다.(군수참모 이승식은 15대가 아닌 12대로 기억하였음)

60 제20사단 화학지원대장 「김이영 검찰 진술조서」(1995.04.22.), 김이영은 사망하여 대인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185세대장(이명재 중령)은 21일 07:00 철수 실시. 시민들은 이미 폭도화되었고, 광주공단 입구 사거리에 왔을 때 많은 시민들이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 이미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음. 부대가 차량을 멈추고 바리케이드 철수를 위해 하차를 실시하려고 할 때 많은 무장 시민들이 쇠파이프 및 각종 흉기를 들고 무자비하게 차량으로 탑승을 기도하면서 병사들을 구타하였음. 군 피해사항: 엠브란스 1대, 짚 2대, 카고 1대 등 4대의 차량과 개인화기 2정, 엠프 2셋을 피탈 당했고 부상병 2명이 발생했음”- [80년 부대사 - 1관구 사령부],「1118 야전공병단 연대기」

또한 기차편으로 송정리에 04:00경 도착한 제20사단 61연대는 작전지시에 따라 상무대에서 광주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 공단 입구로 진출하였으나, 08:00경 도로를 차단하고 있던 시위대 때문에 다시 부대로 복귀하였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08:00 광주시 공단 입구 일원으로 소요 진압차 61연대 출동했으나 소요 군중의 과열된 소요로 진압작전 불가 복귀(인원 82/ 1,413명, 차량 40대). 집결 소요 군중 2,000명으로 극도로 흥분된 상태이므로 61연대장이 소요 군중 대표자와 대담을 통해 공수부대와 같은 방법의 진압작전이 불가함을 판단하고 복귀를 사령관에게 건의 승인하 복귀” - 보병 제20사단, 「충정작전 상보」

위와 같이 5월 21일 07:00 이전 광주공단 입구 농성동 사거리에 이미 2,000여 명이 넘는 시위대와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은 그 전날 공수부대의 유혈진압과 사상자 등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제20사단 지휘부 차량과 접촉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산을 출발한 제20사단 지휘부 차량 15대는 호남고속도로 정읍 부근에서 헌병대 차량이 고장나 14대만 광주톨게이트에 진입하였고, 그 시각이 08:10 경이었다. 차량 행렬이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공단 입구 농성동 사거리에 근접했을 때는 이미 시위대와 인근 주민 수천 명이 운집해 있었으며, 전교사로 가는 길목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다. 차량 행렬은 군중들을 헤치고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흥분한 군중들에게 차량과 장비 등을 피탈 당하고 몸만 빠져나와 11:00경 전교사에 도착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당시 차량 행렬에 있었던 계엄군들의 진술, 그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위대의 진술을 종합하면, 흥분한 시위대가 계엄군에 대한 증오로 차량 행렬을 공격하였으나, 생명을 해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만원의 주장대로 북한특수군이 이러한 행위를 계획적으로 했다면, 계엄군을 그대로 보내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차량을 시위대가 운전하도록 놔두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20사단은 광주에서의 작전이 완료된 후 작성한 「보병 제20사단 충청작전 상보」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전교사의 안내병 배치 미실시에 따른 작전 실수로 판단하였다.<sup>61</sup>

08:10 지휘차량 육로이동 광주시 공단 입구 도착시 차량 1/4톤 14대 피탈, 인원 2명 부상, 1명 실종(실종자 1명 이후 생존 확인 62연대 상병 박윤수), 잔류 25명 12:00경 탈취 복귀<sup>62</sup> - 서울 출발 직전 사단 군수참모가 3군 군수참모에게 지휘용 차량 14대가 육로 이동하니 CAC 군수참모에게 통보를 요청, 3군 군수참모가 전교사 군수참모에게 전달했으나, 전교사에서 안내병 배치 미실시로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광주 시내에 진입하셔서 발생됨

그러나 당시 제20사단 군수참모 이승식은 5·18조사위 진술조사에서 용산역에서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화학지원대장 김이영에게 지휘부차량 이동을 명령했다고 했고, 사고 후 전교사 군수참모가 지휘부 차량용으로 사용하라고 각 학교 차량을 12대 정도를 지원해

61 제20사단, 「보병 제20사단 충청작전 상보」, 1980.

62 ‘탈출 복귀’의 오타로 보임

줬다는 사실만 진술하였다.<sup>63</sup> 만약 이승식이 위 「보병 제20사단 충청작전 상보」의 기재 내용처럼 3군 군수참모에게 지휘부 차량의 별도 이동을 통보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작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군수참모 이승식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술조사를 받았던, 사단장 박준병, 61연대장 김동진, 62연대장 이병년, 61연대 1대대장 정영진, 2대대장 김형곤, 62연대 2대대장 이종규, 3대대장 유효일, 61연대 2대대 6중대장 김광택, 61연대 1대대 1중대장 조치규 등은 사단 지휘부 차량 피탈 사실을 전해 들었지만, 전교사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급은 일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5·18조사위의 제20사단 소속 계엄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 5월 21일 06:00를 전후하여, 이미 공단 입구에 시위대가 모여 모닥불을 피우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는 정보가 전교사 등에 보고되고 있었고, ▲「전교사 작전일지」 등에 따르면, 공단 입구의 시위대 때문에 제20사단 병력이 광주 시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복귀했다는 것도 전교사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당시 제20사단 지휘부 차량이 휴대한 통신기기의 성능 등을 감안해 보면 이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전교사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채 공단 입구로 진입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sup>64</sup> 따라서 지만원이 주장하는 “극비 중의 극비인 ‘부대 이동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매복까지 하면서 기습공격을 감행했다”는 주장은 ▲ 당시 계엄군 부대간의 통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 존재하지도 않았던 지휘부 차량의 부대 이동정보를 감청했다며 북한특수군의 능력을 과대포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3 5·18조사위, 「이승식 진술조서」(2023.04.04). 이승식은 3군사령부 군수처장에게 문의하여 차량, 통신 등 필수 물품만 챙겨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차량이동은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화학대장 김이영 소령에게 지시하였으며, 사건 이후 전교사 군수참모 문대령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였다니 전교사 지휘차량 12대를 지원하여 주었다고 하였다.

64 당시 제20사단 피탈장비에 P-77(PRC-77) 휴대용 무전기(통달거리 8km) 및 V-46, V-47 차량용 무전기(통달거리 40km)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서울 - 광주간의 수백 km를 이동하며, 이 장비를 사용하여 전교사와 교신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 조사 결과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관련 군상황보고에 따르면, 지만원이 제20사단으로부터 탈취한 차량을 이끌고 아시아자동차로 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미 새벽부터 아시아자동차로 시위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6033부대 작전처 상황일지」에 따르면, 아시아자동차의 차량 피탈 보고의 최초 시점은 5월 21일 09:00경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0사단 지휘차량 인솔자인 화학지원대장 김이영은 동일 08:10경 농성동 사거리에서 접근했다고 하는데, 시위대의 공격과 차량 탈취는 그 이후 진행된 상황이다. 따라서 09:00에 차량이 탈취되었다는 전교사(6033부대)의 상황보고는 상황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북한특수군이 08:10(인솔자 화학대장 진술에 따른 농성동 도착 시간)에 제20사단 차량 공격을 시작하여 차량과 무기를 탈취하고, 아시아자동차에 도착한 후 직원들을 위협하여 장갑차가 있는 건물을 찾아내 차량 7대를 탈취 후 공장을 09:00 이전에 나오기까지 1시간 내에 모두 성공했어야 하므로, 한 무리의 무장집단이 이 짧은 시간 내에 두 개의 작전을 연달아 수행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만원의 “철조망이 쳐진 높은 망루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있던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군납업체를 점령한 사실”이라는 주장은 당시 국보위의 조사단원 13명이 7일간 조사한 「광주사태 진상조사 보고」를 살펴보면 기관총 경비병 등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 보고서는 정보 판단 미흡의 대표적 사례로서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을 적시하며, “징후가 없는 승전전문대(崇田專門大)에 병력 배치하면서 인접 방산업체(중요시설 가급)인 자동차공장 미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65</sup> 이로써 애초에 기관총 경비병 등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만약 지만원의 주장대로 아시아자동차에 만약 제31사단 경비병력이 경계하고 있었다면, MBC 방화 사건 때처럼 전교사 상황실 등에 경계병력 철수 등의 보고가 올라와야 하고, 각

65 <국보위 조사단>, 「광주사태 진상조사 보고」, 1980. 9쪽. 그리고 위 승전전문대는 승원전문대의 오기로 보임.

종 상황보고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어야 하지만 관련된 기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한편 지만원은 당시 광주시민 중에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된 최신형 장갑차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장갑차를 탈취한 것은 특수 훈련을 받은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5·18조사위가 아래와 같이 이 차량을 운전해 본 군인과 민간인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즉시 운전이 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운전방법을 익힌 후에는 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하던 장갑차는 CM6614였다. CM6614 장갑차는 이탈리아의 피아트사에서 생산한 차륜(바퀴)형 장갑차로 1970년대 중반 우리 군이 북한의 특작부대 침투 대비와 수도권 방어를 위해 도입하였다. 국내에서 면허 생산된 CM6614 경장갑차는 KM900이라는 제식명칭이 부여되었고, 도로에서 최고 시속 100km를 낼 수 있었으며 도심지 작전과 기지방어용으로 사용되었다.<sup>66</sup>



〈그림 6-1-14〉 CM6614 장갑차(전쟁기념관 소장)

66 「KM900 경장갑차」, 전쟁기념관, <https://archives.warmemo.or.kr>,





〈그림 6-1-15〉 CM6614 장갑차 조종석(전쟁기념관 소장)

CM6614 장갑차는 궤도형 장갑차와는 달리 조작계통이 핸들, 기어, 가속페달, 브레이크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차량과 똑같이 운전할 수 있는 장비였다. 5·18조사위는 실제로 당시 9전차대대 본부중대 인원들을 조사한 결과 운전면허가 있는 병력에게 연병장에서 몇 번 운전 연습을 시킨 다음 운행하였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탈취한 장갑차를 운전했던 무장시위대 조남재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제20사단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사건과 관련한 지만원의 주장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지만원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개인적 추정임을 확인하였다.



〈표 6-1-7〉 제20사단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 관련 주장 검증

지만원의 주장	확인된 사실
극비사항에 속하는 현역 사단의 이동 계획을 입수했는데, 20사단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5월 21일, 08:00 정각에 통과한다는 정보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0사단 지휘부 차량 이동은 용산역에 있던 군수참모가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화학지원대장 김이영에게 지시</li> <li>차량 15대가 출발하였으나, 남원 인근에서 차 한 대가 고장나 시간이 지체되었고, 또 14대가 08:00 정각에 광주톨게이트 통과한다는 정보 자체가 애초에 없었음</li> </ul>
극비의 부대이동 정보를 빼내서 매복할 장소를 선택한 사실, 거기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매복한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위대 수백~수천 명이 이미 공단 입구에 새벽부터 불을 피우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였으므로, 매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전교사 등에 계속 상황보고가 되고 있었음</li> <li>이미 07:00경 제1118야공단 185대대가 공단 입구에서 차량과 소총이 피탈 당한 보고가 있었는데, 따라서 지휘부 차량을 공격하기 위한 매복은 근거가 없음</li> </ul>
무장한 상태로 사단장용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와 군용트럭 34대를 타고 이동하는 정규군 부대를 상대로 감히 습격 작전을 감행한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용트럭 34대는 사실 날조</li> <li>정규군 부대라고 하지만, 실탄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30여 명이 수백 명을 방어하기가 불가능했음</li> <li>당시 현장에서 계엄군들 모두 돌과 각목 등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북한특수군이었다면 살상을 했겠지만, 시위대 중 일부는 오히려 보호해줬음</li> </ul>
무장한 현역 부대원들을 혼비백산시켜 차량 모두를 탈취한 사실, 그 차량들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유유히 행군한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 모두가 피탈된 것이 아니고 상당수는 전복되거나 도랑에 처박혀 운행 불가 상태였음</li> <li>한 시간도 안 되어 제20사단 차량 피탈과 이동 후 아시아자동차 피탈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추론임</li> </ul>
철조망이 쳐진 높은 망루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있던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군납업체를 점령한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자동차에 높은 망루와 기관총을 설치했다는 사실은 근거로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곳을 공격한 시위대 그 누구도 총기를 든 경비병 목격 증언이 확인되지 않음</li> </ul>
최신형 장갑차를 광주의 일반인들이 운전할 수 없었다는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시 시민들이 탈취한 CM6614 경장갑차는 조작 방법이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약간의 연습만으로 조종이 가능했음</li> </ul>

#### 4) 북한군에 의한 무기고 탈취 주장

2002년부터 5·18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은 2014년 『5·18분석 최종보고서』에서부터 5·18은 광주·전남 지역민으로 구성된 어떠한 시위대도 없었고, 오직 북한특수군 600명과 그들에 놀아난 10대 중고생과 20대 부나비들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만원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특수군 600여 명은 광주사태 수개월 전부터 전남지역 전체를 샅샅이 뒤져 17개 시군에 위장하여 꼭꼭 숨어 있던 무기고 44개를 찾아내 약도 및 구조도면을 준비하였다. 북한특수군 300명은 5월 21일 08:00 극비리에 이동하던 20사단 지휘용 차량을 광주 톨게이트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하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가 차량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300여 명이 합세하여 전남 17개 시군에 꼭꼭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로 곧장 달려가 낮 12시 나주경찰서 무기고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전역 무기고에서 무기를 동시에 숨썬 방법으로 탈취하였다.<sup>67</sup> 또 이들 600명은 8톤 분량의 TNT를 전남도청 지하실에 옮기고 포탄으로 조립하였다.<sup>68</sup>

이에 5·18조사위는 전남 일원의 무기고 피습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지만원의 주장을 전제로 조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위대가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전남 일원 무기고에서 4시간이라는 단시간 내에 동시에 무기를 탈취하였는지 여부, 둘째, 전문적이고 능숙한 수법으로 무기를 탈취했는지, 셋째, 전남도청 지하에 8톤 분량의 군용 TNT 설치 여부, 넷째,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자가 북한군이었는지를 확인하였다.

#### 가) 시위대가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전남 일원 무기고에서 무기가 4시간 만에 동시에 피탈되었는지 여부

[시위대의 군부대 및 무기고 위치 사전 정탐 여부]

1980년 당시 군과 정보기관에서 파악한 시위대 동향에서 시위대가 무기 탈취 이전에 무기고에 접근한 보고는 없었으며, 경찰기록 역시 시위대의 무기 탈취 이전 무기고 정찰 보고는 없었다. 시위대가 군부대에 접근했다는 군과 정보기관 보고는 담양 창평, 화순,

67 지만원, 『5·18분석 최종보고서』, 도서출판 시스템, 2014, 27-28 및 69쪽.

68 지만원, 『5·18분석 최종보고서』, 도서출판 시스템, 2014, 29쪽.

함평, 목포이며, 해남 군부대 접근은 해남경찰서(『폭도침입상황』)에서 파악되었다. 창평 예비군훈련장은 시위대가 간다는 첩보였고, 나주훈련장은 발포 소리 청취 보고였다. 그리고 화순읍 714예비군대대(5월 21일 저녁)와 함평 예비군대대(5월 21일 23:25), 해남(5월 21일 19:30)의 경우는 시위대가 무장을 요구하며 부대에 접근하였다는 보고였다.

#### [전남 일원 무기고 4시간 만의 동시피탈 여부]

5·18 당시 전남 일원의 무기고에서 무기는 5월 21일 일시에 피탈되지 않았고, 지역시위대에 의해 5월 23일까지도 피탈되었다. 지만원이 5월 21일 12:00 피탈을 주장하는 나주경찰서 무기고는 5월 21일 14:00에 피탈되었다. 지역 내에서 가장 먼저 피습된 무기고는 광주와 연결된 지방도로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이 있었다. 한편 나주지역에서 합류한 시위대는 영암으로, 영암에서 합류한 시위대는 강진, 해남으로 진출하는 등 인근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하면서 무기고가 피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무기고 습격 직후 광주공원 집결 사전 계획 여부]

지만원은 북한군이 계획적으로 무기를 탈취하고 광주공원으로 집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광주공원은 시위대가 경찰과 공방전을 벌이던 5월 18일부터 시위대가 운집하였던 장소였다. 계엄군과 대치하던 금남로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는 광주공원이었다. 단적으로 광주공원이 계엄군의 작전에 편입된 시기는 제7공수여단 35대대 12지역대가 배치된 5월 20일 11:20~21:50뿐이었다. 따라서 5월 21일 지역에서 무기를 탈취해서 광주로 진입한 시위대가 도청 인근 광주공원으로 집결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나) 시위대가 전문적이고 능숙한 수법으로 무기를 탈취했는지 여부

### [아세아자동차공장 차량 탈취 후 전남 일원 즉각 출발 여부]

시위대가 광주 톨게이트에서 20사단 지휘용 차량을 공격해 탈취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은 사건 발생 장소부터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5월 21일 08:10 20사단 지휘용 차량은 광주 톨게이트가 아니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공단 입구에서 시위군중과 충돌한 것이었다.

5월 21일 오전 아세아자동차공장 차량은 일시에 피탈되지 않고 여러 차례 피탈되었다. 1980년 5·18 당시 군과 정보기관은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피탈된 차량이 금남로, 도청 인근으로 가 시위하였으며, 주민들을 금남로 시위 장소로 운집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시위대 동향을 보고하였다.

지만원은 아세아자동차공장 차량 탈취 후 전남 일원으로 진출한 수많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광주에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5·18 당시 광주시의 피해조사에 따르면 아세아자동차공장 피탈 차량 414대를 포함해 피해 집계가 1,299대에 이르렀다.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버스가 가장 많았고 화물차도 많았다. 피해 집계 중 일반재산 영업용 367대, 자가용 175대는 당시 광주에 그만큼의 차량과 운전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 [시위대의 무기 탈취 방식]

시위대의 무기 탈취방식이 전문적이라고 하려면 무기고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전에 특수한 도구를 가지고, 능숙한 파괴 능력을 보여 순식간에 탈취했어야 한다. 무기고에 접근한 시위대는 금성동파출소, 해남경찰서와 같이 단독 건물의 벽을 차량으로 파괴하거나, 무기고 열쇠를 각목, 쇠파이프, 쇠파이프, 총으로 파괴하였다. 그리고 5월 22~23일 지역시위대가 지서 인근에 은닉된 무기를 탈취하거나, 은닉 중인 무기를 노상에서 탈취하기도 하였다. 시위대는 총으로 무장한 이후에는 개머리판을 이용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망치와 같이 공사장과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도구를 이용해 무기고 열쇠를 파괴하였다. 한편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하는 데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았던 점 등 전문적이라고 볼 만한 점이 없었다.

## 다) 전남도청 지하에 8톤 분량의 군용 TNT 설치 여부

### [전남도청 지하 8톤 TNT 설치 여부]

1980년 5월 24일 화순경찰서에 보고된 화순광업소 폭약 피해는 젤라틴다이너마이트 292.5kg(13상자), 도화선 6,000M 피탈이었다. 5·18 직후인 1980년 6월 광주지방검찰청과 치안본부의 조사자료, 그리고 1988년 광주지방검찰청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5·18 당시 폭약 피해는 화순광업소 13상자, 석산화약고 4상자 총 382.5kg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도청 다이너마이트를 해체한 사람은 있는데 조립자가 없으며, 광주시민들 중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지만원의 주장과 관련, 위원회는 과거 수사 및 재판기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실제로 폭발물을 조립했던 시민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전남합수단이 1980년 12월 4일자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보낸 피의자 박홍철, 차영철 등의 「의견서」 “피의자 박홍철, 피의자 차영철은 동가<sup>69</sup> 마루에서 도화선을 10센치씩 절단 뇌관과 접착 폭약에 꽂아 점화하면 폭발, 살상, 파괴될 수 있도록 각 1개씩 2개를 조작 소지하고, 피의자 이성전, 피의자 김종삼, 피의자 배봉현, 피의자 이선은 동부락 구순례 당 58세(여)의 집 마루에서 전기 공범 박홍철, 차영철과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폭약 20개 및 뇌관 등으로 16개를 전기와 같이 폭발물로 조작...”이라고 기록하였다.<sup>70</sup> 이중 박홍철은 화순광업소 광부였고, 차영철은 호남탄좌 광부였기 때문에 폭약에 대한 지식을 갖추

69 해당 문서에는 화순군 동면 장동리 칠동부락의 진장덕 56세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70 전남합동수사단(1980), 「의견서」(1980.12.34), 국회 기록보존소, 05-9700145-1988-9700145006549-00.

고 있어 위와 같이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었다.<sup>71</sup>

### 라)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자가 북한군이었는지 여부

1980년 5월 18일 00:00시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7월 말까지 5·18과 관련하여 총 2,522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 404명이 기소되었다. 기소자 404명 명부의 ‘죄목·범죄 개요’에 무기고 피습 관련 내용이 적시된 인원 62명은 전남 일원의 무기 탈취에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무기 탈취 관련자 62명의 1980년 조사기록은 이들이 주거지에 따라 광주에서 혹은 지역에서 시위대에 합류하고, 시위 과정에서 무기고 습격에 가담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또 기소자 62명의 공소장과 판결문은 시위 및 무기 탈취 과정에 다수의 성명 불상 시위대가 합류한 것을 보여준다. 무기고 피습관련자의 공소장은 시위참여 시간, 경유지, 해당 무기고 피습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데, 시위대 대부분은 무기고 습격 이전에 광주 시내와 지역 내에서 차량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5) 서울에서 온 연·고대생 600명은 북한군이었다는 주장

지만원 등은 5·18 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위장 침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침투한 북한특수군 규모가 600명이며 5·18 이후 광주·전남 일원에서의 소요를 부추기고, 특히 1980년 5월 22일 오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연고대생 환영식이 있었는데 이는 북한특수군 600명이 연고대생으로 위장한 채 그 존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다.<sup>72</sup>

이 주장의 근거는 광주광역시 치평동 소재의 「5·18민주화운동학생기념탑-기억의 통로」에 새겨진 “5월 22일(목) 15시 08분: 서울서 대학생 5백여 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

71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자료전집』, 풀빛. 「박홍철 증언 (증언번호 6035)」, 「차영철 증언 (증언번호 6027)」; 차영철(2020.07.28.), 진술녹취록.; 이상전(2020.08.07.), 진술조서.

72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124~127쪽.

이라는 문구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상「5·18 타임라인」에 게재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쟁점 ① 1980년 5월 22일 오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연고대생에 대한 환영식이 있었는지 여부
- 쟁점 ② 당해 환영식의 규모가 최소 5백 명 이상이었는지 여부
- 쟁점 ③ “5월 22일(목) 15시 08분: 서울서 대학생 5백여 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5·18조사위는 연고대생으로 위장한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980년 5월 22일 오후 서울권 대학생 환영식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먼저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의 상황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 대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후 시간 광장에 상당 인파가 몰려 있었고 별다른 행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 실종된 자식을 찾거나 시국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으로 누구나 분수대에 설치된 음향기기를 통한 자유로운 성토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서울권 대학생”, “연고대생”을 비롯한 특정 집단에 대한 환영식 종류의 행사순서는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5·18 관련 구술자료를 확인해 보았지만 최소 500명 이상 규모의 인파를 환영하는 식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진술은 물론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진술은 없었다.<sup>73</sup> 또한, 당시 군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기록에서도 환영식과 관련한 어떠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5·18조사위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진술과 군 관련기록을 종합하여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 광장의 시간대별 상황을 아래 표로 재구성하였다.

73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YMCA 『5·18 구술자료집』 및 5·18보상기록 종합



〈표 6-1-8〉 1980년 5월 22일 시간대별 전남도청 앞 상황

시간대	상황
오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수대 위 집회에서 “학생들은 남도예술회관 앞으로 모여달라”고 방송, 학생들이 모이자 도청 안으로 들어가서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조직.<sup>74</sup></li> <li>• 도청 부지사실에서 시민수습대책위 회의를 한 후 전교사로 이동하여 김기석 소장(전교사 부사령관)과 협상.<sup>75</sup></li> </ul>
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도들이 시가행진 및 방송을 통해 “14:00까지 모여라”, “국무총리와 담판하자”고 선동. (시민 1만명 운집)<sup>76</sup></li> </ul>
13: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청 앞 3만명 집결</li> <li>• 도청 앞 폭도들은 “일반인은 해치지 않겠다, 총 쫓기 하자”는 결의문을 마이크로 낭독하면서 평화적 시위를 선동.<sup>77</sup></li> </ul>
낮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기자, 영국 BBC기자,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기자 등 외신기자들을 만났음<sup>78</sup></li> </ul>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BC, 로이타, 요미우리 등 외신기자 3명이 전남도청 앞 광장 일대에서 소요사태의 이모저모를 취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일부 시위자들은 박수를 치며 이들의 취재 활동을 적극 돕고 있으며 “당신들이 보도를 잘해주어 우리를 대신해 달라”고 언동했다 함.<sup>79</sup></li> </ul>
15:00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8분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크게 벌어졌다는 동아일보 김영택 기자의 글에 대해) 환영식은 전혀 없었음. 그 시간대에는 별다른 행사 자체가 없었고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고 아들을 찾아달라, 공수부대의 만행에 대한 성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뿐임.<sup>80</sup></li> </ul>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청 앞에 집결한 30,000명의 시위자들은 다음과 같은 5개 사항을 결의하고 한안진 목사등 각계 대표 11명을 협상차 계엄본소로 파견했다 하며 이들은 동 요구 조건이 수락될 경우 무장을 해제하겠다고 언동하고 있다 함.<sup>81</sup></li> </ul>
16:3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교사 부사령관과) 협상이 끝나고 도청으로 복귀한 시각이 16시 반에서 17시 경이었음. 이종기 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저는 경과보고를 하였음. 저희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쫓기대회가 진행 중이었으며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였음. 쫓기대회 시작 시각은 15시경으로 알고 있음.<sup>82</sup></li> </ul>

74 5·18조사위, 「김중배 진술조서」(2023.07.27.)

75 5·18조사위, 「김창길 진술조서」(2023.12.21.)

76 국군보안사령부(1980),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전문」,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0 (MF 릴 번호 61877-1.1), 43쪽.

77 국군보안사령부(1980), 「광주사태 상황보고」, 고유번호 광주 383-1980-087 (MF 릴 번호 61867-1.3), 135~136쪽.

78 5·18조사위, 「김준봉 진술조서」(2023.7.26.)

79 국군보안사령부(1980), 「광주사태 상황보고」, 고유번호 광주 383-1980-087 (MF 릴 번호 61867-1.3), 140쪽.

80 5·18조사위, 「김중배 진술조서」(2023.7.27.)

81 국군보안사령부(1980), 「광주사태 상황보고」, 고유번호 광주 383-1980-087 (MF 릴 번호 61867-1.3), 140쪽.

82 5·18조사위, 「김창길 진술조서」(2023.12.21.)

시간대	상황
17:45	•도청 앞에 집결한 30,000여 군중(10,000명 구경꾼)들은 이종기(변호사) 대표가 계엄 당국과의 협상 결과를 마이크를 통해 발표하자 이에 호응, 총기류 자진 반납 도청에 적재하고 있고... <sup>83</sup>
저녁	•도청 정문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았더니 3~5명이 자신들은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인데 함께 투쟁하여야겠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음. 그러나 5백여명에 달하는 외 지인을 환영하는 행사는 없었음. <sup>84</sup>
20:15	•도청앞 군중들은 김정희(여, 30여세)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20:00 해산 시작. <sup>85</sup>

당시 광장에는 군중 3만여 명이 모여 있었고, 보안사의「광주사태 상황보고」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계엄 당국도 현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보고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대학생 500~600명을 환영하는 규모의 행사가 개최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진술이나 기록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날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서울에서 온 대학생 환영식”은 물론 최소 500명 이상 특정 집단에 대한 환영식이 개최되었다는 기록이나 진술은 찾을 수 없었다.

한편 5·18조사위는 기록조사를 통해 “서울에서 온 대학생” 또는 “연·고대생 600명”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아래 표는 관련 내용이 기술된 군 및 정부기관의 기록물들이다.

83 국군보안사령부(1980), 「광주사태 상황보고」, 고유번호 광주 383-1980-087 (MF 릴 번호 61867-1.3), 147쪽.

84 5·18조사위, 「김준봉 진술조서」(2023.7.26.)

85 국군보안사령부(1980), 「광주사태 상황보고」, 고유번호 광주 383-1980-087 (MF 릴 번호 61867-1.3), 159쪽.

〈표 6-1-9〉 서울권 대학생 또는 연고대생 언급 군 및 정부기관 등 기록물 내용

연번	기록물명	내용
1	505보안부대(1980), 「광주사태 시 상황보고」, 215쪽.	• 5. 22. 17:40 “연대, 고대생 500명이 광주로 향하다가 장성에서 일부는 제지당하고 30명만 시내에 진입하면서 연대 대표 1명이 언덕에 올라와서 연대 대표라고 인사한 바 있음”
2	전남합수단(1980), 「광주사태 일지」, 47쪽.	• 5. 22. 17:40 장성읍, “연대, 고대생 500명 가세 차 광주 진입 타가 제지, 30명 진입(연대 대표라고 인사)”
3	보안사령부(1980),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87쪽.	• 5. 22. 22:00 현재: 서울에서 지도급 학생 30명이 하광하여 광주 10명, 광산 20명이 잠입했다는 첩보가 있음.
4	합수단(1980), 「광주사태일지」, 36쪽.	• 5. 22. 17:40 장성읍, “연대, 고대생 500명 가세 차 광주 진입로 제지 30명 잠입(연대 대표라고 인사)”
5	전교사(1980), 「정보일지」, 170쪽.	• 5. 22. 17:45 “연대 고대생 500명이 서울에서 광주로 진입 중 대부분이 장성에서 저지당하고 30여 명이 시내 진입, 학생 데모와 합류(도청 앞)”
6	전교사(1980), 「작전일지」, 284쪽.	• 5. 22. 17:45 “연대 고대생 500명 중 장성에서 대부분 저지당하고 30명만 시내 진입. 연대 대표 1명이 올라가서 인사함”
7	전교사(1980), 「상황일지」, 29쪽.	• 5. 22. 17:40 장성읍, “연대, 고대생 500명 가세 차 광주 진입하기 제지. 30명 진입(연대 대표라고 인사)”
8	계엄사(1980), 「계엄상황일지」, 쪽.	• 5. 22. 22:00: 서울 지도급 학생 30명 광주 도착(광주 10, 광산 20)
9	중앙정보부(1980), 「광주사태상황일지」, 20쪽.	• 5. 22. 17:40 장성읍, “연대, 고대생 500명 가세 차 광주 진입 타가 제지, 30명 진입(연대 대표라고 인사)”

위 표와 김준봉 등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시민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았을 때 “서울에서 온 대학생”의 존재, 또는 유사한 내용의 소문은 실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당시 광주, 전남 지역에 연고를 둔 서울권 대학 재학생 일부가 5. 17. 조치 이후 휴교령으로 귀향하였으며,<sup>86</sup> 예비검속을 피해 있다가 계엄군의 광주 진압 소식을 듣게 된 운동권 조직이 광주로 향하던 중 5월 22일 열차 중단 등으로 이리, 혹은 장성에서 좌절된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sup>87</sup> 이때 소수의 서울권 학생들이 광주 시내에 진입하

86 5·18보상기록, 김영수(한국외대, 본적 화순) / 강대정의 진술

87 한국철도공사, 1980년 5월 철도운영 중단 관련 회신, 조사3과-1427(2022.11.16), 5·18조사위, 「김준봉 진술조사」

였고, 이들에 대한 첩보가 군 및 정부기관 기록에도 기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88</sup> 대인 조사 결과, 실제 500명이 아닌 30명 이하 규모의 서울권 대학생들을 만났다는 진술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21일 광주 봉쇄 이후 광주 시내에는 서울권 대학생들이 광주를 도우러 오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5·18 관련 구술자료에서 서울 학생들을 데리러 외곽으로 가보았더니 없더라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으며,<sup>89</sup> 심지어 이러한 유언비어를 군, 정부기관에서 시위대를 분산시키기 위한 교란 작전으로 여길 정도였다는 진술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1980년 5월 21일 이후 계엄군에 의한 광주 외곽 차단 상황을 살펴보았다. 전교사는 1980년 5월 21일 12:45, “광주 도시권 북쪽 3개 지역 봉쇄”(작지80-4호)를 지시하고 동년 동일 17:50, “광주권 외곽도로 완전차단”(작지80-5호)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광주 외곽 차단 작전 지시 결과 5월 21일 19:30부터 광주 외곽도로망은 완전차단되었다.<sup>90</sup> “도로 완전차단” 작전 지시는 “외곽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도로 간 이동도 완전하게 차단시키는 것이다. 차단 대상은 외곽에서 들어오려는 인원과 차량 일체를 통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민간인도 민간인 차량도 통제대상”이었다.<sup>91</sup>

그러나 지만원 등은 「5·18민주화운동학생기념탑」의 문구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 내용을 근거로 북한군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내용이 어떠한 경위

.....  
(2023.07.26.)

88 5·18조사위, 「박성기 진술조서」(2023.08.04.) - “상무대 훈방 시 서울권 대학생 3명이 귀가시켜 줌.”

89 김정기(1989. 1.)는 5. 20. 방송차량에서 여성이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장성에서 저지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차량방송을 하고 다녔던 전춘심(1989. 11.)은 5. 21. 차량에 쫓기가 많이 전달되었는데 서울의 연고대생들이 광주시민을 도와주러 왔는데 담양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마중하러 갔으나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으며 그것은 계엄군이 시위대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90 전교사(1980), 「전투상보(충정작전결과)」 18쪽.

91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유대수 진술조서」(2023.07.20.), 「조사대상자 박석현 진술조서」(2023.08.02.)

로 삽입된 것인지 2005년 시설 조성 주체 중 두 곳인 광주광역시교육청과 <5·18기념재단>에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과거 시행됐던 사업인 관계로 현재 확인가능한 문서를 찾을 수 없어 “자료없음”으로 회신하였다.<sup>92</sup>

기념탑 조성 주체로부터 관련 문구 삽입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당시 동아일보 기자로 광주를 취재한 김영택의 단행본 『10일간의 취재수첩』(1988), 5·18 직후 동아일보 연재 단행본 『광주5·18민중항쟁』(1990), 학위논문 「5·18광주민중항쟁 연구」(2004) 등을 보면 1980년 5월 22일 15시 08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서울권 대학생 5백 명에 대한 환영식이 있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러나 김영택 기자는 고인으로 대인조사가 불가하여 그가 남긴 기록과 1994년과 1996년 검찰에서 5·18 관련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김영택 기자가 5·18당시 작성한「취재수첩」에는 해당 일자의 환영식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림 6-1-16〉 5·18민주화운동학생기념탑

특기할 점은 지만원 등의 주장이나 김영택 기자의 의구심 양자 모두 기본적인 논리 구

92 5·18민주화운동학생기념탑 '기억의 통로' 조성 사업 관련 자료 회신,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698 (생산: 2023.08.07.\_접수: 조사3과-1274 (2023.08.10.) 및 5·18민주화운동학생기념탑 '기억의 통로' 조성 관련 자료 요청 사항 알림, 광주광역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6471 (생산: 2023.08.29.)\_접수: 조사3과-1415 (2023.08.29.)

조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500명 혹은 600명의 특정 집단이 등장하고 이 집단의 성격을 각자 설정한 것이다. 즉, 지만원 등은 이를 북한특수군, 김영택 기자는 계엄군 철수에 따른 당국의 프락치 요원 투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5·18조사위 조사 결과, ‘최소 5백 명 이상의 환영식’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김영택 기자의 5·18 이후 저작물에 “1980년 5월 22일 서울권 대학생 5백 명 환영식 거행”이 기재되면서 그가 1980년 당시 기록한 취재수첩에 해당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를 넘어 5·18 관련 시설물, 5·18 연구 과정에서 비판 없이 이를 인용하였고, 지만원 등과 같은 북한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그 결과물을 재차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개진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sup>93</sup>

따라서 5·18조사위는 당해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1980년 5월 22일 서울권 대학생 최소 5백여 명의 환영식은 실재하지 않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시설물, 기록 등은 해당 내용의 정정을 권고한다.

## 6) 북한군이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주장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북한군을 지휘했던 리을설이 무전을 이용하여 “광주인들이 총을 들려 하지 않는다”고 김일성에게 보고하자 김일성이 광주교도소를 공격, 간첩 수용자 170명 포함 총 2,700명의 수용자들<sup>94</sup>을 해방시켜 폭동의 동력으로 이

93 김영택 기자가 해당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까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덧붙인다. 당시 21일 광주 봉쇄를 전후한 서울의 대학생들이 광주를 도우러 왔다는 유언비어가 많았음을 전제로 하고 군과 정부기관의 기록만을 놓고 본다면 당시 서울권 대학생 5백여 명이 광주로 진입하려다 교통차단으로 저지당하였다는 첩보가 있었고 30명 규모로 진입한 학생들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연대 대표”가 분수대 위로 올라가 인사를 하였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김영택 기자는 이들이 이리, 장성 등에서 대부분 저지당하였다는 점, 진입 시 30명 정도의 소수 규모였다는 점이 누락된 채 “서울권 대학생 5백여 명에 대한 환영식이 있었다”고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지만원 등의 주장하는 환영식 시간 15시경과 군, 정부기관 등 기록에서의 17시경이라는 차이는 남은 문제이다.

94 1980년 6월 9일 현재 광주교도소에는 총 2,598명의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었고 그중 죄익수는 171명이었다. 보안사령부(1980), 「특별사범 수감현황 (기록물철 분류번호 750100325)」 및 「전국 교도소별 수용현황 (기록물철

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에 침투한 북한특수군 600명 중 500명이 5월 21일 밤 5회에 걸쳐 광주교도소를 향해 파상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제3공수여단의 방어로 475명이 사망하고 그중 430구가 청주시 휴암동에 암매장되었으며, 2014년 청주에서 유골이 발견되자 같은 해 개최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타고 온 전용기편으로 이를 복송했다는 것이다.<sup>959697</sup> 본 단원에서는 지만원의 위 주장 중 별도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청주유골 부분을 제외하고 교도소 공격 및 폐죽음 당했다는 475구 항목을 통합하여 기술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지만원의 세부 주장이다.

〈표 6-1-10〉 교도소 공격 관련 지만원 주장

연번	세부 주장
1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주장대로 광주시민이 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교도소를 공격한 것은 북한군이다.
2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자 리을설이 김일성에게 보고했고, 이에 김일성이 교도소 공격 명령을 내렸다. 다급해서 평문으로 전송된 이 무전은 계엄 당국에 청취됐다.
3	북한군은 3공수가 방어진지를 구축한 광주교도소에 대해 5월 21일 야간 5회에 걸쳐 파상공격을 감행했다. 총으로 방어되고 있는 교도소를 야간에 공격하는 행위는 절대로 민간인들이 시도할 영역이 아니다.
4	교도소를 공격한 것은 북한군 600명 중 도청에서 지휘부를 호위하던 100명을 제외한 500명 정도인데 이 중 475명이 죽었다. 야간작전으로 발생했을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를 숨겼다는 의미가 되며, 먼동이 뜨기 전에 어디론가 감쪽같이 치웠을 것이다.
5	북한군 475명이 죽었다는 증거는 남북 문헌에 나와 있다.

분류번호 750100326)』

95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48~57, 102~114쪽.

96 지만원, 2021, 『5·18답변서』, 도서출판 시스템, 72~73, 107~112, 202~206쪽.

97 지만원, 2020,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도서출판 시스템, 312~329쪽. 지만원은 이 책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북한이 청주유골에 대한 여론을 덮기 위해 급조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가) 김양래·윤장현의 발언은 북한군의 교도소 공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만원은 북한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2017년 4월 19일 광주일보 등에 당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와 광주시장 윤장현이 “광주시민은 절대로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 “(교도소를 공격했다면) 분명히 있어야 할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대서특필 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대법원이 광주의 무장 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했다고 판결했는데, 그 무장 시위대가 광주인들이 아니라면 그 공격 주체는 북한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만원의 주장이다.<sup>98</sup>

이에 5·18조사위는 김양래 전 상임이사와 윤장현 전 시장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광주일보 2017년 4월 19일자 7면에 게재된 해당 기사는 남재준 통일한국당 대선후보가 2017년 4월 17일 「5·18 진실 바로알리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5·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말한 데 대한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청의 반응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김양래 전 상임이사와 윤장현 전 시장이 “광주시민은 절대로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 및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양래 전 상임이사는 “정보기관 수장을 지낸 대선 후보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는 5·18의 왜곡·허위 주장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 재직 당시 5·18 관련 허위 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윤장현 전 시장은 “전두환 회고록은 허위사실을 마치 논쟁적인 사안인 양 포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과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고 헌법기관을 조롱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기사에 따르면, 시민들의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발언한 사람은

98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48~49쪽.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장이었던 한도희였다. 한도희는 1995년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18당시 시민들의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은 없었다”면서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면 교도소 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어떻게 도로에 있을 수 있겠느냐”고 증언하였다고 한다. 또한 기사는 한도희 전 소장이 “당시 교도소에는 제3공수여단 병력이 중무장하고 있어서 교도소 습격이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계엄군이 인근 지역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무차별 발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썼다.<sup>99</sup>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지만원은 광주일보 기사에 한도희 전 소장이 했다고 보도된 발언을 김양래 전 상임이사와 윤장현 전 시장의 발언이라고 왜곡하였으며, “교도소 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어떻게 도로에 있을 수 있겠느냐”는 한 전 소장의 발언 역시 “시체들이 있어야 했는데 시체가 없다”로 왜곡하여 북한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주민들이 호응하지 않자 리을설이 김일성에게 보고했고, 이에 김일성이 교도소 공격 명령을 내렸다. 다급해서 평문으로 전송된 이 무전은 계엄 당국에 청취됐다.

지만원은 북한군이 자살행위인 줄 뻔히 알면서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이유는 김일성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광주시민들이 무기를 들지 않는 등 호응하지 않자 광주에서 북한군을 지휘했던 리을설 상장이 “광주인들이 총을 들려 하지 않는다”고 김일성에게 무전 보고를 하였고, 이에 김일성이 교도소의 수용자들을 해방시켜 폭동의 동

99 그런데 한도희는 해당 인터뷰와 관련, 검찰 조사에서 “공수부대와 시위대가 교전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실제 습격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교도소 부근을 통과하던 중 공수부대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몰랐다”면서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면 교도소 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어떻게 도로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거나 “당시 교도소에는 3공수여단 병력이 중무장 하고 있어서 교도소 습격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며 계엄군이 시인근지역의 시위확산을 막기위해 먼저 무차별 발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는데 기사가 일부 과장되게 보도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지방 검찰청, 『한도희 진술조서』(1996.02.08).

력으로 이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sup>100</sup> 특히 지만원은 이 과정에서 5월 21일 오후 북한으로부터 계속 무전이 날아왔는데 계엄 당국이 이를 감청, 광주교도소 방어 임무를 제3공수여단에 부여하여 3여단이 불과 2시간만에 교도소 주위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무장간첩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sup>101</sup>

이와 관련, 당시 관계자 진술에서 “북한 무전 감청” 관련 내용을 일부 발견할 수 있었다.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순현은 검찰 조사에서 “작전을 맡기 전부터 무전기를 통해 북괴가 광주에 있는 수 개의 고정간첩망에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여 해방을 시키라는 요지의 지령을 내리는 것을 수차 들었으며 그 때문에 전교사에서 5.21. 공수부대 병력을 교도소에 배치한 것인데 저로서는 그러한 무전 내용으로 보아 광주사태에 불순세력이 깊게 개입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sup>102</sup> 전남도지사 장형태는 검찰 조사에서 “5.21. 헬기를 저가 타고 있을 때 헬기무전으로 교신내용이 들어오는데 ‘지도반, 여기는 지도반’이라는 내용이 들려온 적이 있는데 당시 조종사가 이것은 북에서 보내는 것이라고 하여 저가 불순세력이 접근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sup>103</sup>

5·18조사위는 먼저 당시 계엄 당국이 실제로 북한의 무전을 감청하여 그러한 조치를 내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시 군 및 중앙정보부 등 관계기관<sup>104</sup>을 조사한 결과,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간첩통신 증가 등 특이동향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타 군 상황일지 및 전투상보, 사후분석자료 등에서도 교도소 공격과 관련한 북한군 또는 고정간첩들

100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54~55쪽.

101 지만원은 향토사단인 31사단 병력이 교도소를 경비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민병대로 불릴 만큼 체계도 훈련도 부족했으며, 정웅 사단장은 사상이 매우 의심스러운 행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만원, 2020,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도서출판 시스템, 54쪽.

102 서울지방검찰청, 「김순현 진술조서」(1995.05.29.).

103 서울지방검찰청, 「장형태 진술조서」(1995.03.27.).

104 국가정보원, (구)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및 777사령부.

의 통신을 감청했다거나 그러한 감청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부대를 광주교도소에 이동 배치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다른 관계자의 진술 및 앞서 확인했던 군 상황일지, 대침투작전 사례집, 대북첩보와 신호정보 자료 등을 교차 검증한 결과 김순현 및 장형태의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종채 2군사령관, 윤홍정 전교사령관 및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제3공수여단이 교도소로 철수한 것은 북한군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한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도소 방어를 강화하고 시 외곽을 봉쇄하는 작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세창 제3공수여단장이 진술한 “교도소 방어” 목적 역시 전날부터 교도소 주변에 시위대가 출현하자 위기감을 느낀 교도소측이 31사단에 지원병력을 요청하여 5월 21일 새벽부터 이미 배치되어 있던 제31사단 96연대 병력과 교대한 것으로, 지만원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군의 무전을 감청한 후 교도소 방어 강화를 위해 급히 이동한 것은 아니었다.<sup>105106</sup>

조사 결과, “고정간첩망에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여 해방시키라는 지령이 내려졌다”는 수준의 중요 정보가 관련 부대의 각종 일지와 전투상보는 물론 505보안대가 보안사령부에 보고한 내부자료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김순현을 제외한 그 어떤 계엄군 관계자도 이

105 광주교도소는 5월 20일 20:40에 31사단 지원병력을 요청하였으나 병력 부족으로 지원불가 통보를 받자 20:42에 31사단장에게 재요청하여 20:50 병력지원 통보를 받았다. 23:50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여 주벽 내부로 철수키 위해 정문, 동문 내부에 버스 및 트럭으로 바리케이드를 구축하였다. 5월 21일 00:20에는 자체 병력을 청사 앞에 12명 배치하고, 감시대에 인원을 증원하여(간부 4명) 무장을 강화하였다. 각 사동에는 인원을 증원하여 32명을 배치하였다. 02:10에 31사단 지원 병력 선발대가 도착하였고, 03:10에 제31사단 병력 466명이 도착하였다(광주교도소(1980), 「소요사태 상황보고」 11~12쪽).

106 전교사 작전일지는 5월 21일 01:55 “96연대 병력출동” 항목에서 출동 이유를 “(시위대가) 유류보급 후 광주교도소로 간다는 첩보 때문”이라고 기록하였으며, 특전사 상황일지는 같은 날 02:00 “(첩보) 폭도들이 광주 교도소 점거 위해 이동 중이라 함. 31사단에서 교도소에 경계증원”이라고 썼다. 31사단 작전참모였던 박석현은 5·18조사위 조사에서 “시위대가 광주교도소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교도소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 유지되어 있는 방호계획에 기초하여 (교도소에서) 요청시 투입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조사대상자 박석현 진술조서」(2023.08.02).

를 언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교도소를 대상으로 한 어떠한 북한군의 공격 첩보도 입수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김일성이 광주에 있는 북한군에게 무전으로 교도소 습격 지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계엄당국에 감청되었다”는 지만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북한군은 3공수가 방어진지를 구축한 광주교도소에 대해 5월 21일 야간 5회에 걸쳐 파상공격을 감행했다. 총으로 방어되고 있는 교도소를 야간에 공격하는 행위는 절대로 민간인들이 시도할 영역이 아니다.

1997년 대법원은「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사건」판결문에 광주교도소 방어 임무를 수행하던 제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무장 시위대로부터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다고 적시하였다.<sup>107</sup> 그런데 이를 두고 지만원은 교도소 공격이 전부 5월 21일 밤에 이루어졌다면서 잘 방어되고 있는 교도소를 야간에 5회씩이나 공격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시도할 영역이 아니며, 특히 야간이었기 때문에 사망한 북한군 475명의 시체도 찾을 수 없었다는 요지로 주장하였다.

본 과제에서 야간공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지만원이 “야간”이라는 점을 교도소에 대한 북한군 공격 주장의 핵심 논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만원은 ①야간에 무려 5회에 걸쳐 교도소에 파상공격을 하는 엄청난 행위를 광주시민들이 감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북한군의 소행이며, ②야간이었기 때문에 교도소 방어병력의 눈을 피해 475명의 북한군 사망자를 감쪽같이 치워 시체가 남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08</sup>

5·18조사위는 지만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위 대법원 판결

107 대법원 「96도3376 판결」(1997.04.17.), 판결문 65~66쪽.

108 지만원은 5·18조사위 조사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시민이 야간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공수부대가 최저 표적 사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야간공격을 가다니요”, “시체들은 야간에 북한군이 밖으로 빼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부들을 동원해 시체를 수습했고, 입막음하기 위해 이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지만원 진술조서 2차」(2023.09.27.).

문에 등장하는 “5차례에 걸친 공격”의 발생 시점을 확인하였다. 5차례 공격 중 판결문에 발생 일시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5월 22일 00:40 및 같은 날 09:00 등 2차례뿐으로, 나머지 사건들의 발생 시점은 검찰 수사기록과 당시 교도소 방어를 맡았던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를 통해 파악하였다.<sup>109</sup><sup>110</sup>

광주교도소에 대한 1차 공격은 5월 21일 19:30경 발생하였는데 이날의 일몰 시각은 19:33이었다. 또한, 이날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의 밝기인 시민박명이 종료된 시각은 그로부터 약 30분 후인 20:01이었으며, 군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항해(해상)박명이 종료된 시각은 20:36이었으므로 1차 공격을 “야간공격”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외에도 3~5차 공격 모두가 해가 떠 있던 시간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역시 “야간공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광주교도소에 대한 5차례 공격 중 실제로 야간에 발생한 것은 5월 22일 00:40경 있었던 제2차 공격뿐이었다. 지만원이 제기한 “북한군이 광주교도소에 대해 하룻밤 5회 야간공격”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오류가 있는 것이다.

지만원은 또한 야간공격에 대해 “5회에 이르는 파상공격”, “6,25때의 고지전을 방불케 하는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양상이 치열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sup>111</sup> 만약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방어병력들도 이를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교도소를 방어하고 있던 제3공수여단 장병 및 교도관들 중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편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와 특전사 상황일지, 전교사 정보/작전일지 및 505보안대 「일일속보철」등 자료들에서도 5월 21일 야간에 “5회 파상공격” 또는 “인해전술”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날 밤 교도소에 대한 공격이 기록된 자료는 제3공수여단 전투상보와 광주교도소 소요사태 상황보고 등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작성된 자료들인

109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1995.07.18.),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 107, 110, 120쪽.

110 국군보안사령부(1980), 『전투상보(제3특전여단)』 고유번호 광주 383-1980-106 (MF 릴 번호 61871-1.4), 194~214쪽.

111 지만원, 2020,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도서출판 시스템, 27쪽.

데, 이 자료들에도 역시 파상공격이나 인해전술을 시사하는 내용은 없었다.

이상 제3공수여단과 광주교도소 관계자의 진술 및 관련 기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1980년 5월 광주교도소에 대한 공격은 지만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파상공격” 또는 “인해전술”이라고 부를 정도로 규모가 크거나 격렬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5·18조사위는 당시 교도소 관련 상황에서 사망 또는 체포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보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와 관련하여 사망한 인원은 총 12명이다.<sup>112</sup> 이중 사망원인이 총기가 아닌 김인태, 민병열<sup>113</sup>과 당시 담양 주민으로 확인된 고규석, 임은택 및 단순히 교도소 인근을 지나다가 총격을 받아 사망한 김병연<sup>114</sup>을 제외하면 7명이 광주교도소 인근에서 총상으로 사망하였다.

광주교도소 관련 사망자들은 모두 주민등록번호와 본적 및 주소 등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이다. 특히 광주시에서 작성한 사망자 장례비 지급 자료와 이후 보상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통해 장례비와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들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등 이들을 북한군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sup>115</sup>

전교사 「광주사건 군법회의 소송기록」에 따르면 당시 광주교도소 공격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람은 한기원, 정성영, 임은철, 이덕호, 양승팔, 심영의 등 6명이었다.<sup>116117</sup> 이 중

112 5·18조사위, 조사과(2023.12.15), 「직권조사사건(직가-2) 진상규명조사보고서」, 31쪽.

113 위 보고서에 따르면 김인태, 민병열은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지만원의 주장인 “북한군의 교도소 습격”을 규명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이기 때문에 둔력에 의한 사망자는 제외하였다.

114 5·18조사위, 조사과(2023.12.15), 「직권조사사건(직가-2) 진상규명조사보고서」, 125쪽.

115 광주시(1980), 「장례비 지급 수령증 철 (이웃돕기)」, (국가기록원 BA0582936) 및 보상자료 종합.

116 전남합동수사단 「의견서」(1980.07.), 국회 기록보존소, 05-9700145-1988-9700145000369-00.

117 이들 6명 외 나주 남평지서 무기탈취 혐의로 송치된 김유곤도 송치 당시 전남합수단 의견서에는 광주교도소 습격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에는 광주교도소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전남합동수사단 「의견서」(1980.08.), 국회 기록보존소, 05-9700145-1988-9700145002236-00 및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김유곤 공소장(기소)」(1980.08.23.), 국회 기록보존소, 05-9700145-1988-9700145000102-00 참



이덕호, 양승팔, 심영의 등 3명은 단기간 시위한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여 석방되었고<sup>118</sup> 최종적으로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기원, 정성영, 임은철이었다.<sup>119</sup>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위 사람들에 대한 전남합동수사단의 수사기록에는 피의자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진술조서 앞부분에는 성명, 본적, 소속(주거), 직업, 연령 등 기본 인적사항과 학력, 경력, 가족사항, 종교, 생활정도 및 병역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의자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기도 하였다.<sup>120</sup>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체포된 사람이 북한군이었다던가 간첩 등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이었다면 즉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체계인 것이다.

조사 결과, “5월 21일 야간 광주교도소에 대해 5회에 걸친 파상공격이 이루어졌는데, 잘 방어되고 있는 교도소를 야간에 인해전술로 5회씩이나 공격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시도할 영역이 아니다”는 요지의 지만원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만원은 3일간 단 1회만 있었던 야간공격 상황을 “하룻밤에 5회”라고 부풀렸고, 산발적인 총격 수준의 공격을 “파상공격, 인해전술” 등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과장하여 마치 그것이 특수한 훈련을 받은 광신적인 북한군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것처럼 포장했다. 또한 “야간을 이용, 교도소 방어병력의 눈을 피해 475구의 시체를 감쪽같이 치워 시체가 남지 않은 것

.....  
 조.  
 118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의 검찰부, 『불기소사건기록』(1980.08.18.), 『5·18광주민주화운동 전자자료총서』 32권, <https://www.518archives.go.kr/books/ebook/32/index.html#page=431>.  
 119 3명 모두 내란부화수행 및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성영과 임은철은 3년으로 감형되었다. 국군보안사령부(1988), 『광주사건 관련자 처리현황』, 고유번호 광주 383-1989-015 (MF 릴 번호 61874-1.5), 74~75쪽.  
 120 기소자 3명에 대한 수사기록은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광주사건 소송기록 37-9』(1980), 국회 기록보존소 철 등록번호 05-9700145-99999999-1988-000149-001 참조. 불기소자 3명에 대한 수사기록은 육군본부 법무실(1980), 『전남합동수사단 의견서』, 『육군9-8 한기원(6)-5』, 72~78쪽 참조.

이다”는 지만원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이 다수 존재하며, 사망자들의 인적사항 및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전남합동수사단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북한군이 아니라 모두 신원이 확실한 일반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 교도소를 공격한 것은 북한군 600명 중 도청에서 지휘부를 호위하던 100명을 제외한 500명 정도인데 이 중 475명이 죽었다. 북한군은 먼동이 트기 전에 475구의 시체를 감쪽같이 치웠을 것이다.

지만원은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600명 중에서 도청 지휘부를 호위하던 100명을 제외한 500명 정도가 광주교도소를 공격했고, 그중 475명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광주교도소 주위를 요새로 만든 후 기관총과 수류탄, 대전차포와 클레모어<sup>121</sup>를 설치하고 최저 표적 사격<sup>122</sup>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자살행위가 분명한)<sup>123</sup> 5회에 걸친 야간 파상공격을 감행하다가 475명이 떼죽음 당했고, 그 시체는 날이 밝기 전에 감쪽같이 치웠다는 것이다.

5·18조사위는 먼저 “광주교도소에서 북한군 475명 사망”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상황일지 및 전투상보와 대인조사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교도소를 공격해오는 북한군 수백 명을 사살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지만원은 5·18조사

121 클레이모어로도 불리며 주로 경계 및 매복 시 적의 접근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용되는 수평 세열식 지뢰. 지뢰가 폭발하면 쇠구슬과 같은 파편이 높이 2m 이내로 부채꼴 형태로 비산한다.『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크레모아 지뢰)』, 국방기술품질원, [https://dtims.dtaq.re.kr:8070/search/detail/term.do?tmnl\\_id=T0013665](https://dtims.dtaq.re.kr:8070/search/detail/term.do?tmnl_id=T0013665).

122 집속 탄도의 중심이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올라가지 않는 사격이다. 이 사격은 탄도상에서도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탄지에서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최대의 사격효과를 거둘 수 있다. (M60 기관총의) 최저 표적 사격은 평탄한 지형이나 균등히 경사진 지형에서 600m 까지 실시할 수 있다. 야전교범 23-67, 『M60기관총』 육군본부, 1988.

123 지만원이 북한특수군 600명이 교도소를 점령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들은 물론 그 가족들 모두가 몰살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교도소를 점령하라는 김일성 명령은 이들 600명에게 곧 죽으라는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55쪽.

위 대인조사에서 “본 것이 없으니까 전과를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sup>124</sup>

그러나 475구의 시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개 병사들이 M16 소총이나 M60 기관총 등 총기를 사용, 눈으로 목표를 보고 조준하여 475명을 사살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공수부대원들의 수많은 증언이 존재해야 할 것이며, 전투상보에도 그만큼 치열한 교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군 관련 기록 및 제3공수여단과 교도소 근무자들의 진술 중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sup>125</sup> 또한, 500명 중 475명이 사망하였다면 당연히 발생했어야 하는 부상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는 “북한군이 475구의 시체를 날이 밝기 전에 감쪽같이 치웠다”는 주장을 검증하였다. 지만원은 자신의 책에서 현장에 시체가 남아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꼬리가 잡히면 북한은 UN 차원에서 전범국가로 처벌을 받는다.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김일성의 지상명령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체를 치웠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sup>126</sup>

5·18조사위는 지만원의 주장대로 북한군 500명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러 갔다가 475명이 죽었다면, 남은 25명이 교도소 방어 병력에게 들키지 않고 475구의 시체를 치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475명이 총탄에 맞아 사망하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대량의 혈흔과 각종 화기 및 전투장비 등 유류품들이 당시 현장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지만원은 대인조사에서 이에 대해 “북한군이 광주시민들을 강제로 데려가 부역자로 써

124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지만원 진술조사 2차」(2023.09.27.).

125 일례로 베트남전 당시 유명했던 짜빈동 전투 및 독코 전투는 포위된 방어거점에 대한 야간공격이라는 점에서 지만원이 주장하는 “교도소 습격”과 상황이 유사하다. 이 두 전투에서 사살된 적의 수는 지만원이 주장하는 교도소 습격 당시 사망한 북한군의 절반 정도(243명/197명)이지만 짜빈동 전투와 독코 전투에 대해서는 수많은 증언과 기록이 존재한다.

126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56쪽.

서 (동료의 시체를) 가매장했다”면서 “동원된 인부들은 입막음을 하기 위해 다 죽었을 것인데, 이들이 5·18 당시 실종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체 한 구를 빼내기 위해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면 기도비닉 유지가 안되어 발각될 수 있으니 한 명이 한 구씩 메고(또는 질질 끌고) 유효사거리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충분히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병력이다”라고 답변하였다.<sup>127</sup>

요약하면 사망한 북한군 475명의 시체를 생존한 북한군 25명이 (조금 전까지 자신들을 조준하여 사격하던 교도소 방어병력의 눈을 피해) 1명당 19구씩 메고(또는 질질 끌고) 나오면 강제로 동원된 광주시민들이 이들을 가매장하였고, 이후 북한군은 가매장에 동원된 광주시민들을 모두 죽였는데 그들이 5·18당시 발생한 실종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만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관총과 수류탄, 대전차포와 클레모어를 설치하고<sup>128</sup> 최저 표적사격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던 제3공수여단에게 북한군이 5회에 걸친 야간 파상공격을 감행하다가 475명이 떼죽음당했고, 그 시체는 날이 밝기 전에 감쪽같이 치웠다”는 지만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북한군 475명이 죽었다는 증거는 남북 문헌에 나와 있다.

지만원은 남북 문헌 일부에 등장하는 “시체 475구”를 근거로 이들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만원은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과 『광주의 분노』는 북한에서 제작됐고 『찢어진 깃폭』은 1980년 6월 5일 일본에서 천주교 정의평화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글인데, 3개 문헌 모두에 “475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

127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지만원 진술조서 2차」(2023.09.27).

128 대전차포는 제3공수여단 편제 및 출동 장비에 없는 무기이며 5·18 당시 그 어느 부대도 배치 및 사용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클레모어도 제3공수여단이 사용했다는 기록이나 증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군보안사령부(1980), 「전투상보(제3특전여단)」, 고유번호 광주 383-1980-106 (MF 릴 번호 61871-1.4), 194~214쪽.

은 5·18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서 죽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 475구의 시체가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죽은 북한군이라는 것이다.<sup>129</sup>

그러나 위 문헌들의 원문을 조사한 결과 “475구”가 교도소를 습격하다가 발생한 시체라는 기술은 찾을 수 없었으며, 그 당시 시체가 475구 나왔다는 것을 비롯하여 시체들의 대부분이 화염방사기에 맞아 까맣게 타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먼저 475구라는 사망자 수부터 사실과 다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직가-2)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민간인은 전부 166명이며, 이중 5월 21일까지 사망자는 81명이었다. 475구의 시체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화염방사기에 맞아 까맣게 탄 시체” 역시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다.<sup>130</sup>

『광주의 분노』와 『찢어진 깃폭』에는 475구의 시체를 도청 지하실에서 꺼내어 도청 앞 분수대에 안치한 날이 5월 22일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다. 『광주의 분노』는 “민주투쟁위원회가 이 시체들을 공개한 것은 또한 박충훈놈 자신이 시체들을 푹푹히 보게 하여 공정대의 살인 만행에 대한...”이라고 썼고, 『찢어진 깃폭』 역시 “시민들은 도청의 지하실에서 시체를 꺼내와 광장에 쌓기 시작했다...(중략) 정부의 보도가 얼마나 어이없는 유언비어인가를 총리앞에 푹푹히 보여주자는 심산이었다”고 기록했다.<sup>131</sup> 그러나 5월 22일 도청 앞에 등장한 관은 18개였고, 보다 많은 시신이 도청 앞에 나온 5월 23일에도 그 숫자는 66구였다.<sup>132133</sup>

129 지만원은 청주유골 430구+망월동 신원불상자 12구+국제신문 이양우 기자가 목격한 담양 리어카 시신 2구+기타를 더하면 475명의 숫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322쪽.

130 5·18조사위, 조사과(2023.12.15), 『직권조사사건(직가-2) 진상규명조사보고서』, 239쪽.

131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광주를 방문한 날짜는 5월 22일이다.

132 국군보안사령부(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처 일지』,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3 (MF 릴 번호 61876-1.1), 287쪽.

133 국군보안사령부(1980), 『광주사태 상황보고』, 고유번호 광주 383-1980-087 (MF 릴 번호 61867-1.3), 183쪽.

지만원은 이처럼 잘못된 사실을 기술한 남북한 문헌을 근거로 북한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문헌들 어디에도 북한군이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은 “475구”라는 단어 외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만원은 북한 문헌에 “5월 26일 600여 명의 광주학생시민들은 도청 지하실에서 최후의 항전을 선언한데 이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을 북한군 600명 존재의 근거로 제시하였는데,<sup>134</sup> 5월 21일 밤 교도소에서 475명이 사망했다면 이날 600명의 북한군이 도청 지하실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했으며 그 과정에서 475명이 사망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지만원의 광주교도소 습격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으며, 교도소 습격과 관계가 없는 각종 문헌들을 근거라고 제시하여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지만원 스스로 제기한 다른 주장들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임을 알 수 있었다.

## 7) 2014년 청주에서 발견된 유골이 암매장된 북한군이라는 주장

지만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북한군 시체를 광주로부터 200km 떨어진 청주에 가매장했을 것이며, 2014년 5월 13일 청주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430구의 유골이 광주에서 발생한 북한군 시체 475구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지만원은 비닐로 시체를 포장하는 방법은 오로지 1980년 광주에서만 있었으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해당 유골을 실어 갔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

134 해당 문구는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595쪽에 나온다.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33쪽.

다.<sup>135</sup> 지만원 주장의 쟁점은 크게 다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2014년 청주유골과 1980년 광주의 시체 포장방법이 유사하다는 주장

지만원은 청주유골과 5·18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로 첫째, 2014년 청주시에서 집단으로 발견된 유골의 포장방법이 광주의 시체 포장방법과 일치하고, 칠성판 규격이 통일되어 있으며 군대식으로 정렬되어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지만원은 이는 오직 1980년의 광주에서만 사용했던 대량의 시체 포장 방법으로, 당시 광주는 시체가 폭발하고, 날씨가 더워 시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두꺼운 비닐로 돌돌 말아 역겨운 액체를 막았다는 점<sup>136</sup> 등 청주유골과 포장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② 2014년 청주 유골이 김정은 전용기에 실려 북한으로 이송되었다는 주장

지만원은 2014년 청주에서 발견된 유골은 화장 증명서, 봉안 증명서, 사진 등의 핵심 증거 자료가 없으며, 당시 전국적인 화장 단가와 비교하면 청주시 화장 및 봉안비가 너무 저렴하고, 곤장 가매장 장소에서 화장터로 운구하지 않고 굳이 임시봉안과 컨테이너에 임시 안장했다는 점, 이후 컨테이너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점 등을 의혹사항으로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지만원은 청주 유골 430구가 북한군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해 2,700명의 수용자를 폭도화시키라는 김일성 지시를 무리하게 이행하다가 폐죽음 당한 시체라고 직감했다고 하였다.

또한, 지만원은 청주 유골이 발견된 이후 북한의 행동에도 의혹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인천아시안게임 신청 마감 시기에 갑자기 참여하겠다 통보하였고, 2014년 7월

135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97~101쪽.

136 지만원, 『5·18답변서』, 도서출판 시스템, 2021, 108쪽.



판문점에서 남북한 실무진과 접촉한 점, 8월 김대중 사망 5주기 기념 화환 증정 명목으로 북한의 김양건과 남한의 박지원, 임동원, 김홍일이 개성에 접촉한 점 등으로 보아 청주 유골 수송 작전에 대한 접선을 꾸준히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대표단은 조추침 행사에도 8명이나 인천을 방문하면서 마지막 현장 검증용 접선을 진행하였고, 2014년 10월 4일 김정은 전용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남한의 공무원들이 황병서를 밀착 수행한 점도 의혹의 대상이라며 이를 종합하면 청주에서 발견된 유골은 치외법권 제1호인 김정은 전용기에 실려 북으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37</sup>

## 가) 조사 결과

### (1) 선행조사 검토

5·18조사위에서는 청주 휴암동에서 발견된 유골 430구에 대한 조사에 앞서 2014년 유골 출토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기관들의 조사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주시 휴암동 흥덕지구 축구공원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유골 430구는 청주시의 도심 확장과정 중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과거 공동묘지로 이장(1994년 2회, 1995년 1회)했던 것이 후에 흥덕지구 축구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장사법과 관련한 범죄혐의 등이 없으며 5·18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역시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기관들의 결론이었다.

### (2) 쟁점별 주장 검토

(가) 2014년 청주유골과 1980년 광주의 시체 포장방법이 유사하다는 주장

5·18조사위는 위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주기록원과 충청북도 도로관리

137 지만원, 『5·18답변서』, 도서출판 시스템, 2021, 109~112쪽.

사업소를 방문, 추가 기록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자료는 흥덕지구 축구공원이 조성되기 이전의 기록, 무연고 유골들의 이장 형태 및 방식에 관한 기록 등이었다.

조사 결과 흥덕지구 축구공원 터는 청주시 휴암동 산 65-1번지로 과거 휴암동 공동묘지라고 불리며 시에서 관리하던 묘지였다. 청주지역은 주거지역의 고갈로 인해 1988년부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개발사업 중 발견된 분묘는 신고하고 무연분묘를 휴암동, 산남동, 외북동 등 청주시 산하 공동묘지에 매장하였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1990년대 이장 당시 무연고 유골 이장사업에 활용되었던 시방서 등을 발견하였고, 해당 문서들의 요지는 백골을 이장할 경우에는 사람 크기보다 작은 일정한 크기의 칠성판을 활용하여 깊이 1m에 매장하며 일련번호 순에 따라 일렬로 정렬하여 매장한다는 것으로 이는 2014년 유골 출토 당시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흥덕지구 축구공원 터는 과거 공동묘지로 쓰였으며, 실제로 1990년대 청주시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당시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사용된 무연고 유골의 이장 형태 및 처리방식은 2014년 출토된 유골과 유사한 것이었다. 특히 유골의 포장법은 1990년대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오직 5·18 당시 광주에서만 사용하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2014년 청주 유골이 김정은 전용기에 실려 북한으로 이송되었다는 주장

지만원은 또한 청주 유골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 사항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결국 북한이 해당 유골을 김정은 전용기에 실어 북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의 개입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지만원이 제기하는 청주 유골 처리 과정의 의혹은 ①청주 유골은 화장 증명서, 봉안 증명서, 사진 등 핵심 증거자료가 없다, ②전국적 화장 단가에 비해 청주시 화장 및 봉안비는 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③곧바로 화장터로 운구하지 않고 임시봉안 및 컨테이너에 입

시 안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증한 결과, 청주시청에서 제공 받은 「청주 흥덕지구 축구공원 출토유골 임시안치 준공계」, 「화장 및 봉안 준공계」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유골이 발견되어 개장 후 화장 및 봉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봉안시설 사용허가증과 각 과정마다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화장증명서와 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을 통해 해당 유골들은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무연분묘”로써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가 전액 감면된다는 사실까지 함께 확인함으로써 지만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골을 곧바로 화장터로 운구하지 않고 임시 봉안하였다는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유골의 개장 및 임시 안치한 시기는 당시 청주흥덕경찰서에서 해당 유골의 장사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던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청주시청은 개장 후 곧바로 화장하지 않고 유골의 손실 및 훼손에 대비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임시로 안치해 두었고, 흥덕경찰서의 “혐의없음” 내사결과가 통보된 후에 화장 및 봉안 용역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청주시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라 출토 유골을 화장 처리하여 봉안해두었다는 목련공원 봉안당 현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해당 유골들은 이상없이 2014년 안치해둔 자리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으로 이송되었다는 지만원의 주장은 거짓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상 조사결과, 2014년 청주시 휴암동에서 집단으로 출토된 430구의 유골이 1980년 5월 광주에 침투했다가 죽은 북한특수군의 시체를 청주시로 매장한 것이라는 지만원의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장의 근거들이 허위임을 확인하였고, 이 유골들과 북한이나 5·18민주화운동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 8) 일명 ‘광수’ 주장

지만원은 영화 「김군」의 주제가 된 아래 사진의 인물이 “기관총 설치대를 응용력 있게 조립하여 기관총을 거치하고, 왼손에는 전투 프로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열성 기능장갑인 석면장갑을 착용하고 단련된 몸매와 레이저 빛을 발할 정도의 매서운 눈매로 주위를 응시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전투상태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특수군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이 인물이 한국 땅에 없다는 사실은 5·18의 주역이 광주인들이 아니었다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해당 사진으로부터 광주 북한특수군, 일명 ‘광수’ 주장이 시작되었다.



〈그림 6-1-17〉 “석면장갑, 기관총, 무전기 다루는 전투프로”

지만원의 일명 ‘광수’ 주장은 노숙자담요의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지만원은 ‘32) 노숙자담요의 지속적이고 치밀한 분석 작업에 대한 신뢰’에서 노숙자담요가 무려 661명의 얼굴을 비교분석했는데, 분석의 착안점도 입체적이며 분석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자세한 설

명을 붙였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민간 영상연구소와 국과수에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노숙자담요가 해냈다는 것이다.

5·18조사위는 지만원의 일명 ‘광수’ 주장의 대상이 661명에 달하고, 단순히 사진 두 장만을 나란히 놓고 사진의 인물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것에 불과한 사례가 많아 이를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은 본 조사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일명 ‘광수’ 주장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그 타당성을 포괄적으로 검증하였다.

일명 ‘광수’ 주장에 사용된 ‘광수’라는 표현은 탈북자 임천용의 주도로 결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 발행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증언 5, 5·18에 숨겨진 진실」에는 전 북한군 하사관 박행운이 같은 학급 동급생인 1호 호위국 출신 박성근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광주봉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중대병실에 있는 텔레비전에서 광주봉기 참가자들이 장갑차를 끌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자 같이 텔레비전을 보던 중대 군인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환호를 했다고 한다. 중대 군인들 중에서 성근이보다 몇 년 선배인 사관장이 텔레비전에다가 손짓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다고 하였다.

“야, 저거 광수가 아니야? 광수가 어떻게 저기 나가있어. 저자식이 별을 달고 승진해서 어느 분계선 일대의 특수부대로 간다고 하더니 저기 나가있네, 세상일은 참 모르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수의 얼굴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었다.<sup>138</sup>

이때까지만 해도 ‘광수’는 광주에 침투했다는 북한특수군 1명의 이름일 뿐이었다. 그런데 2010년 8월 25일 지만원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필명 ‘달마’가 별다른 근거 없이 사진의 인물을 ‘광수’로 지목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광수’는 얼굴을 갖기 시작

138 자유북한군인연합, 2009,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광명기획, 191쪽.

했다.<sup>139</sup>

사진의 주인공이 5.18 당시 북괴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이름은 광수라지요. 광수만 알으면 5.18은 만사 오케이 아닌가요?  
계엄군도 아니고, 광주시민군도 아니라면 북괴군이 틀림없겠죠.  
그나저나 광수 사진은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5.18 책을 보다 보니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별생각이 다 드는군요...



〈그림 6-1-18〉 필명 '달마'의 게시물

2015년 이전까지 '광수' 관련 주장은 주로 위 사진과 '광수'라는 북한특수군 1명의 이름을 연결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시스템클럽〉에도 간헐적으로 '광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등장했지만 광주에 침투했다는 북한특수군 전체를 일컫는 단어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139 「이름은 광수라지요.....」(2010.08.25.), [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91&wr\\_id=23531&ssl=wr\\_subject%7C%7Cwr\\_content&stx=광수&som=and&page=2&keyword=광수](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91&wr_id=23531&ssl=wr_subject%7C%7Cwr_content&stx=광수&som=and&page=2&keyword=광수),



‘광수’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2015년 5월 5일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 필명 ‘노숙자담요’가 「5·18북한특수군 증거사진 얼굴비교분석!」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부터였다.<sup>140</sup> 노숙자담요는 같은 날 「5.18 북한특수군, 제2의 ‘광수’ 발견!」이라는 글에서 ‘광수’를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광주에 파견되었다는 북한특수군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했고,<sup>141</sup> 이러한 명명법은 5월 6일 제3광수, 그리고 5월 31일 제4,5,6광수 등으로 이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sup>142</sup>

한편 지만원은 노숙자담요의 분석을 인용하여 일명 ‘광수’들이 북한특수군 또는 계엄군 모략을 위한 상황극 연기를 위해 파견된 북한 민간인들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지만원이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 자료를 인용하자 일부 <시스템클럽> 회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노숙자담요에게 5·18 현장사진 등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sup>143</sup> 다수의 유사 게시물을 양산하였다.

또한, 노숙자담요와 지만원 등은 <시스템클럽>의 ‘광수’ 주장 게시물을 <뉴스타운>과 <사이버뉴스24> 등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광수’ 주장의 확산을 시도했고,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들의 주장을 전재하거나 인용하면서 확산시켰다.

지만원의 ‘광수’ 주장은 거의 전적으로 노숙자담요가 수행했다는 영상분석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지만원은 2016년 3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 신문에서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의 인물이 ‘제71광수 황장엽’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나는 검사의 질문에 “첫

140 「5·18 북한특수군 증거사진 얼굴비교분석!(2015.5.5.)」,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97817&page=1128](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97817&page=1128).

141 「5.18북한특수군 제2의 ‘광수’ 발견!!」(2015.05.05),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97850&page=1127](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97850&page=1127)

142 현재 노숙자담요의 ‘광수’ 관련 게시물은 <시스템클럽> 홈페이지에서 상당부분 삭제된 상태이다.

143 서울중앙지방방법원에 제출한 지만원 답변서, (2017.02.27.), 2~3쪽. 5·18조사위는 해당 답변서에서 지만원이 노숙자담요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목한 필명 ‘기재’, ‘김제갈윤’, ‘은방울꽃’, ‘파랑새’, ‘북진통일’, ‘해민’, ‘북진자유통일’, ‘각성’, ‘조희선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시스템클럽>에 요구했으나 지만원은 제출을 거부하였다.



째 영상분석 전문가가 영상을 분석 하였는데...(중략) 둘째 황장엽으로 지목된 사람 주위에는 7명의 북한군이 있습니다. 그 7명에 대한 북한군에 대한 얼굴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셋째, 저는 박남선 얼굴과 황장엽 얼굴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영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고 진술했다.<sup>144</sup> 세가지 근거가 모두 영상분석이라는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지만원은 자신은 영상분석을 못하는데 노숙자담요라는 팀이 있어서 이 들로부터 분석결과를 제공받아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노숙자담요의 실체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다음은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노숙자담요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sup>145</sup>

(검 사) 위 글쓴이: 노숙자담요라고 되어 있는데 피의자가 이러한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가요  
(지만원) 예 그렇습니다.

(검 사) 영상분석을 피의자가 하였는가요

(지만원) 영상분석은 ‘노숙자담요’라는 팀이 있어서 그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 사) 노숙자담요라는 팀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지만원) 중국단동에서 중국을 정부로부터 프로젝트(인간 쓰레기 제거)를 하는 마약, 마피아 등에 대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분석을 하는 사람은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람을 없애는 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검 사) 피의자는 ‘노숙자담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지만원) 저는 팀장으로 총괄적으로 영업과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서 검토시 “저는”과 “팀장” 사이에 “노숙자담요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참모로 사용하여 역사를 규명하는 팀장입니다”를 손글씨로 추가)

(검 사)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지만원) 광주에서 찍힌 사진들을 엄청 구하여 그 사진과 북한 고관들(총리, 고관, 장군)에 대하여 대조하는 영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363명을 발견했습

14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만원 피의자신문조서」(2016.03.08.).

145 이때 검사와 지만원의 문답은 노숙자담요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 중 노숙자담요 관련 부분을 본 보고서에 수록한다.

니다.

(검 사) 피의자는 노숙자담요 팀에서 얼굴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런가요

(지만원) 예, 그렇습니다. 노숙자담요 팀장으로서 종합적으로 상황분석, 얼굴분석에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인터넷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서 검토시 “팀장으로 서”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팀으로부터 분석 결과를 제공받아”를 손글씨로 추가)

(검 사) 구체적으로 영상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만원) 특수컴퓨터를 가지고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으로 설치하여 미국 CIA, 영국 MI,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사용하는 분석 테크닉입니다. 양쪽 사진을 가지고 기하학적 분석을 합니다. 이는 지문 분석과 똑 같습니다. 얼굴의 한 포인트를 정해서 얼굴의 각 부위까지 선을 그어 모형이 만들어 지고 그 모형이 두얼굴에 일치하면 같은 사람으로 판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 사) 위와 같은 영상분석을 피의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만원) 저는 그것을 못합니다.

(검 사) 영상분석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가 있는가요

(지만원)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저와는 비밀로 합니다. 노출 시키면 안 됩니다.

지만원은 자신이 영상분석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활동하는 노숙자담요라는 팀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영상분석 결과를 받아 자신이 인터넷에 게시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만원은 검찰 조사에서 제139광수가 홍일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분석하여 나온 것입니다. 통일부 인명자료에서 제가 홍일천의 사진 인터넷 가지고 와서 분석한 것입니다. 특수컴퓨터로 분석한 것입니다”라면서 자신이 직접 영상분석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조사에서 지만원은 “저는 박남선 얼굴과 황장엽 얼굴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영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고도 하였다. 지만원 스스로도 영상분석의 주체에 대해 엇갈리는 진술을 한 것이다.

영상분석 기법에 대해 지만원은 “기하학 분석은 범죄증명에 쓰이는 대단히 신빙성이 높은 분석법이다.(중략) 기하학 다음단계로는 절대적으로 분별하는 테크닉으로 등고선과 등고각분석이 있습니다... 이 등고선, 등고각 단계의 분석테크닉은 아무리 닳은 사람이라 할 지라도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모두 이 단계에서 걸러내어 집니다. 대단히 정밀하며 미세하고 입체적이며 아무리 닳은 사람, 설사 쌍둥이라하더라도 쌍둥이의 미세한 차이점을 잡아낼 수 있는 장비이며 테크닉입니다”라고 쓰인 아래 「제71광수 황장엽, 기하학적 분석」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다.<sup>146</sup>



〈그림 6-1-19〉 지만원이 검찰에 제출한 영상분석기술 관련자료(일부)

그러나 위 제출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만원이 내세우는 이른바 “영상분석기술”이라는 것은 두 인물사진에 선을 긋고 도형을 만든 수준에 불과하며, 지만원은 이외에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촬영 시기에 수십 년의 시차가 있는 사진

146 5·18조사위에서 검찰을 통해 입수한 지만원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해당 자료는 복사본으로 상태가 불량하여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지만원이 2015년 8월 5일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여기에 실는다. 「제71광수 황장엽, 기하학적 분석」, <https://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21>.

두 장을 놓고 눈, 코, 입 등 1~2개 특정 부위가 유사하다거나 각 부위를 연결한 선의 형태가 같다면 이들이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진 촬영 각도와 촬영 당시의 조도, 피사체의 동작과 표정 및 크기 등 수많은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적인 방법이다.

이외에도 지만원은 혀를 내미는 동작이 같다면 동일 인물(일명 ‘혓바닥 광수’)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노숙자담요가 이 사람의 얼굴을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 장성철로 감정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장성철이 홍콩 <봉황TV> 인터뷰에서 무려 32번씩이나 혀를 내밀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를 “믿을 수 밖에 없는 광수”라고 하였다.



〈그림 6-1-20〉 지만원의 ‘제498광수’ 주장, 일명 ‘혓바닥 광수’

심지어 지만원은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거나 해상도와 인화 품질이 극도로 불량하여 판독이 어려운 사진들을 제시하고 그중 특정 부위에 같은 도형을 표시한 다음 두 명이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아래 ‘제618광수’ 주장에 사용된 사진이 대표적이다. 지만원은 그를 평양 주재 몽고대사관저 만찬에 참석한 북한 외교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림 6-1-21〉 지만원의 '제618광수' 주장

한편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 및 광주 현지의 지형·지물과 상황에 대해 제한되고 부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른바 '경찰 광수' 주장이 대표적이다.

'경찰 광수' 주장이란 지만원이 아래 사진에 대해 “광주사태 당시, 경찰들은 가장 먼저 변장하고 도망갔다. 이 사진은 5월 23일경 촬영된 사진인데 이 시기에 경찰이 경찰복을 버젓이 입고 도청 내 질서를 통제할 수는 없었다. 남한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는 북한 의 공작시나리오 작가가 잘못 작성한 시나리오에 의해 마련된 세트장 촬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진의 경찰이 전남경찰로 위장한 제161 광수이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인 김중협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림 6-1-22〉 지만원의 '제618광수' 주장

5·18조사위 확인 결과 지만원의 '경찰 광수' 주장은 사진의 촬영 시기 및 촬영 장소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잘못 파악한 데 따른 잘못된 주장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먼저 위 사진은 1980년 5월 23일이 아니라 5월 27일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5·18조사위는 경찰관과 상복을 입은 사람이 찍힌 신아일보 이창성 기자의 사진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는데,<sup>147</sup> 해당 사진에서 철모에 흰색 피아식별띠를 두른 계엄군의 모습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계엄군의 상무충정작전 이후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14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 관련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5·18기념재단연구소-232, (2022.03.14.)



〈그림 6-1-23〉 계엄군이 장악한 도청 앞 광장 및 남도예술회관



〈그림 6-1-24〉 위 사진에서 상복 입은 사람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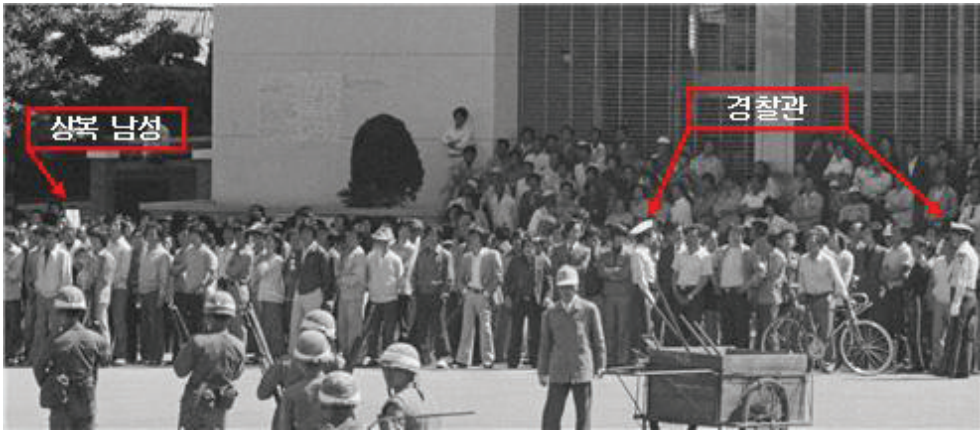




〈그림 6-1-25〉 이창성 촬영 사진(좌) 및 ‘경찰 광수’ 사진(우) 비교

위 사진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만원의 ‘경찰 광수’ 주장 사진에 등장하는 상복 입은 남성과 교복을 입은 소년은 이창성 기자가 촬영한 사진에서도 식별된다. 두 사진을 비교한 결과 지만원 주장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전남도청이 아닌 남도예술회관(현재는 철거) 앞으로 확인되었으며, 철모에 피아식별띠를 두른 계엄군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촬영 시기는 1980년 5월 27일 이후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창성 기자 촬영 사진을 확대해 보면 경찰이 나와 남도예술회관 앞에 모인 시민들을 통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26〉 남도예술회관 앞의 상복 입은 남성과 교통경찰관

이처럼 지만원이 ‘경찰 광수’ 주장에 활용한 사진의 촬영 시기는 1980년 5월 27일 이후, 사진의 장소는 전남도청이 아닌 남도예술회관 앞이며 당시에는 계엄군이 광주를 장악하고 경찰관도 배치되어 활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만원의 ‘경찰 광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오류이며, 이는 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 및 광주 현지의 지형·지물과 상황에 대해 제한되고 부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특수군 개입 주장을 전개하면서 사진을 잘못 판독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왔다. 특히 지만원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해상도도 낮은 사진을 미흡하거나 잘못된 군사지식으로 해석하면서 다양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기록과 진술 등을 통한 교차 검증 없이 정지되어 있는 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만으로 상황을 특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사진을 사용해 왔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만원의 이른바 ‘광수’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육안으로만 유사해 보이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5·18당시 촬영된 사진의 인물과 북한 관련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사법부도 지만원의 ‘광수’ 주장에 대해 이와 유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일명 ‘광수’ 주장을 포함하여 지만원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형사재판판결문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sup>148</sup>

피고인은 위 얼굴비교분석결과는 ‘노숙자담요’가 얼굴, 지문인식 기하학 분석, 법의학적 골상 분석, 표면 등고선과 등고면각, 형상방향각 분석 등 과학적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검토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얼굴비교분석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외관상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 등의 데이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사진 간의 차이점에 대한 해명도 없고, 오류검증절차를 거친 바도 없어 보인다.(중략)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을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광수사진 비교분석 외에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기술이 적용된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노숙자담요’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글과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명 ‘노숙자담요’팀의 팀장으로서 총괄적으로 영업과 지휘를 하고, 위 팀으로부터 분석결과를 제공받아 종합적으로 상황분석, 얼굴분석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여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명 ‘노숙자담요’는 피고인과 사실상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노숙자담요’가 피고인과 독립된 객관적인 제3의 판단주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14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3형사부, 「2020노804 판결」(2022.02.16.), 25~26쪽 참조. 대법원에서 피고인과 검사측 상고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본 2심 판결 내용이 확정되었다.

9) 북한군이 공수부대 모함용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했다는 주장

지만원은 군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민간인을 엮드리게 해놓고 총을 겨누고 있는 아래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는 전형적인 모략용 심리전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림 6-1-27〉 “북한군 세트촬영” 주장에 사용된 사진

각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해당 사진은 한겨레신문 1995년 5월 18일자 23면에 「그날의 참상 재연」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사진이며, 1995년 5월 17일 오후 전남 대학생들이 교내에서 계엄군과 시위대로 분장하고 80년 5·18 당시의 시위진압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사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18책임자 기소촉구 전국 집회·시위

5·18 광주민중항쟁 진상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학생과 대학생이 모이고 남시 집합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 추모대에 뛰어 전국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시 남산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간·현상 3시간에 달하는 가운데 5·18 35주년 행사 위원회(위원장 조희연) 주최로 5·18집회에 참가했다.

물고기 날과 장사지킴이 간담회 등에서 광주역에서 분포한 간담회를 열었다.

5·18행사위는 18일 오전 10시 광주 광복동 5·18기념관에서 공식 추모식을 가진 뒤 오후 3시부터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5·18 35주년 기념식과 3월정신 계승 및 광주학생 책임자 기소촉구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장(남총학) 조희연은 5·18 35주년 기념식 당일 1시에 광주시 해구 중흥동 인제대 광주지남지부 앞과 해구 자갈밭 광주지남지부에서 5·18 35주년 기념식과 3월정신 계승 및 광주학생 책임자 기소촉구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집합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거행하며, 이날 오전엔 서울 광화문 광부총학생회장 모임에서 한국대 학생학생총연맹(한총연) 소속 대학생 20명이 책임자 기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에 모두 연행됐다.

또 경기 수원과 부산, 충북 충주 등에서도 재야단체와 대학 학생회 주최로 책임자 기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주의민중연맹 경기남부연맹 소속 회원 40여명이 이날 낮 12시에 수원역광 장한 앞에서 집회를 갖고 5·18 집합수사에 대한 합법시행할 수권자에게 연행됐다.

전남에 총학생이 40여명 참여한 7차 머천서 수사과정 피습

17일 오전 5시40분경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관교리 광수당에서 열린 총학(남·여·4차) 30주년에서 이천경찰서 수사과정 피습(여4차) 중 7명이 3차 청년 2명이 최후로 달에 총의 충상을 입었다.

경찰은 민중 재건당(민중당) 소속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4차 광수 수사에 별다른 불만 없이



그날의 참상 재현 17일 오후 전남대생들이 교내에서 7대1로 시위대를 연행하고 폭탄 투척 및 시위 시위진압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광주 / 동아일보 기자 전용

## 마산매립지 4개 빌딩 기우뚱

90cm기운 것은 철거할 9개지(4만 5000)기운 빌딩으로 기울어 있고 안전에 40%떨어지거나 스러질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빌딩 40%떨어지거나 스러질도 있다고 말했다. 20m 이상 높으면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통영건설 건물주에 대해 40% 높이를 낮추거나 철거할 것을 명령할 예정이다. 이를 빌딩주에

한편 책임감에 임해인 (주)부산 건설과 건물주 기운 것은 건설당 책임자 책임자와 자원이 40%떨어지는 사실을 지적하고 기소공소를 제기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건축주들은 부산에서 책임 해설도자 업무를 계속도 하지 않아 자원에 공 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

〈그림 6-1-28〉 한겨레신문 1995.5.18.일자 23면 해당 기사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사진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계엄군과 시위대로 분장하고 당시 시위진압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사진으로, 지만원의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5·18조사위는 지만원에 대한 1차 조사시 위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당 사진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지만원은 “출처가 저 신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5.18하고 직접 관련된 사진은 아니네요. 어쨌든 세트 사진인데 공수부대를 모략하는데 쓰인 것 같습니다”라면서 해당 사진이 5·18 당시 북한군에 의해 촬영된 것이 아님을 시인하였다.<sup>149</sup>

149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지만원 진술조서」(2023.08.24).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다. 북한과 5·18 관련 주장 검증

### 1) 5·18열사릉 주장

탈북자들이 북한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첫째, 남파되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묘지(열사릉)가 북한에 존재하며, 둘째, 남파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유공자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 및 국기훈장을 수여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다는 것이다.

〈표 6-1-11〉 탈북자 등이 주장하는 북한 내 5·18민주화운동 기념 묘지

구분	출처	주장 내용
묘지	『풍계리』(김평강, 2017, 곰시)	평양의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97명 합장
	김주호 기자회견 (2012.9, 프란치스코 회관)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 ‘인민군 영웅들의 련사묘’위치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 5·18』 (〈자유북한군인연합〉, 2009, 광명기획)	청진 천마산 마루에 묘지 위치. 이외 해주시, 원산시 부근 등 여러 곳에 5·18 참가했다가 사망한 영웅 묘지 위치 (전 북한 농촌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강원도 김화(북한군 5군단 지역) 인근에 묘지 위치 (전 북한군 하사관 출신 탈북자 박행운)
	『광주 5·18탈북자 증언』 (이철산, 2012, 자유와 생명)	평안남도 평원군 원하리 야산에 묘지 위치(김일성 비준)
	『보랏빛 호수』 (이주성, 2017, 비봉출판사)	
	김경재 주장 (2023.5.10. Knews 보도)	평양 신미동 애국열사릉 정문 왼쪽 코너에 9~11개의 ‘5·18가담 北특수군’ 묘비가 존재

그러나 대성산 혁명열사릉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인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국립묘지로서, 김평강의 주장처럼 5·18 당시 전사자들이 안장될 성격의 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기록에서도 5·18 관련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

었다.<sup>150</sup>

또한, 해주·원산 열사릉 및 청진 열사묘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5·18 당시 사망한 북한군이 안장되어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탈북자들이 5·18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강원도 김화 및 평안남도 평원군 열사릉(열사묘)의 존재 및 5·18과의 관련성 여부는 현재 5·18조사위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서는 어떠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

## 2)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 5·18을 영예의 훈장으로 하사한다는 주장

탈북자들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들이 북한 각지에서 벌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또, 북한에서 일부 사용되는 5·18이라는 호칭이 5·18민주화운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2009), 『광주 5·18탈북자 증언』(2012), 『보랏빛 호수』(2017)에 ‘5·18’ 호칭이 사용되고 있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① 5·18무사고정시견인운동 주장 및 검증

탈북자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북한 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바로 ‘5·18무사고정시견인운동’이다. 이들은 1980년 이전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이 순수하게 ‘무사고정시견인차운동’이었으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뜻에서 ‘5·18무사고정시견인차운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는 1980년 초,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여 해당 운동이 북한 간부용 강연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50 중앙일보 강영진, 이철희, 정용수 기자, 앞의 기사 및 최재영, 『평양 혁명열사릉과 헤산 혁명열사릉』, 통일뉴스, 2015.3.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086>



그러나 조사 결과 북한에서는 1980년 이전부터 이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979년 7월 27일 로동신문 보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 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벌릴 것을 결의해나셨다.”라고 하였으며, 28일 로동신문 역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8차 전원회의 결정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철도운수부문 수송전사들의 대중적 혁신운동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끝없이 격동”이라고 보도하였다.<sup>151</sup>

따라서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은 낙후된 북한의 수송사업 발전을 위해 진행된 당 중앙위 제5기 제18차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때 사용된 “5·18”은 5·18민주화운동과는 관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5·18프레스(5·18청년호) 주장 및 검증

탈북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주장하는 북한 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5·18프레스’이다. 탈북자들은 기계 상단에 ‘5·18청년호’라고 적혀 있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김정일이 직접 ‘5·18청년호’라는 이름을 붙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52</sup>

그러나 로동신문 등 북한자료를 조사한 결과 ‘5·18프레스(5·18청년호)’는 김정일이 룡성의 <기계연합공업성>을 방문하여 1만 톤 프레스의 제작을 지시한 일자인 1984년 5월 18일을 기념하여 명명한 이름으로 보이고, 1989년 이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공장을 강선에 건설하여 ‘5월18일대형단조공장’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51 「로동신문」 (1979.07.28.), 3면.

152 이철산, 『광주 5·18탈북자 증언』 자유와 생명, 2012, 83쪽.

### ③ 5·18기계공장(5월 18일 공장) 주장 및 검증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북한 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는‘5·18기계공장’도 있다. 한 탈북자는 1983년 3월 초순, 김일성이 문천기계공장 현지 시찰 당시 공장 지배인(행정 책임자)이 김일성에게 공장 이름을 지어줄 것을 제의하자 그가 <5·18기계공장>으로 답변하며 “내가 <5·18기계공장>으로 이름을 지은 것은 광주 5·18폭동에 남파되어 남조선 해방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인민군 군인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들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요”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sup>153</sup>

그러나 북한 언론 검토 결과, 해당 공장은 1950년대부터 운영되던 곳으로 확인되었다. 로동신문 1979년 4월 19일자에는 「조직사업을 세밀히 짜고들어야 한다 - 5월 18일 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를 통해 “5월 18일 공장”이라는 명칭이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980년 5월 18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사에는 해당 공장이 밸브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sup>154</sup>

따라서 ‘5월18일공장’은 1956년 5월 18일 김일성 현지 지도와 관련하여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이고, 1950년대부터 운영된 이래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영도 업적을 홍보하는 사례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북한 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다양한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④ 5·18영화연구소(5·18시험소) 주장 및 검증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북한 내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대부분 자료 확인이 어렵지만 지만원이 주장하는 ‘5·18영화연구소’의 실체는 확인할 수 있었다. 지만원은 본인의 저

153 이주성, 『보랏빛 호수』, 비봉출판사, 2017, 172~173쪽.

154 『로동신문』, (1979.04.19.), 4면.

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2020)를 통해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 ‘5·18’이라는 글자를 영예의 상징으로 하사한다며, 그 예로 ‘5·18영화연구소’를 제시한 바 있다.

확인 결과, 지만원이 인용한 기사 원문은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합뉴스 최척호 기자의 기사였다.<sup>155</sup> 해당 기사는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2001년 6월 28일자를 인용, ‘5·18영화연구소’의 정식명칭은 ‘5·18시험소’이고 내각의 문화성 소속이라고 쓰고 있다. 기본적인 임무는 ‘영화창작에 도움이 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책자들을 번역, 보급하는 일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것 역시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 월간지 <조선예술> 2008년 5월호<sup>156</sup>의 내용을 통해 ‘5·18영화연구소’는 1960년에 발족한 ‘시험소’가 모체이며, ‘5·18’이라는 표현은 1973년 5월 18일 김정일 현지지도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명칭일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시기	1960년	1973년 5월 18일	1980년 3월	2001년 6월 28일
명칭	시험소	시험소	5·18시험소	5·18영화연구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김정일, 김일성의 현지지도 또는 사업 지시 날짜를 기념하여 사업이나 시설, 기관, 기업의 명칭을 정한 사례가 있고, 따라서 북한이 ‘5·18’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사실만으로 5·18민주화운동과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5 「처음 실제 밝혀진 북한 ‘5.18영화연구소’」 통일뉴스, (2001.09.28.)<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47>

156 「조선예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2020.12.02.), 6쪽.

### 3) 북한 대표단의 5·18묘지 참배는 북한군 개입의 증거라는 주장

조사대상자 이주성은 5·18조사위 대면 조사시 북한 대표단이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주성은 당시 “북한 대표단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4.3이나 6.10 희생자들에게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면서 5.18 묘지에 가서는 비를 맞으면서 머리를 조아리는지 답변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5·18 조사위는 해당 주장을 검증한 결과, 과거 북한 대표단이 국립서울현충원 및 4·19묘지 등도 방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 대표단이 5·18묘지 외에 다른 묘지도 참배하였다는 사실은 간단한 언론기사 검색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8월 14일,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 참석차 방남한 북한 대표단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였다. 이어 2007년 4월 30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하였으며, 2007년 5월 19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하였다.

조사대상자 이주성 및 지만원 등 일각에서는 5·18 묘지를 참배하는 북한 대표단의 사진을 근거로 “남한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이 5·18묘지만을 참배하였다”면서 5·18 당시 북한군 침투를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 대표단은 5·18 묘지 외에도 국립현충원, 국립3·15민주묘지, 국립4·19민주묘지 등을 참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주장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4) 5·18은 김일성 교시에 의한 것이라는 북한 교과서와 문헌 주장

지만원은 2015년 10월 14일자 「北교과서 「南 민주화운동은 모두 김일성 교시 따른 것」 제하 연합뉴스 기사 및 북한 조국통일사 발행 대남공작 문헌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근거로 5·18민주화운동이 김일성 지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확인 결과, 해당 연합뉴스 기사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서옥식 초빙연구위원이 2015년 11월 출간한 저서『북한 교과서 대해부』를 소개한 기사였다.<sup>157</sup> 『북한 교과서 대해부』머리말에서 저자 서옥식은 “본서는 북한이 우리민족 5천년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로, 특히 근현대사를 김일성 가계의 혁명역사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실을 날조·왜곡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날조·왜곡을 통일과 대남전략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북한 교과서 등 각종 학습서에 수록된 원문(原文)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특히 북한의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된 내용이 기술된 이유에 대해 저자는 “계엄군과 국가를 모략하고, 남한 국민은 물론 북한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지어낸 유언비어”라면서 북한 교과서의 날조·왜곡이 북한의 대남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158</sup>

그러나 지만원은 저자의 의도인 “북한 교과서가 현대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다”를 제외하고 북한 교과서에서 왜곡하고 있는 5·18 관련 내용만 발췌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서에도 5·18을 김일성이 지휘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지만원은 그 근거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157 『北교과서 “南 민주화운동은 모두 김일성 교시 따른 것”(2015.10.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101418590004>.

158 서옥식, 2015, 『북한 교과서 대해부』, 해맞이미디어, 15쪽 및 422쪽.

## ① 중194, 611쪽

정이라는것을 심장으로 느끼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새로운 구국통  
 일방안을 내놓으실 때마다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하여나섰으며 원수  
 들의 파르투알과 분별 책동이 극도에 이른 어려운속에서도 조국통일  
 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 ② 중194, 제596쪽 8~12행

남조선인민의 해방투쟁의 역사에 불멸의 위훈의 향을 살아올린  
 영광스러운 광주인민봉기는 커다란 역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  
 광주인민봉기는 그 성격에 있어서 민주화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의 간절한 지향을 반영한 대중적인 민족적투쟁이며  
 가장 높은 형태의 반파쇼민주화투쟁으로 된다.

〈그림 6-1-29〉 『주체의 기치 따라...』 중 5·18관련 내용(1)

이 때ათ아 이용하였거나 파피한 땅크와 장갑차, 군용자동차 등 군  
 수용차량만 해도 수백대에 이르렀으며 농민에게서 빼앗은 유류는  
 3,000여도람이나 되었다. 서방통신들은 광주봉기자들이 피피콜로  
 부터 빼앗은 각종 무기와 장비들은 2개 사단을 무장시킬수 있는것  
 이라고 자랑했다.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한 봉기자들은 조직적으로 전  
 투부대를 편성하고 무장항전을 벌임으로써 외선들이 <10일전쟁>,  
 <공민전쟁>이라고 본정한것처럼 광주인민봉기는 파르투알세력을 반  
 대하여 민주세력이 전행하는 전쟁국면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파르  
 여기에 광주인민봉기가 가장 높은 형태의 반파쇼무장투쟁으로 되는  
 가장 주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광주인민봉기가 가장 높은 형태의 반파쇼민주화투쟁으로 되는  
 것은 셋째로, 이 투쟁이 자체의 발전과정에서 광주시를 피콜로부터  
 해방하여 <자유도시>로 만들고 거기에서 민주주의적자치를 실시하  
 였다는데 있다.

〈그림 6-1-30〉 『주체의 기치 따라...』 중 5·18관련 내용(2)



그런데 위에서 지만원이 인용한 부분은 북한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김일성이 5·18민주화운동을 지휘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설사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자료에 5·18민주화운동이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5) 5·18 당시 현장 기록에 대해 북한 문헌이 우위에 있다는 주장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 현장 기록과 관련, 남한의 정보원이나 기자가 갈 수 없었던 위험한 곳에 북한의 전문 기록 요원들이 박혀 있어 남한 당국에는 없는 생생한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 문헌들에는 폭동의 전술과 전략, 그리고 교훈이 일목요연하고 가독성 있게 정리했다고 하였다. 반면, 남한은 기본 자료 형태로만 존재할 뿐 대중에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만원은 북한 자료에 계엄사가 체포한 730명에 대한 나이와 직업 분석이 통계 처리되어 있는 등 남한 당국이 하지 않은 성분 분석을 북한 당국이 먼저 했다면서, 이것이 5·18을 북한이 주도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만원이 근거로 제시한 북한 문헌에서는 당시 상황을 잘못 기술한 내용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북한 문헌은 “계엄군 통신지휘부가 있는 카톨릭센터”라고 하였으나 카톨릭센터에는 기독교방송국이 있었고 계엄군의 통신 지휘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장놈이 도망치자 눈치만 보았던 경찰놈들은 총을 쥘버리고 뿔뿔이 도주하였다”고 하였지만 당시 경찰은 총기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대 31연대놈들과 폭동군중이 맞붙어 육박전을 벌렸다”고 하였으나 공수부대 편제에 31연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선전 선동을 위해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북한 문헌들에 폭동의 전술과 전략, 그리고 교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는 주장과 관련, 지만원은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567쪽과 609



~610쪽 등 단 3쪽을 근거로 북한 문헌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한 당국은 5·18민주화운동 이후 복수의 교훈집과「광주사태의 진상」·「계엄사」·「5공 전사」등을 작성하였으며 이외에도 상황일지, 전투상보, 부대원 수기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으로 남겼다.<sup>159</sup> 또한, 보안사는 「광주사태 수사 결과」에서 내란모의 실행, 계엄군과 시위 학생들의 충돌, 시민 가세 폭동화, 시위군중의 무장 폭동화, 폭도의 조직화와 재야 세력의 조종 등 5·18민주화운동 가담자들의 조직 체계와 활동 내용을 총 101쪽에 걸쳐 세부적으로 정리하였다.<sup>160</sup>

남한 당국이 체포된 사람들의 성분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만원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안사는 이미 1980년 작성한「광주내란 및 소요사건」에서 송치자를 연령별, 직업별, 전과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sup>161</sup>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내용에서 북한 문헌이 우위에 있다는 지만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는 5·18 관련 자료를 민간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지만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6) 영화 제작을 통한 계엄군 모략을 북한이 선도한다는 주장

지만원은 북한이 1980년 42분 분량의 기록 영화를 제작한 반면, 남한 당국은 현장을 촬영할 수 없었고 광주 현장에 대한 촬영권은 처음부터 북한이 소유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 지만원은 저서「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광주 곳곳에서 전투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사람도 북한 사람이고, 촬영한 사람도 북한 사람이었으므로

159 일례로 육군본부가 1982년 작성한 「光州事態(草案)」의 경우 광주사태의 배경과 원인, 일자별 경과, 피해상황 및 당국의 조치, 광주사태와 복고, 교훈 및 결론 등 212페이지에 달한다. 육군본부(1982), 「광주사태(초안)」, (국가기록원 CA0517547).

160 국군보안사령부(1980), 「광주사태 수사결과」, 고유번호 광주 383-1988-008 (MF 릴 번호 61877-1.4), 205~305쪽.

161 국군보안사령부(1980), 「광주내란 및 소요사건」, 고유번호 광주 383-1980-096 (MF 릴 번호 61866-1.2), 386쪽.

5·18은 북한 사람들이 주도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sup>162</sup>

지만원은 위 책에서 자신의 “합리적 추론”을 뒷받침하는 “생생한 물증”이라며 《광주비디오》를 제시하고,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1980년 5월의 광주현장 곳곳을 촬영했다는 증거가 자막으로 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지만원의 책에 나온 《광주비디오》화면이다.



〈그림 6-1-31〉 지만원이 근거로 제시한 《광주비디오》 화면

지만원은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촬영한 기록영화의 제목은 《군사파쇼도당을 반대하는 광주인민항쟁》이며, 기록영화를 촬영-편집한 주체는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조선기록영화촬영소>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의 촬영 주권은 북한에게 있었으므로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만원 스스로가 근거로 제시한 《광주비디오》화면에는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62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68~71쪽.

가 영상을 편집했다고 되어있을 뿐, 촬영했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편집”을 “촬영-편집”으로 왜곡한 것이다.

또한, 지만원의 주장과 달리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다양한 내·외신 기자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광주의 현장을 촬영하였다. 신아일보 이창성 기자, 동아일보 황종건·김녕만 기자, 한국일보 박태홍 기자, 경향신문 정남영 기자, 전남매일 나경택 기자, 전남일보 신복진 기자, 국제신문 김탁돈 기자 등이 광주의 상황을 촬영하였고,<sup>163</sup> 이들 중 일부는 당시 촬영한 사진을 사진집으로 남기기도 하였다.<sup>164</sup><sup>165</sup><sup>166</sup>

외신기자들로는 미국 CBS 유영길 기자,<sup>167</sup> NBC 유영상 기자, ABC 뉴스 최인집·최광태 기자, TIME지 로빈 모이어 기자, UPI 정태원 기자,<sup>168</sup> 일본 아사히신문 아오이 카츠오 기자, NHK 이마에다 히로시 기자, 독일 ARD-NDR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프랑스 기자인 패트릭 쇼벨과 프랑스와 로송<sup>169</sup> 등이 광주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였다. 일부 계엄군들도 외신기자들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11공수여단 61대대 1지역대 6지대장 백운호는 “5월 26일 전일빌딩 7층에 외국기자들이 갇혀 있으니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고 저녁에 송정리 비행장에서 헬기편으로 주남마을에 내렸다”고 하였고,<sup>170</sup> 같은 부대 정작하사관 고윤재는 “5월 27일 전일빌딩에서 외신기자들을 봤으며, 이들은 자유롭게 다녔다”고 진술하였다.<sup>171</sup> 61대대 3중대 9지대 폭파하사관 최상규는 “5월 19일 은

163 「5·18 당시 취재기자 현장 증언 간담회 계획 보고」, 대외협력담당관-210,(2023.04.17.)

164 신복진, 2009, 『광주발 사진종합 1965-2009』, 눈빛출판사.

165 황종건·김녕만, 1994, 『1980년 5월 光州, 그날』, 사진예술사.

166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이창성 기자 촬영사진 2,242장, 나경택 기자 촬영사진 1,834장이 게시되어 있다. 「5·18 사진 아카이브」, 5·18기념재단, <https://photo.518.org>.

167 「5·18, 처음으로 취재 보도한 영상기자 찾았다」, 한국영상기자협회, [https://tvnews.or.kr/board\\_qQPd14/50068](https://tvnews.or.kr/board_qQPd14/50068).

168 정태원, 2013, 『서울발 사진종합』, 눈빛출판사.

169 5·18조사위, 조사2과-1138(2023.07.21), 「자료 입수 보고(외신기사 로송과 쇼벨 입수자료)」.

170 5·18조사위, 「조사대상자 백운호 진술조서」(2022.12.03.).

171 5·18조사위, 「참고인 고윤재 진술조서(2023.01.07.)」.

행에 대기하다가 시위대가 외국 기자들과 인터뷰한다고 하여 중대원 전체가 출동했다”고 진술하였다.<sup>172</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북한이 광주에 촬영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으며, 반대로 다수의 내·외신 기자들이 광주에 체류하면서 현장의 상황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만원의 해당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간첩 이창용·손성모 사건

### 1) 검거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 사건

1980년 5월 23일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을 검거한 서울시경은 검거한 다음날(5월 24일) “이창용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무장 폭력 시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임무를 띠고 납파된 간첩이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sup>173</sup> 이는 당시 발생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깊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5·18조사위 조사결과 이창용은 1980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경찰국이 발표한 그의 임무 “광주 소요 선동 임무 납파 간첩”과 달리 1960년대에 침투하여 단선된 고정 간첩망 복구 수습지도, 노동당 경기도당 결성, 필요시 단선 간첩 이연중 대동 복귀 등 임무<sup>174</sup>를 띠고 납파된 소위 “검열 간첩”으로, 5·18민주화운동이나 시위 선동과는 관련이 없

172 5·18조사위, 「최상규 진술요지서」(2022.09.15.).

173 1980. 5. 23. 간첩 이창용을 검거한 서울특별시경찰국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음날인 1980. 5. 24. 서울시경 국장 염보현이 직접 간첩 이창용에 대해 “광주 시위 선동 임무 납파간첩 검거”로 발표, 서울신문 등 언론사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음.

174 이창용의 2회 자술서(1982.02.17. 작성) 51쪽 중 28쪽~29쪽 기술에서 노동당 연락부장 정경희로부터 부여받은 ◎ 기본 임무는 ① 서울 경기지구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 속에 침투 암호(掩護)거점 구축 ② 기(既) 침투 활동 중인 단선된 공작원 이연중을 연계 조직수습 지도로 노동당 경기도당 지도부 형성 ③ 정황에 따라 이연중 대동 복귀, 불가시 장비 인계 연계조직을 회복, ◎ 부차적 임무는 ①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제반 정보수집 ② 한미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창용은 체포 당시 자살을 하려고 소지했던 독약 앰플을 삼켰지만 즉사하지 않아 혀를 깨물어 재차 자살을 시도하여 체포된 직후 의식을 잃었고, 혀가 잘려 병원으로 후송되어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당시 계엄사의 통제를 받은 서울시경은 이창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5·18민주운동과 연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체포 다음날인 1980년 5월 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창용의 자술서, 검사와 경찰의 진술조서, 수사결과 보고 어디에도 남파된 임무와 관련하여 광주 혹은 시위 등의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이창용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군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체포 사실과 남파 목적 등을 발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결과 검거 간첩 이창용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경찰 등 관계기관의 역사기록에서 본 사건을 「검열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 사건」으로 수정토록 하는 대정부 권고안 채택이 필요하다.

## 2) 간첩 손성모가 북한에서 5·18 주도자로 선전·찬양된다는 주장

지만원은 1981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체포되어 1999년까지 수감되어 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 복송된 손성모가 광주 현장 사진들에 여러 번 등장한다면서 이른바 ‘제64광수’로 지목하고, 그가 증심사를 본거지로 하여 남파된 북 특수군에 핵심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였다.

손성모는 승려로 위장 침투하여 불교계에서 암약하기 위해 사전 치밀한 장기 교육을 받고, 1980년 5월 4일 전라남도 해남군 해안으로 침투한 간첩이었다. 5·18조사위 조사

.....  
 연합군 훈련 상황 및 제반 군사정보 수집 ③ 각종 증명서, 문건 입수 ④ 차기 공작을 위한 공작 장비 구입.

결과, 손성모는 사찰 침투 임무<sup>175</sup>를 부여받고 남파되어 사전 계획된 공작 사업지<sup>176</sup>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1980년 5월 11일~30일에는 3공작 사업지인 전라북도 남원군 산내면 실상사의 말사로 절집 규모인 “서진암”에 은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손성모는 1980년 5월 7일 북한에서 부여받은 제1공작 예정 지역인 무등산 중심사의 말사 약사암에 은거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보수 공사 중에 있어 은거를 포기하고, 제3공작 지역인 전라북도 순창군 강천사에 도착하여 곧바로 연대암을 방문했으나 반파 상태에 있어 이곳에서의 은거도 포기한 후였다. 5·18조사위는 현장 방문을 통해 손성모가 은거하려 시도했던 약사암, 연대암, 서진암 모두 절 방 규모의 주지 스님 단독으로 시무하는 사찰이고 위치는 큰 길에서 볼 때, 육안으로 보이는 산의 후면 뒷산 중턱 정도에 소재하는 공통점을 확인<sup>177</sup>했다.

손성모는 서진암에 은거 중이던 1980년 5월 27일 산내지서장의 순찰 검문으로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자 이를 적어간 것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로 경상북도 문경군 문경을 소재 해국사로 은거지를 옮겨 체포된 1981년 2월 25일까지 이곳에 은거하며 전국의 약 34개 사찰을 전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탈북 작가 이주성이 자신의 저서<sup>178</sup>에서 “손성모가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북한에서 침투한 북한 특수군을 무등산 중심사에서 안내했다”고 기술한 내용은 이격 거리상 불가능한 주장이며, 손성모 자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1심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손

175 손성모의 자술서(1981. 2.일자 미기재. 작성) 총 81쪽 중 48쪽~49쪽 기술에서 1980.4.26~4.27. 노동당 연락부장 정경희로부터 부여받은 ◎ 기본임무는 ① 법적 사회적 합법쟁취(위장 신분인 승려로서 조계종 내부 실태와 은사 운허 스님과 봉은사의 문중을 완전히 요해하고 공작 예정지 중심 사찰에서 인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북한에 대한 지지자 또는 동조자를 발견 요해하고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하라

176 손성모의 자술서(1982.2. 일자 미기재. 작성) 총 48쪽 중 19쪽~20쪽 기술에서 ‘공작 예정지’ ① 광주 중심사를 중심으로 한 사찰 ② 구례 화엄사를 중심으로 한 사찰 ③ 남원군 산내면 실상사를 중심으로 한 사찰과 순창군 팔덕면 강천사를 중심으로 한 사찰 ④ 익산 완주 일대의 사찰 ⑤ 기타 지역의 사찰

177 5·18조사위, 조사3과-6(2022.01.04.), 『조사대상자의 행적 확인을 위한 서진암 등 출장결과 보고』

178 이주성, 『보랏빛 호수』 2017. 비봉출판사. 348쪽.

성모가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광주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은 허위임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사건 발생 40여 년이 지난 뒤 조사가 이루어져 당시의 관련자들이 사망, 발병(치매 등), 소식 두절, 망각과 자료의 소실, 일부 관련 기관의 비협조, 소재 불명 등으로 대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도 있었다.

향후, 손성모에 대해 추가적인 복송자료 등을 확인하여 손성모의 공적부(사망신고 등)와 수감 기록, 전과 이력, 복송 기록 등 관계 기관 자료의 정정을 위해 「5·18진상규명법」 제34조 제2항, 제4항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sup>179</sup>에 따른 권고안 채택이 필요하고, 손성모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인터넷 위키 백과 대상 손성모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정정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5·18조사위는 “손성모가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중심사를 본거지로 하여 북한 특수군에 핵심정보를 제공하고, 광주의 반골집단으로 하여금 조연작전을 수행토록 하는 공작을 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다.

## 마. 기타 주장 검증

### 1) 5·18당시 시위에 예비군 참여가 없었다는 주장

지만원은 20사단·아시아자동차 차량탈취, 무기고 습격, 사격훈련, 광주교도소 습격, 도청 지하실 폭탄 조립 및 <시민학생수습위원회>에 예비군이 없었다면서 국제급 용병도 수행하기 어려운 고난도 군사작전을 수행했던 자들은 복귀군인데 이들이 어느 순간 사라

179 제34조 제2항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6. 국민화해와 민주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져 5월 27일 아주 싱겁게 진압됐다고 주장했다. 북괴군이 저지르고 사라진 어마어마한 군사작전에 대한 죄를 피라미들에게 얹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사형수와 무기수들은 그 후 길어야 2~3년 지나 모두 석방되는 코미디였다는 것이다.<sup>180</sup>

지만원은 당시 시위에 예비군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사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예비군들도 좀 동원하고 체계적으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제 25일 날입니다.”는 김종배의 증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지만원은 <항쟁본부>가 예비군을 동원해 체계적인 투쟁을 해야 하겠다는 결론을 낸 시점이 5월 25일 밤늦은 시각이었으며, 결론적으로 5월 21일 작전을 수행한 집단은 광주의 청년도 아니었고 광주지역 출신 예비군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종배의 증언은 예비군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싸우겠다는 뜻이지 그 이전의 시위대 활동에 예비군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만원은 류병현 합참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왜곡해서 인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김종배의 증언을 잘못 이해했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곡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sup>181</sup>

5·18조사위는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예비군 참여가 없었다는 지만원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들의 진술과 증언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예비역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980년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시 전라남도 20세 이상 49세 이하 남성은 702,898명이었는데, 1980년 전라남도 지역의 일반예비군과 동원예비군을 포함한 향토예비군은 258,378명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단순 계산으로도 당시 활동이 왕성한 20대에서 40대까지 남성 10명 중 약 3.7명이 무기 사용법을 훈련받은 예비군

180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133~139쪽.

181 지만원은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87쪽에 류병현이 “5·18 직전 전남해안을 경비하던 해군 병력을 전북 변산반도 이북으로 이동시켰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썼으나, 이는 “해군의 가용한 전력을 변산반도 쪽으로 돌려 이북의 특전부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라는 류병현 회고록의 원문을 잘못 이해 또는 왜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류병현, 2013, 『류병현 회고록』, 조갑제닷컴, 453쪽 참조.

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82</sup><sup>183</sup><sup>184</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위대의 활동에 예비군의 참여가 없었다는 지만원의 주장은 그 근거가 된 증언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왜곡한 것으로, 5·18조사위 조사 결과 실제로 다수의 예비군이 당시 시위 및 무기탈취·총기교육 등에 참여하였으며 계엄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2) 시위 지휘자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주장

지만원은 5·18 최고 핵심유공자들은 5월 24일까지 시위 현장에 없었으므로 5월 21일의 주역인 600명을 조직한 바도 없고, 지휘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겨우 81명으로 600명에 못 미친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5·18은 북한의 <민주투쟁위원회>가 지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85</sup>

5·18조사위는 민주투쟁위원회가 북한의 조직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지만원이 스스로 제시한 북한자료인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과 『광주의 분노』에는 <민주투쟁위원회>가 북한의 조직이라는 내용은 없고 “광주시민들을 위한 대표기관”이라는 기술만 있을 뿐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기록과 증언에 등장하는 민주투쟁위원회는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전남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내란 소요등 사건 의견서」의 ‘전남대 등 복적생 주축 내란획책 체계도’에는 <민주투쟁위원회>가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의 역

182 병무청, 『예비역등 자원현황-청별, 역종별』, 『병무통계연보 1981』

183 「총조사인구 총괄」,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1\\_ENG&conn\\_path=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0001_ENG&conn_path=3), (조회기간 1980~1980).

184 예비군은 연령 및 계급정년에 따라 편성해제되기 때문에 실제 군 경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관련한 통계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확보 가능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소 인원을 계산하였다.

185 실형을 받음으로써 5·18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 81명인데, 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5·18의 주역 600명에 못 미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5·18을 조직 또는 지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186</sup> 해당 체계도에서 〈민주투쟁위원회〉의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 김운기는 당시 합수단 조사에서 〈민주투쟁위원회의〉 구성 시기 및 목적, 인원 등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민투는 5.7경부터 구성되었는데 서울 등 각 지방에서 대정부시위가 번지자 조대 내에 서도 대정부투쟁을 위한 단체가 필요함을 느끼고 본인은 배후에서 자문 등을 하고 이우정, 양희승, 구교성, 이경, 유재도 등이 조직을 위하여 회합하고 위원으로는 위 5인과 김운기, 한국제, 박재구 등...(이하 생략)

(민투 구성 이후) 5.15, 5.16. 학외 데모를 광주시내 도청 앞 등지에서 신현확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정치일정을 단축하라 등을 외치면서 가두시위를 하였습니다.<sup>187</sup>

김운기의 진술에서 〈민주투쟁위원회〉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양희승은 5·18조사위 조사에서 “조대는 총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각 학과 학회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투쟁역량을 결집하지 못하여 민주투쟁위원회가 투쟁의 주체가 되어 5.14.부터 시내 투쟁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했고,<sup>188</sup> 곽재구는 “다른 학교는 총학생회가 부활되어 있었고 조선대학교만 그러지 못했다. 총학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진술했다.<sup>189</sup>

5·18조사위는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 이외에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유사한 명칭의 단체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다음은 민주투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기록이다.

186 국군보안사령부(1980), 「의견서(내란 소요 등 사건) 고유번호 광주 383-1980-083 (MF 릴 번호 61866-1.1), 3쪽.

187 전남합동수사단 「김운기 피의자신문조서 2회」(1980.06.13.)

188 5·18조사위, 「참고인 양희승, 진술조서」(2022.07.08.)

189 5·18조사위, 「참고인 곽재구 진술조서」(2022.11.09.)

〈표 6-1-12〉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투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

명칭	근거자료
〈광주시민 민주투쟁협의회〉	「투사회보」 제5, 6, 7호(1980.5.23.~24.) <sup>190</sup>
〈광주시민 민주투쟁회〉	「호소문」(1980.5.19.) <sup>191</sup>
〈목포시민 민주화투쟁위원회〉	「목포시민의 결의문」(1980.5.22.) <sup>192</sup>
〈범시민 민주투쟁위원회〉 〈전조대학생혁명위원회〉	「우리는 피의 투쟁을 계속한다」(일자 미상) <sup>193</sup>

「투사회보」 제작에 참여한 당시 대학생 전용호는 5월 21일 오전 녹두서점에서 윤상원의 주도로 투사회보팀을 결성했다고 증언했고,<sup>194</sup> 용접공이었던 나명관은 5월 21일부터 광천동 시민아파트 앞에 있던 들불야학 교실에서 윤상원을 중심으로 투사회보를 제작했다고 하였다.<sup>195</sup>

전남대학교 3학년이었던 손남승은 남동성당 건너편 지하실 건물에 위치한 백제야학에서 유인물을 작성하였는데, 종류는 5,6종 정도였고 발행 이름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이름이 〈광주시민학생 혁명위원회〉였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sup>196</sup>

목포시민이었던 양지문은 〈목포시민 민주화투쟁위원회〉가 5월 22일 발족되었으며 위원장은 안철, 기획실장은 자신, 그리고 집행부장은 박상규 목사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목포시민의 결의문」은 이날 목포역 광장에서 쫓기대회가 있을 때 투쟁위원회에서 작성,

190 국군보안사령부(1980), 「투사회보」, 고유번호 광주 383-1988-066 (MF 릴 번호 61877-1.2), 167~170쪽.

19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1979), 「10.26 2군상황일지(1979.10.26.-1980.9.5.)(6-3)」, (국가기록원 DA1343826), 409쪽.

192 서울지검 「목포시민의 결의문(1980.5.22.)」, 『5·18 사건 수사 기록』 25권,32700~32701쪽.

193 서울지검 「우리는 피의 투쟁을 계속한다(일자 미상)」, 『5·18 사건 수사 기록』 25권,32713~32714쪽.

194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전용호 증언 (증언번호 4001)」,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195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나명관 증언 (증언번호 4003)」,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나명관은 5·18조사위 조사에서도 투사회보 제작과 관련된 진술을 한 바 있다. 참고인 나명관(2022.4.26.) 진술조서 참조.

196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손남승 증언 (증언번호 1046)」,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배포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97</sup> 목포시민으로 약사였던 안철은 5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목포 시장, 목포대학장, 재야인사, 정당대표, 목사 등이 참여하여 치안을 회복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의 명칭을 <목포시민 민주화투쟁위원회>로 정하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증언했다.<sup>198</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투쟁위원회”는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가 대표적이었으며 이는 계엄당국의 수사 결과에도 적시되어 있다. 또한, 당시에는 여러 명칭으로 다양한 유인물이 발간되었는데 이중 “민주투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현장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만든 것으로 북한특수군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며, “북한의 민주투쟁위원회가 시위를 지휘했다”는 지만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역시 찾을 수 없었다.

### 3) 방송 3사와 광주시의 반복된 현장얼굴 찾기에 나타난 사람이 없었다는 주장

지만원은 1999년 5·18 19주년 방송 3사의 행방 찾기가 실패하였고, 2013년 5·18역사 왜곡진상규명위원회 및 2015~2016년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에서 6개월 동안 사진 전시회를 열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노숙자담요가 북한인 중에서 이들의 얼굴을 찾아냈다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북한군 침투의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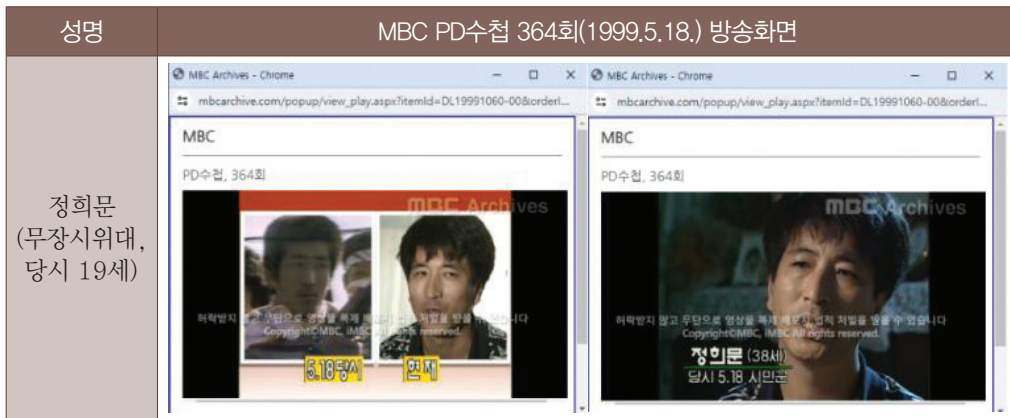
그러나 5·18조사위는 간단한 검색으로 당시 MBC PD수첩에서 사진 또는 영상 속의 인물 12명을 찾아내 방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해당 방송에서 얼굴이 나오는 사람들 중 1명의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sup>199</sup>

197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양지문 증언 (증언번호 6007)』,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198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편, 『안철 증언 (증언번호 6011)』, 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199 「80년 5월, 이 얼굴들을 아십니까(1999.5.18.)」, MBC PD수첩, <https://mbcarchive.com/>.

〈표 6-1-13〉 MBC PD수첩 364회 “80년 5월, 이 얼굴들을 아십니까” 화면



위와 같이 실제로 사진과 영상 속의 인물들이 방송사 프로그램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은 “(나타나는 사람이 없자) 몸이 단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장은 어림도 없는 사람들에 개별 접근하여 ‘당신이 광수라고 우기시오, 뒷일은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회유를 하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광주법원이 재판을 강제로 관할하여 자신에게 2억4천만 원을 강탈해 갔다고 하였다.<sup>200</sup> 지만원이 이처럼 사실을 부인하면서 억지 주장을 이어가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황장엽과 김덕홍의 증언

지만원은 국정원보다 먼저 황장엽을 통한 민간 차원의 최초 작전을 주도했던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삼이 2013년 4월 22일 TV조선 「신율의 시사열차」에 출연하여 황장엽과 김덕홍이 5·18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공개했고, 이 내용을 군 정보당국에도 전달했지만 군은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200 지만원, 2023,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도서출판 시스템, 237쪽.

그러나 지만원은 전후 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이 황장엽과 김덕홍의 발언을 단 1개 문장  
 썩만 소개했기 때문에<sup>201</sup> 5·18조사위는 ‘미디어워치’ 기사 내용을 통해 당시 김용삼 전 편  
 집장의 발언을 확인하였다.<sup>202</sup>

〈표 6-1-14〉 김용삼이 소개한 황장엽과 김덕홍의 5·18 관련 언급 내용

구분	내용
황장엽 친필 메모	- 광주 학생문제도 그들을 뒤에서 사주한 북 공명주의자들이 책임을 전가한 일이다. (1996.11.10.)
1998년 7 월 인터뷰	- 황장엽: 북에서는 자기네들의 대남사업에 대한 공로를 과장하느라 그랬는지 모르 지만 남한에서의 모든 운동, 투쟁은 다 자기네가 지하조직을 통해서 지도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 김덕홍: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강연을 하는데, 광주 문제를 자 기네들이 한 것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 황장엽: 광주 문제에 대해 우리는 공개적으로 말 못합니다. 저네들(북한)이 조직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해선 평 가를 안 합니다. - 김용삼: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든 광주 문제와 관련하여 접촉과 지령과 움직임이 있 었다는 뜻입니까. - 황장엽: 그건 우리가 모르지요. - 김덕홍: 김일성 종합대학 옆에 3호청사가 있어요. 광주운동 이후에 3호청사 사람 들이 표창을 많이 받았어요. (중략) 내 친구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광주민주화운동 후에 훈장을 탔다고 축하 술을 함께 마시면서 그들에 게 직접 들은 겁니다.

5·18조사위는 위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인조사를 추진하였으나 황장엽은 2010  
 년 사망하였고, 김덕홍은 5·18조사위에서 거주지 주소를 확인한 후 출석요구서를 발송하  
 였으나 2021년 3월 현재 거주 불명으로 조사가 불가하였다.<sup>203</sup>

그러나 황장엽과 김덕홍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201 황장엽: “광주 학생문제도 그들을 뒤에서 사주한 북 공명주의자들이 책임을 (남한에) 전가한 일”

김덕홍: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사람들 상당수가 광주민주화운동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 받았다”

202 미디어워치, 「광주사태 북한 개입 발언, 황장엽 “동생, 또 혼나려 그래?”」(2013.6.18.)

203 5·18조사위, 조사3과(2023.11.6), 「직권조사사건(직바-6) 진상규명조사보고서」,157쪽.



들이 지칭하는 상황은 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최소한 수백명 규모의 북한특수군 부대”가 아니라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의 활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덕홍은 “3호청사 사람들이 표창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는데 3호청사는 북한특수군이 소속되어 있는 인민무력부가 아니라 노동당 대남사업의 지휘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sup>204</sup>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백 명 규모의 북한특수군 부대가 광주 일원에 침투했다는 지만원 등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황장엽과 김덕홍의 발언은 그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비밀해제된 미 외교문서 122건

지만원은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비밀 해제 이관 문서 중에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정황 자료들이 9개나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통해 현재까지 입수된 5·18 전후 미국 정부 문서 3,530매를 분석한 결과, 북한군 침투 주장을 시사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문서는 주한 미 대사관과 국무부 사이에 수·발신된 전문과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및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상황보고, 정보분석 보고서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대상 문서들 중 5·18과 북한이 함께 언급된 경우는 총 6개 문서에서 13회 발견되었는데 해당 문서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제13대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질의에 대한 미국정부 성명서 (United States Government Statement on the Events in Kwangju, Republic of Korea, in May 1980)
- 국방정보국(DIA) 정보보고 「광주사건 관련 북한의 의도 및 관점」 (KN Intentions /

204 중앙일보, 「이것이 궁금하다. 노동당 3호청사란」, (1993.2.11).

Perception in Connection with Kwangju Incident)

- 주한 미 대사관 작성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 전두환 면담」 보고(Meeting of AMCHAM Officers with Chun Doo-Hwan)
- 중앙정보국(CIA) 작성 「한국정세」(CIA Late Item South Korea), 「동아시아 정세분석」(East Asia Review) 및 「한국 학생소요」(South Korea: Student Unrest) 보고서

위 문서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공개된 미국 정부 문서를 검토한 결과,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북한의 공격 의도나 남침이 임박했다는 징후 또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입수되지 않았다”는 것이 미국 정부 기관들의 일관된 입장으로, 미국의 비밀 해제 이관 문서 중에 북한이 5·18을 주도했다는 정황 자료들이 9개나 된다는 지만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 6) 김경재의 5·18 열사릉 주장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前총재는 2023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1999년 김대중 정부의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당시 애국열사릉에 광주 5·18 가담 북 특수공작원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발언하였다.<sup>205</sup> 김경재의 주장은 5·18조사위 조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쟁점이 되어 대면조사가 제한된 관계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sup>206</sup>

전화조사에서 김경재는 “열사릉 한쪽 코너에 10여 기의 묘비에 광주 어찌고 써있는 것을 직접 봤는데, (묘비)수가 적어서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5·18에 참여해서 관계된 고정간첩의 묘로 보인다. 그래서 이 묘비가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경재는 “지만원 씨가

205 KNEWS, 「“北 애국열사릉에 광주 5·18참가 특수공작원 묘역 조성 (2023.05.10.)」

206 5·18조사위, 조사3과(2023.12.12.), 「직바-15 참고인 김경재 전화접촉 결과보고」

주장하는 몇백명 규모의 북한군이 광주에 간 것은 아니지만 코만도 수준의 광주 활동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도 언급하였다.

5·18조사위는 본 보고서 전반부에서 조사의 대상인 ‘북한군’의 범위를 북한군 신분으로 침투한 간첩이나 공비 1~2명이 아닌 “최소한 수백명 규모의 북한특수군 부대”로 한정하였다. 또한, 김정재도 자신이 본 묘비의 숫자가 적어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을 감안할 때 해당 발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 침투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바. 5·18 북한군 침투 주장 관련 조사 TF 조사 결과<sup>207</sup>

TF 팀장 이동욱 위원

### 1) 탈북자 임천용과 지만원 그리고 국정원

2002년 8월 16일자 동아일보 광고를 통해 등장한 지만원의 ‘광주 북한특수군 침투설’은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만원 개인의 주장처럼 치부되었다. 처음에는 일부 주목을 받는 듯 했지만 ‘증거도 없을 뿐’더러, ‘1980년 당시로부터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에 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없다’는 사실이 대두되면서 지만원의 주장은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던 것이 2006년 11월 중순, <한국 논단> 12월호에 실린 한 탈북자의 인터뷰 기사로 인해 다시금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가 ‘자유북한군인연합’ 대표 임천용(탈북자, 1966년생)이다.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임천용은 1996년경 가족과 함께 탈북하여 중국과

207 이종협 상임위원과 차기환 위원은 본 ‘북한군침투설 TF 보고서’를 종합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태국을 거쳐 1999년에 한국으로 입국했다. 2000년에는 국정원의 대북첩보망으로 활동시 ‘자극성 허위첩보 제공으로’ 해고됐다.<sup>208</sup> 미주 지역 언론과 국내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임천용은 이후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2004년 8월, 캐나다로 출국한다. 그 곳에서 미국으로 입국 도중 체포되어 샌디에고 연방 구치소에 수감된 채 미 법원에 망명 신청을 했다. 그는 자신이 “북한에서 휴대용 핵폭탄을 은닉해 특정지역에 침투하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주요인물을 암살하도록 특수훈련을 받았다”며 자신이 살던 서울의 집 우편함에서 “폭탄을 신문지에 싸서 놔 둔 것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살해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망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 법원은 “한국에 정착했던 기간이 길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명신청을 기각, 임천용은 한국으로 강제 추방되어 2005년 1월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005년 가을, 임천용은 ‘예비역 대령 연합회 회장’ 서정갑에게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목격된다. 증언자 서정갑은 그 무렵 지만원의 5·18 북한특수군 침투 설에 호응하며 자주 만났다고 한다.<sup>209</sup> 그는 지만원의 사무실에서 만난 임천용이 그해 겨울, “탈북자들을 동원하여 기자회견을 하려는 데 비용이 없다”고 하여 1백만 원을 전달했으나 2005년 12월 7일, 광화문 세실 레스토랑에 참석한 탈북자는 임천용 외에 거의 없어 기자회견이 무산되었다. 대신에 임천용은 ‘자유북한군인연합회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유를 위해 탈북 특수부대 군인들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5·18에 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물론 그 자리가 공식적으로는 지만원과 무관한 듯 보였다.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2005년 1월, 국내로 돌아온 탈북자 임천용이 1년도 안 되어

208 「안보지원사령부 자료제공 협조 요청 회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3과-708,(2020.09.14.)

209 서정갑 인터뷰 (2022.05.07): “그때 탈북자들이 5·18때 왔다는 증언을 한다가에 언론사 기자들이 꽤 많이 모였는데, 내가 1백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 그래서 유야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만원하고 싸우면서 이 쪽하고도 발을 끊었지요.”

지만원이 배후에서 마련한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배경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2011년 9월 16일 창설된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사령부’에 지만원과 공동대표로 참여한 국정원 제주시 부지부장 출신의 송영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영인은 2012년 3월 14일자 인터넷 게시글에서 자신이 지만원과 “친분관계를 맺어 온 지 10년”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2002년 광고 사건 이후 지만원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탈북자를 관리했던 국정원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탈북자 임천용과 지만원의 연결과정에 송영인 국정원 전 제주시 부지부장의 역할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연고도 없던 탈북자 임천용의 활동이 예전보다 치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배경 또한 추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2005년 기자회견이 실패로 돌아간 지 약 1년 뒤 임천용의 활약은 보다 주도면밀하게 실행되어 갔다. 2006년 10월 23일, 인터넷에서 우익의 대표적 월간지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이 출처인 “5·18 당시 북한 특수부대 1개 대대가 투입됐다”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약 보름 뒤 출간된 <한국논단> 11월호에서도 ‘광주사태 당시 북 특수부대 1개 대대 투입’을 커버스토리로 다루었다. 탈북자가 직접 등장하여 광주사태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한 최초의 글이다. 임천용을 인터뷰한 인물은 <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전 조선일보 주일 특파원, 1933.6.20.~2020.4.5.)이었다. 이 대담기사의 특징은 인터뷰어(interviewer) 이도형이 인터뷰이(interviewee) 임천용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더 강조해 주는 듯한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신빙성을 확인한 뒤 더 깊은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끌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대담자의 주장을 띄워주는 홍보성 기사로 마무리되었다.

두 사람간 대담에는 임천용의 주장을 신뢰하기 힘든 다음과 같은 대화도 등장한다.

▲ 이도형: 광주사태 때는 얼마나 투입이 되었어요?

▲ 임천용: 그 때 우리 대대에서 저는 대대장 연락병을 하던 당시인데요, 우리 대대에서 7명이 광주에 파견되어 갔었어요. 그때 상황을 들어보면 특전부대 내에서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을 뽑아서 임시 단위를 구성해서 광주로 보낸 거지요.

위 대화가 사실이라면 1966년생인 임천용은 1980년 당시 14살 때 대대장 연락병으로 군 복무중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한국논단 이도형 발행인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나 문제 제기 없이 임천용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 사실로 간주한 채 보도하고 있었다. 이로써 임천용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사실처럼 유포되기 시작했다. 나머지 대담 내용도 군의 전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지만 전반적으로 지만원의 주장을 보강하는 수준에서 대담이 전개되었다. 이로써 “5·18 당시 북한 특수부대 1개 대대가 투입됐다”는 주장은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에 공식적으로 안착한다.<sup>210</sup>

이 보도가 나간 이후 임천용은 12월 20일, 1년 전과 같은 장소인 광화문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는 여기에 호응하는 탈북자들 16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저마다 북한에서 ‘들었다’는 5·18 당시 북한 특수군 투입설을 증언 형식으로 진술해 파장이 일었다.<sup>211</sup>

2007년 2월에는 매체 <뉴스한국>과도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매번 바뀌고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주시하고 바로잡지 못함으로써 거짓말이 진실처럼

210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과 탈북자 임천용은 우연히 접촉된 것일까? 그 연결고리로 보이는 근거가 1990년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사>에 존재한다. <계엄사>는 1981년에 육군본부에 의해 발간된 ‘신군부가 쓴 권력쟁취 기록물’인 셈인데, 1988년 국회 광주정문회를 계기로 보강 차원에서 다시 편찬하여 1990년에 재발행한 기록물이다. 그런데 90년도판에는 북한의 남침 관련 첩보사항이 새롭게 추가된다(pp.12~13). 여기에 1980년 당시 일본 동경특파원 이도형의 글이 <참고>와 같이 언급되는 것이다. <참고> ● 80. 5. 10. 18:30 조선일보 동경특파원 이도형은 일본의 정통한 군사소식통을 인용 5월중 북과남침 기도 내용 기사를 본사에 송고: 계엄사에서 민심 혼란 우려 동기사 보도통제. (출처 90년도판 <계엄사> p.13) 2006년 10월,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과 탈북자 임천용 그리고 5·18 북한군 침투설을 유포시키기 시작했던 지만원과 국정원의 일부 등이 배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반공과 애국심에 충실한 보수 세력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구조로 판단된다.

211 탈북자들의 동원이 조직적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임천용의 증언이 없다면 그 점을 밝히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다. 임천용의 진술은 그 후 2013년 5월 TV조선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그의 주장은 총 4회가 되는 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15〉 언론에 보도된 임천용의 매번 바뀌는 진술들

인터뷰	침투인원	생환인원	침투방면	침투수단
한국논단(2006. 11)	450명 (1개 대대)	3분의 1	서해안	배
기자회견(2006.12)	500명 (1개 대대)	3분의 2	서해안	배
뉴스한국(2007.2)	600명(2개 대대)	2분의 1	서해안, 동해안	배, 잠수함
TV조선(2013.5)	300명 (1개 대대)		해상, 땅굴	배, 땅굴

## 2) 탈북자 정명운·이주성의 등장과 국정원·기무사 등 관계기관의 조사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탈북자 임천용의 주장이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북한이탈정착주민 교육센터 하나원에서 정명운(2006.11월 출소)<sup>212</sup>과 이주성(2006.10월 출소)<sup>213</sup>이 출소했다. 이 둘은 약 1년 뒤인 2008년부터 임천용과 동행하거나 별개로 ‘5·18 북한특수군 침투설’ 유포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sup>214</sup>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1월 말<sup>215</sup>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들 세 탈북자들은 기무사

212 스스로 5·18 당시 남파됐다고 주장한 장본인. 그 뒤 여러 차례 정보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그때 그때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얼마 안 가 다시 반복한다.

213 정명운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처럼 꾸민 책 『보랏빛호수 - 논픽션』(비봉출판사, 2017.5.15.)을 펴 냈다. 이 책에는 「광주사태 당시 남파되었던 한 탈북군인의 5.18체험담」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보수사회에 많은 독자가 생겨날 정도의 영향을 미쳐왔다.

214 탈북자 임천용의 활약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던 2007년 초, 지만원은 ‘시스템미래담’을 창당(2007.3.27.)하고 ‘좌익척결’, ‘도덕 재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승만 전 대통령 정신계승’등을 골자로 한 정당 선언문을 낭독한다. 5·18북한특수군 침투설을 기반으로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15 2008년 10월 20일, 지만원은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9 (4권)』(도서출판 시스템)을 출간했다. 2002년 광고시대 이후 최초의 단행본 출판물이다. 그러나 이 책을 1년도 안 돼 절판시킨 뒤, 같은 제목의 상하권으로 된 책을 2009년 10월 23일자로 재출간한다. 상세한 내막은 본문 참조.



와 국정원 두 정보기관의 전현직 기관장들(김종태 당시 기무사령관, 박세직 전 안기부장)과 이동복 전 안기부장 특보,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등 보수 유력 인사들을 만나 자신들이 5·18 당시 광주에 직접 침투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두 정보기관장들과 전 안기부장 특보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각자의 기관을 통해 조사를 지시했다.<sup>216</sup>

기무사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 오후 분당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기무사의 두 요원과 1996년 부여에서 검거되어 전향한 북한 공작원 김동식(본명 곽인수)이 기무사 요원으로 가장하여 탈북자 정명운을 만났다. 정명운은 그때에도 자신이 5·18 때 광주로 직접 침투했다고 주장했다. 두 기무사 요원들이 정명운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무 요원을 가장한 김동식이 최종 질문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을 지켜 본 김동식은 다음과 같이 조사관에게 설명했다.

“두 요원의 질의응답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기로 했거든요. 한 시간 가량 진행됐는데, 기무사 애들은 그래도 긴가민가한 표정이예요. 간첩을 잡기만 해 봤지 직접 훈련받고 침투하고 공작 같은 걸 해 본 적이 없잖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명운이가 “북한 특수군들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했어요. 여기서 ‘독도법’이라고 하는 데 북한에서는 ‘지형학’이라고 하지요. 제가 “지도 가지고 지형학 훈련도 했을 텐데, 그때 지도 축척이 얼마짜리 썼냐?”고 물었어요. 물론 정명운이는 제가 남한 기무사 직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정명운이가 “지도는 200만분의 1짜리를 썼지요.”

216 정보기관 요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종태 당시 기무사령관과 박세직 전 안기부장(당시 재향군인회장)을 세 탈북자가 동시에 만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임천용은 기무사령관을 접촉한 것이 사실로 보이며, 박세직 전 안기부장은 정명운과 이주성이 방문하여 만났다는 탈북자의 진술이 있다. 정명운과 이주성은 2009년 1월 21일자로 『휴막속에 드러난 5.18 광주사태의 진상』을 책자로 만들었다. 이들은 이동복 전 안기부장특보와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를 1월 28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한다. 얼마 뒤 이동복 전 특보에 의해 국정원장으로부터 조사 지시가 내려왔으며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이 2009년 2월 9일자 국정원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이 사건은 정보기관의 고위급 간부들이 탈북자들의 허위진술을 제대로 감별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틀린 대답을 해도 앞에서는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이야기를 이어 갔습니다. “나침반은 일제를 썼고...” 이러는 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나침반 같은 건 평양제를 그냥 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자. 수영 훈련할 때 뭐 입고 했나?”, “침투 복장을 입은 채 훈련했습니다. 주로 사복을 입은 채 수영 훈련을 했지요.” “아, 그렇군.”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날 김동식은 정명운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곁에서 있던 기무 요원들에게 한 마디 해 주었다고 한다.  
“저거 순 구라다.”

이처럼 김종태 기무사령관의 오관은 국내 정보 분석가나 북한 전문가가 아닌 북한 출신 남파 간첩에 의해 수정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국정원에서도 별도의 조사가 진행됐다. 일단의 탈북자들이 벌인 사기극에 대해 대한민국의 두 정보기관이 어떤 정보교류나 협조조차 없이 별개로 조사를 한 셈이었다.

### 3) 국정원 개입 의혹

탈북자들의 농간에서 시작된 국정원의 조사보고서는 2009년 2월 9일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평가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평가 및 조치

- 정〇〇이 “5.18 당시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남한 사회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한 허위 제보였다고 실토하였는 바,  
- 임〇〇 등 여타 탈북자들의 주장 내용과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평가.
- 탈북자 정〇〇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조치 하는 한편, 이동복 전 의원에게 관련 주장 내용 및 제보 경위 등을 설명토록 하겠음. 끝.

국정원의 ‘엄중 경고조치’와 무관하게 이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 2009년 10월 23일, 지만원은 지난해에 출간했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전 4권)』을 절판하고 대신 『수

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상·하)』를 출간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수사기록과 무관하게 2006년 12월 임천용이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들이 주장한 증언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위 책 하권 p.128에서는 <22. 탈북인들이 내 놓은 증언록>이 실려 있고, p.164 에는 <북에서의 5.18 기념사례>란 제목의 허위 사실이 실제처럼 실려 있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두 달 뒤(2009. 12. 16.)에 임천용이 출간하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실리는 내용들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지만원의 이 책은 2009년 10월 23일 발행된 책이란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임천용이 출간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광명기획, 2009.12.16.)은 기자회견 당시 참가한 16명의 탈북자들이 주장한 내용들로 구성된 책인데, 기이하게도 이 책 속의 내용 중 일부가 앞서 발간된 지만원의 책에 <22. 탈북인들이 내놓은 증언록>과 <북에서의 5.18 기념사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임천용의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판권에 나오는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11-8번지 202호>였다. 현장을 답사하던 중 주변 상인으로부터 이상한 제보를 받았다. 그는 “그해 겨울에 출판사라고 하는 2층 창문으로 사다리차가 와서 웬 상자들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가 물어보니 ‘대북풍선용 뼈라’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대북 풍선에 관한 관리는 국정원 소관이다. 그렇다면 임천용-지만원 사이에 국정원이 개입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진다. 또한 국정원이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추론도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은밀하게 보수진영의 판단 능력을 왜곡시키는 데 깊숙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 4) 지만원의 행동과 국정원의 반응

지만원은 자신의 두 번째 책인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터리 역사책 압축본 12.12와 5.18(상·하)』을 출판한 지 한 달도 안 된 2009년 11월 19일자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한다. 조사TF가 입수한 국정원 문서(2009.11.19.일자)에 따르면 지만원은 탈북자 합심과정에서 “5.18 당시 북한군 침투 진술 내용을 (심문관이-필자 주) 은폐하였다”며 심문관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와대에 제기한 것이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0년 1월 15일, 국정원은 〈5.18 당시 남파 주장 탈북자 진술 은폐〉 민원 확인 결과라는 보고서가 생산됐다. 이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

##### 「5.18 당시 남파 주장 탈북자 진술 은폐」 민원 확인 결과

〈중략〉

- 지만원은 정○○이 조작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자신의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5.18』 책자에 수록하고 책자의 내용을 인용하여 민원 제기.

##### □ 평가 및 조치 의견

- 지만원이 이○○의 언급 내용을 검증없이 자신의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5.18』에 수록 후 책자 홍보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
- 민원서 확인 결과 허위 사실임을 ○○○에 통보, 청와대 및 지만원에게 통보하는 등 적의 처리토록 하겠음(○○○ 구두협조)

※ 붙임: 1. 민원 회신 문건

2. 민원인 지만원 및 탈북자 정○○, 이○○ 신원 사항

국정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만원은 책을 홍보하기 위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조

금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의 보고서를 들여다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위 보고서의 밑줄 친 두 곳에서 등장하는 <자신의 저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5.18』> 라는 표현이다. 알다시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은 탈북자 임천용의 이름으로 출판되었고, 외형상 그의 노력으로 기자회견을 통한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수집된 책이었다. 그런데 정보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정보기관 요원이 이 책의 저자를 임천용이 아닌 지만원으로 표기하여 결과적으로 허위보고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허위보고가 아니라면 임천용이란 이름으로 출판된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5.18』이 실제로는 국민들만 모른 채 국정원 내부의 국정원장까지 은밀히 알고 있던 사실 - 지만원의 책임- 을 입증하는 문장은 아니었을까?

▲ 2005년부터 국내 연고도 없던 탈북자 임천용에 의해 시도된 기자회견, ▲ 그리고 발행인 이도형의 <한국논단>에 의한 인터뷰 기사, ▲ 일련의 출판과 그에 따른 대가로 보이는 대북풍선용 뼈라의 전달, ▲ 국정원장 보고서에서 나타난 실제 저자는 지만원이라는 사실 등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23년 7월 20일자로 5·18조사위에서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국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sup>217</sup>

한편 국정원은 2010년 1월 19일자로 지만원에게 국가정보원장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 내용은 지만원이 주장한 대로 탈북자 정00을 협박한 심문관(조사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 또한 무근임을 밝히고 이를 양지해 달라는 서한이었다. 그러나 지만원은 국정원장의 서한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2010년 8월 10일, 자신의 출판사를 통해 『솔로몬 앞에 선 5.18』을 출간했다. 지금도 인터넷 교보문고의 책 소개문은 그대로 걸려 있는데 다음과 같다.

217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확인 협조 요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3과-1110,(2023.07.20.)



KYOBO 교보문고

『솔로몬 앞에 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획을 그은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내놓은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5.18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김일성이 만들고 북한이 소유한 적화통일 역사'라고 이야기한다. 광주폭동은 북한이 기획·연출하였고,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으며 광주시민이 당한 가장 큰 희생은 북한특수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고, 5.18사람들과 북한 당국은 내통된 하나의 적화세력이라고 주장한다.

평범한 국민이 출판한 책의 홍보를 위해 청와대에 허위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 그로 인해 국정원장으로부터 “...그들을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통보하오니 양지 바랍니다”식의 공손한 서한을 받을 수 있을까? 또한 국정원장의 서한을 받고서도 “광주폭동은 북한이 기획·연출하였고,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으며 광주시민이 당한 가장 큰 희생은 북한특수군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고, 5.18 사람들과 북한 당국은 내통된 하나의 적화세력”이라고 책을 통해 주장할 수 있을까?

지만원의 『솔로몬 앞에 선 5.18』이 출간되기 두 달 전인 2010년 6월 10일, 국정원에 의해 ‘엄중 경고조치’를 받았던 탈북자 임천용은 전쟁기념관 내 무궁화홀에서 자신이 썼다는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 5.18』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 재조명 강연회’에 참석하여 강연을 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대불총)’과 ‘자유북한군인연합’이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 16일에도 ‘현대사재조명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탈북자 임천용은 탈북군인연합대표로 연단에 올라 “탈북자가 본 5.18”이란 주제의 강연을 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특전사 전우회 정호용 전 국방부장관, 대불총 회장 박희도 전 육

군참모총장 외 대불총 상임지도법사 법일 스님, 대불총 공동회장 정진태 전 연합사 부사령관,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 대구지회장 유상중 예비역 장군, 정천구 고문(전 영산대학 총장) 등 대불총 임원 및 회원 100여 명과 특전전우회 전임 사무총장 김윤석 장군과 회원 100여 명 및 본 강연회에 관심을 가진 이진삼 전 의원, 장기오/이문석 전 총무처장관,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예불회 회장 손수태 예비역 장군 외 회원, 사단법인 문화안보연구원 고우성 박사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른바 국가 안보 전문가들이 어떤 의문점도 갖지 않은 채 탈북자 임천용의 거짓을 추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이날 행사가 <행안부 공익지원사업>으로 개최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조사된 결과만 이 정도이므로 얼마나 더 많은 활동이 국가기관의 협조 속에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단언할 수 없다.

##### 5) 이주성과 『보랏빛 호수』 그리고 <스카이 데일리>

기무사와 국정원의 ‘엄중 경고’를 탈북자들이 얼마나 자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탈북자 임천용을 필두로 하여 정명운과 이주성의 활약은 파문이 잠잠할 때쯤이면 다시 고개를 들었다. 2013년 5월 무렵에는 박근혜 정부가 등장하여 종편 TV 채널들이 경쟁하기 시작할 때 임천용(TV조선, 5.13.)과 정명운(채널A, 5.15.)이 출연했다. 정명운은 당시 김명국이란 가명으로 자신이 광주에 남파되었던 북한군이라 주장했고 이주성은 방송에 출연해 김명국의 주장에 주석을 달며 북한군 개입설을 확산시켰다. 그로 인한 파장은 해당 방송사의 사과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이는 ‘가짜뉴스 근절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영간 힘겨루기’ 정도로 치부된 채 무책임하게 지나가 버렸다.





이주성(스카이데일리 사진)과 그가 썼다는 『보랏빛 호수 - 논픽션』

이주성은 2017년 5월 15일자로 『보랏빛 호수-광주사태 당시 납파되었던 한 탈북군인의 5.18 체험담』(도서출판 비봉) 이란 책을 출간한다. 이 책은 심정적으로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설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을 구체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5·18조사위도 이 책을 분석하는 데 거의 3년 이상 세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책 내용이 전부 거짓임을 입증했지만 국가로서 얻는 소득은 전혀 없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정명운과 이주성을 출두시켜 진위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수사권이 없는 위원회의 조사범위 밖으로 달아난 셈이 됐다.

한편 이주성은 그의 책 『보랏빛 호수』에 실린 허위 내용으로 2020년 6월 3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김일성과 결탁해 폭동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으며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문장 때문이었다.

이주성의 집행유예기간이 끝날 무렵이던 2023년 6월부터 서울의 부촌(富村)으로 일컬어지는 서초(S)·강남(K)·용산(Y)의 이니셜을 모아 만든 지역신문 <SKY 데일리>가 [5.18 진실찾기]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데 앞장서 오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22일자 이 신문은 탈북자 이주성을 ‘탈북작가’로 칭하며 “집행유

에 3년 법적 리스크를 벗자마자 본지에 통한의 울분을 털어놓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군복무 부적격자로 군 경험이 전무한 고졸 출신의 이주성은 기사를 통해 ‘5·18 당시 북한군이 있었다’는 것을 반복해 강조한다. 지만원의 경우,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3년 1월 16일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그는 교도소에서 ‘옥중 서신’을 계속 전파하며 자신의 행위를 멈춘 바 없다.

#### 소결 - 심각한 사회병리

북한군침투설 TF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일부 선동가들에 의한 ‘가짜 뉴스’와 ‘가짜 역사’의 확산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과는 정반대로 국민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추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는 현실만 확인한 셈이 됐다. 동시에 보수진영의 맹목적(盲目的) 반공의식만 강화됨으로써 반(反)지성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건전한 반공의식을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지성 집단은 쇠락해가는 중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과 방송도 외면하거나 손을 놓고 있으며, 국가 안보의 첩병인 정보기관 구성원들조차 이러한 병리적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자 임천용을 필두로 한 정명운과 이주성 그리고 육사 출신의 지만원 등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와 ‘가짜 역사’를 유포시켜오는 현실을 확인했지만 정작 최초의 연결점인 탈북자 임천용은 주거불명으로 조사관의 접촉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를 담당했던 경찰조차 “임천용은 더이상 신변보호 대상자가 아니며 직권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연락처도 알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이로써 북한군침투설 TF는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여기서 보고서를 종결짓게 되었다.

### 3. 소결

본 보고서는 「5·18진상규명법」 제3조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본 조사에서는 대상이 되는 “북한군”의 범위를 북한군 신분으로 침투한 간첩이나 공비 1~2명이 아닌 “최소한 수백명 규모의 북한특수군 부대”로 한정하고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 주장의 핵심 인물인 지만원이 제기한 “42개 증거”를 위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지만원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잘못 판독하고 이를 제한된 군사지식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는 등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장의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북한군 개입의 증거라고 하는 지만원의 주장은 사진 판독의 오류와 미흡한 군사지식, 그리고 당시 한국사회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겹쳐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지만원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북한군 개입의 증거로 볼 수 없었다. 지휘체계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과 질서가 유지되는 듯한 사진을 두고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침투했다는 증거라고 하는 지만원의 주장 역시 고교 교과 과정에 교련 과목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성인 남성 대다수가 군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시 한국의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600명 단위 사복 별동대의 작전활동” 주장은 남한의 자료에서 “300명 + 300명”이 나온 부분을 찾아 북한 자료에 있는 “600여명”과 연계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만원은 숫자가 단순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어떠한 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다른 주장인 교도소 습격 사건과도 앞뒤가 들어맞지 않는, 설득력 없는 주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사단 및 아시아자동차 차량 피탈과 관련한 지만원의 주장은 이를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개인적 추정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핵심 쟁점이었던 일반인의 장갑차 운전도 해당 장갑차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약간의 연습만으로 조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특수군 600명이 1980년 5월 21일 4시간만에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위장된 44개의 무기고를 털었다”는 주장과 관련,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기고 습격에 참여한 사람들이 북한특수군이었다거나 북한군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5·18 이전 시위대가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정탐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도청 다이어마이트를 해체한 사람은 있는데 조립자가 없으며, 광주시민들 중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지만원의 주장은 과거 수사 및 재판기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실제로 폭발물을 조립했던 시민들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사망자 154명 중 총상 사망자 117명의 75%에 해당하는 88명이 무기고 총에 의해 사망했다는 주장은 별도의 직권조사 과제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사건번호 직가-2) 조사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북한군이 교도소를 공격했고 그 중 475명이 폐죽음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군과 관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교도소 습격 사건과 관련하여 475명이 사망한 상황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18민주화운동학생기념탑-기억의 통로」에 새겨진 “서울에서 대학생 5백여 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에 나온 이들이 북한특수군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 결과, 그러한 환영식 자체가 개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5·18조사위는 향후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념물을 포함한 각종 자료에서 관련 내용의 정정을 권

고하기로 하였다.

시위의 주최자가 대한민국에 없으며 북한의 민주투쟁위원회가 시위를 주최했다는 지만원의 주장과 관련, 당시 민주투쟁위원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 조직이 현장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만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북한특수군이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북한 교과서에 5·18민주화운동 등 남한의 민주화운동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이라고 나와 있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북한 교과서의 날조와 왜곡을 지적하려는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지만원이 북한 교과서에서 왜곡하고 있는 5·18 관련 내용만을 발췌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내용에서 북한 문헌이 우위에 있다는 지만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5·18 관련 자료를 민간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었던 지만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의 5·18 기념행사”,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 5·18을 영예의 훈장으로 하사”, “북한군이 공수부대 모함용 세트장 촬영” 등 탈북자 주장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이 5·18을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군 침투의 증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북한이 “5·18”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광주 일원 침투와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가 비약된 추측성 주장이었다. 또한 북한군이 공수부대를 모함하기 위해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했다는 주장에 사용된 사진은 1995년 전남 대학교 학생들의 5·18 재현 행사 사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기간중 북한이 광주의 촬영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며, 반대로 다수의 내·외신 기자들이 광주에 체류하면서 현장의 상황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만원은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비밀 해제 이관문서 중에 5·18을 북한이 주도했

다는 정황자료들이 9개나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당시 북한의 남침 위협은 상존하였으나 구체적인 도발 징후 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침투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미국 정부 기관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황장엽과 김덕홍이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을 증언했다는 주장과 관련, 5·18조사위는 해당 증언이 사실이더라도 이들이 지칭하는 것은 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최소한 수백 명 규모의 북한특수군 부대”가 아니라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의 활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광주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 주장은 탈북자가 쓴 책에서 처음 등장한 이름 ‘광수’가 지만원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5·18현장 사진의 무장시위대로 연결되었고, 2015년 노숙자담요가 이에 대한 영상분석 내용을 게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지만원의 일명 ‘광수’ 주장은 거의 전적으로 노숙자담요의 분석에 기반한 것이나 지만원은 검찰 수사는 물론 5·18조사위 조사에서도 노숙자담요의 신원이나 분석 기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른바 ‘광수’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육안으로만 유사해 보이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5·18당시 촬영된 사진의 인물과 북한 관련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되었다.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특수군 개입 주장을 전개하면서 사진을 잘못 판독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왔다. 특히 지만원이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해상도도 낮은 사진을 미흡하거나 잘못된 군사지식으로 해석하면서 다양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기록과 진술 등을 통한 교차 검증 없이 정지되어 있는 어느 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만으로 상황을 특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사진을 사용해 왔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5·18조사위는 지만원 재판 기록을 통해 ‘광수’ 주장과 관련 사법부도 5·18조사위와 유사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지만원이 노숙자담요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글과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노숙자담요가 지만원과 독립된 객관적인 제3의 판단주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5·18조사위는 661명에 달하는 지만원의 ‘광수’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하였다.

청주 유골이 광주에 침투했다가 사망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지만원의 주장은 조사결과 그 근거들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해당 유골들이 북한 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검거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과 손성모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는 주장은 조사결과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창용은 단선된 고정 간첩망 복구 수습지도, 노동당 경기도당 결성, 필요시 단선 간첩 대동 복귀 등 임무를 띠고 남파된 소위 ‘검열 간첩’으로, 5·18민주화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복송된 석방 간첩 손성모가 증심사를 본거지로 하여 남파된 북 특수군에 핵심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5·18조사위는 향후 정확한 역사 기술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역사기록에서 본 사건을 「검열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 사건」으로 수정토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시위에 예비군 참여가 없었으므로 고난도 군사작전을 수행한 자들은 북괴군이다”라는 주장과 관련, 5·18조사위는 당시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남지역 20~40대 남성 10명 중 약 3.7명이 무기 사용법을 훈련받은 예비군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예비군이 시위와 무기탈취, 총기교육 및 계엄군과 교전에 참여했다는 증언을 통해 지만원의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지만원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류병현이 전남 해안을 비워주어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



등 일반인들이 대거 광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18조사위 조사결과 이는 지만원이 류병현 회고록의 문구 자체를 잘못 이해 또는 왜곡한 것이며, 당시 해군 경계작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실무근인 주장임을 확인하였다.

“방송사와 광주시에서 5·18당시 사진 속의 인물찾기를 하였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바로 이들이 북한군이라는 증거이다”라는 지만원의 주장은 1999년 5월 방영된 MBC PD수첩에 이미 12명이 등장하는 등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만원의 주장 42개 중 “안기부 자료에서 신원미상 12명이 바로 북한군 시체일 수 있다는 것이 증론이다”처럼 근거 없이 주관적인 표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타당성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이나 “검열과 폭력과 세도로 비밀 강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장은 진상규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끝으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前총재가 2023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신이 1999년 김대중 정부의 대북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당시 애국열사릉에 광주 5·18 가담 북 특수공작원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김경재에 대한 전화 조사를 통해 “당시 보았던 묘비의 숫자가 적어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5·18에 관계된 고정간첩의 묘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5·18조사위는 해당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의 광주 침투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 제2절 무기 탈취와 시민의 무장

### 1. 조사 배경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라 함) 기간 중 광주·전남 일원에서는 시위대에 총기 5,003정, 수류탄 552발, 실탄 289,400여 발, 폭약 382.5kg이 피탈되었다. 주로 1980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 사이에 피탈되었다. 하지만,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까지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sup>218</sup>과 무기 탈취는 부각되지 않았다. 청문회 과정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면서 군사정권과 군은 민간인 피해를 설명해야 했고, 그것은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와 시민들의 무장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때 시위대의 무장 시점이 쟁점이 되었고, 나주지역 무기 피탈 시간이 왜곡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sup>219</sup> 특히 시위대의 무장 시점이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이라는 주장은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발포가 시민들이 먼저 무장하여 공격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자위권의 행사였다는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 저항이 일어났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의 무장이 집단발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명확히 밝혔다.<sup>220</sup>

218 시위대의 무장과 관련하여 1980.5.31. 계엄사 1차 발표에서 '폭도들의 총기 약탈'이라는 표현 이후, 1995년 검찰 수사에서도 '시위대의 무기 탈취', 무기고 습격에 따른 시위대의 무장은 국가중요시설물에 대한 공격이라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219 1988년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의 논쟁 중 하나는 계엄군의 발포와 시위대의 무장이었다. 국방부 『국회특위부록(2)』(1988)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따른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는데, '시위대의 무장시기'에 대해서 야당은 '5월 21일 15:00 이후'를 주장하였고, 여당과 정부는 '5월 21일 11:00 나주금성파출소' 무기 피탈을 주장하였다.

220 대법원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이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 저항이 일어났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호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만원과 일부 탈북자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적과 종합편성 채널 등을 통해 5·18에 북한이 개입하고 북한특수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였다. 지만원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특수군 600여 명은 광주사태 수개월 전부터 전남지역 전체를 샅샅이 뒤져 17개 시군에 위장하여 숨겨져 있던 무기고 44개를 찾아내 약도 및 구조 도면을 준비하였다. 북한특수군 300명은 5월 21일 08시 극비리에 이동하던 20사단 지휘용 차량을 광주 톨게이트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하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가 차량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300여 명이 합세하여 전남 17개 시군 44개 무기고로 곧장 달려가 낮 12시 나주경찰서 무기고부터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전역 무기고에서 무기를 동시에 숨겨 있는 방법으로 탈취하였다.<sup>221</sup> 또 이들 600명은 8톤 분량의 TNT를 전남도청 지하실에 옮기고 포탄으로 조립하였다는 것이다.<sup>222</sup>

전두환 신군부가 작성한 『제5공화국전사』(1982)에는 남파된 북한군이 5·18 당시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이나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북한군이 대거 침투해 폭동사태에 가세했다면 광주사태는 더욱 혼란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sup>223</sup> 그러면 서도 『제5공화국전사』의 일부에는 무기고 습격 및 무기 탈취에 있어 통합된 조직체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정간첩이나 불순용공분자들의 사주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sup>224</sup>

이에 5·18조사위는 5·18 기간 동안 전남 일원에서 발생한 무기고 습격과 무기 피탈에 대

221 지만원, 2014, 『5·18분석 최종보고서』, 도서출판 시스템, 27-28, 69쪽; 이러한 주장은 전두환 회고록에도 나오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8. 5. 14.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2차 출판및배포금지가처분을 인용(2017카합50489호) 하면서, ‘시위대가 계엄군의 전남 도청 앞 발포가 있었던 1980년 5월 21일 13시경 이전에 이미 무기고 습격 및 무기탈취를 통해 무장을 시작하였고,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먼저 계엄군에 대해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이 이에 대한 자위권행사 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을 시작한 것이다.’는 취지로 전두환회고록에 기재된 각 표현은 ‘허위사실 및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그 참가자들이 한 행동의 정당성을 깎아내림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각 표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22 지만원, 위의 책, 29쪽.

223 현대한국사연구회, 1982, 『제5공화국전사』, 1734쪽.

224 현대한국사연구회, 위의 책, 1530쪽.

한 실제적 사실을 조사하여, 당시 실제로 북한특수군이 침투하여 무기고를 습격했는지 규명하고자 2020년 5월 1일 제10차 전원위원회에서 특별법 제3조(진상규명의 범위) 제9호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직바-7〉의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은 2023년 12월 26일 제116차 전원위원회에 진상규명 의견으로 상정되었으나, 2(진상규명) 대 7(진상규명불능)로 ‘진상규명불능’결정되었다.<sup>225</sup>

## 2. 무기고 위치 사전 파악 및 동시 습격 여부

### 가. 무기고 습격자 62명의 형사기록

지만원은 2014년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출간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바꿔 광주에서 지역민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무기 탈취는 북한특수군의 작전이라고 주장하였다.<sup>226</sup> 그러나 5·18과 관련하여 검거된 2,522명 중 기소된 404명에 대한 「기소자 총명부(총404명)」의 ‘죄명·범죄 개요’란에 “무기고 피습”으로 적시된 사람은 63명으로 모두 지역민이었다. 검거된 2,522명과 기소자 404명은 모두 신원 파악이 가능한 사람들로 지만원의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sup>227</sup> 이들 무기고 습격과 관련한 기소자의 이름, 나이, 직업,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5 이 사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7인의 위원은 2건의 불능사유를 제출하였으며, 각 불능사유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책에 수록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해당 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6 지만원, 앞의 책, 2014, 6쪽.

227 「기소자 총명부(총404명)」, 기무사 201-47(합수단 설치근거, 계엄공고 및 포고문 등 3건). 기소자 404명 가운데 무기고 습격 관련자는 강○○ 등 63명이다. 5·18조사위는 국방부 법무실로부터 62명에 대한 법무기록을 회신 받았다. 이들과 동시에 기소되어 구속된 인물까지 합하면 총 76명이다.

〈표 6-2-1〉 무기고 습격관련자 처벌

관련 무기고	이름	나이	직업	처벌
광주 연초제조창	박○○ <sup>228</sup>	20	공장직공	내란실행
담양경찰서	조○○	24	세차장종업원	내란부화수행
화순 동면지서	강○○ <sup>229</sup>	20	자개공	내란실행
	이○○ <sup>230</sup>	25	식당종업원	내란실행
	이○○ <sup>231</sup>	21	가구공	내란실행
	김○○ <sup>232</sup>	17	무직	내란실행
화순 역전파출소	나○○ <sup>233</sup>	25	제과공	내란실행
	김○○	28	제과공	내란실행
	노○○	28	노동	내란실행
	박○○ <sup>234</sup>	23	무직	내란실행
화순경찰서	김○○ <sup>235</sup>	20	무직	소요, 특수절도
	조○○ <sup>236</sup>	24	송광교통 사원	소요

228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박○○: 80검 제45호)」(1980. 8. 23),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2 박○○-1』(1980), 16쪽.

229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강○○: 80검 제16의3호)」(1980. 8. 1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강○○-3』(1980), 143쪽.

230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이○○: 80검 제16의1호)」(1980. 8. 1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3 이○○(1)-2』(1980), 190쪽.

231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이○○: 80검 제16의2호)」(1980. 8. 1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3 이○○(1)-1』(1980), 10쪽.

232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김○○: 80검 제16의4호)」(1980. 8. 1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1』(1980), 9쪽.

233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김○○·나○○·노○○: 80검 제15의2호 내지 4호)」(1980. 8. 1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나○○-2』(1980), 96쪽.

234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박○○: 80검 제15의1호)」(1980. 8. 1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나○○-3』(1980), 45쪽.

235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김○○: 80검 제22의2호)」(1980. 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1』(1980), 1쪽.

236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조○○: 80검 제22의1호)」(1980. 8. 20.),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6 조○○-1』(1980), 10쪽.

관련 무기고	이름	나이	직업	처벌
순천 송광지서	임OO <sup>237</sup>	30	운전수	내란실행
	김OO	33	농업	내란실행
	김OO	33	광부	내란실행
	김OO	25	광부	내란실행
	김OO	24	목공	내란실행
순천 송광지서	박OO	33	농업	내란실행
	박OO	28	광부	내란실행
	배OO	23	노동	내란실행
	오OO	25	타일	내란실행
	이OO	30	농업	내란실행
	차OO	28	광부	내란실행
	천OO	25	운전수	내란실행
나주 남평지서	김OO <sup>238</sup>	29	귀금속세금	계엄법 위반, 소요 등
나주 영산포지서	이OO <sup>239</sup>	18	무직	소요, 계엄법 위반 등
나주경찰서	김OO <sup>240</sup>	27	고물행상	내란실행
	박OO	22	농업	소요
	박OO	23	목공	내란실행
	박OO	23	용접공	내란실행
	유OO	24	과일행상	내란실행
	이OO	20	방위병	소요

237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임OO 외 10명: 80검 제18-1-11호)」(1980. 8. 1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OO(2)-1』(1980), 19쪽;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천OO)」(1980. 9. 10.),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OO(2)-2』(1980), 192쪽.

238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김OO: 80검 제44-4호)」(1980. 8. 23.),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OO(2)-1』(1980), 11쪽.

239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이OO: 80검 제27-5호)」(1980. 8. 20.),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3 이OO-4』(1980), 130쪽.

240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김OO 외 7명: 80검 제42호)」(1980. 8. 23.),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OO(2)-1』(1980), 18쪽.

관련 무기고	이름	나이	직업	처벌
나주경찰서	최OO	22	방위병	내란부화수행
	최OO	24	노동	내란실행
나주 금성동파출소	정OO <sup>241</sup>	22	상업	소요, 계엄법 위반 등
덕음광산 <sup>242</sup>	이OO <sup>243</sup>	25	사진사	계엄법 위반, 소요 등
덕음광산	이OO	20	농업	내란실행
	권OO	21	상업	내란실행
	최OO <sup>244</sup>	21	무직	계엄법 위반, 특수절도
강진 성전지서	양OO <sup>245</sup>	20	경운기수리공	소요, 특수절도, 계엄법 위반
	이OO	19	영암 종합고 3	소요, 특수절도, 계엄법 위반
영암 시종지서	이OO <sup>246</sup>	23	농업	내란실행, 계엄법 위반
	김OO	17	나주 한독고3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나OO	20	농업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박OO	18	서울 국제실고3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박OO	20	영암 신복고2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241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정OO: 80검 제44-1호)」(1980. 7. 29.),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강OO-1』(1980), 13쪽.

242 덕음광산 초유폭약 탈취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이OO은 2021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2021재고합3 소요, 특수절도」).

243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이OO·이OO·권OO: 80검 제 44호)」(1980. 8. 23.),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3 이OO(2)-1』(1980), 2쪽.

244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최OO: 80검 제 98호)」(1980. 12. 4.),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7 최OO(2)-1』(1980), 9쪽.

245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양OO, 이OO:80검 제94-1-2호)」(1980. 10. 24.),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3 양OO-1』(1980), 2쪽.

246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이OO 외 18명)」(1980. 8. 20.),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OO(2)-1』(1980), 16쪽;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 변경(이OO 외 18명)」(1980. 10. 13.),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OO(2)-1』(1980), 192쪽.



관련 무기고	이름	나이	직업	처벌
영암 시종지서	박OO	17	영암 신북고1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박OO	19	농업	계엄법 위반
	손OO	16	나주 월례고3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이OO	22	상업	내란실행, 계엄법 위반
	이OO	16	송정 정광고2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임OO	26	미장공	내란실행, 계엄법 위반
	조OO	18	농업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최O	16	영암 신북고2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최OO	17	영암 신북고2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하OO	25	농업	내란실행, 계엄법 위반
	한OO	21	미장공	내란실행, 계엄법 위반
	유OO	26	농업	내란실행, 계엄법 위반
영암 시종지서	서OO	16	영암 신북고2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박OO	19	농업	계엄법 위반, 내란부화수행
	전OO <sup>247</sup>	27	농업	내란실행
목포 연동파출소	최OO <sup>248</sup>	19	무직	소요, 계엄법 위반
목포 죽교파출소	김OO <sup>249</sup>	25	다방주방장	소요, 계엄법 위반 등
무안 해제지서	윤OO <sup>250</sup>	26	양복점	내란실행 방조
	김OO	25	양장제봉사	내란실행 방조
	이OO	27	세탁소업	내란실행 방조
	이OO	24	고물상 종업원	내란실행 방조

247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전OO: 80검 제89호)」(1980. 9. 20.),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OO(2)-3』(1980), 12쪽.

248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최OO)」(1980. 9. 6.),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7 최OO-1』(1980), 2쪽.

249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김OO: 80검 제25-3호)」(1980. 8. 20.),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9 김OO(1)-2』(1980), 152쪽.

250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윤OO·이OO·김OO·이OO: 80검 제23호)」(1980. 8. 1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3 윤OO-1』(1980), 14쪽.

관련 무기고	이름	나이	직업	처벌
해남 월송지서	박○○ <sup>251</sup>	32	트럭운전사	소요, 특수절도 등
	김○○	33	동서가구대리점	소요, 특수절도 등
	서○○	20	농업	소요, 특수절도 등
	이○○	23	청과물상	소요, 특수절도 등
	조○○	32	커텐사	소요, 특수절도 등
	최○○	23	트럭운전사	소요, 특수절도 등
	윤○	19	상점 종업원	소요, 특수절도 등
해남 월송지서	이○○	22	여화점 경영	소요, 특수절도 등
해남경찰서	정○○ <sup>252</sup>	21	방위병	소요, 계엄법 위반 등

위 76명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고등학생 9명 등 10대 16명, 방위병 3명을 포함하여 운전사, 광부, 농부, 경운기수리공 등 다양한 직군의 20대 51명, 30대 8명으로 나타났다. 기소자의 본적지와 1980년 당시 거주지를 비교해 본 결과, 75명 중 58명은 본인의 고향에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17명 중 8명은 광주로 이동하여 거주하였고, 9명은 화순, 해남, 목포 등 본적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다.

체포된 시위대 중 기소된 이들의 처벌 이유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군검찰부가 제기한 공소사실은 재판에서 대부분 범죄사실로 인정되었다. 5월 21일 14시경 나주 남평지서에 무기를 탈취하려고 무기고에 침입하였으나 무기가 없어 미수에 그친 김우곤의 공소장은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 확대조치 후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 군·경의 저지를 뚫고, 차량을 탈취하여 시내를 질주하는 등 혼돈상태를 야기하자, 이에 가세하여, 구호를 외치며 광주 시내를 왕래하고 나주·영산포·함평·무안 등을 왕래하며 그 지역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1980년 5월 17일 공고된 계엄사령관 포

251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박○○ 외 6명: 80검 제13호)」(1980. 8. 14.),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1』(1980), 18쪽.

252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정○○)」(1980. 8. 20.),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6 정○○-2』(1980), 107쪽.

고문 제10호 2항 가에 위반하여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sup>253</sup>

무기 피탈 관련 피의자들이 처벌받은 죄목은 내란실행, 내란부화수행, 계엄법위반, 소요, 특수절도,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등이었다.<sup>254</sup> 시위대는 「형법」 제87조 제2호(내란)와 제115조(소요)를 적용받았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살상, 파괴, 차량 탈취 등의 약탈 행위, 그리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관여한 것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시위 차량에 탑승하여 전남 일원을 왕래하며 그 지역의 평온을 해한 행위는 1980년 5월 17일 공고된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0호 2항 가의 위반(계엄법위반)으로 처벌되었다.<sup>255</sup>

## 나. 시위대 참여 계기

1980년 5월 20일 저녁 차량 시위 이후 광주 시내 전역에서 시민들이 운집하여 5월 21일 01시경 시위군중은 15만 명에 이르렀다.<sup>256</sup> 광주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와 계엄군의 대치가 계속되자 시위대는 차량 방송으로 시민의 참여를 독려했고,<sup>257</sup> 소태동 및 금남로

253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김○○: 80검 제44-4호)」(1980. 8. 23.),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2)-1』(1980), 11쪽.

254 무기고 습격 관련 피의자는 시위의 가담 정도에 따라 내란실행, 내란부화수행, 포고령위반, 소요죄의 적용을 받았다. 형법 제87조(내란) 제2항(내란실행)과 제3항(내란부화수행)은 징역 5년 이상/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계엄법위반(포고령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 제115조(소요)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행위의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내란실행, 내란부화수행, 소요죄는 동시에 적용되었으며, 계엄법 위반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소요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화순 동면지서, 화순 역전파출소, 순천 송광지서, 무안 해제지서의 경우였다. 무안 해제지서와 순천 송광지서는 지역시위대가 5월 22일 다중의 집합 없이 시위함으로써 그 행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55 무장 시위대의 공소장에는 5·18 기간 무기 탈취와 무장 시위를 한 피의자의 공소사실은 “불우한 처지의 피의자가 10·26 이후 세계적 경제불황과 국내정세의 악화를 정부의 정책 실패의 탓으로 오인하고 증오해 은연중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김대중으로 하여금 정권을 탈취케 할 것을 마음먹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무장 시위와 경계근무를 하였다”고 적시하였다.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공소장(박○○: 80검 제45호)」.

256 합동참모본부, 『10·26상황일지(3)』(1980), 1쪽(일련번호 2708); 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일지」(1980), 226쪽, “5. 20. 24:00 현재 광주시내 시위군중 약 10만 명.

257 광주 시내 곳곳에서 시위대와 계엄군의 대치가 이어지자, 시위대는 방송차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

에서는 시위대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합세를 호소하였다.<sup>258</sup> 22시 30분경 월산동에 온 집 한 군중 속에서 여성의 가두방송을 듣고 시위에 합세했던 박○○은 시내버스를 타고 다음 날 08시까지 시위하다가 나주까지 갔다. 당시 버스에는 20대 여성 2명이 교대로 마이크를 들고 "우리 모두 합세합시다, 광주시민이 계엄군에게 모두 죽어가고 있으니 잠을 자지 말고 모두 나오라."고 방송하였다.<sup>259</sup>

일부 시위대는 5월 20일 저녁 시위의 연장으로 담양, 나주 등지로 차량 시위를 나갔다. 5월 20일 23시 시위 군중들은 트럭을 이용하여 담양경찰서에 가서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없다고 하자 광주로 복귀하면서 담양 주민들도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sup>260</sup>

5월 21일 12시경에는 시 외곽 차량 시위를 위해 광주공원과 광주역에 모이라는 방송이 있었다.<sup>261</sup> 광주공원에 모인 차량과 시위대는 연고가 있는 곳으로 배정되었고, 모인 차량 중에 군용트럭과 버스 7대가 나주로 출발하였다.<sup>262</sup> 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 분수대에서 흩어져 백운동으로 온 김○○는 해남, 순천 등 붉은색으로 행선지명을 쓴 차량 중 나주행 버스를 탔다.<sup>263</sup> 또 13시 20분 시위군중은 목포, 광산, 무안 등지에서 합세를 호소하기 위해 각각 출발하였다.<sup>264</sup> 시민들은 계엄군과 대치 상황을 목격하고 참여하거나 가두방송을 듣고

었다. "5월 21일 01:48 20-22세 가량의 여자가 울먹인 목소리로 확성기로 호소하기를,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과 물수건을 들고 도청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방송하였다(전교사,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 184쪽). "5월 21일 03:20 세무서 앞, 시위군중 4만 명. '전두환 물러가라', '도청으로 진격하자'. 전우가 함창하며, '시민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잠을 자느냐'고 가세 선동하였다(전교사 작전처, 『상황일지』(1980), 9쪽).

258 국가안전기획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1985. 5.), 53쪽.

259 나주경찰서, 『박○○ 진술서』(1980. 6. 24.),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2 박○○(1)-3』(1980), 37쪽; 나주경찰서, 『박○○ 피의자 심문조서(4)』(1980. 7. 17.),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2 박○○(1)-3』(1980), 138쪽.

260 합동참모본부, 『10·26상황일지(3)』(1980), 3쪽(일련번호 2718)

261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159쪽(6041 강○○ 증언)

262 5·18조사위, 『최○○ 진술조서』(2020. 7. 6.), 『정○○ 진술조서』(2020. 7. 7.)

263 5·18조사위, 『김○○ 진술 녹취록』(2022. 3. 3.)

264 전라남도, 『5·18사태 주요 사건일지』(1980), 371쪽.

참여하였다.

양○○은 5월 21일 오전 가톨릭센터 앞에서 리어카에 실린 시신 2구를 보고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sup>265</sup> 자동차정비사였던 김○○은 5월 19일 12시경 공용터미널 앞에서 시위를 구경하다가 공수대원에게 구타당하였고, 많은 시민이 다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나이에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266</sup> 강○○(운전자)은 5월 21일 14시경 영암 신복에 도착한 시위 여고생의 호소를 듣고, 신북지역 청년 30여 명을 규합하여 광주로 가기 위해 나주를 향해 출발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주로 올라가는 도중에 광주에서 내려오던 시위 차량으로부터 금남로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소식을 듣고 총으로 무장하기 위해 다시 영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진술하였다.<sup>267</sup>

김○○은 5월 21일 금남로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나주, 영산포를 거쳐 신북지서에서 무기를 탈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sup>268</sup> 박○○은 5월 19일 대인동 버스터미널 뒤에서 군인들에게 잡혀 구타당하고 트럭에 실렸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차 아래로 들어가 도망쳤는데, 5월 20일 화가 나 사장님에게(동아제재소, 충장로5가 80번지) 나무 재료를 각목으로 잘라 시위대에 제공하자고 제안해 대문 앞에 내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sup>269</sup>

김○○은 화순경찰서 사거리에서 시위대를 만나 전투중대 무기고에 들어가서 시위대가 무기고 열쇠를 망치로 부수는 것을 목격하고, 공수부대가 화순으로 넘어와 발포하면 지역방위를 위해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카빈 4정과 실탄 2상자를 탈취해 숨겼다고 하였

265 5·18조사위, 「양○○ 진술조서」(2022. 7. 28.)

266 5·18조사위, 「김○○ 진술 녹취록」(2022. 7. 6.)

267 5·18조사위, 「강○○ 진술조서」(2021. 4. 29.);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앞의 책, 1990, 1068쪽(6015 강○○ 증언)

268 5·18조사위, 「김○○ 진술조서」(2021. 3. 11.)

269 5·18조사위, 「박○○ 진술조서」(2020. 7. 28.)

고,<sup>270</sup> 김○○은 5월 21일 도청 분수대에서 총소리가 나자 시위대가 흩어질 때 본인은 백운동으로 갔으며, 버스들이 가려는 지역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써 붙이고 이동할 때 나주행 버스에 탑승하였고, 나주경찰서를 거쳐 금성동파출소에 갔는데 금성동파출소 무기고 앞에서 M60포차가 후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김○○ 본인이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후진하여 무기고 벽을 무너뜨렸다고 진술하였다.<sup>271</sup>

월남전 참전용사였던 박○○은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학생들이 차를 타고 와서 경상도 공수부대들이 광주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고 애처롭게 호소하는 방송을 듣고, 나주터미널에 가 후배 김○○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함평으로 내려갔으나 호응이 없자 영암으로 돌아왔는데, 영암경찰서 정문 옆 예비군무기고에서 실탄이 없는 빈총만 꺼내주고 나주로 돌아왔다고 하였고,<sup>272</sup> 남○○은 1980년 5월 21일 오전 나주읍에 도착해 구호를 외치는 시위 차량을 목격하였다. 당구장에 있던 남○○은 시위대의 분위기 따라 선배와 독자적인 차량 시위를 결의하여 당시 나주버스터미널에 정차되어 있던 광주고속 3대 중 1대를 운전하여 영산포를 돌아 광주로 올라가려고 나주에 다시 왔을 때 버스는 만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sup>273</sup>

홍○○은 5월 21일 소란하여 나가보니 광주에서 시위대가 와 계엄군에 의해 사람들이 맞아 죽었다는 취지의 말을 해 광주에 큰일이 났나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이 버스를 끌고 와서 영산포 선후배들이 나주로 이동하며 시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시위대가 나주에 도착했을 때가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지만 점심을 먹지 못하고 이곳저곳 시위를 하고 다니다가 나주 남문 부근 주유소 옆 공터에 차를 정차하고 있을 때 군용트럭이 금성

270 5·18조사위, 「김○○ 진술 녹취록」(2022. 2. 26.)

271 5·18조사위, 「김○○ 진술 녹취록」(2022. 3. 3.)

272 5·18조사위, 「박○○ 진술 녹취록」(2022. 7. 6.); 5·18나주동지회, 2020. 『5·18과 나주사람들』, 193-204쪽.

273 5·18조사위, 「남○○ 진술 녹취록」(2022. 7. 7.)

동파출소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sup>274</sup>

송정리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복무 중이던 최○○은 5월 21일 휴무로 친구 4명이 다보사에 갔다가, 점심시간 전후에 나주터미널에서 시위하는 대학생들이 광주시민을 도와주기를 호소해 시위대에 합류하였고,<sup>275</sup> 금성동파출소 인근에 집이 있었던 한○○은 12시가 안 된 시간에 초파일 다보사 야유회를 가려고 나왔는데 금성동파출소 부근에서 시위대를 보았는데, 시위대로부터 광주 시위 소식을 듣고 나주터미널에 가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sup>276</sup>

조○○은 5월 21일 도청 앞 유동 방면에서 태극기를 감싼 채 차 위에 있던 고등학생에 대한 조준사격을 목격하고, 전날부터 같은 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어디로든 무기를 가지러 가자고 해 20여 명이 버스를 타고 화순 동면지서에 가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광주로 돌아왔다고 증언하였다.<sup>277</sup>

김○○은 5월 21일 오전 10시경 20~30명이 화순으로 넘어가 광주 소식을 알리고 돌아다녔다. 오전에 갔던 곳이 화순이라서 발포 소식을 듣고 다시 화순으로 가 화순경찰서에 투석하며 들어갔던 시간이 1시반에서 2시 사이 정도였다. 경찰관들은 없었고 경찰서 뒤쪽으로 가니 무기고가 있어 일행 중 한 사람이 곡괭이 자루를 이용해 철창에다 괴고 지렛대 삼아 제치니 겨우 한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틈으로 들어가 손에 잡힌 71번 총 등 10여 정을 안고 나왔다고 증언하였다.<sup>278</sup>

이○○은 5월 21일 화순역 앞에 있는데 2시경 광주에서 온 사람들이 도청 앞 발포로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고, 화순역전파출소 무기가 피탈되는

274 5·18조사위, 「홍○○ 진술조서」(2021. 7. 15.)

275 5·18조사위, 「최○○ 진술조서」(2020. 7. 6.); 5·18나주동지회, 앞의 책, 2020, 317-323쪽;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앞의 책, 1990. (최○○ 6043 나주지역 무기고 탈취)

276 5·18조사위, 「한○○ 진술 녹취록」(2022. 3. 3.)

277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앞의 책, 1990, 1134쪽 (6033 조○○ 증언)

278 5·18조사위, 「김○○ 진술 녹취록」(2020. 8. 5.); 김윤곤·신기철, 2020. 『화순과 5·18』, 298-304쪽.



것을 목격했지만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이○○은 화순읍사무소에 근무한 김○○씨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군청 앞에 갔을 때, 화순 예비군에 지급하는 총기를 받았다. 우리도 무기를 가지고 광주시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범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sup>279</sup>

#### 다. 기록으로 확인한 시위대의 차량 시위와 무기고 습격

5월 21일 오전 시위대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민들을 금남로 시위 현장으로 운집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일부 시위대는 화순, 나주 및 전남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시위대의 전남 일원으로의 진출에 대한 보고는 제31사단<sup>280</sup>, 505보안부대<sup>281</sup>, 전교사<sup>282</sup> 등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제31사단 「전투상보」,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시 상황일지」 등에 따르면 5월 21일 오전 전남지역으로 출발한 시위대는 10시 나주와 영산포에 도착하였고, 11시에 목포로 출발하였으며, 도중에 나주시가에서 시민 가세를 선동하였다. 12시30분 함평에 도착하였고 시민들이 가세하자 목포로 향하였다. 13시 영암, 13시20분 목포, 광산, 무안에 도착하여 시민들의 합세를 호소하였다.

또한 화순지역에 시위대가 도착해 화순광업소 위치를 문의하고 돌아간 시간은 12시20분이다. 시위대의 화순지역 진입에 대한 정보기관의 보고는 5월 21일 12시20분 보고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 정보기관 및 군 관련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5월 21일 13시 이전 시위대가 광주·전남지역을 왕래하며 시민들의 시위 가세를 호소한 점이다. 반면 시위대 무장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279 김윤곤·신기철, 위의 책, 217-223쪽.

280 제31사단, 「전투상보」(1980), 9쪽.

281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시 상황일지」(1980), 203-205쪽.

282 전교사, 「정보일지」(1980), 243쪽.

5·18 당시 전남경찰국과 각 경찰서의 근무상황일지는 경찰서 및 지·파출소 습격 일시(시간), 습격 관서(장소), 침투인원, 피해 개요(습격상황) 및 피해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무기고 습격에 가담한 시위대의 재판기록은 시위대가 시위에 참여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무기고 습격에 가담한 시위대는 광주 출발 시위대, 지역에서 합류한 시위대, 자체적인 지역시위대로 구분된다.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오전/오후 출발로 구분되며, 지역에서 합류한 시위대는 광주에서 오전에 출발한 시위대와 함께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경우와 도청 발포 소식을 전하며 무기고 위치를 물었던 시위대에 합류해 무기 탈취에 가담한 경우로 구분된다. 그리고 자체적인 지역시위대는 지역에서 시위대가 자체적으로 차량 시위를 하면서 5월 21일 늦은 시간부터 5월 23일까지 무기고를 습격한 경우이다. 순천 송광지서,<sup>283</sup> 덕읍광산,<sup>284</sup> 그리고 영암 도포지서, 시종지서,<sup>285</sup> 목포 연동파출소, 죽교파출소,<sup>286</sup> 무안 해제지서<sup>287</sup> 무기 피탈이다.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대부분 5월 21일 09시 이후 광주 시내 곳곳에서 시위에 참여한 이후 광주에서 출발하여 전남지역 군청·면 소재지에 도착, 지역민의 시위 참여를

283 화순읍에 거주하는 임○○, 박○○, 김○○, 오○○, 김○○, 김○○, 김○○, 박○○, 배○○, 이○○, 차○○은 5. 21. 18:00 화순읍에서 모여, 714대대, 19:00 화순읍 신기리, 동구리 야산, 21:30 화순읍 시위, 22:30 능주지서, 22:50 칠동부락, 5. 22. 01:00 순천 송광지서를 거쳐 5. 22. 06:00 광주 지원동에 도착하였다.

284 나주공산에 거주하는 이○○, 이○○, 권○○, 최○○은 5. 22. 14:00 나주 공산면사무소에서 17:30 덕읍광산에서 초유폭약을 탈취하였다.

285 영암 삼호면에 거주하는 이○○, 김○○, 나○○ 박○○, 박○○, 박○○, 박○○, 손○○, 이○○, 이○○, 임○○, 조○○, 최○○, 최○○, 하○○, 한○○, 유○○, 서○○, 박○○, 전○○ 등 시위대의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다. 5. 22. 8:30 영암 삼호면, 11:00 군서지서, 12:00 서호면 학파농장, 14:00 학산지서, 18:00 시종지서, 19:30 나주읍 군청광장(무기 분배), 21:30 시종지서, 5. 23. 10:00 도포면 덕화리 저수지 부근 노상에서 도포지서 무기 탈취

286 목포에 거주하는 최○○은 5. 22. 10:00 목포역에서 시위대에 합류한 이후 18:30 선창, 대반동 등 시위, 19:00 연동파출소, 5. 23. 10:00 목포역, 삼악도, 터미널 등지에서 시위하였다. 한편 목포에 거주하는 김○○은 5. 21. 15:30 목포 호남동에서 시위대에 합류한 이후 18:10 목포경찰서, 19:50 용해동 파출소, 5. 22. 10:00 죽교파출소에 침입하였다.

287 무안 현경면에 거주하는 윤○○, 김○○, 이○○, 이○○은 5. 22. 14:00 현경지서, 15:00 해제지서, 15:40 망운지서를 습격하였다.

독려하고 차량 시위를 하였다. 당시 지역민은 시위 차량에 합류하기도 하고, 자체적인 차량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지역민의 참여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 광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5·18조사위는 지역에서 합류한 시위대의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결과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에 합류하거나 자체적으로 시위대를 구성하여 광주를 지원하려고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광주로 이동하는 도중에 또 다른 시위대를 만나면서 발포 소식을 들었고, 그 후에 무기 탈취에 가담하였음이 확인된다. 일례로 화순 동면지서 무기고 습격에 합류한 강성남과 김상호는 5월 21일 12시30분 화순 시외버스정류소에서 시위대를 만나 합류한 이후 너릿재를 통해 광주에 갔다가 다시 화순으로 돌아와 동면지서에 갔다. 화순 역전 파출소 무기고 습격에 가담한 박래풍은 5월 21일 14시 화순 시외버스정류소에서 합류한 후 너릿재를 넘어 광주로 가는 도중에 다른 시위대를 만나 역전파출소로 갔다고 하였다. 나주지역의 경우 무기고 습격관련자 중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많았고 나주에서 합류한 시위대는 나주터미널에서 합류한 경우가 다수이다. 또 시위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정차했던 금성동파출소 앞에서도 합류하였다. 또한, 나주경찰서, 금성동파출소 습격 상황을 목격하고 일부 시위대는 금성동파출소 무기 탈취에 참여하였다.

## 라. 아세아자동차공장 피탈 차량

5·18조사위는 지만원이 주장하는 북한특수군 600명의 무기고 습격 과정은 총 4가지로 정리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였다.

첫째, 5·18조사위는 북한특수군 300명이 5월 21일 08시 극비리에 이동하던 제20사단 지휘용 차량을 광주 톨게이트에서 기습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5월 21일 08시 제20사단 지휘부 차량이 시위대로부터 피탈 당한 장소는 광주공단 입구였는데,<sup>288</sup> 이미 5월 20일 저

288 이○○ 62연대장은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제20사단 62연대가 차량을 피탈 당한 곳은 광주 톨게이트

녁부터 시위대와 계엄군 간에는 밤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었다. 5월 21일 08시 이전 가톨릭센터, 광주공단 입구 등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시위군중이 군·경과 대치하였고,<sup>289</sup> 07시30분 광주단지 입구에도 2,000명으로 증가한 시위군중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량을 통제하여 제20사단 지휘부 차량은 이 지역을 통과하려다 시위대와 충돌한 것이었다.<sup>290</sup>

둘째, 5·18조사위는 북한특수군 300명이 제20사단 지휘용 차량을 이용해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차량을 일시에 탈취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505보안부대<sup>291</sup>와 전교사 상황일지<sup>292</sup>에 의하면, 5월 21일 09시경 고속버스 3대와 군용지프차를 타고 간 시위대가 아세아자동차공장에 최초로 난입해 차량 7대를 탈취하였다. 이후 아세아자동차공장의 차량<sup>293</sup>은 여러 차례 피탈<sup>294</sup>되었는데, 일부 시위대는 탈취한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 일원으로 계속 진출하여 시위를 이어갔다.

셋째, 5·18조사위는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탈취한 차량을 이용, 북한특수군 300명이 추가로 합세하여 전남 17개 시군의 44개 무기고를 습격하기 위해 동시에 출발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전라남도「5·18사태 주요 사건일지」 등에 따르면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피탈된 차량은

.....

입구가 아니고 광주공단 사거리(OP073913) 부근이었으며, 차량 1/4톤 14대 피탈, 군인 1명 실종, 군인 여러 명 부상, 본인은 가방과 신발을 탈취당했다고 하였다(「이○○ 피의자 신문조서」(1994, 12, 14.), 서울중앙지검 102-15(1), 24353쪽).

289 전교사 작전처, 「상황일지」(1980), 9쪽; 중앙정보부 광주대공본실, 『광주사태 상황일지』(1980), 11쪽.

290 전교사에는 “08:57 공단입구. 과격분자 1,000여 명 군용집차에 탑승한 군인 4명 피습. 동차량 및 무전기 16개 탈취”로 보고되었다(전교사 작전처, 「상황일지」(1980), 11쪽).

291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시 상황일지」(1980), 201, 206쪽.

292 전교사 작전처, 「상황일지」(1980), 11쪽.

293 당시 아세아자동차공장은 320,000평 부지의 국가보안목표 “가”급인 공장으로서 병력 배치는 없었고, 재고 차량 총 530대(군용 350대, 민수용 156대, 기타 24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피탈된 차량은 328대이고, 차량에는 시운전 연료가 주입되어 있어서 곧바로 시내 진출이 가능하였다(육군본부, 『계엄사』(1982), 202쪽; 합동참모본부, 「광주사태 각종 피해현황(일자별 장비 피탈 현황)」, 『광주사태 관련 참고철』(각종통계자료 2-1)』(1988)].

294 전라남도, 「5·18사태 주요 사건일지」(1980), 371쪽.

시가로 진출하였다고 보고되었다. “5월 21일 10시10분 금남로 일대 시위 중인 10만여 명 장갑차 1대 이용 외곽 군중 동원 수송”<sup>295</sup>으로 보고한 것처럼 탈취 차량은 시위군중을 시내로 집결시키는 데 이용되었고, 이는 보안사 기록<sup>296</sup>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하지만 군 상황일지 등에 의하면 일부 차량은 시위 합세를 호소하기 위해 화순, 나주 등 전남 일원으로 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1980년은 자가용 시대가 아니므로 광주에서는 아세아자동차공장 탈취 차량 400대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 또한 북한특수군의 소행임을 반증한다는 것<sup>297</sup>이라고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하였다.

아세아자동차공장 피탈 차량 400여 대의 운전자 존재 여부는 5·18 당시 광주 및 전남 일원에서 활동한 시위대 규모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차량 피해 규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가 조사한 차량 피해는 아세아자동차공장 피탈 차량 414대를 포함하여 1,299대이다.<sup>298</sup> 이는 기간 중 민간 차량 900여 대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민간 차량 피해는 당시 운전자 수를 대변해 준다. 5월 20일 저녁 차량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택시기사, 불가피한 상황에서 참여한 운전자, 자동차 관련 직종에 종사하여 운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까지 더하면 5·18 당시 광주·전남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았다고 보여진다.

5·18 관련 기소자 404명을 인구통계학적으로 분류해 보면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로 분류하면 차량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명에 이른다. 또한 피해 차량 구분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보다 대형차 운전자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아자동차공장 피탈 차량 414대를 포함한 광주시 피해 차량 1,299대의 차량을 구분해 보면 시위대가 많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가장 많았다.

295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시 상황일지』(1980), 202쪽.

296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193쪽[광주소요사태(21-10보)]

297 지만원, 앞의 책, 2014, 27-28쪽.

298 광주시 5·18지원협력관실, 『광주사태 피해』(1980)

이는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피탈된 4대의 바퀴형 장갑차[아세아자동차공장 생산 군용 APC(KM-900)]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충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궤도형과 달리 차륜형 장갑차 운전석은 1톤 트럭의 운전 방식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피탈된 APC는 제3공수여단 주둔지 전남대학교 정문을 돌파하기 위해 이용되었고, 시가지로 진출하여 시민들을 수송하는 데도 이용되었다.<sup>299</sup>

위 군용APC는 궤도차량이 아닌 차륜형 장갑차로 일반 차량을 장갑차화하여 핸들이 일반 승용차와 같다.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2017년 JTBC 인터뷰에서 군용APC 장갑차는 대형차량을 몰아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누구나 몰 수 있다라고 하여 일반인도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sup>300</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5·18조사위는 지만원이 주장하는 광주·전남에 운전자가 많이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을 확인하였다.

## 마. 무기고 습격 직후 광주공원으로 출발 여부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는 5월 21일 전남 일원으로 진출하여 무기를 확보하고 무장한 시위대가 광주에 진입한 시간은 15시 이후로 발표하였다.<sup>301</sup> 정보기관<sup>302</sup> 및 전남경찰국<sup>303</sup>은 피탈 무기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각에 광주 시내로 무기가 반입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전남 일원에서 무기를 탈취한 시위대가 광주공원에 집결한 사유는 당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었고, 시민들은 대자보와 차량 방송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

299 특전사(제3공수여단), 『상황일지』(1980), 16쪽; 전교사 작전처, 『상황일지』(1980), 11쪽.

300 JTBC, 『역사조작』 5·18 가짜뉴스(2017. 5. 17.)

301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 7. 8.), 102-103쪽.

302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214-215쪽[광주소요사태(21-29보)]

303 전남경찰국,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1980), 202쪽.

였다. 당시 전남인은 꺾기하라는 제하의 대자보가 붙었고 그 대자보에는 14시 전남대생은 유동 삼거리, 조선대생은 양림교, 전문대생은 광주공원, 중고생은 산수동 오거리에서 집합한 후 도청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으로<sup>304</sup>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며 특정 장소에 집결할 것을 호소하였다.<sup>305</sup>

5월 21일 17시경 광주시 학동 소재 석천다리 부근에서 성명 미상의 시위대가 탈취해 온 카빈과 탄약을 받아 지역방위를 지시하고, 광주공원으로 가 무기를 전달했던 문○○(○○동 예비군 소대장)<sup>306</sup>는 5·18조사위 조사에서 광주공원에 집결하기로 한 것은 도청 인근에서 가장 넓고 차량도 많이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307</sup> 또한, 합동참모본부 「10·26상황일지(2)」에는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투석전을 벌이다가 도청에서 집결하기로 하고 분산한 이후,<sup>308</sup> 금남로로 진출한 학생들이 금남로, 학생회관, 광주공원 등에서 집결하고 분산하기를 반복하며 시위하였다고 하였다.<sup>309</sup>

광주공원이 계엄군의 주둔지가 아니었고 작전지역으로 편입된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시위대가 5·18 기간 광주공원을 거점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광주공

304 김영택. 1998. 『10일 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01쪽.

305 “5. 20. 04:20 현재 시간 통합병원 쪽에서 마이크 방송을 통해 지금 현재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주민들에게 방송하고 있음.”, “5월 21일 01:48 20~22세 가량의 여자가 울먹인 목소리로 확성기로 호소하기를,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과 물수건을 들고 도청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방송하였다(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 184, 187쪽). “5월 21일 03:20 세무서 앞, 시위군중 4만 명. “전두환 물러가라”, “도청으로 진격하자”. 전우가 합창하며, “시민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잠을 자느냐”고 가세 선동하였다(전교사 작전처, 『상황일지』(1980), 9쪽).

306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문○○ 외 7명)』(1980. 8. 21.),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2 박○○-2』(1980), 66쪽. 공소장은 문○○가 학동 석천다리에서 시위대가 탈취해 온 총과 실탄을 받은 시간을 17:00로 특정하였다. 5·18조사위 조사에서 문○○는 석천다리에서 무기를 받은 시간을 15:00경이라고 진술하였다.

307 5·18조사위, 『문○○ 진술 녹취록』(2021. 3. 9.)

308 합동참모본부 「10·26상황일지(2)」(1980), 91쪽(일련번호 2292)

309 총장로 광주공원 일대 300~600명 단위로 곳곳에 운집(전교사, 『전투상보』(1980), 9쪽), 5. 18. 11:00 광주역 호남전기 앞 광주공원 광주우체국 앞 전남대생 등 총장으로 파출소 투석 시위. 전남대 정문에서 해산 조치된 학생 200여 명 시가지 진출, 학생 1,000여 명으로 증가, 산발적 시위 전개. 5. 18. 14:25 유동3거리 광주공원, 학생 300명 각 시위 전개(국가안전기획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1985. 5.), 39-40쪽)



원은 국가중요시설<sup>310</sup>이나 국가보안시설<sup>311</sup>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나 군이 시설경비나 방호할 필요가 없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지역이었다. 전남 일원에서 광주로 돌아온 시위대가 계엄군이 진주하고 있는 도청 인근으로 집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도청 인근에서 시위대가 운집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광주공원이었다.

## 바. 재판기록에서 확인한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 과정

5·18조사위는 지만원이 주장하는 무기고 동시 습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기고 습격관련자의 공소장에서 시위 참여 과정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5월 21일 오전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전남 일원에 도착한 직후 계획적으로 무기고를 습격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무기고 습격에 가담한 시위대는 광주 출발 시위대, 지역에서 합류한 시위대, 자체적인 지역시위대로 구분된다.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오전·오후 출발로 구분되며, 지역에서 합류한 시위대는 광주에서 오전에 출발한 시위대와 함께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경우와 도청 발포 소식을 전하며 무기고 위치를 물었던 시위대에 합류해 무기 탈취에 가담한 경우로 구분된다. 그리고 자체적인 지역시위대는 지역에서 시위대가 자체적으로 차량 시위를 하면서 5월 21일 늦은 시간부터 5월 23일까지 무기고를 습격한 경우이다. 순천 송광지서,<sup>312</sup> 덕음광산,<sup>313</sup> 그리고 영암 도포지서, 시종지서,<sup>314</sup> 목포 연동파출소, 죽교

310 공공기관, 중요산업, 전력, 방송, 정보통신, 교통, 공항, 항만, 철도, 수원, 교정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

311 파괴, 기능 마비로 인하여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

312 화순읍에 거주하는 임OO, 박OO, 김OO, 오OO, 김OO, 김OO, 김OO, 박OO, 배OO, 이OO, 차OO은 5월 21일 18:00 화순읍에서 모여, 714대대, 19:00 화순읍 신기리, 동구리 야산, 21:30 화순읍 시위, 22:30 능주지서, 22:50 칠동부락, 5. 22, 01:00 순천 송광지서를 거쳐 5. 22, 06:00 광주 지원동에 도착하였다.

313 나주공산에 거주하는 이OO, 이OO, 권OO, 최OO은 5. 22, 14:00 나주 공산면사무소에서 17:30 덕음광산에서 초유폭약을 탈취하였다.

314 영암 삼호면에 거주하는 이OO, 김OO, 나OO 박OO, 박OO, 박OO, 박OO, 손OO, 이OO, 이OO, 임OO, 조OO

파출소,<sup>315</sup> 무안 해제지서<sup>316</sup> 무기 피탈의 경우가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대부분 5월 21일 09시 이후 광주 시내 곳곳에서 시위에 참여한 이후 광주에서 출발하여 전남지역 군청·면 소재지에 도착, 지역민의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차량 시위를 하였다. 당시 지역민은 시위 차량에 합류하기도 하고, 자체적인 차량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시위대는 지역민의 참여가 일정 정도 이루어지면 광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지역에서 합류한 시위대의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결과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지역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무기고를 습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광주로 이동하는 도중에 또 다른 시위대를 만나면서 발포 소식을 들었고, 그 후에 무기 탈취에 가담하였음이 확인된다. 일례로 화순 동면지서 무기고 습격에 합류한 강○○과 김○○은 5월 21일 12시30분 화순 시외버스정류소에서 시위대를 만나 합류한 이후 너릿재를 통해 광주에 갔다가 다시 화순으로 돌아와 동면지서에 갔다. 화순 역전파출소 무기고 습격에 가담한 박○○은 5월 21일 14시 화순 시외버스정류소에서 합류한 후 너릿재를 넘어 광주로 가는 도중에 다른 시위대를 만나 역전파출소로 갔다고 하였다. 나주지역의 경우 무기고 습격관련자 중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많았고 나주에서 합류한 시위대는 나주터미널에서 합류한 경우가 다수이다. 또 시위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정차했던 금성동파출소 앞에서도 합류하였다. 또한 나주경찰서, 금성동파출소 습격 상황을 목격할 일부 시위대는 금성동파

.....

○, 최○, 최○○, 하○○, 한○○, 유○○, 서○○, 박○○, 전○○ 등 시위대의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다. 5. 22. 8:30 영암 삼호면, 11:00 군서지서, 12:00 서호면 학파농장, 14:00 학산지서, 18:00 시종지서, 19:30 나주읍 군청광장 (무기 분배), 21:30 시종지서, 5. 23. 10:00 도포면 덕화리 저수지 부근 노상에서 도포지서 무기 탈취

315 목포에 거주하는 최○○은 5. 22. 10:00 목포역에서 시위대에 합류한 이후 18:30 선창, 대반동 등 시위, 19:00 언동파출소, 5. 23. 10:00 목포역, 삼악도, 터미널 등지에서 시위하였다. 한편 목포에 거주하는 김○○은 5월 21일 15:30 목포 호남동에서 시위대에 합류한 이후 18:10 목포경찰서, 19:50 용해동 파출소, 5. 22. 10:00 죽교파출소에 침입하였다.

316 무안 현경면에 거주하는 윤○○, 김○○, 이○○, 이○○은 5. 22. 14:00 현경지서, 15:00 해제지서, 15:40 망운지서를 습격하였다.

출소 무기 탈취에 참여하였다.

이렇듯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계획적으로 진입해 무기고를 습격한 것은 아니었다.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와 지역에서 합류한 시위대는 일차적으로 시내 시위를 진행하였고, 시위 합류 이후 곧장 무기고를 습격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이는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사전에 무기고 정보를 가지고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의도적으로 무기고를 습격한 것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 3. 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과 피탈 시간

#### 가. 경찰의 무기 소개 및 경찰서 경비 상태

##### 1) 5·18 당시 전남지역 무기고 수

1977년 9월 10일 국방부와 내무부는 ‘예비군 무기, 탄약 관리’에 대해 “경찰은 무기 탄약의 출납, 보관,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군은 무기 손질, 정리”를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사항은 관할 수임군부대장과 경찰서장이 직접 이행하기로 하였다.<sup>317</sup> 그리고 1980년 4월 국방부에서 하달한 ‘예비군 무기·탄약 관리강화 지침’의 「무기 및 탄약관리현황표」에 따르면, 예비군 무기는 군부대, 경찰 관할의 집중무기고, 지역무기고, 분산무기고, 직장무기고, 그리고 학교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리고 1980년 당시 전국적으로 무기고 수는 군부대 무기고 263개소, 경찰의 집중무기고 113개소, 지역무기고 2,320개소, 분산무기고 544개소, 직장무기고 1,393개소, 학교 무기고 841개소 등이었는데, 이는 군부대 무기고를 제외한 5,211곳의 무기고가 민간인 거주지역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80년 당시 전남 도내 무기 및 탄약고는 총 708개소로 예비군무기는 11개 시군 41개 지역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이

317 국방부, 「예비군 무기, 탄약, 안전관리(지시)」(1980. 6. 5.)

중 광주 및 전남지역 경찰이 관리하는 무기고 수는 총 398개로서 경찰 무기고 50개소, 예비군무기고 348개소(집중무기고 20개소, 지역예비군 무기고 288개소, 직장무기고 35개소, 분산무기고 5개소)였다.<sup>318</sup>

## 2) 전남 일원 경찰 무기 및 탄약 소개 지시

1980년 4월 30일 치안본부는 시·도 경찰국장에 ‘예비군 무기고 탄약 관리 특별지시’를 하달했고, 다음 달인 5월 1일에도 두 번의 추가지시가 있었다.<sup>319</sup> 지시 내용은 각 직장에 보관되어 있던 예비군 무기와 탄약을 경찰서 경내로 이관해 경찰의 관리하에 두든지, 경찰서의 무기고가 안전하지 않으면 군부대로 이관하라는 것이었다. 탄약 관리 지시가 내려온 배경은 같은 해 4월 21일부터 24일까지의 사북사태와 가열된 학원시위 상황에 있었다.<sup>320</sup>

또한 전남경찰국은 1980년 5월 14일 각급 지·파출소에 ‘수명 즉시 본서 무기고로 소개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으며, 다음 날에도 추가지시를 내려 시내 파출소에 보관 중인 무기 탄약 전량을 경찰서 자체 무기고로 소개하도록 하였다.<sup>321</sup>

제2군사령부도 5월 19일 03시05분 ‘예비군 무기고 안전대책 조치’를 하달했다. 이에

318 육군본부, 『계엄사』(1982), 99쪽; 치안본부, 「광주사태 당시 기록에 관한 업무 협조 통보(80년 5월 광주사태 당시 자료)」(1988. 7. 30.), 합동참모본부, 『광주사태 관련 참고철[각종통계자료 2-1]』(1988)

319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67쪽;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69, 71, 202쪽.

320 경찰은 집단소요사태 발생 상황을 3. 21.~4. 23.은 학원자율화운동, 5. 1.~5. 17.은 민주화투쟁운동으로 구분하였다(전라북도경, 『학원소요사태분석』, 전라남도경·전라북도경, 『치안질서 회복을 위한 경찰의 조치』(1980), 49쪽). 안기부 상황보고에 따르면, 5. 10. ‘일부 학생들 간의 예비군 무기고 습격설’이 나돌았는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일부 과격 학생들 간에 1980. 5. 15. 평화적 가두시위가 당국에 의해 무력으로 저지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학군단 보관용)를 탈취하자는 설이 유포되고 있어, 각 학군단 및 인근 주변 예비군 무기고에 대한 경계 강화지시가 있었다(안기부, 『광주사태 상황보고』(1980), 165쪽).

321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73쪽. 전남경찰국은 5.18. 23:00 자체적으로 육군 179지단과 협조하여 광주경찰서와 서부경찰서의 집중무기고, 지역예비군무기고, 직장무기고 탄약을 제31사단으로 소개할 것을 지시하였다(전라남도, 『무기 탄약 소개지시』,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17쪽).

따라 육군 179지단과 118중대의 지원병력·차량이 광주경찰서의 집중무기고, 지역무기고 탄약을 5월 19일 03시부터 08시30분까지 사이에 제31사단으로 소개하여 11시30분에 완전히 인계하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집중무기고, 지역무기고 탄약을 5월 19일 00시30분부터 08시30분까지 사이에 제31사단으로 소개하여 5월 19일 10시30분에 완전히 인계하였다.<sup>322</sup>

전교사「총정작전결과(전투상보)」에는 전교사가 광주 시내 전력화 직장예비군 무기 및 탄약(무기 4,717정, 탄약 115만 발)을 군부대에 보관하였고, 분산무기고 탄약 55만 발을 군부대 및 집중무기고로 이관하였으며, 또한 미회수 탄약은 매몰하고 총기에 대해서는 공이 및 노리쇠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sup>323</sup>

제31사단은 5월 20일 09시30분 재차 광주 시내 예비군 무기 6,508정, 실탄 42만 발을 군부대로 회수 조치하였다.<sup>324</sup> 한편 1980년 5월 21일 오전 치안본부는 ‘예비군 무기 탄약 이관에 대한 긴급 지시’를 통해 광주사태와 관련하여 관내의 모든 예비군 무기 및 탄약(분산, 지역, 집중, 직장무기 및 청경무기)을 수명 즉시 지역 군부대장과 협조하여 이관하되 우선 탄약을 먼저 군부대로 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국이 도내 각급 경찰서에 유선전화로 긴급 전언통신문을 보내 예비군 무기 탄약 소개를 지시한 시간은 같은 날 09시40분부터 11시까지였다.<sup>325</sup>

322 고 안OO 경찰국장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5. 19. 11:00 손OO 치안본부장에게 광주 시내에 산재한 경찰 무기와 예비군 무기 및 중요문서에 대한 소산을 건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경찰국 경무과장과 광주경찰서장, 서광주경찰서장을 불러 경찰 무기 및 예비군 무기와 탄약 및 주요 문서를 소산시키되, 경찰국 및 두 경찰서 무기는 안전가옥(시내 위치)에, 탄약은 담양경찰서에 긴급 이송토록 지시하여 그날 밤에 소산을 완료하였고, 기동대 무기와 탄약은 전교사사령부(CAC)로 소산하였다. 시내에 산재된 예비군 무기와 탄약은 제31사단 훈련대장 한OO 장군에게 부탁하여 경찰국 차편으로 제31사단으로 소산하였다(치안본부 감찰계, 『안OO 진술조서』(1980. 6. 1),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8-62쪽).

323 전교사, 『총정작전결과(전투상보)』(1980), 10쪽; 제1관구사령부, 『'80 1관구부대사(전교사)』(1982), 746쪽.

324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 7. 18.), 78쪽.

325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75쪽(『전남경찰국 작전과 김OO 자술서』). 김OO은 5. 21. 09:35 경 작전과장의 지시를 받아 화순(9:40), 장성(9:50), 영암(9:52), 나주(9:54), 광산(9:55), 담양(9:58)에 각각 지시하고 함평, 곡성, 영광, 무안, 목포, 구례, 진도, 광양, 장흥, 보성 등에 11:00까지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 3) 전남 일원 경찰관서 경비 상황

1980년 5월 21일 대규모 시위대가 전남 일원 지·파출소를 공격하면 경찰관들은 일단 피신했다가 복귀하기를 반복하였는데, 이는 당시 광주시의 시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전남 각 지역의 경찰들이 광주로 차출되어 자체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5·18 이후에 무기를 피탈 당한 지·파출소 경비 경찰관의 징계기록과 무기 탈취에 가담한 피의자 조사 등에서 참고인 혹은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경찰관의 진술조서 등에서 확인되었다.<sup>326</sup>

당시 경찰 기록에서 확인된 1980년 5월 21일 무기 피탈 지역무기고가 소재하는 지·파출소의 경비병력 현황을 보면, 광산 대촌지서·비아지서 각각 2명, 화순경찰서 본서 29명, 동면지서·동북지서·능주지서·한천지서 및 역전파출소 각각 2명, 영암경찰서 21명, 신북지서·도포지서·시종지서 및 서남파출소 각각 2명, 군서지서는 경찰 2명, 방위병 4명이 경비하였다. 이어서 해남경찰서 및 계곡지서·옥천지서·월송지서 각각 2명, 고흥대서지서는 경비병력이 없었고, 장성 황성지서·진원지서는 각각 2명이 경비하였으며,<sup>327</sup> 나주경찰서 47명 및 남평지서(경찰 2, 예비군 2)·산포지서(경찰 2, 예비군 2)·금천지서·영강지서·다시지서(경찰 2, 예비군 2), 문평지서·반남지서(경찰 2, 예비군 2)·세지지서는 각각 2명이 잔류하여 경비하였고, 금성파출소와 중앙파출소는 3명, 영산포지서는 4명이 경비 중이었다.<sup>328</sup> 이외에 강진경찰서 20명, 성전지서 3명,<sup>329</sup> 목포지역 남교파출소 7명, 연동파출소 6명, 죽교파출소 7명이 잔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330</sup>

326 위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 전남경찰청, 「5·18 관련자 면담진술서(1, 2차)」, 2017. 등 참조  
 327 전남경찰국,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30-237쪽. 영암경찰서와 군서지서의 경비병력은 전남경찰국의 경찰 무기 탄약 피탈 현황에서 확인하였다(전남경찰국, 「경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경찰청 감사관실, 『중앙징계위원회 2차』(1980), 73-76쪽).  
 328 나주경찰서, 「경찰 철수사항」,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343쪽.  
 329 전남경찰국, 「경찰관서 피습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182쪽.  
 330 목포경찰서, 「파출소 잔류병력」, 경찰청 감사관실, 『1980. 중앙징계위원회 3차』(1980), 161쪽.

당시 무기 탈취에 가담했던 시위대는 대부분 경찰서 및 각 지·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무기고를 경계해야 했던 방위병들 또한 시위대가 공격할 때 경찰관이나 방위병들이 시위대를 제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들 사이에 숨어서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다.<sup>331</sup>

#### 4). 전남지역 무기고 위치와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

1980년 일반 남성은 무기고 위치를 어렵지 않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 경찰서 관할 내 경찰관, 무기고 경계 및 관리를 했던 방위병, 35세까지 예비군훈련을 받았던 당시 상황에서 지역의 남성들은 대부분 무기고 위치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각 경찰서는 주요 관공서로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며, 민간인 주거 구역과도 맞닿아 있었다. 따라서 무기고의 위치는 일반인은 알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화순경찰서 및 화순 전투중대무기고와 나주 금성동 파출소 무기고의 위치는 당시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화순경찰서 사거리는 광주에서 진입하면 버스정류장, 읍사무소, 경찰서, 그리고 상가가 밀집된 곳이다. 경찰서 바로 건너편에 전투중대 무기고가 있었으며, 인근에 중앙파출소, 소방서, 도서관, 화순군청 등이 위치하였다. 화순경찰서 내 집중무기고와 길 건너 전투중대무기고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주택지와 담 하나를 두고 위치해 있었다. 또한 당시 무기고는 관리 경찰관(경위 이상 간부)의 지시를 받은 방위병이 경계를 섰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일반인도 무기고 위치를 알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31 박○○은 금성동파출소와 해남경찰서 무기탈취시, 한○○은 금성동파출소, 영암 신북지서 무기탈취시, 김○○은 화순전투중대무기고 무기탈취시 모두 경찰관 목격에 대한 진술은 없었다[5·18조사위, 「박창남 진술 녹취록」(2020. 7. 26.), 「한○○ 진술 녹취록」(2022. 3. 3.), 「김○○ 진술 녹취록」(2022. 2. 16.)]. 한편 화순전투중대무기고 방위병 조○○, 양○○은 시위대의 무기탈취 과정을 숨어서 지켜봤다고 진술하였다[5·18조사위, 「양○○ 진술 녹취록」(2020. 1. 26.), 「조○○ 진술 녹취록」(2022. 2. 17.)].



마찬가지로 금성동 파출소(전남 나주군 나주읍 금성동 32 소재) 위치는 1980년 6월 7일 서울시경에서 박창남에 대한 포고령 위반 피의사건의 「실황조사서」에서 확인된다. 현장은 나주읍내 구 경찰서 앞 삼거리에 위치한 금성동파출소 우측 도로변에 위치하며, 동쪽 방향과 뒤쪽은 민가가 밀집되어 있고 북쪽인 파출소 앞 도로는 광주와 영산포를 잇는 도로로 전남 서남지역으로 갈 때 지나가는 주요 도로였다. 지역무기고는 비밀리에 엄폐된 것이 아니라 민가가 밀집한 경찰서 및 파출소 옆에 있었다.

#### 5) 5·18 당시 습격 무기고 및 무기 피탈 통계 현황

먼저 5·18 당시 피해 상황 집계를 살펴보면, 1980년 전남북계엄사령부의 『계엄사후보고서』에 첨부된 「건물 피해」 및 「무기피탈 및 회수현황」에는 1980년 9월 16일 현재, 경찰관서 109개소 반파·반소, 무기 피탈은 M16 34정을 포함, 총 5,008정(미회수 175정), 탄약은 수류탄 562발 포함 288,680발(미회수 161,664발)로 기재되어 있고,<sup>332</sup> 또한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에는 총기 4,900여 정, 실탄 13만여 발, TNT 10여 상자, 수류탄 270여 발이 피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333</sup>

5·18 당시 전남 일원의 습격 무기고 수에 대한 통계는 38개소, 48개소 또는 53개소 등으로 군과 경찰의 기록마다 다양하게 집계가 되어 있어서 정확히 한 가지 기록만으로 통계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5·18조사위는 1980년 5·18 직후 이루어진 국보위 조사보고서, 1995년 서울지검·국방부검찰부 수사결과, 1985년 안기부「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 현황」, 보안사「전남도경 상황일지」, 그리고 육군본부와 경찰 기록 등을 비교하여 아래 〈표 6-1-2〉과 같이 정리하였다.

332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피해」 및 「무기피탈 및 회수현황」, 『계엄사후보고(전남북)』(1980). 이 문서는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인사참모 대령 손동길 명의로 1980. 9. 19. 전남북계엄본소장에게 제출된 것이다.

333 앞의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1997, 101쪽.

〈표 6-2-2〉 피탈 무기고 관련 주요 기록물 및 기재 내용

기관별 기록물명	피탈 무기고 수	기재 내용
합동참모본부 『10·26상황일지(3)』	38개소	경찰관리 무기고 29곳, 직장관리 7곳, 학교관리 2곳(목포 문태고교, 강진 실업고교)
육군본부, 「예비군 무기 탄약 안전관리」, 1980.6.11.(비밀3급)	53개소	경찰서 6개, 지·파출소 38개, 직장 8개, 학교 1개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1980.6.10.자 보고)	53개소	경찰서 6개, 지·파출소 38개, 직장 8개, 학교 1개
1980년 국보위 조사결과	20개 시군 40개 지역	세부 사항 기재 없음
1985년 안기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 현황」	37개소	광주세무서, 광주고교, 대한통운, 연초제조창, 일신방직, 전남방직, 호남전기, 나주경찰서, 금성파출소, 남평지서, 다시지서, 영강지서, 반남지서, 산포지서, 대촌지서 예비군무기고, 비아지서 예비군무기고, 영암경찰서, 성전지서, 해남 계곡지서, 옥천지서, 목포 연동파출소, 무안 경성지서, 장성 진원지서, 황룡지서, 화순 역전파출소, 능주지서, 동면지서, 화순읍 무기고, 화순 중앙파출소, 한천지서, 화순광업소, 화순 광업소 예비군대대, 화순 읍내 4개 파출소, 화순 서태리 역청공장 등 37개소
1995년 서울지검 수사 결과	38개소	광주세무서, 강진경찰서, 성전파출소, 나주경찰서, 남평지서, 영암경찰서, 목포경찰서, 연동지서, 함평경찰서, 신평지서, 화순경찰서, 화순 예비군 중대, 동면지서, 화순광업소, 화순 소재 4개 파출소, 해남경찰서, 완도경찰서, 하남파출소, 연초제조창, 일신방직, 호남전기, 지원동 석산 화약고, 한국화약 등 26개소  5.18.~20. 시위대가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경찰서 및 관공서에 투석하고 점거했던 광주경찰서, 신수동파출소, 충장파출소, 누문동파출소, 임동파출소, 서부경찰서, 양동파출소, 역전파출소, 학동파출소, 광주소방서, 광주시청, 방송국 등 12개소 등을 합한 38개소
보안사 「전남도경 상황일지」	49개소	강진 강진농고, 성전고교, 광산 대촌지서, 비아지서, 광주 광주세무서, 대한통운, 송일고, 연초제조창, 일신방직, 전남방직, 호남전기, 화천기공사, 나주경찰서, 나주 금성파출소, 금천지서, 남평지서, 문평지서, 반남지서, 산포지서, 영강지서, 영산지서, 나주 중앙파출소, 목포 남교동 예비군무기고, 문태고, 연동무기고, 죽교동 예비군무기고, 무안을 예비군무기고, 해제지서, 영암경찰서, 영암 군서지서, 도포지서, 서남지서, 시종지서, 신북지서, 장성 진원지서, 황룡지서, 해남경찰서, 해남 계곡지서, 옥천지서, 월송지서, 산이지서, 화순경찰서, 화순 능주지서, 다시지서, 동면지서, 동북지서, 화순 역전파출소, 한천지서, 화순광업소 무기고 등 49개소

기관별 기록물명	피탈 무기고 수	기재 내용	
경찰 기록 종합	53개소	경찰	나주서, 해남서
		예비군/경찰	영암서, 화순서
		민수용	함평서
		직장	광주세무서, 연초제조창, 화천기공사, 대한통운
		직장/청경	일신방직, 전남방직, 호남전기, 화순광업소
		경찰	금천지서, 영산포지서, 나주중앙파출소, 북면지서, 군서지서, 죽교파출소
		예비군	대서지서, 대촌지서, 문평지서, 황룡지서, 진원지서, 세지지서, 동면지서, 동북지서, 신북지서, 서남파출소, 시종지서, 도포지서, 계곡지서, 옥천지서, 월송지서, 연동파출소, 남교파출소, 무안읍내파출소, 해제지서, 화순전투중대무기고
		예비군/경찰	비아지서, 남평지서, 산포지서, 금성동파출소, 영강지서, 다시지서, 반남지서, 한천지서, 화순역전파출소, 능주지서
		교련용(모조품)	광주 송일고, 목포 문태고, 강진 성전고, 강진농고

경찰 기록에서 확인된 무기고 습격은 93개소, 무기 피탈은 53개소인데, 경찰 기록과 육군본부가 보고한 무기 피탈 무기고 수가 일치한다. 다만 경찰서 6개소, 지·파출소 38개소, 직장 8개소, 학교 1개소 등 53개소가 습격되었다는 숫자만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에 보고되었는데,<sup>334</sup> 이중 광주고등학교, 광산 하남지서, 함평 신광지서는 경찰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고 군 기록에만 존재한다.<sup>335</sup> 보안사「전남도경 상황일지」에 집계된 피습 무기

334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예비군 무기 탄약 안전관리건의, 「광주사태 교훈」

335 광주고등학교 관련 사항은 전교사 기록에만 나온다(전교사 작전처, 「상황일지」(1980), 15쪽). 광주시교육청이 1980. 5. 29. 광주시청에 제출한 「5·18광주사태 피해상황 보고」에 따르면, 광주고등학교는 유리창 108매, 담장 13M, 앰프 1대 피해만 보고하고 있다. 반면 광주송일고등학교는 총(교육용 M1소총) 6정을 보고하고 있어 광주고등학교 교련용 총은 피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광주광역시 5·18지원협력관실, 『광주사태 피해』(1980), 117-118쪽). 한편 치안본부의 계엄사 보고자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1980년 6월 치안본부의 「피탈 무기류 회수

고는 49개소이다. 이를 경찰 기록에 근거한 3개소와 비교하면, 함평경찰서, 화순 북면지서, 화순 전투중대무기고, 나주 세지지서 등 4개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336</sup>

〈표 6-2-3〉 「전남도경 상황일지」와 「경찰 기록」의 비교

관할 경찰서	전남도경 상황일지		경찰 기록 종합	
광주경찰서	광주세무서	1	좌동	1
광주 서부경찰서	호남전기, 송일고, 일신방직, 전남방직, 화천기공사, 연초제조창, 대한통운	7	좌동	7
목포경찰서	남교동, 죽교동, 연동, 문태고	4	좌동	4
영암경찰서	영암서, 군서지서, 신북지서, 도포지서, 서남파출소, 시종지서	6	좌동	6
광산경찰서	비아지서, 대촌지서	2	좌동	2
화순경찰서	화순서, 역전파출소, 능주지서, 한천지서, 동북지서, 동면지서, 화순광업소	7	화순 전투중대무기고, 북면지서 추가	9
나주경찰서	나주서, 영산지서, 금천지서, 영강지서, 중앙파출소, 금성동파출소, 남평지서, 다시지서, 반남지서, 산포지서, 문평지서	11	세지지서 추가	12
해남경찰서	해남서, 계곡지서, 옥천지서, 월송지서	4	좌동	4
장성경찰서	황룡지서, 진원지서	2	좌동	2
고흥경찰서	대서지서	1	좌동	1
무안경찰서	무안읍 예비군무기고, 해제지서	2	좌동	2

현황보고'에 따르면 '학훈용 소화기 131정'이 피탈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송일고 6정, 문태고 52정, 성전지서(성전고교) 60정, 강진경찰서(강진농고) 13정을 합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치안본부, 『피탈무기류 회수현황보고』(1980. 6. 18.); 헌병감실 수사과, 『계엄참고자료(79-'80)』(1980), 3쪽). 한편 하남지서 무기 피탈은 전교사, 합수단 보고가 1995년 서울지검 수사결과로 이어지며, 신광지서는 경찰기록에 피습 사실만 적시되어 있는데 1995년 서울지검 수사결과에는 13:00 총기 100여정, 실탄 2상자가 피탈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336 보안사 존안 자료인 「전남도경 상황일지」는 피해 일시와 피탈 내역을 각 관할 경찰서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 체포 등 수사 상황을 기재하여 놓았다. 이 기록에는 함평경찰서, 화순 북면지서, 화순 전투중대무기고, 나주 세지지서 등 4개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할 경찰서	전남도경 상황일지		경찰 기록 종합	
강진경찰서	성전고, 강진농고	2	좌동	2
함평경찰서	-	-	함평경찰서 추가 (민수용 무기 피탈 확인)	1
합계		49		53

## 나.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 시간

### 1) 계엄군의 총기 피탈 현황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이전 계엄군의 총기 분실 및 피탈 사례는 아래 <표 6-1-4>와 같이 총 7건이었다.

<표 6-2-4> 5월 21일 13:00 이전 광주지역 계엄군의 무기 분실 및 피탈 현황

일시	장소	소속	피해	회수
5. 19. 15:15	광주CBS (시위대 건물점거)	31사단 경계병	M16 1정, 실탄 15(10)발 분실 <sup>337</sup>	당일 16:20 회수 (각주 159)
5. 19. 15:30	양림다리 옆	11공수 하사 김○○	M16 1정	-
5. 19. 17:10	도청(군중 포위)	11공수 중사 최○○	M16 1정 분실 (실탄없음)	조선대에서 미소지 후 출동/잘못 신고 (각주 164)
5. 20. 20:33	광주MBC(캐비닛)	31사단 포병단 대위 이○○	권총 1정	얼마 후 찾음 (각주 165)
5. 21. 03:30	광주세무서(방화)	광주세무서 직장예비 군 무기고	카빈 17정	-
5. 21. 08:00	광주공단 입구	제185야전 공병대대	카빈 1정, M1 1정	-

337 CBS경계병의 M16 분실 당시 실탄 15발이 분실되었다는 기록이 다수인데,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은 실탄 10발 분실로 보고하고 있다(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64쪽). 1980년 5월 계엄군이 사용한 M16 소총은 실탄 20발을 장전할 수 있는 총으로 10발 혹은 15발 삽탄도 가능하다. CBS 경계 소대장(이○○)은 사병들에게 실탄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광주MBC 경계 담당 소대장(제31사단 96연대 1대대 이○○)은 5. 20. 밤 도청으로 철수하였고, 5월 21일 도청에서 헬기로 철수할 당시 계엄군에게 탄통을 전달하였다고 하였다.

일시	장소	소속	피해	회수
5. 21. 08:10	광주공단 입구	20사단 지휘용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16 4정, M60 2정<sup>338</sup></li> <li>• M60 3정<sup>339</sup></li> <li>• 수류탄 1상자(16발)<sup>340</sup></li> <li>• M60 3정, 실탄 200발, M16 4정, 45구경 권총 1정<sup>341</sup></li> </ul>	-

5월 19일은 3건이다. 첫째는 15시15분경 제31사단 96연대 1대대가 CBS 방송국을 경계하던 중 시위대의 건물점거 시도 중에 상병 김○○은 M16 1정과 실탄 15발을 분실하였다.<sup>342</sup> 이후 16시20분경 제7공수여단 35대대에 의해 구출될 당시 모두 회수하였으나<sup>343</sup> 당시 소대장은 경계병들은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sup>344</sup>

338 보안사, 「광주사태 관계 총정업무 일일주요사항(1980. 6. 11.)」(1980), 168쪽.

339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205쪽[광주소요사태(21-22호)]

340 505보안부대는 5월 21일 08:10 20사단 지휘차량 피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5월 21일 08:57 수미상의 난동자들이 군용집차 1대를 탈취, 동 집차에는 수류탄 1상자(16발) 적재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시 상황일지」(1980), 201쪽).

341 보병제20사단, 「총정작성자료보고」(1980), 4쪽(인원 및 장비피해). 당시 피탈 당한 M60 실탄에 대한 보고는 계엄사 「정보일지」와 전교사 「작전일지」, 그리고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광주소요사태(21-17호)]에 보고되고 있다. “12:15 광주교도소 앞 문화동 로타리 주유소 부근에 M16 소총을 1/4톤 차량에 거치, M60 실탄 60발 및 M1 실탄을 휴대하고 시위하며 사단 병력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면서 각목 및 유리병을 던지고 있음(출처: 31사 이대위).” 다만 계엄사 「정보일지」는 M60 실탄 30발, 전교사 「작전일지」는 M60 실탄 60발,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은 M60 실탄의 수량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5월 21일 12:15 보고된 M1 실탄은 20사단 지휘용 차량에서 M60 실탄이 피탈되기 직전 8:00 광주공단을 지나가던 제185야전 공병대대가 분실했다고 보고된 M1 1정의 실탄일 수는 있겠으나 M1 실탄 분실은 보고되지 않았다.

342 전교사, 「총정작성결과(전투상보)」(1980), 10쪽; 제1관구사령부, 「'80 1관구부대사(전교사)」(1982), 741쪽. 전교사 「작전일지」와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은 피탈된 총기와 탄약이 16:20 이상 없이 회수되었다고 보고되었다(전교사,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 149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83쪽). 보안사 [제31사 경계병 데모 군중에 대한 총기 피탈] 보고는 경계병 김○○가 M16 1정과 실탄 10발을 탈취당했다고 보고하였다(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64쪽).

343 김○○ 상병이 분실했던 소총은 방송국 수위가 민간인이 메고 가는 것을 보고 신고하여 회수되었다(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64, 83쪽). 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일지」는 “16:20 CBS에서 분실된 총과 실탄 찾음”을 보고하였다(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일지」(1980), 28쪽).

344 당시 광주CBS 경계소대장 중위 이○○(96연대 1대대)은 1995년 국방부 검찰부 조사에서 “5. 19. 15:15 광주CBS

둘째는 15시30분경 제11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2명이 양림다리 근처에서 시위대에게 구타당했는데 그중 하사 김〇〇가 M16 소총 1정을 분실하였다.<sup>345</sup>

셋째는 17시10분경 제11공수여단 63대대 중사 최〇〇가 광주 제일은행 지점(금남로 1가) 인근에서 작전 중 M16(실탄 없음)을 분실하였으나 집결지(조선대)에서부터 총을 소지하지 않고 출동한 후 분실한 것으로 착각하여 오인 신고한 것이었다.<sup>346</sup>

이상 5월 19일 작전 중 계엄군의 총기 분실 신고 건은 3건이었으나 회수된 총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총기 “분실”은 M16 소총 1정 단 한 건이었지만 회수되었다. CBS 경계병의 실탄 분실과 관련된 1980년과 1982년 기록은 작전 중에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당시 군은 대규모 시위대에 대응했던 계엄군이 총기를 “피탈”이 아닌 “분실”했던 것으로 보았다.

5월 20일은 20시33분경 1건으로 차량 시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시위대는 경찰과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며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광주MBC에 분노하여 포위함으로써 경계 중에 고립된 제31사단 병력 중 포병단 소속 대위 이〇〇가 캐비닛에 보관하던 권총 1정을 미처 소지하지 못하고 탈출하던 중 “분실”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찾았다고 하였다.<sup>347</sup>

5월 21일은 3건이다. 첫째는 03시30경 광주세무서 방화 시 세무서 직장무기고에서 실

경계병이 분실한 M16은 시위대가 소총을 빼앗아 아래로 던져버렸는데 시위대가 물러간 다음 건물 앞 불에 탄 차량에서 발견되었고, 실탄은 병사들이 개인별로 소지하지 않고 탄통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15발을 따로 잃어버린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국방부 검찰부, 『이〇〇 진술조사』(1995. 5. 11.), 서울지검 102-24(2)-(2) 31790-31791쪽). 한편 광주MBC가 경계군무 중 방화로 전소되자 도청으로 철수했던 제31사단 96연대 1대대장 이〇〇 예비역 중령도 당시 실탄은 사병에게 분배되지 않았고, 보유하고 있던 실탄 2박스 1,680발을 도청에서 철수할 때 특전사에 인계하였다고 증언하였다[5·18조사위, 『이〇〇 면담조사』(2021. 10.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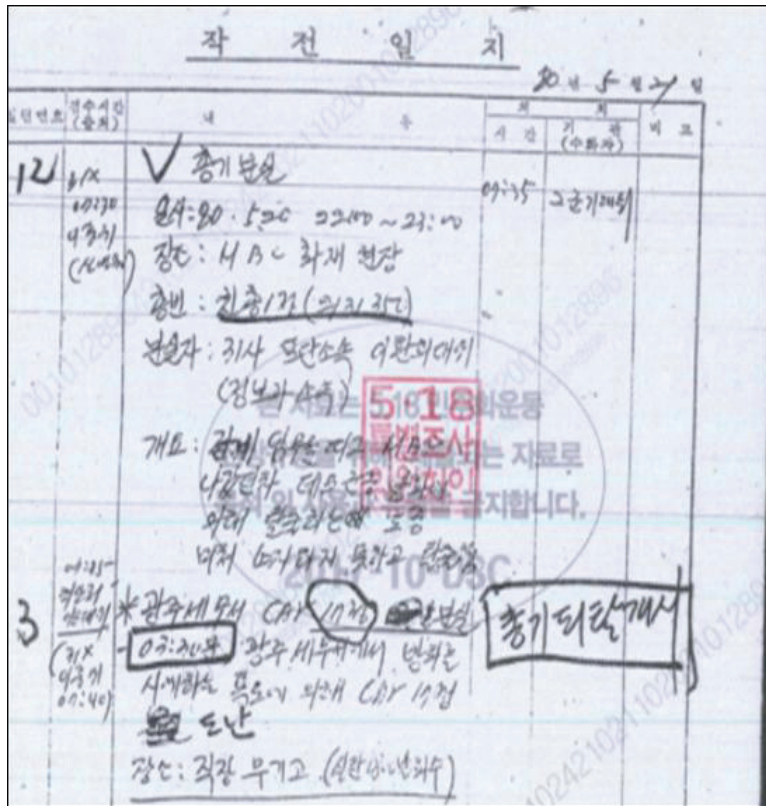
345 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일지』(1980), 34쪽(총기분실확인, 전교사관 발신 군사령관 수신); 보안사, 『광주 소요사태 관련철』(1980), 375쪽.

346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79쪽(분실 총기 확인 보고), 80쪽(계엄군 총기 분실 사고 발생)

347 전교사, 『총정작전결과(전투상보)』(1980), 10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173쪽(광주소요사태 44보); 제1관구사령부, 『'80 1관구부대사(전교사)』(1982), 744쪽.



탄과 공기가 없는 카빈 17정이 피탈되었다.<sup>348</sup> 1980년 5·18 당시 광주세무서 카빈 17정까지는 “총기 분실”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아래 <그림 6-3-1><sup>349</sup>과 같이 전교사 「작전일지」 “분실”을 “도난”으로 정정하였고, 광주세무서 직장무기고는 “총기 분실”에서 ‘도난’ 또는 ‘피탈’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그림 6-2-1> 광주MBC 계엄군 권총과 광주세무서 카빈 17정 분실

348 전교사, 「충정작전결과(전투상보)」(1980), 10쪽. 「전교사 정보일지」는 “5. 20. 03:30 방화하는 폭도에 의해 광주세무서에서 CAR 17정 분실(20일 야간[실탄 1,8000발 사전 회수 통합보관]을 보고하였다(전교사,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일지」(1980), 63쪽). 광주세무서의 잔여 총기는 광주경찰서에서 회수하였다(치안본부 감찰계, 「안〇〇 진술조서」(1980. 5. 31),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980), 23쪽). 합동참모본부 「10·26상황일지(3)」는 “5. 20. 23:00~21. 06:00 세무서에서 방화한 폭도들은 직장무기고에서 CAR 50정 중 17정을 탈취”로 보고하였다(합동참모본부, 「10·26상황일지(3)」(1980), 3쪽(일련번호 2718)). 전교사는 5. 19. 예비군 무기 탄약을 이관할 당시 총기에 대해서는 공기 및 노리쇠 제거를 지시한 바 있다(전교사, 「충정작전결과(전투상보)」(1980), 15쪽).

349 전교사, 「광주사태 시 전교사 작전일지」(1980), 191쪽.

둘째는 08시00분경 1118야공단 소속 185야전공병대대 잠정 전투제1대대는 차량에 분승하여 전교사로 철수하는 도중 화정동 입구에서 시위대의 바리케이드에 저지당해 AMB(구급차량), 1/4t 차량(지프차) 등 차량 4대와 개인장비(카빈 1정, M1소총 1정 포함)를 피탈 당하고 복귀하였다.<sup>350</sup>

셋째는 제20사단 병력은 5월 21일 04시경 송정리에 도착하였으나, 지휘용 차량은 육로로 이동 중 08시10분경 광주공단 입구에서 시위군중에 의한 피해가 있었으나 장비 피탈 보고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51</sup> 당시 보안사는 제20사단 사령부가 M16 4정, M60 2~3정과 탄약(실탄 200발) 등을 피탈 당했다고 하였으며,<sup>352</sup> 제20사단 62연대는 M60 기관총 3정 등으로 보고하였다.<sup>353</sup> 또한 동시간대 미상의 난동자들이 군용지프차 1대를 탈취하였고 동 지프차에는 수류탄 1상자(16발)가 적재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sup>354</sup>

350 제1관구사령부, 『'80 1관구부대사(전교사)』(1982), 697-698쪽. 그에 앞서 185야전공병대대 잠정전투제1대대는 5. 18. 16:25 조선대학교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22:31 복귀했다. 22:42 다시 출동하여 광주 시내 정리작업을 수행한 후 5. 19. 03:00 복귀하였다. 5. 19. 18:36 잠정대대(17/273)는 출동하여 제31사단에 집결하였고, 5. 20. 03:30 제31사단으로부터 진압 명령을 접수하고 광주 서구지역에 배치되어 20:00까지 진압업무를 수행하였다. 20:30 광주 실내체육관에 집결한 병력은 시위대와 대치하였다. 21:06 5분 대기조 병력은 버스에 분승하여 철수한 바 있다. 5월 21일 08:00 185야전공병대 잠정1대대는 대대장(중령 이○○)의 철수 지시에 따라 17/94명이 차량에 분승하여 철수 도중 화정동 입구에서 시위대의 바리케이드에 저지당했다.

351 20사단 「전투상보」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차량 14대 피탈, 인원 2명 부상, 1명 실종과 사태 발생원인(전교사의 안내병 미배치)만 적시하였다. 20사단 「총정작전상보」도 "08:10 지휘차량 육로 이동 간 광주시 공단입구 도착 시 차량 1/4톤 14대 피탈, 인원 2명 부상, 1명 실종"만 보고하였다[제20사단, 「전투상보」(1980), 22쪽; 20사단, 「총정작전상보」(1980), 4쪽(국가기록원 104-197)]. 전교사 「총정작전결과(전투상보)」도 "08:40 20사 육로 이동 지휘용 차량 14대 피탈"만 보고하였다(전교사, 「총정작전결과(전투상보)」(1980), 16쪽). 계엄사령부 「계엄상황일지」에는 5월 21일 01:10~02:10 62연대 84/1450, 20사단 본부 병력(23/96)이 용산역에서 열차로 광주로 이동하는 것만 보고되고 지휘부의 육로 이동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는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을 인용해 20사단 피탈 총기를 M60 3정만 기술하였다. 20사단 병력과 별개로 5월 21일 07:30 공단 입구에서 군중들이 출근하는 군용차량 1/4톤 4대, 2 1/2톤 1대를 탈취하였다(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182쪽[광주소요사태(21-1호)]; 제20사단, 「전투상보」(1980), 22쪽; 제1관구사령부, 『'80 1관구부대사(전교사)』(1982), 747쪽).

352 보안사, 「광주사태 관계 총정업무 일일주요사항(1980. 6. 11.)」(1980), 168쪽.

353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205쪽[광주소요사태(21-22호)]

354 505보안부대는 5월 21일 08:10 20사단 지휘차량 피해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5월 21일 08:57 수미상의 난동자들이 군용지프차 1대를 탈취, 동 지프차에는 수류탄 1상자(16발) 적재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시 상황일지」(1980), 201쪽).

도청 앞 시위대의 총기 소지에 대한 보고는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에서 5월 21일 14시05분경 도청 앞 폭도들이 소총, 엽총, 권총 일부 소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최초다.<sup>355</sup> 30여분 후에는 국민은행 앞에서 AR 1정, 카빈 30~40정 실탄을 장전하고 도청을 향하여 거치하고 있다고 하였고,<sup>356</sup> 14시55분경 시위 군중들이 나주경찰서 관할 산포지서 등 4개 지서 및 예비군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 버스 7대에 분승하여 광주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난사하고 있다는 무장 보고 또한 있었다.<sup>357</sup>

## 2) 광주·광산지역 무기고 습격

지역별 무기고 무기 피탈 시간과 수량은 치안본부 감찰계의 『전남사태 관계기록 1』(1980., 「경찰관서 피습상황」,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상황」), 전남경찰국의 「경찰 무기 탄약 피탈 개요」(1980), 경찰청 감사관실의 『중앙징계위원회 2차』(1980) 등의 경찰 기록을 종합한 것이다.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는 주로 직장예비군 무기가 피탈되었다. 광주지역 무기 피탈 관련 사실은 광주·전남 각 경찰서 상황을 취합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sup>358</sup> 광

355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213쪽[광주소요사태(21-28보)]

356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215쪽[광주소요사태(21-29보)]

357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223쪽[광주 교통수단 차단(21-34보)]. 한편 5·18 무기 피탈 현황에 보고되는 군부대 보유 LMG, 50MG 등 공용화기의 피탈과 회수에 대한 사항은 수량만 보고되고 있다. 특히 무기 탄약 피탈 및 회수현황은 예비군, 경찰, 민수용, 그리고 군으로 구분해서 보고하고 있다. 505보안대의 「광주사태 추가신고자 확인조사 결과」의 「무기탄약 피탈 및 회수 현황(1980. 6. 9 현재)」에는 군부대에서 M1 1정, 카빈 3정, M16 34정, 권총 2정, LMG 3정, 50MG 3정이 피탈되었다고 보고되었다[전남경찰국, 「무기 탄약 피탈 총계표(기관별)」,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20쪽; 505보안대, 「광주사태 추가신고자 확인조사 결과」(1980), 79쪽; 505보안대, 「광주사태 관련 기본자료」, 기무사, 『내란음모사건 수사처리 상황(수사5국)등 3건』(1980), 69쪽(기무사119-70)]. 특전사 제7공수여단은 출동 당시 CAR50 1정을 보유하고, 11공수여단은 50MG 2정을 가지고 출동하였다(특전사, 「특전사 전투상보(제7공수여단)」(1980), 32쪽(출동장비); 특전사, 「특전사 전투상보(제11공수여단)」(1980), 53쪽). 그리고 7여단과 11여단은 각각 작전 수행 중에 50MG 1정씩 분실(손실)하였다(특전사, 「특전사 전투상보」(1980), 6쪽(장비손실)).

358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28-230쪽.

주지역 직장예비군 무기고 중에서 실탄이 피탈된 곳은 전남방직(청경) 60발,<sup>359</sup> 호남전기(청경) 900발 등이다.

광주·광산 지역의 무기고 습격 및 피탈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6-1-5>와 같다.

<표 6-2-5> 광주·광산지역 무기 피탈 현황(경찰 기록 종합)

무기고(구분)	피탈 수량	시간	피탈 개요
광주세무서(직장)	17정	5.21. 03:20	
일신방직(직장)	26정	5.21. 15:40	
일신방직(청경)	30정	-	
전남방직(직장)	159정	5.21. 16:00	
전남방직(청경)	29정, 60발	-	
화천기공사(직장)	305정	5.21. 16:10	
연초제조창(직장)	101정	5.21. 16:15	
호남전기(직장)	170정	5.21. 16:30	
호남전기(청경)	10정, 900발	-	
대한통운(직장)	70정	5.21. 18:50	
광주송일교(교련용)	6정	5.21. 18:00 <sup>360</sup>	
광산 대촌지서(예비군)	36정	5.21. 15:00	
광산 비아지서(예비군)	174정	5.21. 16:40	
광산 비아지서(경찰)	5정	5.21. 15:15	
광산 하남지서 <sup>361</sup>	-	-	

359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카빈 527정, 실탄 900발이 피탈되었는데(총계), 호남전기에서 180정, 900발 외에 전남방직의 실탄 피탈은 보고되지 않았다(광주광역시 5·18지원협력관실, 『광주사태 피해』(1980), 134, 146쪽).

360 합동참모본부, 「10·26상황일지(3)」(1980), 8쪽(일련번호 2733). “5. 21. 18:00 광주 송일교 M1 60정 피탈, 무기고 방화”라고 기록하고 있다.

361 경찰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광산 하남지서의 5. 21. 13:00 차량 3대 80여 명에 의한 무기 피탈 보고가 있다(전교사 작전처, 「상황일지」(1980), 12쪽). 하남지서 무기 피탈과 관련하여 505보안부대는 13:00 칼빈 5정, 전교사 「상황일지」는 13:00 칼빈 9정 피탈을 보고하였다. 하남지서 무기 피탈 기록은 1988년 육군본부 「현안문제 관련 자료」에도 인용되고, 이후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에도 그대로 인용

### 3) 반남지서 및 남평지서 무기 피탈 시간

#### 가) 반남지서 무기 피탈 시간

반남지서는 5월 21일 15시경 총기를 지하에 매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서 뒷편 숲속에 매몰하였는데, 17시 40분경 4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광주 방면에서 온 시위대 200여 명이 매몰한 무기를 탈취하였다.<sup>362</sup> 당시 현장에 위치하였던 예비군 전투소대장은 오후에 영암 신북 방면에서 시위대가 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위대는 총으로 무기고를 개방하고 무기가 없자 숲속을 수색하여 찾았다고 진술하였다.<sup>363</sup>

1988년 청문회에서 공개될 때부터 논란이 된 보안사 존안자료인 「전남도경 상황일지」<sup>364</sup>에는 반남지서 경찰 무기 1980년 5월 21일 08시경 피탈, 남평지서 경찰 무기 5월 21일 09시경 피탈로 기록되어 있다. 반남지서와 남평지서의 경찰 무기 피탈은 각각 3정과 5정으로 적은 수치이지만, 실탄이 함께(반남 270발, 남평 367발) 피탈되었기 때문에 시위대의 선제무장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반남지서 경찰 무기 1980년 5월 21일 08시 피탈은 보안사 존안 자료인 「전남도경 상황일지」에만 나온다.<sup>365</sup> 5·18조사위는 전남도경 상황일지는 광주지방법원 판결<sup>366</sup>과 2017

되었다. 하지만 당시 하남지서 경찰관은 “광산경찰서 관내에서는 최고 오지였던 하남지서는 무기를 피탈 당한 적이 없으며, 경찰관 4명이 근무하였기 때문에 총이 9정까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남지서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시위대가 5. 22. 11:00경 하남지서를 지나 임곡 방면으로 갔을 뿐이다[전남지방경찰청, 『양○○(광주광산서 하남지서 근무) 진술조서』(2017. 8. 16.), 『홍○○(하남면 거주자) 진술조서』(2017. 8. 23.), 『5·18 관련자 면담 진술서(2017년 2차)』(2017)].

362 『박○○(나주경찰서 반남지서장) 징계이유서』(1980. 6. 14.), 치안본부, 『1980 광주사건』(1980), 31쪽.

363 『나○○(반남면 예비군 전투소대장) 진술조서』(2017. 8. 8.), 전남지방경찰청, 『5·18 관련자 면담 진술서(2017년 2차)』(2017); 5·18조사위, 『나○○ 진술 녹취록』(2021. 9. 3.)

364 보안사 존안자료인 「전남도경 상황일지」는 1988년 청문회에서 ‘시위대 선제무장설’을 주장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자료이다. 1994년 정동년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1995년 검찰수사 직전에 공개된 국군기무사에서 제출된 보안사의 존안 자료이다.

365 보안사 존안자료인 「전남도경 상황일지」는 5월 21일 08:00 나주 반남지서, 09:00 남평지서에서 무기가 피탈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가 무기 피탈을 위해 지서를 습격할 때 지리적으로 나주 끝에 있는 반남지서를 오전 8시에 습격하고, 광주에서 가까운 남평지서를 오전 9시에 습격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전남지방경찰청, 2017, 『5·18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38쪽).

366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489호 출판및배포금지가처분 결정문』(2018. 5. 14. 결정), 18-29쪽.

년 전남경찰청의 자체 조사보고서에 의해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당시 경찰이 보유하고 있지 않던 ‘경찰 장갑차’가 피탈되었다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생산기관 및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표지와 본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거나, 당시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한자 표기 방법과 다른 표기 방법이 사용된 점이나 당시 근무 경찰관의 증언 등으로 볼 때 조작된 것으로 판단하였다.<sup>367</sup>

더욱이 5·18 당시 경찰 무기 피탈을 기록한 전남경찰국의 「경찰 무기탄약 피탈개요」는 5월 21일 18시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80년 반남지서장의 치안본부 징계의결서와 반남지서 사환의 진술조서<sup>368</sup>에서 5월 21일 17시40분경 피탈되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전 반남예비군 전투소대장의 2017년 전남경찰청과 2021년 5·18조사위의 진술조사에서도 이를 재차 확인하였다.

#### 나) 남평지서 피탈 상황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이 조작된 자료라 판단한 보안사 존안자료인 「전남도경 상황일지」는 남평지서 09시경 경찰 무기 피탈, 13시30분경 예비군 무기 피탈로 구분하고 있지만, 당시 남평지서 경찰 무기는 지역예비군 무기고에 예비군 무기와 함께 보관되고 있었다.<sup>369</sup> 그리고 1980년 당시 나주경찰서 「업무처리상황」과 「경찰관서 피습사항」에서는 남평지서가 13시30분경 무기 및 탄약이 탈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sup>370</sup> 합동수사본부와 전교사 또한 남평지서 무기 피탈 시간을 각각 5월 21일 13시 30분과 19시 33분으로 보고하였

367 전남지방경찰청, 앞의 책, 2017, 38쪽.

368 전남지방경찰청, 앞의 책, 2017, 36쪽.

369 전남경찰국, 「경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경찰청 감사관실, 『중앙징계위원회 2차』(1980), 75-76쪽, 남평지서장 박○○ 역시 5·18조사위 조사에서도 무기를 통합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70 나주경찰서, 「경찰관서 피습사항」,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329쪽.



다.<sup>371</sup> 그리고 당시 전남경찰국의 ‘집단사태발생 및 조치상황’<sup>372</sup> 문서와 무기고 습격으로 기소된 김○○ 등의 재판기록이나 진술에 의하면 모두 1980년 5월 21일 13시30분 이후 무기가 피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1980년 5·18 직후 광주지방검찰청(공안과)이 작성한 「5·18 광주사태 무기 탈취 및 회수현황」에서도 나주경찰서 관할지역 9개 지서에서 13시20분부터 17시30분경까지 사이에 무기가 피탈되었고, 남평지서는 14시20분경 데모대에 의해 무기가 피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sup>373</sup>

더욱이 나주경찰서 경무과장의 징계의결서에 09시50분경 남평지서에서 무장 폭도들이 무기를 탈취하였다는 기재는 앞에서 언급한 다른 객관적인 공적 기록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나주경찰서 경무과장이 1980년 6월 5일 최초 진술서에서 ‘13시30분경 광주방면에서 시위대에 의한 남평지서 습격 보고를 13시50분경 일반전화를 받았다.’고 하였고, 나주경찰서 「업무처리상황」에도 동일한 내용이 보고되었다.<sup>37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이 경과한 1980년 6월 14일 치안본부 징계기록의 내용이 달라진 이례적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 있는 자료라 볼 수 없다.

371 합동수사본부, 「광주사태 일지」(1980), 19쪽; 전교사, 「총정작전결과」(1980), 19쪽.  
 <표 6-2-6> 남평지서 무기 피탈 관련 기록

출처	내용
합동수사본부, 「광주사태 일지」(1980), 19쪽	• 5. 21. 13:30 나주경찰서 남평지서, CAR 64정, 실탄 504발, LMG 1정, 실탄 1500발, AR 1정, 실탄 350발, M1 15정, 실탄 1500발, 수류탄 47개, 권총 1정, 실탄 7발
전교사, 「총정작전결과(전투상보)」(1980), 19쪽	• 5월 21일 19:33 나주 남평지서 기습 무기 탈취(73정)

372 1980년 당시 수기로 작성된 전남경찰국의 「집단사태발생 및 조치상황」 문서에 의하면, 5월 21일 오전 무기고 피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73 광주지방검찰청, 「5·18광주사태 무기 탈취 및 회수현황」(1980), 서울중앙지검 102-94(2) 103463쪽.

374 나주경찰서, 「김○○(나주경찰서 경무과장) 자술서」(1980. 6. 5.), 『전남사태관계기록2』(1980), 297-303쪽; 나주경찰서, 「업무처리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327쪽.



다) 금성동파출소 피탈 시간

5월 21일 11시경 금성동파출소 무기 피탈 주장은 1988년 국회청문회에서 쟁점이 되었다. 1988년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육군본부는 치안본부에 5월 21일 당시 나주 금성동파출소의 무기고 피탈 시간, 총기 및 탄약 피탈 내용 등에 대한 현황 자료를 확인을 요청하였다.<sup>375</sup> 이에 치안본부는 금성파출소 무기고 피탈 시간은 11시경이며 시위대가 예비군무기고에서 카빈 소총 650정, 실탄 39,000발을 탈취하여 광주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회신하였다.<sup>376</sup>

하지만 당시 금성동파출소를 경비했던 김○○ 경장은 경찰 무기는 5월 15일 나주경찰서로 사전에 반납하였고, 금성동파출소는 5월 21일 14시경 무장 시위대에 의해 예비군무기고가 파괴되고 일부 예비군용 무기와 실탄이 피탈되었으며, 잔여 무기는 (구)나주경찰서 창고에 긴급 대피시켰으나 16시경 재차 피탈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재판기록에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sup>377</sup> 당시 금성동파출소장인 정○○이 복귀하고 보고받은 내용도 김○○

375 육군본부, 「광주사태 당시 기록에 관한 업무 협조」(1988. 7. 15.), 합동참모본부, 『광주사태 관련 참고철[각종통계자료 2-1]』(1988)

376 치안본부, 「광주사태 당시 기록에 관한 업무 협조통보(80년 5월 광주사태 당시 자료)」(1988. 7. 30.), 합동참모본부, 『광주사태 관련 참고철[각종통계자료 2-1]』(1988). 치안본부는 당시 광주 및 전남지역 경찰이 관리하는 무기고 수와 광주사태 후 피탈 무기 회수 내용을 회신하였다. 하지만 당시 군부대에 무기 탄약 이관 현황은 1980. 5. 15.자로 본서에 집중관리 하도록 지시한 것 외에는 보존 기록이 없어 무기 탄약의 군부대 이관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1988년 국방부 「국회특위부록 I」은 '시간별 시위대/계엄군 간 주요 활동'을 전교사 작전상황일지, 전교사, 특전사, 20사단, 제31사단 전투상보를 근거로 작성했다고 하였다. 5월 21일 "11:00 나주금성동파출소 무기 피탈(카빈 650정, 카빈 실탄 39,000여발) \*치안본부/전남도경 보고자료"라고 밝히고 있다(국방부, 「국회특위부록 I」(1988), 289쪽). 육군본부가 치안본부에 기록을 요청하기 전에 작성하였던 『현안문제 관련자료』(1988. 5. 19. 발송)는 금성파출소 습격 무기탈취 시간을 5월 21일 12:00~12:20으로 정리하였다(육군본부, 『현안문제 관련자료』(1988), 32쪽). 한편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는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상황(1985. 5.)」에서 "5월 21일 09:00~12:00 나주서 금성파출소 습격 무기탈취, 총기 773정, 실탄 108,806발, 수류탄 182개" 피탈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377 나주경찰서, 「김○○(금성동파출소 근무 경장) 자술서」(1980. 6. 2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3 이○○(1)-1』(1980), 68-70쪽.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80. 5월 21일 14:30경 군GMC차량 1대와 통운 차량 2대에 분승한 100여 명이 군GMC 차량으로 무기고를 파괴하여 탈취  
 - 잔여 무기는 구 경찰서(금성동파출소 건너편) 창고로 대피시킴  
 - 16:00경 구 경찰서 창고에 대피시킨 무기 전량 피탈

경장의 진술서(자술서)와 동일하다.<sup>378</sup>

1980년 6월 14일 작성된 김○○ 경장의 치안본부 계고장에서는 5월 21일 11시30분경 금성동파출소에 보관 중이던 경찰 무기 카빈 5정이 피탈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어 기존에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지만,<sup>379</sup> 전남경찰국의 「경찰 무기 탄약 피탈 개요」경찰 무기 5정은 5월 21일 14시경 금성동파출소가 아닌 나주경찰서 피습시 피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금성동파출소 인근에 거주한 한○○·나○○는 다보사 야유회를 가던 길인 5월 21일 오전(12시 이전)에 금성동파출소 부근에서 시위대를 보았다. 시위대로부터 광주 시위 소식을 듣고 지원하기 위해 나주터미널로 가서 광주고속 버스를 탈취하였다. 영산포를 돌아 30여 명을 태우고 광주로 올라가려고 다시 나주터미널로 갔을 때 광주에서 온 시위대로부터 도청 발포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sup>380</sup>

이상에서 보듯 5월 21일 점심시간이 지난 14시경 나주터미널에 도착한 시위대는 전남도청 앞 발포 사실을 전하며 무기고 위치를 물었고, 남평지서는 5월 21일 13시30분에 무기가 피탈되었고, 14시경 12대의 차량에 분승한 시위대 850여 명이 나주경찰서에 침입하여 무기를 탈취하였다. 그 뒤 나주경찰서에서 금성동파출소로 이동한 시위대가 14시30분경 군용 GMC 차량을 후진시켜 무기고 벽을 무너뜨리고 무기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금성동파출소 무기고 습격 이후 시위대는 무기와 탄약을 구하기 위해 영강지서, 금천지

- 경찰 무기는 1980. 5. 15. 나주경찰서로 반납 조치
- 5. 22~23. 금성동파출소에서 예비군 및 경찰 무기는 한 정도 피탈되지 않음

378 5월 21일 10:00경 시위대 4명이 탄 짐차를 선두로 뒤따라 4~50명이 GMC에 분승하고 파출소 앞에 이르러 뒤따라오던 GMC가 파출소 안으로 돌진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동일 11:00경에도 GMC 1대에 4~50명이 타고 재차 들어와 파출소 기물을 파괴하고, 14:30경에 100여 명이 군용GMC 1대를 앞세우고 통운트럭 2대에 나누어 타고 무기고에 접근, GMC 차를 뒤로 돌려 수회 무기고에 돌진, 무기고가 파괴되자 무기고 3실에 보관 중이던 무기, 탄약을 지나가는 차량에 나누어 약 1시간에 걸쳐서 무기를 탈취해갔다(나주경찰서, 「피해자(정○○ 금성동파출소장) 진술조서(1980. 7. 16.),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3 박○○(1)-2』(1980), 103-108쪽).

379 「김○○(나주경찰서 금성동파출소 근무) 계고장(1980. 6. 14.), 치안본부, 『1980 광주사건』(1980), 80쪽.

380 5·18조사위, 「한○○·나○○ 진술 녹취록」(2022. 3. 3.)

서, 다시지서, 노안지서, 그리고 덕음광업소가 있는 공산 방면 등 나주 시위대의 연고와 지역 정보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 라) 영산포지서 무기 피탈 시간

치안본부 감찰계『전남사태 관계기록2』에 의하면, 영산포지서는 5월 21일 11시 약 60명이 무기 탄약과 자물쇠를 총으로 난사, 파괴하고 카빈 1정을 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sup>381</sup> 하지만 나주경찰서 「경찰관서 피습사항」과 치안본부 감찰계『전남사태 관계기록2』에는 영산포지서의 자물쇠 파괴 보고만 존재한다.<sup>382</sup> 이외의 경찰 자체 피습 통계를 살펴보면, 영산포지서의 무기 피탈 사실이 아예 없는 것도 확인된다.<sup>383</sup> 한편 전남경찰국 「경찰 무기 탄약 피탈 개요」에 따르면, 영산포지서 경찰 무기 7정은 5월 14일 20시30분 이관지시에 따라 나주경찰서 자체 무기고로 이관되어 5월 21일 14시 나주경찰서 무기와 동시에 피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영산포지서 경찰무기는 영산포지서에서 피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위에 참여하였던 이○○은 경남합동수사단에서 1980년 6월 2일 작성한 진술서(3차)에서 1980년 5월 21일 12시경 영산포 읍내에서 시위하던 데모 차량 3대에 분승한 20여 명이 총을 쏘며 지서 안으로 들어가 카빈 30정과 실탄 1상자를 탈취하였다고 했고, 6월 3일 경남합동수사단의 종합수사보고 역시 5월 21일 12시경 영산포지서에서 총기 30정과 실탄 1상자를 탈취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공판조서에서는 5월 21일 12시경 100여 명이 영산포지서에 침입하였으나 무기는 탈취하지 않았으며, 총을 든

381 치안본부, 『전남사태관계기록2』(1980), 321쪽.

382 나주경찰서, 「경찰관서 피습사항」,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329쪽.

383 치안감사 담당관실, 「광주사태 관계서류」(1985). 이 기록은 1980년 당시 경찰 생산 기록을 수집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의 후반부에 「집단사태 상황 처리부」가 있고, 그 안에 전남 도내 39개 경찰관서의 '피탈무기탄약' 총계와 피탈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영산포지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은 없고 각목으로 차체를 두드리며 다녔을 뿐이라고 하였다.<sup>384</sup>

#### 마) 화순지역 무기고 습격

수기로 작성된 경찰 기록인「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에는 1980년 5월 21일 12시30분 “화순읍 상황보고(화순경무과장 보고 사항), DM(테모) 군중 50명이 파출소 유리창을 깨뜨리고 난동 중이고, 군중 300명이 호응 중, (본국지시사항) 1. 경찰관서중 PB 경찰관 소산조치후 긴급 피난할 것 2. 경찰서에서는 PB직원 긴급동원 자체경비하되 항거하지 말고 설득할 것”이라는 보고 및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화순경찰서 「종합상황실 근무일지」에는 “10시50분 추력 3대에 무장폭도 약 110명이 카빈 및 각목으로 무장하고 경찰서 기습, 현관문을 파괴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무기 탈취와 관련하여 “13시25분 경찰서 내 집중무기고를 확인 탈취하고자 망치로 자물쇠를 파괴한 후 무기고 개방하므로서 보안계장, 수사과장이 주민 설득 일부 무기 외곽지로 긴급 대피, 주민, 예비군, 화순 JC 회원들과 편의대식 회유 작전 성공으로 많은 무기 피탈 모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무기 피탈 사실은 이 시간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sup>385</sup>

화순경찰서 「종합상황실 근무일지」 등에 시위대의 화순경찰서 습격은 10시50분, 11시05분, 11시50분, 13시25분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무기 피탈은 경찰서 길 건너 집중무기고(전투중대무기고)의 습격 시간과 같이 “5월 21일 13시52분 800명이 쇠파이프와 CAR로 시정장치 파괴, CAR 98정, M1 106정, LMG 4정, AR 4정 등을 탈취했다고 기재되어 있다.<sup>386</sup>

경찰 기록에서 확인된 화순지역 무기 피탈 현황은 <표 6-1-7>과 같은데, 화순경찰서

384 경남합동수사단, 「진술서(이○○ 3차)」(1980. 6. 2),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3 이○○-5』(1980), 134-149쪽; 경남합동수사단, 「종합수사보고」(1980. 6. 3),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3 이○○-5』(1980), 95-96쪽.

385 치안본부 감찰계, 「업무처리상황」,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195쪽.

386 앞의 「집단사태 상황 처리부」(1980), 272쪽.

관내 지·파출소 무기 피탈 당시 시위대가 총기를 소지했다고 보고된 경우는 화순경찰서, 전투중대무기고,<sup>387</sup> 그리고 동복지서이다. 5월 21일 15시30분 이후 화순지역의 시위대는 총기를 소지하였다.

〈표 6-2-7〉 화순지역 무기 피탈 현황

경찰관서/구분	예비군 무기		경찰 무기	
	피탈 수량 <sup>388</sup>	시간	피탈 수량	시간
화순경찰서 전투중대무기고	212정, 80,939발 <sup>389</sup>	5.21. 13:52	-	
동면지서	370정, 22,980발	5.21. 14:00	-	
북면지서	-	-	381발	14:00
한천지서	28정	5.21. 14:30	1정	
동복지서	46정, 9,488발	5.21. 15:30	-	
역전파출소	202정, 18,000발	5.21. 15:30 5.21. 15:40	5정, 450발	
능주지서	2정	5.21. 16:00	4정	14:00
화순광업소	64정	5.21. 15:35	2정, 3,420발	

### (1) 동면지서

동면지서 차석의 징계이유서에 따르면, 5월 21일 14시경 버스 4대에 분승한 무장시위

387 1980년 당시 화순전투중대무기고 경계근무를 섰던 방위병의 진술조서와 화순에서 무기 탈취에 가담했던 조사 받았던 시위대의 진술조서의 무기 피탈 시간은 일치하지 않는다. 5·18조사위 진술조사 결과, 전투중대무기고를 습격했던 시위대는 다른 지·파출소에서 이미 총기를 탈취하고 광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다. 따라서 화순경찰서 앞 전투중대무기고 무기 피탈 시간은 화순경찰서 종합상황실 기록보다 늦은 시간일 것이다.

388 전남경찰국, 「기관별 무기 탄약 피탈 총계표 및 장소별 피탈 현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 (1980), 220-222쪽.

389 화순경찰서 「종합상황실 근무일지」를 비롯한 모든 경찰기록은 화순경찰서 집중무기고와 경찰서 건너편에 위치한 전투예비군 무기고를 합산하여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화순경찰서 경사 심○○의 자술서는 전투예비군 무기 고에 이관해 보관하고 있던 화순광업소 직장예비군, 청경 실탄 및 호남광업소, 오산광업소, 화순군청 직장예비군 무기 실탄 41,940이 13:52에 피탈되었다고 자술하였다. 「전남도경 상황일지」와 실탄 수의 오차는 수류탄 229발이 누락 되었기 때문이다.

대 200여 명이 동면지서에 난입해 예비군 지역무기고에 보관 중인 경찰 무기 탄약 381발과 예비군 무기 370정, 실탄 22,980발 등을 탈취하였다고 되어 있다.<sup>390</sup> 동면지서가 화순 지역 지·파출소 중 이른 시간인 14시에 무기가 피탈된 이유는 시위대가 화순광업소의 다이너마이트를 구하지 못하자 인근에 있는 동면지서를 기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391</sup> 또한 5월 21일 15시경 동면지서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강○○, 김○○, 이○○의 재판기록은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의 “15시35분 시위대 동면지서 무기 탈취 후 광주 이동”이라는 보고 내용과 일치한다.<sup>392</sup>

## (2) 한천지서

화순경찰서는 한천지서 무기가 5월 21일 14시30분 피탈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한천지서장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한천지서장은 5월 21일 단독 근무하던 중 시간 미상 오전 경찰서로부터 경찰 및 예비군 무기 탄약을 군부대로 이송할 차량이 출발하였다는 지시를 받고 이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4시50분부터 15시20분까지 사이 트럭 2대에 분승한 무장 시위대 50여 명이 곡괭이 및 쇠파이프로 무기고 열쇠를 파괴하여 노리쇠가 제거된 경찰 무기 카빈 1정과 예비군 무기 28정을 탈취하였다고 되어 있다.<sup>393</sup> 그리고 참고인 고○○는 도청 앞 발포 이전 전일빌딩 앞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구하러 가는 차량에 탑

390 전남경찰국, 「경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35쪽; 「박○○(화순서 동면지서 차석) 징계이유서」(1980. 6. 14.), 치안본부, 『1980 광주사건』(1980), 46쪽.

391 5·18조사위, 「김○○ 진술 녹취록」(2022. 2. 16.)

392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통군형공광 제41호(강○○) 판결」(1980. 10. 24.),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44권(2006), 545-548쪽;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통군형공광 제42호(김○○) 판결」(1980. 10. 24.),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46권(2007), 620-622쪽; 505보안부대, 「광주사태시 상황보고」(1980), 206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 224쪽[광주 소요사태(21-18보, 35보)]

393 「김○○(화순경찰서 한천지서장) 징계의결서」(1980. 6. 14.), 치안본부, 『1980 광주사건』(1980), 44쪽; 화순경찰서,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236쪽.

승해 화순역에 가서 문의하자, 한천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가는 도중 한천지서를 발견하고 무기를 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화순읍에서 멀리 떨어진 한천지서가 5월 21일 14시30분에 피탈된 이유를 설명해준다.<sup>394</sup>

### (3) 화순광업소

화순경찰서 기록에 따르면 5월 21일 13시00분부터 14시까지 버스, 트럭 6대에 분승한 무장 시위대 약 700여 명이 화순광업소에 침입하여 쇠파이프로 무기고 열쇠를 파괴하고 직장 무기 64정, 청경 무기 2정, 3,420발을 탈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sup>395</sup> 전남경찰국도 피탈 시간 기재없이 화순광업소에서 예비군 무기 64정, 경찰 무기 2정, 실탄 3,420발이 피탈되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화순경찰서 경무계장 자술서에 따르면, 화순광업소 직장예비군 무기 탄약 전량이 1980년 5월 2일 화순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한다.<sup>396</sup>

그런데 화순광업소 무기 피탈 시간은 화순경찰서의 보고 외에는 1980년 전교사, 505보안부대, 보안사 보고, 1988년 육군본부, 그리고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의 수사결과까지 5월 21일 15시35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교사 작전처 「상황일지」는 5월 21일 15시35분 카빈 1,108정, 실탄 17,760발 피탈로 보고하였는데, 505보안대 「광주사태시 상황일지」 및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과 내용이 같다. 이러한 내용은 『계업사』(1982)와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수사결과로 이어지고 있다.<sup>397</sup> 다만 안기부에서 작성한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1985.5.)」은 피탈 수량을 화순광업소

394 5·18조사위, 「고OO 진술 녹취록」(2022. 8. 3.)

395 화순경찰서,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236쪽; 전남경찰국, 「장소별 피탈 현황」,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21-224쪽.

396 전남경찰국, 「기관별 무기 탄약 피탈 총계표 및 장소별 피탈 현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20-222쪽.

397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시 상황보고」(1980), 206쪽;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224쪽[광주소요사태(21-18보, 35보)]; 전교사 작전처, 「상황일지」(1980), 13쪽.



카빈 66정, 실탄 3,420발과 제라틴 폭약 2,925(13상자), 도화선 6,000m로 정확히 정리하고 있다.<sup>398</sup>

## 다. 기타 지역 무기고 습격

### 1) 영암 지역

영암경찰서의 「피해상황(80.5.18사태) 일지」에 따르면, 영암에는 5월 21일 13시경 신북면에 버스 2대와 화물차 1대에 분승한 시위대 130여 명이 각목과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였는데, 시위대가 영암읍에 도착한 시간은 13시10분, 신북면은 13시50분 도착, 시종지서는 14시 도착, 서남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은 14시30분 등이었다.<sup>399</sup> 시위대가 각각의 지역에 도착한 시간은 나주에서 영암으로 진입하는 13번 도로에 인접하는 순서이다.

영암지역에서 5월 21일 습격된 무기고 대부분은 나주-영암-해남, 강진으로 연결된 도로 인근에 있는 것이 특징이며, 시위대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인근 지·파출소를 습격한 것으로 보인다. 영암지역에서 무기가 피탈된 지·파출소의 지리적 위치가 이상의 사실을 확인해 준다.

다음은 경찰 기록에서 확인된 영암과 인접한 강진지역 무기 피탈 현황<sup>400</sup>이다.

398 안기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1985. 5.)」(1985), 58쪽.

399 영암경찰서, 「피해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366-381쪽; 나주경찰서, 「나○○(서남파출소장) 진술조서」(1980. 7. 2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1 김○○(1)-1』(1980), 47쪽.

400 영암지역 무기 피탈표는 다음의 기록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영암경찰서, 「피해상황(80. 5. 18사태)」,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367-382쪽; 전남경찰국,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34쪽; 전남경찰국, 「무기 탄약 피탈 총계표 및 장소별 피탈현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220-222쪽.

〈표 6-2-8〉 영암·강진지역 무기 피탈 현황

경찰관서(무기 구분)	피탈 수량	시간
신북지서(예비군) <sup>401</sup>	119정	5. 21. 14:30
영암경찰서(예비군)	30정	5. 21. 16:30
영암경찰서(경찰, 예비군) <sup>402</sup>	42정	5. 21. 16:30
군서지서(경찰)	1정, 20발	5. 21. 21:50
시중지서(예비군) <sup>403</sup>	328 정	5. 22. 13:00/19:00, 5. 23. 07:00
도포지서(예비군) <sup>404</sup>	23,330발	5. 23. 08:30 <sup>405</sup>

401 영암지역 최초의 무기 피탈은 나주에서 영암으로 진입하는 1번 국도상에 있는 신북지서였다. 신북지서장은 영암경찰서의 이관지시를 받고 기다리던 중 14:00경 자체적으로 땅에 묻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5.21. 14:30 버스 2대에 분승한 시위대 160여 명은 방위병이 총을 땅에 묻은 사실을 알려주어 무기 119정을 탈취하였다. 5·18조사위 조사에서 한○○은 나주 금성동파출소 무기탈취 현장에서 일부 시위대가 신북지서에도 무기가 있다고 해서 신북지서에 가게 되었는데 경찰관은 없고 방위병이 지키고 있었다고 하였다. 한○○가 총으로 열쇠를 파괴했는데 무기고에는 총만 있고 실탄은 없었다고 하였다. 당시 차량은 한○○ 일행이 타고 간 버스 한 대만 있었고 탑승한 30여 명이 2~3장씩 차에 싣고 나머지는 방위병에게 지키게 하고 나주터미널에 왔다고 진술하였다[5·18조사위, 『한○○ 진술 녹취록』(2022. 3. 3.)]. 이 진술에 따르면 한○○ 일행이 다녀간 이후 신북지서는 무기를 땅에 묻었고 다른 시위대에 의해 마저 피탈된 것이다.

402 5. 21. 16:30 차량 15대에 분승한 500여 명이 영암경찰서에 침입하여 경찰 무기 42정을 탈취하였다. 영암경찰서는 경찰 무기 탄약을 5. 21. 강진 703전경대로 대피시켰으나 총기는 시간이 없어 대피시키지 못했다(전남경찰국, 『경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경찰청 감사관실, 『중앙징계위원회 2차』(1980), 73쪽). 영암경찰서 경무과장은 5. 21. 16:30 데모대원 약 500명이 경찰서를 침입할 당시 시위대가 총으로 무장하지 않았다고 자술서에 진술하였다(영암경찰서, 『변○○(영암경찰서 경무과장) 자술서』(1980. 6. 5.),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353쪽). 영암경찰서에서 피탈된 예비군 무기는 서남파출소 예비군 무기이다. 서남파출소는 영암경찰서 『피해상황(80. 5·18사태)』에는 기록이 없고, 전남경찰국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개요』에는 5. 21. 16:30 500명이 침입해 영암경찰서 경내에서 피탈되었다고 나온다(영암경찰서, 『피해상황(80. 5. 18사태)』,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368쪽; 『민○○(영암경찰서 신북지서장) 계고장』(1980. 6. 14.), 치안본부, 『1980 광주사건』(1980), 83쪽; 전남경찰국,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34쪽).

403 시중지서는 영암경찰서 『피해상황(80. 5·18사태)』에는 5. 21. 14:00~5. 22. 19:00까지 3회에 걸쳐 279정이 피탈되었다고 나오고, 전남경찰국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개요』에는 5. 22. 13:00 20여 명이 지서 뒷산에서 탈취해 갔다고 하였다(영암경찰서, 『피해상황(80. 5. 18사태)』,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368쪽; 전남경찰국,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34쪽). 강진군청 『광주사태 관계3』은 당시 강진경찰서가 보유한 예비군 무기와 경찰 무기를 군부대에 이관할 때 학교 교련용 무기 보관을 의뢰했으나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군부대에 보관할 수 없다고 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강진군청, 『광주사태 관계3』(1980. 8. 20.)].

404 도포지서는 지서장이 탄약을 땅에 묻었다가 안전지대로 옮기던 중 5. 21. 15:20 40여 명의 시위대에 의해 노상에서 예비군 무기 탄약 23,300발이 피탈되었다.

405 영암경찰서 『무기 탄약 피탈 상황』표에는 5. 23. 08:30 피탈로 기록하고 있으나, 전남경찰국에서 정리한 기록에

경찰관서(무기 구분)	피탈 수량	시간
성전지서(성전고교 교련용)	60정	5.21. 15:30
강진경찰서(강진농고 교련용) <sup>406</sup>	25정	5.21. 18:30

## 2) 해남 지역

해남 지역에 최초로 시위대 진입이 보고된 시간은 5월 21일 13시30분 이었다. 트럭 2대를 타고 온 시위대는 해남경찰서 정문 광장에 정차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광주의 상황을 전달하였다.<sup>407</sup> 해남경찰서 「폭도침입상황」을 보면 5월 21일 13시30분 나주 방면에서 온 타이탄 트럭에 분승한 시위대 50명이 시위하다가 17시경 광주 방면으로 철수하였다고 되어 있어서,<sup>408</sup> 5월 21일 오전에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해남에서 시내 시위만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월 21일 해남에서 무기가 피탈된 계곡지서, 옥천지서는 나주, 영암을 경유 해남으로 진입하는 13번 도로와 인접한 곳이었다.

다음은 경찰 기록에서 확인된 해남과 인접한 완도 지역 무기 피탈 현황이다.

.....

는 5. 21. 15:20 안전지대로 옮기던 중 피탈되었다고 한다(영암경찰서, 「무기 탄약 피탈 상황」,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410쪽; 전남경찰국,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34쪽).

406 강진경찰서 「폭도침입상황」에 따르면, 5. 21. 18:30 버스 3대에 분승한 180명의 시위대가 강진경찰서를 기습하여 강진농고 교련용 M1 13정과 엽총 및 공기총 12정을 탈취하였고, 이에 앞서 5. 21. 15:30 성전지서에서 성전고교 교련용 M1 60정이 피탈되었다(강진경찰서, 「폭도침입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138쪽). 강진지역의 무기 피탈은 5. 21. 하루에 한정되며 실탄이 없는 교련용 총기였다.

407 해남경찰서, 「구〇〇(해남경찰서 경비과장) 자술서」(1980. 6),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257-260쪽.

408 해남경찰서, 「폭도침입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78쪽.

〈표 6-2-9〉 해남·완도 지역 무기 피탈 현황

경찰관서(무기 구분)	피탈 수량 <sup>409</sup>	시간
계곡지서(지역예비군) <sup>410</sup>	47발 (수류탄 1상자)	5.21. 16:00
옥천지서(지역예비군) <sup>411</sup>	218정	5.21. 17:30
월송지서(지역예비군) <sup>412</sup>	58정	5.22. 01:00
해남경찰서 <sup>413</sup> (집중무기고)	204정	5.22. 10:00
완도 지역 <sup>414</sup>	-	-

409 전남경찰국, 「무기 탄약 피탈 총계표 및 장소별 피탈 현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20-222쪽.

410 해남군 계곡면은 영암군 및 강진군을 면하고 있어 13번 도로가 해남으로 진입하는 지역이다. 계곡지서에는 5.21. 16:00에 버스 10대, 트럭 2대에 분승한 시위대 500여 명이 도착하였다. 해남 주둔 군부대 차량이 계곡지서에서 예비군용 탄약을 적재하고 있던 시점에 시위대가 당도하여 미처 심지 못한 수류탄 1박스(47발)가 피탈되었다(해남경찰서, 「경찰관서 피습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185쪽; 「김○○(계곡지서) 자술서」(1980. 6. 5),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66쪽; 해남경찰서, 「해남경찰서 무기피탈 및 조치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274쪽).

411 옥천지서 무기 피탈 시간은 5. 21. 17:30으로 시위대가 계곡지서를 경유해 도착한 시간이다. 예컨대 성전지서에서 교련용 M1 60여 정을 탈취했던 권○○, 이○○ 등 40여 명이 17:00경 계곡지서 및 18:00경 옥천지서의 무기를 탈취한 사실은 시위대가 지방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인근에 소재한 지·파출소를 습격했음을 보여준다(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통군형공 제197호 판결(양○○, 이○○)」(1980. 12. 5),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47권(2007), 17쪽). 5·18조사위 조사에서 양○○은 영암에서 합류해 강진 성전지서, 해남 계곡지서, 옥천지서 무기고를 순차적으로 습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5·18조사위, 「양○○ 진술 녹취록」(2022. 7. 5)).

412 5. 22. 02:40경 화물트럭 2대 100여 명은 월송지서에 침입하여 무기고로부터 3미터 떨어진 지서장 사택 안방에 은닉해둔 총기 58정과 카빈 탄창 90개를 탈취하였다(해남경찰서, 「최○○(해남경찰서 월송지서장) 진술조서」(1980. 5. 31),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2 박○○-2』(1980), 64쪽). 월송지서에 침입한 시위대는 해남 시위대였다. 김○○, 최○○ 등은 5. 21. 16:00부터 광주, 나주 등지에서 온 시위대 300여 명이 해남에 와서 시위하자 이에 합류하였다(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판조서(박○○)」(1980. 9. 10.),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2 박○○-1』(1980), 60-74쪽).

413 해남경찰서 근무일지에 따르면, 5. 22. 10:00에 버스 6대, 트럭 10대에 분승한 시위대 500명이 공포탄을 발사하면서 해남경찰서 경내로 진입하여 8톤 트럭이 집중무기고 철문을 들이받아 파괴하고 이관하지 못한 총기 M1 204정을 탈취하였다(해남경찰서, 「근무일지」(1980. 5. 22.),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293쪽). 또 다른 경찰기록도 5. 22. 10:00 전후로 3회에 걸쳐 차량 15대 500여 명이 침입하였다고 기록하였다(「김○○(해남경찰서 근무과장) 고고장」(1980. 6. 15.), 치안본부, 『1980 광주사건』(1980), 112쪽). 하지만 해남경찰서 무기고 문을 트럭으로 밀어 열었던 박○○과 김○○, 박○○, 최○○, 최○○의 법무감실 기록은 해남경찰서 무기 피탈 시간이 5. 22. 15:30으로 조사되었다. 해남경찰서 무기 피탈 관련 조사는 현장검증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414 완도지역에 시위대가 도착한 시간은 5. 21. 밤이다. 해남에서 5. 21. 저녁에 출발한 시위대였다. 완도경찰서에는 5. 21. 23:40경 버스 4대, 화물트럭 3대에 분승한 약 400여 명의 비무장 시위대가 침입하였다. 5. 22. 04:30경 버스 5대에 분승한 시위대 200명이 완도읍파출소에 들어와 근무직원에게 무기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 3) 목포 지역

목포경찰서 관내로 시위대가 진입한 시간은 5월 21일 14시10분 이었다. 시내 중심가 목포역 광장에 군중이 집결하기 시작해 14시35분 약 10,000여 명이 운집하였다고 한다. 목포경찰서 「치안일지」는 5월 21일 14시05분 버스 7대에 분승한 200여 명이 목포 시내에서 시위하였고, 주민 약 30,000여 명이 호응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sup>415</sup> 제31사단 93연대는 시위대가 5월 21일 14시05분 목포 시내로 진입하였다고 목포경찰서에 통보하였다. 목포역 광장에는 14시35분에는 주민 10,000여 명이, 15시에는 20,000여 명이 집결하였으며, 15시20분 버스 5대가 광장에 정차해 주민 30,000여 명이 집결하였다고 한다. 광주에서 온 차량 4대와 지역민이 가세해 탈취한 태원여객 시내버스 2대가 차량 시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sup>416</sup>

목포지역은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가 언제 돌아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역 지도층과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였다. 목포에서는 경찰 무기와 예비군 무기 탄약 전량이 소개되어 예비군용 총기 267정, 교련용 총기 52정이 피탈되었을 뿐 무기고에서 실탄은 피탈되지 않았다. 목포경찰서는 피복 창고가 습격되었을 뿐이다.<sup>417</sup>

목포·무안 지역 무기 피탈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하자 돌아갔다. 5. 22. 23:47경 완도경찰서에 버스 5대에 분승한 200명이 침입해 무기를 요구하였으나 없다고 하자 되돌아갔다(전남경찰국, 「경찰관서 피습상황」,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193-194쪽). 이상 시위대의 무기 피습 결과 완도지역에서는 무기 피탈 피해는 없었다.

415 목포경찰서, 「치안일지(5. 21.~24.)」,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4-9쪽; 「임○○ 진술서(목포경찰서 경비과장)」(1980. 6. 4.), 경찰청 감사관실, 『1980 중앙징계위원회 3차』(1980), 82쪽.

416 목포경찰서, 「치안일지(5. 21.~24.)」,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4-9쪽; 목포경찰서, 「답변서(목포경찰서 경비과장)」, 경찰청 감사관실, 『1980 중앙징계위원회 3차』(1980), 87-97쪽. 보안사는 14:30 목포역 앞에 시위대 200명이 도착해 시민귀기를 유도하는 시위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214쪽[광주소요사태(21-29보)]).

417 제1관구사령부, 『'80 1관구부대사(전교사)』(1982), 752쪽.

〈표 6-2-10〉 목포·무안 지역 무기 피탈 현황

경찰관서(무기 구분)	피탈 수량	시간
목포 남교파출소(지역) <sup>418</sup>	23정	5.22. 02:00-06:00(09:00)
목포 연동파출소(지역) <sup>419</sup>	232정(244)	5.22. 12:55(09:00)
목포 죽교파출소(경찰) <sup>420</sup>	12정	5.22. 13:55(09:00경)
목포문태고등학교(교련)	52정	5.22. 02:00-06:00(17:00)
무안 <sup>421</sup> 읍내파출소(지역)	14,669발	5.22. 10:00

418 남교동파출소는 5. 21. 15:00 경찰 무기 6정과 실탄 540발을 목포경찰서에 이관하였으나 예비군 무기는 소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서 300정 가운데 23정이 피탈되었다(목포경찰서, 「경위 이○○ 진술서」(1980. 6. 5), 경찰청 감사관실, 『1980 중앙징계위원회 3차』(1980), 132-134쪽).

419 연동파출소 예비군 지역무기고는 5. 22. 09:30 232정이 피탈되었다. 증언기록은 5.21. 밤 무장 청년 10여 명이 연동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며 들어가 대기시켜 놓은 4.5톤 트럭에 총을 가득 싣고 갔다는 목격 진술이 있다(5·18연구소 증언자료, 임○○). 목포경찰서의 '경찰관서 피해상황'을 보면 5. 21. 22:00 타이탄 트럭에 탑승한 20여 명의 데모 군중이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전교사 '총정 작전보고'는 연동파출소 무기 피탈 시간을 5. 22. 14:58로 기록하고 있다. 최○○은 5. 22. 10:00 목포역 광장에서 차량에 승차하여 시위에 참여하는 중에 5. 22. 19:00경 불타버린 연동파출소 무기고에서 M1 1정을 들고나온 바 있다(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공소장(최○○)」(1980. 9. 6.),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7 최○○-1』(1980), 2쪽).

420 죽교파출소 예비군 지역무기고는 5. 22. 09:00경 12정이 피탈되었다(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통군형광 제58호(김○○) 판결」(1980. 10. 24.),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44권(2006), 647-650쪽). 판결의 이유는 김○○이 목포에서 5. 21. 15:30부터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5. 22. 10:30경 죽교동파출소에서 예비군 무기를 탈취하였다는 것이다. 김○○ 공소장은 예비군 무기고 시정장치를 총으로 3발 쏘고 각 목으로 강타하였다고 하였으나(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공소장(김○○)」(1980. 8. 20.),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9 김○○(1)-2』(1980), 152쪽), 공판 당시 김○○은 죽교파출소에 갈 때 총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정장치를 각목으로 쳤으며, 총은 40대 남성이 건네주어서 받았다고 하였다(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공판조서(김○○)」(1980. 9. 15.),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9 김○○(1)-2』(1980), 164쪽).

• 무안에 거주하던 윤○○, 이○○은 5. 22. 14:00경 총기, 각목을 휴대한 시위대 30여 명과 현경지서에 침입해 집기를 파괴하였고, 윤○○, 이○○, 김○○, 이○○은 15:00경 해제지서에 이르러 M1 소총 2발을 발사하여 무기고 열쇠를 파괴한 후 M1 10정, 카빈 소총 20정을 탈취하였다. 이들이 15:40 망운지서, 16:00 운남지서에도 침입하였으나 총기 피탈은 없었다(전교사 보통군법회의, 「공소장(윤○○·이○○·김○○·이○○)」(1980. 8. 18.), 육군본부 법무실, 『육군9-3 윤○○-1』(1980), 14쪽).

421 무안지역 해제지서, 무안읍파출소 무기 피탈 내역은 전남경찰국이 정리한 「경찰관서 피습상황」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전남경찰국 「장소별 피탈 현황」에는 무기 피탈 수량만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광주지방경찰청의 「광주5·18사태일지」의 1980. 5. 22.~5. 28.까지 총기류 탈취 및 회수상황에서 해제지서, 읍내파출소 무기 피탈 일시, 종별, 수량, 회수현황이 정리되어 있을 뿐이다. 시위대가 무안읍파출소와 해제지서에 침입한 시간은 5. 22. 10:00, 15:00이다(전남경찰국, 「장소별 피탈 현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24쪽; 광주지방경찰청, 「광주5·18사태일지」(1980), 112쪽). 하지만 무안경찰서 경비과장은 1980년 당시 무안경찰서에서 무기는 피탈되지 않았다고 2005년 전남지방경찰청 조사에서 진술하였다(전남지방경찰청, 「박○○ 진술조서」(2005. 7. 9.), 『5·18관련자 면담진술서』(2005)).

경찰관서(무기 구분)	피탈 수량	시간
무안 해제지서(지역)	30정	5.22. 15:00

#### 4) 순천·담양·장성 지역

순천 지역에 시위대가 진입했다는 경찰 기록은 없으며,<sup>422</sup> 고흥 지역에서 유일하게 무기가 피탈된 곳은 대서지서이다.<sup>423</sup>

담양에는 5월 20일 23시경 시위대가 구속 학생 석방을 위해 담양경찰서에 항의 방문한 사실 이외에 5월 21일 15시30분경 200여 명의 시위대가 담양경찰서 현관문을 파손했다는 재판기록이 있을 뿐 총기 피탈 피해는 없었다.<sup>424</sup>

장성에서는 “5월 21일 14시22분 장성 사거리에서 머리에 띠를 두른 학생 30~40명이 시위하였다.”는 보고가 있고,<sup>425</sup> 진원지서, 황룡지서가 습격되었다. 아래 <표 6-1-11>은 고흥·장성지역 무기 피탈 현황이다.

422 전남경찰국이 정리한 「경찰관서 피습상황」과 「장소별 피탈 현황」에도 순천지역 무기 피탈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5. 21. 저녁 화순지역 청년들이 무장을 위해 화순지역 지서와 순천 송광지서를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무기 탄약을 탈취하지는 못하였다.

423 전남경찰국의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개요」에 따르면 5. 22. 05:10 16명의 무장 시위대가 공포탄을 쏘면서 대서지서를 습격해 방위병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 1정을 탈취하였다. 시위대는 경찰서를 점거하지는 않았다.

424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80고군형공 제119호 외 6건 판결(조〇〇)」(1980. 10. 25.),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46권(2007), 205쪽. 담양경찰서가 광주지방검찰청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980. 5. 21. 01:30경 차량 2대(2.5톤, 5톤)에 분승한 시위대 50여 명은 계엄철폐 등을 외치며 시가지를 왕복한 후 경찰서 정문에서 연행 학생이 있느냐고 묻고 광주로 철수하였다. 또 5. 21. 11:00경 20여 명이 군트럭을 타고 읍내에서 주민을 선동하다 광주로 철수하였으나, 15:30경에는 차량 6대에 분승한 100여 명이 담양경찰서와 중앙파출소 출입문 등 집기를 파괴하였다. 16:00경에는 차량 15대가량이 읍내를 왕복하며 주민들을 선동하다 호응이 없자 광주로 철수하는 등 담양지역에서는 인명, 총기 피탈 피해는 없었다(담양경찰서, 「광주소요사태에 따른 피해 상황보고」, 광주지방검찰청(공안과), 「5·18광주사태 무기탈취 및 회수현황」(1980), 서울중앙지검 102-94(2) 103481쪽). 「기소자 총명부」 ‘죄명·범죄 개요’에 조〇〇(24세, 세차장종업원)가 ‘80. 5.21.부터 동월 25.까지 불법시위 및 담양경찰서 침입, 손괴, 폭도 수송 총기 소지 경계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었다(「기소자 총명부(총 404명)」, 기무사 201-47).

425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214-215쪽[광주소요사태(21-29보)]



〈표 6-2-11〉 고흥·장성 지역 무기 피탈 현황

경찰관서(무기 구분)	피탈 수량	시간
고흥 대서지서	1정	5.22. 05:10
장성 진원지서(예비군) <sup>426</sup>	51정	5.21. 16:40
장성 황룡지서(예비군) <sup>427</sup>	13정	5.21. 16:40
담양	해당없음	-
순천	해당없음	-

## 4. 시위대의 무기 탈취 방식

### 가. 기록으로 확인한 시위대의 무기 탈취 방식

전남 일원에 진출한 시위대가 사전에 무기고 위치를 확인하고, 노련하고 전문적인 수법으로 총기를 탈취했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전남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무기 피탈 관련 기록에서 무기 피탈 시간, 무기고 습격 시위대 인원, 무기고 파괴 방식을 확인하였다.<sup>428</sup>

426 진원지서는 5. 21. 16:40 버스 1대를 타고 온 50명이 침입하였다. 시위대는 무기고 시정장치를 총으로 파괴한 후 예비군 무기 51정을 탈취하였다(『김○○(장성경찰서 진원지서장) 계고장』(1980. 6. 14.), 치안본부, 『1980 광주사건』(1980), 91쪽).

427 황룡지서는 5. 21. 17:50 무기고에서 노리쇠 문치를 제거하는 도중에 6명의 시위대가 침입하여 예비군 무기 13정이 피탈되었다(전남경찰국,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33쪽; 치안본부, 『차○○(장성경찰서 황룡지서장) 계고장』(1980. 6. 14.), 『1980 광주사건』(1980), 90쪽).

428 전남경찰국 기록과 일선 경찰서의 기록에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 기록을 인용하였다. 전남경찰국,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228-237쪽; 전남경찰국, 『경찰 무기 탄약 피탈 개요』, 경찰청 감사관실, 『중앙징계위원회 2차』(1980), 73-76쪽; 전남경찰국, 『경찰관서 피습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1』(1980), 171-198쪽; 광주경찰서, 『상황처리기록부』,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21-68쪽; 나주경찰서, 『경찰관서 피습사항』,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329-332쪽; 나주경찰서,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상황』, 『전남사태관계기록2』(1980), 320-323쪽; 화순경찰서, 『종합상황실 근무일지』,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191-196쪽; 화순경찰서, 『예비군 무기 탄약 피탈 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236쪽; 영암경찰서, 『사태일지』,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363-382쪽; 해남경찰서, 『무기피탈 및 조치사항』,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273-276쪽; 해남경찰서, 『폭도침입상황』,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278-283쪽; 해남경찰서, 『근무일지』,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285-287쪽; 목포경찰서,

시위대가 지역에 도착한 시간과 해당 무기고에 운집한 시위대 규모를 보면 시위대의 이동 경로를 유추할 수 있으며, 무기 탈취 방식도 차이가 있었다. 총기 발사로 자물쇠 파괴 17회, 망치·쇠파이프 등 둔기로 자물쇠 파괴 17회,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의 은닉 또는 노출된 무기 탈취 8회, 차량으로 벽이나 문을 파괴 4회, 습득한 열쇠로 자물쇠 개방 1회, 정확한 파괴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5회이다.

또 다른 특징은 은밀히 침투한 후 탈취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시위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뤄졌는데, 전체 53회의 무기고 피탈 중 100명 이상의 다수 시위대가 운집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는 31회에 이르고 있다.

무기고 파괴 방법 중 가장 많은 것은 총기를 발사하여 자물쇠를 파괴한 경우로 무장한 시위대에서 보인 양상이며, 나주 영강지서, 다시지서, 문평지서, 반남지서 등에 진입했던 시위대가 대표적이다. 또한 둔기로 자물쇠를 파괴한 경우도 많았는데, 사용한 둔기로는 쇠파이프, 망치, 몽둥이, 쇠몽치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과 무장한 시위대의 소총 개머리판도 사용되었으며,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1번 국도의 초입에 위치한 남평지서와 산포지서에 진입한 비무장 시위대는 망치, 쇠몽치 등 둔기를 이용해 무기고 자물쇠를 파괴하였다. 화순의 경우 지리적으로 광주에서 진입하면 가장 먼 동북지서와 능주지서를 제외한 동면지서, 북면지서, 한천지서, 역전파출소, 화순광업소 예비군무기고에 진입했던 시위대는 비무장 상태였다.<sup>429</sup>

「예비군 무기 피탈 사항」, 경찰청 감사관실, 『1980. 중앙징계위원회 3차』(1980), 100쪽; 목포경찰서, 「치안일지」, 경찰청 감사관실, 『1980 중앙징계위원회 3차』(1980), 167-172쪽; 목포경찰서, 「목포경찰서 피습상황」, 경찰청 감사관실, 『1980 중앙징계위원회 3차』(1980), 173쪽; 목포경찰서, 「경찰관서 피해상황」, 경찰청 감사관실, 『1980 중앙징계위원회 3차』(1980), 175-176쪽; 무안경찰서, 「상황일지」,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433-444쪽.

429 5. 21. 16:00 무장시위대가 진입한 능주지서보다 더 안쪽에 위치한 한천지서는 5. 21. 14:30 비무장 시위대에 의해 무기가 피탈되었다. 5·18조사위 조사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를 찾던 시위대가 화순역에 가 문의했을 때 한천면으로 가라고 했던 화순역 관계자는 한천면에 호남탄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르쳐준 것이었다. 한천지서에서 무기를 탈취했다는 참고인(고○○)은 능주를 지나 한천면에 들어서자 지서가 있어 무기를 탈취하였다고 진술해 한천지서 피탈 시간을 확인해준다.

세 번째 방법으로 시위대는 무기고를 파괴하지 않고 은닉 또는 노출된 무기를 탈취하기도 하였다. 5월 21일 무기를 소산한 지·파출소의 경우 무기고 문을 열어두어 시위대가 왔을 때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월 21일 17시 40분경 나주 반남지서에 진입한 무장 시위대는 지서 주위를 수색하여 뒷산에서 무기를 발견하고 탈취하였다. 5월 22일 15시 10분 고흥 대서지서에서 방위병이 소지한 총기 1정 실탄 20발이 피탈되었다. 5월 23일 08시 30분 도포지서 예비군 무기 역시 안전지대로 옮기던 중에 피탈되었다.

그 다음은 차량으로 무기고 벽이나 문을 직접 파괴한 경우로 나주경찰서와 뒤이어 피탈된 금성동파출소의 무기를 탈취한 시위대 역시 비무장 상태였는데,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리적 특성상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였고 차량도 많았으며, 차량이 회전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여 파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월 21일 16시 30분 호남전기는 경비원이 열쇠를 내어주어 자물쇠를 개방 후 탈취했으며, 5월 21일 강진 성전지서 등 무기고 파괴 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5회가 있었다.

#### 나. 전남도청 지하 8톤 분량 군용 TNT 설치 여부

시위대는 계엄군에 대항할 폭약을 얻기 위해 폭발물을 취급하는 곳을 찾게 되는데 1980년 광주·전남지역에서 폭약을 취급하는 곳은 탄광과 폭약 제조업체의 화약보관소였다. 당시 광주시에는 용두동 한국화약 광주화약고와 지원동 석산화약고가 있었고, 화순에는 호남 최대 광업소인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민영탄광으로 호남광업소, 오산광업소, 호남탄좌가 있었으며, 화순읍 서태리에 있던 역청공장(아스콘공장)도 다이너마이트를 취급하였다. 또한 나주 공산면에는 덕음광산이 있었다.<sup>430</sup>

430 덕음광산은 5. 22. 17:00경 초유폭약(질산암모늄, ANFO) 2상자(50Kg)가 피탈되었다[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 「80계엄보군형공 제182호 판결(이○○)」(1980. 12. 19.)]. 덕음광산의 초유폭약 2상자는 공산면 청년회장에 의해 곧바로 반납되었다[나주경찰서, 「안○○(덕음광업소 화약주임) 진술조서」(1980. 7. 19.)]. 덕음광업소 초유폭약 피탈은 경찰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5. 22. 나주지역에서 활동한 시위대의 재판기록에는 나온다. 기소자 총명부

시위대가 광주에서 폭약을 취급하는 화약고에 최초 접근한 시간과 장소는 5월 21일 14시 05분 지원동 석산화약고였다.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sup>431</sup>, 보안사「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전남경찰국『집단사태 발생 및 지시상황』, 505보안부대「광주사태 시 상황일지」, 전교사「전투상보」, 제1관구사령부「80 부대사(전교사)」, 육군본부「상황일지」등의 보고를 종합하면, 석산화약고에서는 다이너마이트 4상자, 도화선 100m가 피탈되었다.<sup>432</sup>

시위대가 화순광업소에 최초로 진출한 시간은 5월 21일 14시 25분으로 확인된다.<sup>433</sup> 시위대가 화순광업소를 점거하고 총기를 피탈한 시간은 5월 21일 15시 35분이며, 16시 00분경 젤라틴 다이너마이트 13상자를 탈취하였다. 기록별로 폭발물 피탈 시간은 상이하지만, 화순광업소에서 피탈된 폭발물의 양은 공통적으로 다이너마이트 295.5Kg(13상자, 3,600개), 도화선 6,000m이다. 화순광업소 폭발물 피탈 규모는 1980년 5월 24일 화순광업소가 기안하여 5월 25일 화순경찰서에 발송한 「약탈된 화약류 보고」문서상 ‘젤라틴(25m/m) 295.5Kg(13상자), 도화선(2중) 6,000m(6상자)’ 피탈로 확인되며,<sup>434</sup> 다이너마

.....  
 ‘죄명·범죄 개요에 이○○은 5. 21. 탈취 차량에 탑승하여 시위한 사실만 나오고, 이○○은 ‘5. 22. 나주군 덕음광업소 침입, 초유폭탄 2상자 절취 및 시위’로 기록되었다(「기소자 총명부(총404명)」, 기무사 201-47).

431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 7. 18), 101쪽. 5. 21. 하루 시위대의 무기 확보 및 무장' 부분에서 폭약류 피탈은 '지원동 석산화약고, 한국화약을 습격하여 TNT 10여 상자를 탈취하였다.'

432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213, 231쪽; 전남경찰국, 『집단사태 발생 및 지시상황』(1980), 200-201쪽; 505보안부대, 「광주사태 시 상황일지」(1980), 206쪽; 전교사, 「전투상보」(1980), 16쪽; 제1관구사령부, 「80 부대사(전교사)」(1982), 747쪽; 육군본부 작전상황실, 「상황일지」(1980), 19쪽(별지); 합동참모본부, 「10·26상황일지」(1980), 8쪽(2733)

433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1980), 213쪽.

434 화순광업소, 「약탈된 화약류 보고」(1980. 5. 25). 화순광업소에서 필요한 화약은 아침마다 화약저장창고에서 받아 갔는데, 동갱과 서갱은 각각 하루에 20박스 정도의 화약을 사용하였다. 날짜 미상의 아침 08:00~09:00경 화약고 출납담당자가 평소보다 2~3배 많은 양의 화약을 동갱과 남갱의 화약취급소로 가져가라고 지시해 화약, 도화선, 뇌관을 동갱 안의 현장화약취급소로 옮겼다. 평소 화순광업소는 한국화약에서 사용할 만큼의 화약만 가지고 와서 다음날 화약취급소로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화약고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다. 1980년 화순광업소 화약저장소는 3개 동이 있었는데 2개 동은 폭약(젤라틴다이너마이트, 정밀폭약 등)을 보관하고, 1개 동은 화공품(뇌관, 도화선 등)을 보관하였다[5·18조사위, 「지○○(1980년 당시 한국화약 광주영업소 직원) 진술 녹취록」(2020. 11. 26.)]. 시위대는 3동 화약저장고 철문을 열어 도화선이 있는 나무상자 3개를 보고 나서 담당자에게

이트 폭발에 꼭 필요한 뇌관은 사전에 대피시켜 피탈되지 않았던 관계로 시위대가 탈취한 다이너마이트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sup>435</sup>

탄광 등 민간에서 주로 사용하는 상업용 다이너마이트와 군의 표준 폭약인 TNT는 성분과 외부 형상이 다른 폭발물이지만 1980년 5·18 당시 폭발물 피탈 및 회수 보고에서는 다이너마이트와 TNT의 용어가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화순광업소의 ‘약탈된 화약류 보고’와 화순경찰서「종합상황실 근무일지」, 합동참모본부「10·26상황일지(3)」는 젤라틴(25m/m), 다이너마이트 등 폭발물의 종류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TNT화약), 보안사(TNT), 전교사「전투상보」·「1관구부대사」·광주지방검찰청「광주5·18사태일지」<sup>436</sup>는 피탈된 다이너마이트를 TNT로 보고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5·18 관련 사건 수사결과」역시 TNT(10상자) 피탈로 발표하였다. 이상의 기록에서 명시된 TNT는 화순광업소 등에서 피탈된 민수용 다이너마이트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10·26상황일지(3)」는 1980년 5월 22일 “계엄군 피해 통계: 화약 58톤”이라고 보고하면서 화약 58톤이 등장한다.<sup>437</sup> 화약 1상자는 22.5Kg으로 58톤은 2,500상자가 넘는 분량이다. 이후 1982년 출간된 『계엄사』와 『제5공화국전사』는 “5월 21일 난동자들은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화순광업소를 습격하고 화약 및 티엔티를 탈취하였으며, 광주시 소재 한국화약 주식회사의 보급소에서 폭약 2,500여 상자와 뇌관 35만여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었을 정도로 화약류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며, 폭약 사용에 필수품인 뇌관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물 운용능력이 없었다[5·18조사위, 「임○○(당시 화순광업소 화약계 직원) 진술 녹취록」, 「안○○(현 화순광업소 화약과장) 진술 녹취록,(2020. 11. 23.)」, 「고○○(화순광업소 공무부장) 진술 녹취록,(2020. 6. 23.)」].

435 화순경찰서「종합상황실 근무일지」도 화순광업소는 뇌관을 대피해 피탈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화순경찰서, 「종합상황실 근무일지」, 치안본부 감찰계, 『전남사태 관계기록2』(1980), 194쪽).

436 광주지방검찰청, 「광주5·18사태일지」(1980), 12쪽. “5. 28. 집계: TNT 300Kg, 도화선 6,000m”

437 합동참모본부, 「10·26상황일지」(1980), 10쪽(2735)

개, 도화선 4만 미터 등을 탈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up>438</sup>

하지만 (주)한화의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확인 협조’에 대한 회신(한화 제1-132호, 2022. 8. 26.) 내용에 따르면, 1980년 한국화약 광주화약고는 민수용 화약고로 산업용 다이내마이트만 보관하였으며, 5·18 관련 피해에 대한 내부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 한국화약 광주영업소 주임이던 지용현도 5월 21일 용두동 화약 저장소의 뇌관을 땅에 묻어 은닉했으며, 저장소에 대한 시위대의 습격은 없었다고<sup>439</sup> 진술하였다. 폭약 2,500여 상자는 서부경찰서 보안과장의 ”경계 및 운반“ 보고가 (수기로) 피탈로 전환된 기록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5·18 이후 검찰, 경찰의 보고를 종합하면, 한국화약과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계엄군의 폭약 피해는 없었다. 계엄군이 5·18 작전 중에 TNT 550파운드, 전기뇌관 650개, 비전기뇌관 63개를 불출 받았다가 320파운드를 소모하고 잔여분 230파운드를 반납했고, 탈취 및 분실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440</sup> 5·18 이후 광주지방검찰청(1980.6.8.), 치안본부(1980.6.18., 6.24.), 그리고 1988년 7월 청문회 과정 중에 광주지방검찰청이 보고한 ‘폭약류 피탈 물자 회수현황’은 ”폭약 382.5kg, 뇌관 6,800개, 도화

438 육군본부, 『계엄사』(1982), 99, 136쪽; 현대한국사연구소, 『제5공화국전사』(1982), 45쪽. 『제5공화국전사』는 화순 광업소의 화약 및 티엔티 피탈량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폭약 피해는 1988년 「광주사태 관련 기본자료(1)」까지 이어져 폭약 3,000상자가 피탈되고 회수되었다고 정리되었다[「광주사태 관련 기본자료(1)」, 기무사, 『내란 음모사건 수사처리 상황(수사5국) 등 3건』(1988)].

439 (주)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은 산업용 화약, 방산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1974년부터 여수공장에서 화약을 생산하였다. 한국화약 광주화약고는 현재의 광주광역시 양산동에 소재하였으며 민수용 화약만 보관하고 있었다(주)한화, 「자료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2022. 8. 26.). 당시 한국화약 광주저장소 경비를 담당했던 광주영업소 관계자는 1980년 5·18 당시 한국화약에는 시위대가 침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국화약 사무실은 금남로 제일화재 빌딩 5층에 소재해 있었고, 화약저장소는 용두동(現 자이아파트)에 위치하였다. 화약저장소는 꼬불꼬불한 산길 진입로에 3중 철조망 담장과 간판도 없는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도 화약저장소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폭약창고 1개 동에는 10톤 상당의 화약을 보관하고 있었고, 뇌관을 땅에 묻어서 은닉시켰으며, 5·18 기간에는 화약저장소에서 화약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5·18조사위, 「지OO 진술 녹취록」(2020. 11. 26.)]. 그리고 전교사에서 한국화약 광주화약고에 경계병을 배치한 시간은 5. 26. 16:06이었다(제1관사령부, 「80 부대사(전교사)」(1982), 762쪽).

440 제20사단, 「충정작전상보」(1980), 54-55쪽.

선 6,100m“가 전부였다.<sup>441</sup>

5·18조사위 조사에서 한국화약 화약관리 주임은 5. 27. 도청 진압 직후에 ‘전남경찰국 화약담당’의 요청으로 도청 지하에 정리해 놓은 폭발물을 감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다이내마이트가 담긴 상자는 20상자도 안 되어 보였고, 밖에 나와 있는 젤라틴 다이내마이트는 상당량이 녹아서 물이 흐르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폭약은 다이내마이트, 뇌관, 도화선이 분리되어 있었고, “이 폭약은 대부분 산업용 폭약으로 살상용이 아니다.”라는 감정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sup>442</sup>

## 5. 소결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 중 광주·전남 일원에서는 총기 5,003정, 실탄 289,400여 발, 폭약 382.5kg이 피탈되었다. 1980. 5. 18. 00:00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7월말까지 5·18과 관련하여 총 2,522명이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 404명이 기소되었다. 기소자 404명 명부의 ‘죄목·범죄 개요’에 무기고 피습 관련 내용이 적시된 인원은 63명에 이르렀다.

2002년경부터 5·18에 북한특수군 침투설을 주장한 지만원은 2014년 『5·18분석 최종 보고서』에서 5·18은 광주·전남 지역민으로 구성된 어떠한 시위대도 없었고, 오직 북한특수군 600명과 그들에 놀아난 10대 중고생과 20대 부나비들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주장의 중심에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 사건이 있다.

이에 5·18조사위는 전남 일원의 무기고 피습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

441 「무기피탈현황」(1980. 6. 8.), 광주지방검찰청(공안과), 「5·18광주사태 무기탈취 및 회수현황」(1980), 서울중앙지검 102-94(2) 103467쪽; 치안본부, 「피탈 무기류 회수 현황보고(13개 시)」, 육군 헌병감실 수사과, 「계엄 참고자료(79-80)」(1980), 5쪽[민유총포 및 화약류 회수현황(1980. 6. 19.)]; 치안본부, 「피탈 무기류 회수 현황보고(13개 시)」, 육군 헌병감실 수사과, 「계엄 참고자료(79-80)」(1980); 「무기피탈현황」(1988. 7.), 광주지방검찰청(공안과), 「5·18광주사태 무기탈취 및 회수현황」(1980), 서울중앙지검 102-94(2) 103460쪽.

442 5·18조사위, 「지○○ 진술 녹취록」(2020. 11. 26.)



여 시민원의 주장을 전제로 조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위대가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는지, 둘째, 전문적이고 능숙한 수법으로 무기를 탈취했는지, 셋째, 시위대가 전남 일원 무기고에서 4시간이라는 단시간 내에 동시에 무기를 탈취했는지, 넷째, 무기고 습격자가 북한군이었는지, 다섯째, 시민군이 전남도청 지하에 폭약을 설치했는지, 여섯째, 시민들이 무장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여 북한군이 아닌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 및 해당 지역에서 합류한 지역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무기고 위치에 대한 사전파악 여부이다.

조사 결과, 5. 20. 광주역 발포 및 계엄군과 시위대 간의 밤샘 공방 이후 시위대와 계엄군의 대치 상황이 격화되자 본격적으로 시위대가 무장을 위해 인근 지역으로 출발하였는데, 특히 아시아자동차 차량 탈취 이후, 그리고 계엄군의 도청 발포 이후에는 시위대가 대거 무기고를 향해 출발하였다. 무장을 기도한 시위대는 도청 인근, 학동, 백운동에서 출발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역으로 가는 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당시에는 거의 모든 지·파출소에 지역예비군 무기고가 있었다.

시위대가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알고 오전에 계획적으로 출발했다면, 광주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곧장 무기고를 습격했을 것이지만, 지역에서 합류한 시위대의 진술과 증언에 따르면, 나주, 화순 등의 지역에 최초로 도착한 시위대는 광주 상황을 알려 합세를 호소하고, 지역민을 규합하여 광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시위대가 도착해 계엄군의 발포 사실을 알리면서 무기고 위치를 물었을 때 지역에서 합류한 시위대, 특히 무기고 인근 거주자, 무기고 관리 방위병, 경찰관계자의 친인척 등 무기고 위치를 알고 있던 지역민은 본인들이 시위대를 무기고로 안내했다는 증언과 진술을 하였다.

또한 시위대의 군부대 접근은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알고 군부대에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5. 21. 광주에서 온 시위대가 돌아간 다음 저녁 시간에 지역시위대가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무장을 시도한 경우로 확인되었다.

둘째, 시위대가 전문적이고 능숙한 수법으로 무기를 탈취했는지 여부이다.

조사 결과, 시위대의 무기 탈취방식이 전문적이라고 하려면 무기고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전에 특수한 도구를 가지고, 능숙한 파괴 능력을 보여 순식간에 탈취했어야 한다. 군과 정보기관의 시위대 동향보고는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하기 이전에 무기고에 접근하거나 정탐했다는 보고가 없다. 5월 21일 오전경 지역에 도착한 시위대는 곧장 무기고로 향하기보다는 지역민이 많이 집결하는 버스터미널, 관공서 앞으로 가서 광주 상황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위치가 알려진 지역 경찰서나 지·파출소로 향하였고, 다른 무기고로 가려고 했을 때는 무기고 위치를 물어 지역민의 도움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무기고에 접근한 시위대는 금성동파출소, 해남경찰서와 같이 단독 건물의 벽을 차량으로 파괴하거나, 무기고 열쇠를 각목, 쇠망치, 쇠파이프, 총으로 파괴하였다. 그리고 5월 22일 ~ 23일 지역시위대는 지서 인근에 은닉된 무기를 탈취하거나, 은닉 중인 무기를 노상에서 탈취하기도 하였다. 시위대는 총으로 무장한 경우에는 총을 이용하여 무기고 열쇠를 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망치와 같이 공사장과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등 특별히 전문적인 수법이라고 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무기고 문을 개방한 시위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무장할 정도의 총과 실탄만 가져갔고, 무기를 탈취하는 데 2~3시간이 소요되거나, 같은 무기고를 여러 차례 공격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시민군이 전남도청 지하에 대량의 폭약을 설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5·18 당시 폭약류의 피탈 규모는 보고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전교사 「작전일지」에 보고된 한국화약 폭약 2,049상자나 화순광업소 8톤 트럭분 폭약 등의 수량은 사실 확인 없이 합동참모본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1980)나 『계엄사』(1982) 등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그러나 화순광업소의 폭약류는 젤라틴다이너마이트 292.5Kg(13상자), 도화선 6,000M로 1980. 5. 24. 화순경찰서에 보고되는 등 5·18 당시 폭약 전체 피탈량은 화순 광업소 13상자, 석산화약고 4상자 등 총 382.5Kg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시위대가 전남 일원 무기고에서 4시간이라는 단시간 내에 동시에 무기를 탈취했는지 여부이다.

5·18 당시 전남 일원의 무기고 피습 시간은 작전을 수행했던 부대의 상황일지, 경찰서 근무일지, 정보기관의 일지 등에 세세하게 남아있다. 1980년 당시 군과 정보기관의 상황 일지는 시위대의 동향을 자세하게 실시간 보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군과 경찰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당시 전남 일원에서 93개 무기고가 피습되었고, 53개 무기고에서 무기가 피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무기 피탈 시간은 5월 21일 화순경찰서 13:25, 나주 산포지서 13:30, 영암 신북지서 14:30, 해남 계곡지서 16:00로 광주에서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영되었다. 지역별로 먼저 피습된 무기고는 광주와 연결된 지방도로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보여주었을 뿐 무기고에 보관된 총기 수량 등의 정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무기고는 일반적으로 지방도로에 연결된 순서에 따라 피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주(남평지서, 금성동파출소)와 화순지역(동면지서, 전투중대무기고)에서 초기에 무기를 탈취한 시위대는 광주로 진입하였고, 반면 나주지역에서 합류한 시위대는 영암으로, 영암에서 합류한 시위대는 강진, 해남으로 진출하는 등 인근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양상이었고, 무기 피탈 시기 또한 5월 21일 일거에 피탈된 것이 아니라, 5월 23일까지도 피탈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1980년 5월 21일 13:00 계엄군의 전남도청 발포 이전 시위대 무장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어 온 5월 21일 11:00의 금성동파출소 예비군무기고 피탈, 5월 21일 08:00의

반남지서 경찰 무기 피탈, 09:00의 남평지서 경찰 무기 피탈 여부, 그리고 나주경찰서 「예비군 무기탄약 피탈 상황」에 유일하게 나오는 영산포지서 11:00 예비군 무기 1정 피탈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먼저 영산포지서 칼빈 1정 피탈은 나주경찰서 「예비군 무기탄약 피탈 상황」에 1정 피탈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주경찰서 「경찰관서 피습상황」에는 시위대의 무기고 자물쇠 파괴 외에 무기 피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피해 상황을 종합한 전남경찰국 기록 등 다른 정부기관 자료에는 영산포지서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산포지서 예비군 무기 칼빈 1정은 오기로 보인다.

금성동파출소의 경우, 5·18 당시 파출소를 경계했던 경찰관의 진술서와 파출소장의 진술서, 그리고 나주경찰서의 「경찰관서 피습상황」은 5월 21일 14:30 피탈로 통일되어 있다. 다만 금성동파출소는 경찰 무기를 나주경찰서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데, 금성동파출소 예비군 무기고 피습 당시 경계근무를 했던 경찰관의 치안본부 계고장에는 본인의 기존 진술뿐만 아니라 모든 기록과 상이하게 ‘5월 21일 11:30경 침입에 방관하다 자체 무기고에 보관 중인 경찰 무기 칼빈 5정을 피탈 당한 사실’에 따른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어 11:30 피탈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만 금성동파출소 자체 무기고에 경찰 무기 5정이 남아있어서 5월 21일 11:30에 피탈되었다면, 금성동파출소 경찰 무기는 나주경찰서에 반납된 5정을 합해 10정이 피탈된 것으로 보고되었어야 한다.

반남지서 경찰 무기 5월 21일 08:00 피탈은 보안사 존안 자료인 「전남도경 상황일지」에만 나온다. 5·18 당시 경찰 무기 피탈을 기록한 전남경찰국의 「경찰 무기 탄약 피탈 개요」는 5월 21일 18:00로 기재되어 있다. 또 나주경찰서 「경찰관서 피습상황」에는 5월 21일 17:40에 예비군 무기와 경찰 무기가 동시에 피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 조사에서 반남예비군소대장과 반남지서 사환이 5. 21. 18:00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으며, 반남예비군소대장에 대한 위원회 진술조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

인되었다.

남평지서 경찰 무기는 나주경찰서 「경찰관서 피습상황」에 따르면, 5월 21일 13:30 예비군 무기와 동시에 피탈되었다. 나주경찰서 「업무처리상황」 역시 5월 21일 13:30 남평지서 무기 피탈 보고가 접수되었다. 당시 나주경찰서 경무과장은 1980년 6월 5일 진술서에서 13:50 일반전화로 남평지서 무기 피탈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다. 남평지서장의 1980년 6월 14일 징계의결서는 5월 21일 9:50 침입한 시위대가 퇴각한 이후 13:30 재침입한 시위대에 의해 무기가 피탈되었음을 보여준다. 남평지서장은 2개월 후인 1980년 8월 19일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도 참고인으로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한편 1980년 5월 21일 13:50에 ‘13:30 광주방면에서 온 데모대에 의한 남평지서 무기 피탈’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던 나주경찰서 경무과장이 10여 일 후인 1980년 6월 14일 치안본부로부터 받았던 징계의결서는 ‘9:50경 시위대의 남평지서 침입 무기 탈취’라고 되어 있어 앞에서 언급한 기록과 상이하다. 전남경찰국의 「경찰 무기 탄약 피탈 개요」에 따르면, 5월 21일 09:50 지서에 침투한 150명이 예비군무기고 열쇠를 망치로 파괴하고 예비군무기고에 이관·보관되었던 남평지서 경찰 무기를 탈취했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5월 21일 09:50에 경찰 무기 5정만 피탈되고 나머지 통합 보관되어 있던 예비군 무기는 피탈되지 않았다는 것이 되므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평지서장과 남평 예비군 소대장은 2017년 전남지방경찰청 조사와 위원회 조사에서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진술이 엇갈리지만, 남평지서 무기가 한 차례만 피탈되었다는 진술은 일치하였다.

넷째, 전남 일원 무기고 습격자가 북한군이었는지 여부이다.

조사 결과, 5·18 당시 기소자 중 63명이 전남 일원의 무기 탈취에 직접 관련되어 처벌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이 63명은 주거지에 따라 광주에서 혹은 지역에서 시위대에 합류하고, 시위 과정에서 무기고 습격에 가담한 사실이 이들에 대한 수사기록 등에서 확인되었다.

시위대가 5·18에 참여하게 된 시기와 장소, 그 이유는 다양하였다. 계엄군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구타를 당했을 때, 특히 5월 21일 아침 시신을 목격하거나 도청 앞 발포를 목격한 시위대는 공수부대의 폭력을 자신의 가족과 공동체에 가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주저 없이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또 광주에서 온 시위대의 요청으로 합류한 지역시위대는 지역민을 규합하여 광주에 올라가 합세하려고 했으며, 도청 발포 소식을 접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무장을 시도했던 것이 군과 정보기관의 시위대 동향보고와 위원회 조사 결과 등에서 확인되었다.

## 제3절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 1. 조사 배경

반란과 내란으로 집권에 성공한 전두환 신군부 내란세력과 그 지시를 받았던 집단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가 기록을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조작하여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저항인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부인하거나 정당화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5·18민주화운동을 김대중과 그 추종 세력 및 불순분자들이 일으킨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규정했으며, 이러한 왜곡된 평가는 전두환 정권 7년을 통해 일관적으로 유지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비록 5·18민주화운동을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으나, 당시 국방부와 군은 계엄군의 무력진압 작전과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불가피성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전두환 정부의 시각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5·18 당시 군의 발포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지만, 당시의 군 기록 어디에도 5월 21일 도청 앞에서 군이 집단 발포를 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요구가 거세지면서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은 자신들의 반란 및 내란 행위를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혹을 받았다.

5·18진상규명법 제3조 제8호는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사건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18조사위는 2021년 11월 22일 제47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



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은 2023년 12월 26일 제116차 전원위원회에 진상규명 의견으로 상정되었으나, 2(진상규명) 대 7(진상규명불능)로 ‘진상규명불능’ 결정되었다.<sup>443</sup>

## 2. 선행조사 검토

이 사건과 관련하여 5·18조사위 설립 이전의 선행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국회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1988-1989)

1988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른 제13대 국회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광주특위)’가 설치되었고, 이른바 ‘광주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광주청문회’에서는 발포명령과 지휘체계 이원화가 이 청문회의 중요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이 이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발언을 회피함으로써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청문회에 대비하여 정부와 민정당은 비밀리에 관련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문서를 조작, 왜곡하거나 관련자들의 허위증언을 유도했다는 논란 등이 있었으나, 청문위원들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군 자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5·18과 관련한 의문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정부 여당의 관련 대책기구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였다.

### 나. 검찰수사(1995-97)와 대법원 판결(1997.4.17.)

문민정부 출범 이후 신군부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1995년 7월 “성공

443 이 사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7인의 위원은 2건의 불능사유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각 불능사유의 구체적 인 사항은 별책에 수록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해당 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5·18민주화 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등으로 검찰수사가 재개되었으며, 이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12·12를 일부 정치군인들의 ‘군사반란’으로, 5·17 비상계엄확대 및 민간인 살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관련자들을 군사반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재판은 신군부의 ‘국가에 대한 범죄’는 밝혔으나 시민에 대한 무력진압과 발포 등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으며, 또한 공소장에 나온 범죄사실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 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5-2007)

국방부과거사위는 2005년 5월부터 ‘12·12, 5·17, 5·18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과거사위는 ① 5·18민주화운동 초기 공수부대의 과격진압 ② 외곽봉쇄 과정에서의 민간인 살상 ③ 자위권 발동 논의 및 계엄군의 발포 ④ 광주에서의 작전지휘권 혼란 및 5·17 내란세력의 인사권 남용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또한 국방부과거사위가 찾아낸 미공개 군 문서를 통해 핵심적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왜곡, 조작, 멸실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일부 밝혀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민들의 무장시각 조작 의혹이다. 그러나 발포명령이나 지휘체계 이원화, 군 자료의 왜곡 조작 전모 등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

#### 라.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2017.9-2018.2)

2017년 전일빌딩 탄흔 조사를 계기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규명을 위한 5·18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가 국방부에 설치되었다. 5·18특조위는 비록 헬기 사

격의 명령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5월 21일과 27일의 발포 사실을 밝혀내어 헬기 사격의 존재를 정부차원에서 공식 확인하였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은폐와 왜곡'과 관련하여 '광주사태진상구명실무위원회(위원장칭 80위원회)'와 '511연구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조직편제와 활동 내역, 군작전부대(특전사, 20사단, 31사단 등) 전투상보의 위·변조 내역 등을 일부 규명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대인조사 성과가 거의 없었다.

### 3. 규명과제

이 조사의 중점 규명과제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부터 6공화국 초기의 광주청문회까지 왜곡의 주체와 양상(은폐·왜곡·조작)을 시기별로 규명하는데 있었다. 이 조사는 규명 과제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시기별 사건의 성격에 주목했다.

과제 Ⅰ) 제5공화국 초기의 왜곡  
: 「5공전사」, 「광주사태초안」 작성 경위와 내용분석  
과제 Ⅱ)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제5공화국의 대응  
: 80위원회 활동 내역, 「광주사태의 실상」 내용분석  
과제 Ⅲ) 광주청문회에 대한 노태우 정권의 대응  
: 육군위원회와 511위원회 활동내역, 광주청문회의 진행

### 4. 조사 활동

#### 가. 기록 조사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5·18조사위가 주로 검토한 기록은 다음 표와 같다.

분류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시기
1980년	이희성 계엄사령관 담화	계엄사	1980. 05. 21.
	광주사태 계엄사 발표	계엄사	총 4회 - 1980.5.31./ 6.3 /7.3 /7.12)
	육군본부 상황일지	육군본부	1980
	광주사태 진상조사 보고	국가보위비상대 책위원회	1980. 06.
	광주사태첩보보고	505보안부대	1980
	광주사태일일속보철, 광주사태 상황보고, 광주사태 전말보고,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전문	보안사	1980
	광주권 충청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2군사령부	1980
1980년	광주사태 분석교훈집, 광주지역선무공작 현황보고, 소요진압과 그 교훈	전교사	1980
	광주내란 및 소요사건 수사결과 보고	전남합수단	1980
	광주사태 일지	합동수사본부	1980
1980년	5·18사태 주요사건일지	전남도청	1980
	5·18사태일지	광주 동구청	1980
1982-1985	제5공화국전사	보안사	1982
	광주사태초안, 광주사태와 유언비어, 계엄사	육군본부	1982
	광주사태의 실상	안기부	1985
	장관 <광주사태전모> 국회 보고	국방부	1985
80위원회 관련	광주사태(제125회임시국회 정책질의답변자료)	육군본부	1985
	광주사태진상 해외홍보책자 발간계획보고	80위원회	1985. 06.
육군대책위 원회 관련	광주사태 자료정리보고, 현안문제 관련 자료	육군본부 민심부 계엄과	1988
	광주사태 관련 대비방안, 육군의 기본시각(전군 지휘관회의 발표자료)		1988. 07. 06.

분류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시기
511연구위원회 관련	511 관련자료-상설위원회 설치와 편제, 광주사태 진상	511연구위원회	1988
	〈광주사태〉(국회답변자료)	국방부	1988
	증언대비계획 I . II . III <광주사태체험수기	국방부 민심부 계엄과	1988
	광주사태 관련 문제점분석		1988
보안사 511 분석반 관련	광주사태 관련 업무보고, 광주사태 대비상의 문제점 검토, 당 사령부 기간중 활동사항	보안사	1989
	5·18관련 왜곡보도 및 야당측 편파주장 반박자료 조언 결과보고, 광주사태 관련사항 종합분석보고	511분석반	1989
	511분석반 운영상황보고	보안사 3처	1990
경찰기록	전남사태 관계기록 1, 2	경찰청 감사관실	1980
	전남도경 상황일지		1980 추정
	5·18 민주화운동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전남지방경찰청	2017
국가기록	광주청문회 자료 등 국회 기록	국회	1988
	5·18관련 사건수사결과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부	1995
	12·12, 5·18 관련 재판기록	대검찰청	1994-1999
	간첩 홍중수(이창용)·손성모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대법원	1980-1989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국방부 과거사진 상규명위원회	2007
	국방부 조사결과보고서	국방부 5·18특 별조사위원회	2018

## 나. 대인조사

이 조사와 관련하여 5·18조사위는 47명의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을 다음 표와 같이 대인조사하였다.

연번	대상자	당시 직위	조사일시	조사 요지
1	장석규	‘80. 보안사령부 1처3과장(중령)/‘86. 보안처장(대령)/‘89. 보안사 참모장(소장)	2022.09.14.	5.18 당시 보안처 역할 5.18 정보처리 발포와 행불자 문제
2	나동식	‘80. 보안사령부 1처계장(소령)	2022.03.11.	5.18 정보처리 발포와 행불자 문제
3	조청호	‘80. 보안사령부 1처계장(소령)	2022.04.01.	5.18 정보처리 발포와 행불자 문제
4	권정달	‘80. 보안사령부 정보처장(대령)	2022.12.14.	정보처리, 계엄사발포 5공집권과정
5	허화평	‘80. 보안사령관 비서실장(대령)	2023.07.10.	5.18 정보처리, 보안사 역할 5공집권과정
6	허삼수	‘80. 보안사령부 인사처장(대령)	2022.04.28.	5.18 정보처리, 보안사 역할 5공집권과정
7	서의남	‘80. 505보안부대 대공과장(중령)	2022.08.30.	대공처 보고내용, 5.18 공작
8	전정웅	‘80. 505보안부대 보안과장(중령)	2022.11.16. 진술서 제출	보안처 보고내용 정도영 지시내용
9	김성한	‘80. 505보안부대 대공과장(중령)	2022.09.15.	정보처 보고내용 5.18 정보수집
10	김○○	‘80. 505보안부대 보안과(중사)	2022.09.30.	5.18 상황보고 일일속보철 변경
11	박○○	‘80. 505보안부대 보안과(상사)	2021.02.24.	5.18 상황보고
12	정현문	‘80. 505보안부대 정보담당(상사)	2021.02.18.	5.18 시위진압상황
13	김일호	‘80. 전투교육사령부 보안반장(소령)	2021.04.08.	5.18 정보보고, 자료 파기
14	김충립	‘80. 특전사령부 보안반장(소령)	2022.04.29 2022.12.02.	5.18 정보처리 5공 창출과 5.18 진압과정
15	박경석	‘80. 육본인사참모부 차장(준장)	2022.10.20.	신군부 무공훈장 수여
16	최재림	‘81. 보안사령부 감찰과장(중령)	2022.08.10.	〈5공전사〉 편찬경위
17	정경현	‘81. 육군사관학교 교수(소령)	2022.07.13. 진술서 제출	〈5공전사〉 광주사태 집필경위
18	장세동	‘80. 특전사 작전처장/‘81. 청와대 경호실장/‘85. 안기부장	2023.02.03.	발포경위와 책임자 80위원회 결성경위와 활동

연번	대상자	당시 직위	조사일시	조사 요지
19	이용린	‘80. 보안사 정보처 과장(중령)/ 81. 505보안부대장(대령)/‘82. 안기부 광주분실장/‘85. 안기부2 국장	2022.05.26.	5.18 정보처리 언론공작 80위원회 활동내역
20	김근수	‘85. 안기부1차장	2022.09.01.	〈광주사태의 실상〉 발간경위
21	천용택	‘88. 육군본부 민심부장(소장)	2023.05.31.	육군대책위원회 운용
22	김정웅	‘88. 민심부 계엄과장(대령)	2022.12.22.	육군대책위원회, 511위원회 활동내역
23	한상원	‘88. 민심부 계엄관리장교(중령)	2023.01.18.	육군대책위원회, 511위원회 문서 작성
24	이인천	‘88.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중령)	2022.11.12.	육군대책위원회, 511위원회 자료수집, 문서 작성
25	김형곤	‘80. 20사단61연대 2대대장(중 령)	2022.12.16.	외곽봉쇄시 발포 5.18 참가수기 수정
26	김동진	‘80. 20사단 61연대장(대령)	2023.02.08.	광목간 봉쇄작전과 발포 511위원회에서의 역할
27	서주석	‘88. KIDA 연구원	2023.04.04.	511문건(발표문) 작성
28	김경수	‘88. KIDA 연구관	2023.04.28.	511위원회 KIDA 역할
29	조창현	‘80. 보안사대공처(소령) /‘88. 511분석반장(대령)	2023.02.01.	5.18 정보처리 전남합수단 수사 511분석반 운용
30	조○○	‘88. 511분석반 하사관	2023.01.16.	511분석반 작업 내용
31	박○○	‘88. 511분석반 분석장교(대위)	2023.01.06. 진술서 제출	511분석반 작업 내용 문서 작성
32	조명윤	‘88. 511분석반 하사관	2023.06.20.	511분석반 작업 내용
33	최경조	‘80. 전남합수단장(대령) ‘88. 참모장(준장)	2023.09.21.	합수단 수사상황 511분석반 운용
34	임재문	‘96. 기무사령관(중장)	2023.02.16.	1996. 11. 〈5공전사〉 보관자 료 파기 지시
35	주상식	‘96. 기무사 감찰실장(대령)	2023.02.07.	〈5공전사〉 보관자료 파기실행
36	박신	‘96. 기무사령관 비서실장(대령)	2023.01.31.	〈5공전사〉 보관자료 파기목적
37	윤영기	‘80. 보안사령부 군사정보과장(중령)	2023.03.29.	5.18 정보처리



연번	대상자	당시 직위	조사일시	조사 요지
38	고명승	'86. 보안사령관	2023.10.18. 진술서 제출	5.18 진압정보
39	김병두	'80. 육군본부 보안부대장(준장)	2023.04.17.	5공집권과정, 5.18진압
40	임○○	'80. 광주 공동주민	2023.04.20.	정보요원 목격사항
41	박○○	'80. 시민군 상황실장	2023.07.14.	독침사건, 교도소 습격 등
42	김○○	'80. 민주투쟁위원장	2023.07.27.	독침사건, 교도소 습격 등
43	임정복	'80. 31사단 작전보좌관(소령)	2023.10.16.	국회청문회 증언내용
44	양이호	'88. 700보안부대(대령)	2023.10.30.	511연구위원회 관련
45	최택현	'80. 기갑학교 9전차대대 2소대 장(중위)	2022.09.06.	참가수기 대리작성
46	신○○	'80. 전교사 작전처 상황병(일 병)	2023.10.09.	전교사 상황일지 번개
47	정○○	'83. 20사단 행정병	2023.11.24.	1983년 20사단 문서 번개

## 5. 소결

5·18조사위가 조사를 마치고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진상규명조사보고서(안)에서 제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 5·18 당시와 직후부터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기록과 발표가 있었다. 이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는 5·18시기에 생산된 군 문서와 1980.5.31. 계엄사의 보도문 등인데,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1982년 보안사의『제5공화국전사』와 육군본부의 〈광주사태 초안〉 발간으로 이어졌다.

나. 5·18 왜곡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985년 2·12 총선 결과 전두환 정권은 수세에 몰리게 되고 5·18 진상규명 요구가 사회 전반으로 고조되자, 안기부를 중심으로 이전의 보안사를 포함 청와대와 행정부, 여당, 육군

본부, 치안본부까지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80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총체적으로 대응하였다.

다. 1987년 대선 이후 노태우 정권은 1988년 2월 21일 '육군대책위원회'를 편성하여 대응하고, 이후 13대 국회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광주특위'가 구성되자, 5월에 국방부 차원의 '511연구위원회', 7월에 보안사 '511분석반'을 결성하여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기구들은 광주특위 및 국회 청문회에 대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전투상보 등 군 문서와 5·18 참가군인들의 체험수기를 번개하였으며, 청문회에 나서는 증인들까지 통제하였다.

라. 5·18을 왜곡하는 이유는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첫째, 1980년 당시에는 신군부 반란세력들이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시민들의 항쟁은 김대중과 불순분자들의 사주 및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조작하였다. 둘째, 1980년 이후 1990년 후반까지는 군의 중추인 신군부 반란세력 및 5·18 국가폭력의 현장 지휘관들을 보호하고, 군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왜곡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셋째, 1990년대 후반 이후 2010년대까지는 수구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힘을 유지하고 민주세력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5·18을 왜곡하고, '북한군 침투설' 등 새로운 거짓을 조작하였다. 넷째, 2010년대 이후에는 유튜브 등을 통한 5·18 왜곡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신들만의 사회적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경제적 이윤까지 창출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마. 왜곡의 책임자는 '5·18'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신군부의 상층부이다. 이런 관점에서 1980년대 5·18 왜곡의 지시자는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과 노태우, 1980년 보안사 참모들(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정도영, 권정달)과 허문도,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희성, 황영시, 정호용, 박희도, 이종구, 보안사령관 박준병, 이종구, 최평욱, 조남풍과 안기부장 유학성, 노신영, 장세동, 안무혁, 배명인, 박세직이

라 추정할 수 있으며 실행처는 보안사, 육군본부, 안기부 등이다.

바. 결론적으로 5·18 왜곡 담론의 원천은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신군부의 집권욕망”이고, 은폐·왜곡·조작의 핵심은 “5·18은 계엄군의 강경진압이 아니라 악성 유언비어와 불순세력의 선동에 의해 시위가 과격화되었기 때문에 무력진압과 인명피해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요컨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국가폭력 사태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고 정권탈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왜곡에 나섰다는 것이다.

## 6. 진상규명 불능 사유

이 진상조사보고서(안)에 대해 제출된 불능 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 위원 등 3인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상규명 불능 사유를 제출하였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은폐, 왜곡, 조작사건 조사결과, ‘왜곡’이라는 용어의 개념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고, 왜곡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당시 행위자들에 대하여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의 내용을 사실처럼 주장하였는지 입증해야 하는데 그들에 대한 조사 미흡 등의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에 반대한다.

‘왜곡’이란 현재 시점에서 당시의 주장 내용이 사실이나 아니냐로 판별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 당시 그 행위자들이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주장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하는 것을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그 행위자들의 의도성과 고의성 입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 행위자들의 주장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밝혀진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왜곡’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김희송, 민병로, 오승용, 서애련 위원 등 4인 또한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상규명 불능 사유를 제출하였다.

“80위원회, 육군대책위원회, 511연구위원회, 보안사 511분석반 등의 결성 경위와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1988년 결성된 육군대책위와 511연구위원회의 경우 조직 결성 목적과 활동 내역, 활동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각 조직의 활동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혼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1985년 결성한 80위원회의 경우 조직체계도에 따르면 위원 11명, 실무위원 33명 등 총 44명이 활동했다. 5·18조사위는 80위원회 조사에서 단 2명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조직체계도에 명기된 위원들의 명단조차 수록하지 않았다.”라며 결론적으로 “조사 미비로 인한 채택 불가”라고 사유를 밝혔다.







## 제7장

# 결론과 종합권고







## 1. 새롭게 규명한 사실

- 1)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최초의 사망자는 1980년 5월 19일 야간에 숨진 김안부임을 확인했다. 이 사실은 계엄군의 총격에 의한 최초의 희생은 기존의 조사보다 최소 24시간 이전에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김안부는 1995년 검찰수사에서는 5월 24일 타박사로 보고되었으나, 5·18조사위 조사에 의하면 5월 19일 밤 광주양조장 공터(현 광주공원 인근)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아울러 5·18조사위는 5월 19일과 5월 20일 양일간 총상 사망자로 김경환과 정지영을 추가로 확인했다.
- 2) 5월 20일 야간의 광주역 인근 집단 발포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기존의 발표보다 3명이 많은 7명임을 확인했다.
- 3) 5월 21일 전남도청 근처 총상 사망자 중 최소 7명은 주변 건물 옥상 등에 배치된 계엄군의 조준사격으로 희생되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계엄군의 조준사격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계엄군의 증언을 확보했다.
- 4) 민간인 사망과 관련된 작전부대를 구분하면, 제3·7·11공수여단은 전체 사망자의 70%에 해당하는 117명, 제20사단은 18명, 제31사단은 7명의 민간인을 사망케 했음을 확인했다.

민간인 사망 사건 관련 부대

구분	공수여단				20사단	31사단	미상	없음	계
	3공수	7공수/ 11공수	7공수	11공수					
사망자	36 (21.6)	23 (13.9)	8 (4.8)	50 (30.1)	18 (10.8)	7 (4.2)	13	11	166 (100.0)

- 5) 총상 사망자(135명) 중 피격 부위가 한 곳인 단발(1발) 사망자는 88명이며, 이중 84명(95.5%)이 상체 부위가 피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발포할 경우 하복부를 겨

냥하도록 되어 있는 자위권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 6) 1995년 검찰 수사에서 사망 경위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104건의 사망 사건에 대해 사인, 사망장소 등 사망 경위를 새롭게 정정하였으며, 1980년의 검시기록에서 사망 장소가 특정되지 못한 47명 중 43명의 사망 장소를 새롭게 확인하였다. 또한 검시기록상 사망 장소가 병원(14명), 기타(7명)로 기재된 21명에 대해 선행 사망 장소를 확인하였으며, 15명에 대해서는 사인 오류를 정정(자상→총상 등)하였고, 검시기록상 카빈총에 의한 사망 26명 중 25명을 M16소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였다.
- 7) 민간인 희생의 상당수는 다른 시·군과 인접한 광주 외곽지역에서 발생했다. 다섯 곳의 외곽지역에서 71명의 사망자와 20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외곽지역의 집단 학살(2명 이상의 비무장 민간인이 계엄군에 의해 고의로 살해된 경우로 정의한다. 이때 비무장은 비록 무장을 했더라도 저항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를 포함한다.)은 5월 21일 광주 도심에서 철수한 계엄군들이 광주시위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행한 계엄군의 외곽봉쇄 작전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 8) 광주변전소 및 광주틀게이트(광주-장성 간) 인근 사망사건은 제31사단 11경비대대가 실행했음을 확인했다. 주남마을(광주-화순 간) 근처에서 계엄군이 마이크로버스 희생자를 확인 사살하고(소수의견 있음), 두 명의 부상자(채수길 양민석)를 임의 처형했다.
- 9) 시위진압 현장에 있던 일부 지휘관들이 ‘여자들의 옷을 탈의’시킬 것과 ‘죽지 않을 정도’로 폭행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계엄군이 대검을 사용하여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도 부상자의 상처 부위와 복수 계엄군의 진술로 사실임을 확인했다.
- 10)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의혹 52건의 사례 중 19건을 조사하고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했다(소수의견 있음). 진상규명 결정된 16건의 피해 유형(중복피해 포함)

을 종합하면 ① 강간 및 강간미수 9건, ② 강제추행 5건, ③ 성고문 1건, ④ 성적 모욕 및 학대 6건, ⑤ 재생산폭력 2건이었다.

- 11) 헬기 사격과 관련하여, 500MD 헬기의 경우 위협사격 수준 이상의 사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AH-1J(코브라)의 경우, 사격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UH-1H의 경우, 전일빌딩에 대한 사격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을 확인하였다(소수의견 있음).
- 12) 전두환이 전남도지사에게 (망월동) 묘지 이전 검토를 지시하고 505보안부대, 전남도 등 군·관·민 합동으로 유족 묘지 이전 대책(비둘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작 활동을 추진한 사실을 공적 기록물로 확인했고, 5·18희생자 묘적부를 발굴하여 이장한 묘지 26기의 명단을 특정했다. 또한 5·18 관련 단체를 와해, 분열시키고 비리를 조작해 관계자를 매도하는 등 동향 감시 및 순화공작을 지속해서 추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13)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수배·학사징계·해직·강제징집 등의 인권탄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5·18민주화운동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연행·구금·구속되고,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사례는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음을 확인했다(소수의견 있음).
- 14)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24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사례 55명(불인정자 52명, 인정자 3명)을 확인하였다. 또한 총 280여 구의 유전자 정보를 대조한 결과,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불자와 가(암)매장 제보현장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일치된 사례가 없었다.
- 15) 무명 열사 5인 중 3인의 유전자 대조 결과 신동남, 김재영, 양창근의 신원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 16)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개입설과 관련하여서

- ① 5·18민주화운동 당시 서울 시경은 남파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를 검거하여 광주  
의 시위를 무장 폭력 시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임무를 띠고 남파되었다고 발표하였  
다. 그러나 5·18조사위는 이러한 발표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
- ②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고 지만원이 제시한 증거 역시  
전혀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
- ③ 5·18조사위는 일부 탈북자들과 탈북민 단체가 펴트리고 있는 북한특수군 침투 주  
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했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
- ④ 지만원과 일부 탈북자의 북한군 개입 주장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추가조사가 필요  
함을 확인했다.

## 2. 과제

5·18조사위는 몇몇 주요한 직권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온전한 진상규명에 도달하지 못  
했다. 이 미해결 과제들은 5·18조사위 조사 활동의 한계에 대한 성찰의 지표이면서, 앞  
으로 추가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과거사 정리 작업의 과제이기도 하다.

### 가.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 ① 5·18조사위는 발포와 관련된 지휘체계를 완전하게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  
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현장의 계엄군에 대한 진술조사를 토대로 발포 과정을 상향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서 탄약 배분, 저격병 배치, 확인사살 등 일부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발포  
경위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했다.

5·18조사위는 당시 계엄사령부 지휘부, 신군부 내란집단 주요 인물, 진압작전 및

발포와 관련된 군사작전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핵심인물 60여 명을 조사했으나, 발포와 관련된 상하 위계를 비롯하여 군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실제 작동 과정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의 발포 관련 작전계획 수립의 실행 그리고 사후 수습 과정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군 기록을 찾지 못했다.

② 5월 20일과 5월 21일 공수여단의 발포는 현장의 중간급(대대장급) 장교의 판단인지 여단장 단위인지 아니면 그 윗선인지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밝히지 못했다. 특히 5월 20일 광주역 발포는 신군부 핵심 인물인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과 특전사령관 정호용 간의 지휘통제 관계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성을 명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③ ‘진도개 하나’와 발포 명령과 관련하여,

5·18조사위 보고서안은 5월 21일 08시에 발동한 ‘진도개 하나’가 실질적인 발포명령으로 봤으나, 일부 위원들은 ‘진도개 하나’가 발포 현장에 있는 병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문이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들은 이와 반대로 ‘진도개 하나’가 발포명령이라는 점을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 나.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록 등이 은폐되거나 변조된 흔적과 의혹을 발견했다. 특히 1988년 이후 야당이 다수당이 된 정치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커지고 1988년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다. 5·18조사위는 1988년

에 설치된 육군대책위원회, 511위원회, 보안사 511분석반 등의 활동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5·18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은폐, 왜곡, 조작의 실상을 명료하게 밝히지 못했다.

- ① 어떤 행위가 ‘왜곡’, ‘은폐’, ‘조작’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국가폭력의 주체가 자신의 행위를 부인할 목적 또는 여타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5·18조사위는 이러한 목적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 이에 왜곡의 주체가 인지 오류, 착각, 오기, 실수에 의한 누락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신의 행위를 변호할 여지를 마련해주었다.
- ② 기록과 사건의 왜곡과 조작에 대한 규명은 왜곡과 조작 이전의 원본과의 대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5·18조사위는 이러한 실체를 확인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5·18조사위는 당시 전투상보, 작전일지, 계엄군 수기 등이 사후에 재작성되었을 정황을 확인했으나, 원본을 찾지 못했고 재작성과 조작 등에 관여한 인물의 인정 진술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 다. 희생자 암매장 의혹

5·18조사위의 암매장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① (가)암매장을 실행했던 계엄군이 지목한 장소 대부분에서 지질과 지형의 변화로 매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② 5·18조사위가 암매장 제보 현장에서 발굴한 수많은 무연고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가 일치한 사례를 아직 찾지 못했다. 따라서 별도의 전문적 기구가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 라. 군인과 경찰의 사망·상해

5·18조사위는 진압작전에 동원되어 사망·상해를 입은 군인과 경찰,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현재까지도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정부는 진압작전 과정에서 명령을 실행하다가 피해를 당한 병사들과 사망한 병사의 유족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 등 후유증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치유책을 강구해야 한다.

## 3. 국가에 대한 권고

5·18조사위는 5·18진상규명법 제34조 제2항에 근거하여 5·18조사위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1개 항목의 국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5·18조사위는 권고 사항 채택 과정에서 1993년에 5·18관련 단체와 시민사회가 오랜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하여 제시한 ‘광주문제 해결 5대 원칙’과 UN이 2005년에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기본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 라인”(피해자 권리장전)에서 제시된 피해자 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고심하였다. 5·18진상규명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이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5·18진상규명법 제34조 제4항〉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혁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권고 1.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 우리 헌정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신군부 세력의 국헌문란 행위에 시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맞서 싸운 10일간의 항쟁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은 이미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있다.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고, 현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주요 인사들도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자리매김하였다.
- 우리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앞으로는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체제를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는 의미를 가지며, 반면에 권력자들에게는 다시는 불의한 권력찬탈이나 독재의 욕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갖는다.

**권고 2. 국가는 헌법전문에 반영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함양하기 위한 유·무형의 기념사업을 국가의 책임과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등에 포함되어 있는 기념사업의 관련 내용을 종합하되, 이 기본법의 시행 주체는 국가로 하여야 한다.
2. 국립트라우마센터 등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한 상설적 기구에 대한 소요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3. 유형과 무형의 기념사업으로 구분하여 명시하되, 국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현재 옛광주교도소, 옛적십자병원, 옛국군광주통합병원, 옛505보안대 등 5·18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기념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미진한 건축물과 공간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옛전남도청 사적지를 현재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속시설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독립시설로 전환하여 5·18 관련 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권고 3. 국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광주시민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 국가는 일부 극우세력이 그동안 출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책,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 영상물, 언론기사 등에 대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어떠한 부분이 왜곡·폄훼되었고 올바른 내용은 무엇인지를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왜곡·폄훼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조작과 왜곡의 범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권고 4. 국가는 5·18조사위 조사결과에서 새롭게 확인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 학사징**

계, 해직,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명예회복,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되, 성폭력 피해자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여부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5.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소재와 신원 확인 및 암매장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6.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가족들이 언제든지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상신청 및 심의를 상설화할 것과 5·18민주유공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7.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실태조사를 정례화해서 피해자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적시에 파악하고, 의료 및 생계 지원 등에 걸쳐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8. 국가는 군에 의해 시민들의 인권이 심대하게 침해된 이 사건에 대해 배경과 원인, 국가공권력과 군의 책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군사 정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군에 상설적으로 정훈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국가는 군인 정신교육 및 인권교육 과정에 '부마항쟁', '12·12군사반란', '5·17내란',

‘5·18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과 시위 진압의 실상 및 역사적 의미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군의 정치적 중립, 민주주의 수호 의무 및 시민의 저항권 행사의 의미를 인식하고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권고 9. 국가는 5·18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범죄가 계엄법을 악용하여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계엄법과 이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계엄의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 1949년 「계엄법」 제4조에 따르면 ①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한 사변, ②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③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었으나, 1981년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① 전시 사변이 아닌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② 적과의 교전 상태가 아니어도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군사상 필요가 없더라도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도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조항은 불법적인 정치집단이 공공의 안정을 명분으로 군부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sup>1</sup> 「계엄법」은 1981년 개정 이후 10회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조항은 1981년 조문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서 개정이 시급하다.

○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전투지역 또는 그 인접 지대로 치안이 혼란되어 정상적인 행정 또는 사법을 행할 수 없거나 또는 당해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라고 「계엄법」 제2조

1 우리는 1987년 6월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대동원 계획과 박근혜 정권 시절 기무사에서 기획한 비상계엄 발동 계획안에서 유사한 사례를 경험했다.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권침해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이 실질적이고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조치는 UN의 피해자 권리장전에서 강조하는 피해자의 '진실추구권'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행정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가지는 인권침해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비공개 상태인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해야 한다.

권고 11. 5·18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 결과 및 수집자료를 관리·분석하고, 5·18정신 계승을 위한 연구 및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5·18연구재단'(가칭)을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이 재단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내외의 모든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공무원 등의 직무교육 과정에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그 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기여한 역사적 사건들이 정규교육 과정의 교양과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점 등을 고려하여 5·18연구재단(가칭)이 5·18조사위의 조사 결과 및 수집자료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